ChungNam
Heart of Korea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2005 안전관리계획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5361

재난관리행정서비스헌장

1. 재난예방

-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별로 재난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철저한 분류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연 1회이상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 개선 노력으로 유사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습 ·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하여 가정 · 학교 · 공공기관 · 산업체 · 교통 분야에서 안전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의 신속한 발견과 해소를 위하여 시 · 군별로 각 1개소의 안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재난위험요인이 신고되면 3시간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재난발생 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대응 · 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 재난대응 · 수습 · 복구

-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소(긴급사고대책본부) 등을 설치 · 운영하겠습니다.

-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환자 이송을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 운영하겠습니다.

-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거주자 등 해당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겠습니다.

- 재난발생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인력 · 장비 · 물자 · 시설 등 재난대비 자원을 연 1회 전수조사 D/B화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여 수습 및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AM015361

ChungNam
Heart of Korea

대한민국의중심, 충남

2005 안 전 관 리 계 획

충청남도

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편 총 칙

제 1장 안전관리계획의개요

제1절 계획의 의의 ---------- 7

제2절 재난의 정의 ---------- 8

제3절 재난관리책무 ---------- 8

제4절 계획수립의 절차 및 분야 ---------- 9

제 2장 재난관리의 여건변화 및 기본방향

제1절 우리나라의 여건변화 및 전망 ---------- 11

제2절 국제적인 여건변화 ---------- 12

제3절 방재환경전망과 기본방향 ---------- 13

제 3장 충청남도재난관리체제

제1절 재난관리체계 ---------- 15

제2절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 ---------- 16

제3절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 19

제4절 긴급구조통제단 ---------- 21

제5절 재난관리책임기관 ---------- 26

제6절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28

제2편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제 1장 풍수해대책 ---------- 33
제 2장 설해대책 ---------- 102
제 3장 가뭄재난대책 ---------- 118
제 4장 지진재난대책 ---------- 131
제 5장 해일·폭풍대책 ---------- 174
제 6장 황사대책 ---------- 212
제 7장 적조대책 ---------- 221
제 8장 폭염대책 ---------- 236
제 9장 시설물 재난대책 ---------- 248
제10장 폭발·대형화재대책 ---------- 274
제11장 교통안전대책 ---------- 283
제12장 건축물 재난대책 ---------- 297
제13장 가스 재난대책 ---------- 302
제14장 산불 방지대책 ---------- 307
제15장 환경오염 사고대책 ---------- 315
제16장 유·도선 안전대책 ---------- 331
제17장 상수도 시설 안전대책 ---------- 343
제18장 문화재 시설 안전대책 ---------- 347
제19장 유원시설 안전대책 ---------- 358
제20장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 364
제21장 체육·청소년시설 안전대책 ---------- 376
제22장 수리시설 재난대책 ---------- 391
제23장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 396

제3편 국가기반재난대책(별책)

제4편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제 1장 충청남도 교육청 ---------- 403
제 2장 제32보병사단 ---------- 429
제 3장 충남지방경찰청 ---------- 431
제 4장 중부지방산림관리청 ---------- 436
제 5장 금강유역환경청 ---------- 456
제 6장 대전지방노동청 ---------- 469
제 7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485
제 8장 철도공사대전지역본부 ---------- 611
제 9장 태안해양경찰서 ---------- 620
제10장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 ---------- 628
제11장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696
제12장 한국가스공사충청지사 ---------- 714
제13장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737
제14장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 746
제15장 KT충남본부 ---------- 762
제16장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 ---------- 807
제17장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 837
제18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864
제19장 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관리사무소 ---------- 979
제20장 한국철도시설공사충청지역본부 ---------- 997
제21장 건설교통부금강홍수통제소 ---------- 1027
제22장 국립공원공단태안해안사무소 ---------- 1043
제23장 대전지방기상청 ---------- 1066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안전관리계획의 개요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2. 성　　격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집행계획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계획 등을 종합한 충청남도안전관리계획

3.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4. 계획의 추진경과

○ 『1977년부터 방재계획』 · 『 1996년부터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

○ 그동안 계획수립 · 운영이 이원화되었던 재난전담기구를 2004.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 도 및 시 · 군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 시행토록 하였음

제 2 절 재난의 정의

1.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인적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3.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新 개념

재난 = 기존의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제2조)
+ 기존의 인적재난개념(재난관리법제2조)
+ 국가기반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제 3 절 재난관리 책무

1.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2.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고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재난의 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제 4 절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

1. 계획수립 절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지침작성·시달	⇨	계획수립·제출	⇨	심의·확정시달
국무총리 → 관계 중앙부처(청)		관계 중앙부처(청)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

계획수립·제출	⇨	심의·확정시달	⇨	집행계획·시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청) →국무총리	행자부 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중앙부처(청)→시·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시 · 도 안전관리계획(1년)

지침작성 · 시달	⇨	계획수립	⇨	심의 · 확정보고
행자부(소방방재청 의견수렴) → 시 · 도	소방방재청 경유	시 · 도 재난관리 책임기관 계획종합		시 · 도 안전관리위원회 시 · 도 → 행자부

○ 시 · 군 안전관리계획(1년)

지침작성 · 시달	⇨	계획수립	⇨	심의 · 확정보고
시 · 도 → 시 · 군		시 · 군 재난관리 책임기관 계획종합		시 · 군 안전관리위원회 시 · 군 → 시 · 도

2. 계획수립 분야

① 풍수해대책
② 설해대책
③ 가뭄대책
④ 지진재난대책
⑤ 해일대책
⑥ 황사대책
⑦ 적조대책
⑧ 폭염대책
⑨ 항공재난대책
⑩ 철도재난대책
⑪ 도로재난대책
⑫ 해상재난대책
⑬ 방사능방재대책
⑭ 전기 · 유류 · 가스재난대책
⑮ 폭발 · 대형화재대책
⑯ 건축물 · 통신등 시설물재난대책
⑰ 독극물 · 환경오염사고대책
⑱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⑲ 산업재난대책
⑳ 기타 대책

제 2 장 재난관리대책의 여건변화 및 기본방향

제 1 절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전망

1. 지형과 기후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음

○ 지형적으로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서해사면은 경사가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서해에 이르고 동해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적인 특색으로 산지 및 평야의 발달과 분포, 하천흐름의 양상이 뚜렷하여 하천은 대부분 유로연장이 짧고 하상경사가 급하여 재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는 불안정한 지역이 많음

○ 또한, 산지 및 산림지대의 지질이 대부분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피복토가 얇고 수분의 함유능력이 작아서 수목의 생장에 부적당하므로 풍화, 침식 등으로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하천유사량을 증가시켜 지표면의 상승 원인이 되어 하천의 통수능력을 저하시키고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피해가 자주 발생함

2. 재난발생 요인 및 특성

○ 우리나라의 강수량 분포는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되며, 남부지방이 1,000~1,500㎜정도이고 백두산 남동부가 500~600㎜로 가장 적고, 제주도가 1,800㎜ 내외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강수 분포를 나타냄

○ 최근 강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열대지방의 스콜(squall)과 흡사한 집중 호우로 1시간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려 '01년 7월 수도권 지역 및 '02년 8월 전국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04년 3월에는 우리도(중부지역)내 폭설피해발생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폭염, 한파 등의 재난도 우려됨

○ 자연재난은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구성된 지형적인 요인으로 집중 호우 시 유출량이 급속하게 하류로 유입되어 홍수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고 연중 강수량이 여름 6, 7, 8월에 2/3가 집중 되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인적재난은 그간 삼풍백화점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등 후진국 형 재난으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시설이 고층화, 대형화되고 복합 상영관, 찜질방 등 신종 다중 이용업소가 급증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화물연대 파업('03. 5), SARS '02.3) 광우병 파동('03. 12) 통신망 마비,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재난출현으로 사회안전망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제 2 절 국제적인 여건변화와 전망

1.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확산

○ 산림파괴 벌목 등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지구 환경변화와 기상이변 요인의 누적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허리케인, 폭설, 홍수 및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에 의한 지구촌 피해규모 확대

2. 자연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교토의정서추진 국제대책회의(IPCC) 등을 통한 국제협력 증대

3. 고도산업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화재 등 재난요인

○ 국제적 경쟁 속에 산업화, 도시집중화로 시설물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되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4. 테러 또는 전염병 등에 의한 국가간 분쟁 및 피해 대형화

○ 지역 · 경제 · 종교 등으로 인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테러 · 전쟁 증가

○ 조류독감, SARS 등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개연성이 증가되면서 국제적 공동연구 · 대처 필요성 증대

제 3 절 방재환경 전망과 기본방향

1. 방재환경 전망

○ 자연재해를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식하려는 국민의식의 변화

○ 범지구적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등 기상여건 변화

○ 최근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로 재해취약요인의 급증

○ 안전한 삶 추구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투자요구 증대

2. 기본방향

○ 재해예방 대책의 체계적 · 능동적 추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준 마련

○ 재해에 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확보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능력 강화

○ 종합적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업 투자 확대

○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방재분야 검토강화

○ 지역여건을 감안한 항구복구사업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극한재해(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 재해 예·경보전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추진

○ 재해요인 다양화에 따른 방재행정·기술의 전문화

○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실천운동 전개

제 3 장 충청남도 재난관리체제

제 1 절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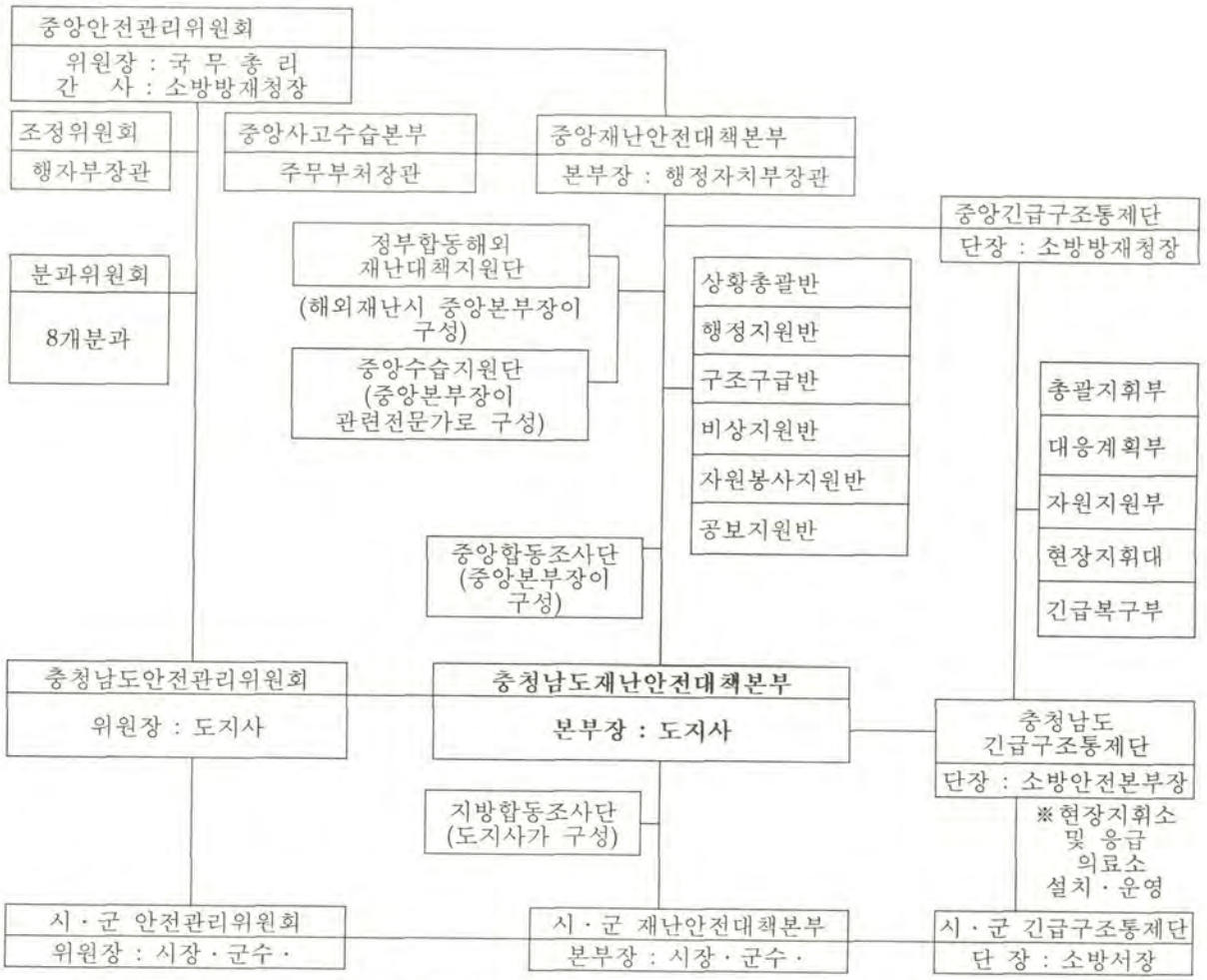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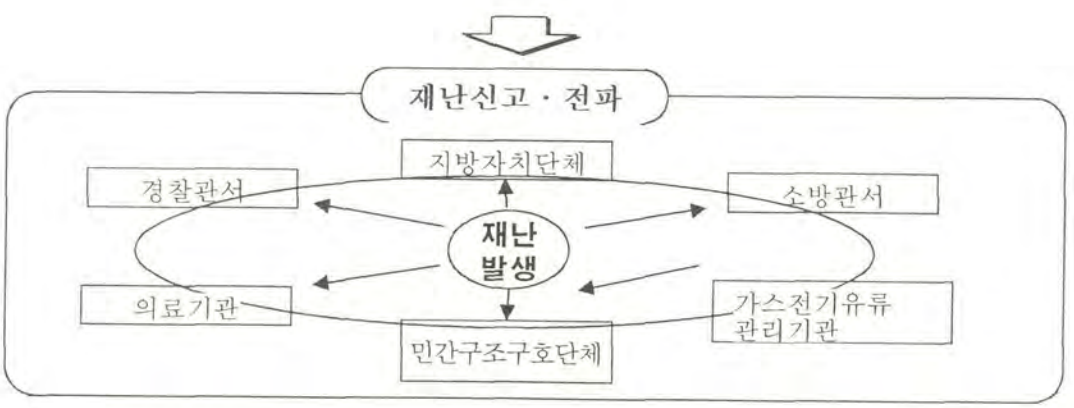

제 2 절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기능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2. 구성

○ 위원장(도지사)과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 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안전본부장

○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 충청남도 지역관할사단장

○ 충청남도 교육감

○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기관의 장

○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실무위원회

○ 위원회에 제출할(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의 협의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당해기관장이 지명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당연직 (27)	위 원	충청남도행정부지사	실무위원회 위원장
	〃	충청남도 교육감	道의 교육감
	〃	육군 제2162부대장	지역군부대장
	〃	충남 지방경찰청장	道를 관할구역으로하는지방경찰청의장
	위 원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	충청체신청장	〃
	〃	금강유역환경청장	〃
	〃	대전지방노동청장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	철도공사대전지역본부장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태안해양경찰서장	〃
	〃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장	〃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장	〃
	〃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
	〃	KT 충남본부장	〃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	〃
	〃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회장	〃
	〃	한국산업안전공단대전지도원장	〃
	〃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	재난관련업무 담당국장
	〃	〃 경제통상국장	〃
	〃	〃 복지환경국장	〃
	〃	〃 건설교통국장	〃
	〃	〃 소방안전본부장	〃
위촉직 (10)	위 원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대한건설협회충청남도회장	〃
	〃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장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장	〃
	〃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장	〃
	〃	대전충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	〃
	〃	대한어머니회 충남연합회장	〃
	〃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장	〃
	〃	공주대학교 교수	〃

5. 충청남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장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위 원	위 원
· 충청남도교육청 재정지원과장 · 육군 제2162부대 군수참모 ·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계장 ·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운영과장 · 충 청 체 신 청 총무과장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장 · 철도공사대전지역본부 안전환경실장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통신과장 ·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 배전운영과장 ·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기술진단팀장 ·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안전품질부장 ·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검사2부장 · KT충남본부 기간망지원부장 ·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시설관리부장 ·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 구조물점검과장 ·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사회봉사과장 · 한국산업안전공단대전지도원 교육홍보팀장 · 대전충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지도부장 ·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사무국장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지회 경리부장 ·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 안전관리팀장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교육홍보부장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충청남도협의회 총무 · 대한어머니회 충남연합회 총무 ·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사무국장	· 충청남도 기반조성과장 · 〃 산 림 과 장 · 〃 해양수산과장 · 〃 경제정책과장 · 〃 복지정책과장 · 〃 보건위생과장 · 〃 환경관리과장 · 〃 수질관리과장 · 〃 건설정책과장 · 〃 주택도시과장 · 〃 도로교통과장 · 〃 치수방재과장 · 〃 안전관리과장

제 3 절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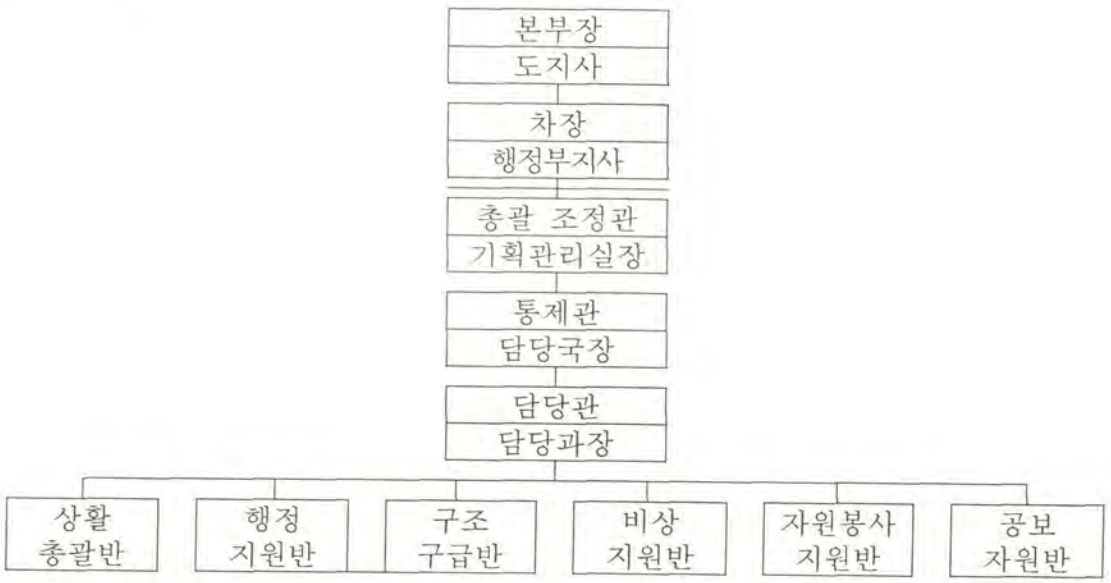

2. 기 능

○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구조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 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반으로 편성하되, 도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 임 무

- 상황총괄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인사 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 비상지원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득,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자원봉사지원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 및 참여희망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사항

- 공보지원반 : 도 재난대책 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 및 지역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재난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4. 합동조사단

< 구 성 >

○ 단 장 : 도지사가 지명

○ 단 원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구 성 >

○ 피해상황 조사 및 총괄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중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전까지 조사결과를 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

제 4 절 긴급구조 통제단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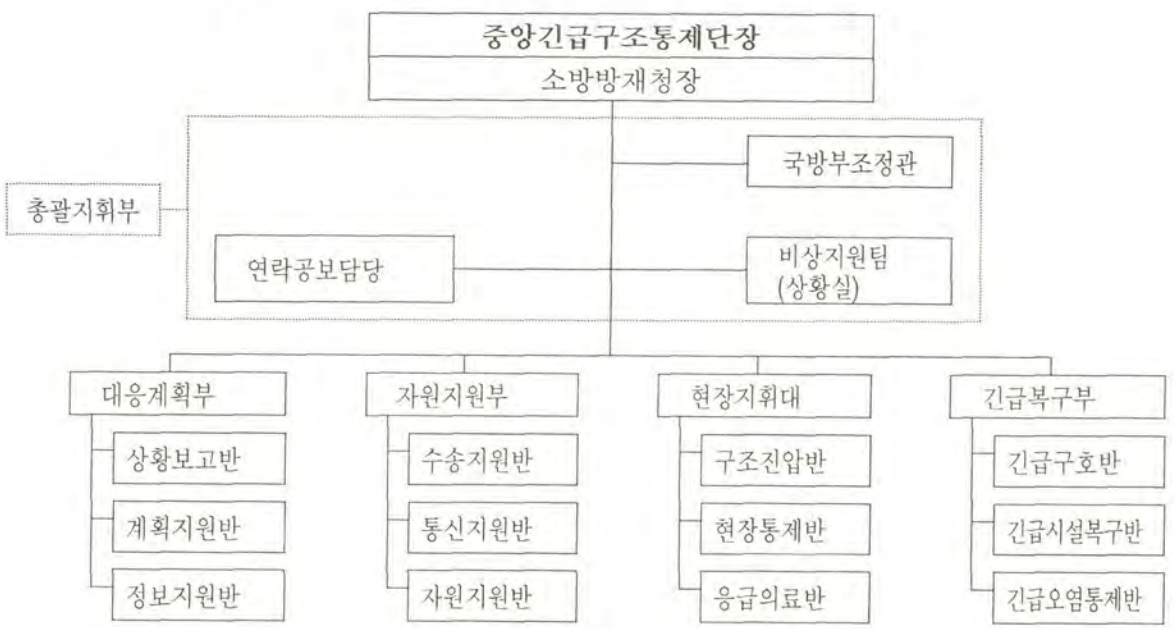

※ 이재민 구호관련 재해구호본부 조직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별도로 구성

나.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 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장		·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국방부조정관	· 중앙 통제단장과 공동으로 국방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시 대규모 탐색구조 활동 지원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국회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 (상황실)	· 중앙 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정보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반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부 서 별		주 요 임 무
현장지휘대	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 · 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 급 시 설 복 구 반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 · 도 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 급 오 염 통 제 반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 · 도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2.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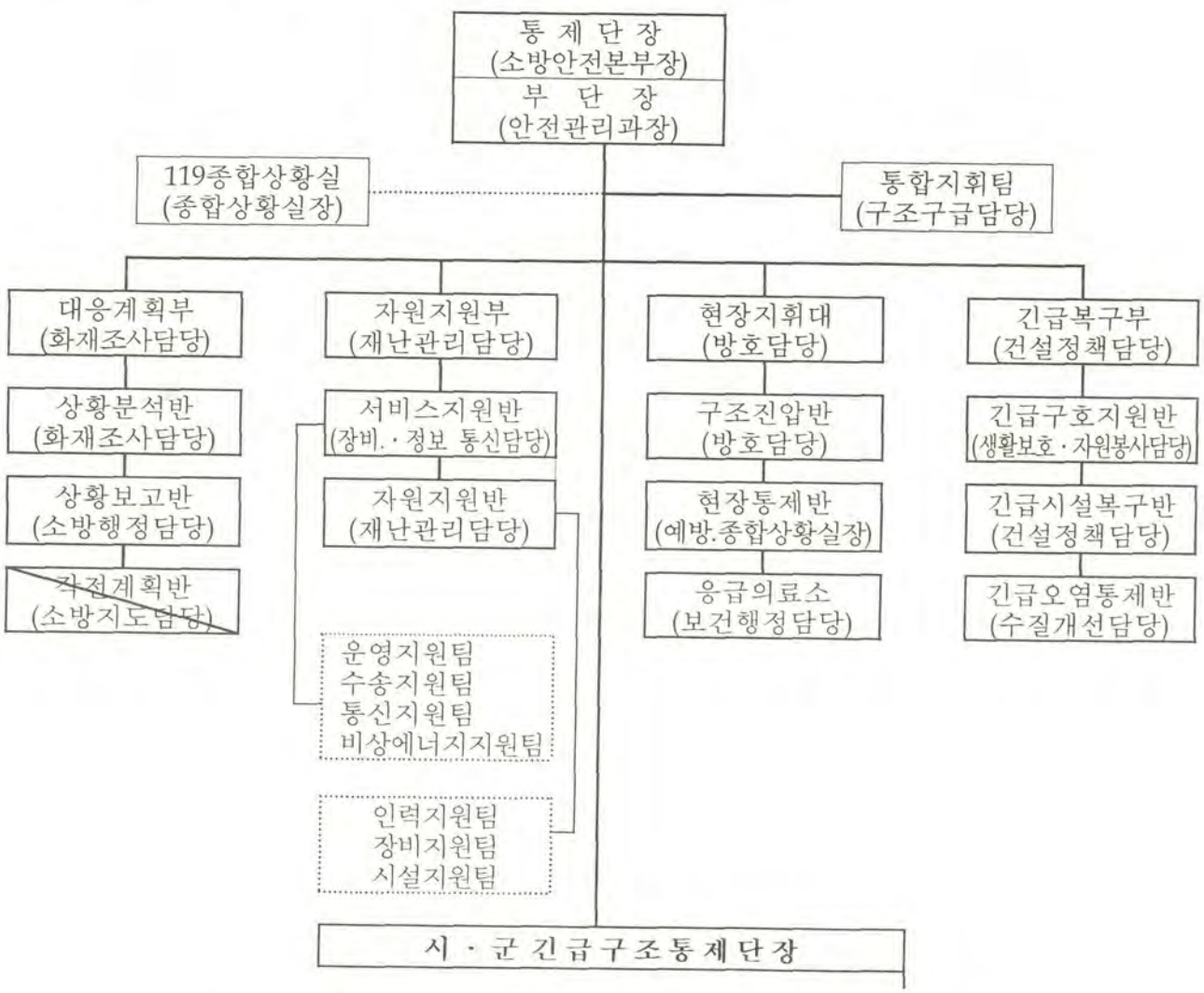

※ 시 · 군 긴급구조 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 · 운영

나. 기 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 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 · 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편 성	주 요 임 무
통 제 단 장		소방안전본부장	·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 · 조정 · 통제 ·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통제 부단장		안전관리과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보좌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직무대행
총 괄 지휘팀	통 합 지휘팀	구조구급담당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 · 전반적 자원 활동의 조정 · 기타통제단장 지원활동
대 응 계획부	상 황 분석반	화재조사담당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상 황 보고반	소방행정담당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 전 계획반	소방지도담당	· 현장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 활당
자 원 지원부	서비스 지원반	장비담당 소방정보통신담당 (통신지원)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설치 지원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통신지원팀 :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자 원 지원반	재난관리담당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지원집결지 운영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 장 지휘대	구 조 진압반	방호담당	· 각 시 · 군 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기타 각 시 · 군 구조 진압반 지휘 · 조정 · 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 현장지휘소 설치 · 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지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현 장 통제반	예방안전담당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대중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종합상황실장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응 급 의료반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도 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 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 보고반 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긴 급 복구부	긴 급 지 원 구호반	복지정책과(생활보호담당) 도의새마을과 (자원봉사자담당)	· 도 차원의 자연재해구호 지원 활동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긴급시설 복구반	건설정책과 (건설정책담당)	· 도 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 시 · 군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급오 염통제반	수질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도 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도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 반원은 담당 소속 인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임무 조정운영

3. 현장응급 의료소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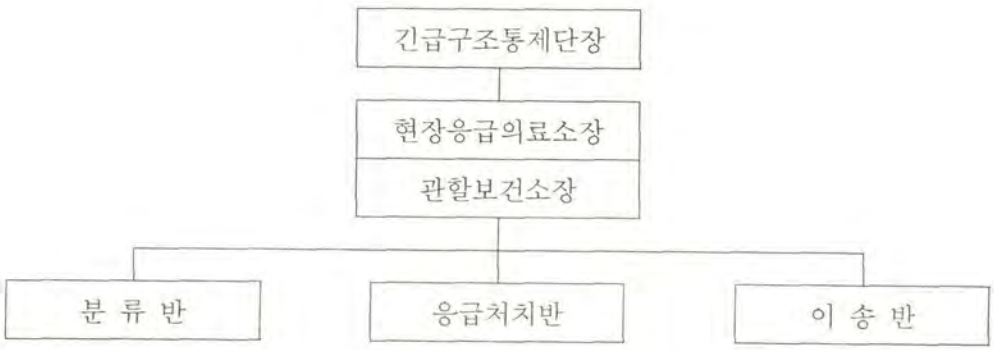

나.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 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 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제 5 절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

1. 중앙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 등]

○ 재외공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식물검역소
○ 지방체신청
○ 국립검역소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노동청
○ 지방항공청
○ 지방국토관리청
○ 홍수통제소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산림관리청
○ 철도청지역사무소
○ 시 · 도의 교육청
○ 지하철공사
○ 도시철도공사
○ 농업기반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자원재생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항만공사
○ 한국방송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산업안전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부산교통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대한적십자사
○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 · 관리자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 시설 관리기관
○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2.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

기관명	주소	기관명	주소
1. 충남지방경찰청	대전 중구 선화동287	18.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	서구 둔산동 913
2. 육군 제2162부대	공주 반포 국곡리 사서함119-1	19. 대청댐 관리단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629-10
3. 충청체신청	대전 서구 둔산동1408	20. 보령권 관리단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517-2
4. 금강환경관리청	대전 유성구 구성동21	21.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비례동 361-8
5. 대전지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동1303	22.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대전서구괴정동 423-5계룡로 419
6.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대전 동구 용전동 173-1	23.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총국)	대전 서구 만년동300
7. 금강홍수통제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 115	24.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16-1
8.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438-1	25.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관리사무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777
9. 중부지방 산림관리청	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4	26.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10. 철도공사 대전 지역본부	대전 동구 정동1	27.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대전 중구 대사동 248-222
11. 충청남도 교육청	대전 중구 문화동 279-7	28. 산립조합 중앙회 충남지회	대전 서구 갈마동 361-4
12.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	대전 서구 둔산동943	29. 수협 중앙회 안흥어업무선국	태안 근흥 신진도리 75-13
13.농수산물유통공사 충남지사	대전 서구 둔산동947	30.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전 중구 선화동 194-1
14.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대전 중구 중촌동 203-13	31. K T 충남본부	대전 서구 둔산동1374
15.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탄방동668	32. 태안해양경찰서	태안 태안 장산286-4
16.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동구 인동28-2	33. 대전지방 기상청	대전 유성 구성 22
17.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대전 동구 용전동9-7		

제 6 절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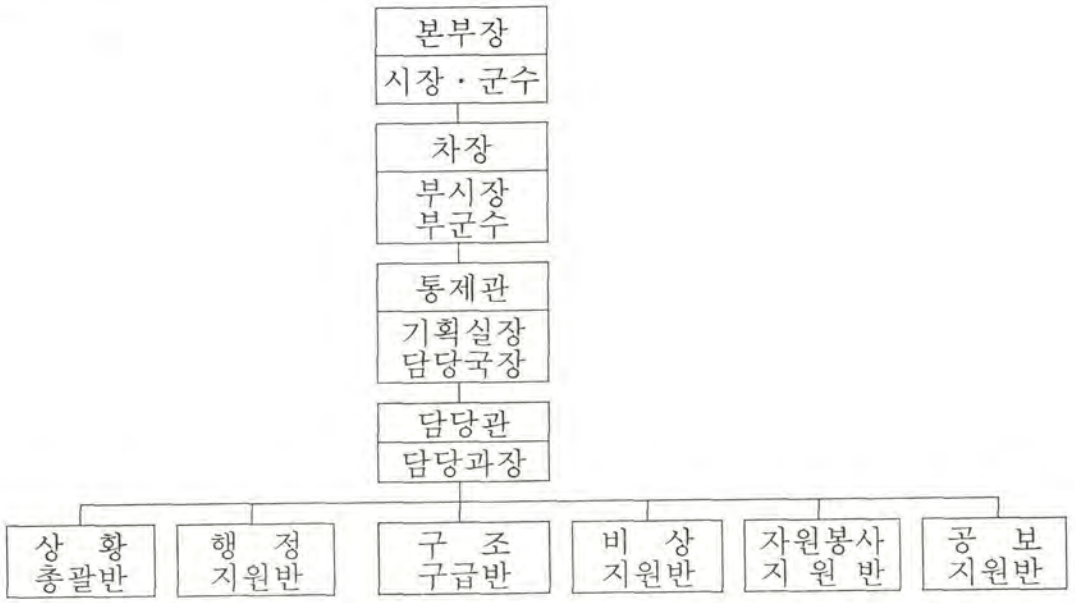

2. 기 능

○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구조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반으로 편성하되,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 임 무

- 상황총괄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인사 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 비상지원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득,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자원봉사지원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 및 참여희망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사항

- 공보지원반 : 시·군 재난관련 실·과 및 소속 공무원 및 지역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재난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 2 편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제 1 장 풍수해 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02년 8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9,1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 "루사('02)"와 "매미('03)"의 내습으로 11조원의 막대한 피해 발생

○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홍수재난의 위험성이 크며 도시 토지이용도의 극대화 및 산업화로 인한 재난발생 가능성의 증대로 인적 요인에 따른 재난 잠재력이 점차 증가 추세임

○ 따라서, 풍수해의 자연적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인적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및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방재분야를 고려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등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풍수해예방 투자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등 각종 신규제도 제기준 제정

○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

- 중앙·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차원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 방재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수방자재·구호물자 비축 및 이재민수용시설 확보

○ 피해조사 선진화 및 복구체계 전면 개선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 운영규정 및 복구비 추가지원방법 개선
- 복구체계 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이재민 구호업무체계 개선

- 민간구호기관 NDMS 네트워크 구축 및 전산교육·운영
- 구호세트 시기별·개인별·세대별 세트화 제작기준 개발

○ 선진 방재교육시스템 및 민간자율 참여안전문화 활성화

- 전문교수진 선발 및 국비위탁교육 시범실시 및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개발
- 민간모니터위원·공보전담위원제 실시 확대 및 지역자율방재단 단계적 추진

나. 추진전략

○ 근원적 재해예방, 복구지원체계 개선 등 신규제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기준 제정

○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및 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 방 대 책

가. 풍수해 예방대책

1)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실태점검

가) 방재시설물

○ 종 류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
- 도로 및 철도시설 :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 등
- 상·하수도시설 :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 등
- 사방시설 :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 댐시설 :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댐 등
- 항만 및 어항시설 : 방파제·방사제·파제제·갑문 및 안벽 등

○ 전수점검·정비

- 점검개요

·점검대상 : 시 도, 시 군 단위로 관할지역내 방재시설 전수점검

·점검시기

- 3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 기 타 : 11월에서 2월 중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점검기준 Check List에 의하여 점검실시

·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자를 실명으로 기록관리

· 각종 방재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관련부처,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평상시에는 시설물 관리책임자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토록 조치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 시설물관리기관 책임자와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 등은 상시대비체제기간과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 실시

○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붕괴위험 요인

·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상황, 각종 하천점용시설물 정비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스핀돌,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붕괴위험 제방 및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 상·하수도시설

· 관측시설, 안전망, 동력, 비상전원, 배선관계 이상유무 등 확인

· 유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 · 전기시설 정비

· 양 · 배수펌프장의 안전망 및 동력상태 이상유무 점검 · 정비

· 펌프장 등의 비상전원장치 및 배선상태 이상유무 확인

· 관리자 배치,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정비

· 퇴적물 준설,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점검 등

- 수리시설

· 수문 · 여수토 · 방수로 · 취수탑, 저수지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당 누수부분 점검 · 정비 · 보수, 유수지 잡목제거

· 누수 및 파이핑,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 댐시설

· 수문 · 여수토 · 방수로 · 취수탑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당 누수부문 점검 · 정비 · 보수 등

- 항만 및 어항시설

· 누수 및 파이핑,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 도로 · 교량 및 산사태 위험지역

·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및 기타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재해유형을 감안하여 점검(산사태 위험지역은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점검)

※ 지하철 · 지하상가 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합동으로 점검 · 정비 실시 등 침수피해 예방대책 강구

나)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 점검대상

- 지하철공사장, 신도시 건설, 골프장 조성, 고속도로, 댐건설, 택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및 기타 5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규모가 그 이하인 공사장(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점검관리방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카드작성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으로 복수지정

- 점검방법

· 수시점검

┌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중에는 시공회사와 현장감리원이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담당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재해위험 예측시 또는 출장시 점검
└

· 정기점검

┌ 관리책임 공무원은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중 월 1회 이상 점검실시
└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원 및 관계주민합동으로 종합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 보완조치

- 상시대비체제 기간 중에는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도모

○ 사전조치 할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공사중인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규정 준수 이행
-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사면안전 공법시공
-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계획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대피장소를 사전에 통보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장은 평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획수립

○ 정비대상 : 자연재해위험지구 총 68개 지구('98~'07)

- 정비실적 : 45개 지구
- '05년 계획 : 14개 지구
- '06년 이후 : 9개 지구

○ 정비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정비의 시급성, 인명피해 발생도, 지역여건, 투자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
- 재해유형별·도 및 시군별로 수립

- 연도별 중기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
-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시·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라)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정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군 단위로 관할지역내 시설물 전수 점검·정비
- 점검시기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기타 :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법정점검

- 점검방법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구 점검 등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전함 및 안정기함의 높이를 침수예산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 점검결과 조치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 주관하에 우기전까지 보수·보강토록 조치

· 노후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특별관리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목 적 :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 이용

○ 기본방침

- 홍수, 토사유출, 갈수 등 하천의 역기능에 대한 이·치수상의 안전성 확보
- 소하천 본래의 양호한 서식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향상

○ 정비계획과정

- 수계별 소하천망을 구성하고 소하천의 측량 및 특성분석을 통하여 소하천 지정·고시
- 유역특성, 수리·수문특성, 사회·인문특성, 경관특성, 재해특성, 기타특성 조사·시행
- 공사시행을 위한 수문량 산정 및 하천의 환경적 특성과 이수현황 파악
- 소하천의 정비방향 설정
- 해당 소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하천환경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종합방안을 수립
- 경제성 분석 및 각종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주민의견수렴, 사업효과분석을 토대로 최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3) 근원적 풍수해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가) 재해영향평가제 운영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① 재해영향평가제 운영

○ 목 적 :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요인을 사전예방코자 사업구역내 적절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근 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평가대상

- 중 앙

· 대상사업 : 6개분야 24개사업

· 대상규모 : 30만㎡이상

- 도

· 대상사업 : 6개분야 24개사업(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동일)

· 대상규모 : 30만~15만㎡ · 골프장의 경우 9홀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목 적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수립 및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정상적으로 검토하여 근원적 재해예방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내 용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설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채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 검토협의 절차

- 계획(안)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영향성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 의견 종합 및 검토, 협의의견 결정·통보

<협의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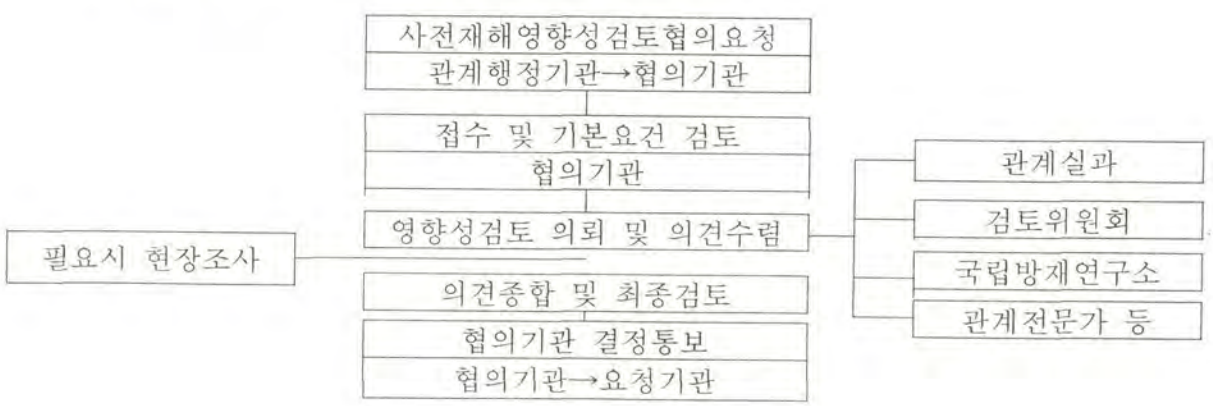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목 적 : 지역별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각종 정비계획을 체계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내 용

- 시장·군수은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저감계획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도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풍수해저감계획 반영
- 재해예방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다)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마련

○ 내 용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 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라) 내풍 설계기준의 설정

○ 목 적 : 태풍, 강풍 등으로부터 기간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대상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도로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
-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배전시설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철도법에 의한 철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내 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풍설계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풍설계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마)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내 용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 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수방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바)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의 설정 및 활용

○ 내 용

-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설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토록 권고

사) 중앙·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의무화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지역의 긴급지원계획 수립지침 마련

아)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 저수지 및 하천제방 등의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을 작성·배포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조치

○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양성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 도모

○ 지역 및 기관별 재난예방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행정 홍보 및 주민참여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 운영

○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기본방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 자율방재단 참여유도
-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 흐름도



○ 기 능

-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 주요임무

[상시대비 체제시]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 관리
- 재난대비 사전점검·정비 및 방재물자·장비의 확보 비축
-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 단계시]

-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다. 풍수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운영

○ 운영중인 자동우량경보시설 점검·정비 실시(우기전)

- 대상 : 총 3개 지구(천안 광덕산, 논산수락, 청양 까치내)
- 점검내용
  - 각종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 경보발령기준의 설정 유무 및 적정성
  - 안내방송 문안의 간결성 등

○ 추진계획

- 일제 점검 및 정비 : '05. 4~5월
- 가동 및 홍보 : '05. 6~10월

나)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 전 시·군 우기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통보대상자 우기전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시스템)
-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시스템)
-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우기전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여름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16개 시군)

○ 추진계획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및 통보대상자 정비 : '05. 2~5월
- 여름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 : '05. 6~10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결과 분석 : '05. 11월

다) 재해문자 전광판 운영

○ 운영중인 재해문자 전광판 점검·정비 실시(우기전)

- 대상 : 총 2개 지구(산간계곡1, 해수욕장1)
- 점검내용 : 재해문자전광판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 추진계획

- 재해문자 전광판 일제 점검·정비 : '05. 5월
- 여름철 재해문자 전광판 가동 : '05. 5~10월
- 재해문자전광판 가동결과 분석 : '05. 11월

라) TV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운영

○ 시험방송 실시

- 기 보급된 TV재해방송용수신기 우기전 시험방송 실시

○ 재해방송 강제전파 수신장치 확대보급

○ 여름철가동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단계별시스템구축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일제점검. 정비 : '05. 5월
- 시범운영 : '05. 6~10월
- 발전방안검토 및 단계별구축계획수립 : '05. 12월

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재해·재난·소방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보급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재해·재난 유형별 업무지원 및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 시 군 현장 활용 시스템 구축
- 재해·재난관련정보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재해·재난 유관기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연계확대

바) 재해·재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개 요

-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대 상 : 1개군(부여군)

○ 사업내용

- 재해·재난 종합상황실 구축 (영상, 음향시스템 등)
- 상황관제용 인프라 구축 (우량계, 웹카메라 등)
- 상황실 인테리어 및 전산장비 도입 등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 3월

2) 풍수해대책 연구 및 자료관리

○ 풍수해대책에 관한 연구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 재난유발 자연현상의 이학적·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인간행동·정보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한 연구도 수행

○ 자료의 보전

- 풍수해 발생시 각종 자료의 보전(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 등) 및 자료보관체제의 정비
- 시설물관리자는 원활한 복구를 위해 미리 중요한 소관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정비 및 피해방지

라.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실시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 평가대상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용실태

○ 추진계획

-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용역 실시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평가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

※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04. 11~'05. 3월

- 용역결과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지침 작성 통보 : '05년 상반기
-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재난관리체계 평가 실시 : '05년 하반기

2. 대 비 대 책

가. 방재교육·훈련 실시

1) 방재교육

○ 교육체계

- 중앙교육, 도 자체교육, 전파교육으로 실시

○ 교육운영

- 중앙교육 : 방재관리자, 자연재난실무자, 인적재난실무자, 방재전문요원, 상황관리실무자, 중앙합동조사 과정으로 구분실시

· 방재관리자 : 시도 방재담당 및 시군 방재과장, 2월중

· 자연·인적재난실무자 : 시 도, 시군 6급 이하 방재담당공무원, 3~4월중

· 방재전문요원 : 시도, 시군 6급 이하 방재담당공무원, 8~9월중

· 상황관리실무자 : 시도, 시군 6급 이하 방재담당공무원, 3~5월중

· 중앙합동조사 : 시도, 시군 6급 이하 방재담당공무원, 4월중

- 도 자체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 교육대상 : 도 재해대책관련부서, 시군 방재담당과·계장, 유관부서 (기관)등

· 교육기간 : 4월중

- 전파교육 : 시·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시군·읍면동·유관기관 실무자,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2) 방재훈련

가) 훈련목적

○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상황을 가상한 상황대처와 수습 등에 실제 필요한 도상훈련을 실시, 중앙 및 자치단체 대처능력 향상 도모

○ 재해발생시 지역여건별, 특성별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구축 및 합동 대응능력 향상 등 종합적 대비 태세 확립

○ 피해대비, 피해발생, 사후수습의 단계별로 상황대처 및 수습 등 효과적인 훈련 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대책수립 강구

나) 훈련구분

훈련 구분	훈련추진 내용	훈련시기	비 고
도상훈련	◇주관 : 중앙 및 도 대책본부 ◇실시 : 시군	5월중	
전산훈련	◇주관 : 중앙 및 도 대책본부 ◇실시 : 시군	5월중	도상훈련과 병행실시
지역특성훈련	전 시군별 자체실시 (자체 훈련계획에 의거)	5월중	

다) 훈련 실시

○ 훈련기관

- 중앙 및 도 본청 : 도상훈련 및 전산훈련 주관
- 시·군 : 도상훈련 및 전산훈련 실시

○ 훈련대상 : 중앙 및 도, 시·군

※ 훈련대상 선정시 가급적 과거 10년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군를 선정

○ 훈련일정 : 5월중

라) 훈련내용

○ 훈련주관 : 중앙 및 도 대책본부장, 시·군 대책본부장

○ 훈련장소

- 중　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 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 시 군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 방재도상훈련 주요 내용

- 제 1단계 (예방단계)
  - 기상상황 전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비상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신고체제 강화
- 제 2단계 (대응단계)
  - 재해상황 전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피해상황정보 전파 및 피해지역 주민대피 등
  - 재해위험지역 예찰 강화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기관별 조치상항 등 협조체제
  - 피해지역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체제
- 제 3단계 (수습단계)
  - 복구(응급, 항구) 추진의 조속한 계획수립 추진
  - 주민생활시설(Life-Line)시설의 최우선 복구대책
  - 이재민구호, 방역 및 분뇨·쓰레기 처리대책
  - 복구완료시까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등

○ 방재전산훈련 주요 내용

- 재난상황관리 자동집계 프로그램 조작요령 숙지
  - 중앙 및 도 주관하에 피해집계 등을 위한 재해유형별 피해상황 메시지 부여

- 피해 및 복구관리 전산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 중앙 및 도, 시·군 인명피해, 교통두절 등 피해·복구관리 전산시스템 조작요령 숙지

- 신속한 상황관리·대처, 유관기관과 상황공조체제 강화 등

【지역특성훈련】

○ 훈련일시 : 5월중

○ 훈련주관 : 중앙 및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훈련장소 : 자체선정

- 재해위험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장소를 선정, 훈련효과 거양
- 민간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훈련이 될 수 있는 장소
- 지역주민, 학생 등 다수가 참관 할 수 있는 장소(고수부지 등)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 시나리오 작성

○ 훈련내용 : 재해발생에서 부터 사태수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훈련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참관

- 시·군 재난대책부서 담당관, 유관기관 재난대책담당관, 수방기동대장, 인명구조대장, 주민 등
- 방재의식 함양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내 학생참관이 가능토록 교육청 등과 사전협조 조치

나. 민간모니터위원 활성화

○ 목 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 들을 민간모니터위원으로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등 수시순찰, 이상유무 확인 신고등

○ 지정대상

- 지역거주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운영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읍·면단위 통·리장 등

○ 지정계획 : 83명

○ 모니터위원 역할

[상시대비 체제시]

-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 등 육안검사 실시
- 주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해대비 교육 등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 재해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복구상황 전파
-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전파 및 대응방안 제시
-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전파 및 지역주민 동원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활동, 의연품·구호물자의 접수·배분실태 등 복구활동 협조 및 상황 전파

- 의료 및 방역활동 정보, 교통통제 상황 등 정보제공
- 각종 자치단체 공사 등 모니터위원들의 감시활동 실시, 부실시공시 정보제공 등으로 견실시공 유도
- 재난정보수집 중 문제점 등 기타정보제공

○ 보고방법

[상시대비 체제시 관리]

-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폰, 전화, 주소 등)
- 모니터위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당해지역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위원간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활용]

- 재난상황 발견 즉시 신속한 보고 시스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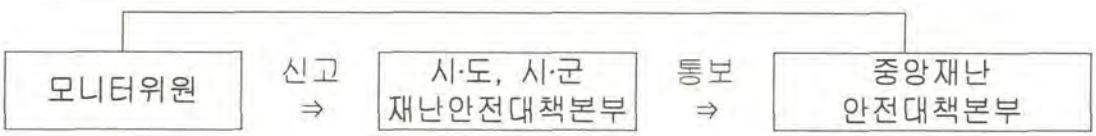

- 필요시 중앙, 시도, 시군의 재난상황 현장 확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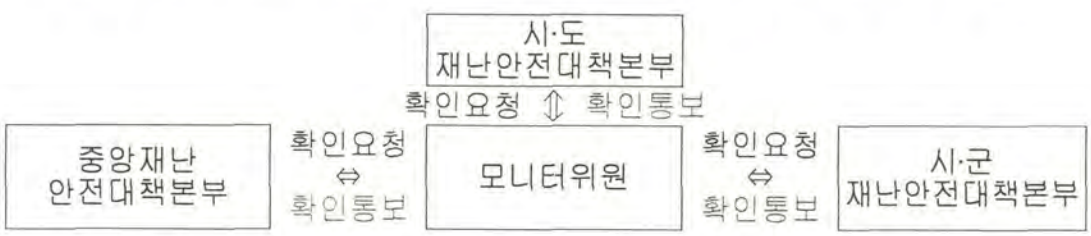

※ 긴급한 상황 확인시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자료 상황실 비치

다.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점검

1) 수방자재 확보·비축 실태점검

○ 비축기준

- 종　　류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목, 덮개류(비닐), 배수관(흄관, PE관), 작업공구 등

※ 수방자재 등 현대화 추진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을 조사, 시설별로 일정량의 확보 기준량을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계약체결로 보관창고 공간부족현상 해소 및 내구연한 경과 자재에 대한 폐기처분

·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 비축장소 : 시군·읍면동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 점검 및 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우기전까지 확보

- 자재의 관리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실태점검

○ 지정기준

- 대상장비 : 도자, 백호우, 페이로다, 덤프트럭,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대수를 조사하여 시설별로 일정량을 산정, 지정

※ ① 산사태, 토사유실 등이 우려되는 도로절개지의 경우

- 장비종류 : 페이로더 또는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도로규모, 지형 등 현장실정에 따라 산정

② 통수단면이 협소하거나 재해에 취약한 교량의 경우

- 장비종류 :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교량규모, 가도설치 등을 감안 산정

○ 지정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관리

※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해 응급복구 추진실적 등을 고려, 인센티브 부여 등 향후 적극 참여 유도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 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병원의 엠블런스 보유현황 사전 파악)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사전 파악)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점검시기

- 5~10월　　: 매월 파악
- 11~익년5월　: 매분기파악

라. 이재민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1) 이재민수용시설 지정·관리 실태점검

○ 지정기준

- 학교, 교회, 마을회관, 관공서, 창고 등 수용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수 등을 감안하되, 상습침수지역의 피해상황을 예측한 이재민 발생 가능수를 조사, 인근 지역에 수용시설 지정

· 하천 수계별, 지역별 현실성 있는 대피와 수용을 동시 운영이 가능한 시설 지정 운영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시 홍수시 침수되지 않토록 제방보다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시 전기(자가발전), 수도, 도로 등 지역여건과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

- 지정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의서에 사용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소지 사전예방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가능계획 수립

· 집중호우 및 댐·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등급별 침수예상지역 대피계획서 작성 보급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피계획 및 대응요령 숙지

○ 사전조치 할 사항

- 이재민 발생시 수용 이재민 현지급식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와 사전 협의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전 관리상태 점검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 상비(구호셋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구호물자 확보·비축 실태점검

○ 비축기준

- 대상물자 : 구호셋트, 양곡, 라면류, 의류, 천막, 모포·침구, 취사도구, 생필품 등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사용량을 감안하되,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를 고려하여 셋트화 구호물품을 비축하여 소규모 재해시는 시군구 비축물자를 우선 사용하고, 추가 필요시 광역창고에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보관장소 : 시군, 읍면동 창고 및 관내 수해상습지 인근 등

○ 확보·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방재물자 수불대장 작성 비치
- 부족물자는 우기전까지 전량 확보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나 내구연한이 짧은 의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부패·변질 방지를 위하여 보관상태 수시점검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출 것(부탄가스, 생수, 우유, 김치 등)
- 지역 특성, 재해 유형에 맞는 구호 셋트 확보 조치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구 분	1종 구호물품	단위	수량	구 분	2종 구호물품	단위	수량
의류	체육복(남)	벌(점)	1(2)	버너	버 너	대	1
	체육복(여)	벌	1(2)		수 세 미	매	2
	팬 티(남)	매	1	생필품	고무장갑	켤래	1
	런 닝(남)	매	1		면 장 갑	켤래	1
	런 닝(여)	매	1	세제류	세탁비누	점	1
침구류	이 불	매	1		세탁세제	점	1
	모 포	매	1		주방세제	점	1
생필품	수 건	매	2	식기류	코 펠	세트	1
	치 약	점	1		수 저	벌(점)	4 (8점)
	칫 솔	점	2				
	화장지	롤	2				
	면도기	점	1				
	생리대	조(점)	1(20)				
세제류	세면비누	점	2				

- 이재민 발생시 구호물품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수재의연품 등의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분배계획 사전 수립

※ 위험지역을 벗어난 장소(이재민수용시설 최단거리)에 긴급구호물품 별도보관

※ 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피해 예상지역내 이재민의 평균 비축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마. 방역물자 및 침수 방지용 장비 확보 · 비축 실태점검

1) 방역물자 확보 · 비축 실태점검

○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 확보 · 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 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관리 실태점검

○ 확보기준

- 종　　류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대형 양 · 배수 장비 등 확보

-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상습침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보관장소 : 시군 · 읍면동 창고, 관내 수해상습지역 등

○ 점검 및 관리

- 보관장비는 우기전에 시험가동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 정비
- 보관관리는 읍 면 · 동사무소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 보관창고내 장비는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위탁관리 장비는 개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민 전출·입시 장비를 회수하여 분실, 고장 등 이상유무를 확인 관리

· 재해발생시 주민 스스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사용요령"등과 같이 장비별 리후렛을 제작 배포 등 교육·홍보 실시 등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바.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목 적

-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제고

○ 근 거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 협조사항

[소방방재청]

- 재해 응급물자에 대한 파악 및 정보공유
- 국방부와 응급조치 응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국방부]

- 군부대 인적·물적 자원 파악 및 정보공유
- 중앙·지역본부장의 응급조치 응원요청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동원(지역본부장, 중앙본부장)

· 강제대피, 통행제한, 대피명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파견(지역본부장) - 재난사태 선포시에는 중앙본부장 가능

· 재난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부대 동원 등

<협력체계 구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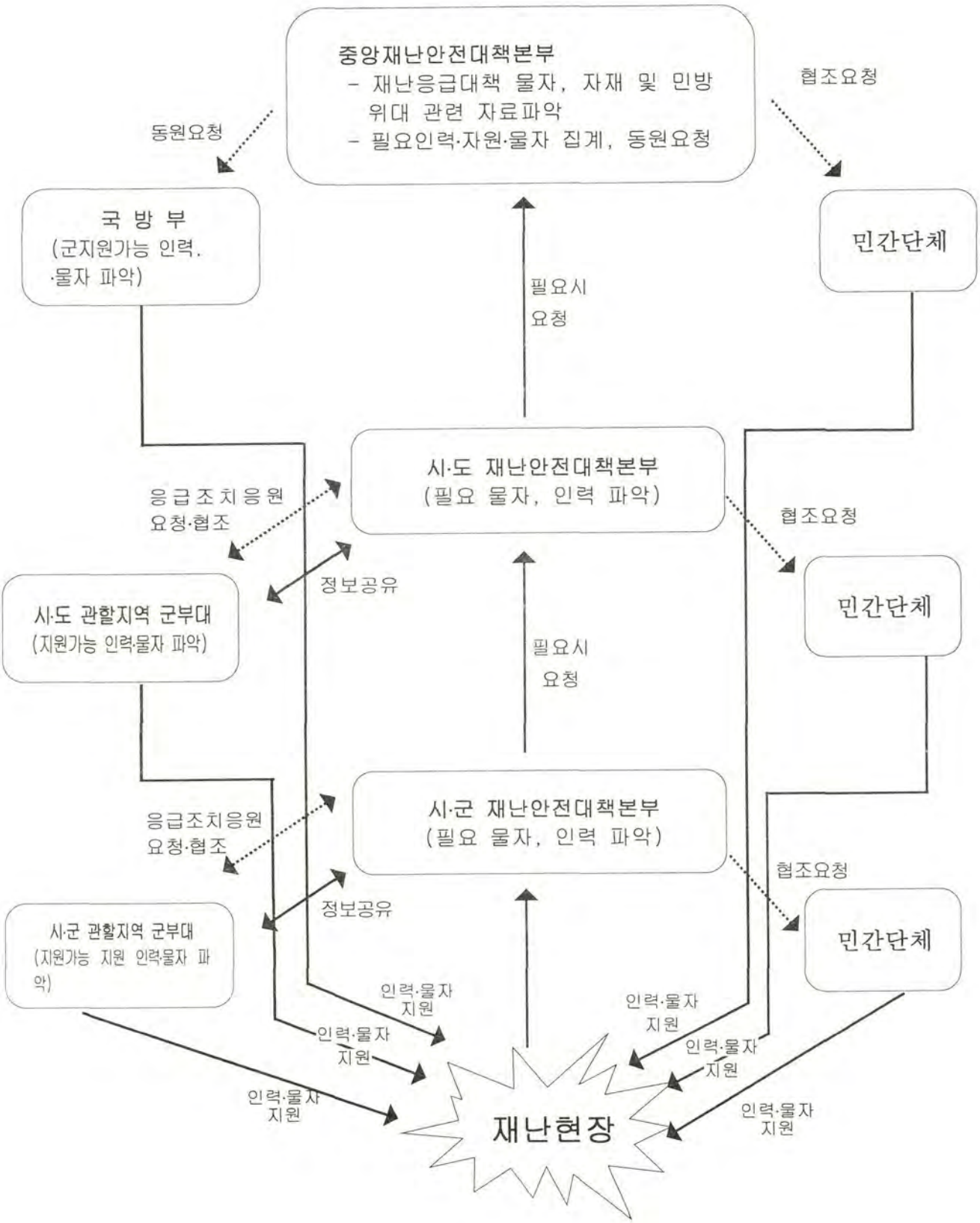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응급대책 물자, 자재 및 민방위대 관련 자료파악
- 필요인력·자원·물자 집계, 동원요청
동원요청
협조요청
국 방 부
(군지원가능 인력.·물자 파악)
민간단체
필요시 요청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물자, 인력 파악)
응급조치응원 요청·협조
정보공유
협조요청
시·도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인력·물자 파악)
민간단체
필요시 요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물자, 인력 파악)
응급조치응원 요청·협조
협조요청
정보공유
시·군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지원 인력·물자 파악)
민간단체
인력·물자 지원
인력·물자 지원
인력·물자 지원
인력·물자 지원
인력·물자 지원
재난현장

사.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비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응급대응체제 정비

○ 방재담당 공무원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방재중추기능의 확보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2)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 기상·해상·수위 등의 상황관측 정보수집·전파체제 및 시설정비
- 야간 및 휴일 등 행정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등

○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의 구축으로 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 추진 등

○ 통신수단의 확보

-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경로화, 통신 케이블·CATV 케이블의 지중화 촉진, 무선을 이용한 자료보관 대책 등

3) 재난특성에 의한 유발재난 방지대책

○ 침수에 따른 전기 감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 방치된 벌채입목, 공사용자재, 고수부지 차량 등 유수소통 지장물로 인한 교량, 암거, 보 등 하천내 방재시설물의 피해방지대책 등

4) 2차 재난 방지대책

○ 침수 및 토사재난의 발생·확대방지

- 토사재난의 발생, 확대방지를 위한 자재비축과 방지대책 강구 및 대응체제 정비 등

5) 구조·구급 대책 수립

○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구조용 장비 및 자재확보

○ 유관기관간의 상호 관련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정비

6) 긴급의료 및 긴급수송 대책 수립

○ 긴급의료 대책

- 응급구호용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 비축, 재난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재난발생시 구급의료 활동 등

○ 긴급수송활동

- 재난시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다중화, 대체성을 고려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파악·조정, 긴급수송 네트워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 등

7) 수방자재 확보·비축

○ 비축기준

- 종　　류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목, 덮개류(비닐), 배수관(흄관, PE관), 작업공구 등

※ 수방자재 등 현대화 추진

8)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관리

○ 지정기준

- 대상장비 : 도자, 백호우, 페이로다, 덤프트럭,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9)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 관리

○ 지정기준

- 학교, 교회, 마을회관, 관공서, 창고 등 수용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10) 구호물자 확보 · 비축

○ 비축기준

- 대상물자 : 구호셋트, 양곡, 라면류, 의류, 천막, 모포·침구, 취사도구, 생필품 등

※ 구호물자 셋트화 제작물품의 보급화

11) 방역물자 확보 · 비축

○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12)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관리

○ 확보기준

- 종　　류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대형 양·배수 장비 등 확보

3. 대 응 대 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가) 근무체제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나) 실무반 편성

○ 정보분석반, 상황관리반, 응급복구반, 구조구급반, 대민구호반, 홍보서무반, 행정지원반

- 정보 분석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즉보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관리반

·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 응급복구반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업무는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 고립지역긴급수송로개설 및 수송차량확보

·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대민 구호반

- 대민구호반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홍보서무반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 행정지원반

· 자원봉사 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특별지시사항처리

다) 실무반 준수사항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근무복(상의)을 착용하고 근무시간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에는 반의 장에게 보고)

○ 실무반원으로서 실무반의 장 지시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수행

○ 관련 중앙 및 지방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 소관부서의 전화번호 · 담당자 등을 정확히 파악

○ 중식 및 석식은 실무반별 2교대 식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2) 재난현장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목 적

- 재난발생 예견 또는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상황 및 중앙정부 행 · 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파악, 재난상황대처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구 성

- 재난발생 예견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파견을 위해 권역별 고정편성 실 · 과를 대상으로 미리 파견순서 지정

- 실과별 파견자는 2명(반장 1, 반원 1)으로 구성

· 반장은 5급이상, 반원은 6급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실과별 실정에 맞게 편성

○ 임 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애로점 파악 및 상황관리지원

- 중앙종합상황실과 Hot-Line 구축, 재난에 신속 대처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을 위한 상황파악 등 자료 제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원
- 대규모 피해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지원단 운영 총괄

○ 운 영

- 운영기간 : 파견일 ~ 상황종료시까지
- 근무장소

〈피해발생전〉

☞ 피해예상지역의 점검·정비 등 재난 사전대비사항 지도

〈피해발생시〉

☞ 피해발생현장에서 애로점 및 중앙지원사항 파악보고

- 보고체계

· 자연재난 : 정기보고(오전 9시, 오후 6시)

· 인적재난 : 매시간 보고하되 필요시 수시보고

- 수시·정기 교육

· 현장상황관리관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정기 교육 실시



3) 상황판단회의 개최

○ 근　거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목　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구　성 : 종합상황실장, 재난관련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재난발생시 상환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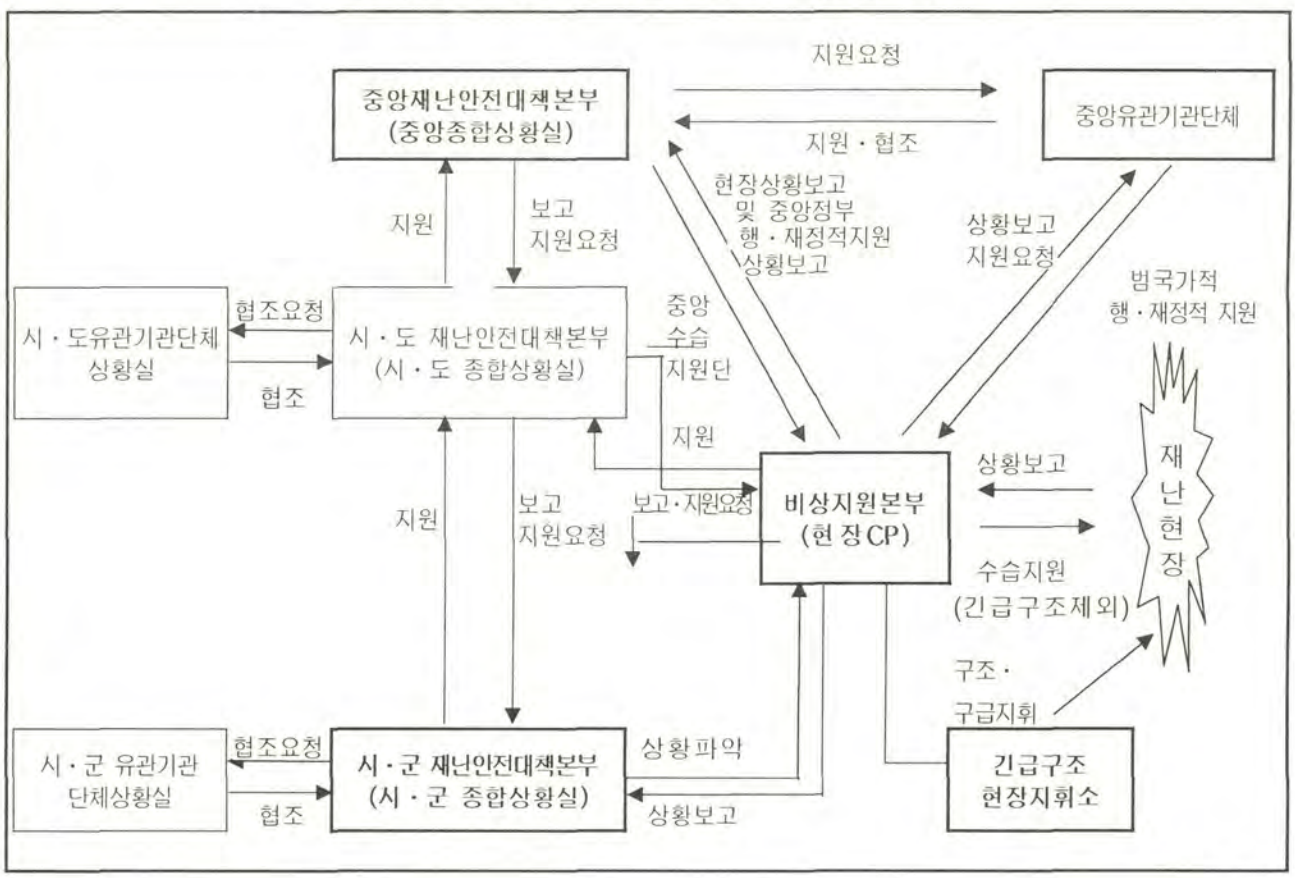

○ 내　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나. 재난발생 직후

1)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파견요청·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2) 구조·구급 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3)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다.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1)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사망·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2)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3)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협약체결일 : '04. 9. 24
- 가입단체(7)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평상시]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등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비상시]

-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시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마.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가)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나)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의 대피

-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3)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5)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등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

6) 의료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7)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8)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9)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가)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나)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 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10)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 대상지역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나)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11) 시설물 응급복구

가)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 부대)에 지원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은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 등

○ 전기시설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

-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라)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재해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등

○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철도시설

-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12)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13) 청소 및 방역

○ 청 소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14)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확보 등

15)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시·도, 시·군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4. 복 구 대 책

가.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1)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정산』 복구지원체제 정착

2)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나. 복구의 종류

1) 응급복구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 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2) 항구복구

○ 원상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대상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특별시의 구 : 피해액 28억원 미만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 : 피해액 15억원 미만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피해액 10억원 미만

- 조사기관 : 시·도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중앙계획에 의함)

- 대 상 : 여러 시·도나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조사 복명서
· 보고서 내용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

○ 자치구 및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10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 이상임(단, 도시개발사업 통신 및 항만시설은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중 1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 동일한 재해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한다.

-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생계보조,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 선박 및 어망·어구복구, 수산종·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 입식

○ 국고의 추가지원기준(국고전환액)

-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총액이 특별시의 구 70억원,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37억5천만원, 인구 30만미만 시군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지원한다.

구 분	국 고 추 가 지 원 금 액		
	재정력지수 0.3미만	재정력지수 0.3~0.9미만	재정력지수 0.9이상
특별시의 구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80%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65%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50%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80%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65%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50%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80%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65%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50%

2) 특별재난지역

○ 지원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 전국단위 : 총재산피해액 3조원 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6,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0명 이상인 경우
- 시도단위 : 총재산피해액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3,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단위 : 총재산피해액 3,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6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000명 이상인 경우
- 읍면동단위 : 총재산피해액 6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12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38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230만원)

- 침수주택(세대별) : 200만원(12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120만원)
-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피해
  · 80%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 : 500만원(230만원)
  · 50%~80%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 300만원(170만원)

※ ( )는 일반재난지역의 위로금등 지원액임

②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단가 상향지원

- 주택피해

(단위 : 천원)

항 목	단 위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 고
주택전파	동	30,000	36,000	15평기준 →
주택반파	동	15,000	18,000	18평기준 상향

- 대파대(생육후기단가 신설 : 특별재난지역 적용)

(금액단위 : 천원)

항 목	단 위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 고
○ 일반작물	ha	1,575	3,149	
○ 엽채류	ha	2,120	4,140	
○ 과채류	ha	2,800	5,146	
○ 인 삼	ha	10,751	13,976	
○ 버 섯	ha	30,000	36,000	
○ 화 훼				
- 카네이션	ha	32,939	45,432	
- 백 합	ha	20,232	23,660	
- 장 미	ha	10,800	13,650	
- 선인장	ha	15,261	35,436	
- 심바디움	ha	19,780	21,665	
- 국 화	ha	7,836	10,186	
- 글라디올러스	ha	13,990	18,187	

- 농약대 단가인상

(금액단위 : 원)

항 목	단 위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 고
화 훼	ha	49,940	139,000	채소류 기준
인 삼	ha	49,940	189,000	〃

- 농림시설 복구비 단가인상

(금액단위 : 원)

항 목	단 위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 고
유리·철골 펫트온실	㎡	80,120	104,156	

③ 사유시설 자부담분 보조전환 : 자부담분은 15%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전환

- 주택부문

항 목	현행기준(%)				특별재난지역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주택전파	20	10	60	10	25	15	60	-	
○ 주택반파	20	10	60	10	25	15	60	-	

- 농림부문

○ 농경지복구(3ha미만)	50	10	30	10	55	15	30	-	
○ 농림시설(2ha미만)	25	10	55	10	30	15	55	-	
○ 농림시설철거비(2ha미만)	25	10	55	10	30	15	55	-	
○ 농작물 대파대	50	20	-	30	57.5	27.5	-	15	
○ 축사(잠실)-소규모	25	10	55	10	30	15	55	-	
○ 가축·누에입식	40	10	30	20	45	15	30	10	

- 해양수산부문

○ 어선(40톤미만)	25	10	55	10	30	15	55	-	
○ 어망·어구(소규모)	25	10	55	10	30	15	55	-	
○ 수산증양시설(소규모)	40	10	30	20	45	15	30	10	
○ 수산증양시설(중규모)	25	10	55	10	30	15	55	-	
○ 수산생물입식(소규모)	50	10	30	10	55	15	30	-	
○ 수산생물입식(중규모)	35	10	40	15	43	17	40	-	

- 산림부문

○ 작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25	10	55	10	30	15	55	-	

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2) 선포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

대상지역 / 선정기준	전국일원	시도일원	시군구 일원	읍면동 일원
총 피 해 액 (사유재산피해액)	3조원이상 (6,000억원이상)	1조 5천억이상 (3,000억원이상)	3,0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이 재 민 수	50천명이상	30천명이상	8천명이상	1천6백명이상

※ 총 피해액 및 사유재산피해액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3)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과 거 선 포 현 황 >

○ 제15호 태풍□□루사□□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매미』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3.5기간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

바.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중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중앙)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시 · 도 예산조치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재해복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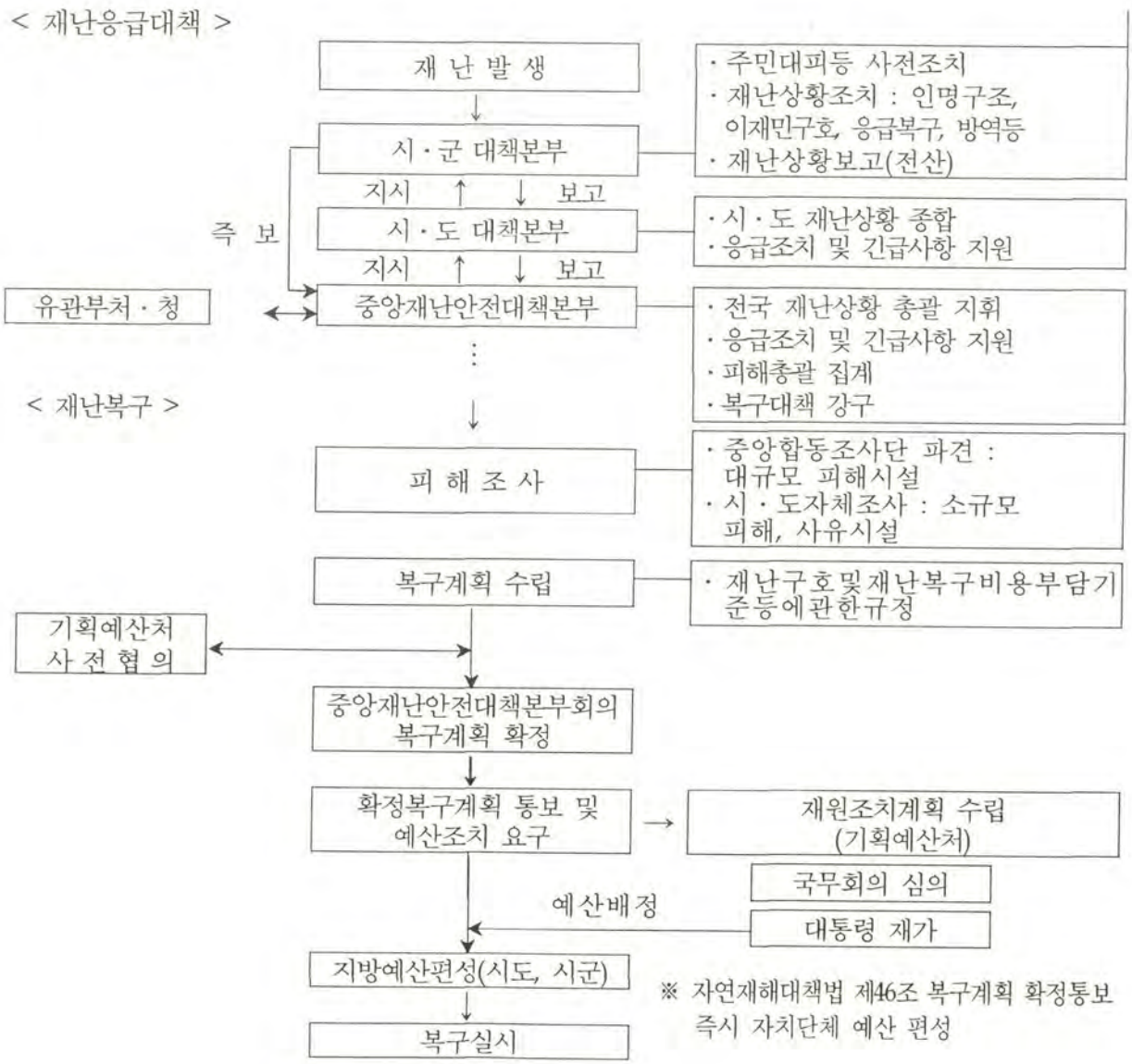

<재난복구비용 부담액 및 부담률>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복지부	1. 기타공공시설	· 공공화장장 및 공원묘지	50		50		
농림부	1. 생계지원	· 양곡 2~1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100				
	2. 농경지 복구	· 3ha미만 소유자 · 3ha이상 〃 · 농경지매입시	50 30 50		10 10 50	30 50	1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2ha미만 시설 -2ha이상 시설	25		10	55 70	10 30
	4. 농림시설 철거비	· 소규모시설 · 소규모시설	25		10	55 70	10 30
	5.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50 60		20 40		30
	6. 축사 파손·유실	· 1,800㎡ 미만 소규모시설(계사 2,700㎡ 미만) · 1,800㎡ 이상 대규모시설(계사 2,700㎡ 이상)	25		10	55 70	10 30
	7. 초지 유실·매몰	· 5ha 미만 소규모시설 · 5ha 이상 대규모시설				70 50	30 50
	8. 잠실 파손·유실	· 330㎡ 미만 소규모시설 · 330㎡ 이상 대규모시설	25		10	55 70	10 30
	9. 가축 입식	· 피해가축의 입식비	40		10	30	20
	10. 누에유실·폐사	· 당해년도 사육비	40		10	30	20
	11.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국가관리 -지방관리 · 농림부관리공공, 소규모수리시설	100 50 50		50 50		
	12.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부에서 별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3~6개월분 지원	100				
	2. 공공시설	· 국립학교시설 · 공립학교시설 · 사립학교시설 · 기타 공공건물	100 50 50		50 50 50		50
행정자치부	1. 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50 50		50 100 50 100		
	2.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도지원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소방방재청	1. 위로금	· 사망 : 세대주 1,000만원/구, 세대원 500/구 · 부상 : 세대주 500/인, 세대원 250/인		100 또는 국고			
	2. 생계보조	·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0만원/세대	100				
	3. 이재민장기구호	· 1~6개월 1인1일당 4,000원 ※응급구호는 시도에서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지원. 복구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	85		15		
	4. 공공시설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 응급복구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6.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문화관광부	1. 공공시설	· 체육시설 · 문화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50 100 50		50 50		
문화재청	1. 공공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위탁) 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100 70 50		 3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100 50		 50		
		· 상하수도시설	50		50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건물	100				
건설교통부	1. 세입자 보조	· 입주보증금 범위내에서 세대당 300만원이내	80		20		
	2. 사유시설	· 주택복구	20		10	60	10
	3. 침수주택수리비	· 60만원/세대	100				
	4. 공공시설	· 도로시설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100				
		· 하천시설 -국가하천 -지방1·2급 하천	 100 50		 50		
		· 마을기반조성	50		5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 공업항 및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및 건설교통부관리 공공시설등	100				

소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해양수산부	1. 어선	· 40톤 미만 · 40톤 이상	25		10	55 70	10 30
	2. 어망·어구	· 소규모(6천만원 미만) · 대규모(6천만원 이상)	25		10	55 70	10 30
	3. 수산물 증·양식 시설	· 소규모시설 · 중규모시설 · 대규모시설	40 25		10 10	30 55 70	20 10 30
	4. 수산생물 입식	· 소규모시설 · 중규모시설 · 대규모시설	50 35 20		10 10 10	30 40 50	10 15 20
	5. 생계지원	· 양곡 3~1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100				
	6. 간접지원	· 영어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 도 지 원				
	7. 공공시설	· 어항시설 -국가어항 -지방,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육지)	100 50 50		50 50		
		· 항만시설 -지정항만 -지방항만	100 50		50		
		· 선박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어업무선국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등대·해운시설	100				
		· 양식장·양어장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산림청	1.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 소규모 · 대규모	25		10	55 70	10 30
	2.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50		20		30
	3.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 도 지 원				
	4. 공공시설	· 산사태, 사방 및 임도시설 -국유 -지자체 및 사유림	100 50		50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림청	4. 공공시설	· 휴양림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 수목원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100 50		 50 50		
경찰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철도청	1. 공공시설	· 철도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산업자원부	1. 생계지원	· 양곡 3~1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100				
	2. 염전복구	· 3ha미만 소유자 · 3ha이상 소유자	50 30		10 10	30 50	10 10
	3. 기타 사유시설	· 공장시설(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시) · 광산시설(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시)				50 50	50 50
	4. 간접지원	· 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산업자원부에서 별도지원				
정보통신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농림·수산시설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아. 과학적 피해원인 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피해조사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 복구비 국고추가지원방법 개선

· 지방비 국고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수해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 현행 시설별·부처별·지구별 집행·정산제도를 사업비가 부족한 타 지구에 활용토록 제도화

- 수해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제도화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환류 기능 강화

자.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 · 시행

○ 홍수, 태풍, 설해 등 자연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실시, 국가예산 운영의 안전성 제고, 주민의 자발적 방재의식 고취 등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 시행

○ 관계법령(풍수해보험법 등) 제정으로 제도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주체, 보험가입 · 피해평가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국가보험제도의 운영 등을 명시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처별	사업명	총 투자계획 (2005~2009)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개사업		1,655,460		85,468
풍수해 · 설해 · 가뭄 · 지진 · 해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68개소	323,000	14개소	15,421
	소하천정비	3,411km	911,000	개소	19,562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	1식		1식	3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개소	174,400	21개소	33,408
	하도정비사업	73개소	227,800	11개소	9,100
	하천유지보수사업	-	-	16개시군	344
	종합상황실구축	1식	1,000	1식	1,000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1식	18,260	4개사업	6,333

제 2 장 설해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설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은 물론 자율적 방재체제의 전환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04년 3월 100년만의 3월중 기록적 폭설로 초래된 고속도로 정체 등 재난관리에 제반 문제점 노출

○ 비상상황 발생시 계획적인 인력·장비·물자 동원체계 미비로 조기 사태수습 능력의 근원적 한계

○ 따라서, 체계적인 인력·장비·물자 비상동원시스템 구축 및 고속도로 교통정체 등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마련

3. 재난관리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목 표

예방위주 방재행정 추진

○ 인명중시 방재정책 추진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신속한 제설작업 ⇒ 원활한 교통소통
○ 현장행정지도 강화 ⇒ 자율적 방재체제로 전환유도

인명피해 최소화

나. 기본방향

○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정책 추진

- 신속한 상황관리로 한단계 앞선 사전예방활동 전개
- 산악지역, 고립예상지구 및 등반객 안전대책 강구

○ 수도권지역 교통대책 강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자치단체간 연계된 제설작업체계 추진
- 제설인력, 자재, 장비 및 각종 비축물자 확보
- 교통방송등 방송매체 적극활용 대국민 홍보강화

○ 수산증·양식시설 및 농림시설(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피해 경감대책 추진

- 원인별, 지역별 피해원인 분석 대책강구
-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사용, 관리실태 등 계도강화
- 현장행정지도 강화로 자율방재체제 전환유도

제 2 절 예방대책

1.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 제설작업은 교통 운행하에서 실시
(단, 적설량 50㎝이상시 고속도로순찰대장과 협의후 통제 실시)

○ 인터체인지 및 I·C구간 집중 제설관리

○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함등) 비축 설치

○ 폭설, 노면결빙으로 인한 두절예상지구 → 우회도로 사전 지정

○ 회차지점, 안전장구 부착지점의 지정관리 및 홍보안내판 설치

○ 상황별 교통통제 기준설정 운영

○ 고개마루에서 차량승객 노상고립 예방 및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적기 교통통제 방안 강구

- 기상예보에 따라 제설작업분소를 운영하여 제설인원 · 장비대기 및 노선순찰 강화
- 고속도로 순찰대(경찰청)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기 교통 통제 실시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계획 설정 운영

- 1단계(적설량 2㎝미만, 시거장애 100m미만)
  ·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20% 감속 운행
  · 조치계획
    방송국과 협조 도로정보 수시방송
    영업소에서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기타 홍보활동
- 2단계(적설량 2㎝이상 강설 · 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100m미만)
  ·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50% 감속운행
  · 조치계획
    방송국과 협조 도로정보 수시방송
    영업소에서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기타 홍보활동
- 3단계(적설량 10㎝이상 강설 · 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10m미만 폭설 · 노면결빙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 할 때)
  · 교통제한 :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 조치계획
    지역본부장은 관내상황을 도재해대책본부장 및 시군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
    방송국과 협조 도로정보 수시방송
    우회도로지정 우회 및 안전조치

영업소에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기타 홍보활동

2. 일반국도 등 기타도로(국토관리청 및 도, 시·군)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구 및 우회도로 사전지정 →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통제기준에 준하여 실시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 우선순위

- 첫째 : 국도 및 대로와 하루교통량이 500대 이상인 도로로서 시·군간 연결도로
- 둘째 :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 셋째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 수송도로 제설방안 구축

○ 시·군 및 유관기관간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시·군 ⇔ 도로관리사업소 ⇔ 군부대 등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연장이 20㎞이상 구간으로 강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 집중관리

○ 도로등급별로 제설담당 기관

- 일반국도 : 건교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 방 도 : 단, 시관내(洞구간)는 해당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시·군도 : 시·군

3.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가. 산악·고립지역 안전대책

1) 산악지역 :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 주야간 비상근무자 상근

- 구조장비 : 무전기, 메가폰, 로프, 기타 장비 확보

○ 사전대책

- 2~3일전 예보분석후 악기상 예상시 사전통제 안내방송 실시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등반자 숙지사항 안내판 설치
- 구조대책 합동상황실 운영
  - 설치장소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각 분소
  - 운　　영 : 등산로통제 및 등반객 안전지대 유도, 하산금지, 산악구조대원 취약지점 사전배치
  - 대상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를 통합운영하여 구조장비 보완 및 효율성 제고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헬기 동원체제 수립
  -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 비상대기 조치
  - 경찰청 및 군용헬기 지원체제 구축
- 조난에 대비한 사전대책 홍보강화

2) 고립예상지구 중점관리

- 사전대책
  - 대피장소 지정 : 산장 및 마을회관
  - 구조대원 및 장비확보

나. 등반객 조난사고 예방대책

○ 빙벽훈련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빙벽훈련장 부근 안전지대에 영구대피소 설치검토
- 훈련자는 미리 훈련계획을 해당산하 관리사무소(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실시

○ 겨울철 등반객 통제강화

- 강설확율 50%이상, 예상적설량 20㎝이상 예보시 입산금지 및 입산자 하산계도, 안전대피 조치
- 개인입산은 절대 금지하고 단체입산은 허용하되 전문산악인 안내하에 입산조치

4. 농림시설 피해경감대책

가. 비닐하우스시설

○ 단기대책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쓸어 내리기등 사전대비 철저
- 폭설시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양수기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하므로서 비닐하우스의 눈을 녹여 피해예방
- 농림부 발행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 설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강화
  - 대국민 교육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해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실시

○ 장기대책

-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재래식하우스에서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개량권장
  · 300평이상 비닐하우스시설은 읍·면·동 신고제 실시
  ·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미신고 또는 무허가시설물에 대하여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 간이축사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억제
-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나. 인삼재배시설

○ 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을 개발하여「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록고시

○ 인삼재배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 발행시 표준모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습해우려가 없는 지역은 가을철에 차광막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예방

○ 폭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막제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인삼재배경작자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5. 수산양식생물 피해경감대책

가. 추제식 양식장

○ 축제식양식장은 사육지면적의 1% 이상을 별도 구획하여 보온덮개가 설치된 월동장을 갖추도록 함

※ 사육지 면적의 1% 월동장은 사육중인 어류 전부를 대피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최소한

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동장 면적은 어업인이 어류사육 미수 등을 감안하여 1% 이상을 확보

나. 해상가두리양식장

○ 저수온에 약한 돔류 양식해역 지정을 위하여 관내해역 수온관측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수과원, 지방청)

○ 수산과학원 및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 돔류 양식해역 지정

6. 도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반상회, 회보, 스티커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2005. 2월~2005. 10월까지

○ 홍보내용

- 설해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 설해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기

○ 홍보매체 : TV,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깃발, 스티커, 광고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 홍보방법

· 반상회 회보에 설해대비 협조사항 게제

· 지역별 설해대책 사전조치사항을 지방보도기관에 제공

· 지방TV 및 라디오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앙과 연계 실시

· 기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실시

7. 유관기관 중점조치사항

가. 인명피해 경감대책

○ 32사단

- 유사시 헬기, 병력, 장비지원

○ 국립공원 관리공단

- 강설에 따른 단계별 입산통제 계획 수립
- 헬기 지원체제 구축
- 대피소에는 등산객, 조난자를 위한 비상식량 확보

나. 설해대책

○ 32사단

- 제설장비, 인력 지원체제 확립
- 군부대 주변도로 제설 실시

○ 농림수산국

-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피해경감대책 수립추진
- 특작시설에 대한 농가보급형 표준설계 보급설치 유도
- 농민홍보 및 지도감독, 계몽교육실시

○ 건설교통국

- 시도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지원 협조
- 국도구간에 대한 책임제설 실시

○ 농림수산국

-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지속추진
- 어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책임행정구현

- 어민홍보 및 지도감독, 계몽교육실시

○ 경찰청

- 기상상황별 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교통취약지역 기동순찰반 운영 ⇒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

○ 기상청

- 강설확률 예측정보 신속전파

○ 철도청

- 대설시 차량증차 및 운행간격 조정 운행

○ 한국도로공사

- 겨울철 교통취약지구 집중관리
- 방송국과 협조 도로정보 수시방송

제 3 절 응급대책

1. 신속한 상황관리

가. 근무체제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상시 : 24시간 재해상황실 운영(4명)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실시

구 분	지역별	기 상 상 황	비 상 근 무
1단계 (준비체제)	대도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3㎝내외 예상 신적설이 10㎝미만 예상	중앙·지방재해대책본부 및 설해대책기관
2단계 (경계체제)	대도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5㎝이상 예상 신적설이 10㎝이상 예상	1단계 근무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
3단계 (비상체제)	대도시 기타지역	신적설이 10㎝이상 예상 신적설이 30㎝이상 예상	설해대책기관 전공무원 비상근무

나. 보고체제

○ 피해발생 및 강설상황 보고 : 즉시(중요사항은 시·군에서 즉보)

- 대설주의보·경보시는 매시간 지역별 적설량 보고

○ 일일피해상황 종합보고(도지사가 총괄보고) : 1일 2회

- 기준시간 : 당일 4시기준 5시까지, 16시기준 17시까지 보고

※ 출근시 교통소통 상황은 7시기준 8시까지 보고

- 보고방법

· 국　　도 : 건교부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도에 통보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취합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지방도·시군도 : 도에서 취합 보고

다. 중점추진사항(기상특보 발표시)

○ 대설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유관기관과 각 도→시·군→읍·면·동에 이를 전파하고 설해대비 비상근무태세 확립 지시

○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기상상태를 수시 확인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경·예비군 등 유관기관과 상호지원 협조체제 유지

○ 유관기관 상호간에 비상연락망 등을 재점검, 보완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상호 유기적으로 적시에 대처토록 하며, 주민신고망 확립

○ 소속 산하기관, 도→시·군→읍·면·동에 설해예방수습요령(제설작업, 대피 등) 시달

○ 교통두절지구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을 대기 또는 동원

○ 염화칼슘, 모래 등의 비축자재 필요시 살포

○ 민방위대에 비상대기령을 시달하거나 필요시 동원

○ 제반차량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시키고 운행 통제

○ 등산·야영 및 관광객 등을 하산조치시키고 입산 통제

○ 교통두절예상 도로는 우회도로 지정 또는 응급조치(제설,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등) 강구

○ 고립예상지역 주민 대피 유도

○ 이재민에게 비축·구호물자 지급

○ 피해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응급복구

○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구에는 즉시 표지판을 설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것을 농민에게 홍보

○ 눈사태 예상지역, 계곡지역 등 주민 안전지대로 대피

○ 지역단위 자율방재체제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권장

2. 기상특보별 조치사항 및 국민행동요령

가.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 5~20㎝이상 예상될 때

○ 대도시(특별·광역시) 지역 : 5㎝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10㎝이상 예상될 때

1)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대책요원 비상근무
- 해당지역 방송국에 대설주의보 보도

- 도로 순찰 강화
- 신속한 초동 제설 실시
- 고립지역 구호물자 확보
- 농산물 수송로 우선 제설 실시
- 염화칼슘, 모래 등 사용후 즉시 보충
- 강설량 및 제설작업 현황보고
- 교통통제 및 두절지구 현황보고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눈 쓸어 내리기 등 보호조치 강화
- 공항통제 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지역 긴급소통을 위한 우회도로 유도
- 등산객 · 야영객 등의 하산 조치
- 월동장구 미 부착차량 통제 실시

2) 국민행동 요령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해 안 지 역
①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② 각종 차량의 감속 운행 (안전장구 부착) ③ 노후가옥 안전점검 ④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⑤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⑥ 라디오, TV 등의 의한 기상예보 청취 ⑦ 대중교통수단 이용	①~⑦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가옥주변 적설 제거 ⑨ 비닐하우스등 농작물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농촌지역과 동일

나.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50㎝이상 예상될 때

○ 대도시(특별 · 광역시) 지역 : 20㎝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30㎝이상 예상될 때

1)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해당 지역 방송국에 대설경보 및 재해대책 보도
- 교통두절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총동원
- 제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운행통제, 제설작업 강화
- 등산객 하산 조치 및 인명구조대 현지 배치
- 고립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자 배정 및 수송로 확보
- 피해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이재민 구호조치
- 도로순찰 경계강화, 강설량 시간별 보고
- 교통통제 · 제설작업 상황 보고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강화
-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 대책 강구
- 교통통제 및 두절구간의 차량 우회유도

2) 국민행동 요령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해 안 지 역
① 등산객, 관광객등의 조속 하산 및 귀가 ② 외출 자제 ③ 제반 차량운전자의 감속 운행(안전장구 부착) ④ 피해지역 응급복구 실시 참여 ⑤ 내집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 모래등 살포 ⑥ 대중교통수단 이용 ⑦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①~⑦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고립지역 비상연락 조치 ⑨ 비닐하우스등 농작물 시설 보호 조치	농촌지역과 동일

제 4 절 복구대책

1. 복구비 지원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 풍수해 지원기준과 동일

2. 복구계획 수립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 영농자금, 생활안전자금 등의 상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등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공장, 상가, 시장(시설자재 및 기계류등 포함)등의 피해건물에 대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응급복구에 관한 지원사항
- 공공시설의 복구 등

3. 설해취약시설 피해방지대책 강구

○ 설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등 각종 시설물의 표준설계 및 개량모델 개발 보급과 설치유도

- 설해대책에 관한 방재기술개발 연구 등

제 3 장 가뭄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가뭄에 대비 기상분석, 가뭄상습지 관리, 양수장비 확보,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빗물모으기를 통한 가뭄재해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경감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이상기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로 '04년 경남·전남, 제주도 등에 가뭄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상습제한급수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

○ 따라서,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중·장기대책 수립 및 빗물모으기 국제워크샵 개최, 빗물모으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한 가뭄재해 저감방안 강구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물절약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및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 빗물모으기를 통한 가뭄재해 저감대책 강구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나. 추진전략

○ 지하수 조사자 D/B화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 빗물모으기 국제워크샵 개최 및 빗물모으기 운동 전개

○ 수계별 댐군 연계운영 및 권역별 광역급수체계 구축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 방 대 책

가.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

○ 가뭄실태 및 저수율 분석

○ 가뭄대비 추진계획

-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분야 추진계획
- 상황관리체계 및 보고요령
- 관련 부처별 응급조치사항 및 추진대책 등

나. 상습가뭄지역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 내 용

- 시장·군수는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고시

○ 지원사항

-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절차 등 규정 마련
-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수립 지침 시달

다. 관련부서의 예방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생활용수분야]

1)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4단계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2)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등

3) 상습가뭄지역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빗물이용시설 조사 및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 강구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다목적 댐, 중규모 댐 건설 등

4) 가뭄 발생예상지역의 가뭄대책 장비 점검·정비

○ 자체 보유중인 장비에 대한 월1회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조치

5) 물절약 대책추진

○ 물다량 사용업소 및 초·중·고·대학 등에 절수기 설치 유도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

6)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강화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 업소 중점 단속 등

7)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

○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식수 전용저수지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용수분야] : 단계별 가뭄대책 수립 추진

1) 가뭄대비 사전 단계

○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현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등

2) 가뭄우려 단계

○ 가뭄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조적인 가뭄극복운동 전개

○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자리모 노화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등

3) 가뭄확산 단계

○ 가뭄극복을 위한 총동원 지원체제로 전환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총력 지원

2. 대 비 대 책

가.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TV자막, 특집프로 등)

○ CA-TV, 공공채널(K-TV)를 통한 홍보

○ 홍보영화 제작, 전국의 극장을 통해 절수운동 전개 등

나. 빗물모으기를 통한 가뭄재해 저감방안 강구

1) 국제워크샵 개최

- 시 기 : '05. 10월경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NGO, 관련기업체, 일반인 등
- 내 용 : 독일, 일본 등 빗물이용사례, 빗물이용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빗물이용 기술의 적용사례 등
- 효 과 : 선진국의 빗물관리 기술동향 등 최신기술 정보공유 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빗물모으기 방안 마련

2) 빗물모으기 운동 등

-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빗물모으기운동 전개 및 빗물모으기 시설 설치 확산운동 실시

다.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지원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원

○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라. 가뭄발생예상지역 관리 지원

1) 한해 장비 점검·정비 지원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2)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 용수원 확대 개발(관정, 하상굴착, 간이보 등)

○ 양수장비 및 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마. 관련부서 대비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2) 가뭄발생예상지역 관리

○ 한해 장비 점검·정비,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가뭄 우려 단계·확산 단계의 조치사항 추진

3. 대 응 대 책

가. 가뭄발생 직전

1)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2)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나. 재난발생 직후

1) 가뭄 대응 상황관리체제 확립

○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 전국의 2개도·10개시·군 이상에 가뭄발생시

※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유관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설치 운영하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기능 수행

※ 관계부처에서 추진한 예산, 장비, 인력 지원상황 등을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2) 가뭄상황 관리체계



3)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원

○ 기관·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지원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단계별 추진대책 수립실시토록 조정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 공급시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운영 ○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식수용 지하수 개발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공급시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공급시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먹는샘물 공급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개인관정 공통이용

다.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지원

○ 유휴우물 또는 농업용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라.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지원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마.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TV 4사를 통한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 홍보

○ CATV, 공공채널(K-TV)을 통한 홍보

- 가뭄극복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 홍보영화 제작·상영

- 홍보영화 제작·전국의 극장을 통해 범국민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바.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가뭄발생 직전

가) 가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나)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2) 재난발생 직후

○ 전국의 2개도·10개시군 이상에 가뭄발생시 소방방재청,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기관·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단계별 추진대책 수립실시

3)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휴우물 또는 농업용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등

4)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5)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CATV, 공공채널(K-TV)을 통한 홍보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관계기관별 주요 협조사항》 - 생활용수분야

□ 국 방 부

○ 가뭄극복을 위한 병력 및 장비 총동원 지원

- 기본임무수행과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를 제외한 전 역량 집중 지원
- "농촌일손 돕기운동"을 "가뭄극복 일손돕기운동"으로 전환, 범국민적인 가뭄극복운동 동참

○ 시추기 및 인력을 지원하여 용수원 개발 추진

○ 급수·제독차 및 청수선을 지원하여 가뭄지역 운반급수

○ 굴삭기·도져 등을 투입 간이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 가뭄해갈시 하상굴착, 물웅덩이 등의 원상복구 지원

□ 농 림 부

○ 농기공등 농업관련단체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가뭄대비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 및 육묘관리 강화

○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조속설치 협조요청(한전)

○ 영농단계별 가뭄대책 추진(농진청, 지자체 등)

○ 물 빠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 하상굴착,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 용수개발비 지원

○ 가뭄극복 추진상황 홍보 및 언론보도 추진

○ 토양 수분조사 실시

- 월동작물 등 작물생육 조사 실시

□ 산업자원부

○ 가뭄대책기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 가뭄대책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수요가 집중되는 양수기 생산관리로 차질없는 공급

○ 산업단지내 절수운동 및 용수수요 분산유도

○ 발전용댐 용수의 농업용수 전환

- 발전용댐 용수공급 우선 운영

- 발전 불가능시에도 용수는 계속 공급

- 화력 및 양수발전 용수 일부를 농업용수로 최대한 공급

○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 추진

□ 환 경 부

○ 하·폐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강구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업소 중점단속 등

□ 건설교통부

○ 다목적 댐 하류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추가 방류

○ 생활·공업용수 전용댐을 이용 농업용수로 공급

○ 지하수 조사용 관정 및 국가지하수 관측정을 이용한 용수공급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에서 농업용수 공급

○ 관정개발 실패 공 원상복구 추진

○ 하상굴착, 포장 등 간이용수원 개발 원상복구

□ 기 상 청

○ 중·장기 예보자료 적기제공

- 신속·정확한 강수전망(강우량·강우시기 등)의 예보

○ 가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

4. 복 구 대 책

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 중앙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이상시 지원

○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하여 지원

나. 가뭄대책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 유류대 및 전기료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장비구입비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다. 가뭄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1에 정한 대상자

○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제 4 장 지진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진에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의 지속 및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와 함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04. 12월 남아시아에서 진도 9.0의 지진해일이 발생, 17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우리나라도 지진위험성에 대비,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속적인 구조물의 보강,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진방재대책의 필요성 증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지진방재교육, 도상·실제훈련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지진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나. 추진전략

○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 및 적용실태 지도·감독

○ 각급 기관별, 기능별 지진대비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체계 구축

○ 각 기관별 단계별 행동요령 적용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규정

○ 재난상황 정보전달체계 보강 및 확충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 방 대 책

가. 지진 예방대책

1) 위험시설물 및 화재예방시설의 점검·정비 지원

가)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지원

○ 다중이용시설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등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산사태, 산지재해,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 항공청사, 철도역사,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지하철공사현장, 지하굴착작업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나)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실시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사용 시설 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계획 수립
- 비축기지별로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별 임무부여 및 교육실시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도시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가스누출에 대비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가스누출시에 대비 자동 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및 근로자 교육계획 등 안전운전계획 이행 실태 점검
- 위험성 확인·피해최소화 계획수립·시행
- 공정의 안정성 이행 확립지도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도

다) 화재방지대책 강화 지원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활동체제 정비

- 관할 시·군 소방본부장 주관하에 인접 소방서와 응원체제 확립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

○ 소방활동로 지정, 소방활동 곤란지역 해소계획 등을 수립 추진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통신체계 조기 복구계획 수립
-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새로운 화재진압장비 확보(공중, 해수)

- 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동력펌프가 부착된 소방차 확보
- 공중살포를 위한 화재진압장비 확보

○ 2차 피해확산 방지시설 설치

- 연소 방지기능을 가진 수림대 및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 농지공간 확보

2) 내진설계기준 설정 및 적용실태 감독강화

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대상시설물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5층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다)
-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궤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나)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 조사계획

- 소관부처 주관하에 7개년('99~2005)에 걸쳐 실시

· 1단계('99) : 소관부처 주관하에 국책·민간·대학연구기관 및 국립방재연구소·지진공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각 시설별 실태조사표 작성 등 조사계획 수립

· 2단계(2000. 1~2004)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조사표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단계(2005) : 국내지진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조사결과 평가 및 필요시 현지 표본조사 등실시

·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물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도 포함하여 일제조사 공공시설은 관계부처 또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조사 사유시설물은 소관부처 주관하에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강기준은 관계부처 주관하에 마련

다)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대상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상 29개 법정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추진계획

- 내진설계 대상시설중 이미 기준이 설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공사 발주전 적용여부와 상위기준의 법령근거 등 보완현황을 확인하고 하위기술기준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확보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등에 적극 지원 촉구

-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3) 지진재난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및 지원

○ 건축물, 토목시설물, 학교시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방재관련시설 등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기준 보완·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추진

· 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4)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가)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 전 시·군·구 우기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통보대상자 우기전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시스템)
-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시스템)
-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우기전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여름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234개 시군)

○ 추진계획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및 통보대상자 정비 : '05. 1~4월
- 여름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 : '05. 5~10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결과 분석 : '05. 11월

나) TV/라디오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운영

○ 시험방송 실시

- 기 보급된 TV재해방송용수신기 4,000대 우기전 시험방송 실시
- 라디오 재해경보방송 시범사업 5개지구 우기전 시험방송 실시

○ 추진계획

- TV/라디오 재해경보방송수신기 일제점검·정비 및 시험방송 실시 : '05. 4~5월

- 라디오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시범운영결과 분석 : '05. 11월

다) CBS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실시

○ (주)KTF, (주)LGT와 상호협정체결('04.12. 3)

- 경기·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 강화

- 이동통신 3사(KTF, LGT, SKT)를 참여
- 서비스대상을 경기·강원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250만명 → 1,750만명)
- 쌍방향 재난정보전달체계 구축 추진

○ 추진계획(중앙계획 수용)

- 이동통신 3사(KTF, LGT, SKT)를 통한 전국서비스 확대 : '05. 3~ 5월
- 쌍방향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추진 : '05. 3~12월

5)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지원

○ 관련 부처·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 국민행동요령은 충청남도 방재정보시스템에 게제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지진대비 훈련 지원

가) 지진방재교육

○ 민방위대 실무교육강사 및 각급 기관의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교육 실시

○ 각급 기관별 기능별로 지진대비 교육실시

나)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 도상훈련은 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하고, 실제훈련은 전 시군구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진취약(지진구역1)은 년 2회 그 외 지역은 년1회, 광역 및 시군단위로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 실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1/2씩 실시하되,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

○ 지역 및 직장단위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규모(M)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훈련 실시

○ 지진취약지역은 민방위 훈련시 지진훈련 중점실시

○ 관련기관별·기능별로 훈련 실시

○ 재해 유형별로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훈련 실시

○ 가정, 기업, 지역에서 구급약품이나 피난복을 상시 비치토록 의무화

2) 지역자율방재조직 구축 지원

○ 수방단을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원로, 통·리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

- 지역자율방재조직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3) 국민 방재활동의 기반조성 지원

○ 자원봉사자 환경정비

- 민간봉사 단체의 활동 환경정비
- 민간봉사자의 활동거점 확보

다.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예방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도시의 공간확보 및 기능분산

○ 지진취약지역 도시에 공원, 녹지 등 Open Space 확보

○ 지진발생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 배치

○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 등이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설하는 도시 등에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분산 배치

○ 도시계획 등 각종 시설계획 수립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3) 도시의 방재성 강화

○ 수도권지역의 도시방재구조화대책 등 추진 및 기능분산

○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내진·불연화, 녹지대의 계획적 확보로 지진에 강한 도시구조의 형성

4)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강화

○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5) 화재예방시설물 등의 점검·정비 및 혼란방지

○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진압계획 수립 추진

○ 터미널, 극장, 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혼란방지대책 수립

6) 화재의 확대 방지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체제 정비

○ 새로운 소화체제 정비(공중, 해수)

7) 긴급수송의 대책 확보

○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지정

○ 긴급수송로로 지정된 수송시설, 수송거점 및 도로교통관련시설의 내진성 확보와 도로관리체제 정비

8)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체제 정비

○ 물자의 성격에 따라서 집중 비축 또는 대피장소의 위치를 감안한 분산비축 등의 체제 정비

○ 식료품, 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및 통신기기 등의 물자 비축 또는 조달체제 정비

9) 청소·방역체제 정비

○ 지진발생시 건물붕괴 등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 쓰레기처리장 지정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약품·방역물자 비축

10)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처·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11) 지진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 통신시설의 내진성능 강화, 정전대책, 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중화, 지중화의 촉진, 무선을 활용한 대책, 디지털화 촉진 등 통신수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지진방재 과학기술 연구 및 미국·일본 등 지진대응 체계 등 자료의 집적

○ 지진동이 구조물에 주는 영향, 내진설계, 구조물의 내진보강 등 공학적 분야, 재난발생시의 인간행동이나 정보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한 연구 추진

2. 대 비 대 책

가.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지원

1) 응급대응체계 확립 지원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비상무선통신의 이용

○ 위성통신네트워크, 행정무선, 행정전화외에 경찰, 군, 해양수산부 등과 핫라인 설치

○ 헬리콥터, TV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중적 정보통신시스템 확보

2) 비상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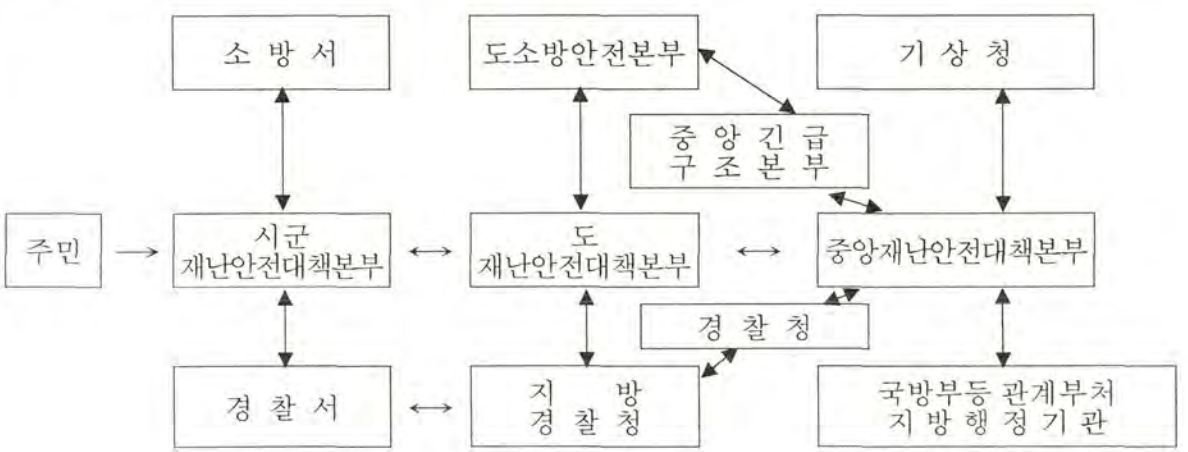

나. 재난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을

- TV자막 방송 및 24시간 현지 생방송 실시
- 수집된 각종피해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신속 전파
- TV·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다. 지진해일대책

《남아시아 지진해일 발생현황》

○ 발 생 : '04. 12. 26 (진도 9.0)
○ 피 해 : 사망 17만여명(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 우리나라 인명피해 : 사망 12명, 실종 8명

1) 지진해일 내습시의 행정관서 조치사항 전달

가) 지진해일 정보와 경계의 발령

○ 지진해일 정보

- 지진해일의 도달시각
- 예상되는 지진해일 높이
- 지진해일 관측 정보
-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

○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 정보 전달

- 지진해일 예보가 발령된 경우 동해안의 시도, 시군구는 주민, 조업중인 주민, 해수욕장 관광객, 선박 등에 신속히 고지대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지시한다.

○ 방재기관의 조직동원체제

-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설치를 통해 관련 조직의 동원체제에 돌입한다.

나) 지진해일에 대한 수방활동 특이사항

○ 지진해일 방재대책에 있어서 관계자가 인지해야 할 사항

- 여타의 기상재해와 달리 사전 징후가 없다.
- 여타의 기상현상에 의한 해일과 비교하여 파력이 강력하다.

  (30cm의 해일 내습시 해안에서의 이동 절대 금지)
- 기상청 등 예보기관의 예보로부터 해일 도달 시각과 대략의 높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 일본 서해안에서 대규모 지진(규모 7.0 이상)발생시 약 두시간 이내에 동해안에 도달한다.
- 해저지진의 진앙과 동해 중심을 연결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에는 특히 높은 해일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대피시 해안가 체류는 절대 금물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로의 대피를 기본으로 한다.

○ 주민에 대한 주지활동 전파

-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시 해안가로부터의 주민 피난 유도
- 지진해일 경보 발령시 해안가 부락의 주민, 해안가 작업자의 고지대 이동 유도
- 지진해일의 계속시간에 대한 주지 (수시간)

○ 재항선박에 대한 홍보활동

- 순찰선의 사이렌 등을 이용하여 경계태세를 주지
- 라디오 등 방송기관을 통한 주지

○ 부유물 방재활동

- 항 부근에 적재된 목재 등의 부유방지대책 마련
- 적재소 내의 목재 결박 및 인근지역으로부터의 대피 유도
- 유류 및 가스 저장소 등 인근의 부유목 이동
- 그 외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어 해일에 의해 이동되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모든 방치물(소규모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포함)은 내륙으로 이동조치

○ 항내 선박의 정비

- 항내 선박의 인양, 고정 등 조치
- 항 인근의 선박에 대해 대양으로의 이동 유도
- 방파제 내측 등의 정박 금지 조치
- 선박 내의 주민 고지대로 이동 유도

다) 지진해일 내습시의 국민행동요령

1) 지진해일 내습시 주의사항

○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 발생이 보고되면 지진해일 발생을 우려해야 한다.

○ 연안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 이러한 정보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알려 위험에 대비한다.

○ 또,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하여 주민 모두에게 알린다.

○ 일본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2시간 뒤에 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시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고지대로 피난해야 한다.

○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등이 없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2) 지진해일 내습시 선박위에 있다면

○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자신이 만일 대양에 있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한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질서를 유지해가며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정박은 피해야 한다.

3) 자주적 방재활동을 위한 지진해일에 관한 상식 전파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도달하는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동해안에 내습하는 지진해일의 파고는 최대 3~4m 정도이다.

○ 이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되기 쉽다.

○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의 초동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어 항 바닥이 들어 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여러 차례 열을 지어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길게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의 내습 속도는 사람의 거동보다 빠르고, 그 힘이 우세하여 약 30cm의 정도의 해일 상황에서 성인이 걸을 수 없고,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목조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 해안가의 선박이나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가옥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내습한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4)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 보강 및 확충

○ 지진해일 전용 동시 통보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해안지역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보강 및 확충

- CBS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운영지역 확대 추진
- 해안지역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 지진해일 정보의 신속한 전파하기 위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시설을 보완
- 전광판, 앰프 등의 시설별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 등의 재난방송문 등을 재난사태별로 활용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보급
- 해수욕장 개장시 지진해일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하여 대피방송

- 해변마을 및 도서지역에 재해전용 방송시설 확충

5) 상황전파 및 신속대응 등을 위한 단계별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계부처 및 기관별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위기대응 및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

○ 지진해일은 짧은 시간에 내습하므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대피 및 교통, 선박통제 등의 세부계획 수립

○ 저지대에 위치한 노인정,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의 노약자 대피계획과 행동매뉴얼을 작성

○ 피해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

6) 주민대피용 재해지도 제작 보급

○ 지진해일 등에 의해 침수의 위험이 있는 해안의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침수위험 지역과 대피장소 및 대피로 등이 표시된 재해지도 제작 배부 및 교육실시

7) 지진해일 위험지역 교육추진 및 홍보 강화

○ 해안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관광객 대피유도를 위하여 해안 관광지역 종사자 대상으로 관광객 등의 대피유도 교육 실시

○ 수협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의 긴급 피항조치 등 지진해일 대응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실시

○ 교통통제 및 어선을 통제하는 경찰관 및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실시

8) 시도 및 시군안전관리계획 미비사항 보완 추진

○ 사망자 수습 및 장례계획과 실종자 수색, 신원 확인절차, 무연고자 장례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대규모 피해로 인한 건물 등의 시설물파괴 잔재와 쓰레기의 반출 및 매립 등 처리계획 수립

8)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대응 능력 향상

○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어촌이 있는 모든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 수협,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 실시

10) 지진해일 안전지대 표시판 설치 및 저지대 대피유도 안내판 설치

○ 해안도로에 지진해일 안전지대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통제에 활용하며, 해안저지대 대피로에는 대피유도 안내판 설치 추진

11) 지진해일 대비 국민 행동요령 보완

○ 지진해일 발생시, 운항중인 선박, 정박 중인 선박의 안전을 확보

○ 해안의 지형 여건 및 취락의 형태에 적정한 국민행동 요령을 보완

○ 대 국민행동요령 보급 및 숙지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12) 유관기관 연대 대응 시스템 구축 강화

○ 지진해일 예보 과정별(주의보, 경보 등), 각급 기관별 행동 매뉴얼을 작성·활용

○ 매뉴얼 실천에 필요한 인력, 통신 등 장비 확충

○ 지진해일 취약지역 기관장 급 「지진해일 대책위원회」을 운영하여 유사시에 대비

13) 지진해일 광역 수습체제 구축

○ 지진 및 지진 해일에 대한 방재계획은 광역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재난을 수습

○ 지진 발생지역에 인력, 장비, 물자 자동 지원화 체계 구축

라. 관련부서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2)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 항공기, 경비선, 차량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 체제정비

○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의 재난관련정보 등의 수집체제 정비

○ 정보 분석을 위한 인재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3) 대피체계 및 대피장소의 정비

○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 지정, 평소부터 주민에게 홍보

○ 재난발생시 대피유도에 관한 계획의 사전 작성·훈련

○ 노약자, 장애인, 그 밖의 재난취약자 등의 대피유도체제 정비

○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와 규모의 대피장소 지정

○ 저수조, 우물, 간이화장실, 통신기기 등 대피장소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

○ 대피장소 또는 대피생활에 필요한 물자 비축

4) 지진해일대책

○ 지진해일피해 위험예상지역의 구조물, 시설 등 정비 및 대피장소, 대피로의 정비

○ 피해예상지역 주민 및 선박 등에 위험성 홍보

○ 해안지역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보강 및 확충

- CBS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운영지역 확대 추진
- 해안지역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 지진해일 정보의 신속한 전파하기 위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시설을 보완
- 전광판, 앰프 등의 시설별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 등의 재난방송문 등을 재난사태별로 활용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보급
- 해수욕장 개장시 지진해일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하여 대피방송
- 해변마을 및 도서지역에 재해전용 방송시설 확충

○ 상황전파 및 신속대응 등을 위한 단계별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계부처 및 기관별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위기대응 및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대피 및 교통, 선박통제 등의 세부계획 수립
- 저지대에 위치한 노인정,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의 노약자 대피계획과 행동매뉴얼을 작성
- 피해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

○ 주민대피용 재해지도 제작 보급

- 지진해일 등에 의해 침수의 위험이 있는 해안의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침수위험 지역과 대피장소 및 대피로 등이 표시된 재해지도 제작 배부 및 교육실시

○ 지진해일 위험지역 교육추진 및 홍보 강화

- 해안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관광객 대피유도를 위하여 해안 관광지역 종사자 대상으로 관광객 등의 대피유도 교육 실시
- 수협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의 긴급 피항조치 등 지진해일대응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실시
- 교통통제 및 어선을 통제하는 경찰관 및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 실시

○ 시도 및 시군안전관리계획 미비사항 보완 추진

- 사망자 수습 및 장례계획과 실종자 수색, 신원 확인절차, 무연고자 장례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대규모 피해로 인한 건물 등의 시설물파괴 잔재와 쓰레기의 반출 및 매립 등 처리계획 수립

○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대응 능력 향상

○ 지진해일 안전지대 표시판 설치 및 저지대 대피유도 안내판 설치

- 해안도로에 지진해일 안전지대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통제에 활용하며, 해안저지대 대피로에는 대피유도 안내판 설치 추진

○ 지진해일 대비 국민 행동요령 보완

- 지진해일 발생시, 운항중인 선박, 정박 중인 선박의 안전을 확보
- 해안의 지형 여건 및 취락의 형태에 적정한 국민행동 요령을 보완
- 대 국민행동요령 보급 및 숙지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유관기관 연대 대응 시스템 구축 강화

- 지진해일 예보 과정별(주의보, 경보 등), 각급 기관별 행동 매뉴얼 작성·활용
- 매뉴얼 실천에 필요한 인력, 통신 등 장비 확충
- 지진해일 취약지역 기관장 급「지진해일 대책위원회」을 운영하여 유사시에 대비

○ 지진해일 광역 수습체제 구축

- 지진 및 지진 해일에 대한 방재계획은 광역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재난을 수습
- 지진 발생지역에 인력, 장비, 물자 자동 지원화 체계 구축

3. 대 응 대 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지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가) 지진발생 초기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정보의 수집·전파)

○ 상황실 · 현장지휘소 근무요원 파견요청(유관기관)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압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유관기관 협조 또는 지원요청**(시·군 구조·구난본부, 경찰서, 군부대 등)**

○ 피해지역 주민 대피권고 · 지시 및 유도

○ 음료수 · 식료 · 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긴급도로 개설 등

나) 지진발생 수습단계

○ 피해사항 자체조사

○ 방역실시

○ 인력 및 장비지원

○ 쓰레기 처리 및 장비지원

○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추진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국민생활필수시설(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 토목공공시설복구(도로·교량, 공항시설, 사방·산사태 방지시설, 철도시설·사회공공시설 등)

2)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피해수습체계 구축

○ 피해상황보고

- 주요피해상황 : 읍면동→시·군 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 읍면동→시군대책본부 → 도 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전파)
- 대규모피해(즉보) : 주민→읍면동→시·군 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피해상황 확인시스템 도입

- 피해상황보고
  · 읍·면·동 → 시·군 대책본부 → 도 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피해상황 확인시스템 도입

4)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공단체·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 재해규모별·분야별로 지원협력 매뉴얼을 작성 활용

○ 방재훈련 등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 광역협력체제 구축

- 비축물자나 장비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 유지

- 지진방재전문가의 양성

5)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인력의 종사 및 시설·물자 등의 사용

- 인력 : 의사, 약사, 간호사, 토목·건축기술자, 기능공 등 특수분야 기술자 중에서 동원대상자 지정

- 물자 : 응급조치에 필요한 토지, 가옥, 물자 등의 수용·사용·보관 명령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지정

6) 소방·위험물대책수립

○ 지진소방대책 수립 추진

- 대규모 화재에 대비, 인근 소방서와 상호응원 협력체제 구축 운영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수립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관리자로 하여금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나. 재난발생 직후의 대책

1) 2차 재난 방지대책 수립

○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대책

○ 이상고조, 파랑 등의 대책

○ 폭발 및 화재방지대책

2)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노동부에 요청

○ 기타 인력지원 국방부에 요청

3)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 수송루트, 주요 우회루트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대형헬기 등 수송장비 지정

○ 긴급도로 개설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4)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처리

-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분뇨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지장물의 제거

- 장애물정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우선 처리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방역대책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처리

- 실종자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5)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가) 구호·구급체제의 정비

○ 구조체제 정비

○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119구급대와 항공대, 의료기관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나) 자원봉사자 대책

○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훈련·파견을 위한 센타의 설립 추진

-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방재훈련 실시

-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위치 배정
- 행정과의 역할 분담

○ 재해자원봉사자의 모집·훈련, 파견 등의 제도화(종류 : 의료, 건축, 소방 등)

다) 피해자 신상관리

○ 지진에 의한 정신적인 상처나 피난소에서의 장기화 등에 의한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계획 수립

라). 의료·구호계획

○ 초동의료체제 구축

<재해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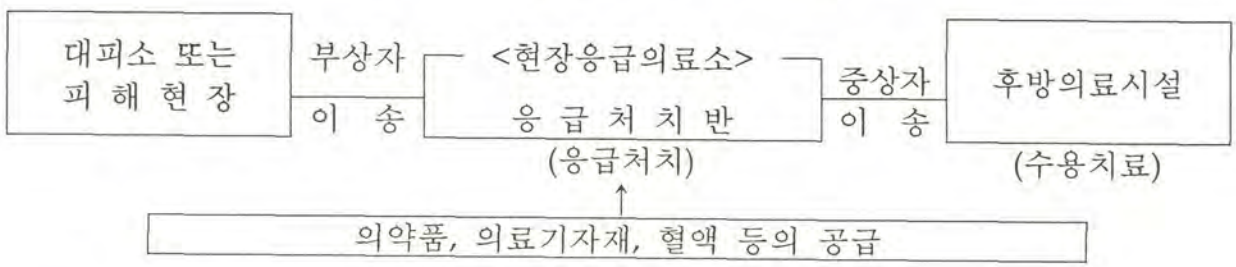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중상자 후송 대책 수립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수립

6)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계획수립

○ 음료수의 공급계획

- 대피소로부터 2㎞이내의 지역에 응급 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 응급 급수활동 실시
-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비상급수대책

- 민방위기본법제14조 및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이상	20세대이상
설치기준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비지정시설 : 10㎥마다 1일 양수량 0.4톤이상 20톤미만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비지정시설 : 1일 양수량 세대당 0.2톤이상

- 수도법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시·도지사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비상급수토록 지시

○ 급수목표량 기준

-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 1인1일 4ℓ(음료수)
- 10일까지 : 1인1일 20ℓ(생활용수포함)
- 20일까지 : 1인1일 100ℓ(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1일 250ℓ(정상적 급수)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분으로 확충

나) 생필품 공급계획

○ 식료비축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송로가 개설되어 식료·생필품의 수송가능시까지 피해자에게 3일이상 공급할 식료·생필품 비축

○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자의 방출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양곡보관소 등 파악 관리

○ 대규모 지진발생으로 식료품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 통제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7)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가) 상수도시설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수도시설의 도면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급복구에 대비

○ 지진대비 수돗물 공급시스템 개선

○ 상수원 수계별 전환 급수체계 강구

○ 단기 대체 수원의 확보

나) 하수도시설

○ 자치단체별 복구반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도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다) 전기시설

○ 지진발생시 전력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 발전·송변전 설비

라) 가스시설

○ 가스시설 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 순으로 복구 실시

마) 통신시설

○ 통신의 두절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발생 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바) 공공시설

○ 도로·교량

- 각 도로관리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등을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전 확보, 피해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 도로·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항만 · 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 피해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공항시설

- 공항내에 있는 인명과 화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사방 · 산사태방지,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공공의 안전 확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복구실시

○ 철도시설

- 지진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수송수단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
- 타 시설에 우선하여 복구실시

○ 사회공공시설

- 시설별로 환자, 장애인, 학생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 운영
-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 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업체 사전 지정

8) 군부대 지원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군부대 장비의 지원요청

○ 군부대는 수색구조, 응급복구지원, 응급의료 · 구호 · 방역, 인원 및 물자의 긴급수송, 위험물의 제거 등 지원

다. 관련부서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재난 규모별 분야별로 지원협력 행동요령을 작성 활용
- 방재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 파견요청

- 지진재난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도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파견요청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군 CP개념을 도입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 재난현장 상황파악,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3)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 전기, 가스, 통신, 소방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자 확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자 확보

4) 경비 · 방범 및 교통대책

○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 경비본부 설치 운영

○ 관할 경찰서장은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 실태 파악, 대피유도, 구조 · 구난 등 실시

○ 지진피해 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전개

○ 관할 경찰서에서는 1·2단계로 구분하여 교통규제지역 설정 운영

- 1단계 : 지진발생과 동시에 통제선을 설치 규제
- 2단계 : 피해상황에 따라 점차통제선 설치 확대

5)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긴급 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긴급도로 개설

○ 수송차량 등의 확보

6)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처리

○ 분뇨처리

○ 지장물의 제거

○ 방역대책

○ 실종자 수색처리

7) 2차 재난 방지대책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 보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 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8)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 지진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환자수송 등을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본부(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119구급대와 항공대, 의료기관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초동의료체제 구축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중상자 후송 대책 수립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수립

9)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 주민대피 유도

○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고령자·장애인의 특별관리

10)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음료수의 공급계획

○ 비상급수대책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생필품 공급계획

○ 식료비축계획의 수립

11)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할 응급임시주택 예정지 사전 지정

○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시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12)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하수도 시설

○ 전기 및 가스시설

○ 통신시설

○ 공공시설 응급 및 복구계획

13) 교통수송 활동

○ 피해상황, 긴급 및 중요도를 고려한 교통규제, 응급복구, 수송활동 실시

- 인명의 안전, 피해확대방지 및 신속한 응급대책을 고려한 수송활동
- 긴급수송로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금지 등 교통규제
- 도로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장해물 제거, 응급복구 실시

○ 긴급수송 관계기관은 연료조달 및 공급체제 정비

14) 상담 및 민원기구의 설치 운영

○ 지진관련 정보 제공과 지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 피해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간이민원창구 설치

4. 복 구 대 책

가.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을 결정

○ 피해지방자치단체가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정부는 이를 지원)

나. 피해조사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조사단 편성·운영

- 건축시설 분과위원회 : 일반주택, 공동주택, 대형빌딩, 문화재, 공공건물 등
-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량, 철도(지하철), 고가도로, 터널 등
- 상·하수도시설 분과위원회 : 취수·정수·송수, 배수시설 등 상수도분야, 우·오수관로, 종말처리장 등 하수도분야
- 전기, 가스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가스공급설비 등
- 직무범위
  · 지진피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의 수립
  ·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지진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 지진재난경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다. 복구비 지원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 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8억원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 15억원이상
- 인구 30만미만의 시 또는 군 : 10억원이상

마.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바.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접수

○ 외교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그 종류, 규모, 도착예정일시, 장소 등을 통보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의 접수 가능성에 관해서 검토

○ 접수를 결정한 경우 해외에서의 지원에 대한 접수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을 제의한 국가, 관계부처 및 피해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참고자료

우리나라 지진해일 내습 현황

1. 1940. 8. 2 00시 일본 북해도 외해 지진(규모 7.5)

○ 해일높이 : 약 2m 정도

○ 피해지역 : 삼척, 울진, 울릉도 등 동해안 지역

○ 피해상황 : 가옥피해 56동, 어선피해 6척

2. 1964. 6. 16 04시 2분 일본 新潟 외해 지진(규모7.5)

○ 해일높이 : 부산 32㎝, 울산 39㎝

○ 피해지역 : 없음

○ 피해상황 : 없음

3. 1983. 5. 26 11시 59분 일본 아키다현 외해 지진(규모 7.7)

○ 지진해일 발생 : 1시간 30분 ~ 1시간 50분동안 10분 주기로 발생

○ 해일높이 : 울릉도0.8~1.3m, 묵호1.5~2m, 속초1.23~1.56m, 포항0.52~0.62m

○ 피해지역 : 울릉도, 삼척, 울진, 동해지역

○ 피해상황 : 인명 5명, 가옥피해 44동, 어선피해 81척 등(피해액 3억7천만원)

※ 간만의 차가 최고 6m까지 되는 조수현상까지 겹쳐 피해증폭

[아키다 지진 해일 전파도 (진앙 : 40.4°N , 139.1°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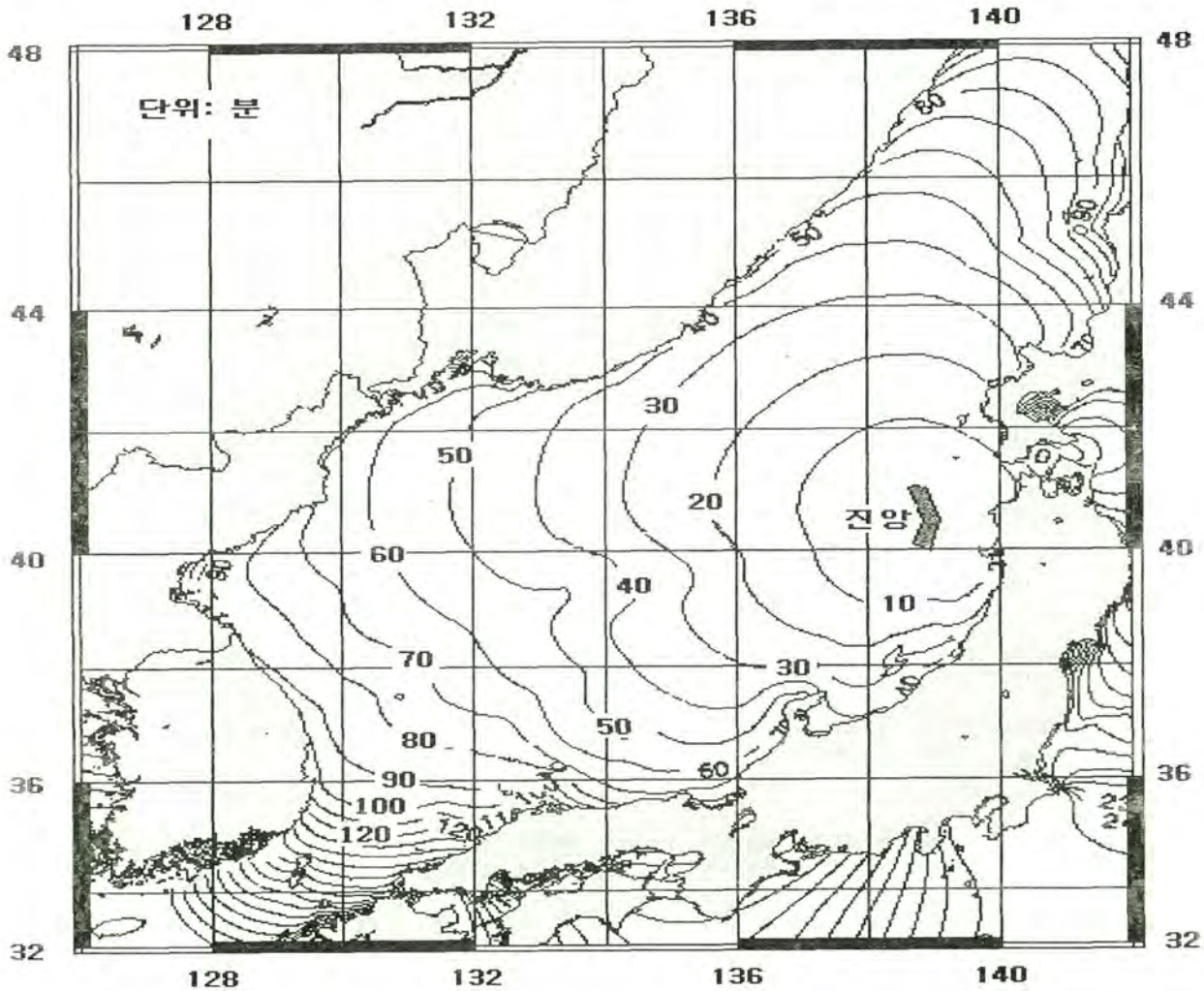

4. 1993. 7. 12 22시 17분 일본 북해도 오쿠시리섬서 외해 지진(규모7.8)

○ 지진해일 발생 : 1시간 30분 ~ 3시간동안 10분 주기로 발생

○ 해일높이 : 울릉도0.89~1.19m, 속초1.3~2.03m, 동해2.13~2.76m, 포항0.76~0.92m

○ 피해지역 : 울릉도, 삼척, 동해지역

○ 피해상황 : 어선피해 35척, 어망 3,000여통 등(피해액 3억 9천만원)

※ 기상청에서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하고, 재해대책본부의 사전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도 줄었음

[홋카이도 오쿠시리 지진해일전파도 (진앙:42.8°N,139.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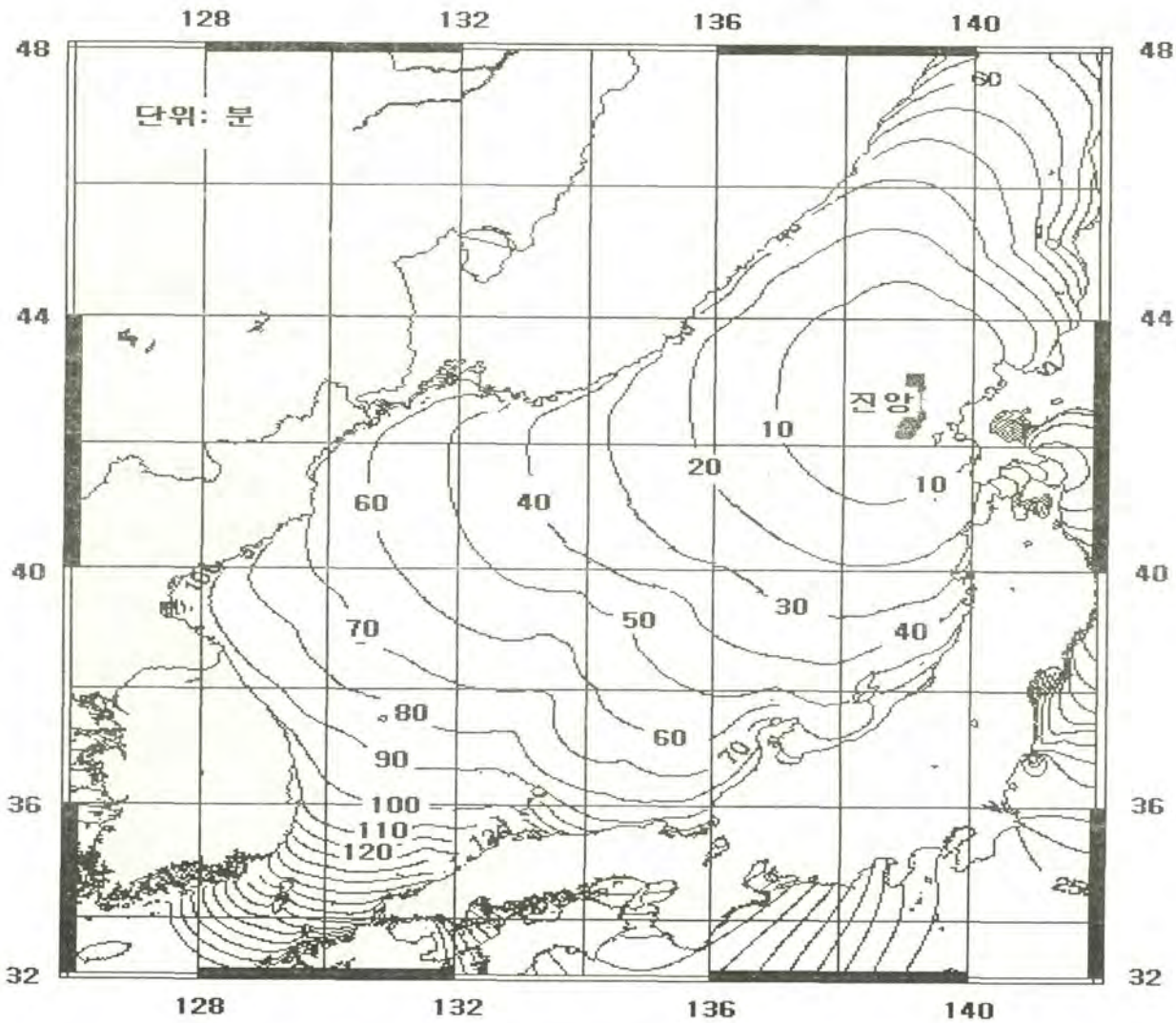

제 5 장 해일(폭풍)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태풍이나 온대성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에 대비 대국민 예·경보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및 저지대 등 해안시설물의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이변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03년에는 남해동부지역에 해일을 동반한 태풍(매미)이 내습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 따라서, 해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해안제방과 수문의 정비 등의 구조적인 면과 경계, 피난체계의 강화라는 비구조적면이 일체가 된 종합적인 대책 강구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매립지 등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강구

○ 해일대비 대피장소 지정 및 연안방재훈련·교육·홍보 강화

○ 해일재비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나. 추진전략

○ 민·관·군이 일체화된 해일대비 종합훈련체계 구축

○ 해안과 해안부근의 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 단계별 행동요령 작성 보급·활용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연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 방 대 책

가. 해일 예방대책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해안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원

○ 매립지 등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진

-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
- 각급 행정기관의 재해영향성 검토 가능 행동요령 작성·활용

○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다중이용시설, 해안지역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2) 예·경보체계 강화 지원

○ 해일 내습 이전에 관련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일고를 추정,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3) 해일대책 강화 지원

○ 월류한 해수가 장시간 저수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대책 동시 강구

○ 방재시설 정비 외 유지·관리방안 마련

○ 해안과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 항만, 어항은 이용시설의 경제성과 안정성 고려

○ 임해단지의 재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활용, 해일에 강한 토지계획 추진

○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배치와 구조, 도시기반의 배치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임해단지에서는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고 지하철 등의 지하공간에는 방조문 등의 침수대책 마련

○ 항만, 어항에 있는 선박과 어구 등의 유출에 의해 배후지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

4) 해안시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지원

①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재사업 추진

○ 항만시설의 확충

- 방파제 축조, 표지시설 보수, 연안침수방지시설, 갑문시설 개보수 등

○ 방조제시설 개·보수 실시

-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 어항시설의 확충

- 국가 및 지방관리 방파제 축조 보강

· 국가(1·3종어항) 관리, 지방(2종어항) 관리

② 어선 및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지원

○ 어선피해 경감대책

- 노후어선 대체 추진
-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입출항통제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민·관·군·업체간 구난체계유지
- 구난·구조장비의 현대화 추진
- 어선피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기상악화 예상시 채취가능한 양식물은 사전채취로 유실 방지
- 닻, 부자, 수하연 결속상태의 정기점검 보수 및 보강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과 피해방지대책 수립
-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5)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실시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평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용

6) 해일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및 지원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 재난의 발생 등 자연현상 그 자체의 이학적·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인간행동이나 정보전달 등 사회학적분야에 관한 연구도 병행

7)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및 지원

○ 관련 부처·기관별로 해일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은 해일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8) 고조시 폭풍해일 예방대책 지원

○ 사전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 소규모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 해안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주민 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우려 방조제 보강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피해발생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위험시설별 장비 및 인력 지정 관리

○ 항구대책사항

-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흔적조사 실시
- 위험방조제 개보수 5개년계획 수립 추진
- 사설방조제에 대한 일제점검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 방조제 복구에 대한 설계, 기술지도 책자 발간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해일대비 연안지역 훈련 실시 지원

○ 지역 및 직장 등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해일발생을 가정한 연안지역 훈련 실시

- 경계순찰훈련, 정보전달 훈련, 피난훈련, 피해자 탐색구호훈련, 의료구호훈련 등 실시

○ 관계부처 주관으로 관련기관별 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응급복구 등 훈련실시
-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훈련 실시

2) 지역 자율 방재단 시범운영 실시

○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기본방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 기 능

-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 추진계획

- 시범사업실시 : '05. 4월
- 한국형 최적모델 발굴, 전국확대실시 : '06년 이후

다.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가) TV/라디오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운영

○ 시험방송 실시

- 기 보급된 TV재해방송용수신기 우기전 시험방송 실시
- 라디오 재해경보방송 시범사업 우기전 시험방송 실시

○ 추진계획

- TV/라디오 재해경보방송수신기 일제점검·정비 및 시험방송 실시 : '05. 4~5월
- 라디오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시범운영결과 분석 : '05. 11월

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재난·소방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이재민관리시스템 개발 및 부처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 국가안전관리 관리자용 시스템 개발
- 외부사용자 접속시스템(VPN) 개발 및 장비도입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난정보 전파
- 사고지점 주민 및 민간인 대피용 시스템 구축 등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 3
- 사업추진 : '05. 4 ~ 11월
- 정보시스템 검수 및 보급교육 실시 : '05. 11 ~ 12월

다) 재해·재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개 요

-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대 상 : 1개군 부여군

○ 사업내용

- 재해 · 재난 종합상황실 구축 (영상, 음향시스템 등)
- 상황관제용 인프라 구축 (우량계, 웹카메라 등)
- 상황실 인테리어 및 전산장비 도입 등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 3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05. 4 ~ 6월

2) 해일대책 연구 및 자료관리

○ 해일대책에 관한 연구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 재난유발 자연현상의 이학적 · 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인간행동 · 정보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한 연구도 수행

○ 자료의 보전

- 해일 발생시 각종 자료의 보전(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 등) 및 자료보관체제의 정비
- 시설물관리자는 원활한 복구를 위해 미리 중요한 소관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정비 및 피해방지

3) 연안방재지도의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 국가, 시도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태풍해일에 대한 연안방재지도 작성

○ 연안방재지도의 중심이 되는 위험도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하기의 전제조건을 기본으로 범람해석을 행하고 최대 침수심, 침수최단 도달시간을 추정

○ 작성된 연안방재지도를 주민에게 보급하고 사회상황의 변화와 계산 기술의 진보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개선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하 표와 같은 항목을 지도상에 기재

피난활용정보	재해학습정보
<침수정보> · 침수예상(침수예상구역, 예상침수심 랭크, 예상도달시각 등) · 침수실적(최대침수구역,최대침수심) · 보전시설정비상황(제방 호안높이/계획 등) <피난정보> · 피난이 필요한 지역(위험도 랭크, 구호자 시설, 지하철, 지하상가의 위치) · 피난장소(고조발생시에 적절한 피난장소,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 · 피난경로 및 위험장소(피난경로, 토사재해위험지역) <그외> · 피난기준(피난명령등의 발령기준, 자주 피난의 중요성 등) · 정보의 전달수단(주민에게의 정보전달 경로 및 수단, 정보입수방법) · 작성주체(작성주체의 명칭, 작성년월 등) · 그 외(피난시 주의사항, 방재메모 등)	<학술정보> · 해일발생의 메카니즘 (기상요인, 지형적특징) · 해일의 위험성(범람형태, 피해의 내용, 복합범람, 복합재해) · 기상에 관한 기초지식(기상용어, 강우 등) <지역정보> · 과거의 해일정보(기상, 수문, 침수피해, 피난상황) · 지역의 역사(지형형성사, 시가지형성사, 재해사) <해설> · 해일 재해지도의 설명, 사용법 · 방재정보의 전달경로 <그외> · 상시, 해일시의 주의사항 · 피난장소에서의 생활기준 · 부가정보

라.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 · 평가 실시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 평가대상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 대응 및 복구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용실태

○ 추진계획

-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용역 실시

·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평가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

※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04. 11~'05. 3월

- 용역결과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지침 작성 통보 : '04. 4월

-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재난관리체계 평가 실시('05년 상·하반기)

마. 관련부서 예방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해안 비상대처계획 마련

○ 매립지 등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진

2) 예·경보체계 강화

○ 해일 내습 이전에 관련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일고를 추정,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3) 지역관계자가 동참하는 방재대책

○ 주민, 해안이용자, 기업, 행정이 해일위험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일체적으로 대처

4) 동시발생 재난에 대응

○ 호우에 의한 내수범람과 산사태, 토사 재난 등 해일 발생시에 동시에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을 고려

5) 피해형태의 변화에 대응

○ 인구, 배후지 자산의 집적 등에 더하여, 지하시설로의 해일침수 등 근년의 피해형태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

6) 해일대책 강화

○ 월류한 해수가 장시간 저수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대책 동시 강구

○ 해안과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등

7) 해안시설,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①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재사업 추진

○ 항만시설의 확충, 방조제시설 개·보수 실시

○ 어항시설의 확충

② 어선 및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어선피해 경감대책,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기상악화예상시 채취가능한 양식물은 사전채취로 유실 방지

8) 해일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9)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처·기관별로 해일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10) 고조시 폭풍해일 예방대책

○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 운영

2. 대 비 대 책

가. 민간 현장모니터위원 활성화

○ 목 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을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위원으로 확대지정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 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등 수시순찰, 이상유무 확인 · 신고등

○ 확대지정대상

- 지역거주 통 · 리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구별 확대 위촉 · 운영 83명

나.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 · 관리 실태점검

○ 풍수해대책에 준함

다. 이재민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 · 관리 등 실태점검

○ 풍수해대책에 준함

라. 방역물자 및 침수방지용장비 확보 · 비축 실태점검

○ 풍수해대책에 준함

마. 민 · 관 · 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목 적

- 재난예방 물자 · 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 제고

○ 근 거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바. 관련부서 대비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경계활동체제의 확립

○ 주위계, 파랑계 등 정비 및 주민, 어선 등으로부터 통보 접수체제 정비

○ 경계순찰을 위한 사전준비 및 장소와 경로의 선정

2) 피난조치활동체제의 정비

○ 상황 전개에 따라 피난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방식

○ 피난 유도, 지시를 위한 통신 등 정보전달체제 정비

3)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4)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사전 점검

5)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가) 재난정보 현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군·구별 모니터위원 확대지정 운영

○ 상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나)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및 통신수단의 확보

6) 2차재난 방지대책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보존 시설을 점검하고 재난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보유 및 배수대책

7) 구조·구급 대책 수립

○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구조용 장비 및 자재확보

○ 유관기관간의 상호 관련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정비

8) 긴급의료 및 긴급수송 대책 수립

○ 응급구호용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 비축, 재난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재난발생시 구급의료 활동

○ 재난시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다중화, 대체성을 고려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파악·조정, 긴급수송 네트워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

9)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급

가) 이재민 수용계획

○ 대피장소, 대피로를 미리 지정,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유도 계획 수립

○ 대피장소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등 대피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정비

나) 구호물자 공급

○ 비상식량 조달 및 공급활동계획 수립

○ 비축거점 및 수송거점 지정계획 수립

3. 대 응 대 책

가. 재난발생 직전

1)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가) 근무체제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나) 실무반 편성 : 풍수해대책의 (대응대책) 실무반편성과 같음

다) 실무반 준수사항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근무복(상의)을 착용하고 근무시간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에는 반의 장에게 보고)

○ 실무반원으로서 실무반의 장 지시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수행

○ 관련 중앙 및 지방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 소관부서의 전화번호 · 담당자 등을 정확히 파악

○ 중식 및 석식은 실무반별 2교대 식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라)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비상지원반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주로 지자체별 소관부서를(도로 유실 : 도로과, 농경지 매몰 : 농산과) 최대한 활용, 상황파악

○ 자원봉사지원반

- 시·도,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단체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원봉사자 정보 수집 및 전달

〈시·군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지역 ·필요인원 및 애로사항 파악

〈시·도 자원봉사센터〉

⇒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상황 취합 및 중앙대책본부 보고

○ 구조 구급반

- 시·도 소방본부, 시·군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구조구급상황 파악 및 자료 제출

○ 행정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각 실무반에서는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총괄반에 제출

○ 상황총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반의 장에게 협조요청

※ 전화사용은 최대한 자제(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료집계가 불일치 할 경우 사용)

마) 실무반별 근무수칙 : 풍수해대책에 준함

바) 부처청 파견근무자 주요임무 : 풍수해대책에 준함

2) 재난현장「현장상황관리관」파견

○ 목 적

- 재난발생 예견 또는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상황 및 중앙정부 행·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파악, 재난상황대처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구 성

- 재난발생 예견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파견을 위해 권역별 고정편성 실·과를 대상으로 미리 파견순서 지정
- 실과별 파견자는 2명(반장 1, 반원 1)으로 구성
  · 반장은 5급이상, 반원은 6급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실과별 실정에 맞게 편성

○ 임 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애로점 파악 및 상황관리지원
- 중앙종합상황실과 Hot-Line 구축, 재난에 신속 대처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을 위한 상황파악 등 자료 제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원
- 대규모 피해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지원단 운영 총괄

○ 운 영

- 운영기간 : 파견일 ~ 상황종료시까지
- 근무장소

〈피해발생전〉

☞ 피해예상지역의 점검·정비 등 재난 사전대비사항 지도

〈피해발생시〉

☞ 피해발생현장에서 애로점 및 중앙지원사항 파악보고

- 보고체계
  · 자연재난 : 정기보고(오전 9시, 오후 6시)
  · 인적재난 : 매시간 보고하되 필요시 수시보고

※ 특별한 사항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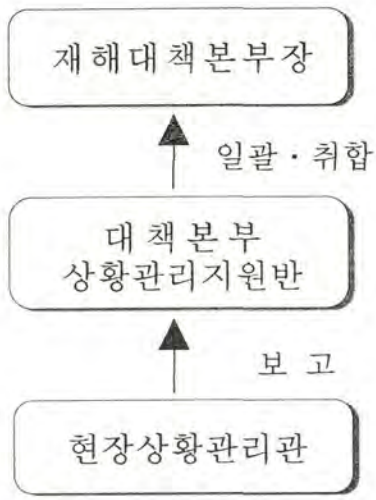

- 수시·정기 교육

· 현장상황관리관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정기 교육 실시

※ 자연재난은 수습대책과, 인적재난은 특수재난관리과에서 교육 전담

3) 상황판단회의 개최

○ 근 거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목 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구 성 : 종합상황실장, 재난관련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 내 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나. 재난발생 직후

1)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사전 파견

·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 중앙상황실과 현장 CP간의 Hot-Line 구축,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재난발생시 상환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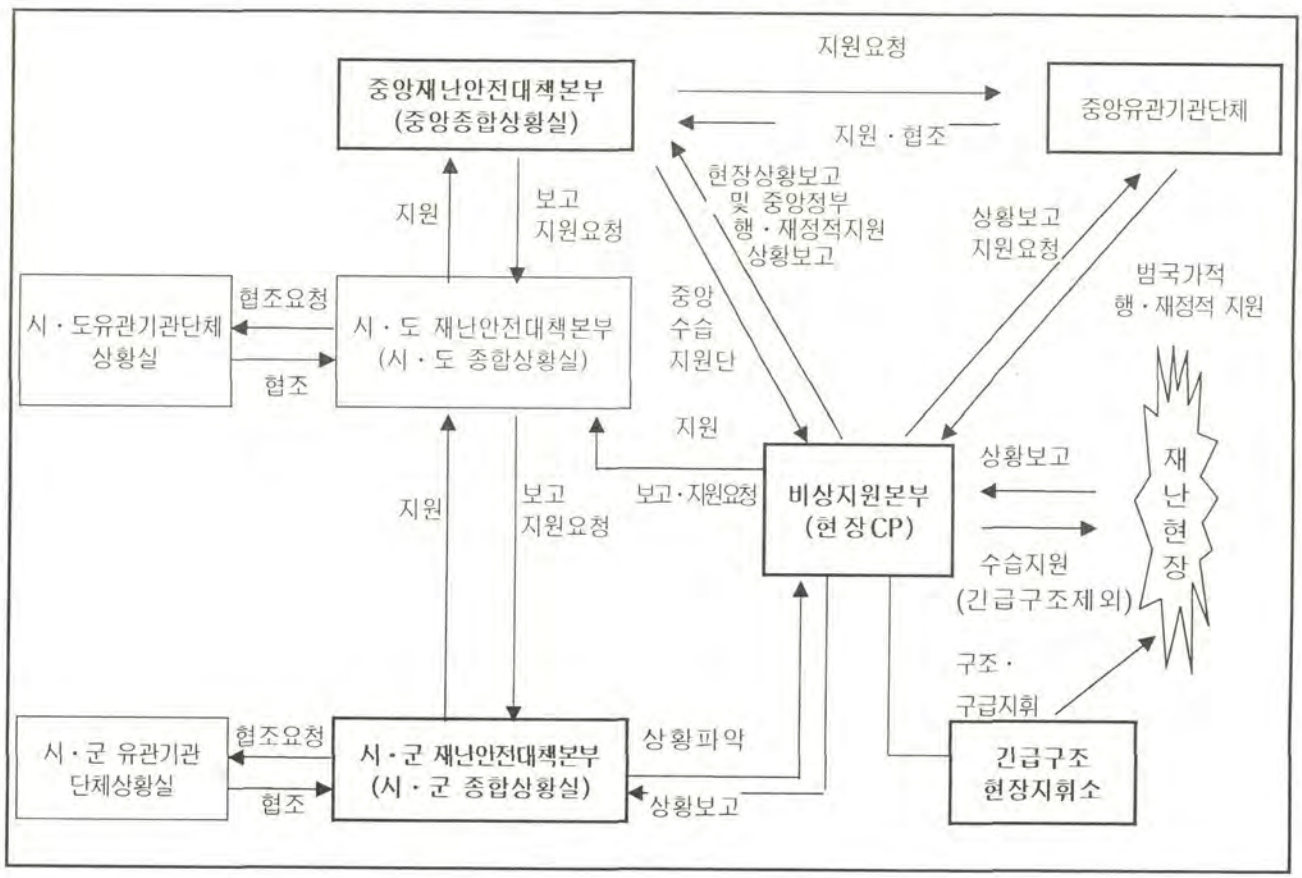

2) 구조 · 구급 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 · 구급활동 지원

3) 피해상황 파악 · 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 · 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다.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1)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사망 ·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2)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3)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 · 하천 · 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 현황

- 협약체결일 : '04. 9. 24
- 가입단체(7)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평상시]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등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비상시]

-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마. 관련부서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가) 해일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나)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의 대피

-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 조치 사항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3)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4)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5)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등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이 휴대 등

6) 의료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7)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8)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9)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가)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나)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 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10)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 대상지역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나)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11) 시설물 응급복구

가)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 부대)에 지원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 등

○ 전기시설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

-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라)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재해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등

○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철도시설

-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12)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13) 청소 및 방역

○ 청 소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14)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확보 등

15)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4. 복 구 대 책

가.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1)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긴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선지원 후정산』복구지원체제 정착

2)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나. 복구의 종류

1) 응급복구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2) 항구복구

○ 원상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대상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피해조사

○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특별시의 구 : 피해액 28억원 미만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 : 피해액 15억원 미만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피해액 10억원 미만

- 조사기관 : 시·도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구가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가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도나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

○ 자치구 및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10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 이상임(단, 도시개발사업 통신 및 항만시설은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중 1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 동일한 재해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한다.

-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생계보조,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 선박 및 어망·어구복구, 수산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 입식

○ 국고의 추가지원기준(국고전환액)

-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총액이 특별시의 구 70억원,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37억5천만원, 인구 30만미만 시군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지원한다.

구 분	국고추가지원금액		
	재정력지수 0.3미만	재정력지수 0.3~0.9미만	재정력지수 0.9이상
특별시의 구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80%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65%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50%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시군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80%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65%	(지방비총부담액-37억5천만원)×50%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80%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65%	(지방비총부담액-25억원)×50%

2) 특별재난지역

○ 지원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70조

○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 전국단위 : 총재산피해액 3조원 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6,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0명 이상인 경우
- 시도단위 : 총재산피해액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3,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단위 : 총재산피해액 3,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6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000명 이상인 경우
- 읍면동단위 : 총재산피해액 6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 피해액 12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2) 선포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

대상지역 / 선정기준	전국일원	시도일원	시군구 일원	읍면동 일원
총 피 해 액 (사유재산피해액)	3조원이상 (6,000억원이상)	1조 5천억이상 (3,000억원이상)	3,0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이 재 민 수	50천명이상	30천명이상	8천명이상	1천6백명이상

※ 총 피해액 및 사유재산피해액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3)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과 거 선 포 현 황 >

○ 제15호 태풍루사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매미』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3.5기간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

바.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 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아.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피해조사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 복구비 국고추가지원방법 개선
  · 지방비 국고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수해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 현행 시설별·부처별·지구별 집행·정산제도를 사업비가 부족한 타 지구에 활용토록 제도화
- 수해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제도화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환류기능 강화

자.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시행

○ 홍수, 태풍, 설해 등 자연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실시, 국가예산 운영의 안전성 제고, 주민의 자발적 방재의식 고취 등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시행

○ 관계법령(풍수해보험법 등) 제정으로 제도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주체, 보험가입·피해평가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국가보험제도의 운영 등을 명시

제 6 장 황사대책

제 1 절 황사의 개요

1. 황사의 정의

○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 황하중류의 황토지대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황색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지는 난류로 상층으로 불려 올라가 공중에서 부유하거나 이 먼지가 장거리 수송도중 지표에 서서히 낙하하는 현상

○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1~10㎛이며, 입자의 크기에따라 수시간에서 수년정도 공중에 부유(1㎛=1백만분의 1㎜)

○ 발원지에서 배출된 황사량을 100(%)라 할 때 보통 30(%)정도가 발원지에 재침전, 20(%)는 주변 지역으로 이송, 50(%)는 장거리 이송되어 우리 나라 및 일본에 영향을 주며, 태평양에까지 침적됨 (1회 100~200만톤 이송)

2. 황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발생시기 : 3월~5월

○ 다발지역 : 서울·경기 및 서해안 지역

○ 과거 발생현황

- 1971~2002까지 우리나라에 총 185일의 황사가 발생
- 이중 105일이 1991년 이후 발생하는 등 중국의 사막화 가속으로 1990년 이후 황사발생 일수가 계속 증가추세

○ 부정적인 영향

- 태양 빛을 차단하여 시계를 악화시킴

※ 항공기 이착륙시 시계악화로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 및 엔진손상 유발

- 농작물, 활엽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지장을 줌
- 반도체 등 전자제품 불량률이 증가(평소의 3~4배)
- 빨래, 음식물 등에 부착, 악영향을 미침
- 구제역 등 바이러스의 전파 요인을 제공(2000년 영국 구제역)
- 중국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 산화질소 등 유해물질 및 중금속 함유로 호흡기, 눈질환 등 유발

○ 긍정적인 영향

- 태양에서 복사열 흡수로 냉각효과 발생(지구온난화 방지)
- 산성비 및 산성 토양의 중화효과(적조현상 해소 등)

※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해서는 오히려 산성작용이 가중되기도 함

-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 제공으로 생산력 증대

3. 황사의 발원지 및 발생추이

○ 중국 황하유역 및 타클라마칸 사막, 몽고 고비사막 등으로

-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

○ 연간 황사발생일수는 2.8일('70년대), 3.9일('80년대), 7.7일('90년대), 27일(2001년), 16일(2002년)로 나타남

○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5,000㎞이상) 영향이 적은 편임

○ 만주에서 발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나, 한반도에서 가장 근접한 발원지로 황사발원시 가장 빨리 영향을 줄 수 있음.

<최근 3년간 (2001~2003) 황사발생 현황>

구 분	서 울	강 릉	대 전	대 구	전 주	광 주	부 산
합 계	16 (46)	15 (41)	15 (41)	15 (36)	17 (37)	14 (36)	13 (32)
2001	7 (27)	7 (24)	7 (24)	8 (22)	10 (23)	7 (21)	8 (21)
2002	7 (16)	6 (14)	6 (15)	5 (12)	6 (13)	6 (14)	5 (11)
2003	2 (3)	2 (3)	2 (2)	2 (2)	1 (1)	1 (1)	- (-)

※ 상단은 발생 횟수, 하단( )는 발생 일수

4. 역사속의 황사기록

○ 각종 역사기록에 흙비(土雨), 흙안개(黃霧), 피비(黃雨) 등으로 표현되어 최소, 1,400년전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신라 진평왕(서기 627년 음력 3월, 삼국사기)

- "큰 바람이 불고 흙비가 내렸는데 5일간 계속되었다"

(春三月 大風雨土 過五日)

○ 조선태조(서기1406년 음력4월)

- 東北面 端州(현재 咸鏡南道 端川)에 토우가 내려 14일간 계속됨.

○ 조선 성종(서기 1478년 음력 4월)

- 백성들이 근신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금주령을 내림

* 자연현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위정자의 잘못이나 부덕으로 인식

○ 세종 재위기간(33년) 18회, 성종(26년) 35회, 연산군(13년) 16회, 중종 (39년) 51회 등 연평균 2회이상 발생

5. 우리나라의 황사관측 조건

○ 발원지에서 먼지 배출량이 많아야 함

- 발원지에 강수량이 적고 증발이 잘 되며 풍속이 강한 기상조

건 (겨울과 봄)이 되고, 봄철 해빙기에 토양이 잘 부서져 부유하기 적당한 20㎛ 이하 크기의 먼지가 다량으로 배출(연 총 배출량의 반 이상)되도록 지표면에 식물이 거의 없어야 한다.

○ 발원지로부터 황사가 이동해 올 수 있도록 강한 편서풍이 불어야 함

- 발원지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까지 황사가 수송되오기 위해서는 약 5.5㎞ 고도의 편서풍 기류가 우리나라를 통과하여야 한다.

○ 상공에 부유중인 황사가 우리나라 지표면에 낙하하려면 적절한 기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

- 수송된 먼지가 우리나라 지표면에 낙하하기 좋은 기압배치는 고기압이 위치하여 하강기류가 발생할 때이다.

※ 위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나라에 황사현상이 건조기인 봄철, 특히 4월에 발생한다.

제 2 절 황사발생 빈도

1. 최근의 황사발생 빈도의 증가이유

○ 매년 사막화 면적의 급속한 확대

- 2000년의 경우, 1999년에 이어 50년만에 최저수준의 강우기록 및 고온 건조한 날씨의 장기간 지속으로 지표토질이 바람에 날리기 쉽도록 푸석푸석해짐.

2. 중국의 사막화 현황

○ 사막화된 면적은 약168.9만㎢(전국토의 17.6%)로서 신장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섬서성, 내몽고자치구,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三北(西北, 北, 東北) 11개성에 주로 분포

○ 신장자치구의 타마르라칸사막(33만㎢)과 같이 고대로부터 형성된 사막지역 이외에 사막화지역이 매년 확대

- 매년 사막화 확장속도는 60년대 이전 1,560㎢, 70~80년대 2,100㎢, 현재는 2,460㎢로 현저히 급진전되고 있는 양상임.

3. 중국 사막화 발생의 원인

○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해당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고 자연환경 자체가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으나 과잉목축, 초지와 임야의 무분별한 개간, 약재 및 특용작물의 과잉재비, 해당지역 수자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되는 양상임.

4. 사막화 진전으로 인한 피해현황

○ 사막화로 인하여 초래된 퇴화 초지면적은 약 105만㎢(전국 초지 총면적의 56.6%), 퇴화경지 면적은 7.7㎢(전국 퇴화경지 면적의 45.5%차지)로서 이는 양사육두수에 있어서 5,000만 마리분 감소 및 식량 300만톤 감산 으로 환산되는 수준임.

○ '99년 여름 발생한 양자강 홍수와 황화단류 현상이 서부지역 사막화에 따른 중상류 지역토사유실과 관계있다는 주장도 있음.

제 3 절 황사특보 기준

○ 주　　관 : 기상청

○ 발령권자 : 기상청장

○ 발령단계 : 3단계(황사정보, 주의보, 경보)

○ 발령시기 :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 단계별 발령기준

명 칭	발 령 조 건
황 사 정 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주 의 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경 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 4 절 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 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수시 확인	전화를 통한 확인
▶ TV의 일기예보 시청 ▶ 라디오의 일기예보 청취	▶ 기상청 www.kma.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 기상청 (02) 841-0011 (02) 831-0365 국번없이 131 (타지역 기상정보/지역번호+1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851, 1853

황사 발생전

가)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다)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황사 발생중

가)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다)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황사 종료후

가)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다) 축사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 · 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대상가축 및 의심증상

- 대상가축 : 소, 양, 염소, 사슴, 돼지 등 우제류동물(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 구제역, 감염가축의 의심증상
  - ·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 ·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 코, 입, 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 또는 궤양형성
  - · 젖꼭지에 수포, 가피, 궤양이 형성
  - · 발굽(지간부)에 수포, 가피 및 궤양으로 발을 쩔뚝거리다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 등

※ 기타 사업장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자재, 제품 등은 세척

(산업피해신고 : 02-2110-5258)

제 7 장 적조대책

제 1 절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 사전 대비태세 완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 전개
○ 적조피해 최소화로 어업인 재산보호 및 소득증대

1. 추진방향

○ 적조생물의 예찰강화 및 신속한 예보체제 확보
○ 적조발생 단계별 체계적인 피해예방대책 추진
○ 사전 예방적인 적조대책의 중점 추진

2. 추진과제

○ 적조발생 조기파악을 위한 예찰·예보활동 강화
○ 적조피해예방 교육·홍보 적극 추진
○ 적조방제장비 점검 및 어장관리 지도 강화
○ 적조발생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태세 완비
○ 적조방제장비 및 인력 최대동원 방제능력 확보
○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 구축
○ 적조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
○ 연안어장 환경개선 적극 추진

제 2 절 세부추진 계획

1. 적조 예찰 및 예보 강화

○ 주　　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해양수산사무소)

1) 예찰반 편성,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 예찰결과 통보

○ 협　　조 : 도, 시·군, 태안해양경찰서, 지구별 수협

○ 예찰기간 : 4~10월(7~9월 중점예찰)

○ 예찰해역 : 적조발생 우심 해역(비인만, 천수만, 보령연안)

○ 예찰방법 : 육상, 해상(선박), 항공예찰

○ 신속한 예보 및 통보시스템 운영(수산과학원)

○ 자동응답전화(ARS, 16회선), 적조정보 자동 송·수신 운용 (190개 기관)

○ 인터넷(http://www.nfrda.re.kr)으로 적조정보 신속 제공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지역방송 등 적조정보 신속 제공

○ 기술지도 및 방문 요청시 직접 현장지도(해양수산사무소)

- 인근 어촌계 및 양식어업인에게는 지방청(사무소), 도, 시·군, 수협에서 직접 전화 및 현장지도

2. 도(시·군)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군수)

○ 위　　원 : 국립 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 환경청, 태안해양경찰서, 수협, 대학, 어업인 등

○ 운　　영 : 적조특보발령으로 수산피해 우려시 회의 개최

○ 기　　능 : 적조예찰 및 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총동원 체제 구축

3. 충청남도 적조대책위원회 구성

구 분	기관·단체명	직 책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042)251-2010	당연직
위 원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	042)251-2600	〃
〃	충남대학교해양연구소	소장	042)821-6438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041)660-7711	〃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042)865-2940	〃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장	041)674-5050	〃
〃	서해수산연구소	수산연구관	032)745-0554	〃
〃	보령해양수산사무소	소장	041)933-6408	〃
〃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041)935-0250	〃
〃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041)665-1130	〃
〃	보령수협효자도어촌계	어촌계장	041)935-2536	〃
〃	서산수협간월도어촌계	어촌계장	041)667-5369	〃

4. 적조대책반 구성

<도 단위 대책반>

○ 구 성

- 반 장 : 농림수산국장
- 실무반장 : 해양수산과장

○ 기 능

- 지역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
- 유관기관간의 협조 지원체제 구축
- 적조피해방지대책 추진 및 지도감독
-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지원대책 수립 추진
- 2개시·군 이상 광역적조 발생시 현장 통합지위

○ 지원반 편성·운영

- 행정지원반 : 수산행정담당

· 인력 및 예산지원

- 적조예찰반 : 어업지도관리담당

· 적조예찰 및 예보 신속전파

· 방제활동 지원

- 어장관리지도반 : 수산자원개발담당

· 적조발생 단계별 어장관리지도

· 양식장별 양식어류 사육관리 지도

· 적조피해 복구 지원

○ 기동지원반 : 해양항만담당

· 방제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군 단위 대책반>

○ 구 성

- 반 장 : 부시장 또는 부 군수

- 실무반장 : 담당 과(국)장

○ 기 능

- 시·군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

-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조 지원체제 구축

-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동원

-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현장 지휘

- 황토확보 관리·살포, 피해 조사 및 복구

※ 시·군(읍·면)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7~10월)

1. 적조피해 예방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어업인의 적극적인 적조방제 참여 유도

- 어업인 주도의 방제체제 실시
- 의식전환 교육 및 계도(6~8월)

○ 적조의 발생원인·영향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오염물질 해양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민 공감대 형성유도
- 인터넷, 리후렛, 교육기관 강의, 언론등을 통하여 홍보
- 적조생물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적극 홍보
- 황토의 효능에 대한 홍보 강화
- 황토는 어류 및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저질 개선결 나타난 증산효과에 대하여 적극 홍보
- 어업인 적조피해예방 교육실시
  · 시　　기 : 2004. 3 ~ 2004. 10(어업인 교육과 병행실시)
  · 대　　상 : 육상수조, 가두리, 축제식 양식어업자
  · 방　　법 : 집합교육(주관 : 지방청,수협, 협조 : 시·군)
- 교육내용
  · 적조발생시 신고 및 대처요령
  · 적조발생 단계별 사육관리요령
  · 방제인력 및 어선지원 협조 사항

2. 적조방제장비 및 인력 지정 관리

○ 지정기관 : 시·군(유관기관·단체)

○ 시　　기 : 5월말까지 지정완료

○ 지정사항
- 장 비 : 굴삭기, 덤프트럭, 부선, 어선 등
- 인 력 : 시·군, 유관기관·단체(군부대 협조), 양식어업인 등

※ 지정사항 매월 점검 동원태세 완비

3. 양식어장 입식량 및 방제장비 점검실시

○ 기　간 : 2004. 6월 ~ 7월(적조발생 전)

○ 대　상 : 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축제식양식장 등

○ 방　법 : 현장방문 조사·점검

- 양식장별 어류 입식실태 및 적조 방제장비 확보 등
- 적조피해 우려해역의 양식중인 성어에 대하여는 출하유도 및 적정밀도 양식지도
- 적조경보·제거기, 액화산소, 수중모타 배치 권유 및 어장별 황토 사전 배정

※ 입식량 및 사육현황 조사(7월 말까지 완료)

- 적조방제용 황토확보 현황

시군별	확보량(톤)	적치장소	비　고
계	5,555	7개소	
보령시	2,500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살포기1대 -자연황토
서산시	700	서산시 부석면 창리	-자연황토
서천군	50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	-살포기1대 -가공황토
홍성군	125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자연황토
태안군	180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가공황토
당진군	2,000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자연황토

4. 수산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합동피해조사반 편성

- 주　　관 : 시·군
- 참여기관 : 지방청(해양수산사무소), 수산연구소, 수협, 어업인 등

○ 조사방법 : 피해발생시 합동조사(실사)후 피해어류 수거·처리

- 폐사체 신속처리 방안 강구(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계약)
- 폐사체의 해상투기 가능토록 협조 요청(해양정책국)

※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軍 인력 등 지원체제 확보

○ 복구 지원내용

- 업무체계 : 복구실시 지침(해양수산부) → 복구계획서(시·도)→ 복구비 배정(해양수산부)
- 근　　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관계규정,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 시·군별 3억원이상 피해 국고지원 (3억 미만 : 시·도 자체복구)

- 직접지원 : 종묘대, 죽은 양식물철거비
- 간접지원 :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 피해복구비 감액 지원

- 재해대책 명령서 발부시 명시(시·군)

·행정기관의 권고, 지시사항 미 이행 경우

- 육상양식장의 예방·관리 소홀로 피해 발생 경우

·양식장 허가기준에 적조방제방비 비치 의무화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5. 적조발생 예방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환경부서 협조)

○ 어장정화사업 추진(425ha/343백만원)

○ 적조발생 원인인 질소, 인 처리시설 보강(환경부서 협조)

○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451톤/1,353백만원)

○ 지속적인 해양정화활동 전개(바다 청소의 날, 1사1연안 가꾸기)

6. 양식어장 개발·관리 강화

○ 약식어장 개발 억제(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

- 육상양식장시설 기준강화(신고→허가제)
- 재개발 양식장 면적 축소

·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김, 어류양식장을 동일 품종으로 재개발하는 경우 20%이내에서 어장면적 축소 개발

- 재해상습 발생수면 신규개발 억제

· 최근 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3회이상 발생 어장으로 재해복구비가 지원된 어장은 양식장 재개발 금지

○ 양식어장 관리강화

- 불법양식 어업의 지속적 단속실시
- 적조에 대비한 어류 양식장 개발 및 이설

· 내파성 가두리, 침하식가두리 시설지원
· 양식생물의 예비수조 등 분산수용 시설확보
· 적조피해 안전지역으로 임시이설 승인

- 저오염 고효율 배합사료 급이 확대 추진

· 생사료 및 습사료 사용규제 제도화

- 양식어장 환경오염도 조사

·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 환경용량 산정 추진

- 어장휴식년제 시범 추진

· 오염심화해역에 '05년부터 시범실시 등 단계적 추진

7.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 구축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무소), 서해수산연구소

- 적조 동태조사 및 적조예찰반 운영
- 적조생물 밀도 분포범위 등 발생상황 조사분석
- 적조상황파악 전파 및 어장관리지도
- 적조방제 연구, 적조피해 방지교육,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 태안해양경찰서

-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 헬기, 선박 등 방제장비지원 협조

○ 금강유역환경청

- 육상 오염물질 해양유입 지도·단속
- 연안지역 오염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

○ 수 협

-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예산 확보
- 어업인의 어장관리 지도 및 홍보
- 적조 피해방지를 위한 장비, 인력동원 협조 및 어업인 참여 지도
- 적조피해조사 및 지원대책 지원
- 적조생물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시 않고 인체에 무해함을 홍보(7~10월)

3. 기타자료

가.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종 류	규 모	적조생물 밀도(개체/㎖)	비 고
적 조 주의보	반경2~5km (12~79㎢)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편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Chattonella sp. : 50이상 Cochlodinium sp. : 300이상 Gyrodinium sp. : 500이상 Gymnodinium mikimotoi : 1,000이상 기타 편모조류 : 30,000이상 ○ 규조류 : 50,000이상 ○ 혼합형 : 편조가 50%이상때 40,000이상	○수과원장은 적조생물의 특성이나 해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 규모 및 밀도에 관계없이 적조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적조규모와 밀도는 현지상황과 적조생물에 따라변할 수 있음 ○수과원장과 지방청장(어촌지도소장)은 적조의 진행과 변화정보(유해종의 출현,이동확산)의 전파 및 어업피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때 적조속보를 발행할 수 있음.
적 조 경 보	반경5km(79㎢)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 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때	○ 편조류 :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Chattonella sp. : 100이상 Cochlodinium sp. : 1,000이상 Gyrodinium sp. : 2,000이상 Gymnodinium mikimotoi : 3,000이상 기타 편모조류 : 50,000이 ○ 규조류 : 100,000이상 ○ 혼합형 : 편조가 50%이상때 80,000이상	
적 조 해 제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 했을 때		

나. 적조방제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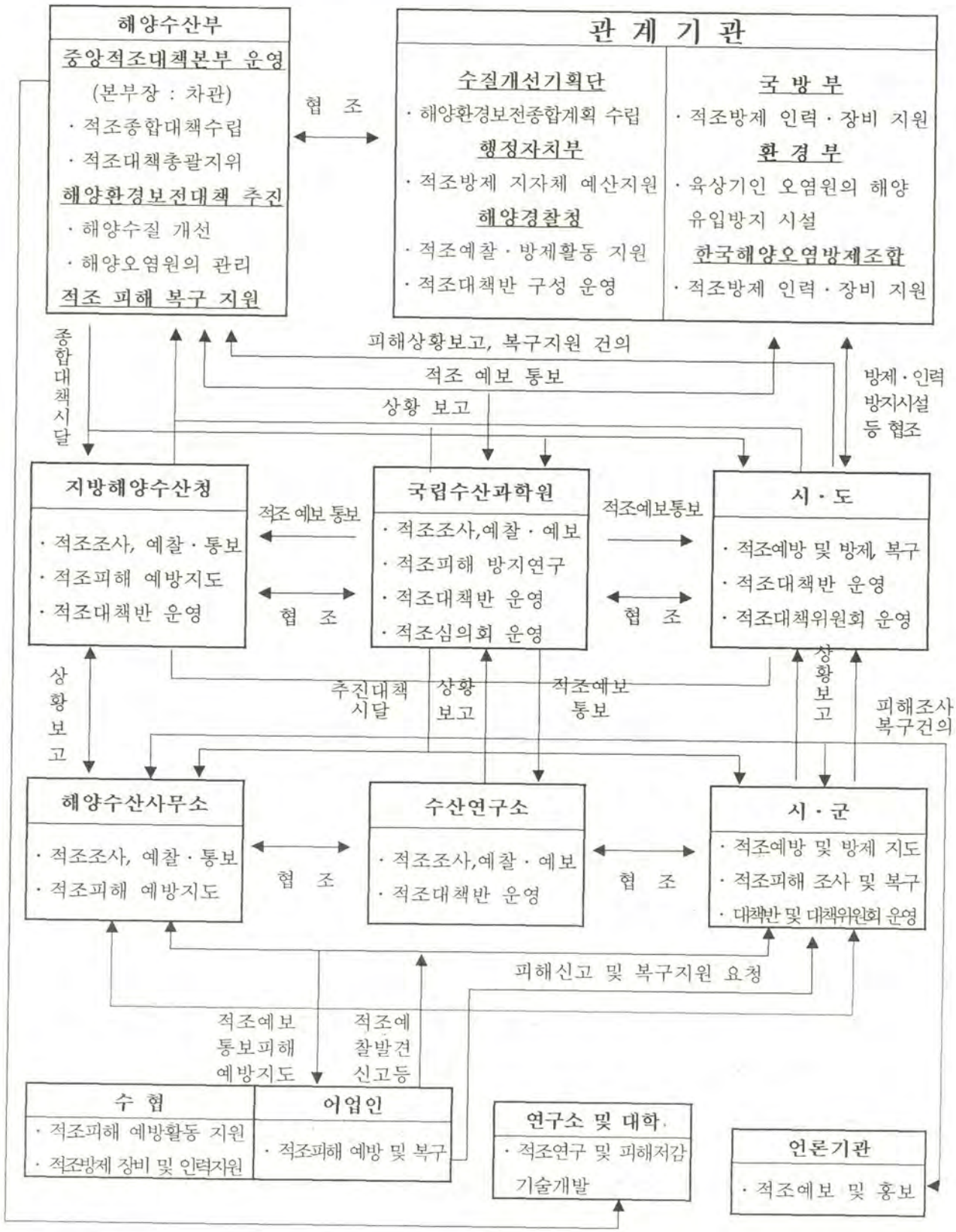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중앙적조대책본부 운영
(본부장 : 차관)
· 적조종합대책수립
· 적조대책총괄지휘
해양환경보전대책 추진
· 해양수질 개선
· 해양오염원의 관리
적조 피해 복구 지원
협 조
관 계 기 관
수질개선기획단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 적조방제 지자체 예산지원
해양경찰청
· 적조예찰 · 방제활동 지원
· 적조대책반 구성 운영
국 방 부
· 적조방제 인력 · 장비 지원
환 경 부
·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 유입방지 시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적조방제 인력 · 장비 지원
종합대책시달
피해상황보고, 복구지원 건의
적조 예보 통보
상황 보고
방제 · 인력 방지시설 등 협조
지방해양수산청
· 적조조사, 예찰 · 통보
· 적조피해 예방지도
· 적조대책반 운영
적조 예보 통보
협 조
국립수산과학원
· 적조조사,예찰 · 예보
· 적조피해 방지연구
· 적조대책반 운영
· 적조심의회 운영
적조예보통보
협 조
시 · 도
· 적조예방 및 방제, 복구
· 적조대책반 운영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상황보고
추진대책 시달
상황 보고
적조예보 통보
상황보고
피해조사 복구건의
해양수산사무소
· 적조조사, 예찰 · 통보
· 적조피해 예방지도
협 조
수산연구소
· 적조조사,예찰 · 예보
· 적조대책반 운영
협 조
시 · 군
· 적조예방 및 방제 지도
·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
· 대책반 및 대책위원회 운영
피해신고 및 복구지원 요청
적조예보 통보피해 예방지도
적조예찰발견 신고등
수 협
· 적조피해 예방활동 지원
· 적조방제 장비 및 인력지원
어업인
· 적조피해 예방 및 복구
연구소 및 대학
· 적조연구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
언론기관
· 적조예보 및 홍보

다. 적조발생 단계별, 기관별 행동요령

단계별	수산과학원	지방청(사무소)	시·도(시·군)
평 시	○적조 조사·예보 ○적조정보망 운용 ○합동예찰반 편성 ○적조방제 기술연구	○적조예찰반 운용 ○명예감시원 운용 ○적조피해방지 교육 ○적조대처요령홍보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총동원체제 확립 ○적조제거물질 확보 ○적조방지시설 점검
주의보	○적조상황 전파 ○유관기관 합동 기동예찰반 운용 ○유해성적조구제 및 효과 실험	○적조상황 전파 ○지도공무원 양식장 기동배치 ○양식장 피해예방 (조기출하,먹이량 및 밀도 조절)	○인력·장비 총동원 ○적조방제 및 지휘 ○유관기관 협조유지
경 보	○적조상황 전파 ○유관기관 합동 기동예찰반 운영 ○적조방제 지원	○적조상황 전파 ○양식장 피해예방지도 ○적조방제 지원	○인력,장비 총동원 ○적조방제 및 지휘 ○유관기관 공조유지
피 해 발생시	○피해조사 지원	○피해조사 지원 ○복구지원	○합동피해조사(주관) ○복구계획 수립

※ 환경관리청 : 육상오염원 해양유입 지도단속 강화

수 협 : 어업인의 어장관리 지도 및 적조방제장비, 인력동원

해양경찰서 : 항공예찰 실시, 방제활동 지원

라. 적조예보시 양식장 관리요령

○ 적조주의보 발령시

- 육상 수조식

1)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 농도가 낮은 층에서 취수

2)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3) 액화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 중단에 대비

4)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5)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6) 예비사육수 최대한 비축

7) 야간에는 가능한 한 취수중단, 액화산소 공급

8) 환수중단시 순환트렉식수조 등을 이용, 사육수순환 및 산소 공급

- 해상 가두리식, 수하식

1)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2) 이동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3)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4)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5) 선박(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 적조경보 발령시

- 육상 수조식

1) 여과시설(제거기, 지하해수,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하여만 환수

2)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3)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4)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 공급 최대 활용

5) 각 수조에 순환펌프나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자체순환과 낙차 등을 이용한 산소 보충

6) 취수장주변 유해성적조 발견시 먹이 공급중단 또는 급이량 조절

7) 가능한 한 어장주변 적조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 공급 완료

8) 적조로 장기간 절식할 경우 어체약화로 어병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합 급이

9) 류사육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수용

- 해상 가두리, 수하식

1) 선박 등을 활용 양식장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2) 유해성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3)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 공급조절

4)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 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수용

5)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이심 수충으로 침하 등 수심조절

6)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7) 어류, 우렁쉥이 등 육상 종묘배양장의 유휴시설에 임시수용

○ 충청남도 연안 적조발생 현황

연도별 발생시기		발생해역	적조생물
'95	7. 18	천수만	무해성
'96	6. 12	비인만	무해성
	7. 14	천수만	무해성
'97	5. 16	보령연안	무해성
'98	5. 6~5. 8	군산내항, 장항항 전면수역	무해성
	6. 8~6. 12	보령시 도서일원	무해성
	7. 3~7. 10	천수만 및 보령시 일부연안	무해성
	7. 7~7. 16	천수만 일원	무해성
	8. 19~8. 21	천수만 일원	무해성
	10. 11~10. 3	태안군 안면읍 외도~내파수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외연도	무해성
	10. 20~11. 12	군산연안(비인만 일원)	유해성(코클로디나움)
	11. 1~11. 5	가의도 남서방 9마일 및 안면도 서쪽7마일 해상	유해성(코클로디나움)
'99	8. 11~8. 12	천수만 일원	무해성
	10. 21~10. 30	비인만 일원	유해성(코클로디나움)
2000	5. 1~5. 3	금강하구	무해성
	7. 3~7. 10	서천일원	무해성
2001	7. 4~7. 10	천수만	무해성
	9. 21~9. 23	비인만	무해성
2002	7. 6~7.10	보령연안	무해성
	-	-	-
2003	7. 9 ~7.15	보령연안, 비인만, 천수만	무해성
	9. 16~9. 24	보령연안, 비인만	무해성

○ '95이후 유행성 적조발생 및 소멸 추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최초발생일 - 음력	8.29 8.4	9.4 7.22	8.24 7.22	8.30 7.9	8.11 7.1	8.22 7.23	8.14 6.25	8.2 6.24	8.13 7.16
소멸일 - 음력	10.23 8.29	10.2 8.20	9.20 8.19	10.2 8.12	10.3 8.24	9.19 8.22	9.24 8.8	9.27 8.21	10.13 9.18
지속기간 (일)	55	28	27	34	54	29	41	57	62
최초 발생지역	나로도안근	나로도안근	나로도안근	나로도안근	나로도안근	돌산· 남해도안근	나로도· 돌산동안	봇돌바다 돌산동안	봇돌바다 남해두미도
발생범위	완도-삼척	완도-경주	완도-포항	완도-거제	완도-울진	고흥-기장	완도-강릉	완도-울진	진도-강릉
총발생 (건)	65	61	62	122	83	69	56	59	45
최고밀도 (개체㎖/ℓ)	30,000	23,000	20,000	22,000	44,000	15,000	32,000	30,000	48,000
피해액 (억원)	764	21	15	1.6	3.2	2.6	84	49	215
폐사량 (천미)	26,285	428	592	219	249	258	7,557	5,268	13,088
소멸주요인	수온하강 (태풍9월)	수온하강 (태풍8월)	태풍 "올리와"	태풍 "예니"	소온하강 (태풍8월)	태풍 "사오마이"	수온하강	수온하강	수온하강

제 8 장 폭염대책

제 1 절 예방대책

1. 우리나라 폭염현황

○ 수립개요

- 지구 온난화로 무더위,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기상이변을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마련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함

○ 2004년 상반기 폭염 상황

구 분	5. 27	5. 30	6. 3	6. 6	6. 9	6. 12	6. 15
서 울	**27.6(24.6)**	**26.7(25.7)**	**32.5(24.5)**	25.1(26.5)	25.2(26.2)	**30.7(27.1)**	**31.5(28.0)**
강 릉	22.7(24.4)	**24.2(23.5)**	**31.5(23.3)**	23.1(25.8)	**27.7(23.7)**	24.6(25.4)	**26.7(25.2)**
대 구	**27.4(26.9)**	23.2(26.6)	**32.4(26.6)**	**30.1(28.3)**	**27.8(27.3)**	**29.3(27.9)**	**33.4(29.3)**
대 전	**28.5(25.4)**	**29.3(26.3)**	**34.3(25.2)**	**30.7(27.1)**	**27.0(26.9)**	**31.2(27.2)**	**33.4(28.4)**
광 주	24.4(25.2)	**26.5(26.0)**	**32.1(25.8)**	**31.1(27.5)**	26.1(26.6)	**30.7(26.8)**	**31.4(27.8)**
부 산	**25.2(22.8)**	22.0(23.1)	**26.2(23.6)**	**27.8(23.7)**	23.6(23.6)	**27.0(24.0)**	**26.7(24.3)**
제 주	**25.0(22.6)**	20.9(22.8)	23.2(23.2)	**23.8(23.2)**	23.1(24.6)	27.6(24.6)	**24.8(24.1)**

※ ( )은 평년기온

- 2004년 최고기온 극값 계속 경신

1) 전국 관측지점 2~6월중 일 최고기온 극값 중 13.2% '04년에 기록

2) 2. 20 서울 일 최고기온 18.7℃(기존 2월 최고기온 17.4)

3) 4. 21 완도 일 최고기온 27.6℃(기존 4월 최고기온 26.9)

4) 4. 21 순천 일 최고기온 30.2℃(기존 4월 최고기온 29.3)

2. 2004년 세계 각국 폭염 사례

○ 7월초 유럽동남부지역

- 그리스는 40℃를 웃도는 폭염으로 아테네 등 남부지역 대규모 정전
- 루마니아는 18명이상 사망, 마케도니아는 15명 사망

○ 일 본

- 7월초 도쿄·사이타마 등 간토지방에 35℃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어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병원 후송

○ 중 국

- 베이징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1,600개의 기업이 강제 휴가
- 남부 광저우는 7월초 40℃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30여명이 사망하고 화재가 잇따라 발생

3. 폭염이 미치는 영향

<인체>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고 이로 인한 병이 발생할 수 있음

-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촉진
- 일사병, 열 경련, 열에 의한 피로, 뇌일혈, 냉방병 등

○ 사망률 증가

- 기온이 30~32℃일 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36℃가 되면 30℃일 때 보다 50% 증가('03 환경부 보고서)
- 고령자, 노약자 등이 체력적으로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큼

○ 열대야로 인한 생체리듬 이상

-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증대 및 탈진 등의 증상 발생
- 미국의 경우, 수면 장애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연간 약 150억 달러로 추정

<산 업>

○ 폭염은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생산량 감소
- 고온으로 인한 벼의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등으로 쌀 생산에 영향
-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적조 발생
- 닭, 소,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 피해

○ 2,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정전에 따른 기회 손실, 생산성 감소 등
- 여름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로 기회 손실 발생
- 기온 상승에 따른 집중력 감소, 업무능률 저하로 생산성 감소 우려
- 야외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정 차질
- 사무실, 작업장 등 적정한 기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

< 사회전반>

○ 야채, 농축산물, 생활필수품 등 수급 차질로 국민들의 생활 불편 가중
- 생산량 감소 및 재고 물량 감소로 품귀 현상 및 가격 급등
- 가계 부담 증가로 경제난 가중

○ 바캉스족, 올빼미족 급증 등 사회적 생체리듬 상실로 인한 후유증 발생
- 관광지,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 무질서 등 발생 우려
- 열대야로 강가 등 야외공원에서 수면 등으로 피곤 누적
- 자정 이후 쇼핑족(올빼미족) 등 증가로 다음날 생활에 악 영향

○ 각종 전염병 발병 가능성

-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 증가

1)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탈수 등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접촉도가 증가하면서 전염율 증가

2) 음용수로 인한 수인성 질환과 음식물 매개 질환 증대

※ '03년 식중독 발생 119건중 64건(53.8%)이 7~8월 발생

○ 사회전반의 기강 해이, 무기력감 확산으로 우발적 사고 증가

-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짜증이 자주나고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게 되며, 우발적 강도·살인 사고도 증가할 우려

4. 대 책

○ 전력 수급 대책

- 최대 전력수요 전망(2004기준)

1) 작년(47,385천kw)보다 7.5% 증가한 50,941천kw(이상 고온시 52, 957천kw)

※ 58,904천kw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예비율 15.6%, 비상시 예비율 11.2%)

-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4,125천kw 감축계획

1) 전기 다소비업체의 휴가 분산 및 오후 2~4시 사이 전기사용을 줄이는 부하관리사업 : 2,058천kw

2) 축냉식 및 가스식 냉방설비, 고효율 전기기기 보급 : 2,067천kw

- 이상고온에 의한 수요증가 대비 2,219천kw 비상전력 추가확보

- 필요대책

1) 이상 고온시 공급 예비율이 줄어듬(11.2%)을 감안 하계 부하관리 및 축냉식 냉방설비, 고효율기기 보급 차질 없이 추진

2) 수급 차질 대비 비상전력 확충 필요

3) 이상 고온에 따른 광역 정전시 단계별 긴급복구 대책 마련

· 공급 예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보 대책 필요

· 노후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정비

·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강구

○ 물 부족 대책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혹서기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조치

1) 2004. 6. 25일「물관리정책협의회」를 개최

2) 건교부 : 비상시 광역상수도 시설간 또는 광역-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결 관로(전국 93개소)를 통하여 용수 공급

· 6. 28~7. 2 특별점검 실시

· 고지대 급수 불량 지역 비상급수, 지하수 발굴 지원대책 추진

3) 환경부 : 목욕탕, 세차장 등 다량 물소비 영업장 영업시간 단축, 절수기 설치, 물 아껴쓰기 홍보 등 추진키로 함

- 필요대책

1)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급수 상황에 따른 다량 물소비 영업장 사전 파악, 구체적인 영업시간 단축계획 수립, 필요시 시행

2) 도서, 농어촌 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지원 대책 수립·시행

3) 취수장, 정수장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대책 재검토

· 문제업소 종업원·관리자 교육 등 집중관리, 수질오염 차단시설, 오일 펜스 등 점검

4)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수시 지도 점검

5) 가정이나 기업 및 학교 등 단체에서는 덥지 않을 때 생수 등을 평소 보다 2배 정도 미리 구입토록 권장

○ 각종 안전사고 대책

- 안전관리조치

1) 지난 6. 16 철도청에서 『하절기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행

2) 레일온도에 따라 64℃이상 운행 정지, 60℃이상 70km/h이하, 55℃이상 230km이하 운행 등

- 필요대책

1) 가스 및 정유저장 탱크, 화학약품 창고, 발전시설 등에 대하여는 폭염기간 중 운전상 문제가 없는지 관계 기관별로 특별점검 실시

2) 고온으로 인한 철도 휘어짐에 따라 발생 우려가 있는 열차 탈선사고 대책 필요

3) 지하철, 열차 전력공급 선로 단락 등으로 인한 복구 및 승객안전을 위한 대책강구

4) 고속도로 아스팔트 노면 훼손에 따른 교통사고 및 항공기 이·착륙 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 필요

5) 고열작업장의 실신, 탈수증, 열경련 등의 피해예방 대책강구 필요

6) 건설, 야외 현장 노동자 등의 안전을 고려, 일정온도 이상시 혹서기를 설정, 공사중지 명령 또는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전염병 등 방지 대책

- 전염병 대비책

1) 지난 2004. 6. 10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전염병 대비 비상방역강화에 총력체제 구축 발표

· 「건강한 여름나기 운동」 전개로 하절기 휴양지에서의 예방수칙 홍보

· 각급학교, 교회, 직장단체 등의 하계수련행사 등 개최시 예방수칙 교육

2)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근무 강화

3) 환자 발생 전 전염병 유행시기 예측 사전 주의보 발령

- 필요대책

1) 고령자, 독거 노인 등의 건강대책 필요

· 폭염시 특별주간을 설정, 노약자 · 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전국 양로원 냉방시설 유무 실태 등을 파악 지원방안 강구

· 무더위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냉방시설 설치

2)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조 구급요원 수시 순회 관찰

○ 가축질병, 병충해 및 적조 대책

- 가축, 병충해, 적조 예방대책

1) 농림부에서 「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 대책」을 8월말까지 중점 추진

2) 축사의 환기관리, 운동장 그늘막 설치, 모기 구제, 분뇨 처리,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 급여

3) 사료 가축 방역관,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 방역요원 등 가축질병 예찰요원 농가지도 홍보 강화

4) 수의과학 검역원의 ARS 전화활용 및 질병신고 센터, 질병 전담반, 진료 지원반 설치·운영

5) 2004. 6. 29 해양수산부에서 적조피해 예방대책 개최

- 올해 적조 예찰 상황과 발생 전망을 분석하고 적조 예찰·예보 정보 전달 방안과 기관별 적조 발생 대비태세 점검

- 필요대책

1) 벼 잎도열병, 이삭 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 대책 강구

2) 적조대비기 마련 대책 조기 시행 체제 구축

3) 황토 및 방제장비 조기 확보, 사전 방류사업 및 적조 방지 차단막 설치, 육상 양식장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4)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5) 밀집 사육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축사 위생 관리 및 소독 등 방역관리대책 강구

6) 1차 산업 생필품 안정적 수급 대책 강구

○ 화재예방대책

- 여름철 화재발생 증가 및 진화상 장애요인

1) 장마와 더위의 연속으로 화기취급이 적은 대신 냉방시설의 무리한 가동 등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 증대

2)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서의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발생 위험

3) 집단 수련시설의 화재발생 위험 및 캠핑용 텐트에서의 질식사고 발생 증가

4) 정전 및 물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차질에 따른 화재진화용 소방용수 확보곤란

- 필요대책

1)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되는 전기화재 유형별 안전점검 강화 및 대국민 홍보대책 추진

· 낙뢰로 인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등 추진

2)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장치가 설치된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 철저

3)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객에 대하여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실시

4) 상수도 단수를 대비한 대체 비상용수(하천, 풀장, 저수조 등) 활용 대책 추진 및 인근 소방관서 응원출동체제 정비

○ 기타 필요대책

- 사회기강 해이대책

1) 최근 인명 경시 풍조에 편승하여 폭염과 불쾌지수 상승에 따른 우발적, 무조건적 강도·살인 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필요

2)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각 근로자의 분쟁에 대한 조기·원만 해결 대책 강구 필요

3) 저 소득층 및 노숙자, 사회 불만자 등의 우발적, 블특정 다중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대책 추진

- 직장내 일반적 대책

1) 능률 향상을 위해 오침 시간 한시적 도입 검토

2) 야외 근무자에게 얼음 및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지급하고, 폭염 이 계속될 경우 작업 단축

3) 식당 메뉴를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특별 메뉴로 준비

4) flexible time제, 자유복장제(반바지 출근)등을 임시 운영

5) 야외 행사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일 기온별 가이드 라인' 마련 참석자들의 건강 배려 필요

5.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첫 째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간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식힌다.

○ 외출시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헐렁하고 얇은 옷을 입고,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써서 얼굴을 보호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 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한다.

둘째 : 식사는 균형있게, 물은 많이 마신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한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는다.

○ 탄산, 알코올,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신다.

셋째 : 위생적인 생활을 습관화한다!

○ 반드시 끓인 물을 섭취하고, 날 음식은 삼간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는다.

○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리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한다.

넷째 :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한다

○ 실내외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

○ 50분 가동 후 10분은 꼭 환기하고, 2주에 한번 필터 청소를 한다.

○ 밤새 에어콘이나 선풍기를 켜는 것은 위험하므로 방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전원을 끈다.

○ 에어콘 가동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 냉방효과를 향상시킨다.

다섯째 : 동료·이웃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 주변의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건강상태를 보살핀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 동료 몸상태에 서로 유의하고 필요시 도움을 준다.

○ 응급환자 발생시 119, 1339 등에 연락하고, 구급차 도착시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마련한다.

○ 정전시 주요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 정전시에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소에, 일반주택의 경우 123번으로 신고한다.

일곱째 :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한다!

○ 축사 천장에 스티로폴 등 단열재를 부착한다.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한다.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 설치로 복사열을 방지한다.

○ 축사 및 운동장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 깨끗한 물을 마시게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않는다.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소독을 한다.

○ 하우스내 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한다.

○ 병해충 발생 증가 대비, 방제를 강화한다.

○ 노지 재배 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한다.

여덟째 : 양식어장에서는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환수량을 최대한 늘이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한다.

○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폭기시설을 설치한다.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는다.

○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한다.

○ 고온과 습기로 인한 사료부패 예방에 힘쓴다.

아홉째 : 편안한 잠자리를 갖는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는다.

○ 자기 전 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 수분은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로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든다.

○ 커피와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 담배는 지양한다.

○ 잠들기 전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하지 않는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한다' 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제 9 장 시설물 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도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발생요인 사전 해소

- 대상시설의 일제조사, 지정·관리, 응급조치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감시로 안전사고 발생 요인 제거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철거 및 시설보강 등 항구적인 위험 해소방안 마련

1. 재난관리 여건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시설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투자가 아닌 낭비"라는 인식 팽배

○ 시설물의 대형화·지하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규모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 주5일 근무, 사회구조의 다변화 등으로 여가 레저시설 등 증가 추세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등 예찰활동 강화로 위험 요인의 사전제거 및 여가 레저시설에 대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필요

2.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기 본 방 향

○ 철저한 현장 확인행정 지속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
○ 제도정비·지도점검 등을 통한 재난예방과 피해저감 대책 수립
○ 안전점검의 효율화 방안 강구 및 안전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

⇧

중 점 추 진 과 제

- 자율안전체제 구축
- 법령, 제도정비
- 안전점검의 전문화

⇧

추 진 전 략

○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 관리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관리감독 기능 강화
○ 민·관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NET-WORKING화
○ 제도정비·지도점검 등을 통한 재난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안전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강구
○ 불합리한 점검방식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의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3. 재난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제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해소대책 추진, 취약시기별 중점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능력 제고

- 정기점검 : 중점관리대상시설(반기1회), 재난위험시설(월1회) 정기점검 실시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또는 긴급점검 요청시

○ 특수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를 위한 일제조사 실시

- 2005년 9~11월(년1회)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가능

○ 건축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 시장·군수가 위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구조안전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

- 정기점검(년 2회) : 관리주체가 점검 실시 후 위해 우려 있다고판단시 시장 등에 보고 및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조치
- 특별점검 :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도가 취약한 공동주택 : 매월 1회이상 점검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 일일안전점검 : 건설업자 자체로 매일 점검
-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기 및 회수에 따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

나. 추진계획

1) 예방 · 대비 대책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지침) 제정 · 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지정 · 관리

○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 재난취약시설의 불합리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지침) 제정 · 운영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지역의 관리실태를 분석, 안전점검 등으로 재난발생요인의 사전 해소 및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 내용

- 재난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지침 마련
- 특정관리대상시설 · 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시설 · 지역 지정대상 범위 명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일제조사 및 정기 · 수시점검 실시
  · 시설 상태에 따라 지정 · 해제, 등급변경 조치
- 재난위험시설 장 · 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본방향, 기관별 종합계획 및 단위 시설물별 해소계획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등)

3)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지정 · 관리

○ 조사대상 : 도 및 시군, 공공기관 · 단체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시설 · 지역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지역의 관리실태를 분석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판단 재난발생 위험이 낮고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적은 소규모 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조사시기

- 일제조사 : 2005년 9~11월(年1회)
- 수시조사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조사방법

- 재난관리 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설관리 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일제조사 흐름도】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기동점검담당>	2005년 7월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2005년 8월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2005년 9월~ 11월	· 특정관리대상시설 선별 ·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2005년 12월	·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소유자 등에게 지정사실 및 안전 조치 통보 ·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작성
↓		
200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2005년 12월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변동사항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특정관리대상시설(매년11.30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2005년 12.10까지 소방방재청에 제출 · 명년 재난위험시설 장·단기계획 수립 ※ 2005년 12..20까지 소방방재청에 제출

○ 조사 결과

- 지정 대상시설은 기준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 중점관리대상시설 · 지역(A~C급)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 지역

· 재난위험시설 · 지역(D,E급) : 긴급히 보수 · 보강과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지역

○ 고시 :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 그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보, 고시

○ 지정 · 관리 지침수립 및 시달

- 주관 : 지치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대상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내용

· 조사하여야 할 시설 및 지역의 범위

· 조사하기 위한 방법 및 지정절차

· 지정시설별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점검과 관리방법 등

○ 대상시설 관리 : 정기 · 수시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대한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조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재난위험시설 장 · 단기 해소사업 추진

○ 사업목적 및 계획내용

- 도 및 시군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장 · 단기계획 수립

· 도 종합건설사업소 및 시군 건설과에서 위험물 해소대책 수립

· 민간시설은 소유자를 해소하도록 설득 조기에 보수·보강계획 마련

- 재난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필요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의견을 적극반영 계획 수립

- 도 및 시군에서는 중·장기 예산투자사업에 반영 연차적 추진

· 위험 시설물 안전사고 해소를 위해 근본적 대책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조치

○ 사업개요

- 해소계획기간

· 장기계획 : 2005.1.1 ~ 2009.12.31(5개년)

· 단기계획 : 2005.1.1 ~ 2005.12.31(1개년)

※ 단기계획은 장기계획 중 당해년도에 추진할 사업임

- 사업대상 : 재난위험시설 36개소 (D급 32, E급 4)

○ 장·단기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시설·지역별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새로이 발생된 재난위험시설은 변경계획시 반영

○ 추진방법

- 재난의 위험도가 높은 E급 및 재난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D급 시설을 우선 정비

- 교량 등 공공시설은 시설물 관리청이,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은 융자 또는 개인비용 등으로 추진

5.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 지역
-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 지역 등

○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지역 :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 · 지역 : 매반기 1회 (1~6월, 7~12월)

※ 타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수시점검(월별 · 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점검으로 인정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계절별 중점점검 계획>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비 고
해 빙 기 (2~3월)	- 절개지, 축대 · 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 도 및 시군에서는 실정에 따라 점검 대상 시설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 가능
행 락 철 (4~5, 9~10)	- 유 ·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 (6~8월)	- 도로시설, 관람 · 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수상레저기구 등	
동 절 기 (11~익년2월)	- 주점 등 위락 · 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 스키장, 비디오물 · 게임제공업 등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 점검 주관

- 도 : 시·군 소관시설외 전반,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표본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 시·군 : 시군의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 점검 방법

- 안전관리과에서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매년 12월)

※ 기본계획 수립시 점검대상 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실과장 또는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시설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

- 시설관리부서에서 1월중 실시계획을 수립·점검 실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점검 폐해방지 조치

※ 점검실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횟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실시의 경우는 예외.

○ 점검반 구성

- 시설관리 관련 과장이 점검을 총괄하며
- 각 점검반에는 시설관리부서와 안전관리과(기동점검담당) 소속 공무원 등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또는 해당직렬공무원)로 편성하되
-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협회,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반 구성

-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반 편성

·중복·과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기별로 점검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합동점검 주관부서를 선정, 합동점검반 편성 추진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구분	편 성 요 령
설날대비 안전점검	소방위주(예방담당)로 실시하되, 취약지별 테러태세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해빙기 안전점검	축대, 옹벽, 절개지, 건설공사장등 시설물 위주이므로 안전관리과(기동점검담당)에서 주관
봄철 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과(기동점검담당)에서 주관하되, 청소년수련시설·고층건물 등 은 안전관리과(예방담당)에서 주관
여름철 점검	안전관리과(재난관리담당)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민박 및 숙박시설, 복합영화상영관등은 안전관리과(예방담당)에서 주관 실시
가을행락철 (추석절)안전점검	안전관리과(기동점검담당)에서 주관하되 시설관리부서에 따라서 분담 관리 - 유원시설 : 관광진흥과, - 유도선 : 치수방재과에서 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	안전관리과(기동점검담당)에서 주관
동절기 점검	다중이용시설(신종업종포함)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과(예방담당)에서 주관

○ 안전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조정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 지정 또는 조정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반영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조치

-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D·E급은 재난위험 시설·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새로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보

-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와 신규자료 및 변경된 사항 등을 입력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관리카드 작성 정리

※ 도로시설물은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관리

○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조치 종류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명하고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조치결과를 기록·관리(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필히 병행)하고,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 경우 미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설물의 보기 쉬운 곳에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 게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과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제거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 실시
- 현지시정 원칙,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다. 대응·복구대책

○ 붕괴 등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계획 수립
○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유사 사고 방지(환류기능)
○ 효과적인 항구 복구대책 강구 및 피해주민 지원
○ 2차 재난사고 요인 진단 및 장비·자재 동원
○ 관련기관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항구 복구대책 강구 마련

특정시설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 계	A 급	B 급	C 급	소 계	D 급	E 급
합계	**합 계**	**3,252**	**3,216**	**1,850**	**1,098**	**268**	**36**	**32**	**4**
	시설물	**720**	**694**	**314**	**276**	**104**	**26**	**26**	
	건축물	**2,532**	**2,522**	**1,536**	**822**	**164**	**10**	**6**	**4**
도	합 계	259	250	99	107	44	9	9	
	시설물	193	184	63	80	41	9	9	
	건축물	66	66	36	27	3			
천안	합 계	668	666	444	125	97	2	2	
	시설물	44	42	15	22	5	2	2	
	건축물	624	624	429	103	92			
공주	합 계	290	287	201	71	15	3	3	
	시설물	74	71	30	28	13	3	3	
	건축물	216	216	171	43	2			
보령	합 계	252	249	134	109	6	3	3	
	시설물	36	34	16	14	4	2	2	
	건축물	216	215	118	95	2	1	1	
아산	합 계	261	260	156	100	4	1	1	
	시설물	32	31	18	12	1	1	1	
	건축물	229	229	138	88	3			
서산	합 계	193	191	134	52	5	2	2	
	시설물	37	36	24	9	3	1	1	
	건축물	156	155	110	43	2	1	1	
논산	합 계	207	205	13	171	21	2	2	
	시설물	62	60	1	55	4	2	2	
	건축물	145	145	12	116	17			
계룡	합 계	30	30	29		1			
	시설물								
	건축물	30	30	29		1			
금산	합 계	100	99	30	67	2	1	1	
	시설물	24	23	19	3	1	1	1	
	건축물	76	76	11	64	1			
연기	합 계	124	119	103	7	9	5	5	
	시설물	33	32	26	5	1	1	1	
	건축물	91	87	77	2	8	4	4	
부여	합 계	169	164	41	119	4	5	2	3
	시설물	61	59	19	37	3	2	2	
	건축물	108	105	22	82	1	3		3
서천	합 계	111	110	63	42	5	1	1	
	시설물	14	13	9	1	3	1	1	
	건축물	97	97	54	41	2			
청양	합 계	69	69	64	4	1			
	시설물	37	37	35	2				
	건축물	32	32	29	2	1			
홍성	합 계	100	99	53	27	19	1	1	
	시설물	24	23	8		15	1	1	
	건축물	76	76	45	27	4			
예산	합 계	160	160	120	29	11			
	시설물	29	29	16	6	7			
	건축물	131	131	104	23	4			
태안	합 계	80	80	56	18	6			
	시설물	4	4	2	1	1			
	건축물	76	76	54	17	5			
당진	합 계	171	170	103	49	18	1		1
	시설물	16	16	13	1	2			
	건축물	155	154	90	48	16	1		1

재난상황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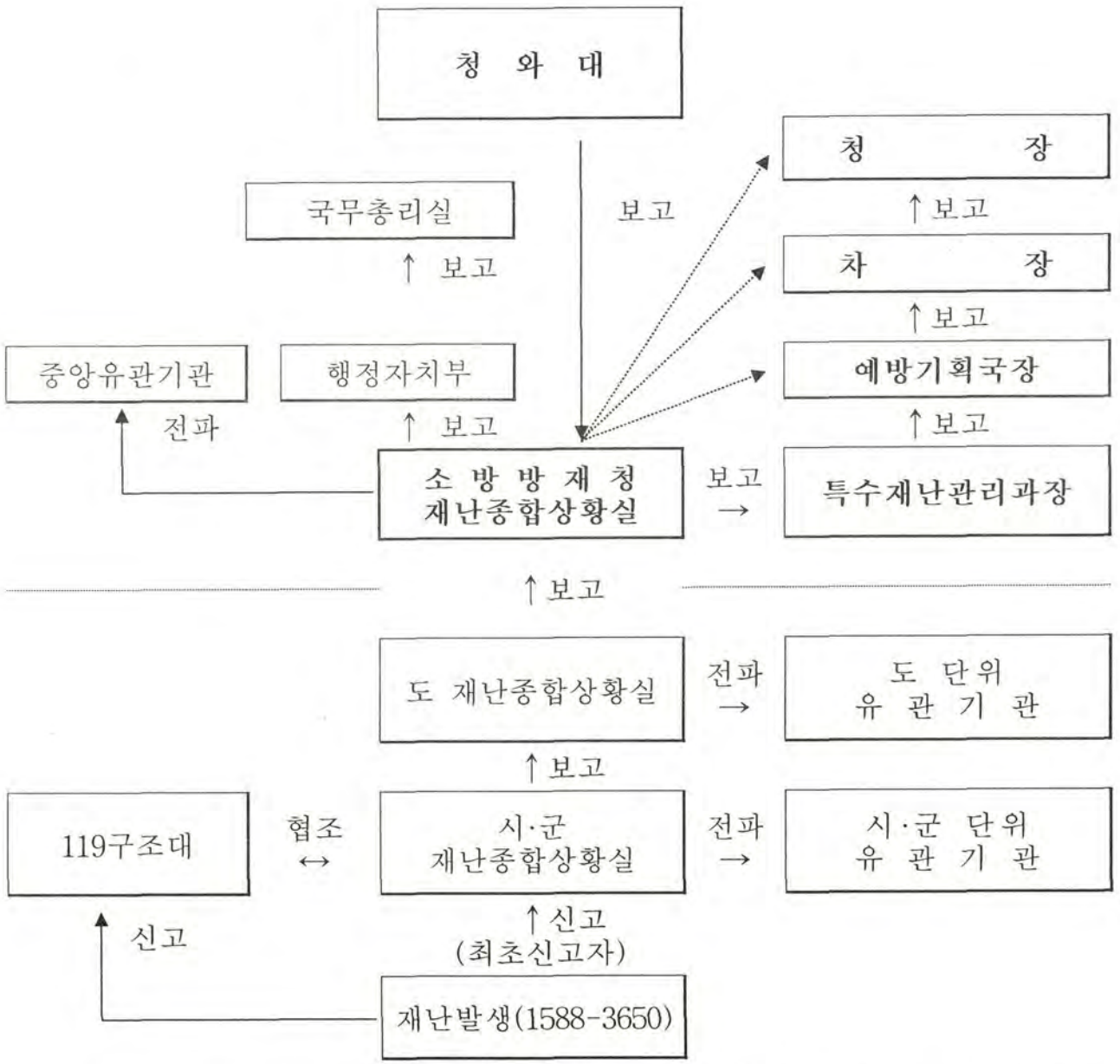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방재청에 즉시 보고후 매시간 또는 수시 보고

○ 충청남도 안전관리과 기동점검담당 : 042-220-3725

○ 충청남도 종합상황실 : 042-220-3119

비상 연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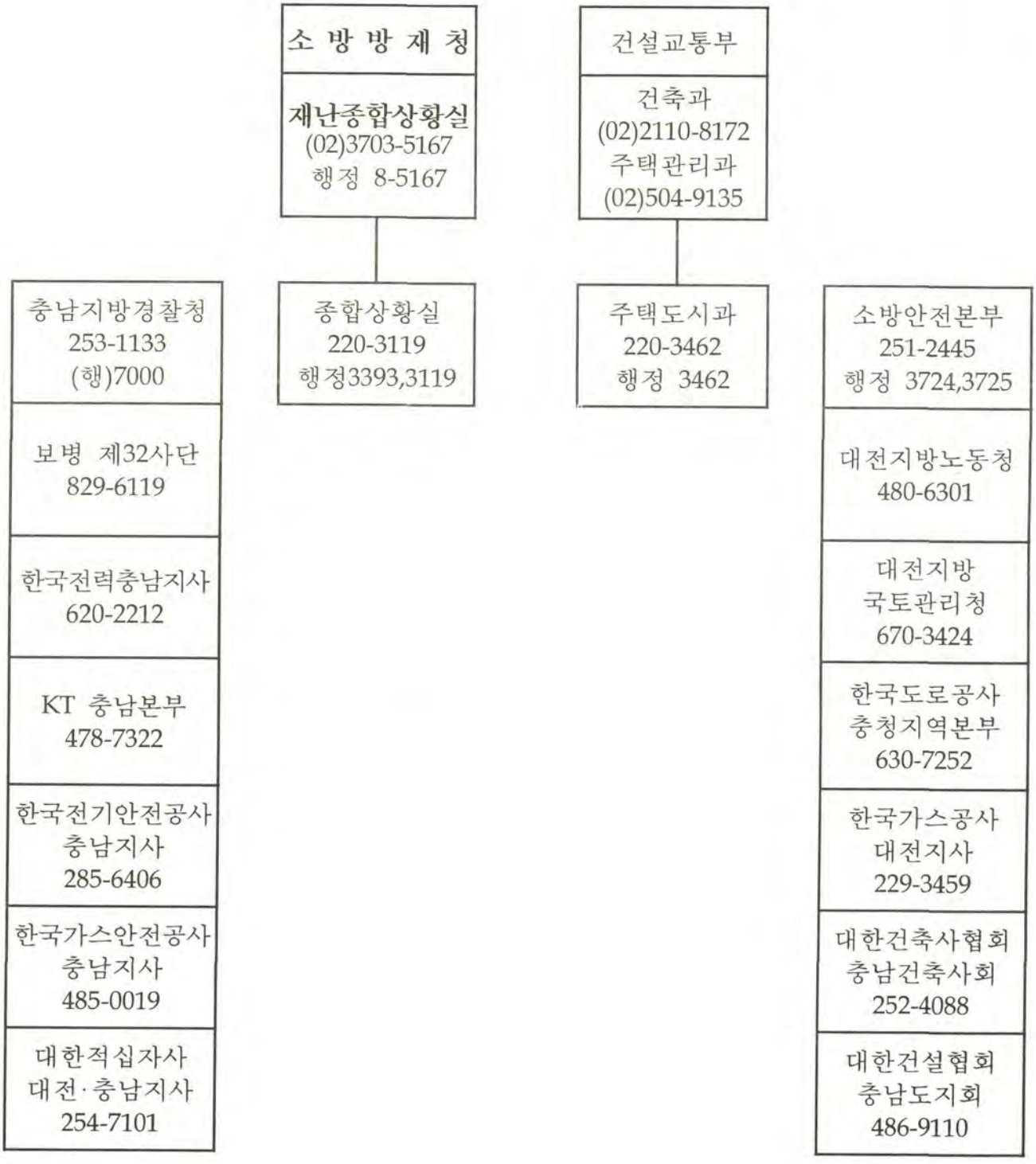
소 방 방 재 청
재난종합상황실
(02)3703-5167
행정 8-5167
종합상황실
220-3119
행정3393,3119
건설교통부
건축과
(02)2110-8172
주택관리과
(02)504-9135
주택도시과
220-3462
행정 3462
충남지방경찰청
253-1133
(행)7000
보병 제32사단
829-6119
한국전력충남지사
620-2212
KT 충남본부
478-7322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
285-6406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
485-0019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254-7101
소방안전본부
251-2445
행정 3724,3725
대전지방노동청
480-630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670-3424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630-7252
한국가스공사
대전지사
229-3459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252-4088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지회
486-9110

시 설 물 상 태 평 가 기 준

구분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중점관리시설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재난위험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중 점 관 리 대 상 시 설 · 지 역 지 정 대 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관리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11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시특법 대상 제외
	터 널	12	○ 전수관리	시특법 대상 제외
	육 교	13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도	14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축대·옹벽	15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연장 20m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제외
	기타 도로 부대시설	16	○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스 키 장		20	○ 전수관리	리프트 포함
삭도·궤도		30	○ 전수관리 - 관광시설 :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리프트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40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제외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5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 공사장	52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수상안전시설	유·도 선	61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
	수상레저기구	62	○ 전수관리 -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기 타		70	○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임

□ 건축물 분야

구 분		관리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10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국가기관 제외
공동주택	아 파 트	21	○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22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31	○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32	○ 연면적 1,000㎡이상	
	종합여객시설	33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34	○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35	○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 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36	○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37	○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교시설	37-1	○ 연면적 300㎡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38	○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39	○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 제공업	39-1	○ 연면적 300㎡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대형건축물		40	○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51	○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옹벽·석축	52	○ 높이 5m, 연장 20m이상	
	기 타	53	○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 형 광 고 물		60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이상·폭 3m이상의 것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71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바닥면적 10,000㎡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 공사장	72		

구 분		관리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위험물시설	가스취급시설	81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 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85		국가공단 제외
	농공단지	86		
신종업종	콜 라 텍	91	○ 전수관리	
	번지점프장	92	○ 전수관리	
	휴 게 텔	93	○ 전수관리	
	찜 질 방	94	○ 전수관리	
	산후조리원	95	○ 전수관리	
	고 시 원	96	○ 전수관리	
	화상대화방	97	○ 전수관리	

※ 시특법 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의한 지정대상 시설용도가 있을 경우 시설 용도별로 지정·관리

※ 지침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2004. 12. 1. 현재)

○ 지정시설수 : 36개소(E급 : 4, D급 : 32)

○ 시설물별

구 분	계	E 급	D 급	2003.12.1대비	비 고
계	36	4	32	감 12 개소	
도 로 교 량	23		23	해제(14)	
터 널	1		1	교량(13)	※ 전 체 관리대상시설
기타 시설물	-		-	종건공주(2), 천안시(3) 공주시(2), 아산시(1)	
공 동 주 택	5		5	서산시(1), 금산군(1) 부여군(2), 서천군(1)	총 3,252개소
청 사	1	-	1		· A급 1,850
시장 · 상가	-		-	시장(1)	· B급 1,098
기타 건축물	4	4	-	서천군(1)	· C급 268
가 스 시 설					· D급 32
낙 석 위 험	2		2	신규(2) 종건홍성(1), 보령시(1)	· E급 4

○ 관리주체별

구 분	지 정 시 설 수			구 분	지 정 시 설 수		
	계	E 급	D 급		계	E 급	D 급
합 계	36	4	32	소계(군)	14	4	10
도	9	-	9	금 산	1	-	1
소계(시)	13	-	13	연 기	5	-	5
천 안	2	-	2	부 여	5	3	2
공 주	3	-	3	서 천	1	-	1
보 령	3	-	3	청 양	-	-	-
아 산	1	-	1	홍 성	1	-	1
서 산	2	-	2	예 산	-	-	-
논 산	2	-	2	태 안	-	-	-
계 룡	-	-	-	당 진	1	1	-

재난위험시설현황(36개소)

D급시설 : 32개소					(교량 →23, 터널→1, 절개지 →2, 건축물 →6)		
교 량 23 개소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지정일	위 치	시설현황	위험요인	조치계획
1	신흥교	도	'97. 9.30	천안시 광덕면	L=108, B=7.8 1971년	스라브미세균열 횡 균 열	· 공사중 (구교량 정밀 안전진단 계획)
2	대룡교	도	'98. 1.1	공주시 신풍면	L=40, B=6.3 1977년	노후균열탈락	· 공사완료 (구교량처리 준비)
3	노티교	도	'03. 2.28	공주시 탄천면	L=31, B=6.7 1980년	노 후 균 열 내하력 부족	·통행제한 ·2006년 재가설계획
4	신양교	도	'97. 9.30	예산군 신양면	L=110, B=5.5 1973년	주형단부사인장 균열 휨균열	· 공사중
5	가지교	도	'01. 7.30	예산군 신양면	L=48, B=8.5 1977년	구조물 노후로 내하력 부족	·2005년 재가설계획
6	둔대교	도	'02. 9.23	예산군 응봉면	L=8.5, B=5.5 1964년	노 후 균 열 내하력 부족	· 공사중
7	교촌교	도	'03. 09.05	예산군 대흥면	L=20, B=6.65 1962년	노 후 균 열	· 2005년 재가설계획
8	평촌교	도	'04. 10.15	예산군 응봉면	L=17, B=5.5 1956년	노 후 균 열	· 공사중
9	수향교	천안	'02. 4.11	천안시 성환읍	L=108, B=4.5 1980년	노 후 균 열	·2005년 재가설계획
10	갈마재교	천안	'02. 4.11	천안시 북 면	L=22.8, B=3.5 1975	노 후 균 열	·2006년 재가설계획
11	상서교	공주	'03. 5.28	공주시 우성면	L=27, B=6.5 1989년	교좌불량 및 신축유간부족 등	· 공사중
12	안영교	공주	'98. 10.2	공주시 탄천면	L=60, B=4 1987년	상 판 균 열 철 근 노 출	· 2006년 재가설계획
13	무안교	공주	'01. 12.11	공주시 금학동	L=23, B=3.5 1972년	스라브균열	· 2006년 재가설계획
14	관창 2교	보령	'02. 12.22	보령시 주교면	L=48, B=5.3 1978년	노후균열위험 교각철근노출	·2005년 재가설계획
15	삼계교	보령	'04 12.1	보령시 미산면	L=24, B=4.5 1988년	노후균열위험	·2005년 보수 보강계획
16	명천 2교	서산	'03. 6.28	서산시 성연면	L=23, B=5 미상	노후 균열	·2005년 재가설계획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지정일	위 치	시설현황	위험요인	조치계획
17	아호교	논산	'02. 9.17	논산시 지산동	L=236, B=10 1981년	노후 내하력상실	· 보수보강 공사중
18	다르매 잠수교	논산	'03. 8.25	논산시 성동명	L=48.2, B=4.6 1977년	노후 내하력 상실	· 보수보강 공사중
19	양 곡 교	연기	'99. 3.31	연기군 전의면	L=32.6 B=4.5 1978년	스라브하면균열 내구력 저하	· 2005년 재가설계획
20	진 호 교	부여	'02. 9.11	부여군 초촌면	L=30, B=5.0 1979년	노 후 불 량 철 근 노 출	· 2005년 재가설계획
21	송 촌 교	부여	'02. 7.31	부여군 남 면	L=23, B=8 1986년	노 후 불 량 신축교좌 장치 부식	· 2006년 재가설계획
22	태 성 교	서천	'98. 4.10	서천군 시초면	L=38.5, B=4.5 1967년	노 후 불 량	· 2005년 재가설계획
23	서 구 교	홍성	'01. 6.30.	홍성군 홍성읍	L=40, B=5 1979년	노 후 균 열	· 공사중
		이		하	공	란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지정일	위 치	시설 현황	위험요인	조치계획(방향)
터 널 1개소							
24	고풍터널	도	'97. 9.31	서산시 운산면	L=110, B=4.5 미상	천정균열백화 라이닝탈락	· 공사중
절 개 지 2개소							
25	동원산업 절개면	민간	'99. 3.30	아산시 염치읍	L=70, H=70	낙 석 위 험	· 절개면 안식각 처리계획 · 절개면 아래 통행금지
26	복 수 주유소 절개면	민간	'98. 7.13	금산군 복수면	H=10, B=30	경사면 수직 분 리 위 험	· 낙석 위험요인 일부제거

건축물 D급 6 개소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지정일	위 치	시설현황	위험요인	조치계획(방향)
27	무궁화 연립	민간	'01. 10.10	서산시 동문동	연면적:696㎡ 지상2층,12세대 (1979년)	· 건물외벽 균열 · 계단주위에 1층의 불확실한 기초에 의한 균열상태 보임	· '01.9.27.정밀안전진단 · 위험표지판 설치 -재건축 협의중 ('06년 재건축계획)
28	교동 아파트 (A동)	민간	'01. 11.30	연기군 조치원	면적1,284㎡ 4층, 24세대 1978년	구조물의 중성화 현상으로 인한 열화현상이 발생	·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2004년 12월) · '06년 재건축계획
29	교동 아파트 (B동)	민간	'01. 11.30	연기군 조치원	면적1,398㎡ 4층, 24세대 1979년	구조물의 중성화 현상으로 인한 열화현상이 발생	·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2004년 12월) · '06년 재건축계획
30	교동 아파트 (C동)	민간	'01. 11.30	연기군 조치원	면적 401㎡ 3층, 6세대 1979년	구조물의 중성화 현상으로 인한 열화현상이 발생	·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2004년 12월) · '06년 재건축계획
31	교동 아파트 (D동)	민간	'01. 11.30	연기군 조치원	면적1,480㎡ 5층, 18세대 1980년	구조물의 중성화 현상으로 인한 열화현상이 발생	·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2004년 12월) · '06년 재건축계획
32	남포면 사무소	보령	'03. 12.9	보령시 남포면	면적653㎡ 지상2층 1979년	건물외벽 균열 노후	· 위험표지 설치 · '05년 재건축계획

E급시설 : 4개소 (건축물→4개소)

건축물 (4개소)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지정일	위치	시설현황	위험요인	조치계획(방향)
33	만수노인복지원 우측별관	민간	'99. 11.9	부여군 외산면	층수:지상2층 연면적:706.56㎡ 철근콘크리트	발코니스래브 두께 미달 및 구조결함	· 정밀안전진단 완료 (99.5.10) -철거 대상 · '06년 철거계획
34	만수노인복지원 좌측별관	민간	'99. 11.9	부여군 외산면	층수:지상2층 연면적:223.2㎡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부실시공 및 구조결함	· 정밀안전진단 완료(99.5.10) -철거 대상 · '06년 철거계획
35	만수노인복지원 후면별관	민간	'99. 11.9	부여군 외산면	층수:지상1층 연면적:183.32㎡ 철근콘크리트	철근배근 부적정에 따른 구조결함	· 정밀안전진단 완료(99.5.10) -철거 대상 · '06년 철거계획
36	당진포3리 마을회관	민간	'03. 12.4	당진군 고대면	층수:지상1층 연면적:85㎡	건물외벽 노후 균열	· 현재 사용 금지조치 · '05년 재건축 계획

해제시설 : 14개소

교 량 (13개소), 민간건축물(1개소)

연 번	구 분	시 설 명	관 리 주 체	지 정 일 해 제 일	위 치	해 제 요 인
1	교 량	상덕교	종건 공주	'01. 7.30 '04. 4.30	천안시 직산면	재가설을 위한 철거 완료
2	교 량	박금교	종건 공주	'96. 2.28 '03.12.11	금산군 금산읍	재가설을 위한 철거 완료
3	교 량	봉명1교	천안시	'98.10.01 '04. 4.27	천안시 봉명동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4	교 량	오동1교	천안시	'02. 4.11 '04.11.11	천안시 북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5	교 량	쌍령교	천안시	'02. 4.11 '04. 4.27	천안시 광덕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6	교 량	금대교	공주시	'01.12.11 '04. 9.13	공주시 계룡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7	교 량	명곡1교	공주시	'02.09.18 '04. 6.14	공주시 유규읍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8	교 량	백석포교	아산시	'03.11.28 '04.11.84	아산산 영인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9	교 량	화수교	서산시	'03. 6.28 '04.12.91	서산시 인지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10	교 량	신촌교	금산군	'96. 7.10 '04.10.14	금산군 부리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11	교 량	부내교	부여군	'02. 9.11 '04.11.15	부여군 규암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12	교 량	하황1교	부여군	'02. 7.31 '04. 11.9	부여군 장암면	재가설로 인한 철거완료
13	교 량	도만교	서천군	'99. 3.30 '04. 8.27	서천군 종천면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등급조정(D→C)
14	건축물 (시 장)	서천시장	서천군	'96. 2.14 '04. 6.21	서천군 서천읍	시장 이전에 따른 폐쇄(04.5.25. 준공)

신규지정 : 2 개소

교량(2개소)

연 번	시 설 명	등급	규 모	관 리 주 체	지 정 일	위 치	지 정 사 유
1	평촌교	D	L= 17m B= 5.5m	충청남도 (종건홍성)	'04.10.15	예산, 응봉	· 노후균열
2	삼계교	D	L= 24m B= 4.5m	보령시	'04.12.1	보령, 미산	· 노후균열
		이	하	공	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2005. 1. 1.현재)

구 분	전체 시설 수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계	A	B	C	계	D	E	계	A	B	C	계	D	E
계	3,252	3,216	36	694	314	276	104	26	26	0	2,522	1,536	822	164	10	6	4
도	259	250	9	184	63	80	41	9	9		66	36	27	3			
천 안	676	674	2	42	15	22	5	2	2		632	436	104	92			
공 주	290	287	3	71	30	28	13	3	3		216	171	43	2			
보 령	252	249	3	34	16	14	4	2	2		215	118	95	2	1	1	
아 산	261	260	1	31	18	12	1	1	1		229	138	88	3			
서 산	193	191	2	36	24	9	3	1	1		155	110	43	2	1	1	
논 산	207	205	2	60	1	55	4	2	2		145	12	116	17			
계 룡	30	30									30	29		1			
금 산	100	99	1	23	19	3	1	1	1		76	11	64	1			
연 기	124	119	5	32	26	5	1	1	1		87	77	2	8	4	4	
부 여	169	164	5	59	19	37	3	2	2		105	22	82	1	3		3
서 천	111	110	1	13	9	1	3	1	1		97	54	41	2			
청 양	69	69		37	35	2					32	29	2	1			
홍 성	100	99	1	23	8		15	1	1		76	45	27	4			
예 산	160	160		29	16	6	7				131	104	23	4			
태 안	80	80		4	2	1	1				76	54	17	5			
당 진	171	170	1	16	13	1	2				154	90	48	16	1		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관련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임

제 10 장 폭발·대형화재 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날로 증가하는 대형 화재 발생시 조기 수습 및 복구
- 우리도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 업무추진

○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 및 활용 편리한 화재장비 확보
-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노력
- 화재·폭발사고 경감대책 등을 사전계획·대비하고, 교육·훈련을 실시 대응능력 제고로 인명·재산피해발생을 최소화

1. 우리도의 여건

○ 우리도가 과거의 농업중심 지역에서 2·3차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도내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각종 대형 산업시설물이 설치되고 서해안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 조성으로 유해·위험물질의 증가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증대
- 또한, 국민생활과 복지수준 향상에 비해 선진「안전의식」미흡 및 민간 자율 안전관리기능 취약 등 문제점 산재

○ 건축물의 고도·다양화로 화재 발생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큰 신종업종, 영화관, 주상복합 및 찜질방, 노래방, 고시원 등 증가

○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로 위험예측과 대응대책 수립의 어려움
- 산업과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 상존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 보험이나 응급 의료체계 등 부족으로 사후 복구시 혼란 가중

○ 우리도의 재난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필요
- 대형사고시 상황파악, 예방·대응·복구활동의 신속성·정확도 제고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기 본 방 향

○ 재난관리 전 과정별 목표설정과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
○ 제도정비 · 지도 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피해저감 대책 강구
○ 봄철 · 월동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긴급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중 점 추 진 과 제

자율안전체제 구축 | 위기대응능력 제고 | 안전문화운동

⇧

추 진 전 략

○ 도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한 단계 앞선 예방활동 전개
○ 화재 · 폭발 등에 영향을 주는 안전관련법령 연계관리 강화
○ 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및 대형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화재 · 폭발 영향평가제도 도입
○ 대상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표준 점검매뉴얼 개발 · 보급
○ 대형사고이후 달라진 법령 엄격한 준수를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 자율방화관리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 ·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교육 · 훈련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종합적 상황관리 및 신속 ·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 및 가동
○ 일사분란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지휘체계와 통제권 등 강화

3. 재난관리체제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

○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 · 연계하여 재난관리계획 추진과 함께 재난관리 시책을 도내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범 도민적 안전관리의식 정착 유도

4. 역할 및 체계도

가.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구조 통제단의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 무 / 역 할
재난안전 대책본부	o 도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수습·복구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강구 -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본부장 : 도지사/시장·군수
긴급구조 통 제 단	o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역할분담과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 단 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나. 재난상황관리 체계도

사고 종별	보고기준	상황관리 흐름도
화재	• 사망자 5명 이상 • 사상자 10명 이상 • 재산피해 20억원 이상 • 이재민 100명 이상 • 국가중요시설물 • 특수화재(지하가, 철도, 항만, 항공기 등) • 대형산불(30ha이상) • 기타 보고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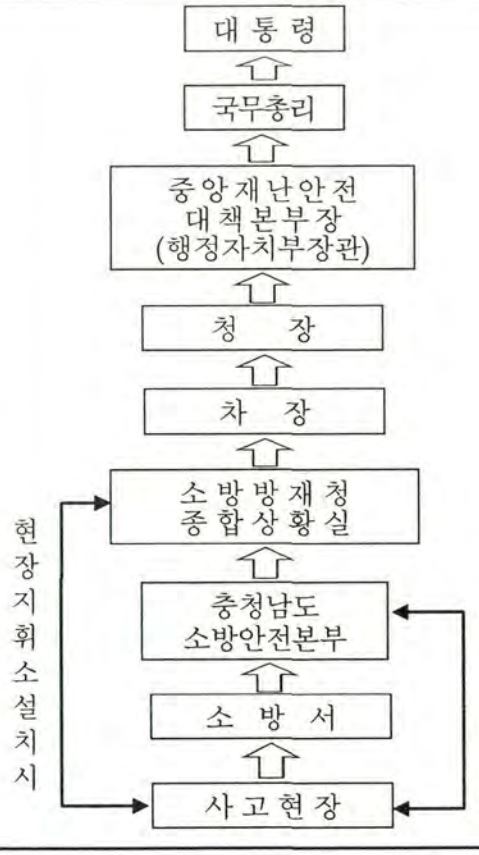
구조 구급	• 사망 5명 이상 • 사상자 20명 이상 • 기타 보고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사고	
기타 사고	• 대형폭발사고(가스 등) • 특수사고 (붕괴, 매몰, 대형충돌등) • 기타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고	

다. 사고유형별 참여대상기관 및 동원기관

사고유형	요청기관	동원장비
고층건물 화재	군, 경찰, 가스, 전기 의료기관, 수도부서	인명구조헬기, 고가사다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긴급복구차 (가스, 전기, 수도 등)
건축물 붕괴	군, 경찰, 의료기관 전기, 가스, 수도 중장비보유업체, 자원봉사자	구조공작차, 구급차, 조명차, 긴급복구차(가스, 전기, 수도 등) 매몰자 인명탐색기
산불	산림청, 군, 경찰,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산불진화(소방)헬기,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짐펌프
수난사고	군, 경찰, 의료기관 유·도선업체, 잠수요원	인명구조헬기, 구조공작차, 구급차, 모터보트, 잠수장비
도시가스 사고	경찰, 의료기관 가스, 수도	고성능화학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긴급복구차(가스, 수도)
항공기 사고	군, 경찰, 의료기관 공항소방대, 자원봉사자	인명구조헬기, 구조공작차, 구급차, 고성능화학차
지하시설물 사고	경찰, 의료기관 구난차보유업체	구조공작차, 구급차, 구난차, 배연차, 인명구조헬기
대형교통 사고	경찰, 의료기관 구난차보유업체	구조공작차, 구급차, 구난차, 인명구조헬기
독극물 사고	경찰, 의료기관, 환경부서	구조공작차, 구급차, 제독차(제독장비 포함)

5.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로 대형화재 예방

○ 취역시기별 특별 경계근무를 통한 각종 사고의 미연 방지

○ 소방응원협정 체결을 통한 효과적 재난대응체제 구축

○ 신속한 긴급구조체제 확립으로 다양한 사고현장의 신속한 대응

○ 화재예방 경계활동 강화

-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 지도
- 불조심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

○ 대형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자율 방화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 강화

계	호텔 여관	병원	공장	복합 건물	판매 시설	유흥 주점	고층 건물	대량 위험물	기타
314	104	10	89	8	10	3	18	12	60

○ 다중이용업 및 신종자유업 안전관리

- 신규업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 일제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계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고시원	찜질방 등 기타
6,806	1,632	2,328	51	348	1,452	135	645	35	180

○ 자체점검제도의 활성화

- 방화·위험물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실시 감독
- 대형건물 소방시설관리업 감독철저로 정밀점검 확행 유도

○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점검 및 지도관리

- 대상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로 분산 점검실시
-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취약정도에 따른 관리 구분

○ 선진소방 홍보기반 구축

- 소방현장 활동 정보제공
- 다양한 소방홍보활동 전개

○ 한국 119소년단 운영의 내실화

- 조직의 재정비 및 보강
-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대처능력 배양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대량위험물시설 안전점검 강화
- 법령 엄정 적용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나. 대비대책

○ 유관기관간 소방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화재·폭발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 등을 위한 대책 강구

○ 재난대비 실효성있는 소방교육·훈련 강화

○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 성탄절 및 연말연시, 설날전후, 정월대보름, 석가 탄신일, 추석전후 등
- 국가 주요행사 및 이상 기상시

○ 광역 소방출동체제 구축

- 광역소방작전에 따른 운용능력 극대화
- 체결기관간 응원출동훈련 실시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
- 신속한 소방력 지원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추진

- 대테러 교육·훈련 강화
- 테러대응 장비를 연차적 보강

○ 소방통로 확보

-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차 통행 장애요인제거
-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실시
- 고층아파트 특수소방차 부서위치(황색선)지정관리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능력 향상

- 부단한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능력 배양
- 개인장구착용 및 구조구급장비조직 1인1회 이상 실시

○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발전 (도·농지역 기능구분)
  · 도시지역 : 소방홍보 등 예방활동 중점 추진
  · 농촌지역 : 화재진압 등 재난수습활동 중점 추진

○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 철저

- 상수도사업 시행기관인 시·군과, 협조체제강화
- 자연수리등 대용소방용수시설 확보 및 관리
- 소방용수시설별 관리자지정 및 정기·수시조사

○ 직장 자위소방대 력량 강화

- 초기화재 진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 소방 종합 통신망 확충

- 소방 무선통신망 확충 보강
- 완벽한 재난정보망 구축으로 효율 극대화
- 아마추어 무선통신망(HAM) 구축

○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설치운영

- 화재피해복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안내
-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대도민 봉사행정 구현

다. 구조·구급대책

○ 대형재난대비 현장지휘 및 수습능력 제고

- 신속한 긴급구조체계 확립으로 현장대응능력 배양
- 긴급구조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 재난대비합동훈련 실시로 총체적인 현장 대응태세 확립

○ 긴급구조체제 확립

- 구조·구급 장비점검 철저
-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구조·구급 출동체계 구축

○ 구조·구급능력 배양

- 특수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 119구급대원 전문화 추진
- 특수사고대비 전문교육 확대 : 수난, 산악, 방사능사고 등

○ 전문구급요원 양성

-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등

< 화재 대응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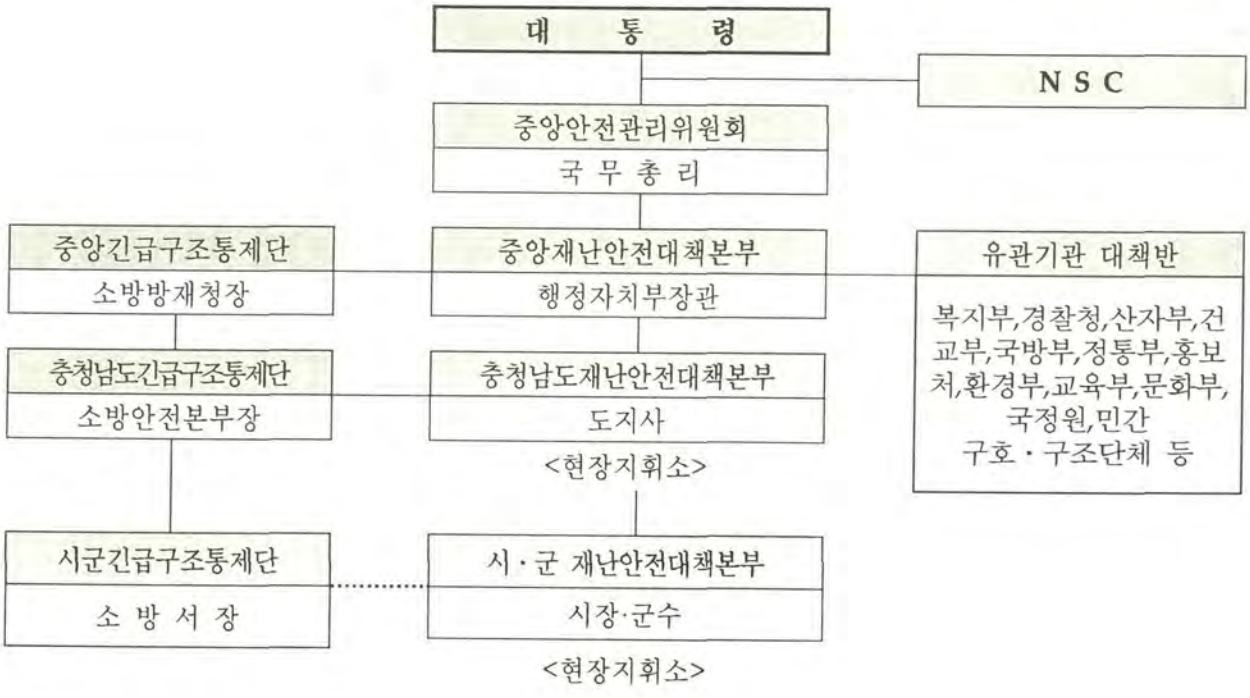

【 비상연락 체계도 】

충1남지방경찰청
(042) 252-0112
(042) 255-9414
행정 7000

육군제2162부대
(042) 829-6301
(042) 829-6119

한국전력충남지사
(042) 620-2212
(042) 620-2266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지사
(042) 285-6407
(042) 280-3400-9

KT 충남본부
(042)485-7361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042) 485-0019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042) 254-7101

대형화재광역
소방응원요청

대전광역시
(042) 600-5140

경기도
(031)222-1119

전라북도
(063) 280-3119

충청북도
(043) 276-1119

행정자치부재난상황실
(02)3703-4949
행정 111-4949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일반(02) 3703-4119, 5119
행정 111-4119, 5119

소방안전본부 재난상황실
일반 (042)220-3119,
행 정 3119

헬기보유기관

○ 육군항공학교
(041) 736-8026~8
○ 육군본부항공대
(041)733-8648
(042) 550-3386-헬기장
○ 충남지방경찰청항공대
(042) 582-8054, 행정 5303
○ 경기도소방항공대
(031)37-3013,행정0296-3835
○ 육군제2162부대
주 : (042) 829-6301, 6660
야 : (042) 823-1113

소방서(9개)
천안소방서 (041)551-2119 (행정)0417-2119
공주소방서 (041)854-2119 (행정)0416-599
보령소방서 (041)935-0119 (행정)0452-599
아산소방서 (041)544-2119 (행정)0418-599
서산소방서 (041)665-2119 (행정)0455-599
논산소방서 (041)733-6119 (행정)0461-578
홍성소방서 (041)634-9119 (행정)0451-794
예산소방서 (041)333-3211 (행정)0458-647
당진소방서 (041)355-2199

파출소(32개)	
구성	(041)551-0119
성거	(041)557-5119
서부	(041)573-2119
두정	(041)554-0119
독립기념관	(041)557-8119
성환	(041)581-2119
교동	(041)854-3119
유구	(041)841-2119
조치원	(041)863-0119
죽정	(041)932-0119
신흑	(041)933-0119
장항	(041)956-0119
서천	(041)953-0119
웅천	(041)933-2119
모종	(041)545-2119
둔포	(041)531-2119
예천	(041)663-7119
대산	(041)663-8119
태안	(041)674-2119
안면	(041)673-4119
내동	(041)735-2119
강경	(041)745-4119
부여	(041)835-0119
임천	(041)833-2119
금산	(041)751-0119
홍성	(041)632-2119
광천	(041)642-0119
청양	(041)943-0119
예산	(041)333-3119
삽교	(041)338-2119
당진	(041)355-2119
합덕	(041)362-2119

제11장 교통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물 확대 및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켜 교통안전 선진道로 도약 (2001년 709명 → '06년 350명)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없는 충남 건설

1. 추진방침

○ 교통안전의식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 보행자를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 교통수단의 안전도 확보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 및 단속 강화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교통여건

가. 자동차등록현황

(단위 : 대, 2004. 12. 31 현재)

구 분	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635,947	410,915	50,446	172,382	2,204
관 용	3,093	798	608	1,502	185
자가용	607,530	402,034	46,284	158,632	580
영업용	25,324	8,083	3,554	12,248	1,439

○ 등록대수 분포

- 용도별 : 자가용 95.5%, 영업용 4.0%, 관용 0.5%

- 차종별 : 승용 64.6%, 승합 7.9%, 화물 27.1%, 특수 0.4%

○ 전년 동기대비 33,514대**(5.6%)증가**

- 용도별 : 자가용 32,841대, 영업용 572대, 관용 101대 증가

- 차종별 : 승용 27,520대, 화물 5,998대, 특수 79대 증가, 승합 83대 감소

○ 가구기준 보유율 : 1.16가구 당 1대

○ 인구기준 보유율 : 3.1인당 1대

나. 도로현황

(2004. 12. 31현재)

구 분	계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도로연장(km) (구성비)	7,622.2	303.8 (4.0%)	1,400.0 (18.4%)	1,817.4 (23.8%)	4,101.0 (53.8%)

* 2003년 7,306.8km ~ 2004년 7,622.2km(도로연장 315.4km 4.3% 증가)

다. 교통안전시설현황

(단위 : 개)

구 분	교 통 안 전 표 지					신호기	신호등
	계	주 의	규 제	지 시	보 조		
'03. 12월	43,505	19,390	11,014	9,085	4,016	929	14,709
'04. 12월	46,238	20,388	11,813	9,726	4,311	1,079	16,222
증 감 (%)	2,733 (6.3)	998 (5.1)	799 (7.3)	641 (7.1)	295 (7.3)	150 (16.1)	1513 (10.3)

○ 횡단보도 5,652개소(2003년 보다 300개소 5.6%증가)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 1,670개소(29.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3,982개소(70.5%)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533개소(초등학교 298, 유치원235)

○ 일방통행로 지정 : 107구간 27.835km

○ 신호연동제 실시 : 79구간(신호기 462기) 286.9km

○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 보행자작동 신호기 : 81개소 151개
- 잔여시간 표시기 : 48개소 110개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계		리모콘겸용		버튼식		일반식	
개소	개	개소	개	개소	개	개소	개
117	273	78	208	8	24	31	41

라.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체 현황

(2004. 12. 31)

계	검 사 소	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
121개소	3	3	115

○ 자동차검사를 편리하게 받을수 있도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운영 (도서지역 출장검사 : 8개섬 548대)

마. 자동차 정비업체

(2004. 12. 31)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1,678업체	177	63	13	1,425

○ '03년에 비해 29업체 1.8%증가

- 부분정비업14, 종합14, 원동기1업체 증가

바. 운수업체

(2004. 12. 31현재)

구분	계	택시		대여	버스			특수여객	화물		
		법인	개인		시외	시내 농어촌	전세		일반	개별	용달
업체수	846	77		68	5	18	83	80	516		
면허대수 (등록대수)	21,913	2,318	3,491	2676	822	1,428	1,609	146	5,401	2,016	2,006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교통안전 범국민운동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 : 매월 첫째주 화요일

-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운수조합·협회, 민간 교통안전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교통안전 범국민운동 캠페인전개

※ 충남지방경찰청「교통사망사고10%줄이기」행사와 연계 추진

○ 계절별 행락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2회

- 봄 : 관광지, 유명사찰 등, 여름 : 해수욕장 등

○ 교통사고사례 사진전시회 : 7~8월(60일간)

- 휴가철 관광지, 해수욕장 및 역·터미널, 시내 혼잡지 순회전시

○ 교통안전의 달 행사 : 9월

- 교통사고 줄이기 범 시·군민대회
- 16개시·군 일제실시로 도민 공감대 조성

○ 교통법규준수권고엽서 발송 : 1,500매

-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준법운행권고

○ 보도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

- 교통방송, 유선방송, 반상회보, 지역신문, 도·시·군정지 등

○ 홍보물 설치 : 입간판, 프랑카드, 현판, 홍보탑 등

○ 사업용차량에 교통안전 홍보물배포 : 3종 30,000매

2) 평생교통안전 교육체계 구축

○ 체험교육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 2개소(천안, 홍성)

위 치	면적	준공일자	조성비용	비 고
천안공원관리사업소내	1,800M^2	'97.9.22	47백만원	
홍 성 경 찰 서 내	1,000M^2	'97.5. 2	72백만원	

○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 6개교

○ 지도담당교사, 어머니명예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초·중·고등 학교 교통안전교육 제도화

- 준법정신, 교통예절, 교통질서 등 과정별 교육 실시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학 생 수	1,285교/ 340,118명	561/ 21,295	432/ 150,441	186/ 73,441	106/ 94,941
교과시간	년 5-25시간	5-25	5-25	5-25	5-25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교육 : 운수연수원, 조합, 사내

구 분	합 계	운수연수원			조합	운송업체 사내교육
		운 수 종사자	교육훈련 담 당 자	경영자	신 규 채용자	
교육인원	126,900명	16,000	100	-	800	110,000

- 총알택시 등 과속운행 근절, 대형차의 과속, 과적, 난폭운행 근절

-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중심 교육에서 안전관리중심으로 교육내용 전환

○ 자가용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 및 교정교육 47,800명

○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노인교실 개최 : 6개소 6회 600명

나. 대비대책

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 15개소 1,752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요인 분석 개선

-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사고 많은지점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나)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 정비 · 확충

○ 보행자작동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확대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38개교 5,612백만원

○ 위험도로 개선사업 : 31개소 15,908백만원

○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 · 교통안전시설 개선

- 보도시설, 갓길포장, 가드레일 설치 등

다)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점검으로 사업용 자동차 구조 등

자동차 안전성 확보 : 2회(봄, 가을) 15,000대

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교통장애 요인 제거 등 주민생활환경보전

2) 자동차 안전도 향상

가)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계 및 속도제한장치 부착 이행상태 관리

: 자동차 검사소등과 연계

나) 운수업체 안전진단 실시 : 교통사고 다발 및 대형사고 업체

다) 대형자동차 등의 안전관리

- 화물 자동차(총 중량 8톤 이상)의 후면 안전판 설치
- 대형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후면 야광판 부착
- 경운기 등 주행농기계 안전등 설치 지속추진

(제작과정에서 개선토록 근본적인 대책 방안 강구)

○ 자동차의 정비능력 제고

- 자동차정비업체 시설개선 및 검사시설 확충등 안전성 확보

다. 대응대책

1) 도로시설의 개선

○ 선형개량 :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구간 등 개선(31개소 15,240백만원)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갓길포장 : 7구간 350백만원

- 신설포장구간 : 당초 설계반영 본 공사와 동시포장
- 기존포장구간 : 유지보수사업으로 지속추진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9개소 810백만원

- 미끄럼방지시설 : 급경사, 급커브, 교차로 등 취약도로
- 가드레일 확충 : 급커브, 대성토부 등의 차량이탈 및 추락방지

○ 절개지 보호 및 배수시설 개선 : 27개소 2,390백만원

- 절개지 보호 : 대절토부, 낙석·붕괴예방 등 보호시설 확충
- 배수시설개선 : 암거, 배수관, 측구, 도수로등 도로구조보전

○ 덧씌우기 및 가각정리 : 17구간 1,910백만원

- 덧씌우기 : 포장면 평탄성유지 교통사고예방 및 포장수명연장
- 가각정리 : 교차분기점 최소회전반경과 시거확보

○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 507개소 1,868백만원

○ 시야장애물 제거 및 제설작업

- 시계불량지구의 가지치기 등 수시정비
-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대책강구

⇨ 교통약자위주의 시설개선으로 보행자 사고 Zero화 추진

2) 지도·단속 강화

○ 과속단속 : 인명사상에 치명적인 과속 교통사고예방

-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174대 및 이동식 단속장비 27대 설치운영

○ 과적단속 : 과적근원지 도내주요도로 권역별 투망식 단속으로 도로구조보전

- 23개반 29개 노선 매분기 20일 이상 야간단속

○ 사업용자동차 단속 : 2개반 26명 53회 실시

- 교통안전 이용객 편의위주 계절별 특별·합동단속 및 수시단속 지속실시

· 일상단속 : 주 1회이상(시군실시)

· 합동단속 : 분기1회이상(도, 시군, 조합, 경찰합동·교체단속)

· 특별단속 : 계절별, 사안별, 피서지 등(도, 시군, 조합)

※ 합리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군에 도지사검사공무원증 발급

○ 교통불편신고 처리 : 승객으로부터 신고된 불편사항처리 운송질서확립 및 이용객 서비스제고

○ 주·정차위반 단속 : 통행 안전성확보 등 불법도로점용·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단속반 17개반 250명 운영

3) 부문별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추 진 사 항	주 관 부 서 (협조부서)	사 업 량	비 고
가 .교통안전의식의선진화 ○ 교통안전 범국민운동 전개 ·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 안전 캠페인 전개 · 교통법규준수권고엽서 발송	도, 시 · 군 (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운수조합, 기타국민운동단체)	정기 · 수시 230개소 20천명 1,500매	
○ 평생교통안전교육체계구축 · 어린이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교통안전시범학교운영 · 초 · 중 · 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자료보급 -교과시간 확보 -교통안전지도담당지정	도, 시 · 군 시 · 군,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개소 6개소 5~25시간 2,300명	
○ 교통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 · 교육훈련담당자 교육 · 사내교육	도, 시 · 군 (운수연수원) (운수연수원) (조합 · 업체)	16,000명 100명 110천명	
○ 운전면허 소지자 교육강화 · 교정교육 대상자 교육	경 찰 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0,000명	

추 진 사 항	주 관 부 서 (협조부서)	사 업 량	비 고
나. 편안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 교통사고 발생 요인 제거 및 교통환경개선 · 여건변화에 따른 사고 많은지점조사 및 조치	도, 시·군 종합건설사업소 (경 찰 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5개소	
○안전시설 정비 확충 ·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 · 미끄럼·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확충 · 갓길 포장 확대 · 전방 선형예고등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확충	도, 시·군 종합건설사업소 (경 찰 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년 중 지속실시	
○보행자 중심의 횡단 보도 시설 개선 · 보·차도분리 방호책, 노면표시 확충 · 무단횡단 예방휀스 및 마을주변 가로등 설치확대 · 황단보도 일시정지 표지 및 노면표시확대	도, 시·군 (경 찰 청)	년 중 지속실시	

추 진 사 항	주 관 부 서 (협조부서)	사 업 량	비 고
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 ㅇ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 운수업체 안전진단강화 · 운행기록계부착,속도 제한기 설치 및 이행 상태 관리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년 중 지속실시	
ㅇ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판, 야광판 부착 확인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년 중 지속실시	
ㅇ자동차 안전성 제고 ·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시설 확충 ·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 능력 향상 · 자동차정비공장 지도 단속 강화 ·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의 엄정 실시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년 중 지속실시	

추 진 사 항	주 관 부 서 (협조부서)	사 업 량	비 고
라. 지도·단속 강화 ○사고예방차원의 지도 단속 강화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 중점 ·이륜차(폭주족)지도·단속 강화	경 찰 청 (도, 시·군)	정 기 수 시 지속실시	
○계절별, 사안별, 특별단속 ○과적근원지 단속강화	도, 시·군 경 찰 청 도로관리청	정 기 수 시 지속실시	
○과학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영상속도측정기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온라인 및 자동 해상 처리 시스템 구축	경 찰 청 (도, 시·군)	정 기 수 시 지속실시	
마. 기타 ○건설공사장 교통안전 대책 ·도로관련 공사시 안전 대책 시행 ·공사유형별 처리대책 시행	도, 시·군 종합건설사업소	년 중 지속실시	

□ 재정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75,580	37,896	75,681	62,003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243		227	16
○안전한도로 교통환경 조성	110,544	35,796	74,748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원교육	64,793	2,100	706	61,987

□ 유관기관 전화번호부

기 관 명	전화번호	비고
교통안전공단대전 · 충남지사	042-933-432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042-520-0114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분석센터	042-700-2252	

【 교통사고 수습 대책본부 】

道 대책본부 설치

○ 사망 10, 중상 20명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 20명 중상이상, 연쇄충돌로 사망 10명, 부상 10명이상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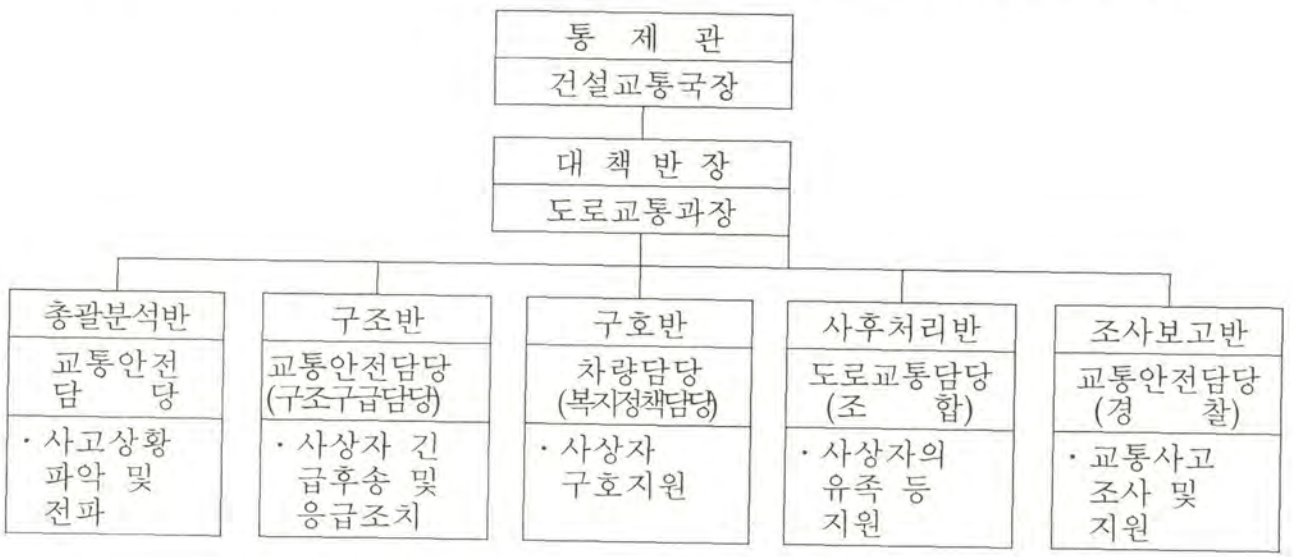

시 · 군 대책본부설치

○ 사망 5, 중상자 10명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 10명 중상이상, 연쇄충돌로 사망 5명, 부상 5명이상 발생시

※ 시 · 군상황실 지원반은 시 · 군 실정에 맞게 설치 운영

대책반장	부시장 · 부군수

○ 제보자 ⇨ 읍 · 면 ⇨ 시 · 군(교통담당부서) ⇨ 대책 반장 ⇨ 지원반소집

제 12 장 건축물 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건축물의 안전관리 철저로 사고의 사전예방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1. 추진 방침

○ 주요 취약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유관기관과 긴급 지원체제 구축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사후조치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안전관리대상 : 총 2,532개소

- 일반 건축물 : 2,012개소

계	다중이용 건축물	지방공공 청사	일반대형 건축물	대형건축 공사장	위험물질 저장소	대형 광고물	기타
2,532개소	1,197	273	17	89	119	30	807

- 공동주택 : 520개소

※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은 별도의 중점점검 대상으로 관리

3. 추진계획

가. 예방 대책

1) 건축물 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안전관리과)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항만 시설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기는 부분은 4년에 1회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또는 긴급점검 요청시

○ 건축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 시장·군수가 위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구조안전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

- 정기점검(년 2회) : 관리주체가 점검 실시 후 위해 우려 있다고 판단시 시장 등에 보고 및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조치

- 특별점검 :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도가 취약한 공동주택 : 매월 1회이상 점검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 일일안전점검 : 건설업자 자체로 매일 점검

-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기 및 회수에 따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

나. 대비대책

1) 점검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

○ 구조상 불안요인 해소될 때까지 담당자 지정 추적관리 및 수시 순찰 강화

○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관리주체, 건축주를 개별 지도하여 조속히 보수·보강 조치

다. 대응대책

1) 신고접수

○ 재난상황 접수·보고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협조·지원체계 구축

2) 응급조치

○ 사고대책본부 설치 · 운영

○ 유관기관 · 단체와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 시·군 및 중앙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게 구축
- 동원가능 인원 · 장비· 자재 · 구호물자 · 의료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재난 수습 · 복구 지원방안 강구

○ 가스 및 전기 차단

○ 사고지역 및 접근통제 등 경계구역 설정

○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을 통한 인명 구조 및 사상자 치료

○ 사고 확산대비 안전조치

- 인근주민 대피
- 가스등 폭발물 사전 제거후 구조 및 복구

○ 인원 ·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라. 수습 및 복구대책

○ 사고원인 파악 및 피해조사

- 재난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
- 피해시설 복구대책수립 및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수용, 구호소 설치

○ 사망자 시신 안치·관리 및 배상대책수립, 중재

- 상자유족과 보상 협의
- 변호사, 법률구조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아 보상협의 추진

○ 화재진압 및 긴급복구

- 각종 장비 및 인력동원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제 유지 및 장비·자재 확보방안 강구
- 항구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복구

○ 2차 피해유발 요인제거

- 폭발물·가스 시설내의 잔여가스 완전제거 후 복구

비 상 연 락 체 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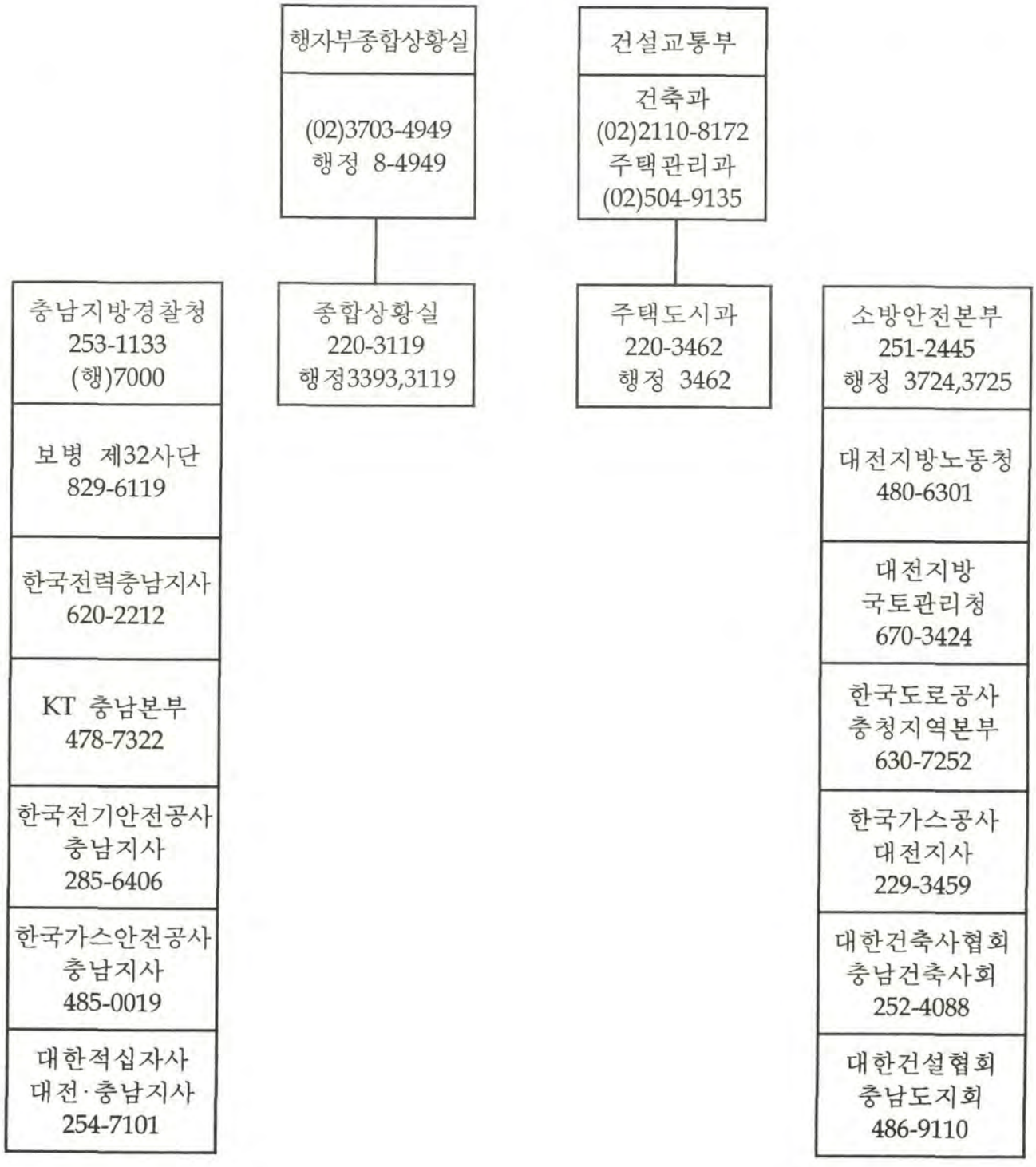
행자부종합상황실
(02)3703-4949
행정 8-4949
종합상황실
220-3119
행정3393,3119
건설교통부
건축과
(02)2110-8172
주택관리과
(02)504-9135
주택도시과
220-3462
행정 3462
충남지방경찰청
253-1133
(행)7000
보병 제32사단
829-6119
한국전력충남지사
620-2212
KT 충남본부
478-7322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
285-6406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
485-0019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254-7101
소방안전본부
251-2445
행정 3724,3725
대전지방노동청
480-630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670-3424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630-7252
한국가스공사
대전지사
229-3459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252-4088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지회
486-9110

제 13 장 가스 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가스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 추진 방침

○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인 사전제거

○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로 안전의식 고취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

2. 가스관련 현황

○ 가스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도시가스	가스제조	충전시설	집단공급	저장소	판매시설	특정사용
16,640	3	335	143	196	247	355	11,377

○ 도시가스 공급시설

업 체 명	공급지역	공급관로(㎞)	정압기(개소)
계		630	94
중부도시가스㈜	천안·공주·보령 논산·아산·연기	530	75
서해도시가스(주)	당진·서산	86	15
㈜충남도시가스	계룡	14	4

○ 도내 가스사용현황

총가구수	사 용 가 구 수		
	계	L P G	도시가스
709,731	687,959	526,579	161,380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 취약시기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강화

- 추진방법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점검대상 : LPG충전·집단공급·판매·도시가스·다중이용시설 등
- 점검방법 : 道(시·군),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영세가구 및 경로당의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02 ~ '06)

-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6,50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투입, 41,049개소 개선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대책 시행

- 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 의무화
- 공급자가 소비자시설을 점검하고 불량가스시설 개선 주도
- 사고 발생시는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보상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배관연장 15㎞마다 순찰자 지정, 1일 1회 이상 순찰 실시
- 타 공사시 배관파손에 의한 사고방지 홍보 및 계도 강화
- 연 3회 道, 시·군, 가스안전공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재난발생을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행정기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LPG충전소 등 대상
- 상황근무요원 및 비상출동대기조 편성 운영, 유사시 신속 대처

○ 가스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
- 현장종사자 안전교육 및 대중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 실시
- 기관·단체·업계 및 초·중·고교 학생 참여 유도로 효과 제고

나. 대응 대책

○ 상황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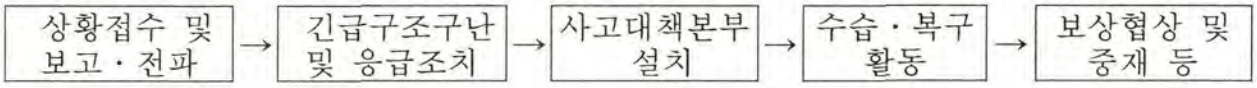

○ 재난상황 접수·보고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 재난상황 파악 및 적기수습을 위한 신속한 보고(전파)와 역할 분담 등 협조·지원체계 구축
- 재난유형별 실시간 보고 및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을 통한 응급조치 등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 실시
- 가스차단 및 확산방지 등의 안전조치로 2차 피해 방지

[재난상황 보고·전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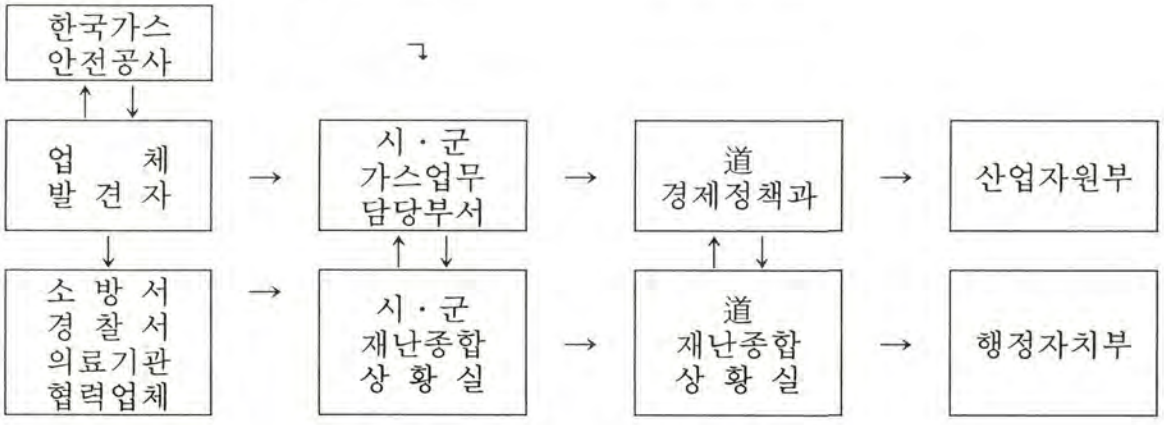

○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 시·군 및 중앙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시·군 또는 중앙과 합동으로 대응
- 동원가능 인원·장비·자재·구호물자·의료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재난수습·복구 지원방안 강구

○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조치

- 상황실에 긴급구조반을 설치·운영하고 인명구조활동 전개
- 대피명령 및 경계구역 설정과 인원·차량통제 및 질서유지

○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대형재난 발생시 수습·복구·보상업무의 총괄 및 조정, 시·군 사고대책본부 지도·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요청
- 사고발생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설치범위 결정(道, 시군)
-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道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 지역여건과 사태수습 진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다. 수습 및 복구대책

○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가스사고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의 「재난합동조사반」에 지원요청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 수행

○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수립 및 중재

- 재난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배상(보상) 문제를 감안, 전문가를 투입하여 신중 대응
- 피해보상·협상전문 변호사, 법률구조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 대표를 대상으로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금 지급·정산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 즉시 초동출동반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의 연락체제 유지 및 필요 장비·자재 확보방안 강구

- 상황 안정시는 복구지원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가스시설 내의 잔여가스 제거 등을 통한 2차 피해유발요인 제거
- 피해업체의 항구복구 및 정상가동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재민의 생활안정대책 등 강구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재난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을 평가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 재난복구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 보완

4. 자원동원계획

○ 사고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을 동원하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타 기관에 지원 요청

○ 사고발생업체의 동종업계 및 협력업체와 가스안전공사의 인력및 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히 복구

5. 유관기관·업계 전화번호부

기관·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탄방동 668	042-485-0019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천안시 신부동 467-1	041-561-0019	
한국LP가스공업협회 충남지회	천안시 성정동 678-8	041-571-3915	
한국LP가스판매협회 충남지방협회	공주시 신관동 601-3	041-852-8444	
중부도시가스㈜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0-12	041-530-1900	
서해도시가스㈜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97	041-350-7700	
㈜충남도시가스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0	042-229-5101	

제 14 장 산불 방지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적극적인 사전예방대책 추진으로 산불발생 최소화

○ 장비의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 체제 구축

1. 추진방침

○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

○ 예방위주의 밀착감시, 반복 순찰로 산불요인 사전차단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계도·단속 철저

2. 산불 발생현황

가. 최근 5년간 산불현황

(면적 : ha)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충 남	79	269.4	46	38.54	44	2,309.6	8	4.4	12	3.8
전 국	729	25.952.75	785	963.22	599	3,588.15	271	132.85	544	1,587.89

○ 주요원인(2000~2004)

- 충남 : 입산자 실화 20%, 논·밭두렁소각 30%, 기타 50%
- 전국 : 〃 41% 〃 18%, 〃 41%

나. 우리도 산불의 특성

○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의 대형화 추세 ⇒ 피해면적 증가

○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산불의 초동진화애로 ⇒ 헬기진화 증가

○ 입산자의 부주의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생빈도 증가

2.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봄　철 : 2. 1 ~ 5. 15(3개월 15일)
　　　　　└가을철 : 11. 1 ~ 12. 15(1개월 15일)

- 지역 및 기상여건에 따라 신축운영

○ 설치기관 : 도, 시·군, 읍·면·동 215개 기관

○ 근무시간 : 봄철 09:00~21:00, 가을철 09:00~19:00

- 근무시간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 유지
- 야간 진화작업의 경우에는 진화완료시까지 근무

나. 산불요인 사전제거 대책 추진

○ 입산통제의 강화

- 입산통제지역(597개소 212천ha), 등산로폐쇄(134개노선 382㎞)

※ 위험단계별 통제 확립

- 취약지별 감시활동 철저

· 산불전문진화대(320명) 및 산감기동대 확보(396명)

· 산림공익근무요원 등(134명)

○ 화기물 소지입산 금지 등 강화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

- 산불관련 벌칙 등 산림법 개정내용 정착화

※ 산림법제125조 동법시행령제112조 과태료 규정 준수

- 산불위험시기에 각종 홍보물, 안내판 등 집중설치 배포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금지 대상지역 공고 확대

○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계도 단속 지속 전개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위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안에서 취사행위

○ 산채 및 약초채취자 집중관리

○ 정신질환자 방화 및 어린이 불장난 감시 철저

○ 무속행위자 계도단속 강화

○ 군작전 및 훈련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대책 강구

○ 산림내 사업(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대책 추진

3)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 기　　간 : 2004. 12월 ~ 2005. 2월말

○ 소각대상 : 취약지 논·밭두렁 4,100㎞(국고보조)

○ 방　　법 : 산림법시행규칙제103조제2항규정에 의한 허가
(읍·면별 취합 → 시장·군수 허가후)

4) 산불위험 예보제 실시

○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 적극 실천

- 산불경계경보, 산불위험경보(산림청 홈페이지)

○ 산불발생 위험상태를 지수 및 예보도로 작성, TV 및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방영 및 보도

○ 위험지수에 따른 지역별 산불위험예보 발령

○ 산불 위험상황을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계도

5) 산불예방 분담활동 강화

○ 도 분 담 : 435명, 195개 읍면동

- 통제관 18명, 통제반장 53명, 반원 364명

○ 시군 분담 : 3,684명, 3,358개 마을

- 통제관 201명, 통제반장 614명, 반원 2,869명

○ 대중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재해 방지의 중요성 등을 홍보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협조 유지
- 주말, 공휴일 집중홍보
- 특집보도 등에 기관장 직접 출연

○ 산불방지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주말, 공휴일 전국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가두방송, 마을앰프, 헬기에 의한 공중계도 집중전개
- 산불경계경보, 산불위험경보

6)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 인명사고의 주요원인

- 가해자 사망사고 : 노령자로 연기 질식사
- 진화 참여자의 안전 미숙으로 추락 및 질식사

○ 행동요령

- 산불발생시 우선 신고로 사망사고 방지
- 노약자는 진화작업 참여를 금지
- 진화작업시 방화복, 방연마스크 등 개인장구 휴대
- 야간진화시 진화조 편성 개인행동 금지 : 통신망 확립
- 불머리(火頭) 접근금지, 불길이 약한 측면부터 진화

나. 진화대책

1)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체제 강화

○ 지상감시 및 신고체제

- 감시탑, 감시초소에 감시원을 배치 산불조기발견 감시기능 이행
- 마을단위신고망 재정비 : 리·통장 마을영농회장, 임업후계자 중심으로 신고체제 확충

·독립가옥, 통·반장집, 마을회관을 산불신고소로 활용

○ 공중감시 및 신고체제

- 취약시기 산림청헬기 기동배치로 공중계도 및 감시강화
- 소방·경찰·군 항공기의 산불신고 협조의뢰 및 신고자 포상
- 관할구역 관제탑 및 항공기 통제소간 상호신고 연락망 비치

2) 진화조직보강 및 진화능력 배양

○ 진화동원 및 지휘체계 확립

- 동원근거 : 산림법 제102조,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산불진화지휘본부 설치 : 상황실과 연락체계 유지

○ 진화대 조직의 재정비 정예화

- 진화대 조직을 재정비, 유사시 동원가능 인원으로 편성관리
- 산불진화훈련 등에 진화대 조직을 참가시켜 진화능력 배양

┌ 지상진화대 : 산림공무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 보조진화대 : 시·군 공무원, 기능영림단,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읍·면 의용소방대

○ 산불진화 안전대책

- 진화대원 투입시 안전교육 실시(평시 :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등)

- 각종 산림사업 인부에 대한 산불안전교육 의무화
- 진화능력이 없는 노약자 진화작업 투입금지

3) 산불상황에 따른 진화활동 강화

○ 1 단계 — 초동진화

- 인력진화 : 등짐펌프, 칼퀴, 낫, 동력톱 등 이용

○ 2 단계 — 대형산불로 진화가 어려울 때

- 공중진화 : 산림청 및 우리도 임차헬기(2대), 충남소방, 군·경찰항공대 헬기동원
- 전직원 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동원령 발령

4) 뒷불감시 및 가해자 조치

○ 뒷불감시조 운영 :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

○ 가해자 검거 및 처벌 :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홍보강화

4. 자원동원계획

○ 인력동원

- 진 화 대 : 1,061대 25,883명
  - 유급전문진화대 : 16대 320명
  - 지 상 진 화 대 : 19대 946명
  - 보 조 진 화 대 : 1,026대 24,617명

○ 장비동원

- 헬기 : 64대(산림청 39대, 충남임차헬기 2대, 충남소방 1대, 기타 군용 22)
- 장비 : 진화차 64대 등 진화장비 49,499점

5. 재정투자계획

○ 산불방지사업비 : 6,837,250천원

- 경상적 지원 : 9종 2,354,350천원
- 자본적 지원 : 8종 699,900천원
- 도비보조 : 3,783,000천원

(헬기임차, 산감기동대, 산불경고판 등)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 산불진화 지휘체계

○ 유관기관 산불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 산불 취약지 현황

< 산불 진화 지휘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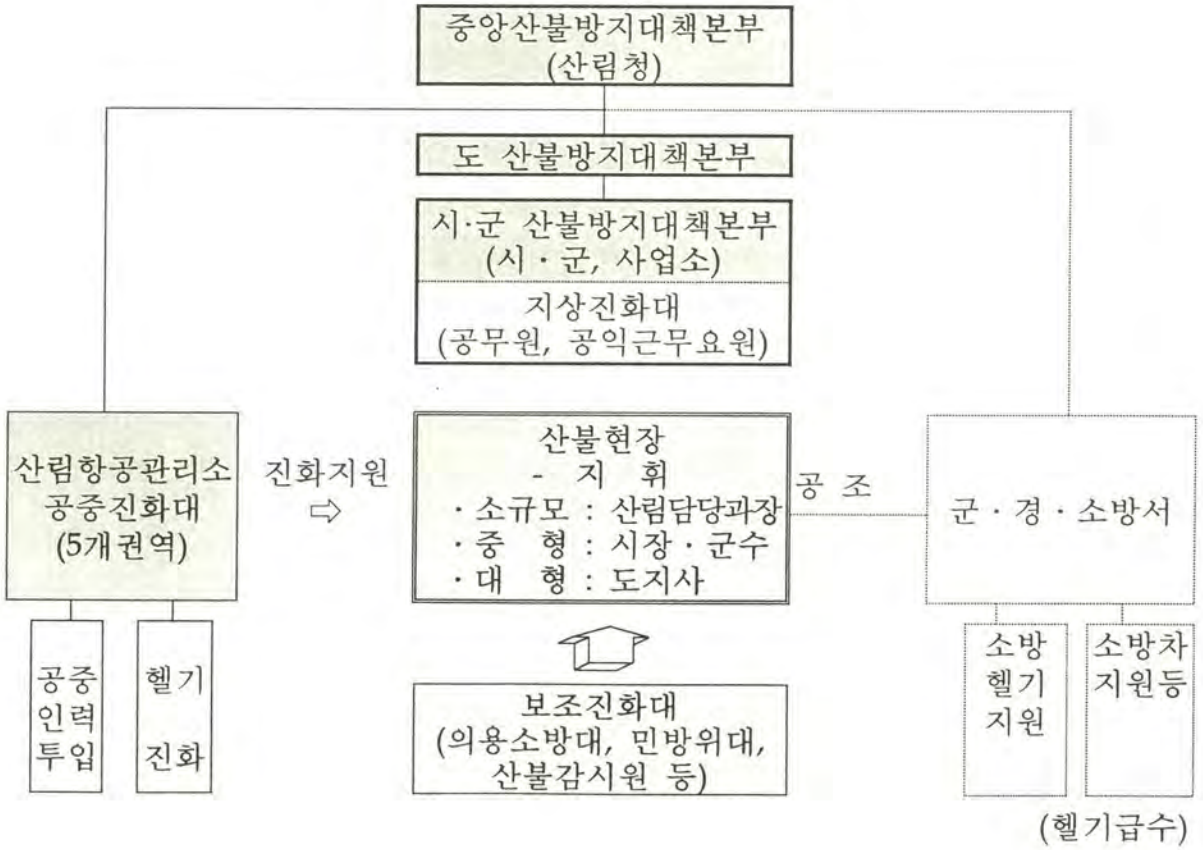

유관기관 산불 비상연락망

김포항공관리소	○ 진화계 : 02-1030-4534 ○ 서무계 : 02-1030-4506
항공관리소익산지소	○ 진화계 : 063-262-6727(행1995-3034) ○ 서무계 : 063-262-6727(행1995-3033)
연기603항공대(정작과)	○ 교환 : 041-866-6038, 605직통 : 867-4019
32사단 상황실	○ 상황실 : 042-829-6114, 829-6119(군수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 031-634-2202
충남소방항공대	○ 행정 : 0458-587, ○ 일반041-864-6119
논산항공학교(정작과)	○ 041-731-6132
국립공원계룡산관리사무소	○ 042-825-3002
중부지방산림관리청	○ 보호계 : 행정 0416-565, 0416-854-5062
부여국유림관리소	○ 경영팀 : 행정 0463-591, 0463-835-1973
연기605항공대	○ 041-867-4019
태안 태화산공군부대	○ 041-675-5280
웅천공군사격장 파견대	○ 041-936-3943
행자부재난관리과	○ 02-3703-5158(행 111-5158) FAX 02-3703-5564
산림청 산불방지과	○ 진화계 042-481-4119, 4258, 4259 ○ 예방계 042-481-4256

산불 취약지 현황

구분 / 시군별	산 이 름	읍 · 면 · 동
계	**34개 산**	**53개 읍 · 면 · 동**
천안시	태조산, 광덕산, 흑성산, 매봉산, 성거산	신안동, 광덕 · 목천 · 성거 · 병천면
공주시	천마산, 봉화산, 계룡산, 태화산, 무성산, 천태산	오곡 · 옥룡동, 반포 · 계룡 · 사곡 · 우성 · 정안 · 의당면
보령시	성주산(오서산)	동대동, 성주 · 청소면
아산시	설화산, 황산, 영인산(광덕산)	장촌 · 좌부 · 기산 · 초사동 · 영인 · 음봉 · 송악면
서산시	부춘산, 팔봉산, 도비산(가야산)	부춘동, 팔봉 · 부석 · 해미면
논산시	대둔산, 노성산	벌곡 · 노성면
금산군	진악산, 서대산(대둔산)	금산읍, 남이 · 진산 · 추부 · 군북면
연기군	운주산	전동 · 전의면
부여군	부소산, 만수산	부여읍, 외산면
서천군	장태봉, 만수산	판교 · 문산 · 시초면
청양군	칠갑산(오서산)	대치 · 정산 · 장평 · 화성면
홍성군	용봉산, 오서산(덕숭산)	광천 · 장곡 · 갈산 · 홍북면
예산군	덕숭산, 가야산(용봉산)	덕산면
태안군	백화산	태안읍
당진군	아미산	면천 · 순성면

제 15 장 환경오염 사고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추진방침

사고관리체계 강화

○ 사고의 예방 → 사고발생 요인의 근원적 제거
○ 발생사고의 조기발견 →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신속한 수습체계 구축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

⇩

중점 추진과제

○ 재난유형별 및 계절별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강구
○ 오염사고 조기발견을 위한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관계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운영
○ 방제장비 확보 및 사고대비 관련기관 합동방제훈련 실시

⇩

환경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구분 / 부문별	총 계	중점 관리대상 시설				재난 위험시설	
		소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계	172	172	146	22	4	-	-
자연보호	27	27	23	3	1	-	-
대기보전	7	7	4	2	1	-	-
수질보전	46	46	40	5	-	-	-
상하수도	51	51	44	7	-	-	-
폐기물관리	40	40	34	4	2	-	-
기 타	1	1	1	-	-	-	-

< 시설별 등급 기준 >

구 분	등 급	상 태
중점관리 대상시설	A 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급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 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재난(사고) 위험시설	D 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재난 유형 및 관리체계

○ 재난유형

- 유류 등에 의한 토양오염사고
- 대기오염물질 유출사고

-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
- 수환경변화 등에 의한 물고기 폐사 사고
-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오·폐수 유출사고
- 유독 물질 유출사고 및 수돗물 오염사고 등

○ 관리(주관)부서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사고 : 환경정책실
- 대기오염사고 : 대기보전국
- 수질오염사고 : 수질보전국
- 상·하수 및 토양오염사고 : 상하수도국
- 폐기물사고 : 폐기물자원국

< 도 >

- 수질오염·토양오염·유해물질사고 : 수질관리과
- 대기오염·폐기물사고 : 환경관리과
- 상하수도사고 : 치수방재과, 수질관리과(하수시설 관련)

< 시·군 >

-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관리(주관)부서를 지정·운영

○ 조직 및 기능(道)

- 조 직 : 2국(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3과(수질관리과, 환경관리과, 치수방재과)
- 기 능

부 서 별	주 요 기 능	비고
수질관리과	○ 수질오염, 하수도 사고방지 등 관련업무	
환경관리과	○ 대기오염, 폐기물 사고방지 등 관련업무	
치수방재과	○ 상수도 사고방지 등 관련업무	

2)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계획 수립

-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 분야별 관리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83호, '04. 9. 1)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

○ 환경오염사고 보고 및 지휘체계 확립

-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며, 유역환경청에서는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도 및 시·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다만, 중형·소형사고의 경우에는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전개

- 자율감시체계 구축에 의한 하천감시 및 수질측정망 등 운영

○ 유류사고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

- 유류협회 관계자 등 안전교육 실시

· 운전자, 유류시설 관리자 교육실시

·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및 수행방법 등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 환경관련시설 일제조사

·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년1회)

- 안전점검 등 시설보수 조치

·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실시, 노후시설 보수조치

다. 분야별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분 야 별	예 방 대 책
상수원 오염사고	○ 상수원주변지역(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으로 사전 예방대책 추진 ○ 평상시 - 취수구 주변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을 설치하고 응고제·유화제·기름제거포·흡착롤 등 방제장비 상시 확보 - 취수구(탑) 등에 대한 일일수찰 실시 특히, 행락철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일일 수시 순찰 강화 - 야간 공장에서 무단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투기 및 계절변화에 따른 수질이상 현상 등 발견시 취수지점, 착수정(원수저류조), 침전수, 여과수, 정수지에서 수질경보시스템·직접관찰을 통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조기발견 대처 ○ 취수장 수질오염사고의 경우 - 주로 취수장 상류에서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 비상 연락체계 및 정수장으로 오염물질의 유하시간 및 농도 등 사전파악 - 정수장 유입에 대비 취수구 등에서 수시 간이수질측정 실시 - 정량파악을 위한 정밀 수질분석 준비 및 실시 ○ 원수 수질 이상징후 발견시 - 수질이상 발견시 즉시 취·정수지에 대한 연속 수질정량분석 실시 - 원수 및 정수의 수질분석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수질이상 항목 및 오염우려 항목에 대하여 가능한 최소 3시간 단위로 연속 수질 분석 실시- 원수 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정상적인 정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급수체계 수립 등 대처방안 강구 (취수지점 변경, 고도처리방안 강구 등)
대기오염사고	○ 사고가 우려되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철저 - 배출(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등 오염행위 중점단속 - 문제사업장 제조공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피해예상 지역 등 자료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유해물질의 유출 및 정상운전여부 상시 확인 -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분 야 별	예 방 대 책
대기오염사고	- 업소별로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처리방법 및 응급처지 요령 등을 파악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 기록유지
정수장시설 안전경계예방	○ 평상시 - 정수장 주변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임의적인 접근을 완전차단 - 출입자는 반드시 정문을 통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방문일지에 기록유지 - 평일에는 정수장에서 판단할 때 취약지로 생각되는 지점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시에는 혹시 모를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하여 중요지점에 대한 순찰 강화 ○ 경계이상시 - 외부 침입자 및 불순분자의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인원은 가까운 경찰서에 그리고 다수인 경우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즉시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등 시설안전 경계대책 강화 - 정수(수돗물) 수질검사결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돗물 공급을 정지 ○ 사고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정수장 수돗물의 오염 또는 급수정지 등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황반, 현장 조사반, 정수처리반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운영하고도(사고 대책본부)를 거쳐 환경부(중앙상황실)에 보고 - 수돗물 수질오염물질별 특성에 따른 상황판단기준(급수정지, Ⅰ급상황, Ⅱ급상황)에 따라 오염물질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해당 수돗물 공급지역과 홍보매체(지역방송·신문)선정, 주민공고문을 작성홍보, 관내 보건소 등 검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인근 정수장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당국 등 유관기관 비상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도지사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수질오염사고	○ 업체별·업종별로 사용품목, 폐수발생량, 처리실태 등을 정밀조사 하여 자료 분석 및 문제업소 중점관리 - 지역별·수계별로 업체현황 분석·정리 ○ 관련시설 자체 안전점검 정례화 및 준수사항 이행실태 관리 철저 - 유해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이송관, 유입·배출구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후 기록유지

분 야 별	예 방 대 책
수질오염사고	○ 유류유출 우려 시설 관리강화 및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 - 정유사 등의 유류보관·이송·사용·판매시설 등 관리 철저 - 유류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유류차량 운전자, 유류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실시 ○ 도시 하수구와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 오일휀스 상시 설치 - 기업체의 하수구·폐수 최종방류구 등에 설치 권고
수환경변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사고	○ 퇴적물의 하천 유입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 실시 - 하수구·맨홀내 퇴적물 제거, 실개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퇴적물 양을 최소화 -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바닥 및 도로 청소 ○ 물고기 폐사우려지역 하상퇴적물 제거 등 중점적인 하천정화작업 - 하천의 물막힘 현상이나 정체된 수역이 없도록 하천 정비 ○ 농촌지역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관리 철저 - 축산폐수 지하침투·외부유출 등 점검 철저
축산분야 오염사고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조사결과 등급별 관리 - 노후·부식이 잘되는 배관설비 등 취약시설 보수 및 점검 -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운영용원 운전교육 강화 및 자동제어장치 이상유무 수시확인 -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또는 인입선 이중설치 및 고장대비 모터 펌프·브로와 등 예비장비 확보 - 특히, 해빙기 및 장마철 재비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추진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문제시설 정기·수시점검 강화 및 대형시설 카드화, 담당자 지정관리 -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사고우려업소 집중감시 및 등 관리강화
폐기물·오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에서의 사고	○ 노후·부식이 잘되는 배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 구조물의 균열·침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 운영요원에 대한 운전교육 강화 및 자동제어 장치에 대한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 ○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 또는 인입선의 2중 설치 및 모터 펌프 등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

분 야 별	예 방 대 책
토 양 오염사고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점검 -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누출방지시설,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감지시설, 오염물질 확산 등 방지시설 ○ 흡착포 등 방제장비 비치상태 점검 ○ 목측 또는 누유감지시설 등을 확인하여 탱크의 누유여부 점검 ○ 탱크 주입구 및 펌프설비의 적정여부 점검 ○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의 유지관리 적정여부 점검 ○ 배관, 바닥 등 기타시설의 유지관리 적정여부 점검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 경우 토양오염방지 조치의 적정 이행상태 여부 관리 철저
유독물질 유출사고	○ 유독물영업자 안전교육 강화 - 유독물 취급업소(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업)대표자 및 책임 부서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자체 안전관리 강화 ○ 취약시기 유독물취급시설 지도점검 강화 - 장마철, 동절기,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 등과 병행하여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취급시설 및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점검 실시 - 사고우려 취약업소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문제점 개선시까지 중점 관리 ○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 - 보령댐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지정 시행(2000.10.22) 및 유류, 유독물 등 수송차량 운행여부 등에 대한 관할지역 경찰관서 등과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시 유독물 운반계획서 수립대상 업소 (1회 5톤 이상 운반)의 경우, 운송도로 인근의 행정기관 숙지, 사고대응 장비 휴대 등 유독물 운반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나. 대비대책

1)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강화

○ 사고 유형별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 작성 道 주관으로 물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년1회 이상 실시

※ 기업체·민간단체·유관기관·지역주민 등 많은 인원을 참관토록하여 훈련효과 제고

2) 계절 및 여건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수립·추진

○ 갈수기(12월~익년4월) : 환경부,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도 : 수질관리과)

- 사고우려 오염원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하천감시 활동 강화
- 해빙기(3~4월) 유독물·유류 등 저장탱크와 환경기초시설의 붕괴 및 균열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병행추진

○ 봄철 : 물속 용존산소 부족(수환경변화)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구·맨홀내 퇴적물의 하천유입 방지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

○ 장마철(6 ~7월) : 폐수다량배출업소·유해물질·유기용제 사용업소 등 사고취약 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 실시

- 오·폐수처리장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시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추진

○ 연말연시, 설날, 추석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사고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감시 등 단속 강화

3)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등조치 등을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4)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 구축

○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각 유역환경청에 구축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고물질의 유해성, 사고대응 시나리오 등 정보를 지자체 소방관서 등에 제공

다. 대응대책

1)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한 환경오염사고 보고·지휘체계 운영

○ 사고의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지역 사고대책본부 설치 및 24시간 신고·접수체계 유지

○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확립 및 방제장비 상시 동원 태세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2)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 시행

○ 신속한 초동조치, 관계자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 등 상황유지

- 사고유형, 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 등
- 유무선 전화 등 통신수단 이용 6하원칙에 의거 사고개황 등

○ 관계자 비상소집 및 효율적 방제조치 시행

○ 사고규모, 원인물질 유형에 따라 단계적 대응

○ 사고관련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능별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지원체계 확립

- 관할구역내 경찰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군부대 등 출동 지원 요청
- 민·관·군 합동 응급방제 활동 등 전개
- 사고원인조사, 교통통제, 주민대피 현장질서 유지

○ 2차 환경오염사고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환경오염사고 영향권 관계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 제2의 환경오염사고로 발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사고내용에 따라 방제관련협회 및 방제전문회사의 방제기술 또는 특수 방제장비 등을 지원받아 사고확산 예방

라. 수습대책

1) 재난수습체계 구축

○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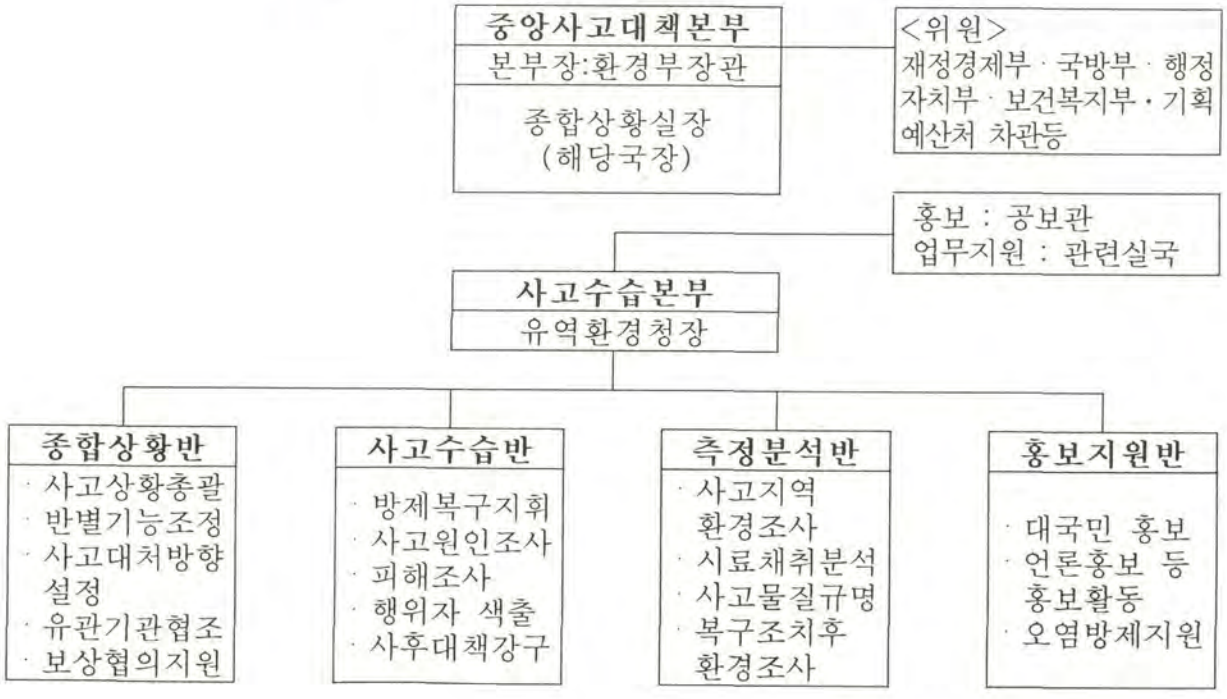

○ 설치시기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할 때

○ 기 능

- 당해 환경오염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

○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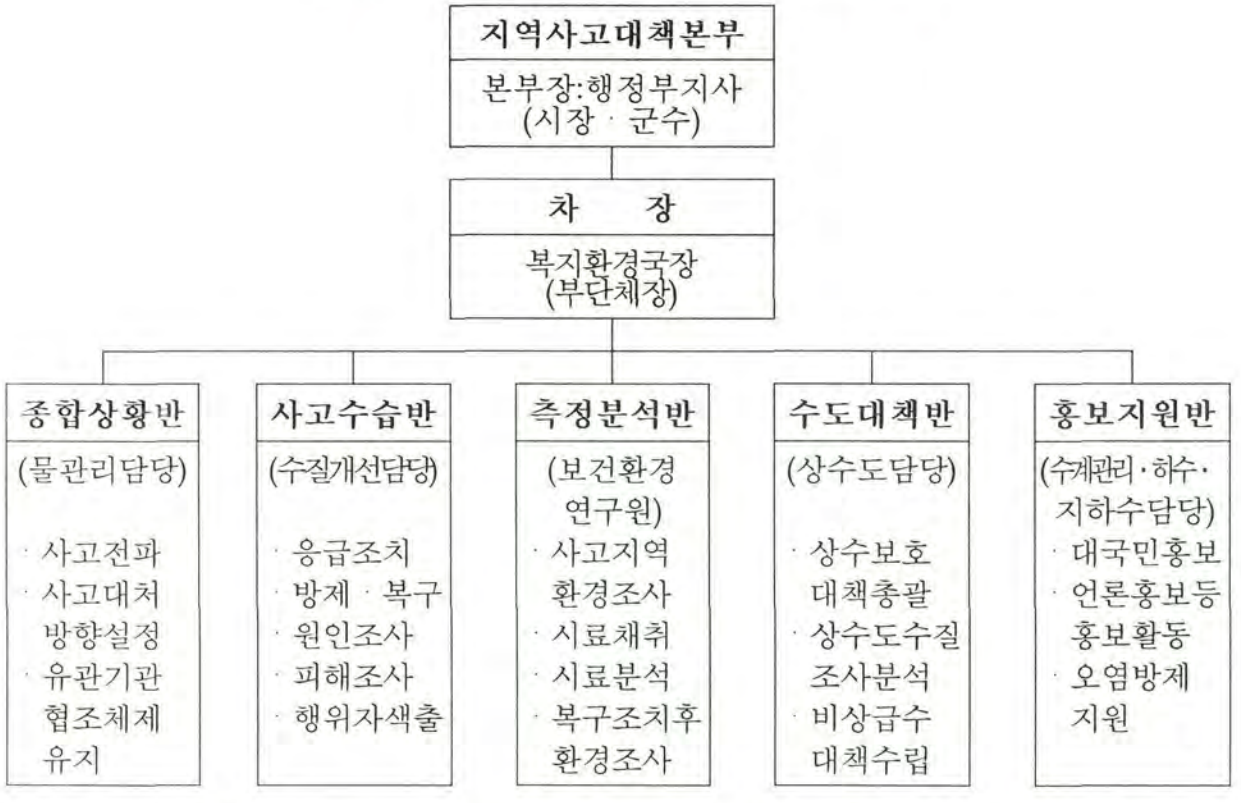

※ 해당기관의 인력,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신축조정

○ 설치시기

-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 기 능

- 당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총괄
- 당해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
-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 실무반 설치·운영 등

2) 사고수습대책 강구

○ 기관별 방제장비 확보

- 하천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방제장비 확보·비치

  ※ 방제장비는 인근 하천 수질감시초소 등에 분산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투입

- 군부대·소방서·경찰서·방제관련협회·방제전문회사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및 방제장비를 사전에 파악 사고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체계 구축
- 유류 다량사용업소 등에 사고 대비 방제장비 확보 유도 및 종업원 방제장비 사용요령 교육 실시

< 대형사고 수습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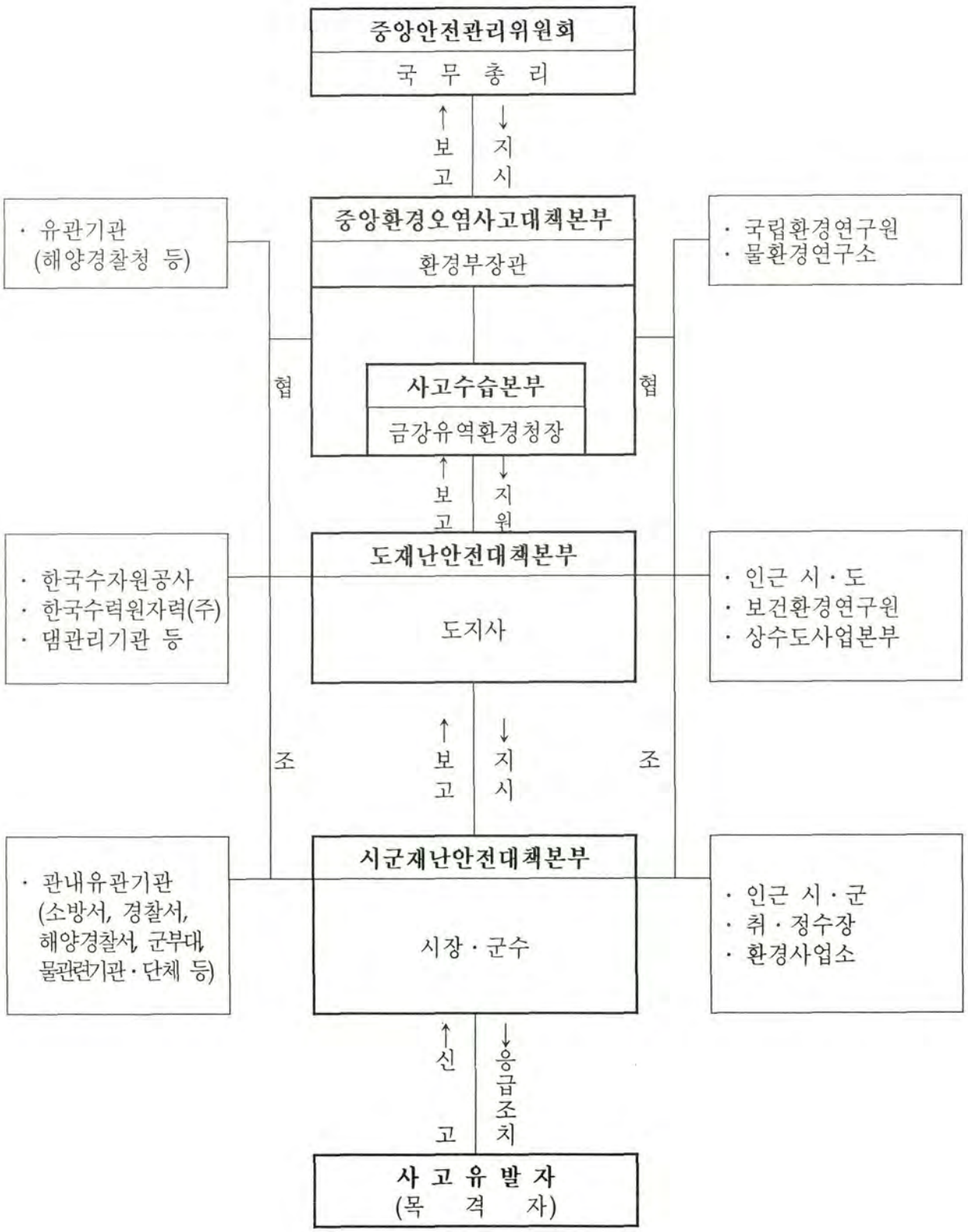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 무 총 리
보고
지시
· 유관기관
(해양경찰청 등)
중앙환경오염사고대책본부
환경부장관
· 국립환경연구원
· 물환경연구소
협
사고수습본부
금강유역환경청장
협
보고
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 댐관리기관 등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도지사
· 인근 시·도
· 보건환경연구원
· 상수도사업본부
조
보고
지시
조
· 관내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군부대,
물관련기관·단체 등)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
· 인근 시·군
· 취·정수장
· 환경사업소
신고
응급조치
사 고 유 발 자
(목 격 자)

< 중형 및 소형 사고 수습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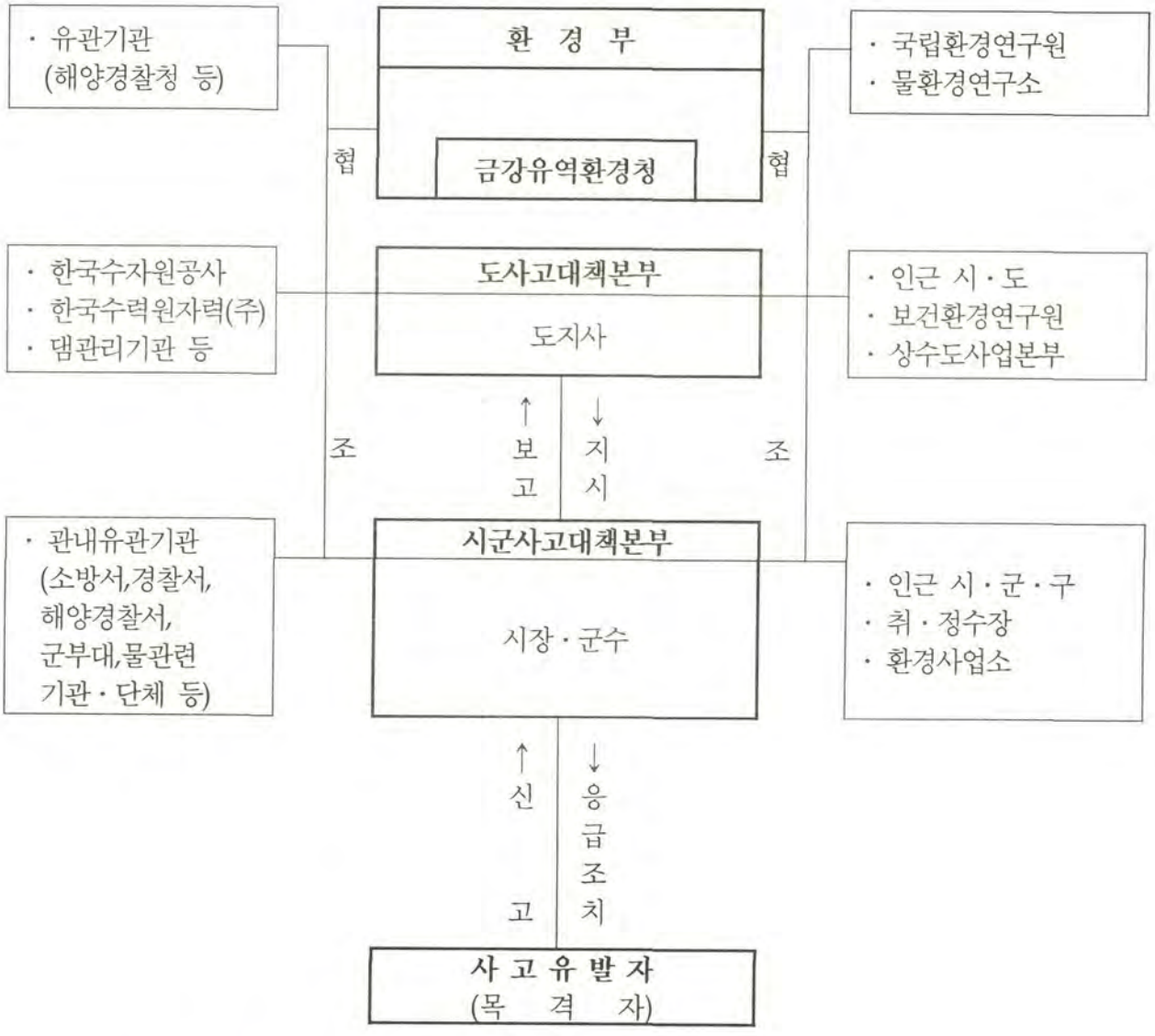

5. 재정투자계획

가. 방제훈련 예산 확보

○ 장비임차료 : 1,500천원

○ 민간에 대한 보상금 : 1,500천원

나. 유관기관 전화번호부

○ "붙임" 참고

유관기관 비상연락 전화번호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환 경 부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1	02)507-7457	
	대기관리과	02)2110-6794	02)507-7028	
	수질정책과	02)2110-6819	02)504-9209	
	산업폐수과	02)2110-6848	02)503-0128	
	수도정책과	02)2110-6866	02)507-2456	
	생활하수과	02)2110-6883	02)507-2450	
	토양수질관리과	02)2110-6767	02)507-6282	
	폐기물정책과	02)2110-6910	02)507-9210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42)865-2944	042)864-2989	
	금강환경감시대	042)932-2121	042)933-0128	
금강물환경연구소	수질이화학연구과	043)733-7404	043)733-9408	
한국수자원공사충남 중부권수도관리단	운 수 과	041)830-4211	041)830-4230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지과	041)675-5545	-	

제 16 장 유·도선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표 및 추진방침

목 표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사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 선진화
○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구급·구난체계 확립

추 진 방 침

○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점검 실시
- 선박, 선착장 등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명절, 휴가철 등 이용객 집중시 사전점검

○ 휴가철 등 성수기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
- 위법, 부당 영업 행위자 엄중 행정처분
- 특별 상황반운영과 현장 근무인력 강화

○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 관계자 전문지식 습득 위한 안전교육 실시
- 실제훈련으로 위기 대처능력 배양

○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사전대비 철저
- 119구조 수난구조대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관리능력 제고

○유·도선 현황

(단위 : 척,개소)

구분 / 시·군별	선박								선착장			운항구역	비고
	계	유선				도선			소계	유선장	도선장		
		소계	동력선		무동력선	소계	동력선						
			5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5톤 미만					
계	63	63	15	16	32				6	6			
아산시	43	43	1	10	32				2	2		신정호	저수지
부여군	14	14	14						3	3		백마강	하천
금산군	6	6		6					1	1		금강	

2.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가) 유·도선 담당공무원

○ 주　　관 :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행정자치부 협조)

○ 일　　정 : 2004. 2월중

○ 장　　소 : 국립수산과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 교육대상 : 도, 시·군 소속 5급이하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유선및도선사업법령 및 안전관리지침 해설
- 유·도선의 선박구조·설비와 안전검사·점검요령 등

나)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 주　　관 : 도지사

○ 일　　정 : 2004. 4월중(2회 이상 분리교육)

○ 장　　소 : 부여군 군민회관 (부여군·읍 동남리 소재)

○ 교육대상 :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요원 등 종사자와 현장근무(지도단속요원) 공직자 등

○ 교육시간 : 총 8시간이내(집합교육)

○ 교육방법 : 이론과 실기를 병행 도의 업무담당자가 실시

○ 교육내용

- 운항규칙 및 수상교통 안전
-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 구명설비 및 장비사용법

- 소화 · 방수 및 수질오염 방지
- 유 ·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 선박안전법등 법령해설
- 중앙 교육내용 전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나. 대비대책

1) 유 · 도선장 안전관리 강화

가) 지도 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 내실 있는 지도 · 점검 및 단속체계 확립

- 기관별·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 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 정기 지도·단속 : · 도 : 월 1회이상
  · 시 · 군 : 주 1회이상
- 수시 지도·단속(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

나) 유·도선의 위법 · 부당 영업행위 근절대책 강구

○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체계 구축

- 유 · 도선이 운항하는 유원지 등에서 위법 · 부당행위 단속
- 우수경찰공무원 표창 추천(시장 · 군수)

○ 무면허·미신고 영업, 비상구조선의 불법영업 등 위법·부당 행위 지속적인 단속실시 및 고발조치

○ 과승·과적, 영업시간·구역위반 등 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위반 행위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자가선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도선 영업행위 금지 및 수상레저안전법 사전홍보(행정 홍보지, 유선방송 등 활용)

다) 안전관리 유공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합동점검·단속 및 유사시 사고수습, 실제훈련 등에 참여한 경찰, 소방공무원, 보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실시

- 단속실적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표창 실시
- 안전관리 유공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추천

○ 전국에 파급시킬만한 안전관리 우수사례나 특수시책 개발 등 무사고 사업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추천

라) 인터넷(Netfeel)이용 문자서비스로 안전관리 - 도

○ 사업주 및 종사자의 휴대폰으로 안전운항 문자서비스 실시

- 기상악화·수위상승시 운항통제, 사고예방 위한 일일점검, 안전수칙, 수질오염 예방, 공지사항 등

마) 일제 안전점검

○ 주　관 : 시·군(도에서 감독)

○ 기　간 : 2004. 3. 15 ~ 3. 31 (16일간)

○ 대　상 : 전 유·도선, 선착장 및 기타 안전시설

○ 방　법 : 지역별로 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유·도선 관리분야
  - 선박 정기검사 실시여부 또는 안전성검사 실시여부
  - 선체구조의 안전성 및 인명구조장비의 정수 확보 여부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여부 및 보험가입 실효성 여부
  - 선착장시설의 안전성 및 안전시설 여부
- 안전운항 분야

· 사업면허·신고미필 선박의 불법 유·도선 사업행위

· 정원초과, 소형선박승선자 구명동의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여부

- 승선질서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합실 등 실내의 각종 게시물 게첨 상황

· 선박의 승선안내·구명장비 사용법 등 홍보·방송실시

- 수질오염 분야

· 빌지, 분뇨 등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 선박, 선착장 등에 화장실, 쓰레기통 설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면허 또는 안전검사 미필선박의 영업행위

⇒ 즉시 운항정지, 선체계박, 사업자 고발등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의 위반 또는 미흡사항

⇒ 경고,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인명 구조장비의 노후 또는 미비 선박

⇒ 즉시 운항정지, 개선명령, 행정처분

- 선착장·매표소·대기실 등이 불량한 곳

⇒ 개·보수, 주변 환경개선, 기타 현장 시정조치

바) 기타 안전점검 및 검사

○ 근　　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 시　　기 : 사업면허시, 이용객 집중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 방　　법 : 도 및 시·군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실시

○ 점검사항 : 유·도선 안전점검표 (별표 1참조)

다. 대응대책

1) 현장근무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가) 현장근무체계 구축

○ 기　　간 : 4월~10월까지(7개월간)

○ 근무체계

-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은 매일 상주근무를 실시
- 기타 유·도선장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연휴 기간에 상주근무 실시
- 격지·오지 등 지역 여건상 공무원의 배치가 곤란한 유·도선장은 당해지역 리·통장을 안전관리지도·단속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 시장·군수가 매년 위촉

○ 근무요령

- 출·입항 기록·관리대상 선박의 출·입항 기록·관리 여부 확인
- 승선객의 승선신고 이행여부 점검
- 과승·과적, 영업구역위반 등 안전운항의무 준수여부 확인
- 무면허·미신고 선박 등 불법행위자 단속
- 사고발생시 신속보고 및 안전조치 등

○ 근무자 명단 작성 : 시·군에서 작성하여 보고

나) 안전관리 상황근무체계 구축

○ 대　　상 : 도, 시·군

○ 장　　소 : 유·도선 담당부서 또는 재난·재해상황 근무부서

○ 근무시간 : 09:00 ~ 일몰후 30분까지

○ 근무요령

- 현장근무자 근무실태 및 지도단속실태 수시 확인
- 사고발생시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지도관리
- 기타 운항중인 선박의 승선인원 등 현황파악

다) 상황보고체계 구축

○ 보고체계

- 현 장 → 시·군 → 도 → 행정자치부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도 및 행정자치부 즉보

- 도 치수방재과 042-220-3641 (FAX 251-2671)
- 도 재난종합상황실 042-220-3119 (FAX 251-2696)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 02-3703-5150 (FAX 3703-5564)
-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 02-3703-4949 (FAX 3703-5590)

○ 보고내용

- 유·도선 사고발생 유무 및 특기사항 등
- 사고발생시 일시, 장소, 원인, 선박의 현황, 인적·물적 피해내용, 긴급구조 등 수습내용, 향후조치 전망 등

○ 보고시기 : 대형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및 이후 매시간 보고

○ 사고 발생기록 관리유지 및 분석

-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기록을 유지
-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대책에 반영

2) 행정기관의 안전운항 대책 추진

가)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이행사항 확인 철저

○ 주요 규제완화 내용

- 선원변동시 행정기관에 보고하던 제도 폐지
- 출·입항 보고제도, 유선의 휴·폐업신고제도 폐지
- 소형 유·도선의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 현지점검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 이행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정한바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

나)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운항 대책 강구

○ 안개, 폭우, 태풍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변화시에 대비한 안전조치
- 기상정보 사전수집 등 안전조치여건 확보
- 기상 악화시 출·입항 통제 등 운항제한기준 마련(규칙제5조의2)

○ 운항도중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조치
- 운항중 기상정보 전달체계 확보
- 선박의 긴급대피 및 승객 안전수송대책 확보

다)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대책

○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
- 운항거리가 2마일이상인 유·도선
-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유·도선
-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선박

○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선박의 지정 및 기록·관리부의 비치장소·비치기간, 승선신고서 관리방법 등 기준 마련(영 제22조 및 규칙14조)

○ 승선권과 승선자 인적사항을 동일 티켓으로 작성·판매하고, 승선시 분리수거하여 승선정원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유사시 필수적인 사항)

3) 사업자등의 안전운항 대책

가) 사업자 관련사항

○ 선원 등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일일 안전교육 실시

○ 각자의 주요임무를 가진 항해사, 인명구조 요원, 통신사 등 종사 요원은 타 업무 등 겸직하지 않도록 적정인원 확보

○ 유·도선장 및 선박의 내실있는 일일점검 체계구축

- 선박은 출항전·후 시운전 및 기관등 주요 부분의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운항전 정박지, 운항중 주요기착지 등에서 선박의 기관, 시설점검으로 고장·사고의 사전 감지체계 구축
- 선착장내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의 일일점검 실시

○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의 철저한 준수

- 모타보트 등 탑재용 동력의 제원 검사에 포함

○ 승선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각종 게시판 등의 홍보물은 적절한 장소와 크기로 식별 및 인지가 용이하도록 설치

○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운항 유무확인을 위한 무선통신 체계구축

- 운항중에 선박의 안전운항 유무 확인 및 기록관리
- 무선 통신국에서 운항중인 선박 및 선착장 입·출항선박의 안전관리 통제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유사시에 대비한 휴대폰, 무전기등 통신장비 확충보강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식고취 대책강구

- 매표소, 승선장의 승선질서유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등 시설보완
- 형식적인 안내방송을 지양하고 실제행동할 수 있는 안내방송 실시
  - 매표소에서는 구매질서·승선신고등 안내방송
  - 승선장에서는 승선질서, 선박내에서는 안전수칙 안내방송
  - 선박내에서는 승객을 흥분시키는 음악방송등 지양

- 음주자의 유선승선 금지조치
- 노약자·장애자·어린이등 수영을 못하는자에 대한 구명동의 착용승선 등 조치

○ 인접 유·도선, 어선 등 인근선박과의 긴급구조 공조체계 구축

○ 유·도선의 안전운항 감시영역 확대를 위한 전망대설치, 감시용 망원경 등 확보 활용

○ 구명정, 비상구조선, 구명동의 등 법정 안전장비의 노후·불량 장비의 교체·정비
- 신속히 사용 할 수 있는 보관방법 및 장소선정
- 구명동의는 이용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가볍고, 부력이 강한 신제품으로 교체

○ 출항전 승선자 인적사항의 신속한 파악과 승선자 명부를 현지 주재 지도공무원에게 출항 즉시 전달체계 강구

○ 승선신고서 미작성자 승선제한 조치

○ 사고가상 긴급구조 실제훈련실시 계획 수립

○ 수중 장애물(어망, 수목등)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 강구

○ 폭풍·태풍·안개 등 악천후에 대비한 기상정보 수집채널 구축

나) 선원등 종사자 관련사항

○ 승객·화물의 편중적재시 발생될 수 있는 전복사고 방지대책 강구

○ 선박화재에 대비한 기관 유류누출, 인화, 폭발등 위험물질로 인한 재난요인 사전 제거대책 강구

○ 유류, FRP 등 여건에 맞는 화재 초기진화용 소화기등 적격·적량 배치

○ 운항중 주요 경과지에서 안전운항유무 보고
(선박 → 무선통신국 → 현장주재 공무원)

○ 기상조건 악화 및 선박의 기관·시설 등 안전운항에 결함 발견시 과감한 출항금지

○ 현지 주재 지도·단속 공무원의 운항통제 사항 준수

○ 운항중 인접선박과 유사시 공조체계 확립을 위한 상시연락 체계구축

○ 면허 또는 신고구역 및 구간외 임의운항 절대 금지대책

○ 운항시간·운항횟수의 준수

○ 주요 경유지를 정박·경유하지 않고 무리한 장거리 운항금지

○ 운항 중 승선객 및 차량 등 적재화물의 이동상태 계속관찰

○ 폭발·화재 등 위험물질 무단적재 금지

라. 수습 및 구조 대책

1) 사고대응 수습체계 구축

가) 사고유형별 대응 및 수습체계 구축

○ 유·도선장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수습체계 구축

- 선박화재, 충돌·침몰, 표류, 유류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

○ 승선객 안전대피 및 구조계획 수립

- 자체 비상구조선 활용.구조계획 수립

- 군부대·경찰·119구조대 및 민간구조대등과 연계 구축

○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

○ 비상통신장비 및 초동진화장비 확보

나) 업체간, 선박간,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동일 유·도선장내 업체간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정, 소방정, 행정선 및 타 선박과의 비상신호체계 구축

○ 119구조대, 경찰서, 보건소, 병·의원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다)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 119구조대 지원 공조체계 구축

○ 주요댐에 소방정을 구비한 수난 구조대와 공조체계 구축

○ 무선통신망의 정비보완 및 일일점검 확행으로 상시 가동체계 확립

- 선박 → 119 → 구조헬기·수난구조대·비상구조선
- 무선국 요원의 전담근무 및 운행실태 정기확인 체계 구축

○ 주요 유·도선 운항지역은 민방위훈련시 수상 인명구조훈련 실시

라) 사고대책본부 설치계획 수립

○ 사고 규모별로 도, 시·군별 사고대책본부 설치

○ 각 반별 조직 및 반원별 임무 부여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군부대, 병·의원 등

제 17 장 상수도시설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상수도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1. 추진방침

○ 철저한 확인 · 점검으로 각종 사고(누수, 단수, 동파, 등) 사전예방

○ 상수도시설(취 · 정수장) 관리자 교육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상수도관로

계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비 고
L=5,312	L=464	L=2,315	L=2,533	

○ 취 · 정수장

계	취 수 장(개소)	정 수 장(개소)	비 고
55	30	25	

○ 기타 상수도시설

계	간이상수도(개소)	소규모급수시설(개소)	비 고
2,034	901	1,133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 상수도시설 고장 및 각종 재난사고 신고전화(121번) 운영

- 운영시간 :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접수기관 : 충남도(치수방재과 상수도계)
-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 재난대비 안전활동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강화

- 취·정수장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맑고 개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결과 공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나. 대응대책

○ 신속한 재난사황 접수·보고 및 초기 대응체제 확립

- 사고대비 상수도시설 긴급 복구반 편성운영

○ 상수도 관로의 동파 및 내진방지 대책

- 동결심도(50~70m)이상 매설 및 내진성을 고려한 설계와 내진성 자재 사용으로 사전예방

○ 유관기관과 비상체계 구축

- 한국수자원공사, 소방서, 군부대등 유관기관과 비상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 시 장비 및 인력 지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

다. 복구대책

○ 「道,시· 군 재난합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상수도시설 재난발생 시 합동조사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의 재난합동조사반에 지원요청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피해시설 복구대책수립,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업무수행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 시 긴급복구반 투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4. 자원동원계획

○ 사고대비를 위한 복구자재 확보(시 · 군 자체확보)

- 상수도 대행업체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 유사시 대비 비상급수차량 확보

- 소방서, 군부대,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5. 재정 · 투자계획

○ 상수도사업 투자현황

사 업 명	'04까지(개소/억원)	'05계획(개소/억원)	비 고
계	457 / 1,278	109 / 261	
농어촌지방상수도	24 / 1,019	13 / 202	
상수원보호구역 지 원 사 업	7 / 75	5 / 17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426 / 184	91 / 42	

〈시 · 군 및 상수도 시설대행업체 비상연락망〉

시·군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천 안	상수도사업소	천안시 용곡동 산11-1번지	041-550-2538	
	급수공사대행업자	천안시 성환읍 성한리 445-101번지	041-581-2734	중앙건설
공 주	상수도사업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0-3번지	041-840-2604	
	급수공사대행업자	공주시 중동 62번지	041-855-5689	제일수도
보 령	수도사업소	보령시 대천로 61호	041-930-3528	
	급수공사대행업자	보령시 신흑동 54번지	041-934-9804	성진수도
아 산	상 · 하수도사업소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	041-540-2964	
	급수공사대행업자	아산시 풍기동 260번지	041-545-1003	상무건설
서 산	수도사업소	서산시 읍내동 492번지	041-730-1562	
	급수공사대행업자	서산시 읍내동 142-1번지	041-665-3288	우진산업
논 산	수도사업소	논산시 취암동 447-1번지	041-840-2532	
	급수공사대행업자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05-32번지	041-742-3639	도원건설
계 룡	건 설 과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042-750-2546	
	급수공사대행업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번지	042-841-0024	계룡수도
금 산	환경지원과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번지	041-861-2473	
	급수공사대행업자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2-29번지	041-745-8023	신안수도
연 기	환경보호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041-861-2473	
	급수공사대행업자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241번지	041-865-3021	일신수도
부 여	도 시 과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번지	041-830-2453	
	급수공사대행업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4-3번지	041-835-4565	현대수도
서 천	맑은물사업소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671-5번지	041-953-1943	
	급수공사대행업자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55번지	041-935-8878	중앙수도
청 양	환경보호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0번지	041-940-2522	
	급수공사대행업자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73-4번지번지	041-934-0475	대동아수도
홍 성	수도사업소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번지	041-630-1880	
	급수공사대행업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번지	041-632-4758	형재수도
예 산	상 · 하수도사업소	예사군 예산읍 주교리 511번지	041-330-2620	
	급수공사대행업자	예사군 예산읍 예산리 464번지	041-335-2770	감천수도
태 안	상 · 하수도사업소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041-670-2803	
	급수공사대행업자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92-1번지	041-675-6266	경희건설
당 진	상 · 하수도사업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9-2번지	041-350-4191	
	급수공사대행업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26-10번지	041-355-2654	현대수도
한국수자원공사(본부)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042-629-2825	건 설 처

제 18 장 문화재시설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생활속에서 창조된 문화재는 재난에 매우 취약하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물적인 사전 예방 조치 마련

○ 각종 재난 발생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수습을 위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으로 추가 피해의 최소화

1 추진방침

○ 문화재 안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난 유형별·단계별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대응체제 구축

○ 문화재청, 道, 시·군간 재난관련조직 협조체계 재정비

○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풍수해 및 화재예방 대책 마련, 재난위험 문화재 및 취약지구 선정 중점관리

○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협조를 받아 실시하는 방안 강구(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문화재 지킴이 운동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지정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전통사찰

- 문화재보호구역내 유물전시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문화재 관리시설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재난대비 안전점검 강화

○ 점검반 구성 및 점검실시

- 문화재청 : 재난에 대비한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연3회)
- 道
  · 하절기(4~6월)등 1회 이상 점검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 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등)
- 시·군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년 3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 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등)

○ 점검사항

-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 등 각종 문화재 보호시설의 배수시설, 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에 대한 균열, 붕괴, 파손, 토사유실 우려부분 위험요소 점검
- 목조건축물 지붕 누수 여부 점검 및 기와 고르기 정비
- 시설물의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이완상태 발생여부 점검
- 유물전시관, 전수회관과 주변시설의 취약부분 점검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전 등 방화장비 작동상태 점검
- 건조물 문화재의 소유 관리자의 부주의 화기 취급
- 공사현장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제거 정비
- 무속 행위에 따른 화기물 감시 강화 등

2) 재난예방체계 구축

○ 사찰 등에 대한 자위 소방체계 구축

○ 목조문화재 방충, 방부 처리 및 방연제 도포

○ 수시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소화기 교체

○ 문화재 소유, 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소방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신고 및 보고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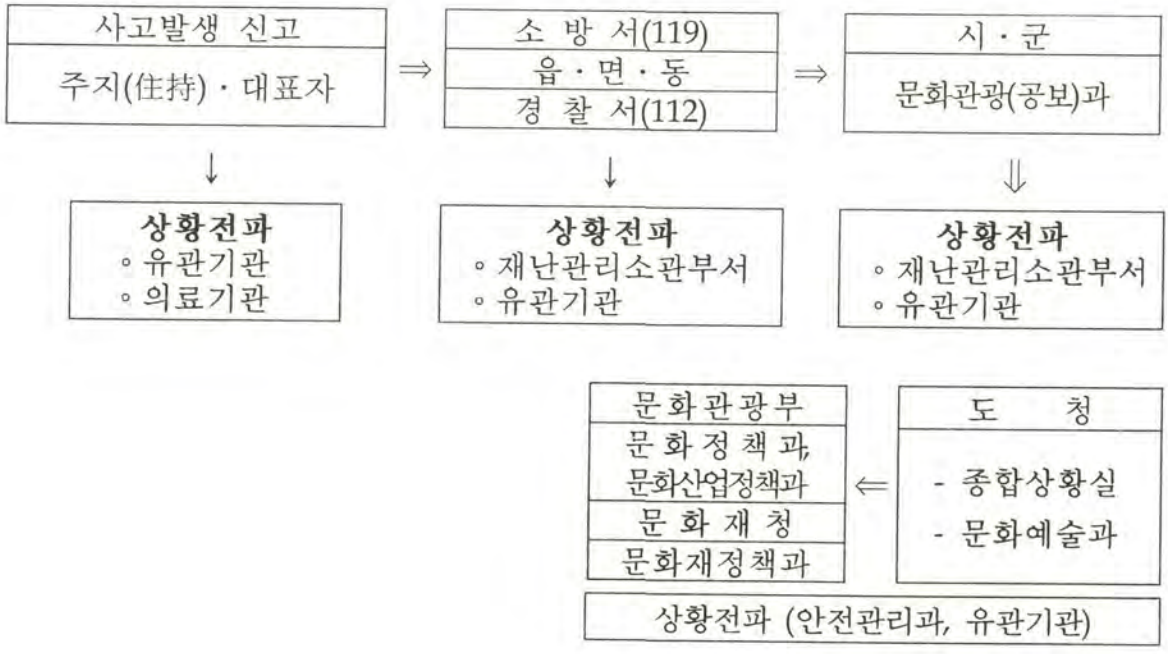

3)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 선정대상 시설

- 재해 우려가 큰 목조 문화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 노후한 문화재 및 多雨, 多雪 지역 소재 문화재
- 연례적 재난 발생지역에 속하는 문화재

○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관리책임자 지정, 수시 점검활동
  · 소유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
- 관련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현황 파악 보고체계 유지

나. 대응대책

1) 재난 상황실 구성 · 운영

○ 재난상황실 구성

- 상황실장 : 문화예술과장
- 반　　장 : 문화재담당
- 반　　원 : 6급이하 직원 2~3명

○ 재난상황실 운영 : 기상특보발령시 및 재난발생 우려시

○ 기 능

- 문화재청, 道, 시 · 군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피해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피해상황 보고 등

다. 수습 및 복구 대책

○ 피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응급복구로 피해 확대 방지 조치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기본원칙, 정밀조사를 통한 복구방안 강구
- 재난상황 파악, 현장지도·관리, 재난수습을 위한 조치 등

○ 道 재해대책본부, 문화재청 등에 문화재 보수예산에 대한 우선적 지원 요청(복권기금의 긴급 보수비 등)

○ 피해발생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난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강구

○ 재해복구 완료시까지 각급 유관부서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 추진

< 단계별 사태별 조치 >

1단계 조치	⇒ 소방서, 경찰, 사업자

○ 관람객 안전대피요령 사전안내 및 책자비치

○ 소방서·경찰·사업자의 관람객의 질서있는 대피지도

※ 노약자, 어린이, 환자, 지체장애인 우선 대피

○ 질서있는 인명구조 실시

○ 문화재 및 사찰, 영상시설, 기타 도서류 등 화재로부터 보호

○ 화재초동상황 도 및 유관기관 신속 전파

2단계 조치	⇒ 문화관광(공보)과,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와 연계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부상자 관리카드 작성 : 인적사항등 신원확인

○ 응급조치후 부상자 의료기관에 긴급이송 : 시·군 지정병원

○ 인명, 문화재 및 시설 피해상황 조사

○ 부상자 발생상황 언론매체에 통보

3단계 조치 ⇒ 관계기관, 소방서, 경찰

○ 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규모에 따라) : 시장 · 군수

· 각 기관구조대 통합 지휘

○ 경계구역 설정 : 주민보호 및 사고시설물의 2차붕괴등 피해최소화

○ 사고현장 인원, 차량통제 및 질서유지

< 수습 조치 >

사 망 자 ⇒ 문화관광(공보)과, 의료기관, 사업자

○ 시신의 안전관리

○ 신원확인 등 조치

○ 피해자 가족과 장의 및 보상협의 중재

부 상 자 ⇒ 문화관광(공보)과, 의료기관, 사업자

○ 치료경과 및 회복 진행상태에 따라 병원배치 조정

○ 환자 인적사항 관리

○ 병원별, 환자별 담당자 지정 배치

○ 치료비 등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 중재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지역사고대책본부, 사업자, 협회

○ 피해조사

· 지역사고대책본부 및 관계자 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조사

· 사고발생원인, 책임소재, 피해상황 등

○ 현장복구

· 파손고장 시설물 보수

- 사찰, 박물관 및 업체 자체기술진 및 유관기관

· 완전복구시까지 관람중단

(단, 피해발생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문화재전통사찰 복원 예산 및 지원대책 수립

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1) 국민들의 참여확대 및 교육지원

○ 문화재지킴이 모임, 문화재행정 모니터 및 명예관리인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정보공유

○ 문화재 방재교육용 책자 및 비디오 매체 활용

○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유도

2) 홍보활동 강화

○ 중요문화재에 방재 예방방법 소개 및 홍보전단 관람객 배부

○ 문화재관련 뉴스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각종 매체 활용 홍보 강화

4. 재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명		계획				
총 계		사업량	사업비			
	소 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문화재 안전 대책	방연 및 소화예방사업	2개소	105	53	26	26

5. 유관기관 전화번호부

기관명	부서명	연 락 번 호		
		행 정	일 반	FAX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113) 4823	042-481-4823	042-482-4829
천안시	문화관광담당관실	0417) 2034	041-530-2034	041-550-2039
공주시	문화관광과	0416) 2816	041-820-2816	041-820-2161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452) 226	041-930-3226	041-930-3669
아산시	문화관광과	0418) 2546	041-540-2546	041-540-2569
서산시	문화관광과	0455) 2226	041-660-2226	041-660-2744
논산시	문화관광과	0461) 1226	041-730-1226	041-730-1228
계룡시	복지문화과	0450) 2541	042-840-2541	042-840-2694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0412) 2383	041-750-2383	041-750-2379
연기군	문화공보과	0415) 2292	041-861-2292	041-865-1885
부여군	문화관광과	0463) 2241	041-830-2241	041-830-2239
서천군	문화관광과	0459) 4016	041-950-4016	041-950-4459
청양군	기획감사실	0454) 224	041-940-2224	041-940-2302
홍성군	문화공보실	0451) 227	041-630-1227	041-633-4242
예산군	경영문화관리실	0458) 224	041-330-2224	041-330-2228
태안군	문화관광과	0456) 2761	041-670-2761	041-670-2226
당진군	문화공보과	0457) 3133	041-350-3133	041-353-4242

6. 전통사찰 명부

登錄番號	寺刹名	住持名(법명)	所在地	登錄日	宗 派	備 考
	計		73個所			
1	成佛寺	沈載昱(圓鏡)	天安市 安棲洞 106-2	88. 6. 18	曹溪宗	041)565-4567
53	廣德寺	朴性德(老宏)	天安. 廣德. 廣德 640	〃	〃	041)567-0057
54	晩日寺	李妙儀(聖後)	〃 聖居.天興 山51	〃	〃	041)561-4799
55	銀石寺	金泰顯(起山)	〃 北面.銀芝 山1	〃	〃	041)553-3940
2	靈隱寺	李香熙(淨葉)	公州市 錦城洞 11	〃	〃	041)855-3976
11	麻谷寺	金仁泰(眞覺)	公州. 寺谷. 雲岩 567	〃	〃	041)841-6221
12	新元寺	金永錄(법전)	〃 鷄龍. 陽化 山8	〃	〃	041)852-4230
13	東鶴寺	정복자(요명)	〃 反浦. 鶴峰 789	〃	〃	042)825-2570
14	甲 寺	黃燦民(長谷)	〃 鷄龍. 中壯 52	〃	〃	041)857-8981
15	銅穴寺	趙永珏(釋惠愚)	〃 儀堂. 月谷 山45	〃	〃	041)854-2855
78	永平寺	李性求(幻惺)	〃 長岐. 山鶴 441-1	96.11.18	〃	041)857-1854
28	禪林寺	吳仁洙(法容)	保寧. 鰲川. 蘇城 5	88. 6.18	〃	041)932-4187
29	中臺庵	洪性子(道淵)	〃 帽山. 龍水 85	〃	〃	041)933-1520
56	閏昌庵	兪元濬(慧定)	〃 藍浦. 倉洞 山41	88. 7.18	法輪宗	041)934-2142
62	白雲寺	신유훈(현정)	〃 聖主. 聖主 35-2	88. 9.20	曹溪宗	016-563-0108
74	金剛庵	(동국)	〃 帽山. 龍水 山59	92.12.10	〃	041)931-7767
51	鳳谷寺	金鳳占(묘각)	牙山. 松岳. 楡谷 595	88. 6.18	〃	041)543-4004
52	仁萃寺	申東熙(혜민)	〃 新昌. 邑內 84	〃	〃	041)542-6441
61	洗心寺	全貞愛(聖葉)	〃 監峙. 山陽 221	88. 9.20	〃	041)523-9993
76	五峰庵	沈載鶴(玄門)	〃 長存 50	95. 9.12	〃	041)544-0995
	龍潭寺	정백하(혜종)	〃 松岳. 평촌 산2-11	02.12.24	태고종	
41	瑞光寺	鄭振錫(法光)	瑞山市 邑內洞 山 42	88. 9.20	〃	041)664-2001
38	開心寺	石智安(善光)	〃 雲山. 新昌 1	88. 6.18	〃	041)688-2256
39	浮石寺	李東明(宙耕)	〃 浮石. 翠坪 160	〃	〃	041)662-3824
42	天藏寺	金周信(雲普)	〃 高北. 長要 山1	〃	〃	041)663-2074
43	望日寺	鄭東君(三悟)	〃 大山. 大山. 山132-1	〃	〃	041)663-8441

登錄番號	寺刹名	住持名(법명)	所在地	登錄日	宗　派	備　考
44	文殊寺	徐貴一(慧瓚)	瑞山. 雲山. 胎封 40	88. 6.18	曹溪宗	041)663-3925
45	日樂寺	朴京順(喜見)	〃　海美. 皇洛 3	〃	〃	041)688-0812
48	松德庵	高成圓(東佑)	〃　海美. 大谷 602	〃	太古宗	041)688-2438
71	竹　寺	姜大芸(無林)	〃　仁旨. 成里 37-1	88. 9.20	曹溪宗	041)662-2438
16	灌燭寺	安三洙(吞宇)	論山. 論山. 灌燭 254	88. 6.18	〃	041)735-4296
17	雙溪寺	(우일)	〃　陽村. 中山 2-2	〃	〃	041)735-2251
18	開泰寺	윤주희	〃　連山. 天護 108	〃	無所屬	041)735-0197
64	松佛庵	徐浩金(敬運)	〃　〃　連山 489	88. 9.20	曹溪宗	041)733-6518
65	聳岩寺	(如功)	〃　江景. 彩山 331-4	〃	〃	041)745-2781
3	身安寺	정龍淳(眼)	錦山. 濟原. 身安 52	〃	〃	041)752-7938
4	太古寺	金道天(道天)	〃　珍山. 杏亭 山29	〃	〃	041)752-4735
5	寶石寺	卞南洙(慧完)	〃　南二. 石洞 78	〃	〃	041)753-1523
60	元興奄	李東旭	〃　秋富. 西臺 341	88. 9.20	太古宗	041)752-6306
73	靈泉庵	卞南洙(慧完)	〃　南二. 石洞 714	88. 9. 6	曹溪宗	041)753-0095
7	碑岩寺	朴贊文(太觀)	燕岐. 全義. 多方 4	88. 6.18	〃	041)863-0230
8	連花寺	安建子(仙德花)	〃　西面. 月下 1047	〃	太古宗	041)862-1009
9	觀音庵	朴東基(慧定)	〃　鳥致院. 磻岩 山2-4	〃	〃	041)865-3837
10	成佛寺	李基延(法眞)	〃　全義. 陽谷 山11	〃	〃	041)863-3406
72	新光寺	金東順(惠圓)	〃　鳥致院. 新安 139	88.12.26	曹溪宗	041)865-5601
77	黃龍寺	黃琮周(法印)	〃　東面. 鳴鶴 山31-1	95.11.8	太古宗	041)864-7000
79	鶴林寺	林末仙(修還)	〃　西面. 新垈 268-1	98. 3.28	禪學院	041)867-2635
19	皐蘭寺	金聖壽(聖壽)	扶餘. 扶餘. 雙北 山1	88. 6.18	曹溪宗	041)835-2062
20	無量寺	채석윤(乘一)	〃　外山. 萬壽 116	〃	〃	041)836-5066
21	金池庵	任世煥(道眞)	〃　內山. 金池 43	〃	〃	041)834-5420
22	大鳥寺	金玉謙(乘荷)	〃　林川. 舊校 761	〃	〃	041)834-2511
23	正覺寺	진東明(尙初)	〃　石城. 正覺 354	〃	〃	041)836-6413
24	五德寺	全大運(西明)	〃　忠化. 五德 284	〃	〃	041)833-1442

登錄番號	寺刹名	住持名(법명)	所在地	登錄日	宗 派	備 考
25	朝王寺	金仁順(菩提心)	扶餘. 扶餘. 東南 20-3	88. 6.18	曹溪宗	041)835-4091
80	無盡庵	金鍾淑(正圓)	〃 外山. 萬壽 125-18	98.11.25	〃	041)836-5023
26	鳳棲寺	沈載鶴(玄門)	舒川. 韓山. 虎岩 189	88. 6.18	〃	041)951-0255
27	永守庵	陳海順(成道)	〃 鍾川. 長久 1	〃	〃	041)953-3327
30	長谷寺	李雲雨(大眞)	靑陽. 大峙. 長谷 15	〃	〃	041)942-6769
31	定慧寺	李錫吉(性衍)	〃 長坪. 花山 488	〃	〃	041)942-6623
75	鳳正寺	李玉粉(명화)	〃 飛鳳. 新院 山 113	93. 2. 3	禪學院	041)942-5953
32	石蓮寺	林美淑(一笑)	洪城. 龜項. 五鳳 171-2	〃	曹溪宗	041)632-7506
33	高山寺	尹明燁(昤惺)	〃 結城. 無量 30-36	〃	〃	041)642-8254
66	山惠庵	郭鏞得(黃白)	〃 洪城. 月山 山1	88. 9.20	〃	041)632-3196
67	龍鳳寺	孫種睦(秀品)	〃 洪北. 新耕 山80	〃	〃	041)632-8917
68	淨岩寺	張善賢(普靜)	〃 廣川. 淡山 山1	〃	〃	041)641-0488
69	內院寺	金玉南(鶴松)	〃 長谷. 廣城 山87	〃	〃	041)642-1809
34	修德寺	金界鎬(法長)	禮山. 德山. 斜川 山20	88. 6.18	〃	041)337-6565
35	香泉寺	權喜泰(慈圓)	〃 禮山. 香泉 57	〃	〃	041)331-3556
36	報德寺	徐錫花(大雄)	〃 德山. 上加 227	〃	〃	041)337-4350
37	大蓮寺	李在求(慈明)	〃 光時. 東山 山11	〃	〃	041)332-0408
70	華岩寺	金順貞(性眞)	〃 新岩. 龍宮 202	88. 9.20	〃	041)332-9250
	法輪寺	방 현(보명)	〃 삽교읍 313-35	02.12.24	법륜종	
40	太乙庵	이성주(石興法)	泰安. 泰安. 東門 山42	88. 6.18	〃	041)672-1440
46	興住寺	徐明權(강민)	〃 〃 上玉 115-4	〃	〃	041)674-3473
47	泰國寺	南面佑(靑雨)	〃 近興. 程竹 108	〃	〃	041)675-1228
49	影浪寺	尹金禮(觀空)	唐津. 高大. 眞館 529	〃	〃	041)353-8053
50	普德寺	金恩淑(正眼)	〃 石門. 三花 산39-2	〃	〃	041)353-9306
63	靈塔寺	南福用(慧一)	〃 沔川. 城下 560	88. 9.20	〃	041)356-3204

제 19 장 유원시설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은 유원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1. 필요성

○ 유원시설은 보다 강도 높고 새로운 모험을 체험하려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점차 고속화, 첨단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 유원시설을 운용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 시설물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점검 및 보수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2. 추진방침

○ 유기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 신속한 재난수습, 복구대책 수립

○ 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3.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종합유원시설업 : 대지 10,000㎡이상에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운영하는업

○ 일반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운영하는업

○ 현　　황

- 대상시설 : 9개소 (종합 2, 일반 7)

구 분	종합유원시설		기 타 유 원 시 설						
	상록랜드	대천필랜드	드림리조트	리버사이드파크	훼미리랜드	독립기념관	카니발랜드	삽교호놀이동산	태미리랜드
소재지	천안 수신 장산 669-1 (천안상록리조트)	보령 신흑 1438-1 (대천해수욕장)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2-2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3-1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98-3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 230	보령시 신흑동 805-4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산1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81
대표자	공무원 관리공단	임두길	박유철	이낙주	김정인	독립기념관	윤수기	한광우	신상수
허가일	97. 12. 10	93.7.29	90.7.26	97.9.12	96.5.18	87.8.14	01.7.28	01.4.28	01.7.26
유기시설	19종 바이킹, 우주전투기, 회전목마, 범퍼카, 하늘자전거, 유수풀, 다람쥐통, 타가다디스코, 어린이풀, 파도풀, 3D영상관, 풀로우라이더, 마스터블라스터, 튜브슬라이더, 바디스라이더 1 뉴욕시티, 바디스라이더2, 시뮬레이션미니바이킹, 소형관람차	7종 바이킹, 댄싱후라이, 허리케인, 타가다디스코, 젯트보트 미니원더휠 회전목마	5종 모노레일 코끼리열차, 바이킹 우주전투기 스카이싸이클	9종 바이킹, 빅트럭, 범퍼카, 미니바이킹, 타가다디스코, 마린베이, 회전목마, 점핑스마일썬드럽	2종 미니바이킹, 회전컵	1종 궤도열차	5종 타가다디스코, 범퍼카, 바이킹, 인디아나존스, 미니바이킹	11종 바이킹, 타가다디스코, 우주전투기, 미니바이킹, 허니문카, 범퍼카, 88열차, 점보보트, 댄싱후라이 회전목마, 스카이레일카	1종 미니 회전목마

4.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 제2003-18호(2004.1.5)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준

○ 검사기관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시·군 공무원 참여)

○ 검사대상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검사시기(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3항)

- 설치전 : 안전성 검사 또는 검사대상 제외시설의 확인검사
- 설치후 : 정기검사

○ 검사 주기

-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일일점검 :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매일 1회 이상 시행

2) 유원시설 지도·점검

구 분	문화관광부 또는 협회·도 합동	도 합동	시·군·단체	비 고
점검대상	6 개소 (상록랜드, 대천필랜드, 드림리조트, 리버사이드 파크, 카니발랜드, 삽교 호놀이동산)	6 개소 (상록랜드, 대천필랜드, 드림리조트, 리버사이드 파크, 카니발랜드, 삽교 호놀이동산)	해당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취약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
검사시기	년 1 회 (3 월)	년 1 회 (10 월)	년 6 회 (분기 및 성수기)	
점 검 반	1개반 3명 (문화관광부 또는 협회 1, 도 2)	1개반 2명 (건축 1, 기계 1)	자체 점검반 (재난관리과 합동점검)	시·군 직원참여

○ 점검내용

- 정기 안전성 검사 및 자체 일일안전점검 실시여부
-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등) 고용 및 점검실시여부
- 안전 검사결과 조치내용 이행여부
- 안전수칙 준수지도

· 정원초과 운행금지 및 운행전 안전상태 확인

· 유아 및 노약자등은 보호자 동반 탑승 조치

· 기타 준수사항 이행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유원시설업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제출
- 검사결과 보완사항은 신속히 조치완료, 불합격 판정 기구는 관할 허가청 및 도에 통보
- 기구별 개선 부분 사후관리 실시로 결함사항 시정 조치
- 문제점을 돌출하여 개선 보완토록 행정조치
- 지적된 사항은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 사업자 안전관리 확행

-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점검 실시
- 일일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
- 시설별 안전수칙 이용자 준수사항 게첨
-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비치

· 유기기구 조종 스위치 조작없이 운영되는 경우 별도 스위치 안전박스 설치

나. 대비대책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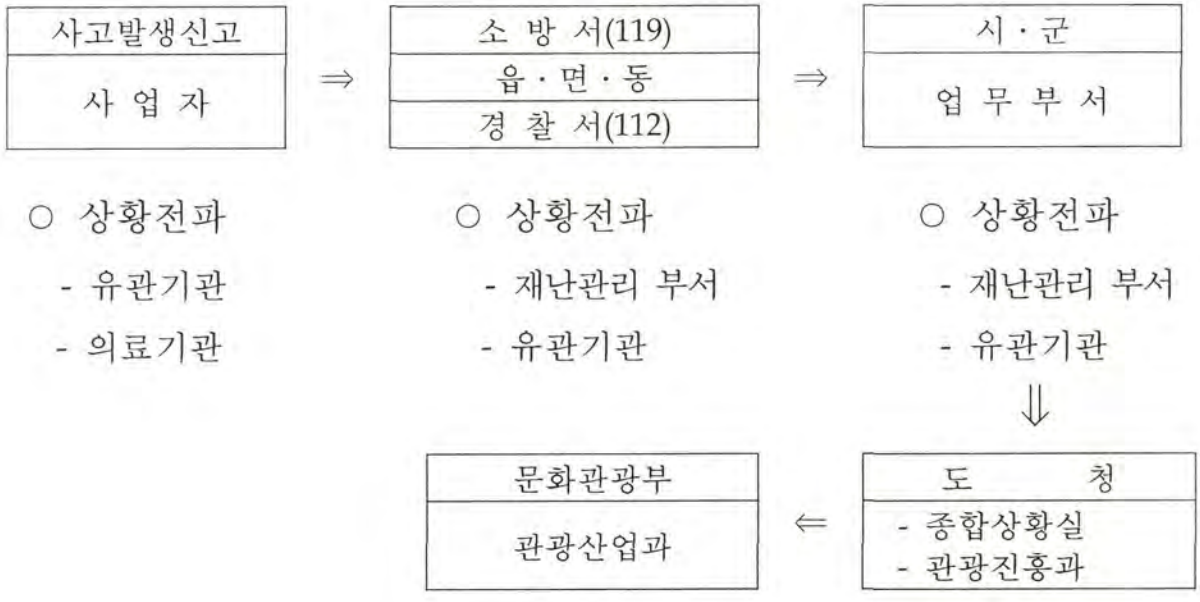

○ 응급조치

이용자 조치 ⇒ 소방서, 경찰, 사업자

- 탑승객 불안심리 및 동요 진정조치
- 탑승객의 임의 탈출행위 통제
- 이용자 안전대피
- 질서있는 인명구조 실시

부상자 조치 ⇒ 업무부서,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와 연계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부상자 관리카드 작성 : 인적사항 등 신원확인
- 응급조치후 부상자 의료기관에 긴급이송 : 시·군 지정병원

사고현장 조치 ⇒ 관계기관, 소방서, 경찰

- 지역 사고대책본부 설치(규모에 따라) : 시장 · 군수
- 경계구역 설정 : 주민보호 및 사고시설물의 2차붕괴 등 피해최소화
- 사고현장 인원, 차량통제 및 질서유지

다. 수습 및 복구대책

사 망 자 ⇒ 업무부서, 의료기관, 사업자

- 신원확인 및 시신에 대한 보호관리
- 피해자 가족과 장의 및 보상협의 중재

부 상 자 ⇒ 업무부서, 의료기관, 사업자

- 치료경과 및 회복 진행상태에 따라 병원배치 조정
- 환자 인적사항 관리
- 병원별, 환자별 담당자 지정 배치
- 치료비 등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 중재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지역사고대책본부, 사업자, 협회

- 피해조사

· 지역사고대책본부 및 관계자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조사

· 사고발생원인, 책임소재, 피해상황 등

- 현장복구

· 파손 및 고장 시설물 보수

- 업체자체기술진 및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완전복구 시까지 운행중단

제 20 장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 사고 예방

○ 시설장 및 종사자·입소자 안전교육 강화

○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

○ 안전진단 후 조치 사항 사후 관리 확인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2004. 12. 30 현재)

구 분	계	장애인	부랑인	노인	아동	정신	사회복귀	모자복지
시설수	164 (81)	43 (26)	1	82 (51)	18 (3)	12 (1)	4	4
수용인원	7,644 (961)	2,184 (399)	196	1,768 (527)	1,122 (24)	2,142 (11)	107	125

※ 시설별 세부내역 별첨, ( )는 미신고 시설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1) 시설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

○ 안전관리 교육(시·군 주관 및 시설자체) 실시

-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가 참여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시설담당 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거주자 등 교육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시설 주관으로 년 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 훈련대상 : 시설종사자, 시설수용자
  - 훈련내용 :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 점검, 응급조치, 시설 수용자 대피 등

나.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시·군 시설담당 공무원을 「시설안전담당자」로 지정

○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시설안전담당자 및 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안전관리 실시주체

- 시·군 :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시설자체 : 매 반기별로 실시

※ 도에서는 시·군 안전점검 결과 문제시설을 대상으로 년 2회 실시

나. 대비 대책

1) 전담반 편성 및 운영

○ 재난 발생시 전담반 편성·운영

- 총　　괄 : 도 복지정책과장
- 전담반장 : 해당시설 도 담당
- 반　　원 : 도 담당자, 시·군 담당 및 담당자

○ 전담반의 임무

- 총　　괄 : 재난사고 피해의 극소화 및 조기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총괄지휘
- 전담반장 : 사고 현장에서 각 반원을 지휘하여 사고 수습
- 반　　원 : 전담반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 수습

○ 전담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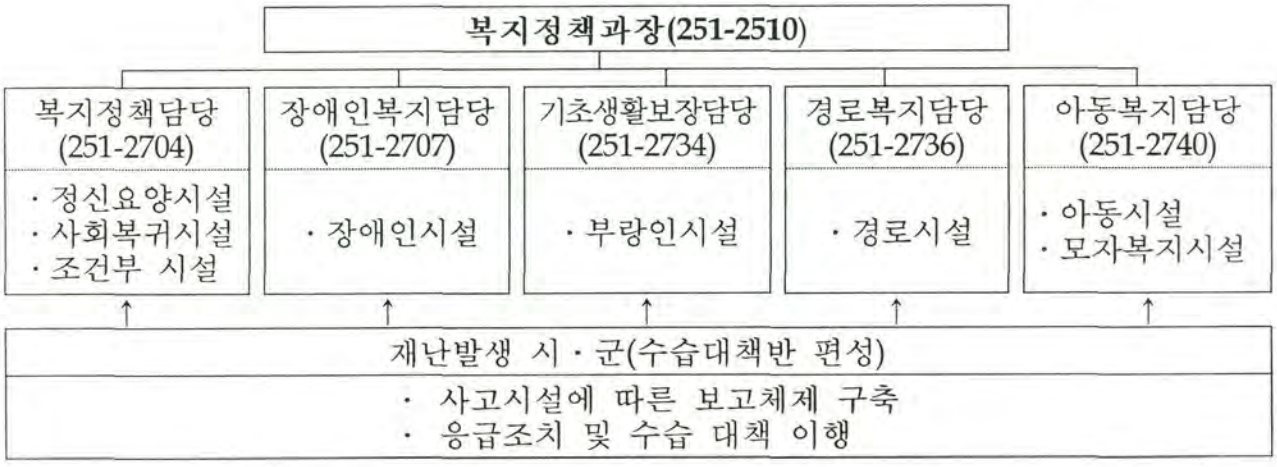

2) 비상연락망 정비

○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

다. 대응대책

○ 신고 접수

- 비상연락망의 운영체계 유지로 신속한 신고
- 유관기관·단체에 상황 전파 및 협조요청

○ 응급조치

- 인명구조활동 전개
- 환자 응급치료 및 사상자 병원에 후송

- 인원,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 수용자 동요방지 등 재발 및 확산 예방 조치
- 위급 상황발생시 대피·퇴거 강제 집행

라. 수습 및 복구 대책

○ 사고 조사

- 사고 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시설수용자 임시 수용설치 및 대피

- 응급구호를 위한 비상용품 및 급식조치
- 시설 이탈자 명단 파악 및 귀원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 화재진압 등 긴급 복구

- 각종 장비·인력 동원
- 급수 및 하수, 전기시설 등 복구

○ 사후복구대책 수립 시행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수립
- 재난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복구대책에 따른 신속한 조치 시행

4. 재정·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및 사업명		계획			
총 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시설안전대책	소 계	6개소	353	176.5	176.5
	아동시설기능 보강사업	2개소	12	6	6
	장애인시설기능 보강사업	3개소	210	105	105
	노인시설기능 보강사업	1개소	131	65.5	65.5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신고시설

【 노인복지 시설 】 - 총 31개소(운영 20, 신축중 11)

시 설 명		설 치 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합 계				1,768	894	347	
무료양로	온양 정애원	51.11.14	아산 온천 306-14	80	27	7	545-2440
	인삼골 건강마을	01. 6.12	금산 금산 계진 273	30	24	8	753-7407
	사랑의마을	00. 8. 21	연기 서 기룡 173-2	30	22	8	867-2080
	장수경로원	91. 1.19	홍성 은하 금국 530-2	50	30	8	642-4482
무료요양	보령원	57. 7.19	보령 남포 창동 568	51	31	14	933-1144
	금매복지원	82. 7.15	서천 마서 송내 266-23	59	53	21	956-0893
	정애노인의집	82.12.21	아산 선장 신동 136-7	100	63	17	544-0819
	쎈뽈요양원	79. 2.16	논산 부창 66-2	50	45	13	735-4044
	전의 요셉의집	99. 5. 6	연기 전의 원성 183	60	56	23	862-8268
	만수노인 복지원	95. 6.24	부여 외산 만수 55-22	50	46	18	836-1447
	장수노인 요양원	97. 4.18	홍성 은하 금국 528	71	60	21	642-4482
	평안마을	01. 6.20	당진 당진 구룡 552	50	46	16	355-2080
	서산명서재단	신축중	서산 동문동 9-5	60	-	-	665-2231
	고향의집	〃	논산 강경 채산437-37	50	-	-	745-4900
	공주노인요양원	〃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188-12	50			857-7121
	꿈동산복지타운	〃	천안시 청당동 407-3	30			569-9240
무료전문요양	정애효도마을	01.11.28	아산 선장 신동 136-1	64	62	34	544-0818
	요셉의마을 성요셉 치매센타	01. 9.28	연기 전의 원성 182	55	49	32	868-5001
	부여 중앙노인전문	01. 5. 2	부여 부여 동남 598	70	69	40	836-6300
	효자의 집	신축중	천안 삼룡동 41-12	74	-	-	558-7772
	보 령 원	〃	보령 남포 창동 568	60	-	-	665-2231
	사랑실천재단	〃	천안 구성동 87-2	60	-	-	573-4384
실비전문요양	정애마을	89. 1.18	아산 선장 신동 136-8	80	70	19	542-5530
	성심원	신축중	부여 부여 용정 84	30			835-3506
	무궁화	〃	보령 주교 송학4-2	50			950-4452
	노인종합복지타운	〃	서천 종천 종천 산1-1	100			950-4452
유료양로	공주원로원	96. 7.23	공주 금흥 산 16-5	80	55	16	853-2347
	솔뫼베네 딕도의집	98. 6. 8	당진 우강 송산 125	40	36	12	363-7787
	새생명실버타운	'03. 9. 1	논산 벌곡 검천 338-6	30	1	2	733-3528
	마곡사백상	신축중	공주 정안 산성 산20	30			856-5420
유료요양	효자의 집	98.12.19	천안 삼용 41-12	74	49	18	558-7772

【 장애인복지 시설 】 - 운영 17개소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FAX)
			정원	현원		
합 계		**운영 17**	**1,309**	**1,220**	**565**	
천안죽전원 (지체장애)	'94. 7. 2	천안 구성동 107-8	61	62	29	555-5444 (555-5441)
서림복지원 (지체장애)	'87. 8.18	서산 음암면 율목 산22	128	123	62	663-6423 (663-6423)
명 주 원 (정신지체)	'82. 6.29	공주 반포면 송곡 268	159	159	68	857-7296 (857-7120)
충남정심원 (정신지체)	'67.10. 5	보령 주교면 관창 산 14	270	270	102	933-1717 (933-8838)
성모복지원 (정신지체)	'96. 9.20	아산 영인면 성내 49-2	100	80	37	543-7861 (543-7862)
동곡요양원 (중증요양)	'83.12.23	공주 반포 송곡 188-7	105	105	49	857-7121 (856-7121)
정심요양원 (중증요양)	'90. 2. 1	보령 주교 관창 산 14	42	42	24	933-1712 (933-8838)
서림요양원 (중증요양)	'90. 8.13	서산 음암 율목 산22	63	58	36	663-6427 (663-6423)
성모의 마을 (중증요양)	'95. 6. 9	논산 상월 대촌 122-1	85	85	45	732-2085 (733-0587)
노아의 집 (중증요양)	'95.11.28	연기 전동 송성 650-2	97	77	33	862-7002 (862-7007)
성일복지원 (중증요양)	'03. 9. 2	서천 장항 송림 762-1	30	18	14	956-9292
소망공동체 (중증요양)	'03.12.23	공주 상왕동 757	40	40	20	857-8157
삼휘복지원 (중증요양)	'03.12.23	공주 탄천 분강 121	30	30	19	854-6450
환한웃음의집 (지체장애)	03.12.20	아산 신창면 읍내 103	30	20	7	543-0807
성도원 (정신지체)	03.12.01	서천 마산군간리 126-4	20	11	5	854-6450
등대의집 (지체장애)	04. 6.12	천안 직산 판정리 132-1	39	32	12	582-4496
참아름다운집 (정신지체)	04.11.20	천안 북면 운영리 189	10	8	3	557-5031

【 아동복지 시설 】

구분	시설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합 계			**총 15개소**	**1,080**	**928**	**194**	
아동양육시설	삼일육아원	53. 3. 1	천안 쌍용동 220-4	100	92	24	572-7795
	신 아 원	56.10. 5	천안 삼용동 산14-4	100	91	21	565-5761
	익 선 원	52. 5.10	천안 성거읍 모전리 1	88	83	21	585-5209
	보 령 원	52. 7.10	보령 남포 창동리 568	49	35	7	933-1144
	대천애육원	52. 7.10	보령 신흑동 647-2	57	49	10	933-9771
	뿌란나애육원	51. 4. 9	아산 방축동 160-3	44	23	5	542-3464
	논산애육원	64. 9.29	논산 강산동 62	52	51	9	735-5309
	에덴보육원	64. 2.14	논산 연무 동산3리 880	98	95	18	741-4183
	계룡학사	57. 5. 3	논산 연산 화악 151-5	95	90	14	735-0703
	향 림 원	53. 8. 1	금산 추부 마전 866	95	68	15	752-5219
	영명보육원	53. 8.15	연기 서면 월하 1103-46	93	71	15	867-2059
	삼신보육원	58.12.10	부여 석성 증산 1310	70	67	15	836-6049
	사랑육아원	52. 9. 1	홍성 광천 상정 730-2	49	38	8	641-2598
	덕산신생원	55.10.31	예산 덕산 읍내 394-6	60	46	10	337-4046
자립지원	충남향림자립생활관	02. 2.20	금산 추부 마전 761-7	30	29	2	753-5319

【 부랑인 시설 】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금이성마을	83. 2. 8	연기 전동 송성 650-3	221	178	18	862-7004

【 정신요양 시설 】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합 계		**총 11개소**	**2,172**	**1,939**	**203**	
천안정신요양원	86. 12. 9	천안 동면 동산 산61-4	106	105	15	523-2531
기독성심원	86. 12. 30	천안 성남 신사 산26-3	119	118	18	553-6031
벧엘영생원	84. 12. 6	공주 봉정동 115	184	167	18	855-6342
일 신 원	87. 9. 7	아산 신창 읍내 542-1	133	132	17	546-8335
계룡정심원	73. 11. 17	논산 양촌 반곡 394-2	330	329	27	735-0921
논산성지원	86. 5. 1	논산 연산 한전 15	333	290	23	735-0307
논산정신요양원	97. 10. 19	논산 상월 월오 509-2	191	179	18	732-4227
방주의 집	86. 12. 13	연기 전동 송정 산119	300	218	20	862-7004
오석산요양원	90. 7. 1	부여 부여 능산 213-3	198	131	15	835-5900
홍성정신요양원	83. 9. 22	홍성 홍성 내법 366-2	229	225	20	632-3108
수 정 원	97. 1. 18	예산 대흥 하탄방 1	49	45	12	334-7951

【 사회복귀 시설 】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합 계		**총 4개소**	**99**	**91**	**16**	
성애마을	00. 10. 18	아산 음봉 덕지 38-1	50	47	6	544-4580
보람의집	99. 7. 1	논산 연산 한전 15	29	29	5	735-9984
베데스타예수마을	00. 12. 6	논산 연산 신암 10-3	10	7	3	735-3325
가나안복지타운	02. 11. 16	부여 외산 수신 195	10	8	2	837-0675

○ 모자복지시설 현황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정원	현원		
세화주택	'00.12.6	계룡 두마 입암 29	20가구 60명	19가구 52명	5	841-0113
에벤에셀모자원	'55.4.29	서천 장항 원수 991	20가구 60명	15가구 45명	4	956-4433
테레사의 집	'03.9.24	아산 염치 방현 442-9	27명	4명	3	533-3303
천안새소망의집	'04.2.25	천안 두정동 1169	10명	10명	2	568-0691

2 미신고시설

○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시 설 명	설치일	소 재 지	입소인원		종사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계			282	148	51	
온 유 한 집	04.04.	천안시 직산읍 남산리 292-2	9	9	2	584-6363
샬 롬 의 집	04.11.29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산3-11	29	17	2	555-4697
평 안 의 쉼 터	04.12.30	천안시 북면 대평리 80	9	3	2	555-9726
참아름다운집	04.11.20	천안시 북면 운용리 189	10	9	3	558-2031
환한웃음의집	03.12.20	아산시신창면읍내리 103	30	21	5	544-0101
안 나 의 집	04.11.4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184-10	9	1	3	733-6037
내일은푸른하늘	01.09.01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811-2	9	4	2	953-5659
따 뜻 한 집	95.12.16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30-4	25	16	6	633-5773
홍성사랑의집	04.07.07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61	29	13	6	632-7750
가나안노인의집	96.03.29	예산군오가면원평리21-8	9	9	7	335-5454
꽃산실버타운	04.01.08	예산군삽교읍신가리260	9	7	2	338-2138
천성노인복지원	04.08.30	예산군삽교읍상성리95-22	50	0	2	338-2440
노 아 의 집	00.10.30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026-1	30	30	6	674-1005
광명실버하우스	04.12.13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620-2	25	9	3	354-2543

○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명	시설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생활인수	수급자수		
계		1023	458	184	
소 망 의 집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427-4	4	2	2	554-5952
부 처 님 마 을	천안시 동면 덕성리 409	5	1	2	523-0025
예 수 가 족	천안시 업성동 151-1	10	10	2	583-3579
사랑과평화의집	천안시 목천읍 덕전리 614-1	12	7	3	568-1728
사 랑 의 집	천안시 구룡동 산83-2	56	56	3	572-2481
나누리장애인의집	천안시 성정동 671-10	10	6	3	572-6783
드 림 랜 드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366-1	14	9	2	568-7213
사 랑 의 마 을	천안시 북면 전곡리 139	27	10	3	553-8275
세계기독교선교센터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359	19	0	3	568-7213
샬 롬 양 로 원	천안시 불당동 665	8	3	2	575-1175
다 윗 가 정	천안시 백석동 11-12	6	5	3	558-9191
행 복 의 집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495	9	4	2	853-3138
효 심 의 집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50-6	6	5	3	856-6333
이웃소망의집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168-6	15	3	4	857-8735
왕촌어버이집	공주시 상왕동 663	36	18	7	856-3023
믿 음 의 집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5	14	3	3	841-3625
샬 렘 동 산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510-1	28	0	7	641-5861
은 빛 마 을	보령시 주포면 마강리 3	11	5	2	933-3905
평 화 의 집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697-1	23	15	2	933-8517
사랑의집에덴	아산시둔포면신남리589-5번지	19	2	5	531-8696
온 유 한 집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195-11	15	4	4	543-4638
온 양 소 망 원	아산시 방축동 34-2	12	0	3	545-9599
아름다운선교회 다 정 마 을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87	17	2	3	542-1311
가나안 복지원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1	5	0	2	542-9288
노 인 사 랑 한우물공동체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321-5	13	3	2	531-7477
샤 론 의 집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166-41	26	24	7	664-4462
은 빛 공 동 체	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273-3	2	2	1	669-1927
아브라함의 집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110-3	17	9	2	732-1477
사 랑 의 집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482	27	0	11	741-2243
작 은 자 의 집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284	65	40	8	741-7097

시설명	시설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생활인수	수급자수		
우리집 공동체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10	30	7	7	733-1793
사랑우리장애인공동체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273-5	5	1	1	736-2478
구 원 의 집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519	5	3	2	753-8954
새 터 공 동 체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116	7	5	2	754-1488
장애우평등학교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45	7	7	2	754-1925
평 화 의 동 산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산100-23	31	26	2	753-3883
나눔과사랑의집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326	35	15	1	752-2857
소 망 의 집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464-4	8	0	2	752-4256
성 지 원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244	8	0	2	752-9192
그 리 스 도 의 집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58-4	5	5	1	754-0775
새누리은빛마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357-2	25	0	5	017-402-3006
평 안 의 집	연기군 동면 내판리 417	9	2	2	856-0905
오 암 복 지 원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368	11	9	4	862-4911
사 랑 요 양 원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320 두진(아)101/1001	20	15	3	868-5774
평 강 요 양 원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675-2	37	17	6	866-9740
은혜사랑의집	연기군 서면 기룡리 10-1	86	6	5	567-0263
부여밀알의집	부여읍 염창리 1-1	15	10	2	835-9109
광명사랑의집	임천면 군사리 553-1	10	6	3	834-3907
사 랑 의 집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19	16	3	952-8669
사 랑 의 집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18	25	12	3	943-6316
홍광실버타운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358-2	13		3	631-4463
하 늘 공 동 체	홍동면 운월리 산88-5	5	3	4	852-8540
성 락 원	예산군봉산면옥전리363-4	3	2	4	338-6507
은 혜 의 집	예산군오가면역탑리413	0	0	0	335-0668
새 롬 재 활 원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280	24	13	2	673-1632
어 린 이 샘 터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99-11	13	12	1	672-5668
소 망 의 집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138-2	36	18	6	356-0518

○ 미신고시설

시설명	시설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생활인수	수급자수		
		162	90	40	
오선복지원	천안시 북면 운용리 50-1	12	7	4	567-5232
시장교회	천안시 북면 상동리 70-20	12	6	2	568-7572
평화의집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145	15	15	3	558-7093
작은형제의집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39	35	20	4	841-5864
만목수양관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443	4		2	733-1116
양촌수양관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489-4	22	3	10	741-0972
평강의집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5-1	6	6	2	867-5430
노인의집	연기군 동면 명학리 319-1	2	2	1	864-9281
늘푸른집	연기군 전의면 영당리 26	4	3	2	867-2987
해뜨는집	연기군 전의면 노곡리 148	9	9	3	866-0193
평화의집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75-2	7	5	1	672-2295
사랑노아의집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275	15	6	2	674-3162
행복의집 (생명수교회)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307	9	8	2	674-1443
아셀복지원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188-1	10	-	2	352-3449

제 21 장 체육·청소년시설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체육·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 철저한 사고예방과 안전점검으로 재난요인 사전제거

○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1. 추진방침

○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긴급구조체계 확립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 사업자·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고취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재난관리대상 : 총 103소

- 체육시설 : 68개소

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비고
	소계	운동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소계	골프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68	25	11	10	1	3	43	5	3	35	

- 청소년수련시설 : 35개소

계	공공수련시설					민간수련시설					비고
	소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소계	문화의 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35	18	5	6	3	5	17	1	5	7	4	

3. 추진계획

가. 예방 및 대비대책

1) 체육시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안전점검(관람집회시설)

- 정 기 점 검 : 반기별 1회이상
- 긴 급 점 검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정 밀 점 검 : 3년에 1회이상 정밀검사 및 시험·측정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2)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상의 안전점검(설치·운영자)

- 월 1회이상 점검실시 ⇒ 장부기록 및 안전조치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시·군) : 재난관리부서 협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점검 등

⇒ 분야별 세부점검은 물론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사고 관리대장,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안전점검기록대장 등 관련 비치장부 작성관리 및 조치사항 점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사업주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
- 보수·보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즉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도,시·군 자체계획을 수립,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 보수·보강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중 공공시설은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민간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토록 적극 행정지도

나. 대응대책

1) 신고접수

○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보고

○ 유관기관·단체에 상황전파와 협조요청

2) 응급조치

○ 가스, 전기등 위험요인 우선차단

○ 사고지역 통제등 경계구역 설정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사상자 치료

○ 사고 확산대비 안전조치

- 인근 이용자(주민) 대피
- 위험요인 사전 제거후 구조 및 복구

○ 인원·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다. 수습 및 복구 대책

○ 사고원인 파악 및 피해조사

○ 사망자 시신 안치관리

○ 화재진압 및 긴급복구

- 각종장비 및 인력동원

○ 2차 피해유발 요인제거

- 붕괴·추락등 위험요인 완전제거

○ 사상자 및 유족과 보상협의

○ 항구복구 대책을 수립 복구

【 비 상 연 락 체 계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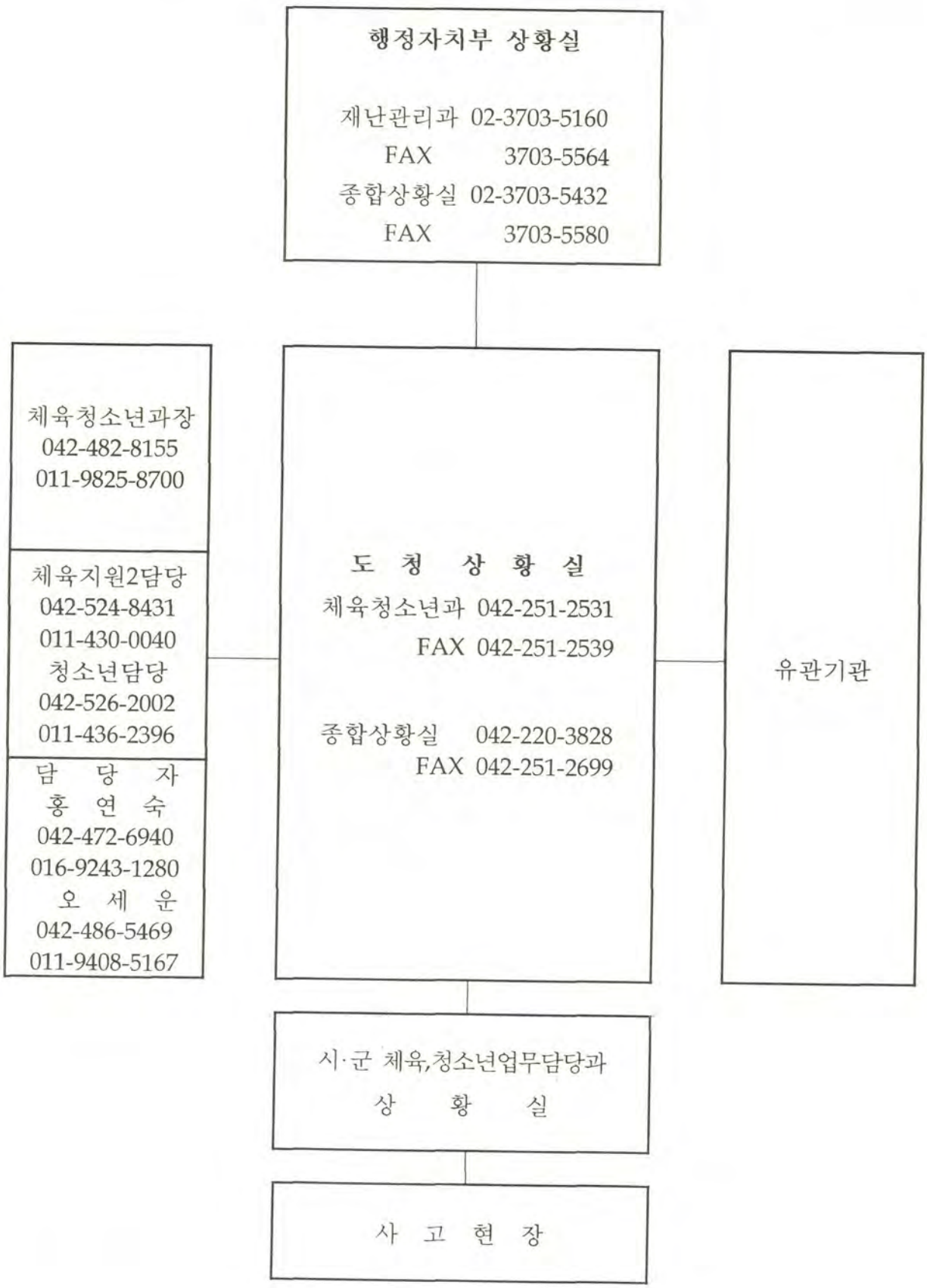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상황실
재난관리과 02-3703-5160
FAX 3703-5564
종합상황실 02-3703-5432
FAX 3703-5580
체육청소년과장
042-482-8155
011-9825-8700
체육지원2담당
042-524-8431
011-430-0040
청소년담당
042-526-2002
011-436-2396
담 당 자
홍 연 숙
042-472-6940
016-9243-1280
오 세 운
042-486-5469
011-9408-5167
도 청 상 황 실
체육청소년과 042-251-2531
FAX 042-251-2539
종합상황실 042-220-3828
FAX 042-251-2699
유관기관
시·군 체육,청소년업무담당과
상 황 실
사 고 현 장

공공 체육시설 현황

운 동 장

시 군 별	부지면적 (㎡)	건물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좌석수) (명)	준공	비 고
	11개소				
천안종합운동장	458,874	27,109 (39,074)	32,000 (26,000)	'01	천연잔디
천안오룡경기장	36,701	10,874 (10,874)	25,000 (20,000)	'86	〃
공주종합운동장	66,110	1,388 (2,676)	27,000 (20,000)	'90	〃
보령공설운동장	113,837	8,705 (13,618)	25,000 (20,000)	'95	〃
서산종합운동장	146,221	4,746 (11,400)	19,000 (2,504)	'01	〃
논산공설운동장	89,860	8,851 (15,345)	25,000 (20,000)	'97	〃
금산공설운동장	139,586	331 (502)	5,000 (138)	'97	〃
청양공설운동장	59,100	375 (811)	12,000 (600)	'96	`05보강
홍성공설운동장	115,060	12,711 (12,711)	20,000 (15,000)	'95	천연잔디
예산공설운동장	44,260	901 (1,328)	10,000 (10,000)	'89	〃
당진공설운동장	91,653	810 (20,640)	10,000 (5,000)	'95	`05보강

【추진중】

시군별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준공 예정	추진상황
	2 개소				
아산시	128,595	16,500	20,000	'06	'06.6 완료예정
부여군	102,519	9,519	7,000	'05	'05.12완료예정

체 육 관

시군별	시 설 명	시설규모(㎡)			준 공	비 고
		부 지	연면적	수용 인원		
	10 개소		50,543			
천안시	병천체육관	10,080	1,984	724	'94	
	유관순체육관	11,749	13,278	6,000	'01	
공주시	백제체육관	21,204	9,566	4,500	'97	
보령시	대천체육관	9,055	4,062	3,000	'91	
아산시	시민체육관	10,130	3,928	860	'86	
연기군	군민체육관	15,000	4,133	3,000	'93	
부여군	군민체육관	2,500	1,963	1,500	'87	
서천군	군민체육관	6,621	2,121	1,500	'91	
태안군	실내체육관	9,975	2,326	584	'94	
당진군	실내체육관	19,630	7,182	2,282	'03	

생활체육공원

시 설 명	부 지 (㎡)	시설면적 (㎡)	준공	비고
	1 개소			
금산군	18,300	11,098	'03	

【추진중】

시 설 명	부 지 (㎡)	시설면적(㎡)	사업 기간	비 고
	8 개소			
부여군	30,000	18,706	'99 -'05	'05. 12 완공예정
당진군	106,015	21,750	'03 -'05	'05. 12 완공예정
연기군	33,124	18,200	'04 -'05	'05. 12 완공예정
천안시	116,500	35,250	'04 -'06	'05. 8 착공예정
아산시	29,000	6,434	'04 -'05	'05. 4 착공예정
논산시	20,136	12,700	'05 -'06	'05. 12 완공예정
계룡시	225,614	16,500	'05 -'06	'06. 12 완공예정
홍성군	22,129	17,650	'05 - '06	'06. 12 완공예정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시 설 명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명)	준 공	비 고
	3 개소				
서산시	5,115	7,986	1,000	'01	
청양군	2,644	3,026	1,000	'95	
연기군	14,478	2,105	500	'04	

【추진중】

시 설 명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준공 예정	추진 상황
	3 개소				
금산군	3,944	4,154	1,500	'05	04. 9 착공 (국민체육센터 통합)
홍성군	8,805	4,880	1,500	'05	'04.6월 착공
논산시	26,188	3,000	1,200	'06	'05.3월 착공예정

시설명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준공	비 고
	2 개소				
천안시	4,000	3,716	1,000	'01	수영장
공주시	1,920	1,078	300	'03	수영장

【추진중】

시 설 명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명)	준공예정	추 진 상 황
	4 개소				
금산군	3,944	4,154	1,500	'05	04. 9 착공 (농어민체육센터와 통합)
연기군	21,089	1,640	수영장	'05	'05. 9완료예정
서산시	6,600	5,012	〃	'06	'04.12 설계완료
보령시	22,304	1,640	〃	'05	'04.12 부지매입완료

등록체육시설 현황

골프장

골프장명	위 치	사 업 자	규 모(㎡)	승인일(등록일)
	5 개소			
도고 C.C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113-8	도고C.C(주)	회원 18홀 (904,536)	'72.11.14 ('75.10.20)
코오롱 우정 힐스 C.C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산29	코오롱 우정힐스	회원 18홀 (1,049,767)	'89.12.23 ('93. 5. 6)
IMG National. C.C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495-2	대명개발 (주)	회원 27홀 (1,025,156)	'89.11.12 ('94.11.14)
천안상록C.C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669-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규대중27홀 (1,314,476)	'91. 1. 4 ('97. 3.10)
에딘버러C.C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2-2	(주)부토	회원 18홀 (1,024,690)	'90.12. 6 ('03. 6.19)

【공사중】

골프장명	위 치	사 업 자	규 모(㎡)	승인일	비고
버드우드C.C (舊 아우내 C.C)	천안시 병천면 매성리 335-1번지외	(주)버드우드	회원18(913,887) 대중 6(479,892)	'93.10.9 (변경03.9.23)	04. 1. 착공
태안 비치 컨트리클럽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59-1	리치빌개발(주)	회원 18홀 (528,044)	'03.12.31	04. 7 착공

종합체육시설업

시설명	위 치	사 업 자	주요시설	등록일 (회원수)
현대자동차 문화관	아산 인주면 대음리205-1	현대자동차(주) 박 병 채	수영장 315㎡ 에어로빅장 72.9 체력단련장 475.61	'96.11.1 (비회원제)
(주)진영스포리움	서산 예천동 547	(주)진영 정 창 호	수영장 410㎡ 에어로빅장 140.64 체력단련장 187.44 스쿼시장 148.69	'97. 2.25 (86명)
덕산온천 훼밀리 헬스클럽	예산 덕산면 사동리10-14	(주)덕산 온천장호텔 이 충 효	수영장 197.10㎡ 에어로빅장 70 체력단련장 70	'97. 9. 6 (40명)

승마장

시 설 명	위 치	사 업 자	주 요 시 설	등록일 (회원수)
	4 개소			
도고파라다이스 승마장	아산 선장면 신성리 260	파라다이스 관광호텔(주) 이 갑 수	부지 : 3,336.77㎡ - 마장 : 3,184.75 - 마사 : 112.5	'97. 4. 18 (비회원제)
화림관광농원 승마장	태안 태안읍 상옥리1060	이 길 상	부지 : 4,008㎡ - 마장 : 3,366 - 마사 : 165	'97. 4. 9 (비회원제)
천안승마장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18-23	(주)유니피아 백미숙	부지: 8,936㎡ - 마장 : 3,060 - 마사 : 270	03. 6. 24 (회원제)
화랑승마공원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오 택 근	부지 : 27,973㎡ - 마장 : 4,800 - 마사 : 360	2005. 10. 30 공사완료예정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총괄>

(2004. 12. 31.현재)

구 분			계	운영중	공사중	비 고
계			54	35	19	
공공시설	소 계		25	18	7	
	생활권	수 련 관	7	5	2	천안, 보령, 부여, 논산, 홍성 (설치중 : 금산, 아산)
		문화의집	10	6	4	천안,논산,부여,연기,홍성,당진 (설치중 : 보령,천안,서산,공주)
	자연권	수 련 원	3	3	-	연기, 홍성, 당진
		야 영 장	4	4	-	천안, 아산, 청양, 예산
	유스호스텔		1	-	1	(설치중 : 부여)
민간시설	소 계		29	17	12	
	생활권	수 련 관	-	-	-	
		문화의집	1	1	-	※공주민속극박물관청소년수련실
	자연권	수 련 원	11	5	6	천안, 연기,청양,서산,태안 (설치중 : 금산, 아산(2), 서산, 예산, 태안
		야 영 장	7	4	3	천안, 연기, 보령, 서산 (설치중 : 금산2, 아산,)
	유스호스텔		10	7	3	천안(2), 공주(2), 부여(2), 아산 (설치중 : 보령, 아산,태안)

□ 시·군별

구 분	합 계	생 활 권		자 연 권		유 스 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계	35(19)	5(2)	7(4)	8(6)	8(3)	7(4)
천안시	7(1)	1	1(1)	1	2	2
공주시	3(1)	-	1(1)	-	-	2
보령시	2(2)	1	(1)	-	1	(1)
아산시	2(5)	(1)	-	(2)	1(1)	1(1)
서산시	2(2)	-	(1)	1(1)	1	-
논산시	2	1	1	-	-	-
계룡시	-	-	-	-	-	-
금산군	(4)	(1)	-	(1)	(2)	-
연기군	4	-	1	2	1	-
부여군	4(1)	1	1	-	-	2(1)
서천군	-	-	-	-	-	-
청양군	2	-	-	1	1	-
홍성군	3	1	1	1	-	-
예산군	1(1)	-	-	(1)	1	-
태안군	1(2)	-	-	1(1)	-	(1)
당진군	2	-	1	1	-	-

※ ( ) 건립중

□ 운영중 청소년수련시설

<생활권(공공) - 11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개소년월일
		부지(㎡)	건평(㎡)	수용정원		
부여군 청소년수련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13,005	6,212	1,400	실내경기장,생활관,소공연장,독서실	'93. 6. 26.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논산시 지산동 786	4,958	3,995	300	체육활동장,강당,극장,자치활동실	'99. 12. 27.
부여군청소년 문화의집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수련원내	658	200	인터넷부스,다목적홀 공연연습실,동아리방	'99. 3. 19
천안시청소년 문화의집	천안시 원성동 261-38	중앙도서관내	731	200	인터넷부스,다목적홀 공연연습실,동아리방	2000. 1. 17.
논산시청소년 문화의집	논산시 지산동 786 수련관내	수련관내	622	200	인터넷부스,다목적홀 음악연습실,동아리방	1999. 12. 27.
연기군청소년 문화의집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226-1	문예회관내	352	100	다목적홀,노래연습실 무용연습실	2000. 10. 4.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084	2,402	1,877	800	스포츠댄스실,포켓볼링,공연연습실,레고과학실,다목적실	2002. 3.29.
홍성군청소년 문화의집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084	수련관내	706	500	인터넷부스,창작실 열린독서실,동아리방	2002. 3. 29.
당진군청소년 문화의집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74-1	1,920	699	200	다목적홀,인터넷부스창작공방,정보자료실 동아리방,전시실	2002. 7. 9.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천안시 유량동 산 6	28,412	2,636	570	체육관, 독서실, 상담실등	'94. 8. 17.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29-7	29,662	2,835	1,400	체육관,생활관,강당	1998. 6. 23.

<자연권(공공) - 7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개소년월일
		부지(㎡)	건평(㎡)	수용정원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2	14,719	3,672	570	생활관570명,강당700석,강의실50석,	1993. 6. 12.
당진군청소년 수련원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177-1	139,696	2,186	1,300	생활관,강당,야영장,심신수련장,식당등	1994. 7. 2.
연기군청소년 수련원	연기군 전의면 금사리 113-1	10,688	919	145	강당,생활관,교양실,취사장등	1994. 5. 21.
용연청소년 야영장	천안시 목천면 교촌리 산19-1	7,051	152	100	체육시설,급수대	1993. 1. 1.
아산시 청소년야영장	아산시 방축동 5	10,342	110	300	야영장, 취사장, 운동장	1990. 9. 29.
작천청소년 야영장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산22-16	1,355	-	300	야영장,급수대	1988. 6. 1.
예당저수지 야영장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0	11,243	420	400	야영장, 취사장	1989. 10.1.

<자연권(민간) - 9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등록일
		부지(㎡)	건평(㎡)	수용인원		
류관순 청소년수련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742-1	71,595	8,045	990	생활관990명, 실내체육관 240㎡, 강당500석, 강의실 250석	1995. 4.12.
청양숭의 청소년수련원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530-1	89,247	7,266	694	생활관694명 대강당, 실내체육관 실외수영장	1999 3.30.
독립기념관 청소년야영장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1-1	72,237	883	698	야영장,야외집회장, 세면장 등	2001 4.21.
조치원 청소년수련원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6-2	11,929	1,106	160	생활관160명, 실내집회장151㎡, 체육시설 4종 등	2001 6.26.
환교 청소년야영장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295-1	12,305	1,016	250	생활관50명,실내집회장1실,체육시설3종	2002 1. 7.
광명 청소년야영장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296-3	3,200	50	100	야영장,야외집회장, 세면장 등	2002 4. 9.
서해천수만 청소년수련원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14,580	1,294	171	생활관171명, 실내집회장112㎡, 체육시설 6종 등	2004 8.23.
승국문화재단 청소년야영장	서산시 팔봉면 호리 산100	20,421	1,052	280	생활관(80명),야영장,야외집회장,세면장 등	2004 8.13.
만리포 청소년수련원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25-2	11,245	7,582	744	생활관744명 실내집회장279㎡, 체육시설,수련의숲 등	2004 3.19.

<생활권(민간) - 1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등록일
		부지(㎡)	건평(㎡)	수용인원		
공주민속극박물관 청소년 수련실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357	9,398	224.3	130	특성화실,음향시설,어린이독서실	1997. 12.30.

<유스호스텔(민간) - 7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등록일
		부지 (㎡)	건평 (㎡)	수용 인원		
삼정부여 유스호스텔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05-1	10,200	4,696.4	582	생활관 582명 실내공연장 350석 실외공연장 546석, 식 당 209석	1994. 9. 5.
계룡산갑사 유스호스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36	3,002	3,835.4	530	생활관 530명 식 당 350석 강의실 70석 강 당 400석	1995. 7.10.
도 고 유스호스텔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260-2	12,279	7,824	858	생활관 858명 식 당 350석 강의실·회의실 1 실내집회장 639㎡ 실외활동장7,142㎡ 자가취사장 233.5㎡ 휴 게 실 185㎡	1998. 5.18.
상 록 유스호스텔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669-1	25,380	8,625	916	생활관 916명 자가취사장 84조 정보대화실 269㎡ 휴게실 38㎡	1999. 12.23.
천연휴식공간 유스호스텔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720-1	998	801	88	생활관 88명 자가취사장 59㎡ 체육활동장 101㎡ 실내집회장 55㎡	2001 5. 23.
공주 유스호스텔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5-8	19,639	5,310	605	생활관 605명 자가취사장 68㎡ 체육활동장 380㎡ 실내집회장 518㎡	2002 4. 9.
자연부여 유스호스텔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177-1	9,950	1,744	180	생활관 180명 자가취사장 32㎡ 체육활동장 2,400㎡ 실내집회장 226㎡	2003 6.14.

□ 설치중 청소년 수련시설

<공 공 - 7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주 요 시 설	공 사 기 간
		부 지 (㎡)	건 평 (㎡)	수 용 정 원		
금산군 청소년수련관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090	1,582	600	소공연장,다목적홀 체력단련실,전시실 등	'99.~ 2004
아산시 청소년수련관	아산시 온천동 1627	1,320	3,960	300	소극장,동아리실 실내체육관,상담실	03~ 2005
보령시청소년 문화의집	보령시 대천동 618-22외7	1,603	1,339	500	다목적홀,창작공방, 연습실,동아리방	03~ 2004
천안시청소년 문화의집	천안시 삼용동 332-11	606	661	200	문화체험, 만남소통, 네트워크, 공예공간등	04~ 2005
서산시청소년 문화의집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221-33	3,348	962	200	다목적홀, 음악활동실, 인터넷실, 동아리방등	04~ 2005
공주시청소년 문화의집	공주시 웅진동 433-7	7,318	749	200	인터넷부스, 락밴드실, 동아리연습실등	2004
부여 유스호스텔	부여군 동남리 9-9	1,565	1,754	214	숙박실, 대화정보실, 자가취사장등	02~ 2004

<민 간 - 12개소>

· 시 설 명 (신 청 인)	소 재 지	등록예정일	추 진 상 황
· 예산청소년수련원 (주)미 래 와 학 생 (전 성 희)	예산 광시 대리 산8-2	2005. 8. 31.	○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중 지연
· 서해안청소년수련의 집 (차 군 규)	서산 운산 원평 394-1	2004. 12. 31.	○강당시설완료 생활관건축 준비중
· 마달피 삼육청소년 수련원(신 계 훈)	금산 제원 산 124-1	2004. 9. 12.	○ 생활관, 화장실(샤워장), 체육활동장 설치완료. -기타 시설공사중
· 대천유스호스텔 상명학원(이 준 방)	보령 신흑 산 170-1	2006. 12. 31.	○ 기반시설 공사추진중 자금난 으로 지연
· 온양유스호스텔 (김 대 환)	아산 배방 수철리73-6	2004. 11. 30.	○ 기반공사중
· 금산청소년야영장 (남 진)	금산 제원 천내리산57-1	2004. .	○ 기반공사중
· 훼미리 충무청소년 수련원(하 권 홍)	아산 염치읍 동정리 4-1	2004. 12. 31.	○ 기존시설 활용 계획추진 준비중
· 천태산 산림휴양랜드 청소년야영장 (이 정 순)	금산 제원면 대산리 산2	2004. 12. 31.	○ 기반공사중
· 충무야영장 (김 동 하)	아산 선장면 대정리 164	2007. 2. 19.	○ 준비중
· 태안청소년수련원 (서 석 경)	태안 근흥면 마금리 산 261-1	2005. 3. 2.	○ 준비중
· 태안비치유스호스텔 (이 수 형)	태안 이원면 내리 산176	2005. 6. 30.	○ 준비중
· 아산충무청소년수련원 (이 재 왕)	아산 염치읍 백암리346-2	2005. 2. 30.	○ 준비중

제 22 장 수리시설 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저수지, 방조제,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예방

○ 유사시 신속한 복구·수습대책확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재난 위험설물 파악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취약시설물을 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정비 추진

○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농업기반공사) 공조체제 유지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2003년말 기준)

시 설 명	관 리 기 관			비 고
	계	시·군	농업기반공사	
총 계	1,343	993	350	
저 수 지 (소류지)	956	740	216	
방 조 제	263	247	16	
배 수 장	124	6	118	

3. 추진계획

예방대책

가. 재난위험요소 파악 관리철저

○ 시설물별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 점검(연 4회)

○ 위험시설물 책임자지정 및 관리카드화 중점 관리

○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

- 제당의 외관상 사면 활동 및 누수상태, 단면 유지 상태

· 불안전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응급조치 후 개보수사업 추진

- 여수토 방수로의 홍수 배제능력 및 파손 상태

· 홍수 예·경보시 예상 강우량을 고려 사전 방류

- 수문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정기점검 확인

○ 방조제 유지관리

- 제방단면 유지(사석 및 높이)상태

- 배수갑문 문비 작동 등 관리 상태

- 담수호 주변의 포락 상태

○ 배수시설 유지관리

- 배수장의 건물 상태(균열, 침하 등)

- 전동기 및 덤프 작동 상태, 전기누전 위험성(변압기 등)

- 흡, 배수구 오염물질 퇴적 상태

나.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점검 세부사항은『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2001. 6. 7)』따라 점검 및 관리

○ 시설물 관리자의 자체 점검 불가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점검 자격자 활용 점검 실시

○ 점검 시기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시 후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집행

다. 관리대상 시설 책임 관리제도 실시

○ 취약정도(C, D, E급)에 따라 시설물별로 관리책임기관이 책임자 지정 관리(5월이전)

○ 시설별로 관리 카드 작성 관리

- 위험요인, 정도, 안전점검에 대한 주요조치사항 기록 관리

라. 위험 시설물의 조치

○ 시설물 관리기관 최우선 예산반영 조치 ⇒ 개보수사업 실시

○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용중지 및 철거 등 법적 행정적 조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사용제한 등 보수조치)

마. 안전관리 교육 훈련 실시

○ 안전관리 교육 강화(각종 교육시 인명중시, 안전의식, 준법정신 교육)

○ 시설물 관리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내부 홍보

○ 민간단체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 대중 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

- 침수 예상 가구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 지정 숙지

복구대책

가. 신고 접수

○ 신속히 보고, 전파

○ 관련기관, 단체에 상황 전파 및 협조지원 요청

나. 응급 조치

○ 사상자 긴급 구조 활동 실시

- 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 침수지역 주민 대피 안내 및 구호대책 마련

○ 수용자 동요방지 등 재난 확산 예방조치

다. 수습 조치

○ 사고대책 본부 편성 운영

○ 조사반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조사 실시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기록 관리

○ 긴급 복구 실시

- 시설물별 재난사고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우선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재난 수습대책 수립 시행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 순위 체계확립 동원

  · 1단계 : 시·군 보유 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장비

  · 3단계 : 군 지원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활용

- 인접 시·군간에 장비지원 체제 확립

4. 자원동원 계획

○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보유 장비 및 자재동원

- 장비 : 302대(백호우151, 도쟈16, 트럭135)

- 자재 : 마대외 4종 1,586,226점

- 인력 : 기술인력 252명(토목168, 전기53, 기계19, 기타12)

5. 재정투자 계획

○ 가용재원을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에 최대한 투입

- 수리시설개보수 : 농업기반공사 관리 대단위시설 개보수사업

⇒ 45,057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농경지침수방지 및 재산보호 : 36,164백만원
- 방조제 개보수사업 : 농경지 및 재산보호 : 7,797백만원
- 지역특화사업 : 시군관리 소규모시설개보수 사업 : 3,774백만원

※ 가용예산 최대한 확보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

【비상연락 체계도】



제 23 장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 의의

○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의 적정성과 안전조치 상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건설공사장의 품질관리 및 체계적인 현장점검 부실시공방지

1. 추진방침

○ 건설 공사장 심층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부실공사 사전예방

○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조치

○ 건설공사 책임풍토 조성

2.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장

- 토목공사 41개 현장

  · 市, 郡 및 道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장

- 건축공사장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건축물)

※ 건축물 :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5천㎡이상의 철도역사, 여객터미널,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3. 추진계획

가. 예방대책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실시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안전점검기관이 안전 관리 계획에 의거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준공직전 안전점검실시 의무 이행조치

◇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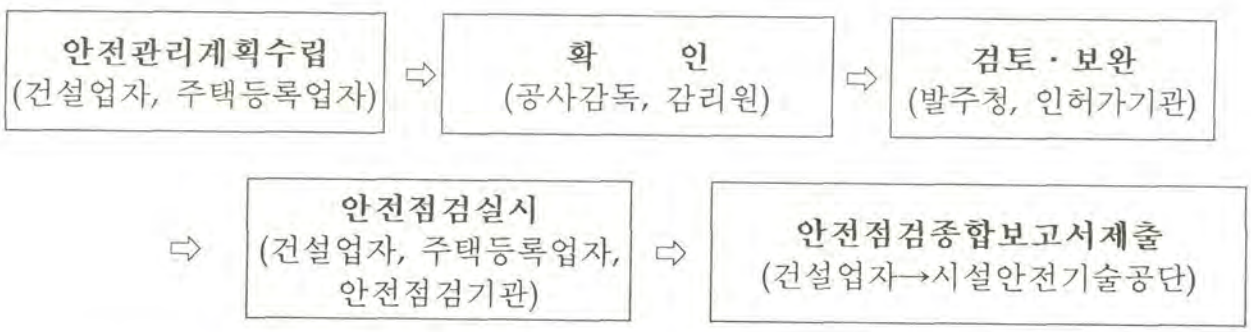

나. 대비대책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품질 보증계획 수립 시행
- 총공사비 500억이상 건설공사, 3만㎡이상 건축물 공사
- 토목공사 7개 현장, 건축공사 57개 현장

·市, 郡 및 道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장

○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실시

○ 품질보증 : 허가·인가·승인 및 공사발주를 한 행정기관

○ 품질시험 :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다. 대응대책

○ 건설공사 현장점검 부실공사 사전방지

- 안전계획 작성·변경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 ⇒ 공사감독자(감리원) 확인 ⇒ 발주자

○ 안전·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 시행

- 점검반 편성 운영(성실시공기획단) : 年間 4회 점검(분기별)

○ 점검대상 파악 및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중점점검 사항

- 공사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

○ 부실시공현장 행정제재 조치

- 공사중지, 시정조치, 부실시공 현장표지판 설치, 시공업체·설계업자·감리원 등 부실 벌점 부과

라. 복구대책

< 신고접수 대응 >

○ 신속한 보고체계

- 유관기관·단체·협회에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 사고 규모에 따라「사고대책본부」운영

· 市·郡 건설 또는 재난대책업무 관련과에 설치

< 응급조치 >

○ 사고수습 현장지휘소 설치(市·郡 관련부서)

- 인명구조 및 사상자 치료
- 사고지역 통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고확산대비 안전조치

< 현장 수습 및 복구조치 >

-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
- 市·郡 건설 및 재난대책 관련과
- 사망자 시신안치관리
- 사상자 유족과 보상협의
- 안전진단 복구방법·공법확정
- 항구복구(市·郡 건설업무 관련과)

4. 자원동원계획

○ 건설현장 자재, 장비, 인력동원 및 안전진단

- 市·郡, 道, 민간 건설업체 보유장비 지원협조

○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긴급 복구체제 확립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비 고
대한건설협회	권 홍 사	02-3485-8212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	박 성 배	042-486-9100	
대한전문건설협회	정 장 율	02-3284-1010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	이 병 권	042-472-2558	

【비상연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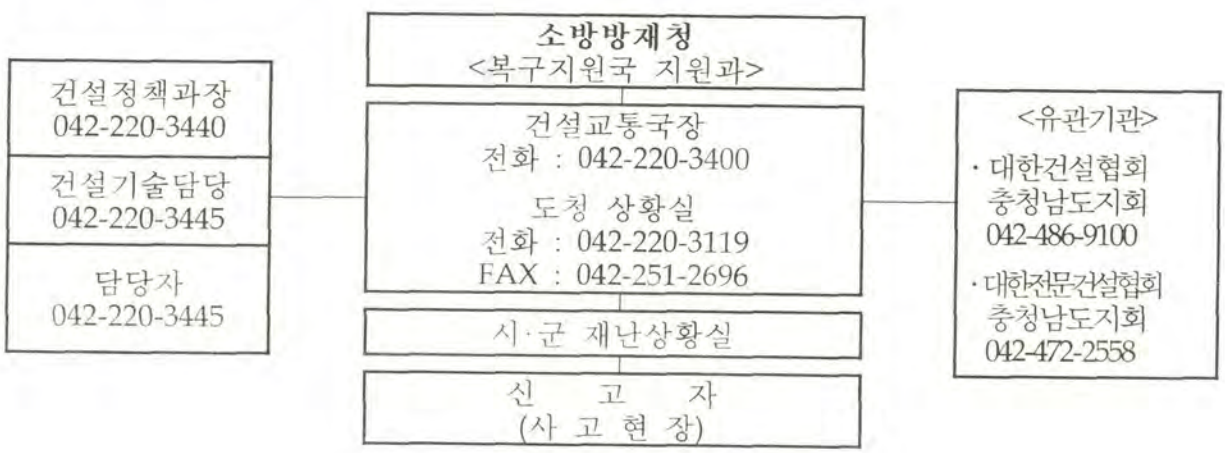

제 4 편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제 1 장 충청남도 교육청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적 및 방침

가. 목적

○ 자연재난 및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재난관리 단계별 표준행동절차 마련, 유관 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재난대비 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체제 확립, 긴급구조 및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나. 방침

○ 단계별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예방대책	→	대비대책	→	수습대책	→	복구대책
○안전교육 활성화 ○사전점검 : 시설물안전점검, 소방점검 등 ○위험시설 특별관리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등		○평상시 및 비상시 근무체제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가입		○자체복구계획수립 ○긴급구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조요청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조사단구성·운영 ○재난피해 배상(보상) 대책 수립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재난에 대한 지원대책수립 및 시설 유형별 관리대책 수립

○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투자계획 병행

○ 국가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난관리계획 수립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교육시설의 노후화, 대형화, 복합화에 따라 재난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재난관리업무의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 및 재난업무의 기피 등으로 전반적인 재난관리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음.

○ 최근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설해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재난관리 중점사항

- 일상업무와 연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강화하며, 재난발생시 해당 실(과)에서 구조·수습·복구 등 대책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강화, 안전우려시설의 응급조치 및 해소
-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최우선적 확보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 · 재난에 강한 각종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확보
  - · 재난예방, 응급, 복구의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재난예방 산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확립
  - ·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강화, 방재인력의 전문화
- 신속한 응급대응대책의 강화
  - · 신속·정확한 피해규모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필요한 통신수단 강화
  - ·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개량복구 대책의 확립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개량복구 체계 확립·시행

· 복구비 지원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방재집행 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단계

가. 안전교육 활성화로 안전 불감증 퇴치

○ 학교안전교육 기본방침

-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구분하여 추진
- 지역실정을 감안한 학교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 유치원아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사례중심의 교원연수 강화
- 가정통신문 및 유인물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연간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안전교육 내용 반영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철저

·행사 및 참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 각종 재난대비 교육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생활화 교육

· 각종 특별활동 시간에 시청각자료, 재난 교내방송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재난 대처 요령 등의 교육 실시

· 재난별 행동요령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홍보

· 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재난 대비 교육 및 견학기회 확대

- 교직원에 대한 안전전문교육 강화

· 재난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직무교육 강화

·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 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 설치·운영

- 안전교육 자료 발간·보급

○ 방재교육 및 훈련 강화

-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에 풍수해,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관련 내용을 반영, 교육실시

- 원아, 학생 및 교직원 방재 교육·훈련 강화

나. 안전점검 강화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강화 : 수련원 및 야영장

- 행정제도 개선 및 지도 강화

-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시 행정지도 및 확인점검 시행

○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해빙기, 동절기) 대상에 포함하여 학교별로 자체 점검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화학약품·폐기물·방사성 물질 관리실태 등 점검

○ 기숙사 등 안전관리 강화

- 기숙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실시

- 학생집단수용시설에는 반드시 감수인(사감) 선임

- 전기시설, 소방시설, 각종 안전사고 감지시설 수시 점검 및 문제 발생시 즉시 개선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 특히, 재난위험시설(D급 및 E급) 에 대한 특별안전대책 강구
- 학교시설물 침수에 따른 누전·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침수·붕괴·산사태 등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해 요인 사전 제거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유치원 안전점검 실시 : 단위 유치원별 점검
  · 효율적인 안전점검 방안 마련
  · 안전 점검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성·운영
  · 유치원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시 및 노후시설 개·보수 철저
  · 월 1회 안전교육활동 실시 및 자체 안전점검의 날(매달 4일)운영

○ 학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지역교육청의 학원지도 방문시, 화재 예방 등 학원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 지역교육청의 기숙학원에 대한 자체 안전실태 점검 실시

○ 재난발생 요인별 중점 점검 및 예방대책 강구
- 집중호우 및 장마철, 폭설, 지진에는 산사태로 인한 건물붕괴, 건물침하로 인한 균열, 배수불량에 따른 지하실 등 건물침수가 주요 피해
- 태풍시에는 강재·판넬지붕, 경량철골조(조립), 창호, 외벽, 이동통로관 파손·붕괴 빈발

☞ 홍수 및 태풍 내습전 단계별 대비책 강구하고 과거의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학교 신·증축 공사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방지책 강구 지시

○ 사전 점검결과 재난방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각급학교 적극 지원

- 재난요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난방지책 강구 요청

○ 안전점검 반 편성 운영

- 교육청의 전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 구성
- 관할 소방서, 가스·전기 안전공사 및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점검

○ 재난위험시설(D·E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관리계획 및 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이 해소 될 때까지 전담자 지정·관리

<재난위험시설 지정 절차>

①시설물이상발견 → ②교육시설안전점검기동반점검 → ③재난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정(정밀안전진단 필요여부포함) → ④재난위험시설지정 → ⑤응급조치및대책수립→ ⑥교육부 보고

○ 지도점검반 운영

-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연2회 : 해빙기, 동절기)

○ 특별 안전점검반 구성·운영

- 사안 발생시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하여 점검반 구성 운영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지원에 의한 합동점검 추진

※ 시설물 등급별 현황('04년도 동절기 기준)

구 분	총보유 건물	관리 대상 건물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시설		
			E	D	소계	C	B	A	소계
초	2,836				0	4	1,053	1,779	2,832
중	905				0	1	298	606	904
고	1,049				0	7	116	926	1,042
특수	24				0		1	23	24
기관	204				0		47	157	204
계	5,018	0	0	0	0	12	1,515	3,491	5,006
비율(%)	100	(0.0)	(0.0)	(0.0)	(0.00)	(0.24)	(30.19)	(69.57)	(99.76)

※ 유치원은 향후 포함 검토

2. 대비대책

가.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

○ 재난상황에 따라 평시 또는 비상시로 구분하여 상황근무체제 운영

- 평시 주간에는 해당과(042-580-7286)로, 야간에는 당직실(042-580-7100)로 연락
- 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조직 : 재난대책본부 조직과 동일

○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비상연락망을 정비

- 유관기관 현황

유 관 기 관	전 화 번 호
충청남도재난대책본부	220-3642
충청남도종합상황실	220-3573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254-21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670-3321
육군 제2162부대 군수처	829-6402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계	257-7887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 배전보수과	620-2266
한국통신충남사업본부 재난상황실	485-7361
충청체신청 정보통신과	611-1310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 총무과	254-7101
대전 K B S	470-7100
대전 M B C	330-3000
T J B	281-1101

○ 재난대책본부 및 지역교육청 비상연락망 체계

나. 재난대비 연습계획

○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

○ 자체적으로는 을지훈련 과제중 재난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병행실시 함.

다. 유치원아 및 학생 안전 보호조치

○ 원아 및 학생 보호조치

- 기상상황을 감안, 지역실정과 학교(원)장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1단계 : 수업단축, 2단계 : 휴교조치)보호조치로 인명피해 예방
- 학교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 관리 및 내진대책 강화
- 철저한 사전점검 · 예방으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

3. 대응 단계

가.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재난발생 발견자, 시설물 등 관리책임자 → 지역교육청,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및 경찰관서

○ 지역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재난종합상황실) →교육부

-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현장출동 및 응원요청 조치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 지원체제 구축

○ 재난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대, 긴급구조통제단, 군부대 및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

○ "지방재난대책본부"와 긴밀한 연락 ·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상황파악 및 전파

○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 후송과 치료체계 구축

다. 응급구조·수습대책 추진

○ 재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지역긴급구조통제단 등에 구조요청

○ 보건교사 등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 중앙긴급구조본부 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의 구조업무를 지원

- 인근학교에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통학버스 등을 이용한 환자후송 지원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

○ 기상특보별 준비·경계·비상 단계별 상황대처 표준행동요령(SOP)을 작성하여 비치 활용 [붙임5참조]

○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지진 경계상황 돌입시에는 평소 학교직원이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당직근무 실시 명령 발령

○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 적시 지원 및 대처

-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 최소화

○ 비상단계가 예상되거나 실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각급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단축 또는 임시 휴교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붙임1】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4. 복구 단계

가. 시설 및 인력지원

○ 폐교시설, 유휴 학교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야영장, 수련원)을 이용한 이재민 수용소 설치·운영

○ 인근 학교시설을 이용한 식수 및 급식지원

○ 피해 발생정도에 따라 복구 인력 지원

- 피해지역 공무원 차출 및 대학생 자원 봉사단 구성

나.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능력이 있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

○ 재난발생시 『합동조사단』을 구성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활동 실시

다. 재난피해 배상(보상) 대책 수립

○ 피해상황에 따른 신속한 보상체계 구축

-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재난 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을 기초로 하여 재난피해 배상(보상)액 확정

○ 피해자 대표와 보상 협의 추진

- 피해자 대표와 배상(보상)액, 배상(보상)절차, 배상(보상)기한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협의

○ 배상(보상)금 지급·정산

※ 책임자를 규명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라.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재난발생시 피해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예방 대책과 소관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 관련보험 가입(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가입)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

마. 『재난대책반』 구성 운영

○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 및 피해재발 방지 대책

-복구비 지원 등 방재업무 집행

○ 재난발생시 비상수업대책 강구 및 피해가구 자녀의 학비 지원

-농작물 피해 및 양식시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 자녀(중고생)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학비 차등 지원(면제)

· 이재민에 대한 간접지원사업(수업료 면제)임을 감안 지역내 재난발생시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

· 지원 방법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을 적용하여 집계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토록 관계부처에 협조

· 수혜 대상자의 범위

경지면적 5ha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10톤 미만 어선 및 소규모 수산물 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피해를 입은 농·축·어가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기준 【※( )안은 1ha미만의 경작자의 경우에 적용】

구 분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2ha미만	2ha이상~3ha미만	3ha이상~5ha미만
피해정도	30%이상~50%미만 피해 농어가	3개월분 (6개월분)	-	-
	50%이상~80%미만 피해 농어가	6개월분	3개월분	-
	80%이상 피해 농어가	6개월분	6개월분	3개월분

제 3 절 학교시설물 관리 및 재정·투자대책

1.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시설물 관리

가. 재난및안전관리법

○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재난위험시설 발생시 예산확보(예비비 활용)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 상

-1종 시설물 : 연면적 50,000㎡이상, 21층 이상

-2종 시설물 : 연면적 30,000㎡이상, 16층 이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 3년 1회 이상(건축물)

-긴급점검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결과 재난예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수시), 10년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 1회 이상 실시

다. 기타법령

대 상	명 칭	점검기관	주 기	관련법규
○청소년 수련시설	- 자체점검	- 소관 기관별	-월 1회이상	-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전기시설	- 정기검사	-전기안전공사	-2~3년에 1회	- 전기사업법
○엘리베이터	- 정기검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년 1회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소방시설	- 자체점검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 시설관리 책임기관 - 화재보험 협회등	- 년1회 (종합정밀진단) (작동기능점검)	- 소방법제32조 - 화재로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

[붙임1]

1.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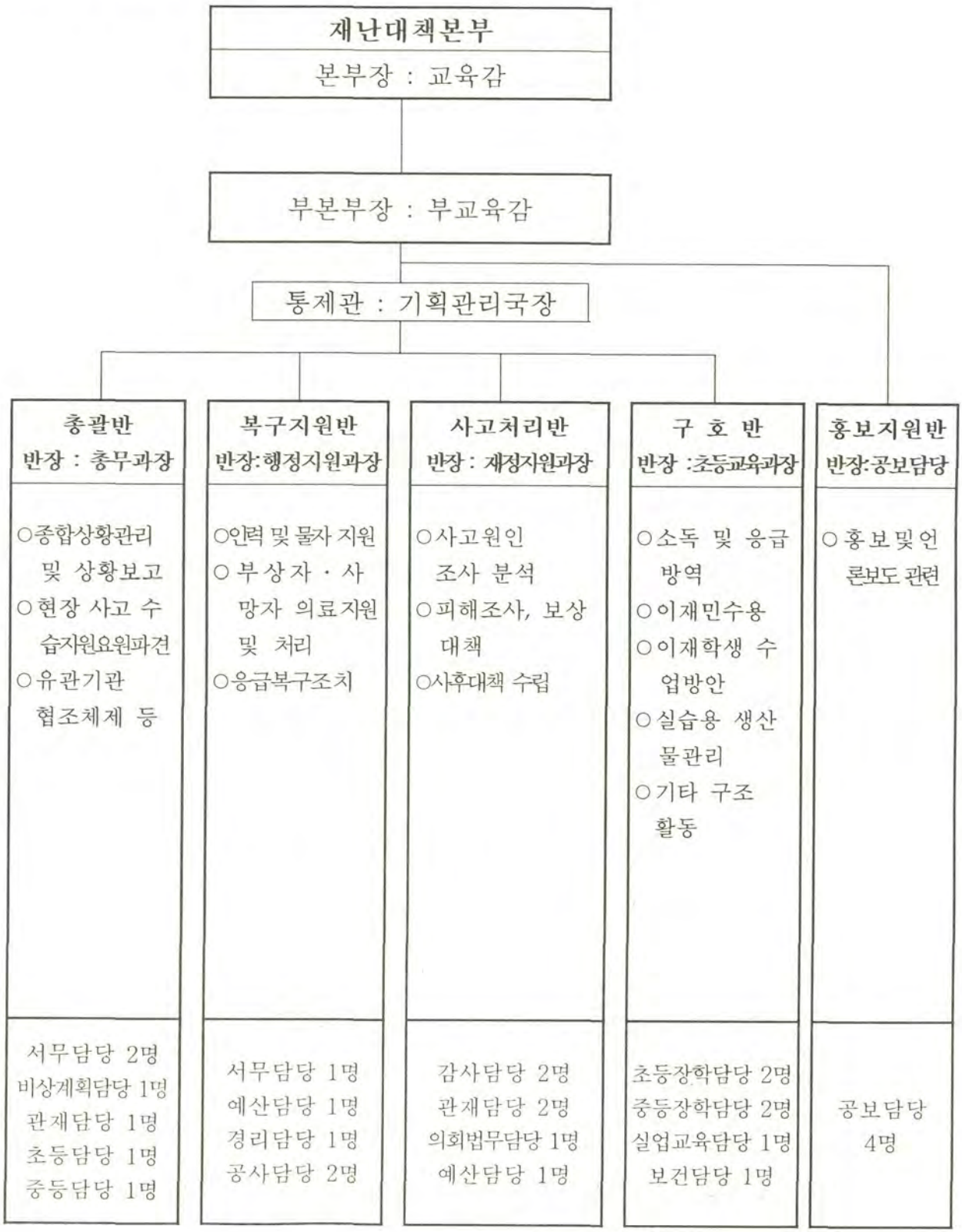

[붙임2]

1.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대책반 구성·운영

○ 기관장 통솔하에 방재대책 추진 책임관리체제 구축

- 재난대책 주무부서 과장급이상 간부를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책임성있게 재난대책 업무 추진
- 관련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과 대책 추진

○ 준비·경계·비상 등 **상황단계별 대비책을 사전 마련**하고 실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보고 및 적시 지원·대처체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난대책반 구성·운영 : [붙임3] 참조*

2. 단계별 대처내용

가. 1단계(준비체제) : 각종 「주의보」 발령시

○ **비상근무체제**

- 근무시간 중 : 방재업무 담당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00~22:00)
  - 본청 : 재정지원과 직원 2인 1조 교대 근무
  - 소속기관/지역교육청/각급학교 - 자체계획에 의거 근무

○ **주요 대처내용**

- 호우·태풍 동향 파악 및 전파,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 태세돌입 준비,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나. 2단계(경계체제) : 일부지역 각종 「경보」 발령시

○ 해당지역은 기관장 지휘하에 전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방재업무 담당자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00~24:00)
  · 본청 : 재정지원과와 교육시설과 각 2명씩 4명, 1개조 교대근무
  · 소속기관/지역교육청/각급학교 - 자체계획에 의거 근무

○ 주요 대처내용

- 홍수·태풍 영향권내 해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 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조치

다. 3단계(비상체제) : 전국적인 호우 및 태풍 등 재난「경보」발령시

○ 해당지역은 기관장 지휘하에 전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방재업무 관련부서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00~09:00)
  · 본청 : 재정지원과, 교육시설과 각 2명씩 4명, 1개조 교대근무
  · 직속기관/지역교육청/각급학교 - 자체계획에 의거 근무
  ※ 재난대책본부(도청상황실) 파견 : 재정지원과(1명)

○ 주요 대처내용

- 경보 및 실정에 따라 재난대책 신속 추진
- 2단계 조치와 동일

○ 근무자는 소관의 각급 교육기관별 재난상황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근무종료일 06:00까지 보고

[붙임 3]

< 재난대책반 구성 · 운영>

1.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단계 : 준비체제 (주의보시)	○ 근무기준 : 「태풍 등 재난관련 주의보」 발령시 ○ 근무대상 - 상황실장 : 관재담당사무관 - 관재담당직원, 토목직원 각1명(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 : 00 ~ 22 : 00	
2단계 : 경계체제 (경보시)	○ 근무기준 : 「태풍 등 재난관련 경보」 발령시 ○ 근무대상 - 상황실장 : 재정지원과장 - 관재담당직원 2명, 토목직원 1명, 건축담당 직원 1명, 서무담당직원 1명, 초 · 중등 장학사 각각1명 ○ 근무시간 : 09 : 00 ~ 24 : 00까지	
3단계 : 비상체제 (전국적 재난시)	○ 근무기준 : 전국 대규모 재난 발생시 ○ 근무대상 : 재난대책본부 3개반 각 반별로 1/3교대 근무 - 상황실장 : 기획관리국장 ○ 근무시간 : 09 : 00 ~ 익일 09 : 00까지	

※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비 고
공통사항	○보고체계 : 담당자→관재담당사무관→과장→국관→부교육감→교육감 ※ 긴급상황시 : 담당자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관재담당사무관께 즉보 ○근무지 : 재정지원과, 교육시설과 ○비상근무체제 변경시 전일 근무조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근무교대 요령 - 평일 :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 보 고 요 령 >

○ 교육감, 부교육감 댁에 FAX 보고 또는 자료 제출(07 : 00)
○ 기타 중요상황 보고 : 수시·FAX 보고 또는 자료 제출
○ 충남도청 재난상황실에 처리상황 알림
- 치수방재과 : FAX : 251~2671, 전화 : 251~2406, 문용성

[붙임 4]

1. 행정사항

○ 지역교육청·각급 학교 등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각급 기관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시설과,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부서에서는 다음내용을 참고한 세부추진 계획수립·시행

구 분	소관 기관
재정지원정과	- 재난대책 관련 업무 총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학교
교육시설과	- 학교시설 관련 업무 총괄 - 「2005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지침」(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계획수립·시행
초·중등교육과	- 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어린이 안전대책 계획수립·시행 - 학교안전교육 계획수립·시행(지역실정 감안) - 사례중심의 교원연수 강화 - 방재교육 및 훈련강화
평생교육체육과	- 학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 수련원 및 야영장 안전관리

- 재난발생시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 상황을 수합하여 재정지원과에 즉시 보고 및 신속 대응 조치 FAX(042)585-6750 전화(042)580-7286

·재난발생보고[붙임6]가 완료되면 재난대장[붙임7]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송부

[붙임5]

기상특보별 상황대처 표준행동요령

호우·태풍시

○ 기상특보상황 계속청취 사태대비에 만전

- 가족 장거리 출타억제
- 차량운전자 감속운행, 자가운전 삼가
- 일반보행자 안전사고 주의(벼락, 풍해, 표류, 익사 등)
- 전기용품 취급주의

○ 가옥 및 주변위험시설 상태 재점검 안전조치(특히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

○ 위험지역 접근금지

- 하천변, 계곡, 방파제, 철탑, 고압전선, 노목, 웅덩이, 축대, 담장 등

○ 재해대비 행동요령 자체홍보(마을 스피커, 임시반상회 등)

○ 해수욕장, 야영 및 등산객은 기상특보 발효와 동시에 서둘러 철수

- 귀가, 하산대피 또는 긴급피난(산장 등 안전지대)

대설·폭풍설시

○ 자가 및 주변 위험요소 사전보강 및 제거

- 노후가옥, 축대, 담장 등

○ 차량운전자는 대설대비 장비휴대

- 체인, 스노우타이어, 모래주머니, 삽, 쇠사슬, 밧줄, 손전등 등

○ 비닐하우스, 비닐터널 등 보강

- 받침대 등 지주목 설치

- 배드고정 보호망 설치
- 짚가마니로 덮어씌우기

○ 고립지역 및 산간 단독가옥의 경우에는 대피 및 비상연락 수단강구
- 전화, 호루라기, 연기 등 이용

○ 어선 및 선박의 경우에는 충돌방지용 물자의 부착 및 확보
- 고무타이어, 로프, 어장덮개 등

해 일 발 생 시

○ 사태발생시 경보전파 및 보고

○ 수방대원 및 민방위대원 소집 응급조치

○ 주민은 응급복구 자진참여

○ 피해지역내 주민 안전지대로 대피 수용

○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 가재도구 및 가축 등 안전지대 이송

○ 배수로 긴급설치 장기침수 방지

○ 배수지역부터 현장 정리

○ 피해상황 파악보고

○ 소형선박 육지인양 결박

○ 노약자, 어린이 대피준비 및 저지대 해변 주민 안전지대 대피

○ 제반공사 중지

○ 주민 개별행동금지

지 진 발 생 시

○ 실내의 경우 견고한 책상, 건물중앙 벽쪽 또는 기둥 등에 의지하고 상황을 관찰·판단

○ 천장으로부터의 낙하물 유리 파편 등에 주의,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출구나 층계의 안전사고에 유의

○ 자동차, 승강기 등은 즉시 운행중지

○ 산간 축대, 절벽 인근주민 긴급대피

○ 난로 등은 불을 끄고 가스밸브 폐쇄, 가전제품 전원차단

○ 농촌지역은 평야지대, 도시지역은 시설물이 없는 공지, 해안지역은 육지의 높은 지대로 대피

○ 유도활동은 지역, 직장민방위대별로 실시

○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며 도보로 대피

○ 지하철이나 기차 탑승시 손잡이 등 고정물체를 잡고 지하철의 경우 감전사고에 유의

○ 인명구조와 부상자 응급처치

화 재 발 생 시

○ 신속한 화재신고(신속 정확하게 119 전화신고)

○ 소방설비의 사전확보 및 사전방법 숙지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 쿨러 등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기, 전기화재경보기

○ 화재발생 초기의 조치사항

- 주변에 있는 물이나 소화기 등을 이용 신속히 진화 조치한다.
- 전기화재라 판단되면 개폐기 등을 내려 전기흐름을 차단한다.
- 가스화재의 경우에는 가스용 밸브 또는 중간밸브 등을 잠근다.

○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 화재시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경우 문을 열지 말 것
- 실내에 연기가 차면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두꺼운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 피부를 싼다.
- 불길의 반대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이나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를 찾아 대피한다.
- 피난설비의 사전확보 및 사용요령 숙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매듭로프 등), 완강기, 줄사다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붙임6]

재 난 상 황 보 고

2005. . .

1. 재난개요

1) 재난원인 :

2) 재난기간 :

3) 재난지역 :

4) 강우(강설)량 또는 지진진도 :

2. 피해상황

1) 인명피해

행정구역명	학교급별	설립별	학교명	학년	성 명	피해구분	직접적피해		응급조치사항	비고
							발생일시	피해원인		

2) 시설피해

행정구역명	학교급별	설립별	학교명	피해내용					직접적피해		복구대책		비고
				시설명	구조	피해정도	피해량	피해액	발생일시	피해원인	복구소요액	복구계획	

3)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행 정 구역명	수 용 기 관 (학교)	수용 일시	수용시설		수 용 사 항				수용 학교	비고
			시설명	실수	수용예 정기간	수 용 세대주	수용 인원	수용 이유		

4) 학교임시 휴업 및 휴교현황

행 정 구역명	학교명	학 교 현 황				휴업 또는 휴교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기 간	사 유	

5) 기타피해

3. 응급조치사항

1) 조사사항

2) 동원사항

○ 인력 : 명(군 경 소방 공무원 기타)

○ 장비 : 대

4. 지원 및 협조사항

[붙임7]

(전면)

재 난 대 장

확인자 : 직 성명 (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조사자 중 앙 : 직 성명 (인)

시 도 : 직 성명 (인)

1. 피해상황

<table>
<tr><td rowspan="5">피해사진
(7.5cm×12.5cm)</td><td>강우(강설)량</td><td>년 월 일 시-
년월일시(m/m)</td><td>피 해
시설명</td><td>피해물량</td><td>피해액</td></tr>
<tr><td>발생일시</td><td></td><td></td><td></td><td>천원</td></tr>
<tr><td>발생원인</td><td></td><td></td><td></td><td></td></tr>
<tr><td>발생지역</td><td></td><td></td><td></td><td></td></tr>
<tr><td>총피해액</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진설명:
(년 월 일 시 촬영)
①피해위치도
(1:5,000 -50,000)
②피해상황 개요도
(표준 단면도)

※피해현황도(투명지상)를 첨부할것</td><td rowspan="2">응 급
조 치</td><td colspan="2">투입자재</td><td colspan="2">투입인원</td><td colspan="2">투입장비</td></tr>
<tr><td>자재명</td><td>수량</td><td>소 속
(직업)명</td><td>인원</td><td>장비명</td><td>대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피 해
복 구
효 과</td><td colspan="6">○면적 정보
○가옥 동

※침수빈도 및 상습여부 기재</td></tr>
</table>

(후면)

2. 복구상황

<table>
<tr><th colspan="3">복 구 계 획</th><th colspan="2">복 구 사 업 추 진 현 황</th></tr>
<tr><td>공종별</td><td>용 량</td><td>복 구 비
산출명세</td><td rowspan="2">1. 공사명
(노선 및 하천명)

2. 위치 :

3. 복구상황

가. 예산

(1)설계액

(2)도급액

(3)관급자재대

(4)기타

나. 공사개요

다. 주요자재
시멘트 돌망태
철근 기타
라. 시공자

마. 감리자</td><td rowspan="2">4. 공사발주현황

가.계약일:

나.착공일:

다.준공예정일:

라.준공일:

5.담당자 소속,직,성명

가.설계자

나.감독자

다.준공검사자

6. 특기사항</td></tr>
<tr><td colspan="3">※ 특기사항</td></tr>
</table>

제 2 장 제32보병사단

제 1 절 목 적

○ 폭설피해지역 예비군 동원 대민지원에 따른 지휘·통제, 통신, 수송, 급식지원에 대한 지침 제공

제 2 절 상급부대 지침

○ 행정관서 요청시 부대운용, 지역여건 고려 예비군 대미지원 투입

※ 대민지원시 사전 지휘계통 보고, 승인후 실시

○ 대민지원은 폭설피해가 과다하여 조기복구가 제한되는 지역위주

○ 지자체와 협조 전투근무지원대책 강구 (수송, 급식, 세면 등)

※ 중식은 도시락 급식업체 이용

○ 예비군훈련을 대민지원투입으로 대체됨을 반드시 홍보(개인별)

○ 대민지원 예비군 통제를 위한 책임자 임명 : 현역, 예비군지휘관

※ 입소시 긴소매 체육복 지참홍보

○ 대민지원시 복장 통일 : 하의(전투복), 상의(긴소매 체육복), 전투모 착용

※ 입소시 긴소매 체육복 지참홍보

○ 예비군이 개인차량을 이용 대민지원장소로 집결하는 행위 금지

※ 대대예비군 훈련장에 지별하여 인원점검후 책임간부 책임하 차량인솔

○ 작업전 위험예지교육 반드시 실시

※ 자원농가로부터 취식물 요구행위 근절(특히, 음주행위 절대금지)

○ 지휘관의 솔선수범으로 대군위상 격상/지역주민 고통에 동참

대민지원 안전통제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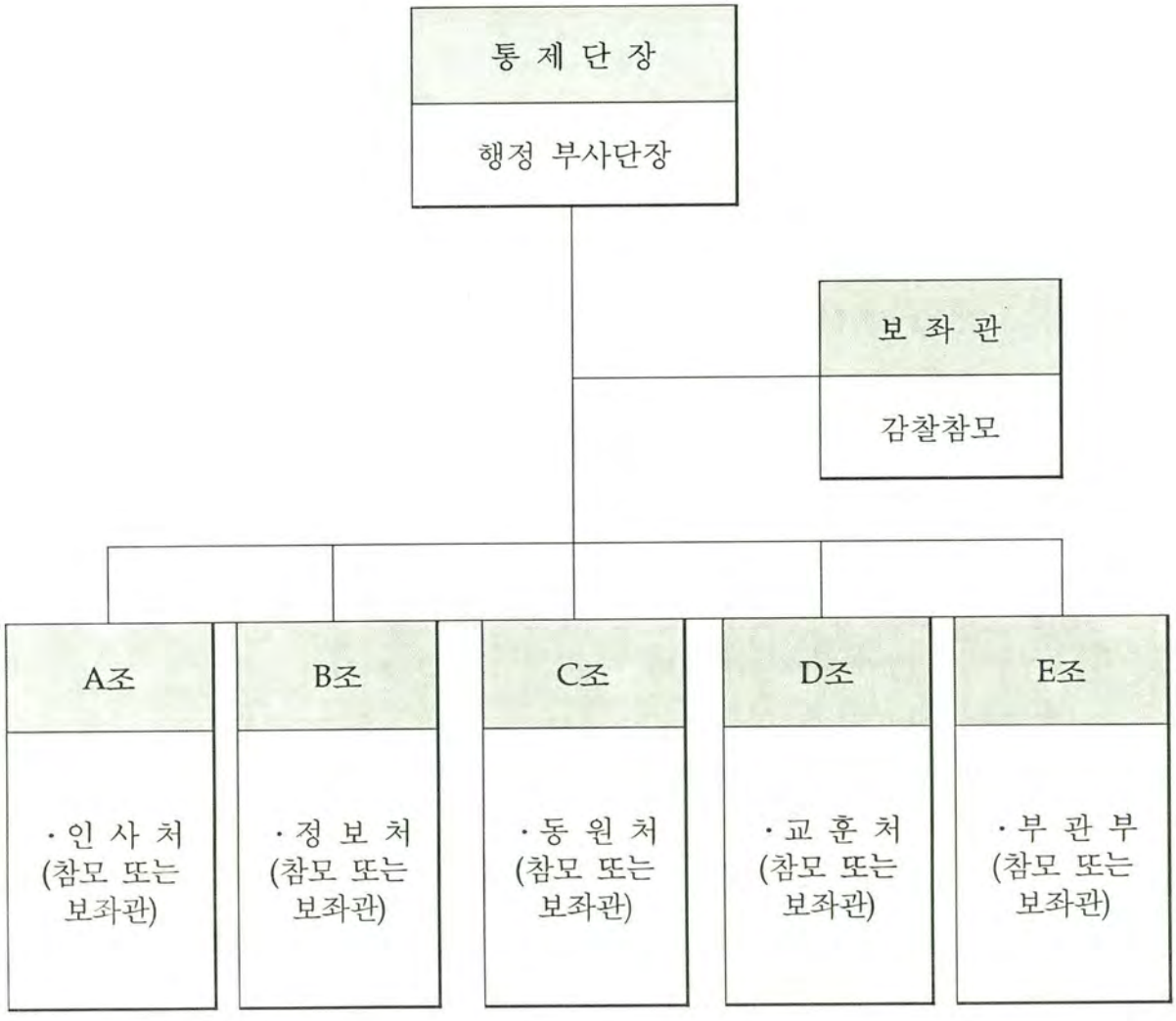

제 3 장 충남지방경찰청

제 1 절 안전관리 중점 추진 목표

○ 효율적인 재해재난관리체제 확립

○ 체계적인 사고예방과 수습대책 추진

○ 재난위험시설·지역 예방순찰 강화

○ 재난관리부대 교육 철저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제 2 절 주요시책 추진 사항

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활동

가. 경찰소관 안전사고 대책

○ 대형폭발(가스, 폭발물) 관련 → 생활안전

○ 대형 교통사고 등 → 교통

○ 대테러사건(인질, 특정시설 폭파, 독가스살포) → 경비

나. 중앙부처가 별도 지정한 대형안전사고

○ 주무부처에서 협조요청 시 경찰은 다음사항 지원

-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 생활안전
- 구난활동 초동조치 : 종합상황실
- 사고현장 경비 등 후속조치 : 경비

다. 일반 안전사고 예방활동

○ 지구대 외근순찰 등 업무수행 중, 문제점 발견시

- 경찰소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고, 주무기능 책임하 조치
-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 후 조치토록 촉구

2. 재해재난예방 대책

가. 피해 우려지역 중점 순찰·점검

○ 상습침수지역, 노후건물축대, 공사장 등 붕괴우려 취약개소에 대한 피해예방 집중순찰 강화

○ 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 등 통보·조치유도

○ 계곡범람·산사태 등 기상상황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 야영객·주민 대피유도

- 경찰의 대피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고지
- 경고에 불응시 형사입건·즉심회부·통고처분 등 적극적인 강제권행사 및 강제대피실시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

나. 재해대비 출동태세 및 장비 점검

○ 재난관리부대 등 상설부대 출동태세 확립

○ 출동요소별 보유장비 사전점검 및 사용안전수칙 등 숙지

다. 치안상황실 중심, 유관기관간 협조, 통신체제 구축

○ 기관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 등 연락망 확보·비치

3. 재난 발생시 수습대책

가. 신속한 지휘보고체제 확립

○ 사고접수 즉시 제1보·제2보 순으로 신속한 보고·통보

○ 재해대책상황반 운용, 24시간 상황유지

○ 필요시 교통·방범 등 기능별 합동, 협조체제 구축

○ 지역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처리

○ 상황전파 및 초동출동태세 확립

나. 긴급 현장출동으로 사상자 구호 등 초동조치

○ 지휘관 현장지휘

○ 사상자 구호 등 현장조치 필요시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

○ 상황에 따라 응급환자 등 헬기 지원체제 구축

○ 112순찰차 등 경찰장비 100% 활용 사상자 신속 구호

○ 사고현장 안전조치로 제2의 사고예방

○ 관계기관 협조·지원체제 구축 부상자 신속 후송

다. 재해현장 방범활동

○ 재해현장 주변 도보·112순찰 활동으로 주민 불안 해소

○ 112순찰차를 이용한 선무방송으로 시민동요 방지

○ 재해현장 입구 등 주요지점 관계자 외 출입통제

○ 자원봉사자, 자율방범대 등 협력체제 구축

○ 복구지원 경력 운용시 방범활동 강화

라. 재난관리 긴급출동부대 지정·운용

○ 권역별 지정 운용으로 효율성 제고

- 708중대(1권역) : 공주, 조치원, 논산, 부여, 서천, 금산
- 2중대(2권역) : 천안, 서산, 보령, 아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청양

※ 지정기준 : 충남전역을 2개 권역(남·북)으로 분할지정

- 112타격대(19개) : 경찰서별 긴급출동 부대

○ 운용방침

- 재난발생시 해당 경찰서 112타격대가 우선 출동대처하고 재난관리 긴급출동부대 추가 투입
- 소속중대가 없는 경찰서는 재난관리부대 우선 투입 대처

마. 재난 발생시 현장상황반 및 경찰정보센타 운용

○ 현장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정보지원센타 설치·운영, 피해자 유가족 등 필요정보 제공
- 시·군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설치·운용

- 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인근에 재난관리 활동을 총괄 지휘할 현장 지휘본부 설치
- 재난발생 지역 최기 경찰관서 또는 진압용 지휘차량 활용

※ 지휘차량 2대 운영 (경찰청 1, 천안서 1) 관할경찰서장 상시 현장 임장하여 재난수습 등 지휘

※ 현장 지휘관

· 일반 재난시 관할경찰서장

· 대규모 재난시 지방청장 또는 차장

제 3 절 재난 상황관리 체계

재난상황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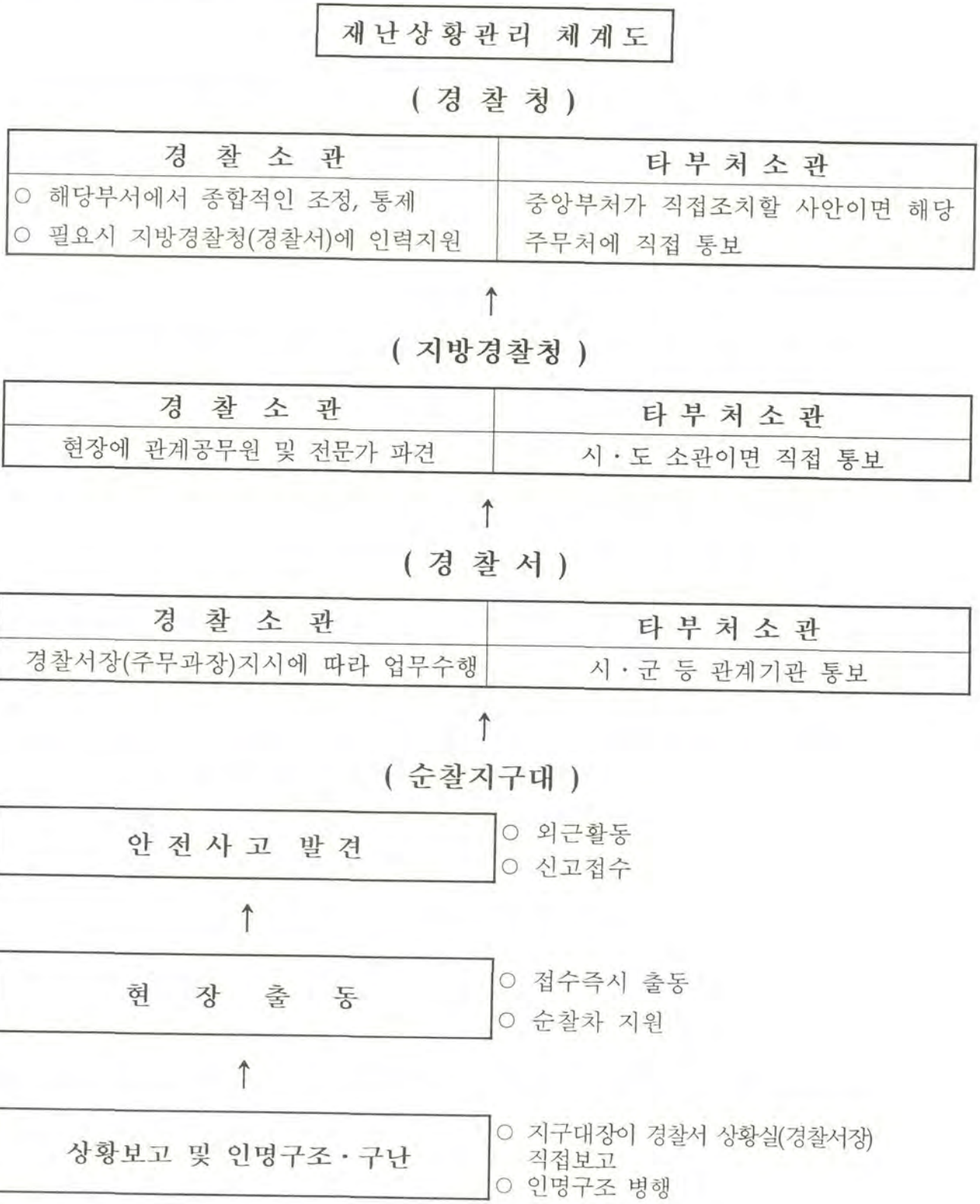

제 4 장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제 1 절 목 적

○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산림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 2 절 방 침

○ 원인별·시기별 파급효과가 높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 한발 앞선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 산불방지 인력의 확충 및 체계적 운영

○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제 3 절 재난대상시설현황

○ 산림면적 : 산림청소관 국유림 94,012ha

※ 충청지역 산림면적 971,014ha의 9.7% 차지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 173개소, 52,866ha

○ 관리대상 등산로 현황 : 22개소, 141.8km

제 4 절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기관 : 중부지방산림관리청(충주·보은·단양·부여관리소)
- 설치기간 : 2.1~5.15(봄철), 11.1~12.15(가을철)

※ 기상여건에 따라 신축 운영

○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활동 추진

-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산불홍보 추진
-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배포로 시각적 홍보효과 거양
- 휴대폰 통화연결음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및 승려산불진화대 조직 등 특색있는 산불방지 활동 지속 전개

○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 전개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강화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단계적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 (입산통제 : 52,866ha, 등산로 폐쇄 : 14개소)

·산불취약지역 전지역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 화기물 반입단속 강화

-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적극 추진

·사업배경 및 목적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소각사업은 2월말까지 완결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공익요원 등 가용자원 적극 활용

- 토·일요일, 명절, 연휴 등에 대한 특별경계 강화

·토·일요일, 연휴에는 산불조심 캠페인 및 사전예고적 기동단속 실시

·설날 및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를 집중 단속

·3.1절, 청명·한식일은 입산자·성묘객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

○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의 확립

- 조기감시체계 구축

·산불감시원 확충 및 산불감시탑, 산불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에 감시 인력 고정 배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용요원 지정으로 즉각 발견체계 구축

· 무선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감시 활동 전개

· 지역 민간 경비행기 단체 등을 활용하여 공중감시 및 계도활동 실시

· 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 해병전우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 및 신고활동 촉진

· 생활주변 산림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자원봉사요원 제도의 도입하고 활성화 추진

○ 초동진화태세의 확립

- 산불방지 인력, 조직, 장비의 정비

· 지상진화대 및 보조진화대 조직의 정비

· 정예화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직 편성

· 진화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 철저

- 체계적인 진화대 운영

· 진화인력은 진화복과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 교육훈련, 산불예방, 진화 등 내실있는 운영계획 수립 · 추진

· 상황별 조치사항의 반복적 훈련으로 즉각적 대응태세 완비

- 진화자원의 조기 투입을 통한 초동진화 체제 구축

· 산불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예측가능한 산불위험에 대비

· 산불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림청 헬기지원을 요청한 후 지상진화인력 투입

제 5 절 자원동원계획

○ 진화인력 : 23대, 356명

- 지상진화대 : 5대, 104명(공무원 84, 공익근무요원 20)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4대, 80명, - 보조진화대 : 14대, 172명

○ 진화장비

- 산림청 항공기 39대
- 차량 및 장비 : 산불진화차 5대, 일반차량 25대, 동력펌프6대, 등짐펌프 131개, 휴대용무전기 145국

제 6 절 재정·투자계획

○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 약 6억원

- 유급감시원 사역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약 4억원
- 기타 시설·장비 운영비 등 : 약 2억원

2005년도 산림재해 예방대책

목 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 시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및 항구적인 복구 실시

제 1 절 추진방침

○ 산사태위험지를 일제점검한 후 필요시 확대 지정하여 특별관리

○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최소화 및 항구 복구 실시

○ 재해취약지에 대한 계층별 지도점검 강화

제 2 절 추진방향

1. 예방대책

가. 단기대책

1) 산사태 · 임도 재해위험지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누락지는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 등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위험등급별로 지정 · 고시 요청하고, 소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의 대폭적 확대지정관리로 재해 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산사태위험지를 지금까지는 주택가 주변 위주로만 지정 · 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광지 · 유원지등 인명피해 방지상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 지정

○ 산사태위험지는 연차적으로 예방사방을 실시하여 해소

-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기이전까지 비닐피복, 배수로정비 등으로 응급 조치

○ 임도재해위험지는 산사태 위험지에 준하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특히 임도시설지 하부에 가옥이 있는 곳 등 재해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유사시 대피 등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임도재해위험지 사전 예방조치(비닐피복, 말목박기, 집·배수구 정비 등)를 소홀히 하여 재해발생 시는 관계자 귀책사유 규명 조치

· 공사현장사무실, 인부숙소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류수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절·성토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피복, 말목박기 등으로 예방조치

· 측구·배수관·박스교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이 걸려 있는 곳은 정리·보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 곳은 원상태로 정비

○ 재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자재비축 및 동원장비 지정·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을 감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축계획량을 확보·관리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 자체보유장비→유관기관·단체→군부대→민간장비 활용

○ 유사시의 대피장소 지정 및 인근주민에 대한 대피요령·응급복구조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

2) 산불피해지역

○ 집중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 우려지는 우기이전까지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 방지

- 주택가 뒷편 또는 급경사지로서 집중호우 시 산사태·무너짐 등 피해 방지 상 필요한 곳
- 임도시설지의 경우 집중호우 시 무너짐·갈라짐이 우려되는 절·성토부위 등

○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조치 및 안전점검 등 2차 피해 방지 철저

3)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지

○ 골프장·스키장등 대규모 형질변경지의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 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중간복구토록 조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개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 철저

4) 산림휴양시설(국립휴양림관리소 집행계획)

○ 집중호우 시 휴양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우회수로 등을 설치하고, 휴양객에 대한 대피계획 등을 수립 시행

- 태풍·집중호우 시는 휴양객 개별행동을 제한하고 특히 계곡 주변의 야영객은 전원 철수토록 조치

○ 태풍 내습시는 모든 시설물의 창문을 밀폐되도록 닫아 창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 절·성토지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우기이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휴양시설 내 배수로는 최고의 홍수 시 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보수

5) 양묘장

○ 묘포지의 유실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배수로 등 정비

○ 제방 등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피복, 말목박기 등으로 예방조치

○ 임간 묘포장은 산사태, 계곡물범람 등 위험이 없는 장소에 조성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절개지 등은 사전에 정비

○ 온실·창고·막사 등 부대시설물은 산사태, 계곡물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6) 산림사업장 및 벌채지

○ 벌채원목은 유실되지 않도록 계류를 피하여 집재하고 계류수 범람 시 유실우려가 있는 원목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집재

○ 육림산물 및 벌채 부산물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교량 등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저수지, 주요댐 상류의 각종 산림사업지에서 벌도목·지조물 유실 방지를 위하여 입목 또는 벌근을 이용 등고선 따라 집적하도록 지도

○ 벌채작업 시 인부숙소 등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사태·계류수 범람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7) 생산원목의 관리

○ 생산원목은 홍수위 이상의 안전한 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집재하고 반출된 원목은 하천변이나 고수부지에 집재하지 않도록 지도

○ 집중호우 시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원목 집재더미는 단단하게 결속 조치하고 집재원목이 떠내려가 하류의 교량, 구조물, 선박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목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함을 설명 및 홍보

○ 원목적치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 등이 집중호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리철저

※ 위의 내용중 해당사항들을 각종 인·허가 및 사업지원 시에 부대조건으로 명기

나. 장기대책

○ 대면적벌채에 의한 인공조림을 지양하고,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활엽수 및 혼효림으로 유도

○ 산림형질변경지의 절개사면 안정각 유지 및 녹화피복 등 방재시설 철저

○ 산사태 위험지의 완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방사방 및 사방댐 시공

○ 산사태 위험지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주(移住) 등 특별대책 강구

2.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 산사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 우려지 등은 응급복구 실시

- 비닐피복 · 통나무 울짱얽기 · 흙마대 쌓기 · 우회수로 설치 등
-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활용

○ 응급복구 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전문기술인력 기동배치

나. 항구복구

○ 피해지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반복피해우려 지역 등은 특수공법을 적용한 개량복구계획에 반영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피해 재발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

○ 피해 장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명, 책임복구제를 실시하되 복구사업 경험자를 우선 배치

3. 단계별 행동요령

○ 시 · 군 · 구 · 국유림관리소, 시 · 도 · 지방산림관리청, 산림조합계통조직 및 중앙 단위별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 유지

○ 기상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산사태 예보 실시

- 발령권자 : 시장 · 군수
-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
태 풍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행동요령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행정기관(단체)에서 할 일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산사태주의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기상정보(강우량·기상특보등) 파악전파 ○산사태위험지구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산사태경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비상근무체제 강화 ○기상정보(강우량·기상특보등) 파악전파 ○산사태위험지구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피해발생대비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이 할 일	○산사태위험지구 주민 대피 준비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등 피해예방 조치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등 청취(행정기관 통보, TV·라디오 등)	○산사태위험지구 주민 대피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등 피해예방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등 청취(행정기관 통보, TV· 라디오 등)

4. 피해발생시 조치요령

○ 인명구조 최우선 조치

- 산사태등으로 주요 재해발생시 민방위대원·구조대원 등을 동원,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오지대로서 육로후송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치

○ 피해상황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신속·정확하게 통보(전산입력)하고, 그 내용을 붙임 서식 2에 의거 관리청(산림토목계)에 보고

※ 피해상황이 시·군(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확히 전산입력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복구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

○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실시

- 마대쌓기, 통나무울짱얽기, 비닐피복 등을 실시
-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 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복구

○ 피해현지조사는 과장되거나 중복 보고가 되지 않도록 피해상황을 조사야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재해대장작성 및 피해상황 전산입력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유구분(국·공·사유)을 명확히 하여 국고 지원비율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 피해지 전개소에 대한 근원경사진(3×5)을 촬영 재해대장에 부착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시 사진만으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사진 등 생동감 있게 촬영

○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당해년도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에 의함

○ 피해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반복피해 우려지역 등은 특수공법을 적용한 개량복구계획에 반영

-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시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 첨부

○ 사유시설(산림부산물재배시설등)도 피해보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가 확인한 "사유시설피해확인조서"를 첨부 복구지원 요구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농업재해"의 정의에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임업용시설」및「산림작물」의 피해가 포함되었음

○ 산림분야 피해 중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에 없는 품목이라도 현지 조사하여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8480호) 참조

○ 타부처 소관 피해(도로절개지·과수원·사육조수 등)가 산림청 소관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

○ 산림청 헬기에 의한 긴급인명구조

- 산사태·임도피해로 인한 재해발생시 헬기에 의한 인명구조, 긴급물자수송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체계에 따라 조치

※ 산림청 헬기 배치현황

(단위 : 대)

지역별	형별					전화번호	비 고
	계	대 형	중 형	소 형	고정익		
익 산	5	4	1	-	-	(063)262-6727	형별 탑승인원 : 대형18명 중형 7명

○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중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충 주	보 은	단 양	부 여
-굴삭기	5	2	1	1	1
-덤 프	3	1	-	1	1

○ 산림조합계통조직 복구장비 동원

- 임도·휴양시설, 산사태등 산림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대민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음 체계에 따라 산림조합계통조직의 장비를 지원받아 조치

구 분	복 구 지 원 명 령 체 계
국유림지역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산림관리청장 요구 → 산림조합중앙회(도지회)장 지원

※ 산림조합 장비보유현황

(단위 : 대)

기 관 별	장비보유현황			지원가능지역	전 화 번 호
	계	굴삭기	덤 프		
충북도지회 (지역조합포함)	21	17	4	충북지역	(043)276-4602
충남도지회 (지역조합포함)	29	28	1	충남지역	(042)537-8814

5. 산림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상황실 설치

- 상황실장 :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 상황요원 : 7명(산림경영과)
- 설치장소 :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 사무실

○ **비상근무**

- 근 무 기 간 : 5. 15 ~ 10. 15
- 근무조편성 : 2개조 편성 운영
- 근 무 시 간 : 정상근무시간 종료후 ~ 21:00

(호우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철야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우리관리청에서는 장마기가 도래하고 호우주의보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을 실시하면서 다음사항 처리

· 기상상황에 따라 지시사항 시달

· 기상상황(태풍동향 · 지역별강우량 · 기상특보 등)파악 전파

· 산림피해 상황 취합보고

· 재해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한 헬기지원요청 및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

- 국유림관리소는 기상상황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최소화에 대처하고 상황전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6. 산림재난안전대책 업무별 소관부서

구 분	총 괄 부 서	실 무 부 서	비 고
산사태 · 임도 · 사방댐피해	산림경영과 (041-850-4061)	산림토목계 (041-850-4062)	
양묘 · 채종림피해	〃	자원조성계 (041-850-4052)	
임목피해	〃	경영계획계 (041-850-4042)	
보호수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불감시탑 · 무선감시시설피해	〃	보호계 (041-850-4022)	

7. 행정사항

건 명	보고기관	보고기한	보고서식	보고방법
피해상황보고	관리소	피해발생시 즉보	서식 1	즉보 : 모사전송

【 참 고 】

1)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방재조직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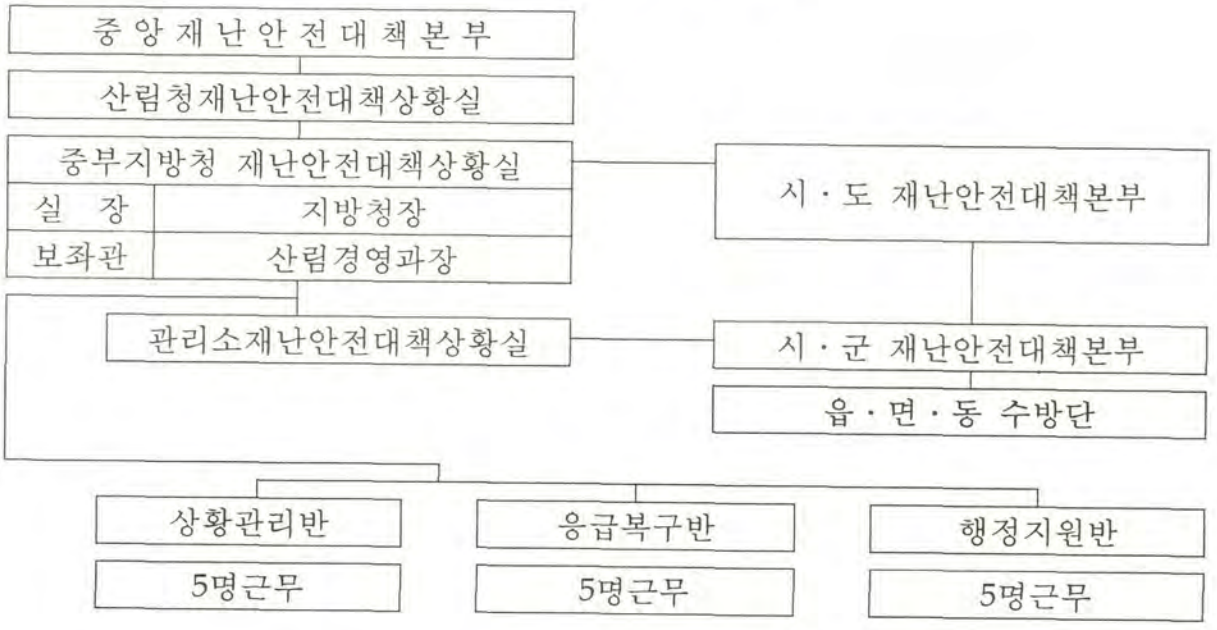

2)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에 따른 단계별조치

□ 1단계 : 정보단계(산사태 주의보 발령)

< 조 치 사 항 >

○산사태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에 준하여 비상근무 실시

○유관기관 통신망 점검 정비

< 행 동 요 령 >

○자연휴양림, 국립공원등 야영객 대피 및 귀가준비

↓

□ 2단계 : 통보단계(산사태 경보 발령)

< 행정기관 조치사항 >

○산사태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에 준하여 비상근무 실시

○일선 지휘관(관리소장) 정위치 근무

○재해대책 강화 조치

· 휴양림내 야영객, 피서객, 등산객등 행락객 대피권고

· 기상청과 협조로 수시 태풍진로 및 기상상황 파악

< 행 동 요 령 >

○자연휴양림, 국립공원등 야영객 대피 조치

○산림사업 인부 대피 및 귀가

↓

□ 3단계 : 주의보단계(산사태 경보발령)

< 조 치 사 항 >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비상체계) 실시

○일선 지휘관(관리청장, 관리소장) 정위치 근무

○재해대책 강화조치

·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강화

· 산사태 위험지 주민 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 산사태 위험지구내 물적재산 안전지대로 대피

○대 국민 홍보강화

< 행 동 요 령 >

○등산객 및 피서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및 귀가

↓

□ 4단계 : 경보단계

< 조 치 사 항 >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비상체계) 실시

○전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재해대책 강화 조치

·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예찰강화

· 산사태 위험지구내 인명 우선대피

· 기 입산한 등산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및 안내방송 실시

○재해발생 조치사항

· 피해지구 응급복구 실시(주민 생계관련 공공시설 우선)

○대 국민 홍보강화

< 행 동 요 령 >

○기 입산한 등산객 잔류 피서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라디오 및 T.V를 청취, 호우상황 예의주시

5) 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2004년도 기준)

(2004년도 재해복구 기준단가)

○ 공공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산사태 (ha)	야계사방 (km)	사방댐 (개소)	임 도 (km)	자연휴양림시설		비 고
					숲속의집 (3.3㎡)	화장실 (3.3㎡)	
2004	**91,407**	**217,789**	**273,781**	**125,499**	**5,000**	**3,393**	

○ 사유시설

(단위 : 원)

구 분	표고자목 (본)	비닐하우스 (㎡)	잔 디 (㎡)	유실수 (ha)	조경수·분재 (㎡)	야 생 화 (㎡)
규 격	1.2m	1-A_2형 (표고·양묘)	파종·생산비	밤나무묘목기준	묘목기준	종자·비료대
2004	2,200	25,000	179	770,000	1,200	133

(복구비 지원비율)

구 분	지 원 비 율 (%)				비 고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 공 공 시 설					
- 사방·임도·휴양림시설					
·국유림(국가관리)	100	-	-	-	
·민유림(지방관리)	50	50	-	-	
○ 사 유 시 설					
- 표고재배사·표고자목					
·소규모(2ha미만)	25	10	55	10	
·대규모(2ha이상)	-	-	70	30	
- 산림작물 복구					유실·매몰·침수의 경우
·대파대(종자대·비료대)	50	20	-	30	
·농약대(농약살포소요액)	60	40	-	-	쓰러짐·낙과의 경우

(국고의 지원기준)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관내 총 피해액이 다음의 지원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 특별시의 구 : **28억원**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 **15억원**

○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 **10억원**

※ 공공시설의 경우는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더라도 1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함

<서식 1>

2005 산사태위험지 일제점검 결과보고

1) 일제점검 결과

(단위 : ha)

관서별	2004지정		2005 일제점검결과				현 존		비고
			추가지정		해 제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충주 보은 단양 부여									

2) 2005지정 · 관리상황

○ 위험등급별 내역

관서별	계		Ⅰ등급 (대단히높은지역)		Ⅱ등급 (높은지역)		Ⅲ등급 (위험있는지역)		비고
	개소수	면 적 (ha)	개소수	면 적 (ha)	개소수	면 적 (ha)	개소수	면 적 (ha)	

※ 면적은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기재

○ 개소별 내역

관리 번호	위 치	위험 등급	면적 (ha)	소유별	예상피해내역		해소대책		비고
					인명	건물	주요공종	소요예산	

※ ·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산 번지를 기재

· 소유별 : 국 · 공 · 사유림을 기재

· 비 고 : 복구비 확보상황(재원별), 향후계획 등을 기재

<서식 2>

산림재해상황보고서

(☎)

산경 52133-

수신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2005. . .

참조 산림경영과장 발신 (인)

1) 피해상황 총괄

(금액 : 천원)

시군별	피해종별	소유별	당 일			누 계			비 고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계									

※○ 시·군(시·도)재해대책본부에 통보(전산입력)하지 않은 피해는 국고지원이 불가함

○ 피해물량은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 피해물량의 단위 : 산사태(ha), 임도(km), 표고자목(본), 표고재배사(㎡)

○ 도로절개지피해등 타부처소관이 산림분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

2) 오늘의 피해상황

○ 개소별 피해내역

(금액 : 천원)

시군별	피해종별	위 치	소유별	물 량	피해액	비 고
계						

※○ 인명피해등 주요 재해발생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13조서식을 별도 붙임

○ 비고란에는 피해일시, 강우량 등을 기재

○ 피해지 응급복구 상황

피해 종별	피해상황		응 급 복 구 실 적							응급복구내용		
	개소수	물량	전일까지		당 일		누 계			비닐 피복 (㎡)	배수로 정비 (m)	마대 쌓기 (매)
			개소수	물량	개소수	물량	개소수	물량	%			
계												

제 5 장 금강유역환경청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재난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96 재난관리업무평가지침 (국무총리실 국행이 13900-8 : '96.1.18)

○ '04 환경분야 국가재난관리계획 (산폐 67421-5471 : '03.11.20)

3. 여건 및 전망

○ 수질오염사고는 '99년이후 매년 증가하고 '03년도부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 강화와 계절별, 유형별 오염사고예방대책 추진으로 감소 추세

○ 인구의 도시집중, 급속적인 산업화,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부족 등 여건변화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요인 상존

연도별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합 계	9		13		25		26		5		9
유류유출	7		4		9		13		2		5
물고기폐사	3		5		7		4		-		1
유해물질	4		3		5		7		1		3
기 타	1		1		4		2		2		-

4. 기본방향

사고수습체계 강화

◇ 사고의 예방 → 사고발생 요인의 근원적 제거
◇ 오염사고의 조기발견 →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신속한 사고수습체계 구축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

중점 추진과제

◇ 계절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강구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관계기관간 비상연락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방제장비 확보 및 사고대비 관련기관 합동 가상방제훈련

5. 2004년 재난관리대책 추진실적

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03.12~'04.4월)

○ 수질오염사고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수습을 위한 방제 지원체계 유지

나. 설·추석연휴 등 취약시기 환경안전관리대책 추진

○ 설·추석 연휴 및 전후기간 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정수장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간부공무원 현지점검

다.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물 조사 ('04.12월)

○ 환경분야 250개 시설중 8개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

라.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확립

○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 금강수계 주요 6개지점에 대한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

○ 민간자율 감시체계에 의한 하천감시

-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민간인을「하천감시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하천관찰 및 감시활동 전개

마. 수질오염사고 가상훈련 실시 ('04.6월)

○ 우리청 주관하에 지자체,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 가상훈련 실시

바.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 폐수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 1,159건 점검하여 206건 조치

6.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부문

○ 갈수기, 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대책과 수환경 변화 등 재난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 설,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시계획을 수립,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점검 실시

○ 물 관련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나. 업무추진과정

○ 상수원 상류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오염우려 하천에 대한 육상·수상·항공감시활동 전개

○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민간인을「하천감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민간 자율감시체계에 의한 하천감시업무 수행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사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관리

다. 성과부문

○ 잘 된 점

- 계절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각종 오염사고예방대책 수립·추진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계도 등을 통해 대형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미흡한점

- 환경오염사고 주 원인이 관리부주의로 환경안전관리의식 미흡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계절별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1) 갈수기 (12월 ~ 다음해 4월)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대비「물관리 상황실」설치·운영

○ 해빙기(3~4월)에는 유독물·유류·유기용제 저장탱크 및 환경기초 시설의 붕괴 및 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사고 방지에 중점

2) 장마철 (6~7월)

○ 오·폐수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등의 넘침현상 및 폭우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여부 중점점검

○ 폐수·유해물질·유기용제 및 지정폐기물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중점단속 병행실시

3) 취약시기 (설, 추석 연휴 등)

○ 연말연시, 설·추석 연휴기간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나.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 등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대청호 인접도로에 대한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수송차량의 통행제한

○ 대청호 인접도로의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다. 환경재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라.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체계 구축

○ 수질측정망 구성 : 74개 지점 (하천 45, 호소 21, 공단배수 8) 수질분석

- 측정회수 : 조사항목별 연 1회~48회 측정

○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 주요 하천·호소 6개지점 실시간 수질분석

마. 입체적 하천감시체계 구축

1) 하천순찰에 의한 육상감시 체계구축

○ 석남천, 미호천 등 오염우려하천에 대한 하천감시 지속실시

2) 하천수상감시체계 구축

○ 선박을 이용한 대청호 수질오염행위 감시

3)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감시체계 확립

○ 정기비행을 실시하여 하천 수면관찰 및 오염행위 감시

○ 금강환경감시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바. 환경안전의식문화 운동추진

○ 환경오염사고 예방교육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고예방 홍보

○ 환경신문고 및 오염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오염신고문화 정착 유도

2. 대비대책

가. 수질오염사고 대비능력 제고

1) 수질오염사고 가상훈련 실시

○ 훈련범위 : 수질자동측정망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가상훈련

○ 참가대상 : 대전광역시, 공주시,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 훈련내용

-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 오염사고 방재 및 조치요령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방제장비 등 확보

○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화제 등 주요 방제장비 및 약품 확보

○ 유관기관 방재장비 현황 파악, 사고시 신속한 지원 공조체계 구축

○ 물 관련기관간 비상연락망을 구축, 변동사항 점검·보완

<환경오염사고시 비상연락망>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비 고
환 경 부	주간	산업폐수과	02-2110-6848	총괄, 수질
		대기관리과	02-2110-6790	대 기
		유해물질과	02-2110-7965	유해물질
		산업폐기물과	02-2110-6946	폐 기 물
		토양수질관리과	02-2110-6765	토 양
		수도정책과	02-2110-6848	상 수 도
		생활하수과	02-2110-6885	하 수 도
	야 간		02-504-9278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 042-865-0785 (야) 042-865-7000	
	환경관리과		(주) 042-865-0730	
	금강환경감시대		042-865-0842	
	청주환경출장소		043-267-2121	
대전광역시	수질관리과		(주) 042-600-3941 (야) 042-600-2222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관리과		(주) 042-250-1331 (야) 042-250-1222	
충 청 남 도	수질관리과		(주) 042-220-3551 (야) 042-251-2222	
충 청 북 도	물 관 리 과		(주) 043-220-3651 (야) 043-220-2222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환 경 과		(주) 042-930-7215 (야) 042-930-7240	
한국수자원공사 부여권관리단	정 수 과		(주) 041-830-4283 (야) 041-830-424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 원 과		(주) 042-530-0145 (야) 042-530-0222	
공 주 시	환경보호과		(주) 041-850-4336 (야) 041-850-4222	
부 여 군	환경위생과		(주) 041-830-2331 (야) 041-830-2222	
청 원 군	환경보호과		(주) 043-251-3336 (야) 043-251-3222	
보 은 군	환 경 과		(주) 043-540-3282 (야) 043-540-3222	
옥 천 군	환경수질과		(주) 043-730-3496 (야) 041-730-6000	
대전소방본부	상 황 실		042-119	
충남소방본부	상 황 실		042-253-4225	
충북소방본부	상 황 실		043-276-1119	
태안해양경찰서	관 리 과		041-674-5050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고 무 보 트	SD 330(Set)	개	1	
오 일 펜 스	20m	개	14	
유 흡 착 포	100매/B○x	B○x	52	
유 화 제	18ℓ	개	29	
소 석 회	25kg	개	7	
염 산	20kg(3%)	개	3	
황 산	20kg	개	1	
활 성 탄	20kg	개	12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보고 및 수습체계

1) 재난발생보고 및 지휘체계

○ 보고책임자 : 상수원관리과장

○ 임 무

- 사고지역 현장책임자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즉시 환경부 사고관리 주관부서에 사고상황, 응급조치내용과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 사고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의 사고수습업무 지원

○ 보고내용

- 사고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작성

(피해상황 및 취수원 영향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상황 (시간대별)

- 응급복구 및 조치 : 장비·인원동원, 복구상황 등 조치한 사항 등
- 기타사항 : 타기관 지원요청사항, 현장 연락전화번호, 책임자

○ 보고방법

- 보고수단 : 보고서식에 의거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 보고의 종류
  - · 징후보고 : 사고발생 예상시 그 경위와 원인, 전망 및 대책 보고
  - · 발생보고 : 사고발생 즉시 사고상황·수습상황을 보고
  - · 중간보고 : 상황에 따라 사고원인, 피해상황, 수습계획, 유관기관 공조사항, 지원 요청사항을 보고
  - · 최종보고 : 사고수습 상황, 유관기관 공조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보고

2) 재난수습 체계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설치시기
  -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해 중앙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될 때
  - · 지역사고대책본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 설치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구성 및 반별 임무
  - · 본부장 : 청 장
  - · 반 장 : 각 과장 (유역관리국장 총괄)

<사고수습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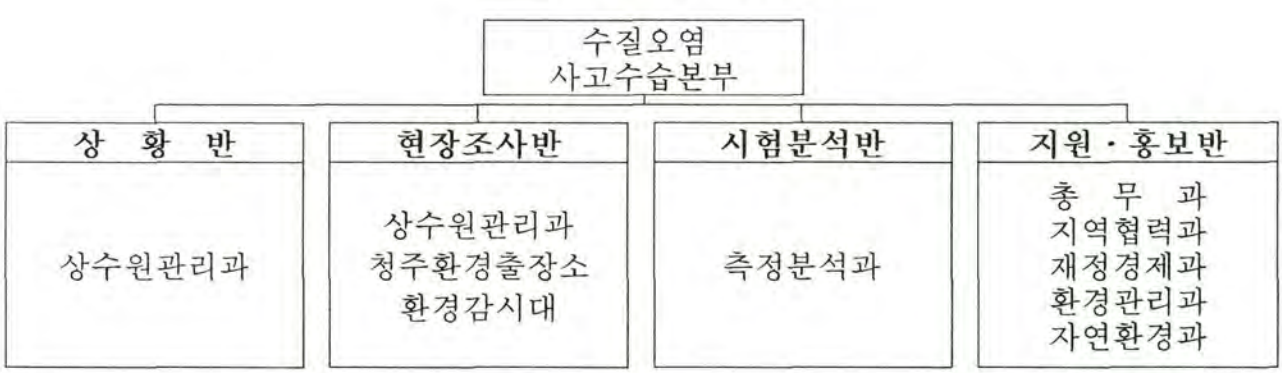

<사고수습본부 반별임무>

반 별	반 장	임 무
상 황 반	상수원관리과장	○ 상황 총괄 ○ 상황통제 및 보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현장조사반	상수원관리과장 청주환경출장소장 금강환경감시대장	○ 현지 사고상황 파악, 사고원인 조사 및 보고 ○ 방재작업 지원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 지원협조요청시 및 필요시
시험분석반	측정분석과장	○ 시료채취 및 수질오염도 분석 - 자체분석 및 자체분석 불가항목은 관련기관에 분석의뢰 ○ 사고원인 기초조사 지원 - 현장 수질측정 등
지원·홍보반	총 무 과 장 지역협력과장 재정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과장	○ 행정지원 ○ 차량 등 장비지원 ○ 필요인력 지원 ○ 대민홍보 등 보도사항 수시확인 보고

○ 환경오염사고 보고 및 수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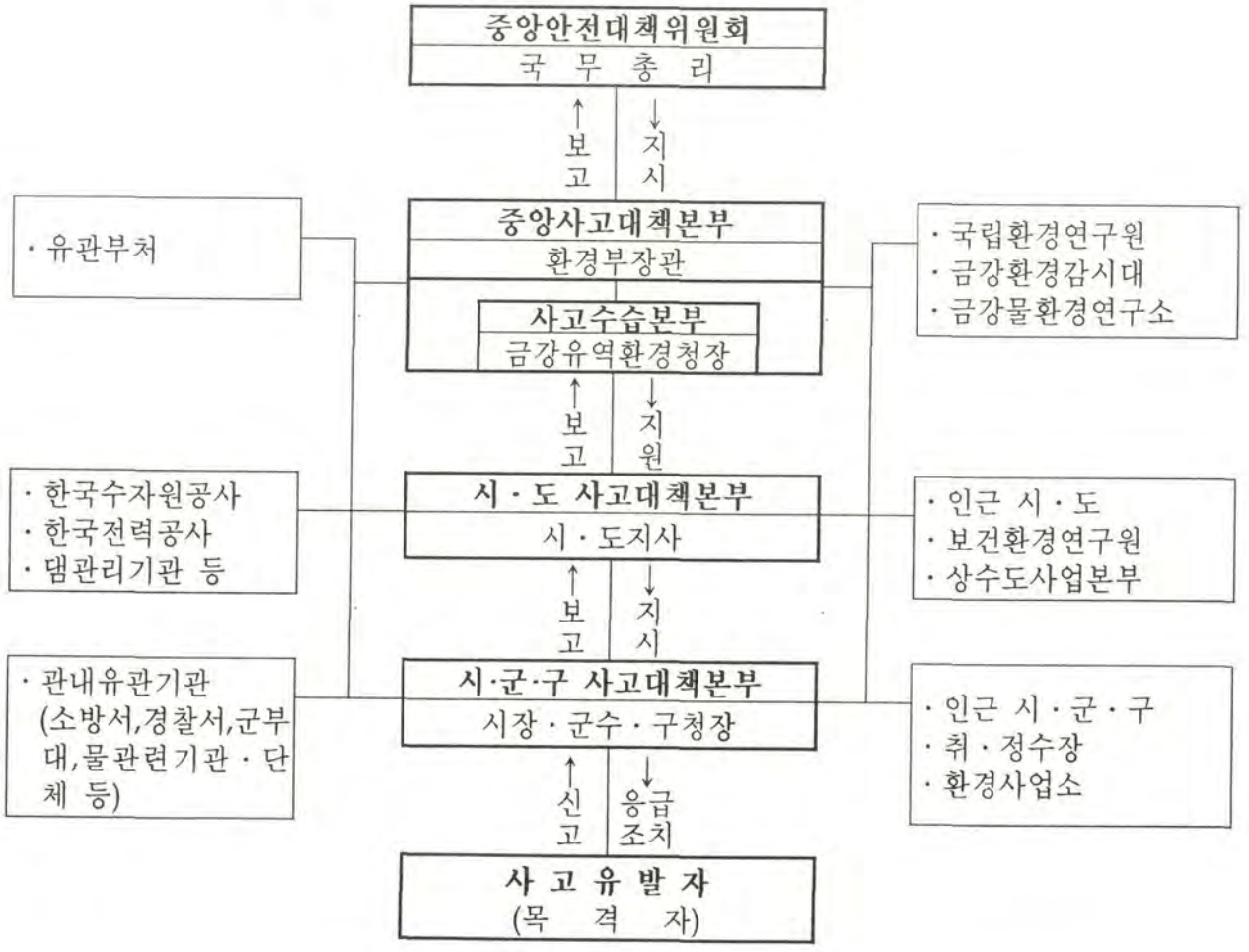

○ 유관기관 협조·지원사항

기 관 명	협 조 · 지 원 사 항
금강유역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사고시 인력 및 각종장비 지원 -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방제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수질검사 실시 협조
지방자치단체	· 방제작업 실시 및 인접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 상황 전파 등 -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보고 및 방제작업실시 - 지천 사고시 수문을 폐쇄, 본류 유입을 최대한 방지 - 오일휀스 설치, 유흡착포 등 방제장비로 오염물질 제거 - 야간 방제작업시 조명용 차량 등 지원 - 오일휀스 및 바지선 등 방제장비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수원관리사무소	·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취수대책 강구 - 취수구 등에 이중으로 오일휀스 설치 - 유흡착포, 유수분리장치, 활성탄 등 방제장비 · 방제장비 및 약품 비축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 방제인력과 포크레인 및 구급차량 등 방제장비 긴급지원 · 야간 방제작업시 소방차(조명용) 등 지원

수질오염사고 (최초·중간·최종) 보고서

('05 년 월 일 : 현재)

기관명		보고자			전화번호 (FAX)	

○ 사 고 개 요

- 일 시 : '05. . .( ) :
- 장 소 :
- 사고내용

- 사고원인

- 사고유발자(사고업소)

- 수계현황

사고지점	→	→	→	→	→
유하거리	km	km	km	km	km
소요시간	hr	hr	hr	hr	hr

○ 취·정수장 영향

- 영향여부 :

- 취·정수장 현황

취·정수장명	취수량(m^3/일)	급수지역	급수인구(명)

○ 조치 현황

- 사고접수 : '05. . . : (신고자: 접수자:)

- 시간대별 조치사항

일자	시 간	주 요 조 치 내 용

- 인력 및 방제장비 동원현황

· 동원인력(인) :

· 오일휀스(m) :

· 유흡착포(B○x):

· 유처리제(L) :

· 기 타 :

○ 사고유발자(사고업소) 조치

일 자	조 치 내 용	조 치 기 관

○ 향후조치계획

○ 기 타 (언론기관 취재여부 등)

제 6 장 대전지방노동청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사업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안전사고 예방으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방 침

○ 대형사고예방 중점지도

○ 산재취약부문 중점지원

○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3. 재난대상시설현황

○ 재난관리 지정현황 : 총 127개소 지정

- 재난위험 대상사업장 : 96개소(화학 64, 건설 32)
-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 31개소(화학 10, 건설 21)

제 2 절 추진계획

1.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가.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1) 조 직

○ 대전지방노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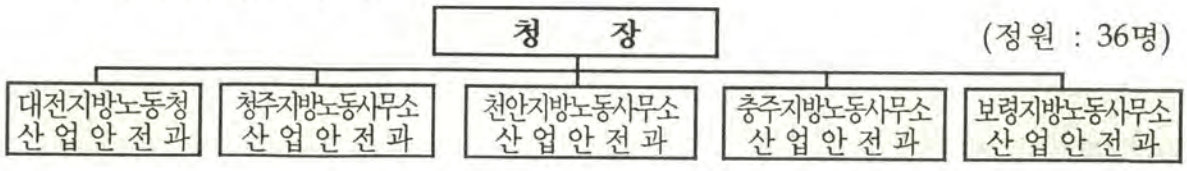

○ 산하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대전, 청주,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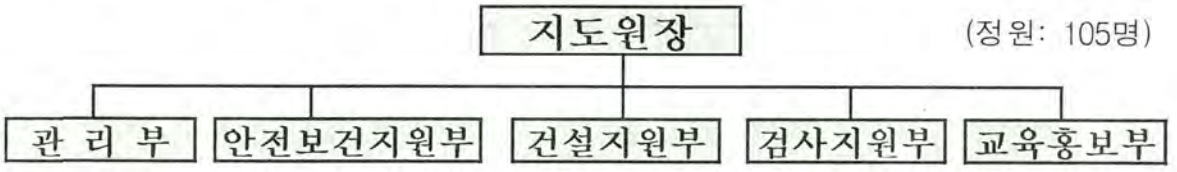

2) 소관업무

○ 지방노동청 및 소속관서

- 재난관리업무계획 수립, 추진실적 파악 등 재난관리업무 총괄(청)
- 재난관리 대상사업장 선정(청, 소속관서)
- 재난관리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청, 소속관서)
- 유해·위험시설, 설비 개선지도(청, 소속관서)
- 재해발생 원인 조사(청, 소속관서)
- 위험상황신고실 운영(청, 소속관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 재난관리 사업장 기술적 지원
- 재난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 조사
- 유해·위험시설관리 기술지원

○ 근로복지공단 지사

- 재해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나. 분야별 추진계획

1) 대형사고예방 중점지도

◇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 대형사고 발생예상 업종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SOC건설현장 등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안전관리 강화

○ 대형재해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 화학업체 점검(반기별 점검)

· 중점대상 : 화재·폭발·유독물질 누출 고위험 사업장 등

○ 추락. 붕괴 등 건설재해예방 강화

- SOC 건설현장 등급관리

· 대 상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고속도로 등 SOC 건설현장을 재해율에 따라 등급구분·관리

· 반기별로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구 분	대 상	관 리 방 법
청 색	3반기 연속 무재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황 색	평균 환산재해율 1.5배 미만 (청색은 제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지도
적 색	평균 환산재해율 1.5배 이상	본사 경고 및 감독실시

- 건설현장 취약시기별 점검

· 해빙기(2~3월) : 해빙기 지반 및 토사붕괴 위험 현장 등

· 장마철 : (6월) :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등

· 동절기 (11~12월) : 동파·화재·폭발 위험현장 등

○ 건설공사 착공 시 사전 안전성 확보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 대 상

·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터널공사 등의 공사

·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건설 공사 등

·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방 법

·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

· 3월 또는 6월에 1회 이상 동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이행 강화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목 적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고예방체제 구축

- 대 상

·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의 보유 설비

· 가연성, 인화성, 독극물질 등 21개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공정설비

- 방 법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공정안전정보,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록)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필요한 경우 변경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확인검사 실시

·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2) 산재취약부문 중점지원

◇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 안전·보건환경의 개선과 경쟁력 확보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집중지원

- 산재예방 시설자금 보조(50인 미만)

· 안전·보건 설비 구입 소요자금의 50% 보조(최대 2,000만원)

-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 연리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최대 5억원)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국고지원

· 안전교육, 기술지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관리비용 및 기술지원

- 산재보험 신규가입장 교육

· 50인미만 산재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사업주 교육 및 근로자에 대한 무료교육 지원

3)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 안전교육 체계의 확립과 안전문화운동 정착으로
- 노·사와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감독강화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재해조사시 법정교육 실시여부 조사

· 특히 채용시 교육실시 여부 중점 점검

○ 『안전문화운동』의 정착·확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 가정·학교·교통·공공·사업장 등 5개 분야별 캠페인 및 자료개발 등의 활동전개

· 사업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안전·보건관계기관 적극 참여토록 지도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 강조주간 : 매년 7월 초

· 행사내용 :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매스컴, 캠페인 등)

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1) 업종별 관리 구분

○ 화학업종

- 위험사업장(E급)

· 최근 「공정안전관리이행능력평가결과」 2년간(회) 연속 M등급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동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2배이상 사업장

· '04년도 사망재해(조사대상) 3명이상 발생사업장

- 불량사업장(D급)

· 「공정안전관리이행능력평가결과」 M등급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제조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사업장

- 보통사업장(C급)

· 「공정안전관리이행능력평가결과」 S등급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제조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0.5배 이상 1.5배 미만 사업장

· '04년도 사망재해(조사대상) 1명이상 발생사업장 · 보유

- 양호사업장(B급)

· 「공정안전관리이행능력평가결과」 P등급 사업장 중 공장설비가 10년 이상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제조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0.5배 미만 사업장

- 우수사업장(A급)

· 「공정안전관리이행능력평가결과」 P등급 사업장(B등급 분류사업장 제외)

· 위 등급분류 외의 사업장으로 '03년도 무재해 사업장

○ 건설업체 지하철, 고속철도 등 SOC 건설현장)

- 위험사업장(E급)

· 최근 연속 2회이상 적색으로 분류된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2배 이상 사업장

- 불량사업장(D급)

· 최근 관리등급 분류결과 적색(불량)으로 분류된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사업장

- 보통사업장(C급)

· 최근 관리등급분류결과 황색(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0.5배이상 1.5배 미만 사업장

· '04년도 사망재해(조사대상) 1명 이상 사업장

- 양호사업장(B급)

· 최근 관리등급분류결과 청색(양호)으로 1회 분류된 사업장

· '04년도 재해율이 '03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0.5배미만 사업장

- 우수사업장(A급)

· 최근 관리등급분류결과 청색(양호)으로 연속 2회이상 분류된 사업장

· 위 등급분류 외의 건설현장으로 '04년도 무재해 사업장

2) 재난 위험시설 지정 사업장 점검 및 관리방법

○ 등급별 관리기준

· 위험사업장(E급) :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시정사항 확인

· 불량사업장(D급) :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시정사항 확인

. 보통사업장(C급) : 산업안전공단에서 년 1회 기술지도 실시

. 양호사업장(B급), 우수사업장(A급) : 사업장 자율관리

○ 수시점검

-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3) 재난 위험시설 지정 현황

(대전/충남/충북)

업종별 / 관리구분	계	화학업	건설현장
총 계	**127 (38/43/46)**	**74 (15/30/29)**	**53 (23/13/17)**
재난위험대상사업장 (C.D.E등급)	(23/39/34)	(13/26/ 25)	(10/13/ 9)
중점관리대상사업장 (A.B등급)	(15/ 4/12)	(2/ 4/ 4)	(13/ -/ 8)

2. 재난대비 대책 추진

가. 『위험상황신고실』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 5개소

○ 사업장내 재해위험 상황 발생시 신고 및 관리체계 유지

- 평시

· 지방관서별 신고전화를 개설 상시 운영

·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 비상시

· 재난규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신고사항 조치

- 신고사안에 따라 현지출장 확인

- 대형 중대사고 발생 징후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등 안전·보건상 조치명령

· 사업주가 명령 불이행시 의법조치

○ 위험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 지방환경청

· 독성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 정화

- 자치단체

· 사업장내 대형 화재, 폭발, 독성화학물질 등 누출 사고시 지역주민 대피

- 지방소방본부

· 화재·폭발 발생시 진압 및 복구

· 피재 근로자 응급 치료 및 후송

3. 재난수습 대책

가.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시기 : 산업안전보건관련 대형재난 발생시

- 조직체계

· 본부장 : 청 장

· 통제관 : 산업안전과장

· 실무반 : 기능별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을 반장으로 하는 4개 실무반

- 설치장소 : 대회의실

- 기능 및 운영

· 종합적인 재난상황 유지관리 및 사고 수습체계 구축

· 재난상황 수습·복구에 관한 총체적 업무 추진

· 실무반별 분야별 재난상황 수습 및 복구

-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청장, 위원 : 유관기관의 장 등)

·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공조 · 재난상황에 따라 대책 마련

· 사고대책본부와 연계운영

- 실무위원회 운영

(위원장 : 산업안전과장, 위원 : 유관기관 실무부서장 등)

· 사고수습대책업무의 협의조정 및 실무반간의 역할분담

· 안전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등 심의 조정

(복구 및 보상대책,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 기타 수습관련업무 등)

○ 사고대책본부 편성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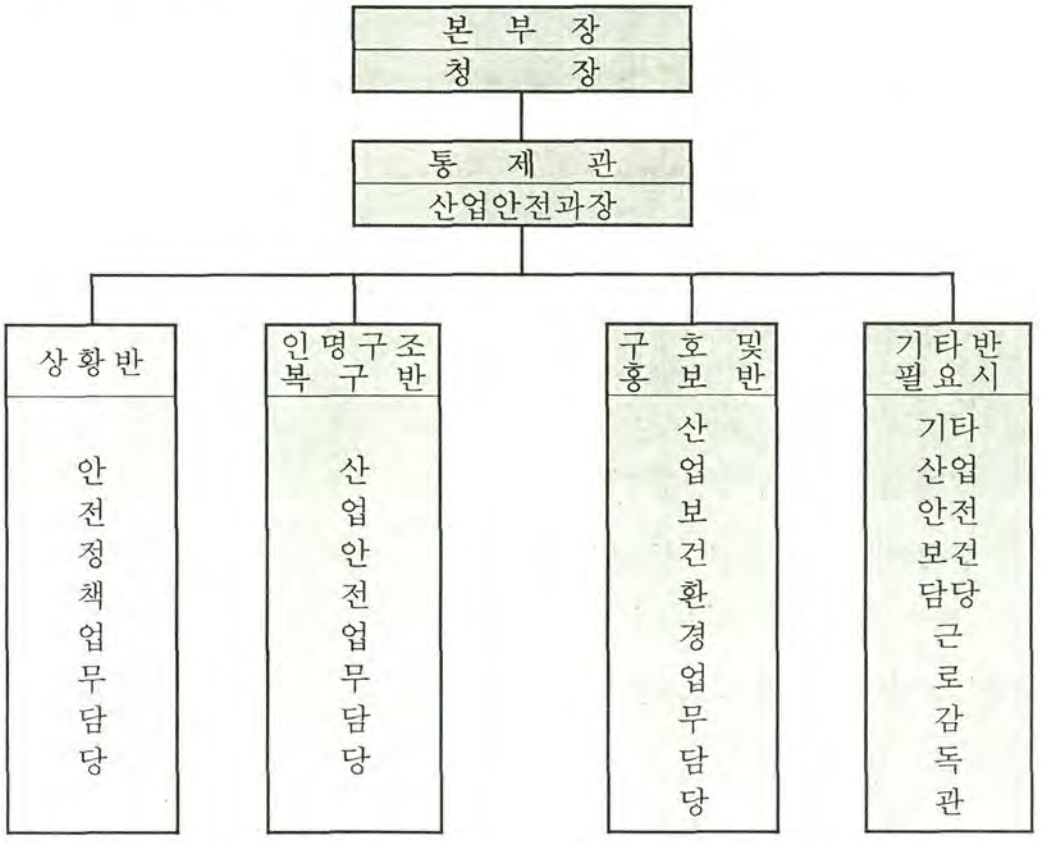

○ 지역사고대책반 구성

- 재난정도에 따라 소속관서별 사고대책반 구성운영

○ 사고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상 황 반	○ 상황실 운영관리 총괄 ○ 종합상황 총괄 및 기록유지, 상황보고, 통보 등 ○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피해통계작성 및 소요예산 종합 ○ 기능별 사고수습 세부계획 수립·시행
인명구조반 복 구 반	○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강구 ○ 인명구조 총괄 지휘·통제 및 구조실시 ○ 화재예방 및 진압 ○ 초동대처 및 응급조치 ○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실시 ○ 복구용 장비자재 수급 및 배정
구호·홍보반	○ 사상자 처리 및 병원관리 ○ 유족관리 및 장례지원대책 ○ 보도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 ○ 언론협조 및 통제 ○ 피해지역현장 촬영 등 기록유지
기 타 반	○ 재난상황에 따라 필요시 설치하여 임무 부여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지방환경청

· 독성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 정화

- 자치단체

· 피해지역주민 긴급대피 및 소개

· 피해상황조사 및 협조

· 재해원인 구명 및 대책강구 협조

· 주민 피해보상 협조

- 지역소방본부

· 사고현장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 화재·폭발현장 진압 및 복구 협조

· 인명구조 및 인력·장비 등 지원 협조 등

- 지방경찰청

· 사고현장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 사고현장 질서유지 및 경비

· 사망자 신원확인

· 인명구조 및 인력·장비 등 지원

○ 타기관에 사고대책본부 구성시 사고대책 지원반

- 지원부서 : 산업안전과

- 지원내용 및 방법

· 해당 전문분야 인력파견 지원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분야 전문가 파견 협조

나. 재난보고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보고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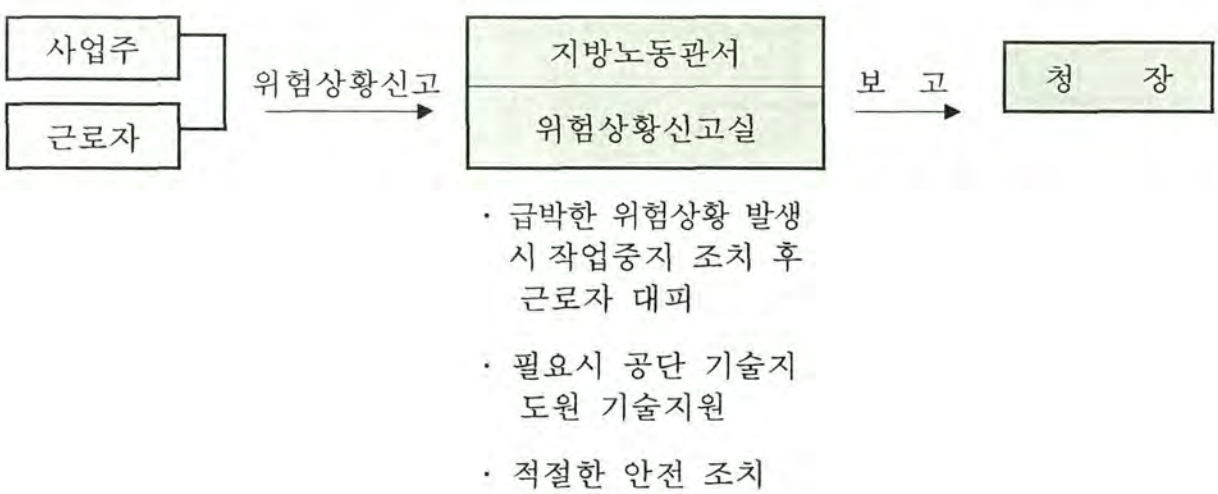

○ 협조체제

- 청 및 소속지방노동관서별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운영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경찰청, 소방서 등

4. 재난복구 대책

가. 합동조사반 운영

○ 대형사고 발생시 합동조사반 편성(관서별)

- 조사반 : 산업안전과장, 근로감독관, 공단 기술지도원

- 활동내용

· 중대재해 합동조사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지도

· 위법사항 발견 시 의법 조치

나. 산재예방 및 시설개선 지원

○ 재난발생 사업장에 대한 예방기법 지도

○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융자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위한 보조·융자금 최우선 지원

구 분		대상업체	대상시설	지원규모	비 고
보조	CLEAN 사업장 조성	50인 미만 제조업	- 안전설비(47종) - 작업환경 및 공정 개선설비 (10종)	- 1000만원 한도 전액지원 - 추가소요비용의 50%,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융자	산업예방 시설자금 융자	전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 소요금액의 100% 이내 (5억 한도) - 연 4%,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5. 재해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책

가. 재해사업장 지원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유예 및 연체금 면제

- 대 상 : 재난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 대상 사업장중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사업장
- 내 용 :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 및 연체금 면제 재난 발생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연장 및 동기간동안 연체금 면제

· 체납처분 유예 : 재난 피해 발생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중단

- 면제기간 : 피해 초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보험료 보고·납부기일까지
- 면제방법 : 보험가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를 승인(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감액조정

- 대 상 : 피해복구 지연 및 불능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보험료액이 기신고한 금액보다 30%이상 축소된 사업장
- 방 법 : 산재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시행령제70조, 고용보험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제도 활용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지정 사항 변경

- 근 거 :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 제16조
- 대 상 : 재해로 인하여 훈련시설이 파괴되어 훈련이 불가능하여 훈련실시가 어려운 훈련기관

- 방 법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후 처리

○ 재해사업장 복구 및 재가동 기술지원

- 대 상 : 재해발생지역 소재사업장
- 기 간 : 재해복구기간중 필요시기
- 내 용 : 생산시설 보수 및 정비, 건축 및 시설물 정비(용접, 배관 등) 시설 재가동을 위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기타 피해복구
- 방 법

·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 소속지도요원을 활용, 안전보건관련 기술지도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교원·학생을 참여시켜 사업장 보수 및 정비기술 지도

나. 재해근로자 및 가족지원

○ 산재보상업무 우선처리

- 대 상

· 재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업장소속 근로자로서 재해방지 작업 및 복구작업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

· 일반적인 산업재해 근로자

-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 사업장 경비 중 조난, 재해방지시설 작업중 재해, 유실된제품 및 설비 인양작업중 재해, 기타 사업장 재해방지 및 복구작업중 재해

- 처리방법

· 요양신청 안내 및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즉시 요양 조치 및 각종 보험급여 우선 지급

· 사망자는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우선 지급

○ 의료봉사 및 장비지원

- 대 상 : 재난발생으로 인한 재해다발지역 산재근로자
- 지원방법
  - 각 지역별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진(의사, 간호사)을 동원하여 현지에 파견, 응급조치
  - 구급차 등을 동원하여 최단시일내에 의료기관에 후송
- 지원절차
  -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하에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진 파견요청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지역에 가까운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응급조치 후 후송

○ 취업알선

- 취업알선대상 : 재해자 또는 그 가족중 취업알선 희망자
- 방 법
  - 재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알선 취지를 반상회,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재해지역에 안내하고
  -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표 배부 및 구직등록(희망임금, 근무지, 직종 등)을 받아 취업알선 전산망을 활용하여 희망조건에 일치하는 구인처에 최우선으로 취업알선
  - 재해지역 실업자중 직업훈련 희망자를 최우선으로 고용촉진훈련등 실업자훈련실시

제 7 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1 절 계획의 기본방향

1.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안전관련사업의 육성
○ 재난관리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실용적인 정책개발
○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운영

2. 통합적 재난대비대책의 구축

○ 기상관측, 재난예측 및 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 촉진
○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 강화
○ 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축 및 재난대응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정비·심사평가를 통한 재난정책의 환류

3. 신속한 재난대응대책 강화

○ 신속·정확한 재난상황파악과 초기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 강화
○ 유관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통한 효율적 긴급구조태세 확립
○ 재난사태 선포, 응원요청, 대피명령 등 상황별 대응시스템 체계화
○ 재난현장 출입통제, 사상자 관리 및 일사불란한 현장지휘·통제

4. 항구적인 재난복구대책 강구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개량중심 복구로 근본적 재발방지 강구
○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대형재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한 신속한 복구·재활지원

○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재난예방·대비 개선방안 강구

제 2 절 재난관리 기반구축

1. 중앙정부의 한 단계 앞선 예방과 대처

○ 21세기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남북한 기술·장비의 협력 등 방재협력 강화 및 재난예방사업 투자확대

○ 재난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민간안전지도자 양성 및 체험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 교육훈련 강화

○ 남북 공동하천지역 등에 대한 재난공동대응 협력체제 마련

2. 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의 참여와 협력체제 완비

○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재난관리의 체계화

○ 지역방재기반 마련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방재전문지식확보

○ 실효성 있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지자체간 협력체제 강화

○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과 재난대비 물자의 비축 및 관리 강화

3. 재난안전대책본부·긴급구조통제단의 과학적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체계 개선 및 조기경보시스템 확충

○ 비상단계시 유관기관 합동근무를 통한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 긴급구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재난현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CP형 통합 현장지휘체계 확립

4. 국민의 자기책임형 안전문화 조성

○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

○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의 안전문화활동 자율적 참여 유도

○ 재난관련 보험개발·보급 등 자기책임형 재난관리환경 조성

○ 자주방재조직의 육성, 강화와 지도자 연수·훈련방안 강구

제 3 절 계획의 추진전략

○ 21세기 국내외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 및 수해방지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일체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토록 하므로써 계획의 실효성 강화

○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국가재난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안전관리계획에 해당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변경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정비·개선 등 효과적 추진방안 강구

○ 효과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기관·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난관리에 대한 자각과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제 4 절 재난관리대책(공통사항)

1. 예방대책

가. 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지정·운영

○ 주　　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 비상구 찾기 운동 등 생활안전문화 운동 정착

○ 방재의 날 매년 5월 25일

-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

나. 안전관리헌장 제정·게시

○ 제　　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정·고시

○ 게　　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상시 게시

다. 재난예방 조치

○ 책　　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조치내용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과 정비·보완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인력의 지정

※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확보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 주　　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지정대상

-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 주요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전조사

- 소관 시설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조사

○ 지침수립 및 통보

- 지침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통　　보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내　　용 :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조사방법 및 지정절차,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점검과 유지관리의 방법 등

○ 고　　지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통보 또는 고시

○ 보고 및 통보

- 보고체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방방재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 · 보수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 · 단기계획의 수립 · 시행

· 보　　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비 ·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연도별 정비 · 관리계획 및 재원대책

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주　　관 :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

○ 대　　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시　　기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조치권자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 대　　상

-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

○ 안전조치내용

- 정밀안전진단실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 통보책임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요내용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증빙서류·사진 첨부

○ 사용제한 또는 금지

- 시　　기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
- 게　　시 :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 관리책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행한 소속공무원의 실명을 유지·관리

아.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

○ 대　　상 : 소방방재청장과 안전관리전문기관

○ 주요협조내용

-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 정밀안전진단 및 조치의견
-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

[안전관리전문기관]

▷ 소방검정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방재협회
▷ 소방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자.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
-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의 설치 · 운영

○ 주요추진사항(소방방재청)

-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 육성 · 지원
- 안전체험관 · 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 · 운영
- 안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자 육성 · 지원 등

차.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

○ 계획수립

-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 강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 종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와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및 전시회·학술회의 개최

카.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 지원

○ 안전기술개발사업 협약

- 소방방재청과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안전기술지원

-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기술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 기술개발 사업화로 매출발생시 기술료의 징수

2. 대비대책

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

○ 설치운영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 및 소방관서

○ 기　　능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

-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등

※ 국가기반재난 관련 상황실은 행정자치부에 설치·운영

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 주　　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적　　립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운　　용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사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용

○ 주　　관 : 시·도지사

○ 적　　립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

○ 운　　용

-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기금을 적립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금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집행(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라.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 국가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

- 사업기간2004　2008년(2단계 사업)
- 대상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 부처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시스템 연계로 유기적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체제 구축

·재난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재난행정 혁신체계 구축

- 전국단위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급 등 긴급구조·현장지휘체계 구축

- 첨단정보기술 활용한 재난관리 고도화시스템 구축

· 사전예측 분석호우/태풍 등 피해 예측시뮬레이션

· 효율적 상황파악공간영상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 신속한 상황전파인공위성 활용 모바일시스템

· 현장대응력 강화원격모니터링 등 상황관제시스템

○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 사업기간2004 ~ 2007(4년간)

- 대상기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7·8호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 사업추진 : 단계별 추진

· 1단계 ('04)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

· 2단계 ('05) : 시범사업(서울·경기 일부지역)

· 3단계('06'07) : 전국확대(시·도 및 중소도시 및 농어촌, 도서지역)

- 추진내용

·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환기, 망관리시스템 등을 설치, 관할 지역내의 지하철, 경찰청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및 긴급구조기관 등에 일제지령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무용도에 맞게 그룹을 설정하여 평시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성통신망 등을 활용한 이동기지국을 확보하여 통신망 두절시에 대비한 비상통신체계 운영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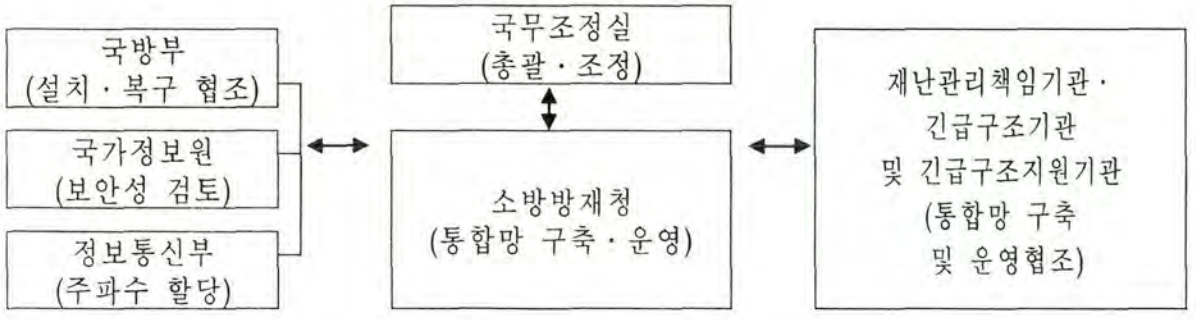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은 통합망 구축을 총괄, 관련기관간 이견발생시 조정

· 소방방재청은 통합망의 세부구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신망 운영 전담

· 국방부는 산악, 도서지역 등 군부대내 기지국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과 통신망 긴급 복구시 군 인력 및 장비 활용 등을 협조

·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 국정원은 통신 보안기능 구현 검토

마. 자원지원수용체제 수립

○ 주　　관 : 긴급구조기관의 장

○ 방　　법 : 재난의 유형별 수립

○ 주요내용

-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　명
-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 현황의 파악 및 관리
-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바. 재난관리의 표준화

○ 주　　관 : 소방방재청장

○ 개발·보급

- 재난관리 단계별 적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및 교육훈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응급상담지도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지관의 대응능력 평가

사. 물자 · 자재의 비축 및 재난방지시설 정비

○ 주　　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주요내용

- 재난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

· 포대류 · 묶음줄 등 수방자재, 건설자재, 수송장비 및 연료 등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 이재민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확보 · 비축

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주　　관 : 긴급구조기관의 장

○ 구　　분 : 기본계획, 기능별, 재난유형별 계획수립

○ 수립절차

- 시 · 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침시달		계획수립		계획보고
소방방재청장 → 시 · 도긴급구조기관의 장	⇨	시 · 도 긴급구조기관의 장	⇨	시 · 도긴급구조기관의 장 → 소방방재청장

- 시 · 군 · 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침시달		계획수립		계획보고
시 · 도긴급구조기관의 장→ 시 · 군 · 구긴급구조기관의 장	⇨	시 · 군 · 구 긴급구조기관의 장	⇨	시 · 군 · 구긴급구조기관의 장 →시 · 도긴급구조기관의 장

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관리 대비

○ 주　　관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 · 관리기준

-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

-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역실정과 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수립
- 이재민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관리상태 수시점검

차. 재난대비 교육·훈련

○ 재난예방교육·홍보

-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실시
-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교과서에 안전문화 내용을 수록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 홍보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에 홍보 요청

○ 긴급구조교육

- 대상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집행 및 운용방법

·재난대응행정실무와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등

○ 재난대비훈련(CPX훈련의 정례화)

- 주　　관 : 중앙부처(청), 지방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
- 방　　법 : 관계기관과 합동훈련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 회　　수합동훈련(연1회), 자체훈련(수시)

- 훈련평가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및 지휘통신체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수준 등

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 운영

○ 주　　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구　　성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 NGO, 관련전문가, 언론계, 안전관련기관, 단체, 학계 등

○ 운　　영

-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의 장 ·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

3. 대응대책

가. 재난종합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상황의 접수 · 전파

- 재난접수"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

- 상황전파

· 관계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 전파

·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

·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 및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

○ 재난상황의 보고

[일반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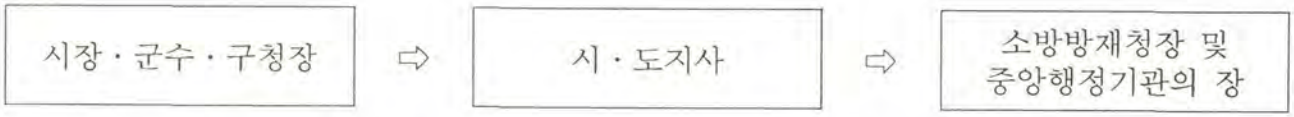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관 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시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

[해양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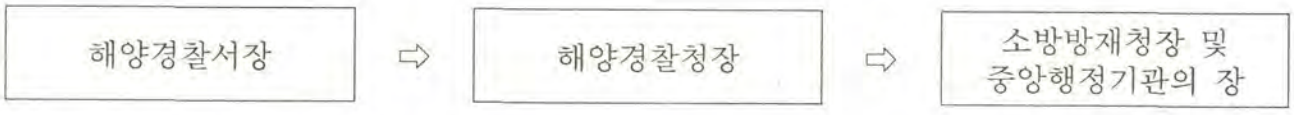

- 해양재난발생시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청장 ⇒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해외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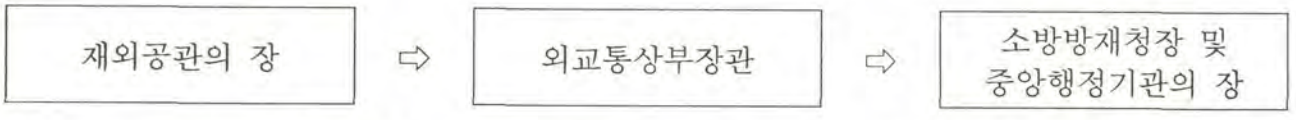

- 해외재난발생시 재외공관의 장 ⇒ 외교통상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보고구분 :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내용

-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 응급조치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나. 재난 예·경보의 발령

○ 발령권자 :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　　상 : 자연재난 및 대형·광범위한 재난피해

○ 시　　기 :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난에 피해가 예상되는 때

○ 발령방법전기통신시설 또는 방송의 우선사용 요청

- 기상상황과 재난예·경보 및 재난상황
- 피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 국민의 협조사항 및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다. 긴급구조활동

○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
-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요청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구조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해양경찰청장

- 해상에서의 선박·항공기 등의 조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 수행
- 해상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지원요청

○ 국방부장관

- 항공기·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 지원

-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과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태세의 유지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운영

○ 설치구분 및 기준

- 소방서현장지휘대소방서별 설치운영
- 방면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 소방본부장이 설치·운영
- 소방본부현장지휘대소방본부별 설치운영
-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 소방방재청장이 설치·운영

○ 운영요원 구성

- 상황분석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안전담당요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 주요임무

-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에 현장지휘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 화재 등 일상적 사고발생시 현장지휘

마.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 단계별 현장지휘체계

- 대응 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 대응 2단계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의 시·군·구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당해지역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

- 대응 3단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능력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활동을 통합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 파견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및 재난정보 관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및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 표준현장지휘체계 운영

- 시　　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 운　　영

· 표준지휘조직 편성 · 운영에 의한 현장대응

· 표준용어 및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

○ 통제선 설치 · 운영

- 제1출입통제선긴급구조통제단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

- 제2출입통제선경찰관서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

○ 자원의 집결지 및 대기소 설치 · 운영

- 자원집결지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 자원대기소현장지휘소 인근에 배치 · 대기가 용이한 장소

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 설　　치 : 긴급구조통제단장

○ 편　　성 :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보조요원 1명이상

- 의료소장관할지역 보건소장

- 실 무 반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 의료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 현장의료소 조직 편성 · 관리 및 훈련

- 관할지역 의료기관 파악 · 관리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

사.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 운영

○ 구　　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직원

○ 운영시기 :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파견 전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요활동내용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애로점 파악 및 상황관리 지원
- 중앙종합상황실과 H○t-Line 구축, 재난 신속대처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을 위한 상황파악 등 자료제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원
- 대규모 피해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지원단 운영 총괄

아. 재난수습 현장상황관리체계 구축

○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

자.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제출 요청

○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　　상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재난상황 : 대응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재난발생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재난대응조치 및 예상 진행 상황
-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등

차. 재난사태 선포

○ 대　　상 :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난

○ 선포절차

심 의		선포건의		재난사태 선포
시·도지사 요청 또는 중앙본부장이 판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또는 국무총리

※ 선포지역이 2개 시·도 이하(중앙본부장), 3개 시·도 이상 (국무총리)

○ 조치내용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카. 응급조치

○ 조치명령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

○ 조치내용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타. 동원명령 및 응원요청

○ 동원명령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직원 출동과 물자 및 인력·장비 동원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대비 인력 및 장비 지정

○ 응원요청시장·군수·구청장

- 다른 시·군·구 또는 관내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에 응원요청
-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

파. 위험구역 설정·대피 및 응급부담

○ 조치권자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 및 시장·군수·구청장

○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 시　　기 : 위해방지·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 조치내용 : 퇴거·대피와 출입 및 행위의 금지·제한

○ 강제대피 조치

- 시　　기 : 대피명령 불이행으로 위급한 때
- 조치내용 :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강제퇴거

○ 통행제한

- 시　　기 : 물자수송·긴급구조상 필요한 때
- 조치내용 : 도로구간 및 기간을 명시 차량의 통행금지·제한

○ 응급부담

- 종사명령 :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자, 인근 거주자
- 일시사용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하. 긴급구조 활동상황의 보도안내

○ 연락공보담당의 지정현장대변인 역할 수행

- 피해현황, 위험 및 대처요령 등의 정보와 긴급구조 활동상황을 매일 정기·수시로 발표

○ 공동취재단 구성신문·방송·통신사가 협의하여 구성

- 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을 현장대변인과 협의

○ 재난방송국의 지정·운영한국방송공사

- 시설물·전력의 제공, 교통통제와 재난정보의 최우선 제공

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주　　관 : 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기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 방　　법 : 긴급구조활동평가단(5인 이상 7인 이하) 구성·운영

- 긴급구조활동 관계인 출석·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

○ 평가내용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
-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이행실태
-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및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교육실적
- 긴급구조대응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 평가결과 조치

-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에 통보

4. 복구대책

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대　　상 : 극심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선포절차

심　　의	⇨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 통 령		대 통 령 (지역범위 명시 공고)

○ 특별지원내용

-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나.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구　　성 : 재난유형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

○ 운영시기 :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요활동내용

- 재난수습에 필요한 기술의 자문·권고 또는 조언
-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원인 및 진행전망 등의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다. 중앙합동조사단 구성·운영

○ 주　　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구　　성 : 관계중앙부처 전문직(토목, 농림, 산림 등) 공무원

○ 조사시기 : 여러 시·군·구에 걸쳐 피해우심지역 발생시

○ 주요활동내용

-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선무활동
- 지자체에서 보고한 피해원인 및 피해액 등 정밀조사
- 재난대장 및 피해복구계획(안) 작성 등

라.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 도입배경

- 풍수해 등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의존도 심화 및 재정부담 가중
- 국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자기책임형 재난관리 환경조성

○ 기본방향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시행('04. 12)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시행 추진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마. 손실보상

○ 책　　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　　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과 제46조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협의 및 재결의 신청

-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바. 치료 및 보상

○ 책　　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　　상

-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민간 긴급구조요원 등이 응급조치·긴급구조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긴급구조·복구와 관련하여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사.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대책

○ 임시수용 조치

- 인근 학교, 공공시설 등에 수용, 생필품 및 의료지원

○ 생계안정 지원

- 이재민의 구호,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

아.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 주　　관 : 소방방재청장

○ 주요내용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조직 구성 및 정비실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시정·보완요구

- 평가결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자. 재난관리에 대한 표창 및 문책요구

○ 표　　창

-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 공로자 및 기관·단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

○ 문책요구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

※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부서에도 통보

< 풍수해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지구환경변화에 의한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발생 횟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전 지구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리뇨현상, 오존층파괴 등으로 급속한 기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 증가 예상

○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학적 요인 및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등 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풍수해 급증

-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인 6, 8월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홍수재난의 위험성이 큼
- 도시 토지이용도의 극대화 및 산업화로 인한 재난발생 가능성의 증대로 인적 요인에 따른 재난 잠재력이 점차 증가

○ 따라서, 풍수해의 자연적 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인적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및 우리청 시행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1) 재해대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주도면밀한 재해예방

○ 재해발생시 신속대응체계 확립

○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대책

○ 재해복구 대책

나. 추진전략

1)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2)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3) 신속한 복구 의사결정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량 복구체계 확립·시행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풍수해예방대책 추진사항

1) 공 통

○ 홍수기전 각종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정비

- 도로,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 내수피해방지를 위한 수문 등의 설치 및 제방 정비
- 낙석·산사태 위험도로의 산사태 방지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토사재해대책 수립

○ 풍수해 종합 운영기능 강화

- 사업계획 수립시 수해방지대책 마련
- 하천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수립 및 추진

○ 풍수해에 대한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의 확보

- 도로 및 하천의 침수피해방지시설 정비
-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 방재교육 및 모의훈련의 실시

- 우기전 방재교육 및 홍수대비 모의훈련 실시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지정

2) 하천분야

○ 대상시설

- 하천시설제방·수문·배수관 등

○ 하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방안

- 점검대상 : 관내 국가하천
- 점 검 자 : 하천국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
- 점검시기
  - 재해사전대비기간중 : 3월부터 4월까지 1회 이상
  - 재해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기　　타 : 11월에서 2월 중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점검자를 실명으로 기록·관리

○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안전도 및 붕괴위험 요소 점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상황, 각종 하천점용시설물 정비 등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스핀돌,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 점검결과 조치 할 사항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 완료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사전 재해응급 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3) 도로분야

○ 대상시설

- 우리청 소관 일반국도

○ 도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방안

- 국도유지건설사무소단위로 관할구역내 도로 및 시설물 점검

- 점검자 : 사무소별 노선담당자 및 시설물 담당자

- 점검시기

· 재해사전대비기간중 : 4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재해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기　　타 : 11월에서 3월 중 1회 이상 점검

- 점검자는 실명으로 기록, 관리대장에 결과 등 작성

○ 주요 점검사항

-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기타 방재시설물은 지역의 재해유형을 감안하여 점검

- 도로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 배수시설(측구, 배수관, 암거등)의 배수가능 여부

· 노반의 침하 또는 융기여부

· 도로 성토부의 파손 및 유실여부

· 옹벽 및 석축등의 균열·파손, 세굴로 인한 위험여부

· 교량하부공 기초부위의 하상세굴로 인한 위험여부

· 절토사면의 뜬돌 및 용수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낙석 가능유무 등

·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등 기타 방재시설물은 재해유형을 감안하여 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사전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4)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특별관리

○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으로 관리 책임자 복수지정 등 특별관리

○ 재난 우려가 있는 일반 공사장도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나. 재해상황관리

1) 재해상황관리 흐름도

① 호우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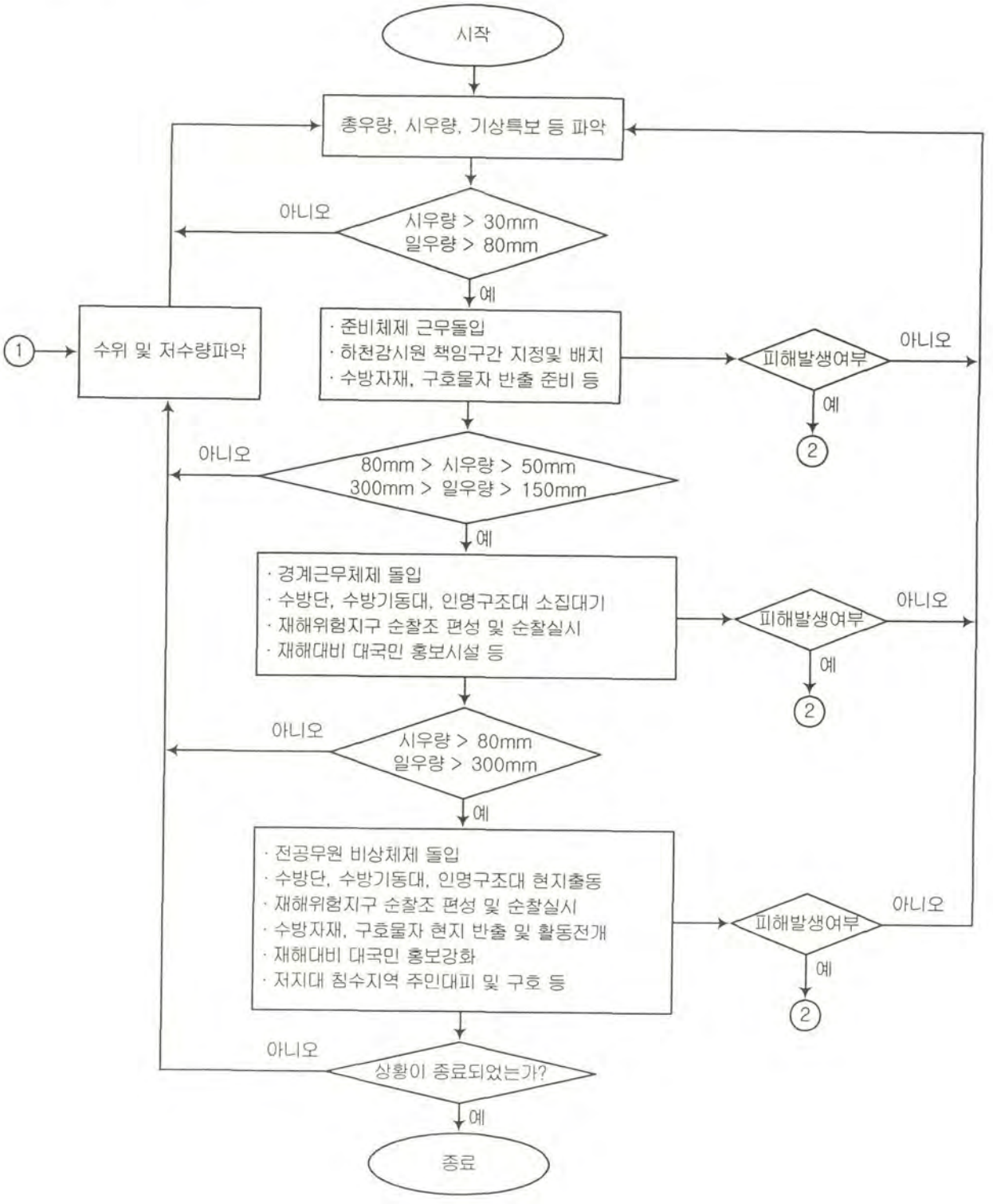

② 태풍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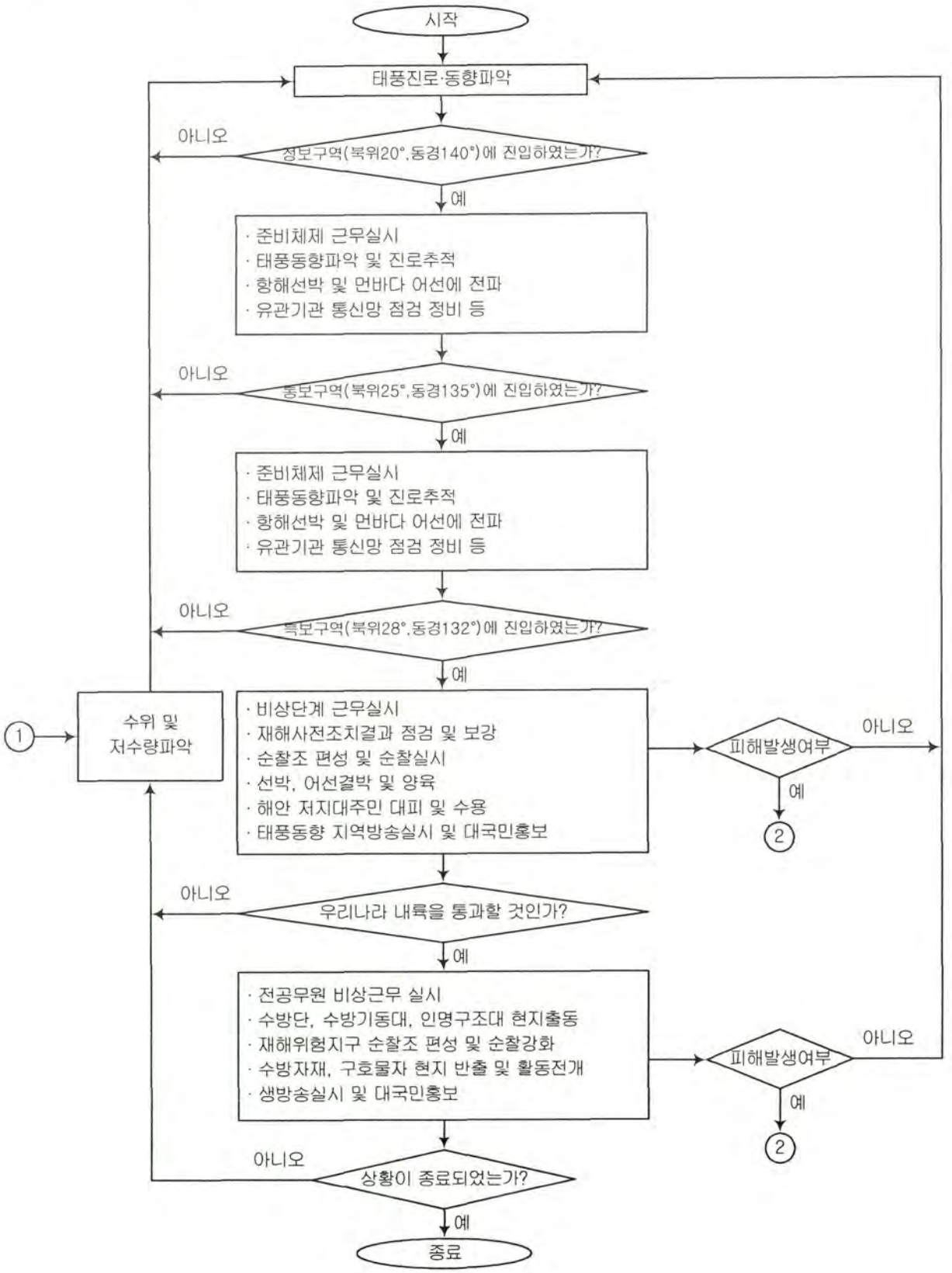
시작
태풍진로·동향파악
아니오
정보구역(북위20°,동경140°)에 진입하였는가?
예
· 준비체제 근무실시
· 태풍동향파악 및 진로추적
· 항해선박 및 먼바다 어선에 전파
· 유관기관 통신망 점검 정비 등
아니오
동보구역(북위25°,동경135°)에 진입하였는가?
예
· 준비체제 근무실시
· 태풍동향파악 및 진로추적
· 항해선박 및 먼바다 어선에 전파
· 유관기관 통신망 점검 정비 등
아니오
특보구역(북위28°,동경132°)에 진입하였는가?
예
①
수위 및
저수량파악
· 비상단계 근무실시
· 재해사전조치결과 점검 및 보강
· 순찰조 편성 및 순찰실시
· 선박, 어선결박 및 양육
· 해안 저지대주민 대피 및 수용
· 태풍동향 지역방송실시 및 대국민홍보
피해발생여부
아니오
예
②
아니오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할 것인가?
예
· 전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 수방단,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 현지출동
· 재해위험지구 순찰조 편성 및 순찰강화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및 활동전개
· 생방송실시 및 대국민홍보
피해발생여부
아니오
예
②
아니오
상황이 종료되었는가?
예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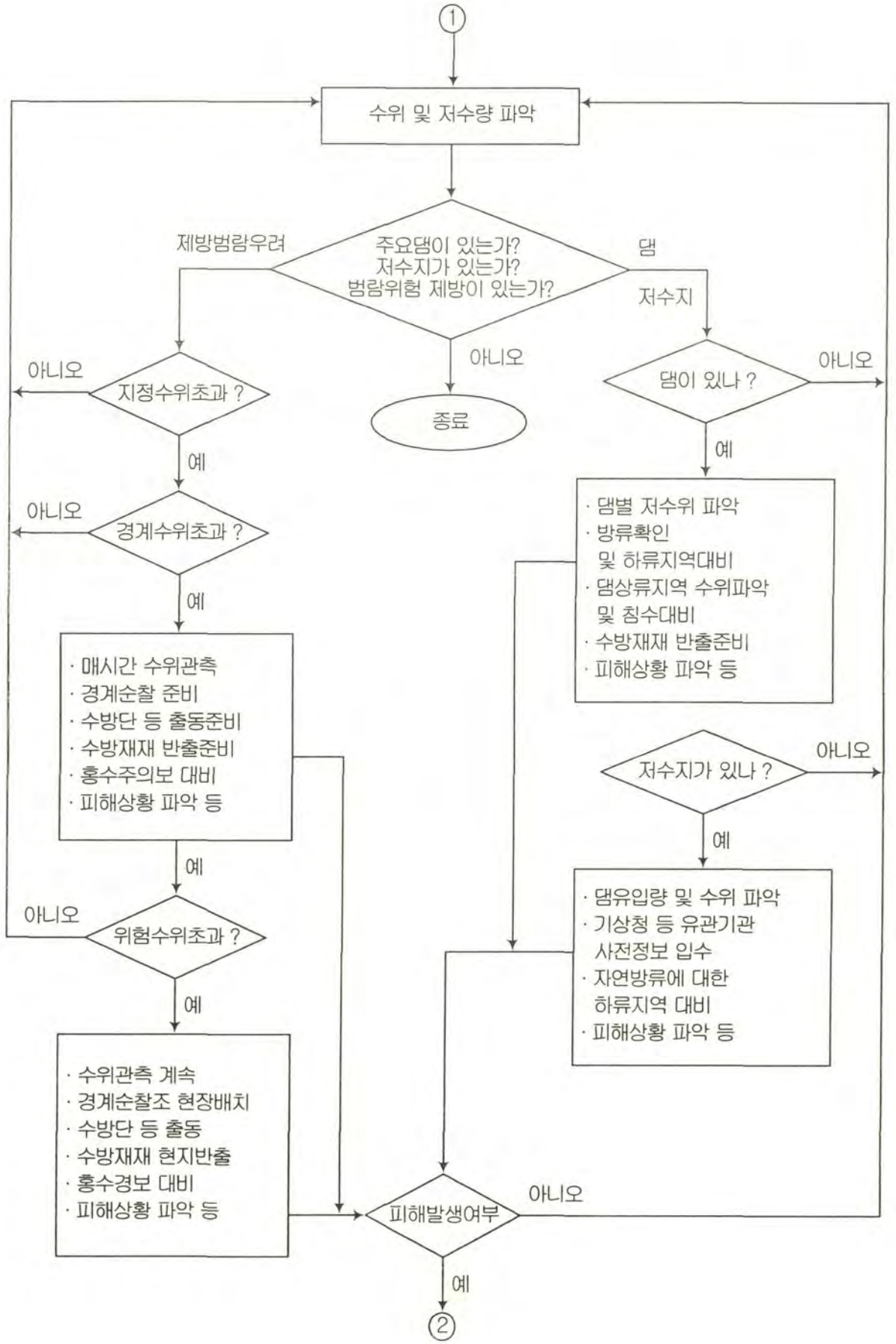
①
수위 및 저수량 파악
주요댐이 있는가?
저수지가 있는가?
범람위험 제방이 있는가?
제방범람우려
댐
저수지
아니오
종료
지정수위초과 ?
아니오
예
경계수위초과 ?
아니오
예
· 매시간 수위관측
· 경계순찰 준비
· 수방단 등 출동준비
· 수방재재 반출준비
· 홍수주의보 대비
· 피해상황 파악 등
예
위험수위초과 ?
아니오
예
· 수위관측 계속
· 경계순찰조 현장배치
· 수방단 등 출동
· 수방재재 현지반출
· 홍수경보 대비
· 피해상황 파악 등
댐이 있나 ?
아니오
예
· 댐별 저수위 파악
· 방류확인
및 하류지역대비
· 댐상류지역 수위파악
및 침수대비
· 수방재재 반출준비
· 피해상황 파악 등
저수지가 있나 ?
아니오
예
· 댐유입량 및 수위 파악
· 기상청 등 유관기관
사전정보 입수
· 자연방류에 대한
하류지역 대비
· 피해상황 파악 등
피해발생여부
아니오
예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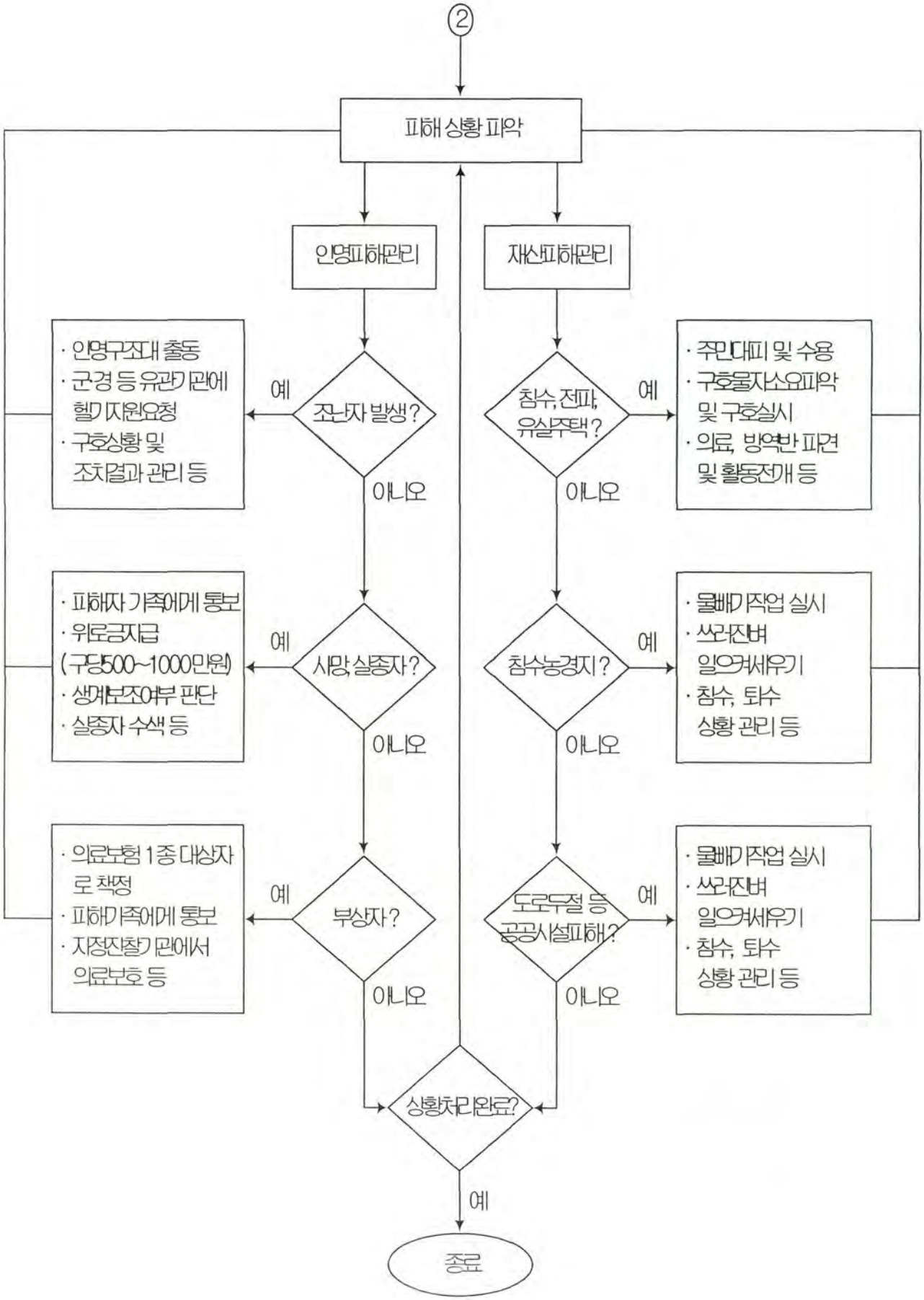
②
피해 상황 파악
인명피해관리
재산피해관리
· 인명구조대 출동
· 군경 등 유관기관에 헬기 지원요청
· 구호상황 및 조치결과 관리 등
예
조난자 발생?
아니오
침수, 전파, 유실주택?
예
· 주민대피 및 수용
· 구호물자소요파악 및 구호실시
· 의료, 방역반 파견 및 활동전개 등
아니오
·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
· 위로금지급 (구당500~1000만원)
· 생계보조여부 판단
· 실종자 수색 등
예
사망, 실종자?
아니오
침수농경지?
예
· 물빼기 작업 실시
· 쓰레기 및 진흙 일으켜세우기
· 침수, 퇴수 상황 관리 등
아니오
· 의료보험 1종 대상자로 책정
· 피해가족에게 통보
· 자정진찰기관에서 의료보호 등
예
부상자?
아니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피해?
예
· 물빼기 작업 실시
· 쓰레기 및 진흙 일으켜세우기
· 침수, 퇴수 상황 관리 등
아니오
상황처리완료?
예
종료

다.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1) 준비체제

○ 조　건 : 기상특보(호우, 태풍)발령으로 댐수위 또는 하천수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근무조 편성 : 정보반장 및 반원 3명(각반 1명)

○ 행동방법

① 주　간 : 평시근무

② 야　간 : 근무조 편성근무(필요시)

○ 조치사항 : 기상, 기타 재해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을 관망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경계체제

○ 조　건 : 홍수예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근무조 편성

- 반장 : 각 반장

- 반원 : 전직원의 1/3 근무(필요시 근무요원을 증·감)

○ 행동방법

① 재해대책 비상근무

② 상황실 설치운영

③ 24시간 교대근무

○ 조치사항

① 국도유지는 자체 근무조 편성 운영

② 공사 현장감독관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대기지시 및 비상연락망 정비

3) 비상체제

○ 조　건 : 전국적인 홍수발생 또는 막심한 홍수 재해 발생 예상시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근무조

- 반장 : 각 반장
- 반원 : 전직원 1/2(필요시 인원증·감)

○ 행동방법

① 재해대책 비상근무

② 상황실 설치운영

③ 24시간 교대근무

4) 상황관리 및 보고·협조체제 확립

○ 비상근무자는 6개시점(06:00, 08:00, 11:00, 14:00, 17:00, 22:00) 기준으로 상황 관리한다.

○ 재해보고 계통을 정비하고 모든 재해보고는 보고계통에 의해서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 (발생보고, 1일보고, 확정보고)

○ 공사현장과 소관 시설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재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우리청 주무국에 보고.

○ 피해보고를 받은 주무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담당과장)에게 즉시 보고.

라. 풍수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풍수해대책에 관한 연구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2) 자료의 보전

- 풍수해 발생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자료보관체제의 정비
- 중요한 소관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를 정비

2. 대비대책

가.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풍수해대책편람을 작성하여 수해대응계획 수립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지원 강화

나. 방재교육 및 모의 훈련 실시

○ "풍수해 예방의 달"인 5월에 방재교육 및 홍수대비 모의훈련 실시(5월 25일,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 정보의 수집·전달, 구원요청 등 실천적인 방재훈련 실시

○ 군부대·민간봉사자단체·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훈련 실시

다.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홍수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 관련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방안 강구

○ 침수지역 등 재해지역 주민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안내

○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장비지원과 자재지원 등 응급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재해발생지역에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통제구역 설정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

○ 재해복구 완료 시까지 각급 행정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피해지역 현장 정리 및 복구 완료시까지 차량 및 통행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다.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 하천분야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응급조치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침수피해 확대방지
- 침수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실시

2) 도로분야 재난의 확대방지

- 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통행금지 및 응급조치
-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실시

라.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항공등 대체 교통수단이 즉시 필요할 경우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보고하여 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차량 등 통행 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설치 및 대국민홍보

○ TV등 특별방송 유도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강구

○ 피해교통시설의 응급복구 방안강구

4. 복구대책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공사현장에는 수방자재를 사전에 비축

○ 관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활동 지역을 국도유지소장이 분담하여 운영

제 3 절 참고사항

1. 재해대책기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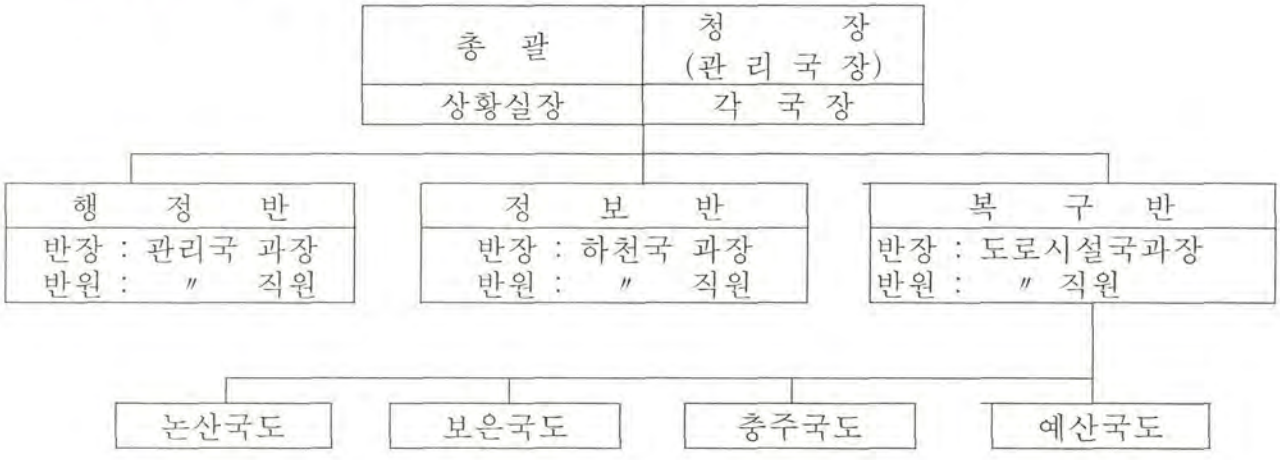

2. 단계별 근무조의 임무

단계 / 반편성	준 비	경 계	비 상
1. 정보반	①기상 정보수집 ②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	①기상개황 및 특보사항 수집 ②수문자료수집 및 분석 ③주요지점하천수위 변동 파악 ④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	①기상개황 및 특보사항 계속 수집 ②수문자료 계속 수집 및 분석 ③우리청 소관시설인 국가하천 국도에 대한 피해 현황파악 및 상황실 운영 ④피해복구 설계서 작성
2. 복구반	①수해 정보수집 및 상황파악 및 조치 ②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	① 국도유지와 공사 현장은 장비점검 및 대기	①피해복구 시행에 관한 사항 ②차량 및 중장비지원사항 ③수방자재 지원에 대한 사항
3. 행정반	①비상연락망 점검	①각반 및 산하사무소에 경계태세 지시 ②비상근무조 운영 관리등 기타 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비상태세 및 동원지시 통보 ②구호(병원및소방서) 연락사항 ③근무조 운영 관리 등 기타 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장비현황

구분 / 장비명	단위	계	수량			
			논산국도	예산국도	충주국도	보은국도
타이어도쟈	대	-	-	-	-	-
모우터 그레이더	〃	-	-	-	-	-
덤프트럭	〃	31	9	8	7	7
페이로다	〃	5	2	1	1	1
스키드로우더	〃	-	-	-	-	-
더블캡카고트럭	〃	15	5	4	4	2
승용차	〃	7	2	2	1	2
봉고더블캡	〃	5	1	2	1	1
트레일러	〃	4	1	1	1	1
장비운반트럭	〃	3	1	-	1	1
지게차	〃	1	-	-	1	-
미니버스	〃	14	2	3	5	4
굴삭기	〃	8	2	2	2	2
진동로울러	〃	4	1	1	1	1
밴트럭	〃	2	-	2	-	-
합계		99	26	26	25	22

4. 재해용비축 자재현황

품명	단위	계	논산국도	예산국도	충주국도	보은국도
I빔	본	134	-	31	67	36
흄관	〃	185	-	70	74	41
마대	대	86,200	66,000	8,000	10,000	2,200
막자갈	〃	3,250	200	-	3,000	50
비닐	롤	64	20	31	8	5
안전간판	개	650	200	70	200	180

5.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지역구분	방재활동지휘 책임부서	예방활동 및 복구 지원 대상 지구	비고
충주 지역	충주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관할구역일원(충주시포함) (제천시포함)	
보은 지역	보은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관할구역 일원(청주시포함)	
논산 지역	논산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관할구역 일원(대전광역시포함) (공주시 포함) (논산시 포함)	
예산 지역	예산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관할구역 일원(아산시포함) (보령시포함) (천안시포함) (서산시포함)	

6. 풍수해대책 연락망도

총괄	청 장 670-3200 (교) 200
	관리국장 670-3210 (교) 210

건설교통부	
당직실	02-503-7400
상황실	02-504-9043,4

대전광역시 :042-600-3723
FAX 600-2719
충청남도 :042-220-3642
FAX251-2671
충청북도 :043-220-4542
(교 환) 043-220-2114
(FAX) 043-220-45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326
(전) 88-85-320
한강홍수통제소 : 02-596-4053
(전) 88-91-320
금강홍수통제소 : 041-853-1073
(전) 88-93-320
A.R.S (041)854-7700-1
금강 하구언 : 063-450-9933
(FAX) 063-450-9929
삽교천방조제 : 041-362-8302

도로시설국장	670-3500 (교) 500

상황실장	하천국장 670-3300 (교) 300 FAX:670-3303

건설관리실장	670-3400 (교) 400

행정반
관리국 670-3221 (교) 221

정보반
하천국 670-3311 (교) 311

지원반
도로시설국 670-3521 (교) 521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1)736-7064
(직)670-3540
(교) 540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3)845-2225
(직)670-3550
(교)550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3)543-8239
(직)670-3560
(교) 560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1)333-7102
(직)670-3570
(교) 570

7. 유관기관 연락망도

구분	기 상 청	금강 홍수통제소	충남도청	농업기반공사 예당지사	농업기반공사당 진지사
일반	자동응답 : 131 대전: 863-0365 청주:(043)263-0365 전주:(061)284-0365	(041) 853-1072,3,5 Fax 856-5581	(042) 220-3642 Fax 251-2671	(041) 335-2141 Fax 332-3161	(041) 355-1853 Fax 351-9155
전용	FAX : 863-0369	88-93-320 Fax88-93-305	치수방재과 220-3642	관배과 335-2142	삽교호사무소 362-8302

【충청남도 시·군 연락처】

구 분	대표전화	일반전화	FAX
충남도청	(042) 220-3114	재해대책본부 220-3642	(042) 251-2671
대전광역시청	(042) 600-3114	건설방재과 600-2711	(042) 600-2719
천안시청	(041) 550-2114	방 재 담 당 550-2484	(041) 550-2489
공주시청	(041) 853-2111	방 재 담 당 850-4398	(041) 850-4498
보령시청	(041) 930-3114	치수방재담당 930-3496	(041) 930-3667
아산시청	(041) 540-2114	방 재 담 당 540-2497	(041) 540-2389
서산시청	(041) 660-2114	재난방재담당 660-3497	(041) 660-3699
논산시청	(041) 730-1114	방 재 담 당 730-1497	(041) 730-1416
계룡출장소	(042) 840-2114	도 시 계 840-2431	(041) 840-2693
금산군청	(041) 750-2114	치수방재담당 750-2497	(041) 750 2489
연기군청	(041) 861-2400	재난방재담당 861-2591	(041) 861-2589
부여군청	(041) 830-2114	방 재 담 당 830-2497	(041) 830-2649
서천군청	(041) 950-4114	치수방재담당 950-4497	(041) 950-4457
청양군청	(041) 940-2114	방 재 담 당 940-2497	(041) 940-2490
홍성군청	(041) 630-1114	방 재 담 당 630-1265	(041) 630-1489
예산군청	(041) 330-2114	방 재 담 당 330-2497	(041) 330-2498
태안군청	(041) 670-2114	방 재 담 당 670-2265	(041) 670-2484
당진군청	(041) 350-3114	방 재 담 당 350-3497	(041) 350-3397

대청댐 (042) 930-7200, 충주댐(043) 840-1211,1212,1240

수자원공사 상황실 (042) 629-3416~7, 금강하구언 (063)450-9933

【충청북도 시·군 연락처】

구 분	대표전화	일반전화	FAX
충북도청	(043) 220-2114	재해대책본부 220-45415	(043) 220-4519
청주시청	(043) 220-6114	방 재 담 당 220-6453	(043) 220-6459
충주시청	(043) 850-5114	치수방재담당 850-5384	(043) 850-5389
제천시청	(043) 640-6114	방 재 담 당 640-5801	(043) 640-5809
청원군청	(043) 251-3114	재난방재담당 251-3494	(043) 251-3498
보은군청	(043) 540-3114	재난방재담당 540-3494	(043) 540-3499
옥천군청	(043) 730-3114	재난방재담당 730-3497	(043) 730-3498
영동군청	(043) 740-3114	재해대책담당 740-3515	(043) 740-3519
진천군청	(043) 539-3114	재난방재담당 539-3019	(043) 539-3498
괴산군청	(043) 830-3114	재난방재담당 830-3483	(043) 830-3498
음성군청	(043) 871-3114	재난방재담당 871-3492	(043) 871-3519
단양군청	(043) 420-3114	방 재 담 당 420-3497	(043) 420-3498
증평군청	(043) 835-3114	방 재 담 당 835-3813	(043) 835-3809

【유 관 기 관】

구 분	전 화	F A X
소방방재청	(02) 3703-4949	(02)3703-5590
건설교통부	(02) 504-9043-4	(02) 504-9112
충청남도	220-3642	251-2671
금강홍수통제소	(041) 853-1073	(041) 856-5581
KBS 방송국	470-7433	470-7199
MBC 방송국	330-3414	330-3703
TJB 방송국	281-1285	285-8822
YTN 방송국	226-8351	226-8357
대전지방기상청	863-0365	863-0369
충남공보관실	251-2031	251-2039
예산군청	(041) 330-2201	(041) 330-2699
당진군청	(041) 350-3201	(041) 350-3699
아산시청	(041) 544-3001	(041) 540-2219
대전일보	251-3418	254-3323
대전매일	521-5541	521-5538
중도일보	530-4351	535-5310
연합통신사	256-5030	254-5030
국도일보	605-9129	605-9191
충남일보	602-5007	602-5013
충청일보	626-0202	632-0077

8. 수해 피해예상도로 및 우회도로 현황

(충 주 국 도)

재해구분	노선번호	피해예상도로	우회도로	비 고
수 해	국도3호선	이천 - 감곡	이천-일죽-생극-감곡	감곡천
〃	〃	주덕 - 충주	주덕-이류-가금-충주	달천천
〃	국도5호선	신림 - 봉양	신림-중앙고속-제천	용암천
〃	국도19호선	괴산 - 살미	괴산-불정-충주-살미	석문천
〃	국도34호선	괴산 - 장연	괴산-감물-살미-장연	쌍 천
〃	국도36호선	살미 - 단양	살미-수산-제천-단양	충주호,적곡천
〃	국도37호선	사담 - 청천	용화-산외-보은-청천	용화천
〃	〃	소수 - 음성	괴산 - 도안 - 음성	동진천
〃	〃	음성 - 금왕	음성-주덕-생극-금왕	사정천
〃	국도38호선	앙성 - 산척	앙성-가금-충주-산척	남한강
〃	국도59호선	단양 - 덕천	단양 - 하괴 - 덕천	남한강

(예 산 국 도)

재해구분	노선번호	피해예상도로	우회도로	비 고
수 해	국도 1호선	천안 - 평택	천안-성환-둔포-평택	안성천
	국도 21호선	서천 - 보령	서천-주산-도화담-보령홍	웅천천
	〃	홍성 - 예산	성 - 덕산 - 예산	금마천, 무한천
	〃	아산 - 천안	아산 - 음봉 - 천안	곡교천
	〃	천안 - 병천	천안-입장-진천-병천	금천천
	국도 32호선	신 평 운 정-삽교방조제	신평운정-국민관광단지-배수갑문-삽교방조제	삽교호
	국도 32호선	합덕 - 예산	합덕-고덕-오가-예산	무한천
	국도 34호선	둔포 - 성환	둔포 - 평택 - 성환	성환천
	국도 45호선	예산 - 덕산	예산 - 홍성 - 덕산	삽교천

(논산 · 보은 국도)

재해구분	노선번호	피해예상도로	우회도로	비 고
수 해	해	당	없	음

비 상 근 무 현 황 보 고

(2005 . . . : 시 현재)

수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발신 :

1. 기관명(공사명) :

2. 일 시 : 2005 년 월 일 : 현재

3. 비상근무인원 : ○○○ 외 ○○명

4. 기상현황

○기상특보 :

○관내주요지점 강우량 :

5. 관내피해현황

위 치	피해현황		응급조치내용		비고
	일시	내 용	일시	내 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고 양식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비상근무시 보고양식임)

< 설해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도로,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설해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폭설, 결빙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 빈발

○ '04년 3월 충청지방의 기록적 폭설로 초래된 교통정체 등 재난관리에 많은 문제점 노출

○ 비상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장비 및 물자비축의 근원적 한계

○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방재기술 연구 필요

○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장비·물자 비상동원시스템 구축 및 도로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체계 확립 필요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예방적 설해 예방대책 추진

○ 종합적 설해 대비대책 구축

○ 신속한 설해 대응대책 강화

나. 추진전략

○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단계별 설해대책 및 시설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대책 수립

- 도로분야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 폭설시 장애를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先-제설, 後-통행' 정착

○ 피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추진

제2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설해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 시설별, 지역별, 기관별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설해예방을 위한 조직정비, 인원·장비확보, 자재비축

○ 도로별, 지역별 교통대책 및 교통시설별 설해경감대책 강구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설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시행

○ 유관기관 협조·응원체계 강화 및 구호체계 확립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2) 시설별

가) 제설체제의 정비(공통사항)

○ 비상근무 및 정보전달(보고)체계 확립

○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 사전확보 및 현장 비축

○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제설요원 동원·배치계획

○ 설해 위험·취약지역(요소) 사전 점검·대비

○ 설해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실시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나) 도로별 제설대책수립

○ 제설작업반 편성 및 교통통제계획 설정

- 제설작업반 사전편성(인력 및 장비 포함)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계획 설정

○ 우회도로 지정 관리

-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 취약구간 및 우회도로 지정 관리

○ 설해방지 종합대책(2004. 3) 추진

-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분야의 '설해방지 종합대책' 지속 추진 및 피해 재발방지

나. 설해예방대책 연구 및 홍보 촉진

○ 설해대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료의 집적
- 설해대책에 관한 시설별 방재기술 연구개발

○ 설해예방을 위한 방재지식 보급 및 안전문화 정착운동

- 겨울철 안전운행요령 등 방재지식 보급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2. 대비대책

가. 재난관리 체제 구축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구축

-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구축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취약구간에 장비를 상시 또는 강설 예보시(강설확률 60%) 강설 전 현장배치

○ 제설대책 상황실 설치

- 제설대책 상황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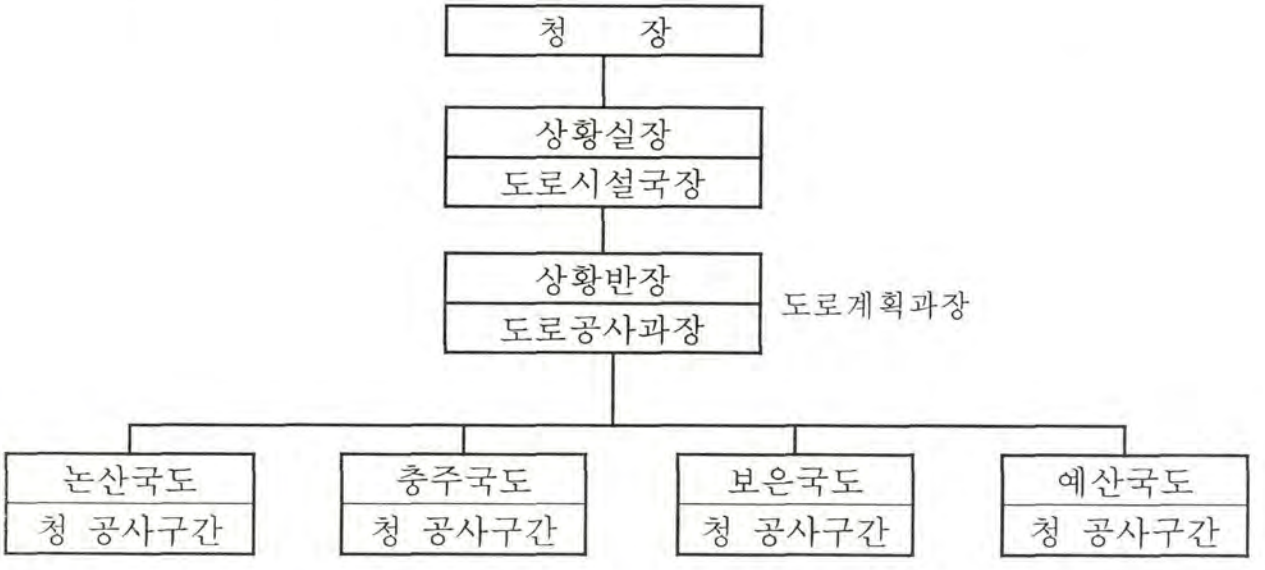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별도의 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

- 운영시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분야별로 다음 운영요건 해당시, 기타 제설대책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자연재난대책기간(겨울철) :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필요시 11월 15일부터

· 국토관리청 :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 운영장소 : 상황실 운영 근무

나. 재난 대비 훈련 및 홍보대책 강화

○ 재난 대비 모의훈련실시

- 설해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전달, 지원요청, 구조·구급 등 실천적 모의훈련 실시
- 연 1회이상 실시 및 훈련평가

○ 설해정보 전달(보고)체계 구축

- 기상·교통상황 등 설해관련 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통신수단 확보

○ 재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안전정보제공 및 홍보

- 폭설시 차량운전자 등에 대한 강설상황,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교통정보사항 등 안전정보제공 계획 수립
- 겨울철 재난대비 행동요령과 대국민 협조사항 등 홍보계획 수립

다.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제설재료 등 사전확보

○ 제설장비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제설차, 그레이더, 덤프, 제설삽날, 모래살포기 등 장비 확보 및 점검

○ 제설재료 등 사전 확보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재료와 모래 등 사전 확보
- 자재적치장(적사장, 저장창고, 슈트장, 적사함 등) 확충 비축
- 굽은 길, 응달진 길, 교량구간 및 터널 입·출구 등 취약 구간에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표지 등 위험표지 설치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간판 사전준비

라. 취약구간 관리대책 강화

○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 취약구간 지정관리(21개소)

- 과거 교통통제가 실시되었던 구간 등을 취약구간으로 지정 특별 관리

○ 우회도로 사전 지정(11개소)

- 교통소통 취약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사전 지정관리

※ 교통통제시의 통행차량 회차지점, 체인 탈·부착 장소 등의 지정 관리 및 홍보안내판 사전 설치

○ 교통두절 및 취약구간 장비·인력 사전 배치

- 고갯길, 강설다발지역, 교통량이 많은 주요구간에 장비 등을 상시배치 또는 강설전 현장배치 완료토록 사전배치 계획 수립

3. 대응대책

가. 설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관계직원의 비상소집
- 단계별(상황별) 제설대책상황실 설치 및 비상근무실시

[비상근무 체계도]

강설예보	→	비상소집	→	출 동	→	제설작업
• 기상정보수집 (자동수신 체계 구축-기상청) • 취약구간 교통 정보수집 (모니터요원, 경찰초소 등)		• 비상연락망 가동 • 비상소집 • 노선별 출동 장비·자재 및 인원 점검		• 장비 및 인력 출동, 현장 사전대기 • 습염식 제설방법운용시 강설전 살포 • 적설량, 교통상황 등 보고		• 제설작업 실시 (RemOving, 염화칼슘·모래살포) • 긴급상황시 유관기관 연락망 가동 (긴급구조기관, 재난구조부대, 경찰관서 등)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점검

-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Hot-line 확보)

· 기상정보(기상청, 기상대, 측후소)

· 교통통제 협조(경찰관서)

· 교통정보 및 재난 · 안전정보 홍보(방송사)

-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 지역)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재난구조부대 등)

나.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방송매체 활용 신속 전파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재난 대비요령 안내

- 교통 통제상황, 우회도로 및 대체 교통수단 안내

- 운행차량 월동장구 휴대 등 겨울철 재난대비요령 안내

다. 도로 제설작업 시행

1) 제설작업 목표

< 재난에 강한 도로관리 >

◆ 철저한 사전대비 ⇒ 재해 최소화
◆ 신속한 제설 · 제빙 ⇒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도로환경
◆ 先-제설작업, 後-통행 ⇒ 국민의 생명보호(인명중시)

2) 제설작업 기관

○ 도로관리청별 책임제설

- 관할 구간의 제설작업지연에 따른 교통소통 불편민원 발생 또는 교통두절에 따른 고립차량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 제설 실시

○ 원격지 관할구역 경계구간 조정시행

- 국도사무소 간 또는 지방청 간 관할구역 경계에 위치한 고갯길 등은 동일기관 제설작업시행으로 동시 소통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관리구간 조정시행

3) 제설작업의 우선 순위 설정

○ 관할 지역 내 도로의 제설작업 우선순위 사전 설정

- 제설 수준을 고려하여 중요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대응함

○ 제설수준 설정

- 교통량 및 도로의 등급에 따른 각 제설 수준으로 요구되는 정도

제설 수준	목표 도달시간	지 방 부	도 시 부	적용수준
A	2시간	· 4차로 이상 일반도로 (20,000대/일 이상)	· 주간선도로	평시운행의 5060%
B	3시간	· 4차로 이상 일반도로 (20,000대/일 미만) · 2차로 일반도로 (5,000대/일 이상)	· 보조간선도로	평시운행의 4050%
C	5시간	· 2차로 일반도로 (5,000대/일 미만)	· 집산 도로 · 국지 도로	통행로 확보

※ 1. 위의 도로 제설 수준에서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폭설시에는 위의 제설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도로 및 교통 조건, 관리 연장과 장비 여건 등에 맞게 조절 가능

4) 효과적인 도로 제설작업 시행

○ 공통 사항

- 밀어내기 작업이 필요한 적설량 기준은 23cm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
- 작업은 [밀어내기제설제 살포]로 하되, 적설량에 맞추어 시행
- 단계별 제설작업요령
  - 제설 작업 초반 : 통행로 확보
  - 제설 작업 중반 : 목표 제설 수준 확보
  - 제설 작업 종반 : 잔설 제거 및 결빙 예방 작업
- 음지, 교량 구간, 경사 구간, 연결로 등 결빙 예상 구간 또는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융설제와 마찰제(모래)를 혼합 살포

○ 적설량 및 기온 조건별

- 적설량 3cm 이하
  - 제설제만 살포(습염식은 눈이 내리기전에 노면 살포)
  - 평지 구간에는 융설제만 살포
  -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마찰제(모래) 혼합 살포
- 적설량 3cm 이상
  - 제설제만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설 삽날로 밀어내기 작업 후 제설제 살포
- 기온 기준
  - 상당히 압설된 경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구간이 결빙이 되었을 때는 그레이더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 수행
  - 결빙되었을 때는 그레이더의 삽날만으로 얼음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면결빙파쇄기를 장착하여 결빙 제거

· 결빙 구간 : 결빙 제거 후 제설제(융설제 + 마찰제) 살포

· 기온이 영상이고, 결빙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덤프 트럭이나 다목적 제설차에 제설 삽날을 부착하여 밀어내기 작업 수행

○ 시간대별 제설 작업

- 새벽 시간대(목표 : 통행로 확보)

· 출근 시간 이전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밀어내기 작업 후 제설제 살포

· 본격적인 출근 2시간 전(일반적으로 새벽 45시 정도)부터 집중적인 제설 작업 수행

- 낮 시간대(목표 : 도로의 확보 및 노측 눈 제거)

· 도로상의 눈을 제거하기 위해 밀어내기 작업을 반복 시행 후 제설제 살포

· 노측에 쌓여 있는 눈을 제거

- 오후 시간대(약 오후 3시 이후, 목표 : 재결빙 방지)

· 야간 재결빙 방지를 위한 작업 수행

· 유연화(slush)된 눈을 제거하여 야간 재결빙 방지

· 음지, 교량 구간 등 상습 결빙 지역에 마찰제 혼합 살포

5) 폭설시 교통 통제실시

○ '先-제설, 後-통행' 시행

- 폭설시 신속한 장애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先-제설, 後-통행' 실시

· 신속한 교통통제를 위해 사전에 경찰관서(지구대, 초소 등)와 협조체제 구축

· 우회도로 사전 지정 및 교통 안내(통제)표지판 설치(준비)

- 폭설로 인하여 장시간 차량이 고립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등과 협의, 통행제한(금지) 실시

· 고장 또는 고립차량의 신속한 구난 · 구호체제 구축

·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안내 · 홍보,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 적설량에 따른 차량통제 기준(산간지 기준)

구 분	적설량 및 노면상태	통 제 내 용
전면통제	- 노면적설 10㎝이상이고 계속 강설일 때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모든 차량 통행금지
부분통제	- 노면적설 5 ~ 10㎝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월동장구 미 장착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금지

※ 1. 현지상황에 따라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운용

2. 노면적설은 해당구간의 노면에 쌓여있는 적설량으로 강설량과는 다름

라. 재난 상황 보고

○ 긴급 재난상황 유형

- 폭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시(도로, 철도, 항공)
- 대규모 교통두절 · 고립 발생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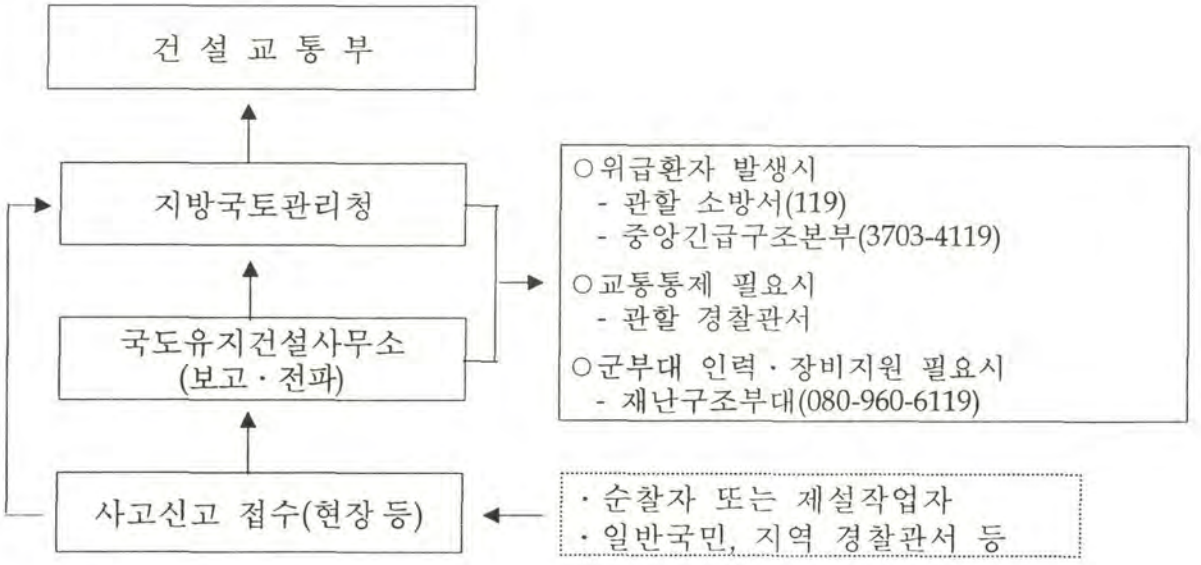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 운용

○ 보고내용

- 발생일시, 장소
- 상황개요, 사고원인
- 피해상황, 응급환자 발생여부
- 주요 조치내용
- 지원 및 협조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편람 등 지정서식에 따라 보고

○ 보고 종류

- 발생 보고 : 발생 즉시 상황, 주변 교통 상황, 수습 상황 등
- 진행사항 보고 :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 완료 보고 : 상황 종료시 즉시 보고

○ 상황 전파

- 교통통제 필요시 : 차량통제, 우회도로지정 협조

※ 시·군·구, 지역 방송사에 차량통제사항, 우회도로 등 홍보

- 도로통제, 항공기 결항, 고속열차 운행제한 등 재난사항 및 우회도로, 비상수송대책 등 홍보·안내
- 응급환자 발생시 : 관할소방서, 중앙(지역)긴급구조본부
- 군부대 인력·장비지원 필요시 : 재난구조부대

마. 긴급 구조·수습대책

1) 수습 및 복구

[수습·복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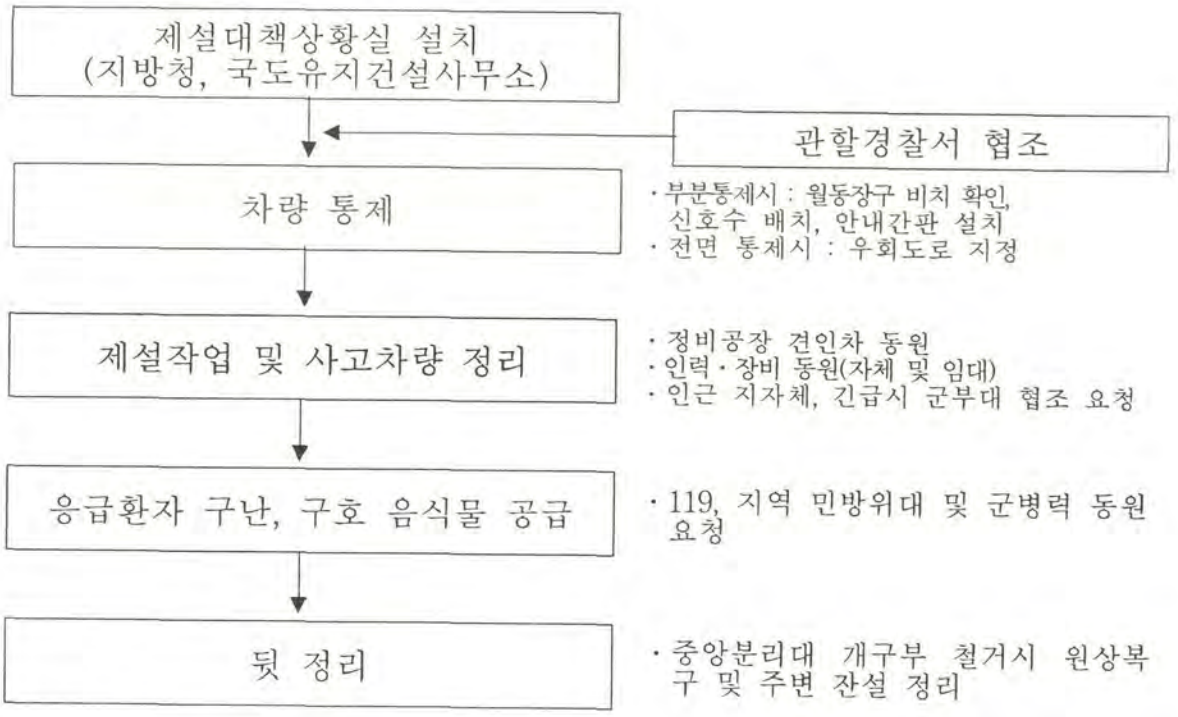

○ 제설대책 상황실 설치

- 집행반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상황반 : 지방청

○ 상황 파악 및 조치

- 현장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 부분 통제시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휀스, 전광등 등 차량 유도시설 설치

· 체인 미 장착 차량 또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차량통제 안내간판 설치

- 전면 통제시(우회도로 지정 운영)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차단시설 설치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우회도로 지정

· 우회도로 시·종점에 안내간판 설치

※ 우회도로 지정내용, 복구 및 정상소통 예정일시 등을 기재

· 시·군 및 방송사 등에 우회도로 지정에 대한 주민홍보 및 보도요청

○ 사고 복구 및 제설작업 실시

- 복구 장비, 인원, 자재소요 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조속한 응급 복구 및 차량소통 재개 조치

· 자체 인원, 장비를 현장에 출동

· 자체 응급 복구가 어려울 시에는 인근 사무소, 지자체 (시·군·구) 및 군부대 등에 지원, 협조요청

- 언론대응 및 홍보

· 기관장 책임 하에 긴급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본부에 보고

· 복구 완료 및 상황 종료시 언론기관에 홍보

○ 뒷정리

- 개구부 확보 등으로 철거된 중앙분리대 원상 복구

- 잔설 처리

2) 긴급구조(장시간 고립 등 인명피해발생 우려시)

[긴급구조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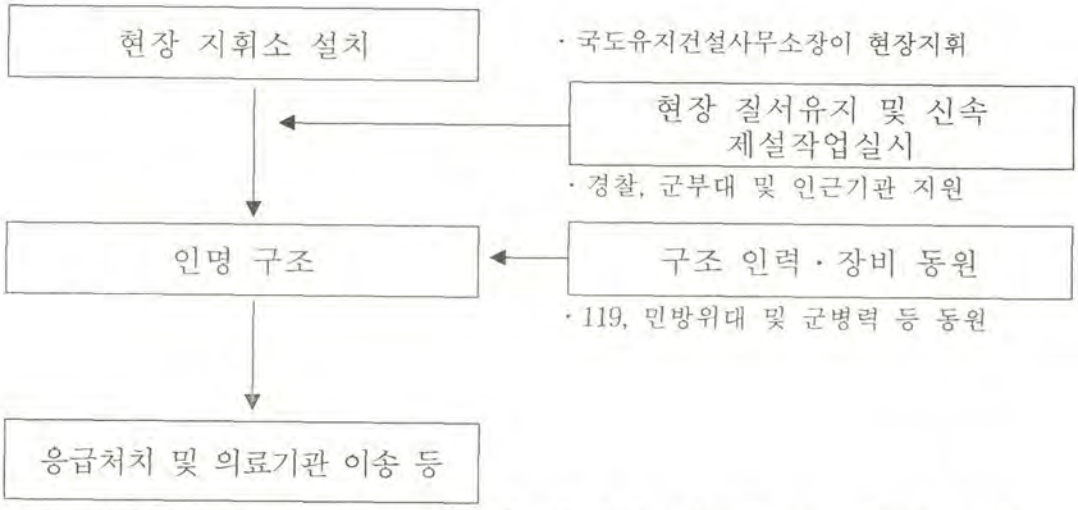

※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시 지휘 · 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소 설치

- 현장 지휘 : 기존도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현장 지휘
- 현장출동 각 기관간 지휘 · 공조체제 유지
- 상황실과 현장지휘소간 유 · 무선 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 · 통제

○ 사고현장 질서 유지

- 교통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 병원간 교통로 확보
- 경비 및 질서유지

○ 인명 구조

- 우선적으로 긴급 구조활동 전개, 인명구조
-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 요청(소방본부, 소방서, 재난구조부대,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 구급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구조 · 이송을 위한 헬기 구조요청

· 중앙긴급구조본부(3703-4119), 관할 소방관서(119)

○ 구호물품 보급

- 폭설 등으로 도로에 고립된 차량 및 도로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할 비상용 구호품 보급(연료, 식음료 등)
- 구호품을 신속, 체계적으로 배분키 위해 인근 군부대(장병동원), 민방위, 자원봉사단체(적십자 등) 등 지원인력 활용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재난상황에 따른 응급복구반 편성

- 복구장비, 인원, 자재 소요파악
- 전문인력 장비 지원요청

○수습복구

- 피해상황, 시설 및 지역특성에 따른 복구방법 결정
-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나. 재발 방지대책 수립·추진

○ 제설장비 점검·정비 및 자재 보충

○ 잔설제거, 청소, 현장정리 및 추가 강성 대비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 재난대비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법령정비
- 시설개량
- 장비확충 등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명		총투자계획 (2005 ~ 2007)		2005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시설 1식 장비 96대	9,144	시설 1식 장비임대 62대	3,183
설해대책	지원시설 설치	계) 28 개소 모래저장탱크 1 교반기 5 제설창고(크레인포함) 5 수용액 저장탱크 8 염화물적재용 호퍼 4 제설대기소 5	3,853	계) 13 개소 모래저장탱크 - 교반기 2 제설창고(크레인포함) 3 수용액 저장탱크 2 염화물적재용 호퍼 2 제설대기소 4	1,028
	제설장비 구입	계) 96대 제설삽날(덤프용) 30대 습염식살포기(덤프용) 36대 습염식살포기(제설차용) 1대 모래살포기(덤프용) 12대 모래살포기(카고용) 12대 기타 소요장비 5대	2,611	계) 62대 장비임대	1,373
	제설재료 구입	염화칼슘 7,800톤 소금 7,900톤 모래 26,000㎥	2,680	염화칼슘 2,400톤 소금 2,000톤 모래 8,000㎥	782

제 4 절 인원 · 장비 · 도로 현황 · 근무체계

1. 비상근무반 편성 및 연락망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3. 장비 및 인력 현황
4. 도로제설재료 등 준비현황
5. 습염식 제설설비 현황
6. 교통소통 취약구간 지정
7. 우회도로 사전 지정 현황
8. 비상용 구호품 확보계획
9. 단계별 근무체계
10. 양 식

1. 비상근무반 편성 및 연락망(단계별 비상근무반)

가. 1단계(적설량 10㎝미만 예상, 관내강설확률 60%이상 예보시)

근무반편성		근무체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대전청	반장	도로시설국	도로주사	장창식	042-670-3521	011-353-3871
	담당자	〃	토목주사보	김현주	042-670-3522	019-401-9601
논산국도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사무관)	박용정	041-735-3689	011-9413-0256
	담당자	〃	토목주사	임장균	041-735-3689	011-455-8015
		〃	토목서기	김준수	041-735-3689	011-439-6880
충주국도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장동선	043-843-2224	011-9417-8883
	담당자	〃	토목주사보	최병목	043-843-2224	011-9841-8891
보은국도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박병윤	043-542-2342	011-9627-3817
	담당자	〃	토목주사보	신기복	043-542-2342	010-7278-0826
예산국도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배상근	041-332-7102	011-9406-9478
		서천출장소	출장소장 (토목주사)	최병수	041-952-8311	011-9484-5854
	담당자	보수과	토목주사보	송한석	041-332-7102	011-9066-9388
		서천출장소	토목주사보	김용철	041-952-8322	016-460-5437

나. 2단계(대설주의보 발령 시)

근무반편성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대 전 청	반장 (과장)	도로시설국	공사과장 (토목사무관)	배영수	042-670-3520	011-9838-9950
	담당자	〃	토목주사보	김현주	042-670-3522	019-401-9601
	담당자	〃	토목주사보	김남철	042-670-3516	010-6455-7697
논산국도	상황 실장	논산국도	소장 (서기관)	이 형	041-735-3688	011-471-7689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사무관)	박용정	041-735-3689	011-9413-0256
	담당자	〃	토목주사	임장균	041-735-3689	011-455-8015
		〃	토목서기	김준수	041-735-3689	011-439-6880
충주국도	상황 실장	충주국도	소장 (서기관)	김상권	043-843-2223	011-9417-8881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장동선	043-843-2224	011-9417-8883
	담당자	〃	토목주사보	최병목	043-843-2224	011-9841-8891
보은국도	상황 실장	보은국도	소장 (토목사무관)	황두연	043-542-2341	010-7186-2340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박병윤	043-542-2342	011-9627-3817
	담당자	〃	토목주사보	신기복	043-542-2342	010-7278-0826
예산국도	상황 실장	예산국도	소장 (서기관)	최동식	041-332-7100	011-9930-7883
	반장 (과장)	보수과	보수과장 (토목주사)	배상근	041-332-7102	011-9406-9478
		서천출장소	출장소장 (토목주사)	최병수	041-952-8311	011-9484-5854
	담당자	보수과	토목주사보	송한석	041-332-7102	011-9066-9388
		서천출장소	〃	김용철	041-952-8322	011-460-5437

※ 연속근무를 위하여 자체 조별 편성에 따른 1개반 근무

다. 3단계(대설경보 발령 시,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근무반편성			1 반			2 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대전청	실장 (국장)		도로 시설국	국장 (서기관)	윤성오	도로 시설국	국장 (서기관)	윤성오
	총괄 반장		도로 공사과	과장 (사무관)	배영수	도로 계획과	과장 (사무관)	조태희
	상황반	반장	도로 공사과	토목 주사	장창식	도로 계획과	토목 주사	김정태
		반원	〃	토목주사보	김현주	〃	토목 주사보	김남철
	대책반	반장	도로 시설국	토목 주사	봉대근	도로 시설국	토목 주사	서용옥
		반원	〃	토목 주사보	김홍길	〃	토목 주사보	송창원

※ 2단계에서 3단계로 변환시 연속근무를 위하여 자체 조별편성에 의한 2개반 동시근무

2.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논산국도)

가. 유관기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재해대책본부 (당직실)	유 관 기 관			비 고
		도로계	소방서	측후소	
논산시청 (041)	730-1483	730-1483	736-3119	-	백제병원 733-0007
공주시청 (041)	853-2111	853-2127	881-3119	-	공주의료원 855-41115 종합건설사업소 857-5601
계룡시청 (042)	840-2222	840-2365	-	-	
부여군청 (041)	830-2222	830-2432	835-0119	832-0365	옥산주유소 833-8590
연기군청 (041)	861-2770	861-2582	863-0119	-	
청양군청 (041)	940-2222	940-2487	943-4119	-	칠갑산휴게소 943-7071 대치터널초소 942-3321
금산군청 (041)	750-2222	750-2711	751-0119	752-0365	대둔산휴게소 753-4475
서천군청 (041)	950-4114	950-4487	953-0119	-	

구 분	대표전화	유 관 기 관		비 고
		지구대	전화번호	
논산경찰서 (041)	733-0112	연무	742-0112	채운치안센타 735-0112
		강경	745-4112	성동 732-6112, 광석 732-8112, 노성 736-5112
		논산	732-0112	은진 741-0112, 부적 732-7112
		신계룡	042-841-8112	연산 735-0112, 상월 732-4112
공주경찰서 (041)	854-0112	옥룡	854-8904	이인치안센타 857-0112
		유구	841-2112	우성 853-6112, 사곡 841-0112, 신풍 841-1112
		계룡	857-5112	탄천 853-5112, 반포 857-7112
		신관	858-8903	장기 857-1112, 의당 852-0112,정안 858-6112
부여경찰서 (041)	836-0112	임천	833-2112	장암치안센타 834-1112, 양화 833-3112
		백강	835-1132	규암 836-3112, 은산 832-6112,석성 836-9112
		홍산	836-1112	구룡 832-2112, 외산 836-5112,옥산 832-0112
연기경찰서 (041)	865-0112	운주	863-2112	전동치안센타 863-1112, 소정 566-6112
		도원	863-0112	죽림 864-0112, 서면867-0112
		대평	866-7112	남면 864-5112
청양경찰서 (041)	942-0112	칠갑	943-2648	대치치안센타 943-3612, 남양 942-1112
		정산	943-1880	장평 942-6112
		비봉	942-5112	화성 942-4112
금산경찰서 (041)	751-0112	진악	754-3625	금성치안센타 752-3112, 남이 753-2112
		태봉	752-5112	복수 752-8112, 진산 752-4112
		봉황	752-7112	부리 753-0112, 남일 752-9112
서천경찰서 (041)	956-0112	서림	953-0112	판교센타 951-5112,기산 951-1112
		금강	956-1252	한산 951-0112, 마서 953-2113

<충주 국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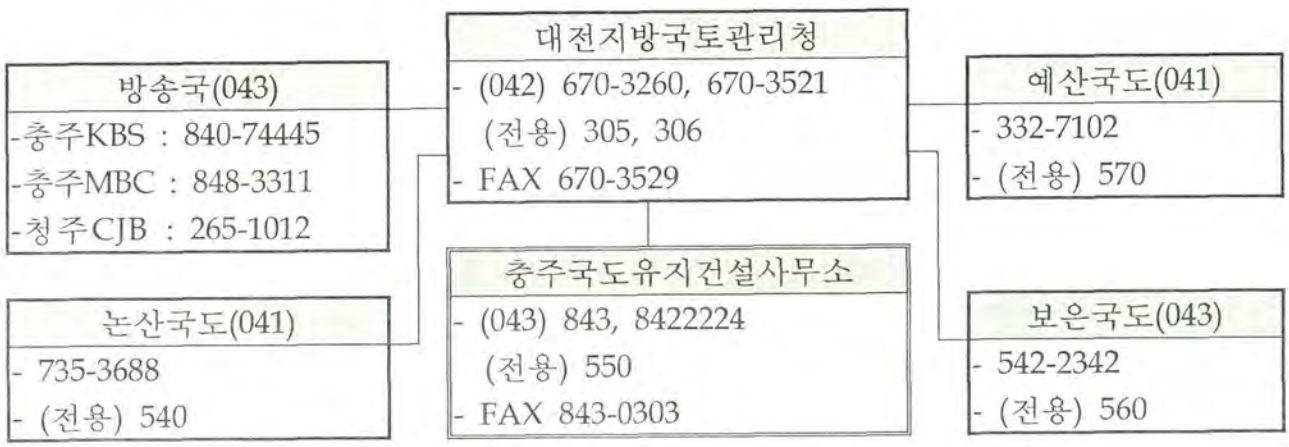

구 분	재해대책 본부 (당직실)	유 관 기 관			비 고
		도로계	소방서	기상대	
충주시청 (043)	850-5158 850-5114	850-5404	843-3119	853-0365	소태재구룡휴게소 856-5737 충북종합건설본부 853-3459 (충주출장소) 적십자충북지사 253-2651 충주의료원 841-0129 공군제91기지건설전대 849-6812
제천시청 (043)	640-5801 645-7101	640-5781	643-1119	646-0365	수산명보휴게소 647-2958 제천병원 649-6119 제천서울병원 642-7606
단양군청 (043)	422-3497 422-3010	430-3487	643-1119	제천	장회재(식당) 422-6315
음성군청 (043)	871-3119 871-3222	871-3511	882-5119	충주	백마령휴게소 872-7785 음성성모병원 871-01289
괴산군청 (043)	830-3483 832-2181	830-3486	836-0700	832-0365	이화령새재개발 054-571-8058
증평군청 (043)	835-3241 835-3114	835-3731	836-0700	264-1365	

구 분	대표전화	유 관 기 관		비 고
		지구대	전화번호	
충주경찰서 (043)	854-0112 855-0112	중부	852-1113	목행동, 탄금동, 가금면
		서부	846-0112	주덕, 이류, 신니, 노은
		남부	843-0024	살미, 수안보
		북부	852-7112	엄정, 금가, 소태, 산척, 동량, 앙성
제천경찰서 (043)	643-0112	동부	652-2112	금성, 청풍
		서부	647-4112	봉양, 백운
		남부	647-8112	수산, 청풍, 덕산, 한수
		북부	642-7112	송학
		덕산파출소 한수초소	651-1112	
		덕산파출소 수산분소	647-5112	
단양경찰서 (043)	422-0112 422-1112	중부	422-3211	단양, 단성, 대강
		동부	422-8112	매포, 적성
		북부	422-4112	어상천, 가곡, 영춘
음성경찰서 (043)	883-0112	설성파출소	872-1517	
		원남파출소	872-7112	
		소이파출소	872-5112	
		금왕파출소	878-2112	
		맹동파출소	878-9112	
		대소파출소	881-7112	
		삼성파출소	878-5112	
		감물파출소	881-2113	
		생극파출소	882-4112	
괴산경찰서 (043)	832-0112	증평지구대	836-2112	증평, 도안, 사리, 청안
		괴산지구대	834-3112	문광, 감물, 불정, 소수, 청천, 괴산
		북부지구대	833-5112	연풍, 칠성, 장연

<보은 국도>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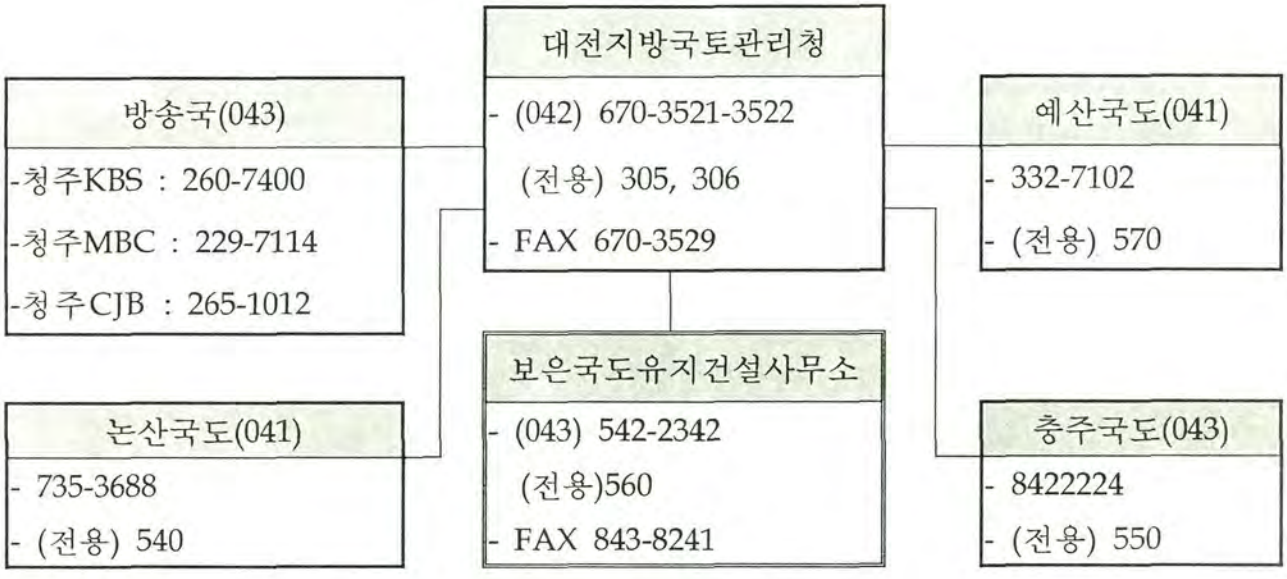

구 분	재해대책본부 (당직실)	유 관 기 관			비 고
		도로계	소방서	기상대	
청주시청 (043)	220-6114	220-6400	213-8119	263-0365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220-5545~7 충북대학교병원 269-6114 적십사충북지사 253-2651~3
청원군청	220-6114	251-3481	231-0119		
진천군청	533-1100	539-3406	532-2119		잣고개(잣고개쉼터) 532-5858
증평군청	838-4462	835-3114	838-5119		
보은군청	540-3494	540-3431	544-0119	542-0365	수리티(개성휴게소) :
옥천군청	733-6000	730-3487	733-5119		마달령(증약주유소) 733-9220 옥천성모병원 730-7000
영동군청	742-2101	740-3521	745-0119	742-0365	학산재(양지휴게소) 043-743-6451

구 분	대표전화	유 관 기 관		비 고
		지구대	전화번호	
청주서부 경찰서 (043)	266-5000	옥산	260-0112	강내 강외 오창
		남이	260-6112	현도 부용
청주동부 경찰서장 (043)	259-0112	가덕	291-5112	남일 미원
		사천	213-4112	내수 북이
옥천경찰서 (043)	744-0112	중부	742-3912	심천 용산
		남부	742-4112	황간 추풍령 삼촌
		서부	743-6112	학산 용화
진천경찰서 (043)	532-0112	남부	532-3112	사석 문백 백곡
		북부	537-8112	이월 광혜원 덕산 초평
옥천경찰서 (043)	732-0112	중부	732-7112	군서 군복 이원 동이
		북부	732-6112	안남
		동부	732-9112	청성 삼양 옥천
보은경찰서 (043)	542-0112	동부	542-3112	마로 삼승 외속리
		서부	542-9112	회인 회남 회북
		중부	542-1112	수한 산외 내속리 보은
괴산경찰서 (043)	834-3112	증평	836-2112	증평

<예산 국도>

○ 유관기관



구 분	재해대책 본부 (당직실)	유 관 기 관			비 고
		담당부서	소방서	측후소	
충청남도 (042)	(042) 220-3642	-도로교통과 550-2481		-기상청 576-0365	충남종합건설사업소 (042)820-5731 -공주지소(041)857-7834 -홍성지소(041)632-3821
천안시 (041)	550-2011	-방재담당 550-2481 -도로담당 550-2432	565-4119	576-0365	입장면사무소 564-5301-2 동면사무소 523-4301 단국대병원 550-7114 순천향대병원 574-3710
아산시 (041)	540-2114 (540-2222)	-방재담당 540-2497 -도로담당 540-2484	544-0881	-	송악면사무소 542-8189 영인면사무소 540-2607 아산한국병원 545-6114

구 분	재해대책 본부 (당직실)	유 관 기 관			비 고
		담당부서	소방서	측후소	
서산시 (041)	660-3299 (660-3423)	-방재당당 660-3497 -도로담당 660-3484	669-5119	663-0365	해미면사무소 669-3022 대산읍사무소 681-8003 서산의료원 661-6114
보령시 (041)	930-3114 (930-2101)	-방재당당 932-3497 -도로담당 932-3483	934-1119	932-0365	웅천읍사무소 933-2301 남포면사무소 933-0301 보령종합병원 934-5114
당진군 (041)	350-3369 (350-3114)	-방재당당 350-3369 -도로담당 350-3812	350-3533	-	서울정형외과의원 353-3313
예산군 (041)	330-2496 (330-2222)	-방재당당 350-3369 -도로담당 350-3812	330-4212	-	신양면사무소 333-7301 차동휴게소(신양) 333-7667 산장휴게소(덕산) 337-5901 예산중앙병원 335-2255
홍성군 (041)	630-1497 (630-2151)	-방재당당 630-1497 -도로담당 630-1487	631-7991	-	홍성의료원 630-6119 홍주병원 634-5042
태안군 (041)	670-2497 (670-2222)	-방재당당 670-2497 -도로담당 670-2487	674-2119	-	남면사무소 674-4052 안면읍사무소 670-2612 고남면사무소 673-7430 중앙정형외과의원 675-2900
서천군 (041)	950-2497 (950-4114)	-방재당당 950-2497 -도로담당 950-2487	953-1119	-	장항읍사무소 956-3001 종천면사무소 952-3276 서해병원 951-8282 성루가병원 955-5587

구 분	대표전화	지 역 별		비 고
		지구대	전화번호	
천안경찰서 (041)	621-4972	입장	585-5112	
		병천	565-2112	목천, 북면, 동면, 수신, 성남
아산경찰서 (041)	542-5000	배방	548-4112	모종, 염치, 탕정
		둔포	531-2112	음봉, 영인, 인주
		신창	542-2112	도고, 선장
서산경찰서 (041)	664-5000	해미	688-0112	고북, 운산, 음암
		대산	663-8112	성연, 지곡, 명지
		태안	674-0112	남문, 소원, 근흥, 남면
		안면특수	673-4112	
보령경찰서 (041)	933-5000	웅천	933-2112	주산, 미산
		주포	932-2112	주교, 청소, 오천, 천북분소
당진경찰서 (041)	353-5000	-	-	
예산경찰서 (041)	332-5000	무한	334-2118	신례원, 신암, 오가
		신양	333-7112	
홍성경찰서 (041)	632-0112	금마	633-7112	홍동, 홍북
		서부	632-8112	갈산, 결성
		벽계초소	641-6112	
서천경찰서 (041)	956-5000	금강	956-1252	장항, 마서, 화양
		비인	952-5112	
		종천	953-3112	
		마서	953-2113	

3. 장비 및 인력 현황

가. 제설용 장비 투입 계획

기관명	장비										부수장비												
	계(B)	현보유					임대도급 계획				제설삽날 현보유			노면결빙파쇄기	제설블로워	살포기 현보유							
		소계	트럭	제설차	그레이더	굴삭기·로더 등	소계	트럭	그레이더	굴삭기·로더등	계	트럭용	제설차용			계	고체				습염		
																	5톤미만트럭용	5~8톤트럭용	8톤이상트럭용	제설차용	5톤미만트럭용	5톤이상트럭용	제설차용
계	117	38	21	7	0	10	54	31	10	13	39	32	7	0	0	42	1	5	20	0	0	12	4
논산	23	11	6	2	-	3	12	9	-	3	7	5	2	-	-	12	-	1	6	-	-	5	-
충주	55	9	4	2	-	3	28	14	7	7	10	8	2	-	-	8	1	2	3	-	-	-	2
보은	19	9	5	2	-	2	10	6	2	2	14	12	2	-	-	15	-	1	5	-	-	7	2
예산	20	9	6	1	-	2	4	2	1	1	8	7	1	-	-	7	-	1	6	-	-	-	-

※ 1. 기관명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2. 현보유 및 임대·도급 기준일 : 2004.12.12005 .3.15

3. 장비(트럭) : 8톤이상 덤프, 카고 등

4. 습염살포기 : 8톤이상 트럭에 장착되는 습염살포기

5. 제설차 : 종합장비(제설로더, 제설굴삭기 포함)

나. 인력 동원 계획

기관명	합계	자체			임시(임대, 도급 등)		
		소계	조종원	제설원	소계	조종원	제설원
계	340	184	82	102	156	45	111
논산	97	50	22	28	47	9	38
충주	120	43	18	25	77	21	56
보은	62	42	23	19	20	11	9
예산	61	49	19	30	12	4	8
(출장소포함)							

4. 자재 등 준비 계획

가. 자재

기관명	염화칼슘(톤)	소금(톤)	염화마그네슘(톤)	모래											표지판(개)				
				계(㎥)	비축장		저장탱크(슈트장)		길어깨 등 적사		제설함		모래주머니			계	미끄럼주의등	우회도로안내	모래적치깃발등	현수막설치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개	㎡					
계	2,344	1,700	430	30,606	15	27,800	13	791	-	-	205	165	20,500	390,000	1,850	863	839	22	-	-
논산	590	500	110	7,610	7	6,800	3	150	-	-	100	60	5,000	150,000	600	206	200	6	-	-
충주	500	-	85	7,440	2	7,000	3	90	-	-	-	-	7,000	70,000	350	200	200	-	-	-
보은	685	850	115	9,260	4	8,500	3	360	-	-	-	-	3,500	70,000	400	247	229	16	-	-
예산	569	350	120	6,296	2	5,500	4	191	-	-	105	105	5,000	100,000	500	210	210	-	-	-

나 - 1. 자재적치장, 제설대기소 등(습염식 제설 시설 제외)

기관명	구 분	노선명	구 간	위 치	개소	크 기 (㎥)
계			16개소		15	모래 27,800㎥
논산	①모래 또는 염화물 적치장 (8개소 6,800㎥)		관내	논산. 내동(사무소)	1	모래 3,500㎥
		1	대전-천안	연기. 조치원. 서창.	1	혼합모래 300㎥
		17	대전-전주	금산. 복수. 다복.	1	혼합모래 500㎥
		23	공주-천안	천안. 광덕. 원덕.	1	혼합모래 500㎥
		29	서천-부여	부여. 장암. 원문	1	혼합모래 500㎥
		32	대전-공주	공주. 반포. 마암.	1	혼합모래 500㎥
		36	보령-청양	청양. 청양. 교월.	1	혼합모래 500㎥
		36	청양-공주	청양. 정산. 용두.	1	혼합모래 500㎥
충주	①모래 또는 염화물 적치장 (2개소 7,000㎥)		관내	충주. 연수.(사무소)	1	모래 2,000㎥
		36	충주단양	충주. 살미. 내사	1	혼합모래 5,000㎥
보은	①모래 또는 염화물 적치장 (4개소 8,500㎥)		관내	보은. 보은.장신(사무소)	1	모래 5,000
		17	대전청주진천 조치원청주	청원. 남이 가마 (남면-북면공사구간내)	1	모래1,500㎥, 염화칼슘 100톤, 백호우1, 그레이더1
		34	진천광혜원, 진천덕산, 진천증평	진천. 진천. 장관	1	모래 1,500㎥, 염화칼슘 100톤, 백호우1, 그레이더1
		36	청주증평,	청주. 상당. 주중 (북종합건설본부) -상호 자재 상차	1	모래 500㎥, 염화칼슘 30톤
예산	①모래 또는 염화물적치장 (2개소 5,500㎥)		관내	예산. 예산.오가(사무소)	1	모래 4,700㎥
			서천, 보령	서천. 비인. 관(출장소내)	1	모래 800㎥

나-2. 자재적치장, 제설대기소 등(습염식 제설 시설 제외)

기관명	구 분	노선명	구 간	위 치	개소	크기(㎥)
계			13개소		13	혼합모래 791㎥
논산	②모래 또는 염화물 저장탱크 (3개소 150㎥)	17	대전-전주	금산.진산.묵산	1	50㎥
		32	대전-공주	공주.반포.마암.	1	50㎥
		36	청양-공주	청양.정산.마치	1	50㎥
충주국도	②모래 또는 염화물 저장탱크 (3개소 90㎥)	36	음성-증평	음성.원남.마송	1	30㎥
		36	살미-단양	단양.단성.장회	1	30㎥
		36	산척-봉양	제천.백운.평동	1	30㎥
보은국도	②모래 또는 염화물 저장탱크 (3개소 360㎥)	4	옥천-영동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1	120㎥
		19	옥천-영동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1	120㎥
		34	진천-백곡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1	120㎥
예산국도	②모래 또는 염화물 저장탱크 (4개소 191㎥)	21	천안지내	천안.목천.교천	1	51㎥
		34	천안지내	천안.입장.용정	1	45㎥
		21	아산지내	아산.도고.와산	1	45㎥
		77	태안지내	태안.태안.남문	1	50㎥

나-3. 자재적치장, 제설대기소 등(습염식 제설 시설 제외)

기관명	구 분	노선명	구 간	위 치	개소	인 원
계			27개소		27	139명
논산국도	④ 작업원 제설대기소 (5개소 35명)	17	대전-전주	금산.복수.다복.	1	7명
		23	공주-천안	천안.광덕.원덕.	1	7명
		32	대전-공주	공주.반포.마암.	1	7명
		36	청양-공주	청양.정산.용두.	1	7명
		40	부여-보령	부여.내산.지태	1	7명
충주국도	④ 작업원 제설대기소 (10개소 50명)	3	생극감곡	음성.감곡.차평	1	5명
		5	매포제천	단양.매포.상시	1	5명
		19	미원괴산	괴산.문광.양곡	1	5명
		19	괴산살미	괴산.감물.백양	1	5명
		36	증평음성	음성.원남.상당	1	5명
		36	음성주덕	음성.음성.한벌	1	5명
		36	충주단양	제천.수산.계란	1	5명
		38	산척앙성	충주.엄정.목계	1	5명
		38	백운제천	제천.봉양.원박	1	5명
		59	단성단양	단양.단성.가산	1	5명

기관명	구 분	노선명	구간	위 치	개소	인원
보은국도	④작업원 제설대기소 (2개소 4명)	17	신탄진청주, 청주진천, 조치원청주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남면-북면 공사구간내)	1	2명
		34	진천광혜원, 진천덕산, 진천증평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1	2명
예산국도	④작업원 제설대기소 (10개소 50명)	21	천안지내	천안.동.덕성	1	5명
		34	천안지내	천안.입장.도림	1	5명
		32	예산지내	예산.신양.차동	1	5명
		34	아산지내	아산.영인.백석	1	5명
		34	당진지내	당진.신평.운정	1	5명
		29	서산지내	서산.대산.대로	1	5명
		29	홍성지내	홍성.구항.구항	1	5명
		77	태안지내	태안.태안.남문	1	5명
		77	태안지내	태안.남.신온	1	5명
		39	아산지내	아산.송악.거산	1	5명

5. 습염식 제설설비 운영 계획

기관명	습염살포기대수	계(대수)				2002년도 까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교반장치	염화물저장탱크	크레인설치	염화물저장고	교반장치	염화물저장탱크	크레인설치	염화물저장고	교반장치	염화물저장탱크	크레인설치	염화물저장고	교반장치	염화물저장탱크	크레인설치	염화물저장고	교반장치	염화물저장탱크	크레인설치	염화물저장고
계	11	2	3	2	2	-	-	-	-	1	1	1	1	1	2	1	1	2	2	2	3
논산	5	1	2	1	1	-	-	-	-	-	-	-	-	1	2	1	1	1	1	1	1
충주	-	-	-	-	-	-	-	-	-	-	-	-	-	-	-	-	-	-	-	-	-
보은	6	1	1	1	1	-	-	-	-	1	1	1	1	-	-	-	-	-	-	-	-
예산	-	-	-	-	-	-	-	-	-	-	-	-	-	-	-	-	-	1	1	1	2

6. 교통소통 취약구간 지정

연번	노선번호	관 리 구 간	고개명	인원(명)	제설 주 장비(대수)		관리기관
					현장대기	강설전 현장도착	
계		21개소			33	32	
1	1	논산 두마 용동 (두마-반포)	밀목재	5	굴삭기1	덤프2	논산국도 (5개소)
2	17	금산 진산 묵산 (운주-진산)	배티재 (도급시행)	8	굴삭기1 덤프2	-	
3	36	청양 화성 신정 (보령-청양)	여주재	2	굴삭기1	덤프1	
4	36	청양 정산 천장 (청양-정산)	마치고개	3	굴삭기1	덤프1	
5	23	천안 광덕 원덕 (공주-천안)	차령고개 (도급시행)	4	로더1	덤프2	
6	5	단양 단양 대강 (영주-대강)	죽령	5	그레이더1 덤프1, 굴삭기1	덤프2	충주국도 (7개소)
7	19	충주 삼미 문산 (괴산-충주)	문산재	7	그레이더1, 덤프2, 굴삭기1	덤프3	
8	19	괴산 문광 양곡 (괴산-미원)	굴티재	7	그레이더1, 덤프2, 굴삭기1	덤프3	
9	19	충주 소태 구룡 (목계-귀래)	소태재	6	그레이더1, 덤프1	덤프2	
10	36	단양 단성 장회 (수산-단성)	장회재	2	덤프1	덤프1	
11	36	음성 원남 마송 (증평-음성)	행치재	7	그레이더1, 덤프2, 굴삭기1	덤프3	
12	59	단양 단양 고수 (단양-가곡)	고수재	7	그레이더1, 덤프2, 굴삭기1	덤프3	
13	17	청원 남이 척산 (대전-청주)	척산재 (도급시행)	3	그레이더1, 덤프1	-	보은국도 (4개소)
14	21	진천.진천.금암 (청주-진천)	잣고개 (도급시행)	3	드레이더1, 덤프1	-	
15	25	보은.외속.장재 (보은-속리)	말티재	4	-	제설차1 덤프1	
16	25	청원.가덕.청룡 (보은-청주)	피반령	4	-	제설차1 덤프1	
17	21	보령.남포.옥서 (웅천-보령)	남포고개 (서천출장소)	5	-	덤프1	예산국도 (5개소)
18	34	천안.입장.도림 (입장-진천)	엽돈고개	5	-	덤프1	
19	32	예산 신양 차동 (예산-공주)	차동고개	5	-	덤프1	
20	21	아산 도고 와산 (예산-아산)	신창고개	5	-	덤프1	
21	39	아산.송악.거산 (유구-아산)	각흘고개	5	-	덤프1	

7. 우회도로 사전 지정 현황

연번	취약구간					우회도로	
	노선명	구간	고개명 등	고개연장	관리기관	구간	총 소요연장
계		11개소		39.2			283.5
1	1	두마반포 (11.3km)	밀목재	1.0km	논산국도	계룡I.C유성I.C반포	30.0km
2	23	공주천안 (25.0km)	차령 고개	5.6km	논산국도	공주종촌조치원전의	37.0km
3	19	괴산 장연 추점 충주 살미 세성	문산재	0.8km	충주국도	괴산 장연 추점(지방도 597호선) 충주 상모 안보(국도3호선) 충주 살미 세성	14km
4	36	음성 원남 마송 음성 음성 편곡	행치재	0.9km	충주국도	음성 원남 마송(지방도 515호선) 음성 원남 덕정(지방도 516호선) 음성 원남 신천(국도37호선) 음성 음성 편곡	16km
5	17	청원군 남이면-청주시	척산재	1.5km	보은국도	청원 남이 척산 - 청원 남일 고은 (국지도32호선)	11.0km
						청원 남일 고은 - 청주시계 (국도25호선)	
6	21	진천 진천 사석-진천 진천 읍내	잣고개	3.0km	보은국도	진천 진천 사석 - 진천 문백 태락 (군도17호선)	18.8km
						진천 문백 태락 - 진천 진천 읍내 (국도17호선)	
7	25	보은 보은 대야 보은 외속리 상판	말티재	3.3km	보은국도	보은 보은 대야 - 보은 보은 학림 (국도19호선)	18.8km
						보은 보은 학림 - 보은 산외 장갑 (지방도575호선)	
						보은 산외 장갑 - 보은 외속리 상판(국도37호선)	
8	25	보은 회북 고석 청원 가덕 두산	피반령	4.8km	보은국도	보은 회북 고석 - 보은 내북 창 (지방도571호선)	22.9km
						보은 내북 창 - 청원 미원 미원 (국도19호선)	
						청원 미원 미원 - 청원 가덕 두산 (국지도32호선)	
9	21	웅천보령	남포 고개	1.8km	예산국도	서해안고속국도-춘장대IC-보령IC	20.6km
10	34	입장진천	엽돈 고개	12.0km	예산국도	입장-성환-천안-목천-동면-진천	42.5km
11	32	예산공주	차동 고개	4.5km	예산국도	예산-아산-유구-공주	51.9km

8. 비상용 구호품 확보계획

기관명	구 호 품 준 비				
	물 품 명		단 위	수 량	금액(천원)
	계		-	-	18,963
논산국도	소계				5,960
	식품류	빵	개	2,000	1,000
		식수 등	개	500	250
		음료수	베지밀	2,000	1,000
	침구류	담요 등	장	-	
		기타		-	
	유류	휘발유	ℓ	1,500	1,950
		경유	ℓ	2,000	1,760
		등유 등	ℓ	-	
충주국도	소계				1,678
	식품류	도시락	박스(20개)	1	80
		식수 등	박스((1ℓx6개)	25	25
		기타 (빵, 우유)	개	50	40
	침구류	담요 등	장	20	760
		기타			
	유류	휘발유	ℓ	200	279
		경유	ℓ	500	494
		등유 등	ℓ	-	

기관명	구 호 품 준 비				
	물품명		단위	수량	금액(천원)
보은국도	소계				5,950
	식품류	빵 등	개	1,000	500
		식수 등	개	500	250
		기타		-	
	침구류	담요 등	장	-	
		기타		-	
	유류	휘발유	ℓ	2,000	2,700
		경유	ℓ	2,000	1,900
		등유 등	ℓ	1,000	600
예산국도	소계				5,375
	식품류	빵	개	1,500	3,000
		식수 등	개	3,500	1,250
		기타		-	
	침구류	담요 등	장	-	
		기타			
	유류	휘발유	ℓ	500	650
		경유	ℓ	500	475
		등유 등	ℓ	-	

9. 단계별 근무체계

○ 지방국토관리청

단계	기 상 상 황	근무 체제	근 무 요 령
1	○수도권 적설량 3㎝ 내외 예상 ○기타지역 적설량 5㎝미만 예상	○담당과 제설 담당 2명 근무	○관내 강설 및 제설 상황 파악 ○국도유지 및 공사구간 제설작업 지휘 ○제설 및 교통상황 보고 -본부 도로관리과 -06:30기준 07:00 까지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2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제설대책상황반 비상근무 -1반, 3명, 1개반 운영 -반장 : 과장	○관내 제설 및 교통 상황 파악 ○제설 및 교통 상황 보고(3회) -본부 도로관리과 - 06:30기준, 07:00까지 -15:00기준, 15:30까지 -19:30기준, 20:00까지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필요시)
3	○관내 대설경보 발령시 ○기타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실장 : 국장 -총괄반장 :과장 -1반 2명, 2개반 운영 (상황반, 대책반)	○관내 제설 및 교통 상황 파악 ○제설 및 교통 상황 보고(3회) -본부 도로관리과 및 본부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06:30기준, 07:00까지 -15:00기준, 15:30까지 -19:30기준, 20:00까지 -필요시 수시보고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필요시)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단계	기 상 상 황	근무 체제	근 무 요 령
1	○수도권 적설량 3㎝ 내외 예상 ○기타지역 적설량 5㎝미만 예상	○제설대책상황반 운영 - 제설담당 및 작업반 비상 근무 - 반장 : 과장	○관내 강설 확율 60% 이상 예보시 -제설작업반 비상소집 -취약구간 장비·인력 사전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강설 현장 출동 및 제설 실시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보고(3회) -지방청 도로시설국 -06:30기준, 06:40까지 -15:00기준, 15:10까지 -19:00기준, 19:10까지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2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 일반직 1/3, 작업반 전원 비상근무(단 2일연속 강설시 교대근무) - 실장 : 소장	○전직원 비상 소집 ○취약구간 장비·인력 사전배치 및 제설 실시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보고(3회) - 지방청 도로시설국 - 지방재해대책본부(시, 도) - 06:30기준, 06:40까지 - 15:00기준, 15:10까지 - 19:00기준, 19:10까지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방송국 등 언론 매체 수시 통보
3	○관내 대설경보 발령시 ○기타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 일반직 1/2, 작업반 전원 비상근무(단 2일연속 강설시 교대근무) - 실장 : 소장	○강설 현장 및 교통소통 취약구간 사전 출동 및 제설작업 실시 ○유관 기관 협조 체계유지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보고(3회) - 지방청 상황실 - 지방재해대책본부(시, 도) - 06:30기준, 06:40까지 - 15:00기준, 15:10까지 - 19:00기준, 19:10까지 - 필요시 수시보고 ※단, 주간 강설시는 강설 즉시 보고 ○방송국 등 언론 매체 수시 통보

10. 보고양식

<정기보고>

제설 작업 정기보고(예시)

기관명

2005. 2. 2. 07:00 현재

□ 기상 개황

기상특보	2.1. 20:00 강원 중·북부산간지방 대설주의보 발효
	2.2. 06:00 〃 해제

○ 취약 구간 적설량(㎝)

홍천국도	치악재 15 배후령	태기산 10 느랏재	수피령 5	말고개 12	광치제 10	고사리재 5
강릉국도	진고개 35	운두령 10	삽당령 5	진부령 16	구룡령 15	한계령 25
정선국도	어평재 비행기재	두문동재 너그니재	문재 백복령	원동재 느릅재	마차재 소나기재	통리재 뱃재

○ 지역별 적설량(㎝)

홍천국도	춘천 3 원주 2	홍천 5	횡성 2	철원 6	화천 4	양구 -
강릉국도	강릉 2 인제 5	동해 5 용평 4	속초 1 간성 -	삼척 1	고성 1	양양 5
정선국도	정선	영월	태백	삼척		
※현재 눈오는 곳 :						

□ 교통 상황

○ 2004.2.1. 15:00부터 국도 44호선 한계양양간 26㎞(한계령) 전면 통제
※우회도로 국도 7, 46호선 한계간성양양간 72㎞(진부령)
○ 2004.2.2. 11:00부터 국도 6호선 평창주문진간 21㎞(진고개) 부분 통제
※월동장구 미부착 차량 통제
○ 기타구간 정상 소통

□ 작업 상황

기관명	작업개시 일시	완료(예정) 일시	장비 등 투입실적									
			장비(대)		인력(명)		모래(㎥)		염화칼슘(톤)		소금(톤)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홍천국도	2.1. 03:00	2.2. 13:00	15	5	25	10	175	75	50	15	30	15
강릉국도	2.1. 02:00	2.2. 11:00	11	2	15	5	70	35	14	4	2	1
정선국도	-	-	2. 2. 04:00부터 현장 비상대기 중									

□ 기타 사항

<수시보고 : 제설 최초>

도 로 제 설 최 초 보 고

기관명 : 지방청(국도포함), 도공(지사포함), 신공항(주), 천안논산(주) 2004. 2. 5. 13:00 현재

□ 기상 개황

○ 기상특보

○ 적설량

※ 현재 눈오는 곳 :

○ 향후 예상 적설량 :

□ 교통 상황

○ 고속국도 :

○ 일반국도 :

□ 제설 작업현황

○ 강설지역의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 ) 제설작업 완료(예정)

- 고속국도 :
- 일반국도 :

○ 작업 세부사항

- 장비 및 인력 투입
- 모래, 염화칼슘, 소금 투입

□ 특기사항

<긴급상황보고 : 교통사고로 두절시>

교통두절 상황 보고 (예)

< 2004. 1.14. 15:30 (수) >

경기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도42호선 여주읍 교리, 여주읍 강천리(자동차전용도로)도로상에서 콘테이너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폭설로 주변 5㎞ 구간에서 차량 300대와 600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고립되고 도로가 전면 불통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긴급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교통 상황

○ 기상특보 : 2004. 1. 14. 07:00 경기도 지역전역 대설주의보 발효중

○ 구간(위치) : 국도42호선 여주읍 교리여주읍 강천리

○ 사고일시 : 2004. 1. 14. 11:30경, 콘테이너차량 등 5중 추돌

○ 피해현황 : 차량 5대 전파, 인명피해 7명(중경상 7명)

○ 적 설 량 : 여주 50㎝, 이천 40㎝, 원주 25㎝

□ 조치 내용

○ 교통통제 :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13:30부터 차량진입 전면 통제 중앙분리대 개구부 부근의 차량은 개구부를 통하여 회차 조치

○ 우회도로 : 고속국도50호선 여주IC여천IC(20㎞)로 우회안내 중

○ 사고처리 :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차량 제거(15:00 완료)

○ 사상자 조치 : 7명은 여주소방서 응급구조대에서 병원으로 후송조치

○ 교통통제 내용을 KBS 등 언론기관에 안내방송 요청

※ 사고처리 지연시를 대비 고립된 운전자에 지급할 빵, 음료수, 라면 등 비상식품을 준비중

□ 향후 조치 계획

○ 통행재개 : 사고차량 제거후 15:15부터 제설작업을 재개하여 17:00까지는 월동장구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통행조치

<긴급상황보고 : 교통전면통제, 교통사고시>

교통 전면통제 보고 (예)

< 2004. 2.12. 14:30 (수) >

강원도 산간지방(설악산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계령에 현재까지 90㎝의 폭설이 내림에 따라,
국도 44호선 양양-한계리(45㎞) 한계령 구간에 대하여 금일 15:00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통제 실시 예정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 교통 상황

○ 기상특보 : 2004. 2. 12. 07:00 강원 영동산간지방 대설주의보 발효중

○ 통제일시 : 2004. 2. 12. 15:00부터 전면통제

○ 구간(위치) : 국도 44호선 양양 양양인제 북면 한계리간 45㎞

○ 적 설 량 : 한계령 90㎝, 미시령 40㎝, 진부령 25㎝

○ 피해현황 : 차량 및 인명피해 없음

○ 우회도로(국도 46호선 진부령) : 양양간성진부령인제(93㎞)

□ 조치 내용

○ 금일 15:00부터 국도 44호선 한계령구간 폭설로 인해 모든 차량 통행을 전면통제하는 한편 국도 46호선 진부령 등으로 우회 안내 중

○ 금일 05:00부터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 작업 중

○ 인원 및 장비 투입 : 그레이더 1대 등 장비 4대, 제설원 7명 등 10명

○ 교통 통제 내용을 강릉 KBS 및 MBC에 안내 방송 요청

□ 향후 조치 계획

○ 인근 지역 제설 작업 상황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인력 추가 투입 계획

○ 집중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20:00까지 제설 작업 완료 예정(계속 강설시 통행 해제 시각 미정)

<계도방송 협 요청 양식 : 대설경보 발령시>

겨울철 재해 방송 자막 및 스파트 방송 협조 요청

<2004. 00. 00. 00:00 (요일)>

수신 :

발신 :

제목 : "[대설경보, 대설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계도 방송 협조문

□ 평소 재해 대책 업무에 협조해주신 귀 방송국(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 금일( )일 00:00를 기하여 ( ) 지역에 [대설경보,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많은 눈이 예상되고, 교통 혼잡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TV, 라디오에 자막 및 스파트 방송을 협조 요청하오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인 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문안 -

금일( )일 00:00를 기하여 ( )에 [대설경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을 운행하시는 차량은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과 같은 월동 장구를 휴대하시고, 빙판길, 고갯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 운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급적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자가용 운전자들께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주·정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기관장

<폭설에 따른 안내방송 협조요청 양식 : 부분 · 전면 통제시>

겨울철 재해 방송 자막 및 스파트 방송 협조 요청

<2004. 00. 00. 00:00 (○요일)>

수신 :

발신 :

제목 : "폭설로 인한 [부분, 전면] 통제" 안내 방송 협조문

□ 평소 재해 대책 업무에 협조해주신 귀 방송국(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 금일( )일 ( )시를 기하여 ( )지역에 [대설경보,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많은 눈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 )에 ( )cm의 눈이 쌓여 있어 금일 ( )일 ( )시를 기해 국도 ( )호선 ( )( )간 ( )km 구간에 대하여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대형 차량, 모든 차량]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TV, 라디오에 자막 및 스파트 방송을 요청하오니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문안 -

( )에 ( )가 발효된 가운데 ( )구간에 현재까지 ( )cm의 폭설이 내려 국도 ( )호선 ( )( )간 ( )km 구간에 대하여 ( )시부터 월동장구 미 장착 차량, 대형 차량, 모든 차량]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 )로 우회하시거나 통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는 추후 발표되는 교통 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기관장

<사고에 따른 안내방송 협조요청 양식 : 전면통제시>

겨울철 재해 방송 자막 및 스파트 방송 협조 요청

<2004. 00. 00. 00:00 (요일)>

수신 :

발신 :

제목 : "사고로 인한 전면 통제" 안내 방송 협조문

□ 평소 재해 대책 업무에 협조해주신 귀 방송국(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 금일( )일 ( )시를 기하여 ( ) 지역에 [대설경보,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많은 눈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 )에 ( )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 )호선 ( )지점에 ( )사고가 발생하여 ( )( )간 ( )km 구간에 사고 처리로 인하여 ( )시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 통제가 실시되므로 ( )를 운행하는 차량은 국도 ( )호선 ( )로 우회하도록 TV, 라디오에 자막 및 스파트 방송을 요청하오니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문안 -

( )도 ( )구간에 현재까지 ( )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국도 ( )호선 ( )지점에 ( )사고가 발생하여 ( ) ( )구간 ( ) km 구간에 사고 처리로 인하여 ( )시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국도 ( )호선 ( )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발송 기관장

도 로 제 설 상 황 근 무 일 지

○2004. 12. 3(금)06:00 2004. 12. 4(토) 09:00

			결
			재

일시	상 황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12. 3. 05:0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문접수 -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 교통소통대책 철저대비 - 재해예방대책 강화지시	○ 전본부 시행지시(공문발송) - 수도권 적설예보에 대해 예방 조치철저 및 근무강화 지시 ○ 본사 비상근무 시행(06:00) - 도로처장, 도로관리팀장 등 6명	
06:00	○ 비상근무자 현황 파악 - 중부,강원,충청,호남,경북,경남본부 비상대기 ○ 기상 현황 파악 - 중부관내 눈발 날림 - 동서울, 인천, 경안지사 제설작업시행	○ 강설시 제설작업 시행 철저 지시 및 상황보고 철저	
09:30	○ 중앙재해대책본부 공문접수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	○ 전본부 시행지시(Fax발송) - 수도권 적설예보에 대해 예방 조치철저 및 근무강화 지시	
09:30	○ 중부, 강원, 충청관내 강설 - 인천 3cm, 시흥 2cm, 이천 3cm, 원주 1cm, 등 강설 - 강설구간 제설작업 시행 ○ 건교부 특별지시 공문접수 - 제설작업 철저 및 보고철저	○ 전본부 시행지시(Fax발송) - 제설작업 철저 및 근무강화 지시	
10:30	○ 건교부 도로국장 제설작업 상황확인	○ 수도권 제설작업 상황 보고	
11:00	○ 제설작업 및 현황파악 - 수원 8cm, 경안 5cm, 화성 2.5cm, 천안 1cm, 원주 1cm, 홍천 0.7cm, 대관령 1cm - 중부, 강원, 충청 15개지사 제설작업 시행중	○ 도로 제설상황 보고(건교부) - 동원인원 : 306명 - 동원장비 : 124대 - 염화칼슘 : 3,220포대 - 소금 : 13,004포대	
12:30	○ 교통방송 홍길동 기자 - 교통소통상황 문의	○ 제설작업 조기투입 후 강설구간 제설작업 실시중	
14:00	○ 도로처장(도로시설국장) 현장 점검 - 수도권 강설로 국도 및 도심부 진입램프 구간에 차량 지체가 발생하여 본선 지정체 유발	○ 강설지역 제설책임자 정위치 근무 및 장비 총동원으로 제설작업 철저 지시	

도로제설상황 근무자 명부

근무일시	근무반	근무위치 (장소)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 지진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진에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의 지속 및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와 함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위험성에 대비,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속적인 구조물의 보강,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진방재대책의 필요성 증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지진방재교육, 도상·실제훈련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편람) 작성·활용

○ 지진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나. 추진전략

○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 및 적용실태 지도·감독

○ 각급 기관별, 기능별 지진대비 교육·훈련 및 전파체계 구축

○ 각 기관별 단계별 행동요령 적용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규정

○ 지진방재 각종 시험연구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지진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분야별 내진설계기준 보완·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추진

· 도로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 설계 기준 강화 연구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로, 터널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와 중요도에 따라 연차적 보강(붙임1 투자우선순위 참조)

-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공사 발주전 내진설계기준 적용여부 확인 및 내진평가 시행

·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2) 분야별

가) 위험시설물의 점검 · 정비

○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도로 등 건설교통 주요시설물 및 교통수단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소관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실시 및 정비

나) 긴급수송의 대책 확보

○ 긴급수송로로 지정된 수송시설, 수송거점 및 도로교통 관련시설의 내진성 확보와 도로관리체제 정비

다)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편람) 작성·활용

○ 관련 실국·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실국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재해대책편람)을 작성하여 활용

라) 지진대비 훈련 지속실시

○ 소관분야별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교육·훈련 실시

- 실제상황대비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교육·훈련실시
-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 실시 등

2. 대비대책

가. 응급대응체제 정비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및 협조체계 구축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나.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1) 정보의 수집 · 체제의 정비

○ 방재기관과 정보 전달 경로의 다중화 및 연락체제 확립

○ 항공기, 차량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 체제정비

2) 정보의 분석정리

○ 정보분석을 위한 인재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종합적인 방재정보를 총괄한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 구축 추진

○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 추진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지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2)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홍보

- 수집된 각종 피해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

○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 피해상황 등 신속보고체계 정비

○ 상호협력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 상호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재난 규모별 분야별로 지원협력 행동요령을 작성 활용
- 방재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현장 상황파악 ·보고

다.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루트의 확보(도로)

-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대형헬기 등 수송장비 활용

○ 긴급도로 개설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라. 2차 재난 방지대책

○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대책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마.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1)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공공시설

- 도로 · 교량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등을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전 확보, 피해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 도로 · 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시설별로 환자, 장애인, 학생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 운영

·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 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업체 사전 지정

바. 교통수송 활동

○ 피해상황, 긴급 및 중요도를 고려한 교통규제, 응급복구, 수송활동 실시

- 인명의 안전, 피해확대방지 및 신속한 응급대책을 고려한 수송활동

- 긴급수송로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금지 등 교통규제

- 도로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장해물 제거, 응급복구 실시

사. 피해수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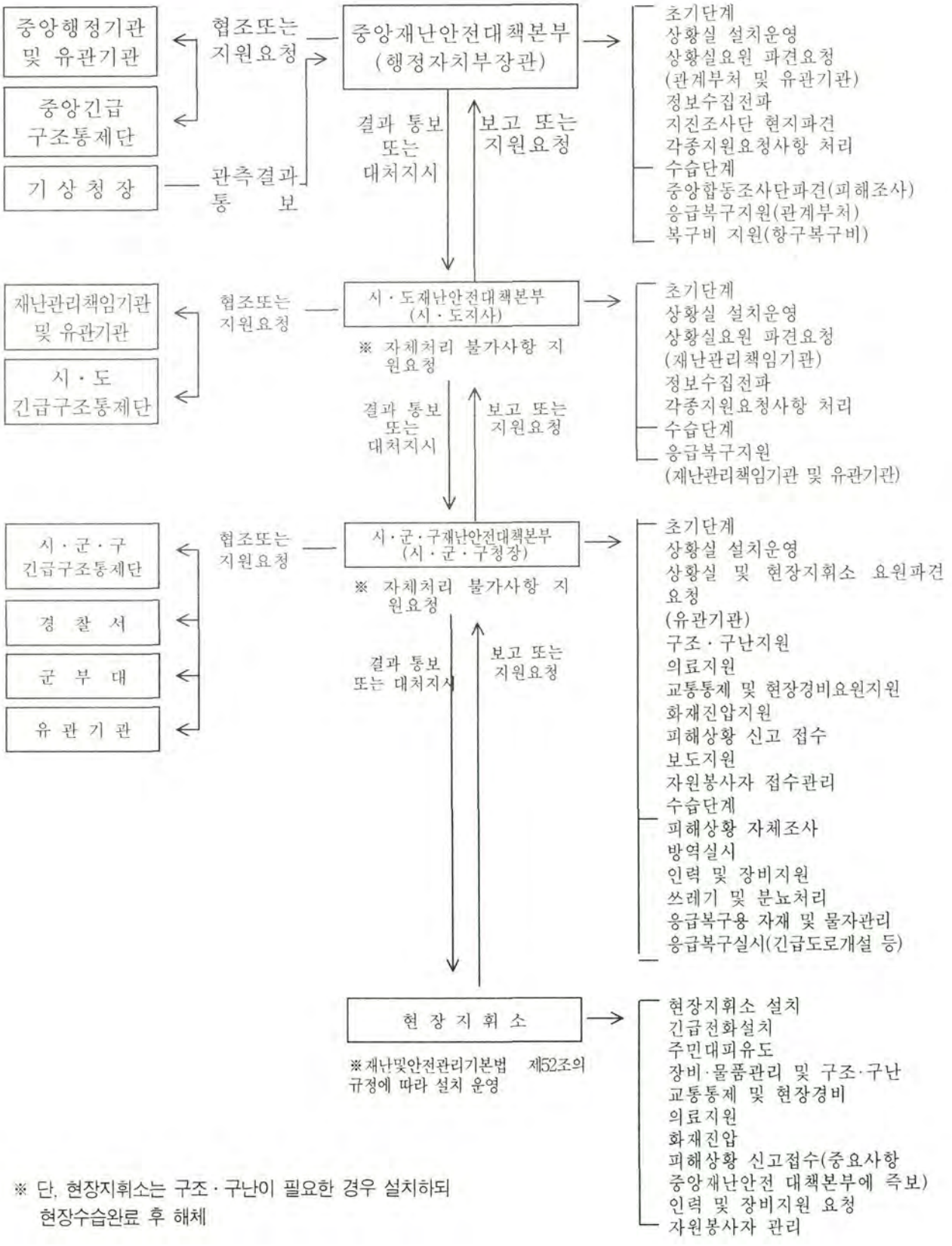

※ 단, 현장지휘소는 구조·구난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되 현장수습완료 후 해체

4. 복구대책

가.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나. 피해조사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참여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조사단 편성·운영 참여

※《건설교통부 조사단 구성》

-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 상·하수도시설 분과위원회 : 취수·정수·송수, 배수시설 등 상수도분야, 우·오수관로, 종말처리장 등 하수도분야
- 직무범위

· 지진피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 조치 계획의 수립

다. 복구비 지원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

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 미만의 시 또는 군 : 10억원 이상

마.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량복구 대상>

①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② 하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④ 배수펌프장, 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⑤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 3 절 재정·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및 사업명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지진대책	소 계		1개소	189
	교량 및 터널보강	도 로	1개소	189

2. 사업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05. 4. - 2005. 12.

○ 사업내용 및 추진

- 내진반영이 안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년차별 계획 수립 추진
- 2010년까지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및 터널지진보강사업 년차별 단계적 시행

(붙임 1)

기존교량 내진보강 사업 투자우선순위

번호	교 량 명	관 리 사무소	교장	총폭	경간수	상부 형식	하부 형식	준공 년도	보 강 시행년도
1	봉안대교(상)	의정부	750	11	13	STB	WLP	1998	'02
2	봉안대교(하)	의정부	750	11	13	STB	WLP	1998	'02
3	청벽대교	논 산	700	19.5	14	STB	RAT	1995	'01
4	만경대교	전 주	600	10	12	PSCB	RP	1988	'02
5	추령교	포 항	730	12.2	15	STB	RP	1997	'02
6	문막교(상)	홍 천	690	10.4	12	STB	TP	1999	'01
7	문막교(하)	홍 천	690	10.4	12	STB	TP	1999	'01
8	2강동교	포 항	467	19	9	STB	RAP	1992	'03
9	신거제대교	진 주	940	20	10	STB	RP	1999	'02
10	남창2교	진 영	284	19	7	STB	RAP	1997	'02
11	진안육교	전 주	400	21.3	7	STB	RAP	1997	'02
12	노루목교	충 주	300.2	19.5	6	STB	TP	1997	'02
13	월천교(하)	강 릉	550	12	11	STB	TP	2000	'01
14	월악교	충 주	230	10.5	5	SPG	RP	1984	'03
15	이안교	영 주	300	19.5	6	STB	RAP	1999	'01
16	벌교대교	순 천	280	20	6	STB	RAP	1994	'02
17	마암교	논 산	306	19.5	6	STB	RAP	1996	'02
18	장암교	논 산	280	19.5	6	STB	RAP	1995	'01
19	장양육교	순 천	210.2	20	5	STB	TP	1992	'03
20	월천교(상)	강 릉	500	12	10	STB	TP	1999	'01
21	월평고가차도	진 영	240	16.5	5	STB	TP	1997	'03
22	송천교(상)	보 은	240	10	5	STB	TP	1996	'01
23	송천교(하)	보 은	240	10	5	STB	TP	1996	'01
24	공이교	충 주	181	10.5	4	SPG	RP	1984	'03
25	덕소강변대교	의정부	1610	19.5	37	STB	RAP	1995	'01,'04

번호	교량명	관리사무소	교장	총폭	경간수	상부형식	하부형식	준공년도	보강시행년도
26	섬진교	순 천	420	15.5	10	STB	TP	1986	'03
27	동천3교	진 영	200	19	4	STB	RAP	1997	'01
28	금소교	영 주	408	12	8	STB	TP	1997	'03
29	동천교	영 주	250	19.5	4	STB	RAP	1999	'01
30	황전철도육교(상)	순 천	410	10.3	11	STB	TP	1998	'01,'04
31	황전철도육교(하)	순 천	410	10.3	11	STB	TP	1998	'01,'04
32	복술2교(상)	홍 천	190	9.7	4	STB	TP	1998	'01
33	복술2교(하)	홍 천	190	9.7	4	STB	TP	1998	'03
34	송치2교(상)	순 천	180	9.7	4	STB	TP	1998	'03
35	송치2교(하)	순 천	180	9.7	4	STB	TP	1998	'03
36	송치3교(상)	순 천	180	11.3	4	STB	TP	1998	'03
37	서시1교(상)	순 천	180	13.7	4	STB	TP	1998	1
38	서시1교(하)	순 천	180	13.7	4	STB	TP	1998	2
39	경강교(구)	의정부	650	11	13	PSCB	RP	1989	'03
40	경강교(신)	의정부	650	11	13	PSCB	RP	1999	'03
41	금남교	논 산	650	21	12	PSCB	RP	1997	'04
42	군포교(하)	전 주	841.3	9.8	15	STB	TP	1999	'04
43	군포교(상)	전 주	841.3	9.7	15	STB	TP	1999	'04
44	복교	광 주	325	10	6	SPG	RP	1988	'01
45	가평2교(구)	의정부	300	11	6	PSCB	RP	1989	3
46	가평2교(신)	의정부	300	11	6	PSCB	RP	1999	4
47	예산과선교	예 산	300	19.5	6	STB	RAP	1995	5
48	주산교	순 천	336	10	6	STB	RAP	1988	6
49	곡천교	순 천	180.4	10	4	SPG	RP	1987	7
50	이호대교	수 원	910	21	17	STB	RAP	1999	

번호	교량명	관리 사무소	교장	총폭	경간수	상부 형식	하부 형식	준공 년도	보 강 시행년도
51	신청평대교	의정부	620	12	11	STB	TP	1995	8
52	정자교	순 천	190.5	11.5	4	STB	TP	1998	9
53	주수교	강 릉	205	11	5	STB	TP	1996	10
54	여주대교	수 원	502	17.5	13	STB	RAP	1997	
55	우암교	의정부	220	19.5	4	STB	RAP	1999	11
56	청도대교	진 영	680	11	15	STB	RAP	1999	12
57	임동교	영 주	800	10.5	16	SPG	RP	1988	13
58	대평교	영 주	300	10.5	6	SPG	RP	1988	14
59	병점육교	수 원	130	26.5	3	STB	RP	1998	
60	수산대교	진 영	1479.7	23	24	STB	RAP	1997	15
61	강동대교	포 항	440	20.7	8	STB	RAP	1995	16
62	청학교	의정부	216	19.5	4	STB	RAP	1996	
63	신대교	수 원	400	19.5	8	STB	RAP	1997	
64	강창교(상)	대 구	300	12.3	6	STB	TP	1995	
65	강창교(하)	대 구	300	12.3	6	STB	TP	2000	
66	송치3교(하)	순 천	140	11.3	3	STB	TP	1998	
67	장호원육교	수 원	120	17.5	3	STB	TP	1996	
68	부평I/C교	의정부	367	19.5	9	STB	RAP	1997	
69	대복고가차도	진 영	140.2	16.5	3	STB	RAP	1998	
70	신기3교	정 선	100	10	2	STB	TP	1999	

※ 보강 시행년도의 연번은 '05년 사업시행분

< 도로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개 요

가. 계획의 성격

○ 제1차(2005200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도로재난대책에 대한 2005년도 집행계획

나. 목적

○ 도로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여건의 변화

- ◆ 도로연장, 자동차 보유대수 및 교통량 증가로 재난발생 요인 점증
- ◆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및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로 재난발생 증가
- ◆ 국민들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안전에 대한 욕구 향상
- ◆ 국제사회의 불안 등 각종 테러위협 증가

전 망

- ◆ 도로상에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대
- ◆ 도로상의 재난대비 대책도 한 단계 발전된 수준 요구
- ◆ 재난관리시스템의 전산화, 재난관리 기술의 과학화 · 첨단화 필요
- ◆ 테러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에 대한 대비 필요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가. 기본목표

○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대책의 수립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

○ 종합적인 보고, 긴급구조, 수습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인적·물적피해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

나. 추진전략

예방대책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안전대책의 수립 추진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시스템의 현대화 ▸안전의식 고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성능개선
대비대책	▸재난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전산화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및 대응훈련 실시
대응대책	▸신속·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초기대응체제 구축 ▸긴급구호·구조체제 확립 ▸유관기관 연계체계 및 긴급물자 공급체계 확립
복구대책	▸신속한 수습복구 체제 구축 및 피해확산 방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계 구축

○ 도로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에 맞추어 도로관리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기구표 및 근무인원 등 계획수립

《재난관리체계도(고속도로 및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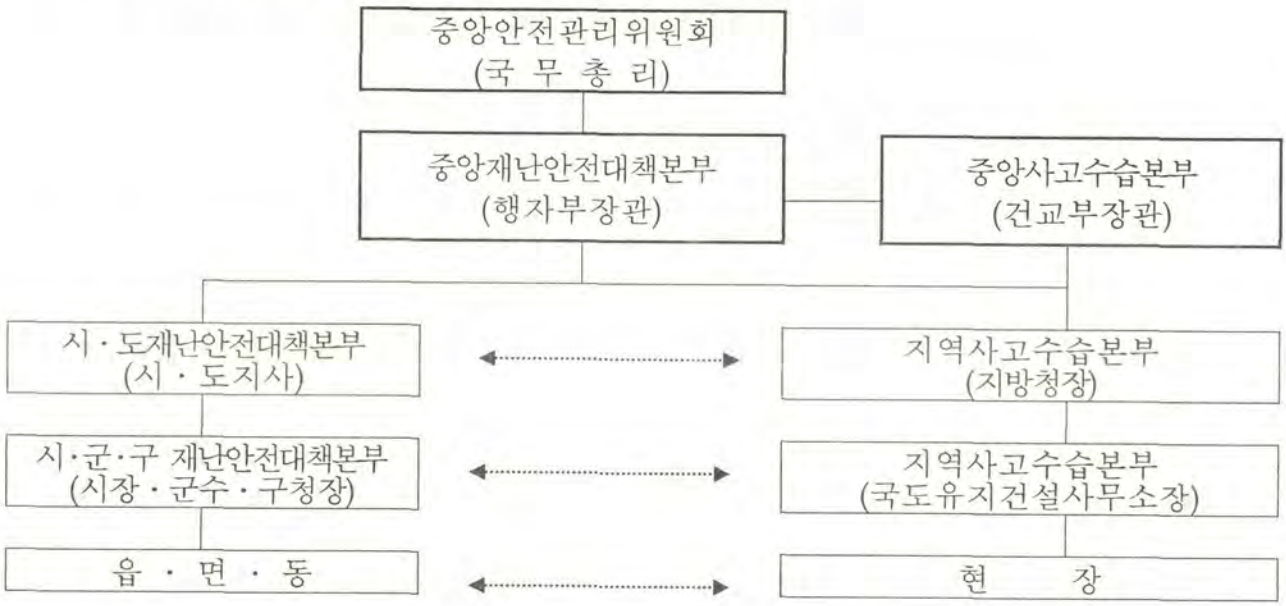

○ 재난규모별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 기준

단계	재 난 규 모		비상근무 체계
1	인명	· 10명미만 사망자를 포함한 사고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비상근무 ※ 도로재난으로 인하여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지역사고 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협조
	교통 차단	· 일방향 8시간 미만, 양방향 6시간 미만 전면차단 예상시	
2	인명	· 10 20명미만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비상근무 ※ 도로재난으로 인하여 시·도 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된 경우 지역사고 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협조
	교통 차단	· 일방향 8시간 이상, 양방향 6시간 이상 전면차단 예상시	
3	인명	·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비상근무 ※ 도로재난으로 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된 경우 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협조
	교통 차단	· 일방향 12시간 이상, 양방향 8시간 이상 전면차단 예상시	

※ 교통차단 시간은 국도 기준

나.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 각종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

· 재난위험시설 월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 반기1회 이상 정기점검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시행령 32조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2004. 7, 건교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 규모와 특성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1종	2종
교 량	· 500m이상, 특수교	· 100m이상
터 널	· 1,000m이상	· 국도급이상 도로의 터널 등
절 토 사 면		·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옹 벽		· 연장 100m이상 (지면노출 5m이상)

※ 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시행령 제6조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 대 상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자체안전점검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중 매일실시

· 정밀안전점검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공종별로 전문기관이 실시

※ 근거 :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2

○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각 법령에서 정한 점검이 중복될 경우 통합점검 가능

○ 수시 및 특별점검

- 기관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실정에 맞추어 점검 추진

○ 취약시설물 지정관리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한 필요가 있는 시설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취약시설물 (D, E급) 선정 및 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D, E급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 건설현장 안전교육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일상안전교육, 정기 · 수시 · 특별교육 등

- 현장 안전교육 실시

- 사이버 건설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년간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 재난대처 교육

- 재난대응체계,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예방대책 등에 대한 년1회 이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재난대비 인력의 전문화

○ 재난대비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필요시 연찬회 개최 등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재난대비 업무 종사자의 잦은 인사교체를 억제하는 방안 강구

○ 자체·유관기관 기술인력 일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 유도

마.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 운영중인 도로의 사고 취약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진단 추진

- 사고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개선사업 추진(경찰청 협조)
- 교통사고 위험노선 도로안전진단 실시(선별적으로 시행)
-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중앙분리대, 시선유도시설 등)

○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터널 소방안전설비 보강(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

○ 노후위험교량 등 시설 개선 및 성능보강(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위험도로개량 등(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

바. 안전문화 운동 추진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 대책 홍보

○ 교통기초질서 준수 계도

- 운행제한차량 불법운행 적극 단속(이동단속반 편성운영)
- 갓길 불법 주·정차, 갓길 무단운행 등 적극 계도 (고발)
- 특별수송 대책기간 경찰청과 합동단속

○ 안전점검 및 재난의 날 행사 추진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매년 5월 25일 재난의 날 행사 실시

사. 상시 응급구조 및 구난체계구축

○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이 가능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후송과 치료·보상체계 구축(병원측과 사전협조)

○ 인명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인명구조, 사상자후송, 임시 영현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 유사시에 대비토록 조치

2. 대비대책

가. 재난정보 관리체계 구축

○ 개인휴대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경보전달체계 구축

○ 사면붕괴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도에 대하여는 절개면 상시계측 시스템 설치운영

○ 재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재난정보 통합관리

○ CCTV 및 VMS 등 정보수집·전달설비 추가설치

○ 우회국도 ITS 확대 구축

○ 시설물 점검, 관리감독 강화 및 비상소집 연락체계 개선

- 시설물 구역별 관리체계 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정보 교환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정보 통보,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의 상호 지원 방안
- 긴급조치를 위한 상호 지원 등

나. 재난관리체계의 전산화 추진

○ CCTV 확대설치를 통한 현장모니터링 범위 확대

다. 자원동원계획 수립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우선 자체인력·장비투입, 부족시 인근사무소, 관련지자체와 상호 지원체계 구축

라. 재난 대응훈련 실시

○ 연1회 이상 재난대비 도상 또는 실제훈련 실시(소방방재청 및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있을 경우 동 계획에 의거 시행)

○ 재난 유형별 대응대책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실시

○ 재난대비 매뉴얼에 의거 시행

○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시행

마.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 매뉴얼간 연계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증 및 평가

○ 가상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작성

○ 현장종사자에게 매뉴얼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3.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및 조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보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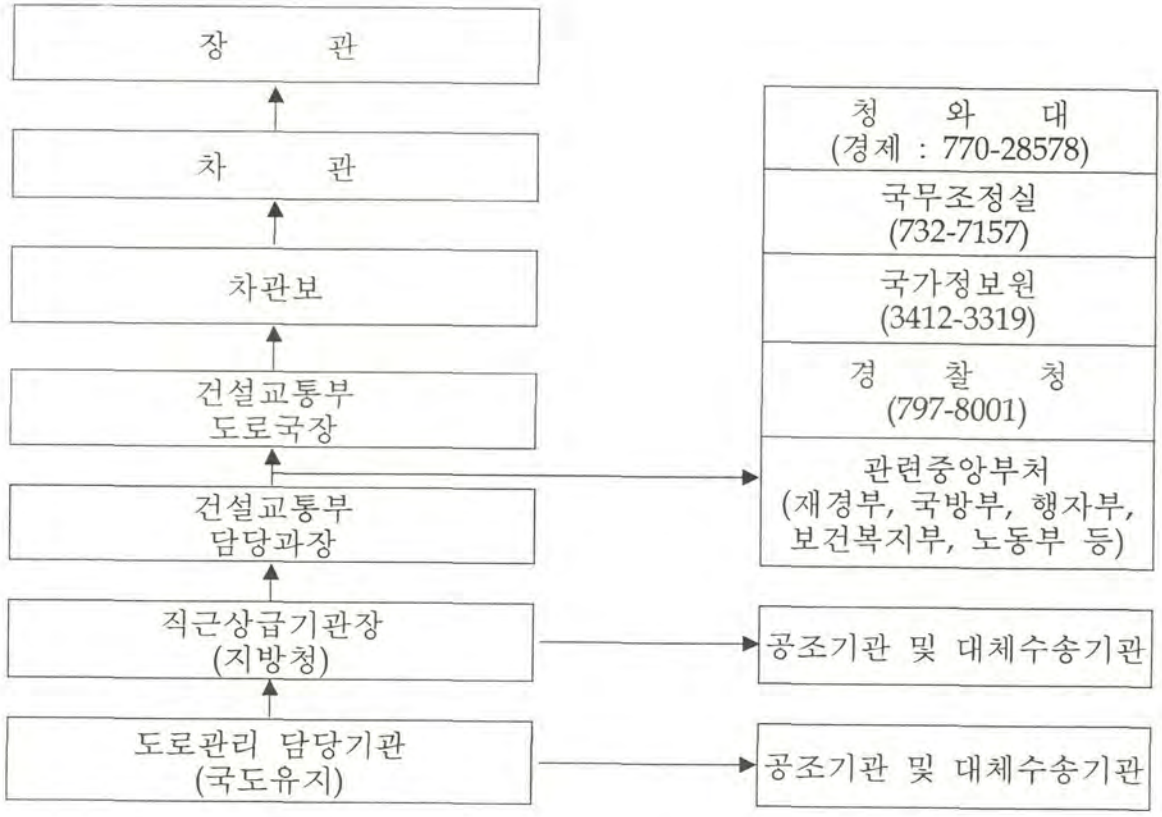

【보고체계】

유형별	재 난 현 장	지방소속기관	건 설 교 통 부
○ 도 로 - 국 도			
· 기존도로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	직 보 지방국토 관리청장 →	도로관리과장 (일반도로) (504-9075) 도로환경과장 (교량 · 터널) (504-7320)
· 공 사 중	현장소장 →	직 보 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건설과장 (504-9073)

나. 재난상황 보고내용 및 방법

○ 재난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을 사전에 정해두고 긴급상황시 대처

○ 보고내용

- 재난의 개요
- 주요 조치사황(시간대별)
- 기타 지원 및 협조사항, 교통처리 상황 등

○ 보고방법

-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 보고의 종류 : 징후보고, 발생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양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다.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확립

○ 유관기관 협조 및 이송체계를 사전에 확립

-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발생시 협조요청 기관

· 112 경찰, 119 소방구조대 및 구급대

· 행정자치부 중앙긴급구조본부(3703-4119)

· 지역긴급구조본부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격리지역, 오·벽지 등의 인명구조 및 이송을 위해 헬기구조를 요청

· 연락기관 : 중앙긴급구조본부(전화 3703-4119)에 신고

○ 사고현장 질서유지 방안 사전계획 수립

- 사고현장 책임기관 자체인력 우선 동원
- 공조협의기관(인근 경찰서,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민방위대, 소방서등)인력동원 긴급요청

○ 사상자구조

- 자체인력으로 우선 긴급구조 활동 전개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구난기관 및 업체)에 구조인력 및 헬기, 구조차, 소방차 등 장비 긴급요청
- 긴급구급기관에 사상자 구급 및 후송 요청

라.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방안

○ 재난규모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시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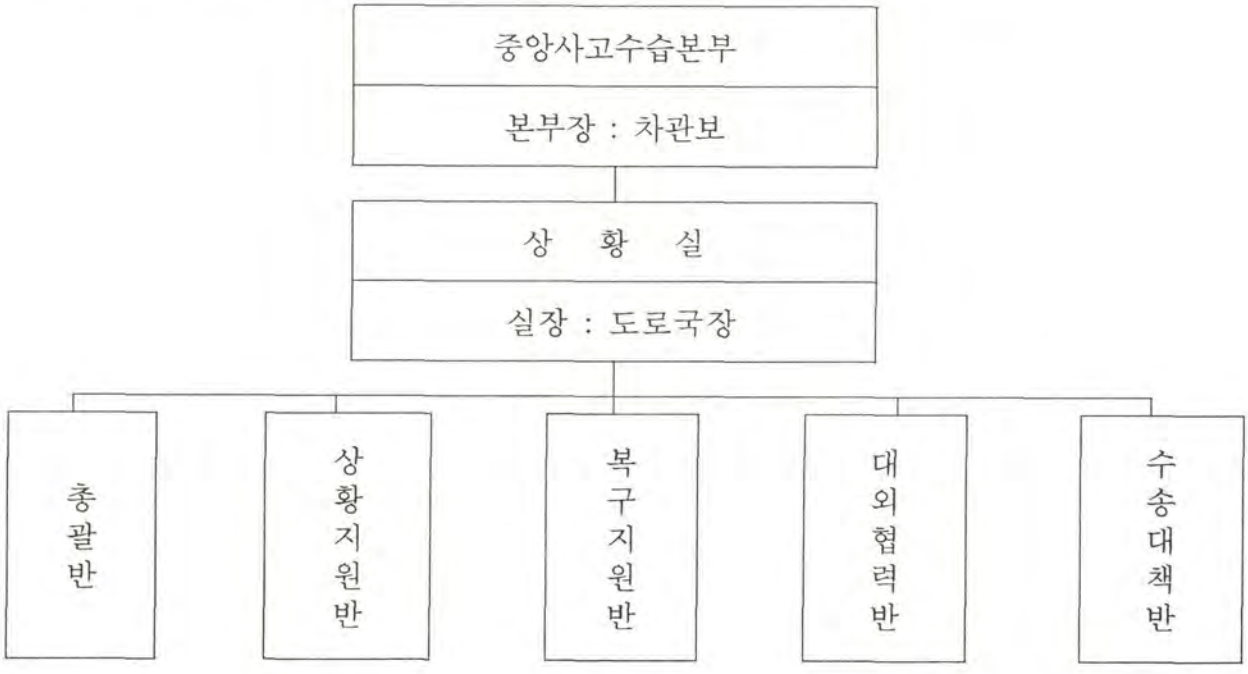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사고수습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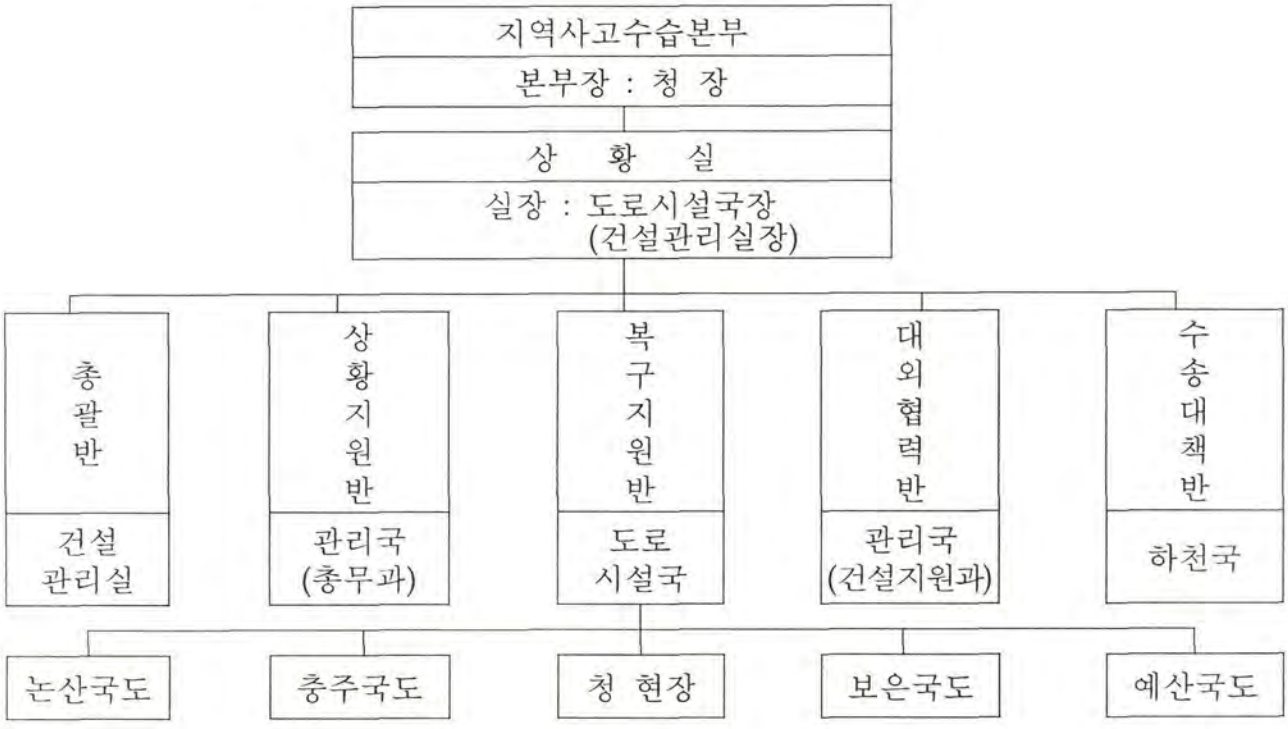

마.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계획

○ 부분(일부차로)통제시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차량통제 안내간판 및 휀스, 전광등 등 차량 유도시설 설치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전면통제시에는 우회도로 지정 운영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우회도로 시·종점에 안내간판 설치

  <우회도로 지정내용, 복구 및 정상소통 예정일 등을 기재>

- 시·군청, 언론기관에 우회도로 지정에 대한 주민홍보 및 보도요청

바. 홍보 · 보도대책 강구

○ 긴급구조활동상황의 보도 · 안내 계획 수립

- 취재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대변인의 지정 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을 스크랩, 모니터하여 사실여부 확인

- 공동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 주민 홍보대책 수립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필요시 기관장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조사항 등 적극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오보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계획수립

○ 신속한 수습 ·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계획

- 재난 유형별 복구장비, 인원, 자재 소요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계획

· 자체 인원 장비 우선활용, 부족시 인근사무소 및 지자체 등에 지원요청

-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 사고 잔재물 수거처리
- 화재 · 폭발 등 2차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등

나. 사고원인조사 계획

○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구성 : 소관 도로관리청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1,2종대상시설물중 중대한 사고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에서 조사 실시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대책 수립

○ 증거보존자료의 수집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다. 피해배상(보상) 대책 수립

○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계획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 :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필요시 구상권 행사

-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조기협상이 되도록 적극 중재 유도

라. 항구복구 계획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복구

마.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 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계획(본부 통합) (2005~2009)		2005년 계획(대전청)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869**	**2,647,123**	**92**	**50,516**
도로선형개량	1,016	1,180,823	23	7,906
구조물개축	106	158,100	2	1,020
정밀안전진단	77	7,700	1	75
국도 ITS 구축	1식 (1,542km)	185,200	1식 (100km)	21,000
중앙분리대설치	1식 (346km)	213,000	1식 (18.5km)	3,142
사고잦은곳 개선	425	121,000	28	6,829
낙석 · 산사태 정비	2,245	781,300	36	10,544

2. 세부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 14,620백만원

- 위험도로 개량 : 23개소 7,906백만원
- 교차로 개선 : 8개소 3,080백만원
- 오르막차로 설치 : 4개소 3,634백만원

○ 구조물 개축(예산국도) : 2개교 1,020백만원

○ 정밀안전진단(보은국도) : 1개교 75백만원

○ 국도 ITS 구축 : - 백만원(2005년 대상구간 조사)

○ 중앙분리대 설치 : 18.5km, 3,142백만원

○ 사고잦은곳 개선 : 28개소, 6,829백만원

○ 낙석·산사태 정비 : 36개소, 10,544백만원

제 8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본부

제 1 절 기본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기본목표

○운전사고 열차주행 100만km당 7.7% 감축(12건)
○여객 · 공중사망사고 8.5% 감축(46명)

2. 중점 추진방향

○기본을 지키는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고속철도 안전관리체계 확립
○직무사상사고 Zero화 전략추진
○열차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시설장비 안전도 향상
○시민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관리 활동

제 2 절 재난대상시설 현황

1.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

관리주체	구분	총관리대상시설 (1)+(2)+(3)				안전시설(A+B) (2)				보통시설 (C)급	취약시설 (D)급 (3)
		계	1종	2종	기타	계	1종	2종	기타		
계	전체	1471	13	83	1375	1385	9	58	1318	78	
	재난										
교량	전체	570	7	74	489	505	4	50	451	65	
	재난										
터널	전체	62	4	7	51	49	3	6	40	13	
	재난										
건물	전체	831	2	2	827	831	2	2	827		
	재난										
유류저장소		8			8	8			8		
기타(옹벽)											

2. 취약 및 주의개소 현황

구분 \ 선별		계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경북선
총계		53	28	5	11	6	3
주의개소	관리상주의	20	10	3	3	4	
	운전취급주의	33	18	2	8	2	3

※ 시설취약개소 지정없음

제 3 절 중점 시행사항

1.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철도안전문화 정착

가.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확립

○ 안전확보가 철도경영의 최우선 목표임을 전 직원이 인식

○ 반별·부서별·소속별 등 각 계층별 안전관리체제 정립을 위한 기풍조성

나. 안전관리 기본지키기 및 생활화

○ 기본지키기 운동의 활성화(10월~11월)

○ 규정·업무지침서, 수칙 등 기본적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

○ 안전관리 생활화운동 전개

○ 안전확보 실천지침의 생활화

다. 잘못된 취급관행의 개선

○ 업무지침서에 의한 표준작업 정착

○ 사고사례 및 예방수범사례 등 소속장 책임하에 현장교육 강화

라. 무재해운동의 적극적 추진

○ 무재해운동의 대상 및 범위 확대

- 직무사상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예방활동에 적용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교육 및 생활화

○ 중점 추진사항

- 위험예지훈련 시행
- 지적확인 환호응답의 생활화
- 무재해운동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10월중 시행 및 우수소속(개인) 표창 시행

2. 고속철도 안전관리 강화

가. 고속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

○ 철도 공사화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확립

○ 첨단 안전설비를 이용한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 확립

○ 고속선 시설물 중점 유지보수 및 집중관리 시행

나. 공중사상사고 예방활동

○ 전차선가압(AC 25,000V)에 따른 대민 홍보활동 강화
(전단배부, 포스터게출, 학교·단체 방문계도)

○ 교통안전켐페인 시 전차선접근 위험성 계도

○ 선로무단횡단개소 일제정비 및 방음벽 설치

다. 직무사상사고 예방활동

○ 전차선가압과 관련하여 전 직원 교육실시

○ 주기적 반복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상향화

라. 사고복구체제 확립

○ 고속철도 모의사고 복구훈련 집중실시

('04. 9월~'05. 8월, 1년간)

○ 고속열차 고장 등으로 운행불능 시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

○ 신속한 복구를 위한 24시간 사고복구반 편성·운용

○ 유관기관 및 민간 복구업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3. 안전교육·훈련의 강화

○ 안전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교육

○ 적시성 있는 사고사례 전파교육

○ 운전취급 기본사항 특별교육 및 평가

○ 현업직원 안전관리교육 강화

○ 이례적 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배양

4. 소속별·지역별 안전관계회의 활성화

가. 지역안전위원회 운영강화(연 2회 이상)

나. 안전협의회 활성화

○ 지역책임관 단위 지역안전협의회 개최

(지역책임관 회의 시 월 1회)

○ 소속별 자체안전협의회 개최 : 철도안전의 날(매월 4일) 다음날

- 소속내 불안전 요인의 발굴 및 시정협의
- 소속별 합동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사고복구 · 수습체제 확립

가. 신속한 사고급보체제 운영

○ 운전사고 : 관제실을 통하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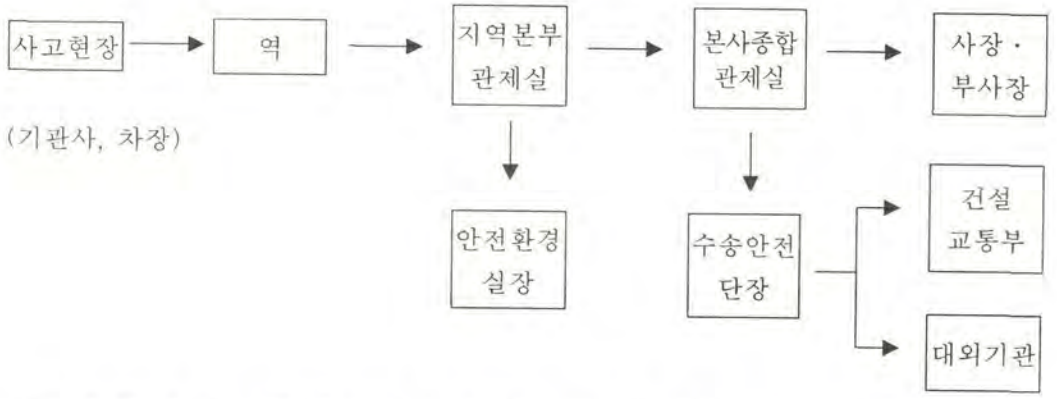

※ 초동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 이행

나. 사고대비태세 확립

○ 지역본부별 사고복구 · 수습처리내규 제정 운영

○ 복구장비 · 자재 비치상태 상시점검 파악

○ 지역관리역의 소속역 지원(인력동원)체제 확립

○ 사고발생 시 개인별 임무부여(임무카드 작성)

○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 구축

- 인력 · 장비 동원업체(중장비, 선로 · 전차선 복구업체) 연락망 구축
- 시, 군, 경찰서 및 군부대 등과 협조유지

다. 모의사고 복구 · 수습훈련 실시

○ 가상사고 메시지부여로 불시 훈련실시

- 기중기 배치소속 : 월 1회 이상 조작훈련 및 출동훈련

(현업소속 월 1회 이상 자체실시, 지역본부참관)

- 지역본부 주관 : 연 1회(4/4분기)
- 본사 주관 : 연 1회(2/4분기)

※ 사고복구·수습 시 분야별 행동지침 교육실시

라. 사고복구체계 확립

○ 초동단계의 신속대처를 위한 지구별 임시복구책임자 지정운영

- 2급 이상 소속장 중에서 차량, 시설, 전기, 승무, 역 분야의 순으로 지정
- 2급 이상 소속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급 분소장이 임시복구책임자 역할수행

○ 기능별 사고복구반 편성

- 복구지휘자는 기본적으로 영업기술처장이 담당하되, 사고유형에 따라 복구업무 비중이 큰 해당분야 소속장을 복구지휘자로 지정

· 기중기가 출동하는 사고 : 차량사무소장

· 자연재해, 시설물 파손·지장사고 : 시설관리사무소장

· 전기 및 신호보안장치 피해사고 : 전기(제어)사무소장

· 화재, 환경오염사고 : 해당 시설물(지역) 담당 소속장

○ 자원동원계획 현황(2005. 3. 31일 현재)

구분	시설사무소인원	트로리	발전기	자동차	버스	백호우	바라스트도져	외부지원			
								백호우	크레인	트럭	렉카
현황	761명	59대	113대	154대	4대	7대	1대	255대	111대	81대	69대

- 사고복구반 기본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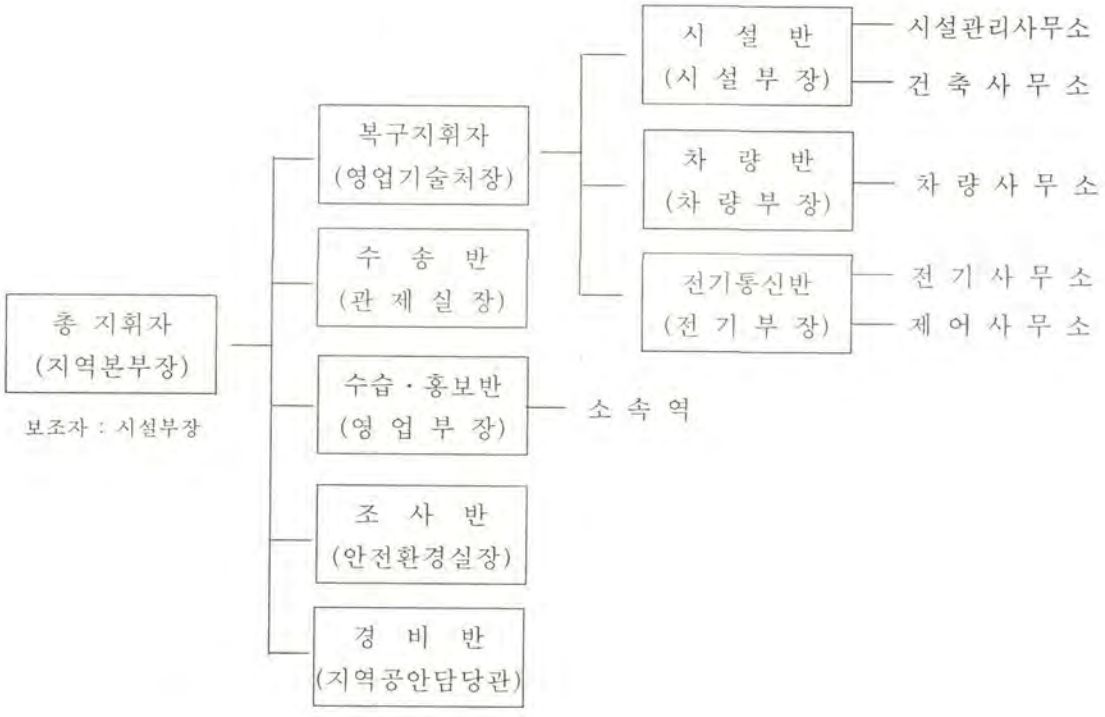

마.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

○ 본사 대책본부

○ 지역대책본부

- 설치장소 :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장소
- 기구표 : 사고복구반 편성표 및 각 반별 임무 준용
  (본부장 : 지역본부장)

※ 사고수습대책본부의 구성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관제실에서 임시대책본부의 기능 수행

6. 시설·장비의 점검·보수 및 관리 엄정

가. 주기별·계층별 책임점검제 시행

나.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점검

○ 신호보안장치 일일점검

○ 선로검사규칙에 의한 궤도 및 재료검사

○ 건축물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및 기록유지

○ 차량류 검수규정에 의한 검수 및 차축, 차륜 탐상검사

○ 전철·전력·통신설비 보수규정에 의한 각종검사

다. 취약개소 및 재난관리시설의 특별관리

라. 기존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7. 열차운행선 주변공사 안전관리 철저

8. 기타 안전활동 강화

가. 선로 무단통행 빈발지역 관리강화

나.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계도활동의 강화

○ 철도교통안전의 달 지정, 활동강화(4, 9월)

○ 안전계도 표지 및 시설 확대설치

○ 대중매체와 간행물을 통한 계도활동 적극전개

○ 역구내 및 차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 국민 계도강화

다. 화재예방

○ 건축물 내 전기시설의 주기적 점검

○ 유류 및 가스취급소 안전관리 강화

○ 소화설비 기능강화

○ 선로 변 산불방지

제 4 절 재난관리 투자계획

1. 총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총 투자('00~2004)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철도방재	268	22,428	61	6,474	29	8,921

2.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철도시설 개·보수작업)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총 투자('00~2004)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68	22,428	61	6,474	29	8,921
옹벽설치	71	4,534	10	731	0	0
교량확장	3	4,999	1	78	2	390
교량보강	134	9,272	28	4,281	18	7,042
배수로설비	33	1,034	12	292	0	0
터널보수	24	2,338	7	841	8	1,170
낙석방호책	3	251	3	251	1	319

제 9 장 태안해양경찰서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범국가적 재난(해일, 태풍 등) 대비 체계적인 대응체제를구축함으로써 해양안전 지수 향상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해양사고 수습 대응 시스템 기능확장, 선위통보제도·해상교통문자방송 활성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상안전 관리체제 구축 필요

2. 방 침

○ 구난 목표 관리로 해양사고 대응·구조시간 단축

○ 태풍, 해일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반복성 재난의 체계적 관리

○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색·구조 활동 전개

3. 해난사고현황

가. 총 괄

구분 / 년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비고
	척	명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04년도	66	424	57	420	9	4	4	2	2	
'03년도	21	164	15	164	6					

나. 해양사고 분석

○ 선종별 : 어선 45척, 화물선 9척, 기타 12척

- 어선이 68%로 전년 동기(14척) 대비 11척 증가

○ 유형별 : 기관고장 14척, 충돌 28척, 침수 2척, 추진기장애 7척, 전복 7척, 좌초 4척, 기타 1척, 타기고장 3척

- 기관고장 : 21.2%로 전년 동기(14척) 대비 14척 증가

○ 원인별 : 운항부주의 43척, 정비불량 19척, 기타 3척

- 운항부주의 : 65.1%로 전년 동기(30척) 대비 13척 증가

4. 세부추진계획

가.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협조예방 활동 강화

○ 지역 수난구호대책위원회 활성화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지역 실정에 맞는 수난구호대책 수립 시행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나. 해상기상 불량시 선박운용자의 자율적 운항 자제 유도

○ 선박운용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 지방해양수산청 : 국적선 및 일반선박
- 어선 및 소형선박 : 수협,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 해상기상 정보의 신속한 전파 : 기상청

- 구난무선국 및 어업무선국 이용 항행 선박에 전파
- 출동함정 → 항행선박 사전 안전지 대피유도

다.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언론기관 협조

○ 지역방송 및 신문사 협조 해난방지 홍보

○ 홍보전단 및 스티커 제작 배포

○ 출입항 선박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실시

라. 해난취약 요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

○ 출·입항 선박 지도 감독 강화

- 기상불량시 소형선박 출항 통제
-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 확행
- 선박검사 미필등 출항 통제 대형선박 철저 통제

○ 해난다발선박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 해난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계몽
- 출입항시 안전점검 확행

마.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로 구조즉응 태세 유지

○ 취약해역 경비함정 적정 배치 운용

- 여객선 항로 및 취약해역 등 해난다발 해역 경비강화

○ 기상불량시 원해 해난사고의 신속대처를 위한 군 대형구조 함정 지원협조

○ 특수해난사고 대비 선박 구난업체간 협조 지원체제 유지

- 선박구난업체 현황 파악
- 필요시 해·공군 구조대 지원협조

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 전개

○ 긴급구조체제 정립

- 기상양호시

·1차 : 사고해역 인근선박 및 출동함정 투입 구조

·2차 : 당직 대기함정 투입

·3차 : 모항 대기함정 투입

- 기상악화시(자체구조 불가시)

· 1차 : 사고해역 인근선박 및 인접구조본부 대형함정, 헬기 등 지원 구조

· 2차 : 해군 대형함정 또는 공군 지원요청 구조

- 특수해난사고시

· 1차 : 관할 구조본부 특수기동대

· 2차 : 인근 구조지부 특수기동대 지원

· 3차 : 관내 선박 구난업체 동원

○ 대형 해난사고시 신속 대응

- 초기 단계부터 구조세력 대거투입 신속 구조

· 사고인지시 인근 해역 출동함정 투입

· 당직함정 및 대기함정 비상 출동

· 인접 구조본부 구조대 지원

- 관내 수난구호협력기관 구조대 지원 요청

· 민 · 관 · 군 구조 가용세력 동원

○ 긴급을 요하는 사고발생시 조치

- 충돌, 좌초,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 예상시 항공기 이용 특수구조요원 투입 인명구조 최우선 조치

- 원거리 해난시 공군 대형헬기 지원요청

5. 해난사고 요인

가. 인적요인

○ 정비점검 소홀 및 자체 대처능력 부족

○ 경계근무 소홀

○ 지정된 항로 이탈

○ 해상교통법 숙지미흡 및 각종 항해법규 미준수

○ 위치측정 미이행

나. 자연적 요인

○ 태풍, 폭풍의 영향

○ 안개의 영향

다. 교통환경적 요인

○ 낮은 수심, 암초산재, 항로폭 협소, 항로 굴곡 심함

○ 항로상 어장형성 조업 및 어망설치

○ 자연적 여건상 대형 항만 부족으로 특정항만, 해역에 해상교통량 밀집·집중

○ 교통안전 시설 부족

6. 해난사고 원인 분석

가. 각종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불감증

○ 기상 악화시 무리한 운항과 적화물 결박 등 안전수칙 미준수

○ 취약 시간대 항해 당직자의 졸음 운항 등 당직근무 소홀, 견시자 미 배치 운항

○ 운항시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협수로 운항과 자동항법 등 항해 전자장비 과신 및 준법정신 결여

나. 안전장구·장비 등 사전 정비·점검 결략

○ 출항전 구명벌, 구명정 등 인명구조장비 점검 소홀

○ 기상 불량시 화물창 등 충격으로 인한 파공 방지 조치 미이행

○ 어선 등 선체 노후화에 따른 구조결함과 기관 등 정기적 장비 점검·수리 미 이행

다. 선원근무 환경 열악·자질부족과 무리한 운항

○ 장기 조업어선의 선내거주, 위생설비 등 근무환경취약과 동절기 기상 악화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 누적이 운항과실로 연계 대형사고 발생 야기

○ 어선 등에서 무면허자의 레이더 항법 등 항해술 미숙과 경험에 기초한 무리한 운항으로 충돌, 좌초사고 초래

○ 선원자질 부족으로 기상변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 미흡

라. 기상과 자연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선박운항

○ 기상 불량시(저시정 등) 각종 안전수칙 미 준수 및 사전 대피 지연

○ 기상 불량에 따른 통신기 및 라디오를 통한 기상 정보 미 청취

< 구난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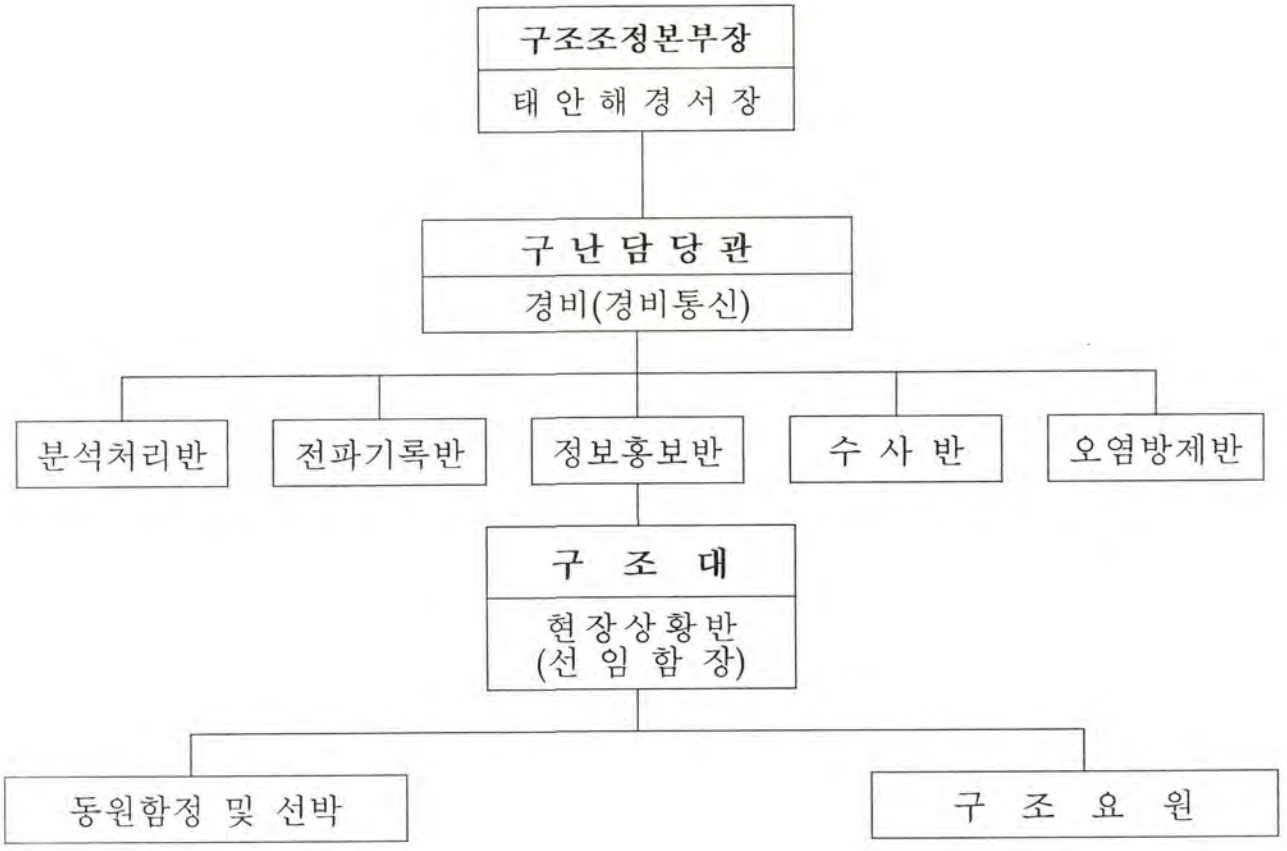
구조조정본부장
태 안 해 경 서 장
구 난 담 당 관
경비(경비통신)
분석처리반
전파기록반
정보홍보반
수 사 반
오염방제반
구 조 대
현장상황반
(선 임 함 장)
동원함정 및 선박
구 조 요 원

○ 구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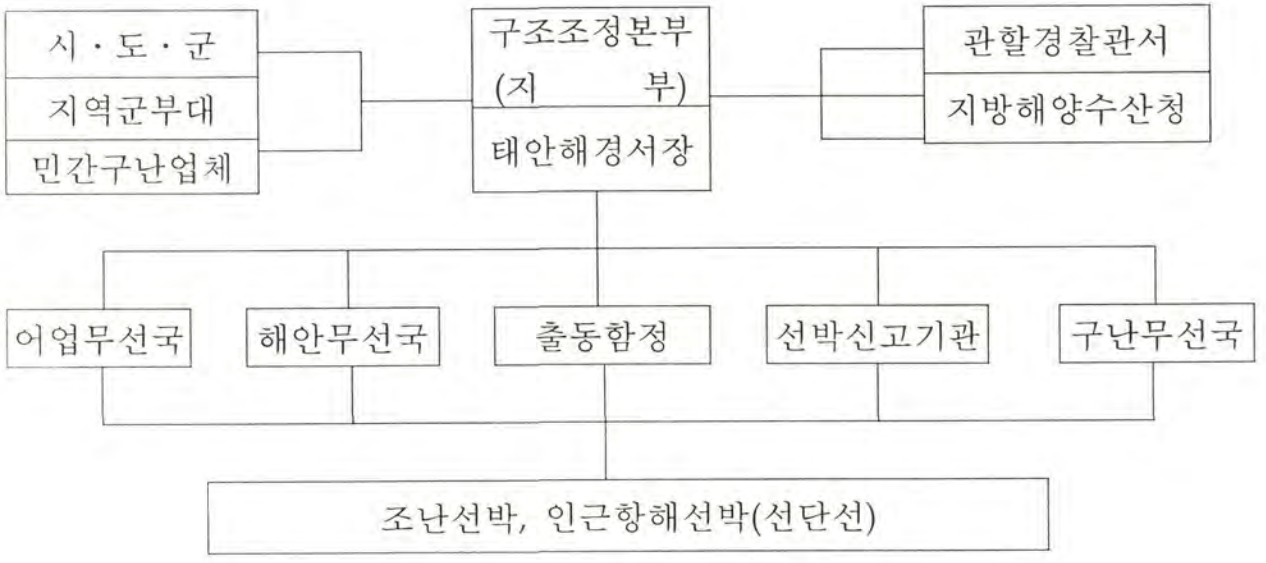
시 · 도 · 군
지역군부대
민간구난업체
구조조정본부
(지 부)
태안해경서장
관할경찰관서
지방해양수산청
어업무선국
해안무선국
출동함정
선박신고기관
구난무선국
조난선박, 인근항해선박(선단선)

관계기관 협조 조치사항

기 관 별	내 용	비고
해 양 경 찰 서 (구조조정본부,지부)	○선박출항전 안전점검(수협요원 포함) ○해난사고 예방 지도, 계몽 및 홍보 ○해상수색 및 구조임무 총괄 수행 ○지역 해상관련 기관 및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해 양 수 산 부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교육시 해난예방에 관한 집중교육 ○해난발생시 어업지도선 적극 지원 ○항로상 질서유지 ○해난사고 예방 지도, 계몽 및 홍보(선원교육포함) ○태풍래습시 통제 및 안전관제 ○선박검사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구명장구 등 안전설비관리 및 성능유지	
시 도 시 · 군 · 구	○해난사고 수습대책본부 운용 - 유가족 보상등 사후처리에 관한사항 ○해난에서 구조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실종자 신고접수등 처리에 관한 사무	
소 방 서	○사고수습을 위한 인력, 장비지원	
지역군(해 · 공군)	○대형해난 발생시 인력, 장비동원 구조임무 수행 ○기타 해난 발생시 구조장비 지원 및 협조체제 유지	
검 역 소, 세 관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검역, 통관사무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출입국사무 및 구조된 외국선박, 선원의 입국에 관한 사항	
해 난 심 판 원	○사고선박 해난원인 규명 - 관계기관 통보 해난방지 자료 활용	

제 10 장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 재난의 정의 >

1.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인적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3.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신개념

재난 = 기존의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제2조) + 기존의 인적재난개념 (재난관리법제2조) + 국가기반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 계획의 기조 >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SAF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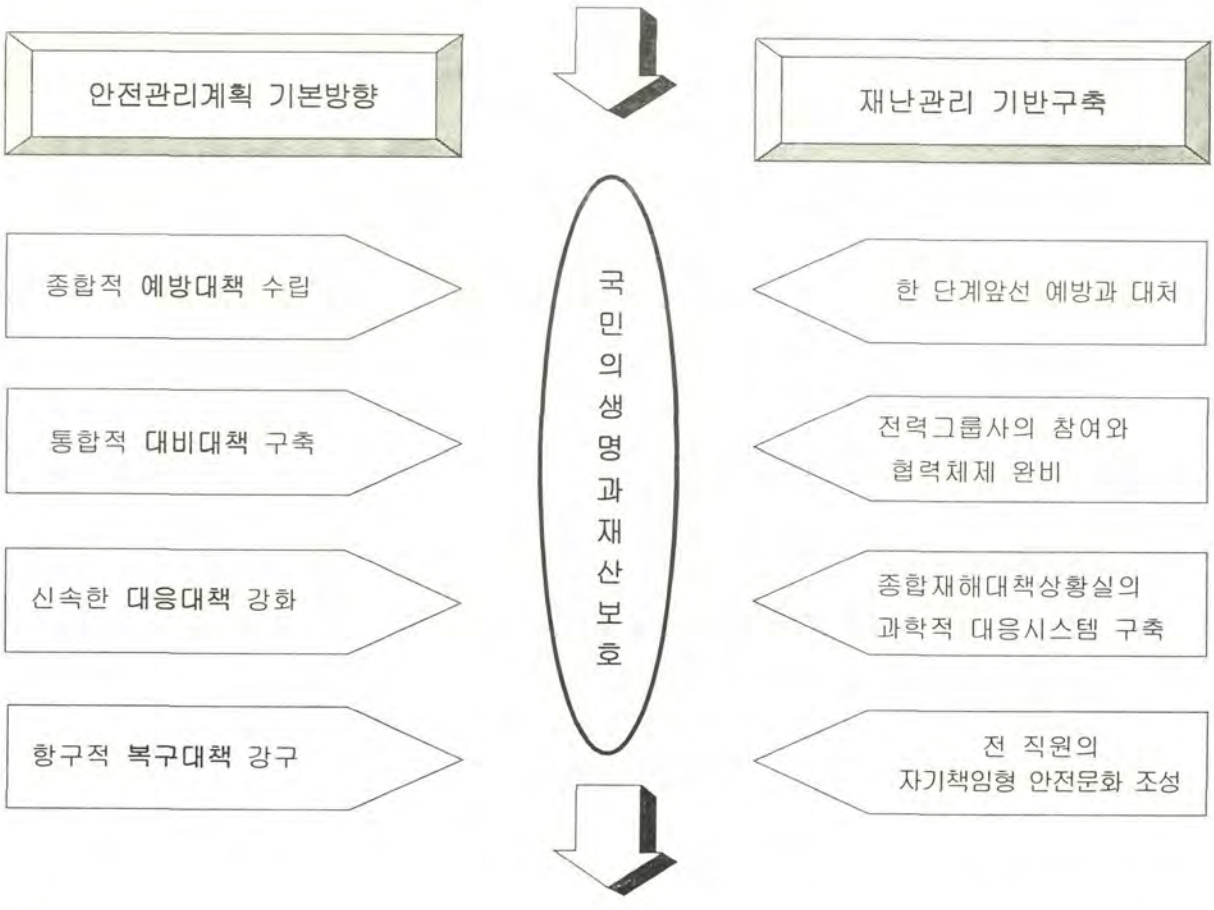

예방대책	○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대비대책	○ 재난유형·별단계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대응대책	○ 종합상황관리 및 총체적 대응체제 확립
복구대책	○ 예방차원의 항구적인 개량중심 복구

본 사	○ 국가 재난상황실 공조체제 유지 ○ 전사적 재난관리체제 확립
설비본부	○ 설비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체제 마련
사업소	○ 재난예방,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
직 원	○ 자율적 참여에 의한 대응능력 배양 ○ 국민 생활안전문화 의식의 혁신

< 계획의 기본방향 >

1.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전개

○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운영

2. 통합적 재난대비대책의 구축

○ 재해에 강한 전력설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전개

○ 직원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 강화

○ 재난대비 물자·자재 비축 및 재난대응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정비·심사평가를 통한 재난정책 추진

3. 신속한 재난대응대책 강화

○ 신속한 재난상황파악과 초기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 강화

○ 전력계통은 한계통이므로 전력그룹사간 공조를 통한 재난대응 협조체제 확립

○ 재난발생시 상황별 대응시스템 체계화

○ 정부·지자체의 재난현장 지휘·통제에 적극 협조

4. 항구적인 재난복구대책 강구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개량중심 복구로 근본적 재발방지 강구

○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대형재난시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재활지원

○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재난예방·대비 개선방안 강구

< 풍수해 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학적 요인 및 도시화·산업화 등 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풍수해 급증

○ 또한, 지구 환경 변화로 발생된 이상기후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력시설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와 예방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망됨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침

○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 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항구복구 대책의 확립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송전설비 분야

○ 자연재해 대비 노후·취약 지지물, 전력선·가공지선 교체

○ 태풍취약철탑 보강 및 안전이격 확보 공사

- 설계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태풍 강도 취약개소
- 안전 이격거리 미달개소 등

구 분	철탑보강계획(기)			비 고
	'05년	'06년 이후	합 계	
태풍취약철탑 보강	418	89	507	
철탑기초 보강	313	5,525	5,8380	

○ 자연재해예방 송전철탑의 풍속 대응기준 개선

- 개정내용

· 설계용 속도압(q) 산정시 구조물 종류에 의한 계수를 현행 재현기간 100년 → 재현기간 200년 계수로 변경

- 적용대상

· 단독(Radial) 계통 부하공급 송전선로

· 발전소 연계 송전선로

· 4회선이상 다회선 송전선로

· 장경간 및 계곡 횡단 등 국지 강풍 발생 예상지역

○ 송전선로 환상망 구축 추진

- 연차별 154kV 변전소간 환상망 구성계획

'05년 계획 : 8개 송전선로

○ 유사시 전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 안전점검 : 법정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정기점검, 우기대비 등 취약시기 수시 및 특별점검에 의한 시설상태 점검
- 유지관리 :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의 보수·정비 추진 및 지속적 확인 관리 철저

○ 재해재난대응 업무편람 제정

- 목적 : 대규모 재해재난대비 대응태세구축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주요내용
  - · 상황실운영, 기상예보 및 홍보 대응편람 제정
  - · 사업소별 고장복구 전문조직 구축방안 수립
  - · 고장복구 업무편람(표준절차서) 제정

○ 긴급복구 대응능력 극대화

- 송변전설비 재해재난대비 긴급복구훈련 시행
- 시행방법 :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긴급복구팀(위탁업체) 구성 및 훈련시행
- 시행예정시기 : '05. 5. (경영진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시행
- 긴급복구용 자재확보 : 신형 철주 총 24기

나. 배전설비 분야

○ 배전설비 시설기준 강화 및 기설설비 보강 시행

- 표준경간, 지지물 강도, 표준근입, 경과지 선정등
  - · 태풍대비 지역별 표준경간 보강

[중하중용 전주(700kg) 시설시]

구 분	해안지역	강화지역	비 고
1회선	60m	40m	【 검토 기준 】 - 전선규격 : 160㎟ / 95㎟ - 가공지선 설치
2회선	35m	30m	

[고강도 전주(1000kg) 시설시]

구 분	해안지역	강화지역	비 고
1회선	60m	60m	【 검토 기준 】 - 전선규격 : 160㎟ / 95㎟ - 가공지선 설치
2회선	50m	40m	

· 지지물의 강도 보강

지지물의 강도는 설치된 변압기 등 전력기기, 공가설비, 장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표준근입

지반이 유실되거나 연약한 지역의 경우 30cm 이상 근입 깊이를 증가하거나 근가의 추가시설 등으로 기초 보강

· 경과지 선정

수목도괴, 토사붕괴의 위험지역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강

[수목도괴 위험지역에 대한 설비 보강계획]

대상선로	수목벌채 가능	수목벌채 불가능	
		경과지 변경가능	경과지 변경불가
간선 및 중요부하 공급 분기선로	수목도괴 범위내 벌채시행	선로경과지 변경	ABC 선로 시설

○ 염해지역 배전설비 지중화 검토

- 대상 : 해안가 염해극심지역

- 추진사항

· 현 내염설비 시설기준의 유효성 및 지중화 대상지역 타당성 조사

· 기존의 연도별 지중화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시행

○ 고강도 지지물 개발 및 안전사고 방지카바 시설 추진

- 태풍 최대풍속의 갱신등에 따라 고강도 지지물 필요

· 1,000kg 강관전주 개발, 고강도 CP전주(개발완료) 활용확대

○ 이동발전기 활용 필수전력 비상공급 시스템 구축

- 정전발생시 이동용 발전기 즉시투입 체계로 전환

· 대상 : 재해복구 시설물, 공공기관, 병원, 금융기관, 통신시설 등

· 전국 비상발전기 임대업체 현황관리 System 구축

· 비상시 신속동원토록 사전에 약정 체결 및 비용정산등

- 당사보유 비상발전기 성능개선 및 보강

·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및 용량 상향조정

· 태풍 상습지역 및 서울지역본부등에 추가 배분 조치

『비상발전설비 보유현황』

이동 발전차		소용량 발전기		비 고
용량(kW)	수량(대)	용량(kW)	수량(대)	
100~500	18	0.75~30	176	

○ 태풍대비 표준 복구절차서 (S○P) 확립

- 운영현황

· 태풍대비 배전설비 피해복구 표준절차서

· 배전선로S○P

- 복구 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시설물별 복구 목표일정 설정운영

【참고】 현행 태풍복구 절차서중 복구 우선순위 지정현황

순위	우선공급 대상 고객 및 선로
1순위	급·배수장, 배수갑문 등 차수설비 또는 재해복구와 직접 관련된 시설물 공급선로
2순위	철도, 항만, 지하철, 급수펌프장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 선로
3순위	행정관서, 언론사, 군부대등 공공기관 공급선로
4순위	정전민감 특수수용(양축장, 냉·저온 등 저장시설, 건조장등) 공급선로
5순위	중요 산업시설, 공단지역 공급선로
6순위	대단위 아파트 단지등 주거, 상가밀집 지역 공급선로

2. 대비·대응대책

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 조직 및 임무

○ 전력그룹사 종합재해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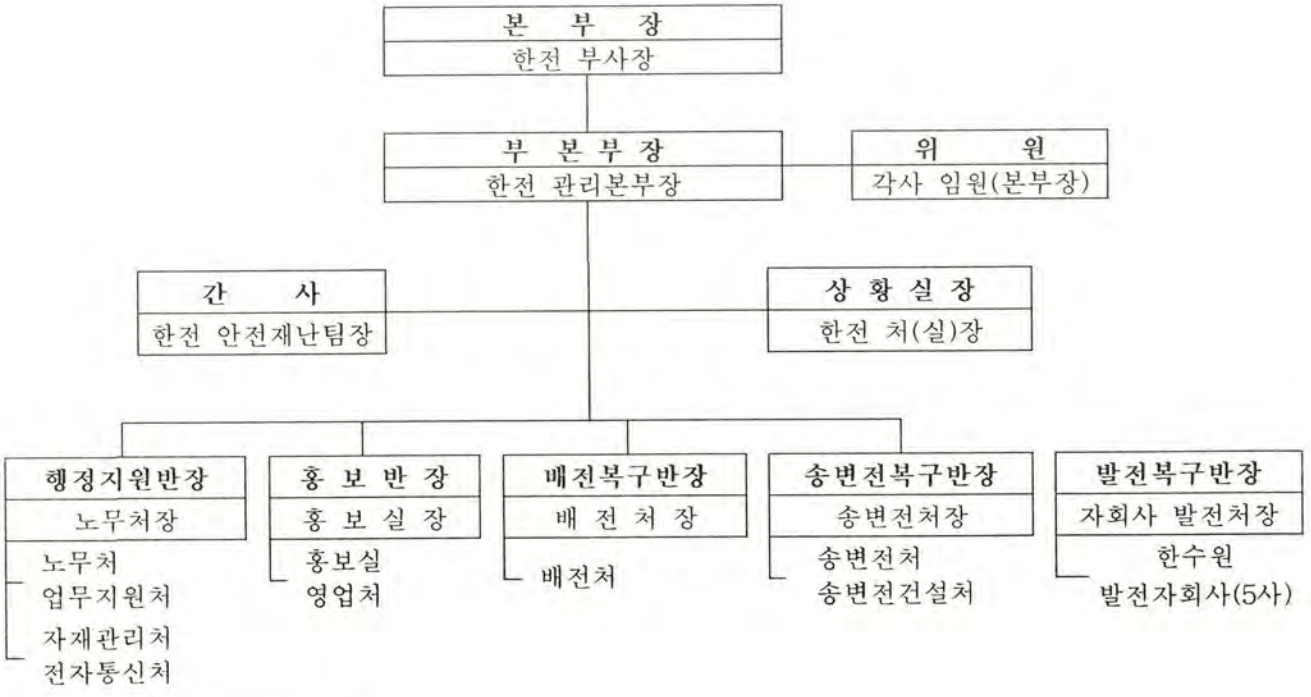

※ 비상근무

· 상기 해당처·실은 설비피해상황파악, 복구, 홍보, 영업 및 기타 지원에 필요한 부서로서 소속직원의 30% 이상을 3조로 편성하여 24시간교대 사무실 대기근무

[전력그룹사 종합재해대책본부 임무]

- 정부지시 또는 자체판단에 의한 근무의 결정과 하달
- 대정부 보고 - 상황파악(보고) 및 대책강구(수행)
- 비상근무에 대한 지도,감독 - 대외 및 대수용가 홍보활동
- 유관기관과의 협조 - 기상 등 관계정보의 수집
- 기타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주) · 본부장은 비상상태의 성격에 따라 위원을 별도선임, 조정할 수 있다

· 비상담당부서장은 재해비상발령 및 비상대책기구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전력그룹사 재해대책 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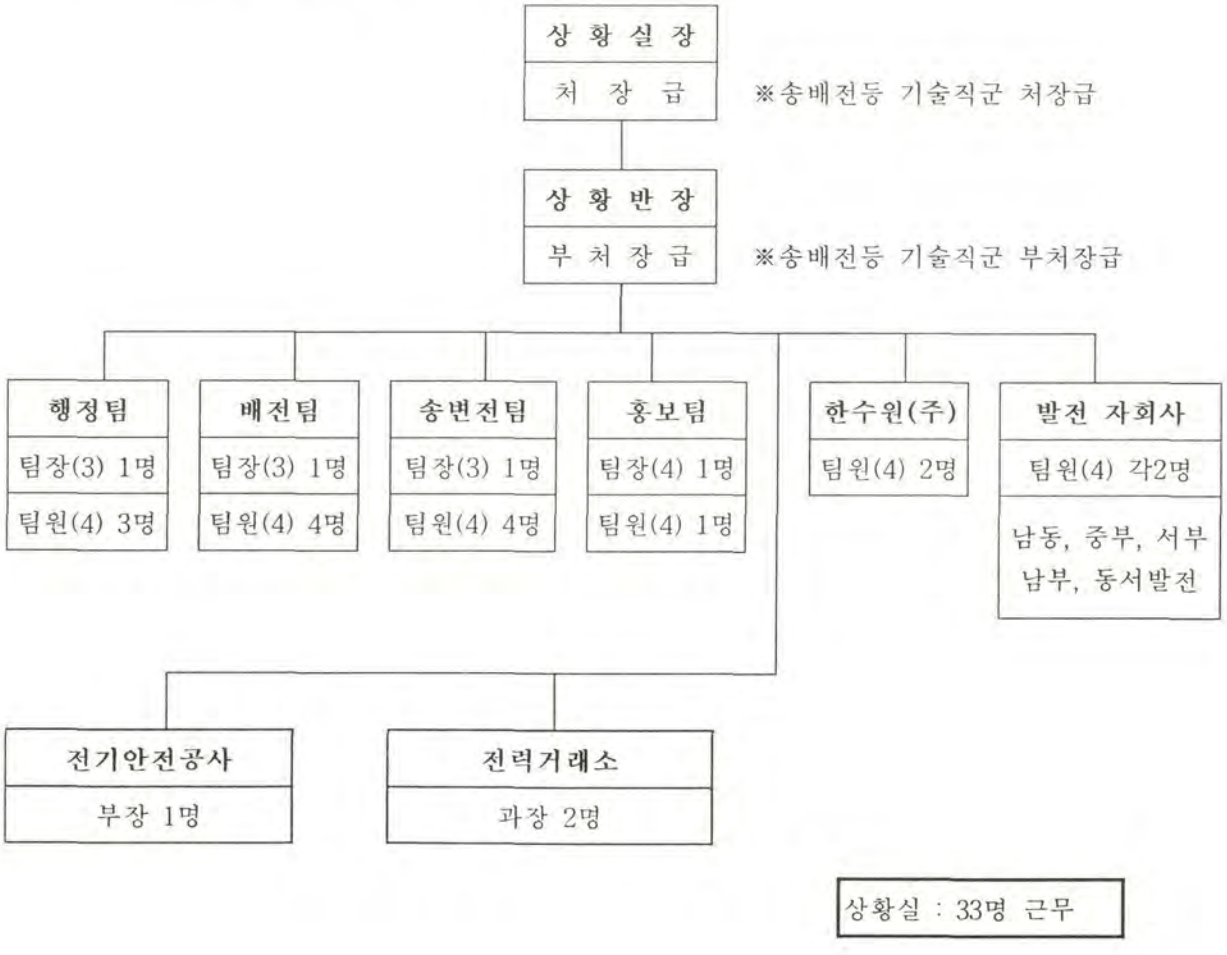

[상황실 임무]

- 상황실장
  - · 재해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총괄지휘
  - · 재해대책본부장 및 대관 상황보고
- 상황반장
  - · 재해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 상황실운영 총괄,
  - · 비상발령상황, 피해상황, 복구현황 종합보고
- 배전팀장, 송변전팀장, 행정팀장, 발전팀장
  - · 상황반장 보좌, 각팀의 업무총괄 및 팀원에 대한 세부 임무부여
  - · 발전팀장은 한수원 근무자가 담당하고 발전6개사 상황총괄
- 배전, 송변전, 발전팀원
  - · 관할 사업소 비상발령 현황파악, 집계보고
  - · 관할 사업소 비상근무인원 현황파악, 집계보고
  - · 설비별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집계보고
  - · 긴급 복구대책 강구
  - · 당사 및 협력업체 인력, 장비 동원태세 확인
  - · 보고서작성자료 행정지원조 제출
  - · 설비피해 집계상황판 정리
  - · 설비본부별 상황기록 유지
- 행정팀원
  - · 상황실 운영지원
  - · 상황일지작성 및 정리
  - · 일정간격 상황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강수량 및 기타 기상정보파악 및 일반행정지원

· 문서수발

- 홍보팀

· 대 언론 브리핑, 방송리포터,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 사업소 재해대책본부

(기 구)

기구 / 구성	비 상 체 제 (적색비상)	경 계 체 제 (청색비상)	준 비 체 제 (백색비상)
1. 본부장	사업소장	사업소장	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직원이 비상대기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즉시 동원체제를 갖추고 직원소재와 상황을 파악한다
2. 위 원	전부장	전부장	
3. 간 사	담당부장	담당부장	
4. 요 원	해당부서 소속직원 전원	해당부서 소속 직원의 ½이상	

※ 해당부서 : 설비피해상황파악, 복구, 홍보, 영업 및 기타 지원에 필요한 부서

(임 무)

- 본사, 관할시 · 도 재해대책본부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에 의한 근무의 결정 과 하달

- 대본사, 지방행정관서 보고

- 상황파악(보고) 및 대책강구(수행)

- 비상근무에 대한 지도,감독

- 대외 및 대수용가 홍보활동

- 유관기관과의 협조

- 기상 등 관계정보의 수집
- 기타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 사업소는 사규 비상근무규정 제4조 ②항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알맞게 기구 및 복구대 편성 운영

2) 근무체제

가) 일반사항

○ 비상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체제(백색비상), 경계체제(청색비상), 비상체제(적색비상)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평시에는 야간 당직자가 겸무한다.

○ 경보전달과 정보교환 등 재해발생 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사업소장은 본사 비상담당부서 및 설비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관할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우선 통보하여 재해보고체제를 확립한다

○ 재해발생시 피해액 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액 산정기준을 설정한다

○ 사업소장은 재해대책 요원에게 임무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주지시켜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상근무 구분

비상종류	적용 상황	근무인원 및 장비대기	비고
백색비상 (준비체제)	○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으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 ○ 기상주의보 발효 시 ○ 태풍정보(20N,140E)발표 시 ○ 하루강우량 80mm이상 예상 시 ○ 하루신적설 5~20㎝이상 예상 시	○ 근무인원 - 평상근무 체제유지 - 소속직원의 소재 확인 ○ 장비대기 - 사태진전에 따라 장비를 가감	
청색비상 (경계체제)	○ 상황이 긴박하나 그 대책실행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 ○ 발전자회사등 전력그룹사의 동원이 필요치 않을때 ○ 기상경보 발효 시 ○ 태풍정보(24N,135E)발표 시 ○ 하루강우량 150mm이상 예상 시 ○ 하루신적설 20~50㎝이상 예상 시 ○ 명절 연휴, 총선, 대선, 국제스포츠 행사 등 전력확보시	○ 근무인원 - 본사 · 상황실요원 5~18명 · 해당부서 인원의 30%를 지정 3교대 근무 - 사업소 · 해당부서 소속직원의 ½ 이상 근무 (필요시 교대근무) ○ 장비대기 - 전 차량 대기	한전 5~18명
적색비상 (비상체제)	○ 상황이 급박하여 지체없이 그 대책 실행에 돌입해야할 중대사태 발생 시 ○ 발전자회사등 전력그룹사의 동원 및 협조가 필요할 때 ○ 기상예보가 전력설비피해 및 전력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예상 될 때 ○ 태풍통보(27N,133E)발표 시	○ 근무인원 - 본사 · 상황실요원 33명 · 해당부서 인원의 30%를 지정 3교대 근무 - 사업소 · 해당부서 소속 직원전체 (필요시 교대근무) ○ 장비대기 - 전차량 대기	한전:18 발전:10 거래소:2 한수원:2 안전공사 : 1명

다) 재해비상의 발령권자

발령권자	발 령 범 위
사 장	자연재해 발생이 전사적이거나 수개사업소에 걸치는 경우 (직무권한규정 제9항에 의거 관리본부장 전결)
사업소장	자연재해 발생이 일부사업소에 국한된 경우

라) 재해비상의 발령 절차

본 사	사 업 소
○설비담당부서장은 기상예보 상황에 따라 비상발령을 비상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비상담당부서장은 요청 받은 즉시 비상 발령권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한다 ○설비담당부서장이 비상담당부서장에게 비상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상의 종류 - 비상발령의 범위 (전사 또는 일부사업소) - 비상근무자의 범위	○사업소장은 기상예보 상황에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켜 근무강화 조치를 취하고 설비담당부서 및 비상담당부서에게 보고한다 ○사업소장은 기상예보 상황에따라 비상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 · 정부 및 각 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비상발령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 · 재해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비상담당본부장에게 보고후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 사업소의 재해비상 발령 및 해제시에는 본사 설비담당부서 및 비상담당부서에게보고한다.

[非常發令節次]

○ 일과시간중

설비담당부서장(요청) → 노무처장 → 관리본부장 → 사 장

(직무권한규정 제9항에 의거 관리본부장 전결)

○ 일과시간후 및 휴일

당직책임자 → 노무처장 → 관리본부장 → 사 장

(협의)

(상황보고) 설비담당 부서장

○ 비상해제

– 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실장은 비상담당본부장에게 보고후 비상근무 해제

마) 상황실 근무위치, 시간, 근무요원 소집자 등

○ 상황실 위치

- 본관 지하2층(B205) 재해대책상황실

○ 근무시간

- 평일 : 09:00(또는 상황실 운영 개시시간) ~ 익일 09:00 (24시간교대)
- 일요일, 공휴일 : 주, 야간 근무교대 (09:00~18:00, 18:00~09:00)

○ 근무인원 소집발령자

- 일과중 : 한전 노무처 안전재난관리팀장
- 일과후 및 휴일 : 당직책임자
- 재해가 소규모인 경우 등 필요시 상황실 해당팀만을 소집, 축소운영

○ 근무비

- '비상근무비 운영지침' 준수

○ 재해비상 발령시 대기부서 및 관계인원 사전 지정

- 관계부서 : 배전, 송변전, 송변전건설, 홍보, 노무, 영업, 자재관리, 전자통신업무지원처 (발전자회사는 별도 자회사 규정에 의거 시행)
- 관계인원 : 설비피해시 복구등에 필요한 인원 (최소30% 이상 지정, 3교대 편성대기)

3) 보고 체계

가) 재해보고 시기

○ 재해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시

(기상청예보 및 방재기관의 통보 시)

○ 재해로인한 다음사항 피해 발생 시

- 송변전설비 : 송변전 사고 일체
- 배전설비 : 전주, 전선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 사고 일체
- 건설설비 : 건설중인 설비 일체
- 기　　타 : 인명, 건물, 장비등 사고 일체

나) 재해보고 요령

○ 산발적으로 특정지역의 피해 발생시 피해 개요를 즉시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때에는 피해물량만 우선 보고하며 피해액은 추후 보고한다.

○ 발생보고(즉시보고)

- 보고요령 : 재해비상 발령과 관련하여 "재해비상상황관리시스템"의 가동시에는 본 시스템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언통신문, E-mail, FAX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 보고내용

· 비상발령현황

· 비상동원 인원 및 장비

· 설비피해 및 복구현황

· 인명피해 및 응급조치현황

· 정전 및 송전현황

· 안전홍보현황

· 피해지역 전력공급지원현황

○ 일일보고

- 발생보고 이후 재해기간중 1일 2회 보고한다(단,보고시간은 조정할수 있다)

- 보고시기

· 05:00 현재를 06:00 까지, 16:00 현재를 17:00까지

- 보고내용

· 비상근무현황 및 피해, 복구현황 : 재해비상상황관리시스템 입력보고

○ 2 단계 보고

- 재해 종료후 2일 이내에 정확한 피해를 서류로 보고한다

· 보고요령 : E-mail, FAX등

· 보고내용 : 피해복구 개략집계현황

○ 확정보고(최종보고)

- 2 단계 보고후 5일 이내에 정확한 피해를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 서면 보고한다

· 보고내용 : 최종 피해복구 집계현황

· 피해현황사진 (칼라 5"×7" 각2매)

○ 재해보고 계통

- 준비체제(백색비상)

· 일과시간 : 본사 설비담당부서, 비상담당부서

· 일 과 후 : 본사 당직실

- 경계체제(청색비상)

· 본사 재해대책본부 및 각 설비담당부서

- 비상체제(적색비상)

· 본사 재해대책본부 및 각 설비담당부서

※ 각종 재해 발생시는 반드시 관할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에 피해복구 내용을 우선 통보 할 것

※ 재해 사고로 인한 피해 및 복구상황은 설비담당부서장이 비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비상담당부서장은 이를 종합 대관 보고한다

※ 본사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될 때에는 재해에 대한 모든 사고는 상황실에 우선 보고한다

다) 재해보고 계통도

○ 평상 시 보고계통

- 일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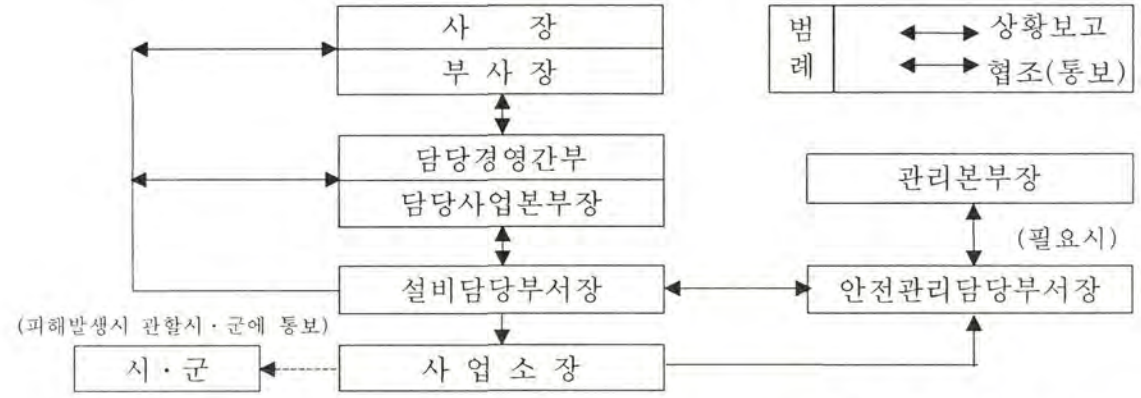

※ 평상시 사업소장은 재해로 인한 설비피해 발생시 피해복구현황을 본사 설비담당 부서장 및 비상(안전)담당부서장에게 보고

※ 본사 설비담당부서장은 해당설비별로 종합하여 비상(안전)담당부서장에게 통보

- 일과후 및 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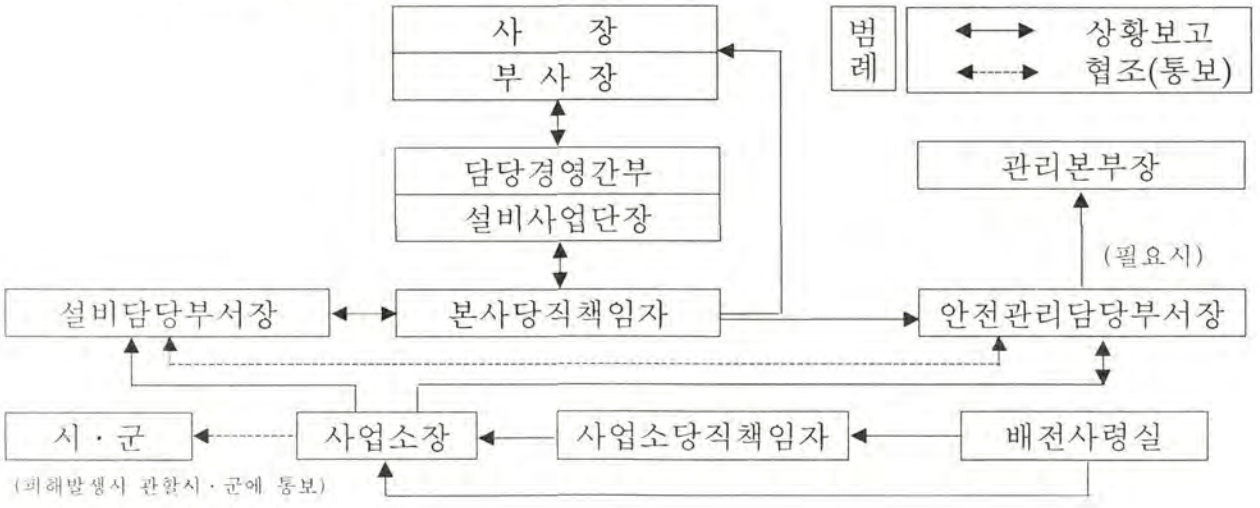

※ 특히 사업소 당직책임자는 재해로 인한 설비피해 발생시 피해복구현황을 본사 당직책임자에게 필히 보고하여야 하며,

※ 본사 당직책임자는 보고계통을 통하여 보고한다

○ 재해대책본부 설치시 보고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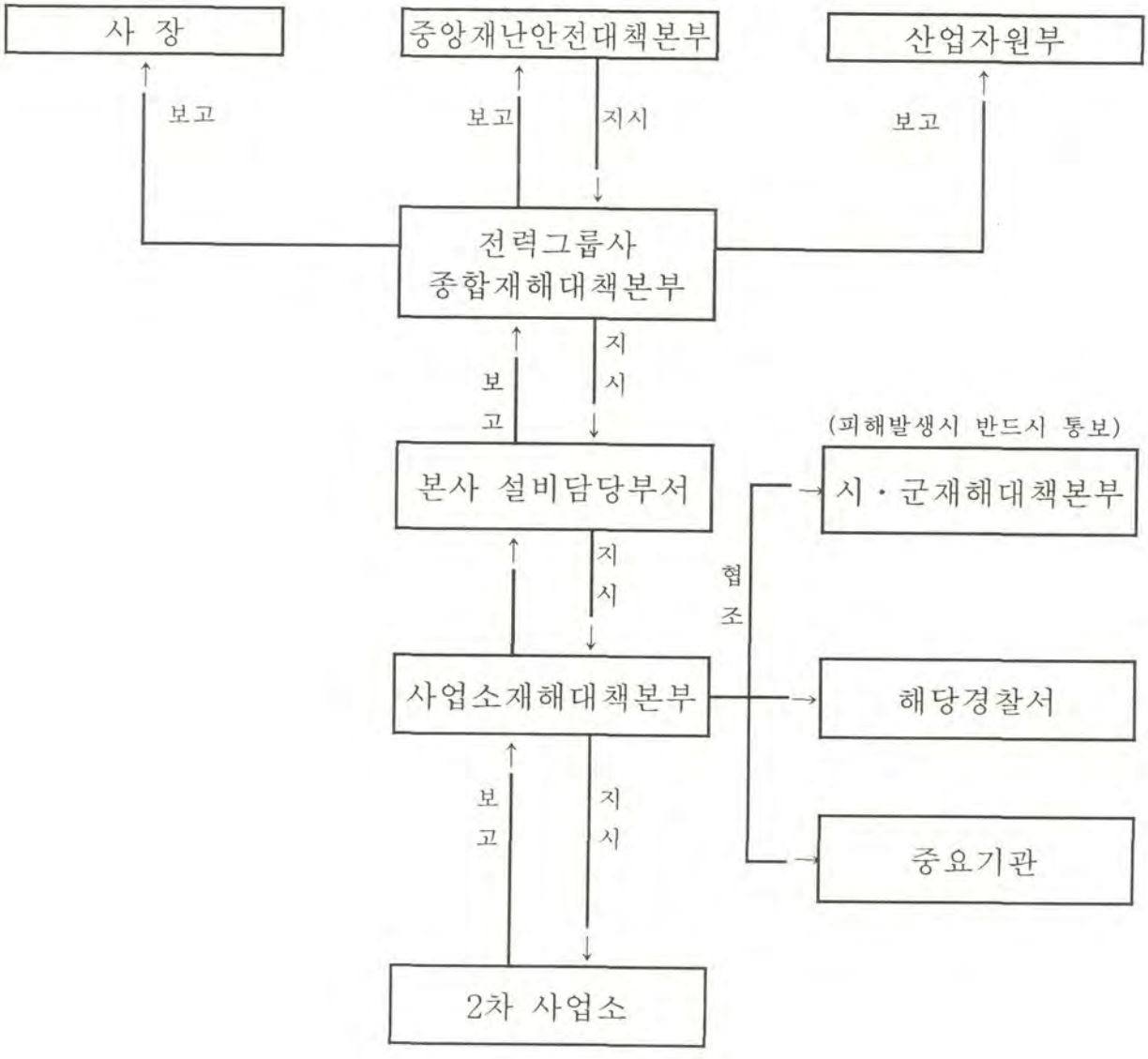

○ 협조체제

- 중앙 및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긴급구조구난본부

· 상호자원 (장비, 자재, 물자등)

※요청이 있을 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지원 및 협조

· 대형사고 시 합동 대처

-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해대책협의회 적극 참여

· 자주 방재의식 고취

·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 구조 및 구호활동지원

· 홍보 및 대피활동 지원 강구

나. 풍수해 대비대책

1) 일반사항

○ 각 사업소장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습지구를 사전 조사하여 전력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사업소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 사업소별로 재해위험설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개·보수를 철저히 시행한다

○ 사업소별로 우기전(5/25일 까지)에 수방자재를 확보 정비하여 재해발생시 긴급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붙임 #1 : 사업소 수방자재 및 장비보유현황 참조〉

○ 주요 배수구는 년2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량개소는 우기전에 보수 정비한다.

○ 건설공사장의 각종 가설물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계획 수립시 재해대책을 강구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 군, 구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 비상대비상황을 전파하고 재해에 대비한 근무태세를 확립한다.

〈붙임 #2 : 사업소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 기상상황 및 피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여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계도한다

2) 지하 변전소 침수사고 대책

가) 지하 변전소 및 아파트 수전설비 개선지도

○ 차수 및 양수설비, 역류방지장치 등 침수 방지시설 보강 개수

○ 부분적 보강이 불가능한 설비 및 저지대 아파트 수전설비 등은 안전지대로 이전 (지하배치 ⇒ 지상 또는 옥상배치)

나) 장마철 대비 자체설비 점검강화 지도

○ 구내 전기설비 일제점검 및 보수

○ 지하변전소 인입 지중관로 방수상태 점검 및 보강

○ 자가발전기 실제 가동훈련의 주기적 실시

- 우기 전 지도점검 완료

3) 빗물 펌프장 전력공급 안전대책

가) 배수장 전력공급설비의 특별점검 및 보강

○ 배수장 주, 예비 공급선로 선로순시

- 특별 선로순시로 취약개소 색출
- 연약개소의 전주등은 경과지 변경 및 보강공사 시행

○ 정밀 기별점검 및 설비보강

- 압축접속개소, 노후 COS, 과부하개폐기 등 사고발생 우려개소를 집중점검, 보수
- 애자청소, 수목전지작업 시행

※ 우기전 5월말까지 점검 및 보강공사 완료

나) 배수장 구내 전기설비 점검시행

○ 구내 수전설비는 소유주 책임하에 점검관리하며 요청시 기술지원

- 변전실, 배수펌프등 전기기기에 대한 관련부처와 합동 정밀점검

다) 유사시 응급복구대책 수립

○ 비상복구대책 수립

- 응급복구반 편성운영
  - · 유사시 배수장 공급선로 우선복구
  - · 복구장비(종합보수차, 활선작업차 등) 및 인력 우선지원
- 비상시 부하전환계획 수립

○ 보수용 자재 확보

○ 응급복구 모의훈련 실시

- 각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실정에 알맞은 SOP(표준복구절차서) 운영 및 주기적 훈련 실시

4) 사업소별 재해취약 전력설비 관리현황

사업소명 (1차)	지하 변전소 (개소)	전력구 (개소)	빗물 펌프장 공급 선로(개)	해저 케이블 (km)	해월 철탑 (기)	수지상 선로 (D/L수) (T/L수)	비고
서울지역본부	-	-	136				
인천지사	1	22	32	8.2	77		
경기지사	-	-	17				
경기북부지사	-	-	50				
강원지사	-	-	1				
강릉지사	-	-	22				
충북지사	-	20	42				
충남지사	-	-	77	4.58	43	2	국화도2.66km
전북지사	-	-	52		15		
전남지사	1	36	192	37	623	14	
대구지사	-	-	84				
경북지사	-	-	20				
부산지사	-	-	32				
경남지사	-	-	77				
제주지사	-	7	-	101	-	2(T/L)	
서울전력	11	-	-			7	
남서울전력	21	-	-				
수원전력		-	-			1	
인천전력	1	-	-		4	3	
제천전력		1	-				
대전전력		-	-		10	5	
전주전력		-	-			4	
광주전력	1	-	1	54	34	12	2개소
대구전력		26	-				
부산전력		-	-		14	4	
창원전력		-	-		8	16	
합 계	36	112	835	204.78	828	70	

5)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가) 대상

▷ 송변전 및 배전의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 공사장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일반공사장

나) 중점 점검 및 예방조치

○ 공사장내 우수소통 지장물 방치사례조사 및 정비조치
○ 우수 대비 임시 배수로 설치등 충분한 배수처리시설 확보
○ 본부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절개지 비탈면 사태 방지시설 설치
○ 임시 배수펌프장 및 양수기 확보
○ 피해우려 개소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다) 조치 사항

○ 관리주체별(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관계주민 등) 업무 분담 실시
○ 관리주체별 사전점검 활동 강화 및 강력한 행정규제 병행
○ 공사장별 관리대상 작성 및 간부급 직원 복수지정 특별관리
○ 사전조치 사항에 대한 우기전 점검 및 보완조치

라) 추진일정

○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반기2회(1.30, 6.30) 수정 보완】
○ 우기전 일제 정밀조사 현황 파악 : 2005년 3월 20일까지

○ 재해 취약요인의 분석 및 대책수립 : 2005년 3월중

○ 사업장별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2005년 5월 20일 까지 완료

○ 보완조치 확인 : 2005년 5월 30일까지

다. 복구대책

1) 재해응급대책

○ 재해 진행중의 임시복구와 재해 종료 후의 본복구로 구분, 전력공급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능동 대응

- 임시복구는 응급대책에 따라 긴급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복구체제를 가동, 복구지원반을 투입 재해시설 신속 가복구
- 본복구는 복구대책에 따라 정상전력 공급을 위하여 재해상황 종료 후 사업주 책임하에 재해시설 완벽 복구

○ 기관·단체 공동으로 긴급복구체제를 구축, 상호지원 강화

- 각 기관별 긴급복구반을 편성, 신속복구를 위한 장비·자재·인력 등 상호 지원협력 강화

○ 재해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지원 추진

- 1순위 : 배수펌프장·상수도시설·공공기관 등 필수시설
- 2순위 : 이재민 수용시설·병원·기간산업시설 등 주요시설
- 3순위 : 주거시설·일반산업시설
-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우선 복구

○ 복구지원 방법 및 내용

- 1차 : 초동출동반 출동
- 2차 : 상황별 기술인력·장비 추가투입
- 전주·전선·변압기 등 복구자재 투입, 전기공급시설 긴급 복구

- 누전여부·누전차단기 점검 후 불량부분 교체 등 수용가시설 복구
- 수해가옥·공장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 납부 연장 또는 면제

2) 재해복구대책

○ 재해복구는 사업소 자력으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에서 복구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사 설비담당부서의 지원을 요청

○ 재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시설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 복구

3) 복구대 편성

○ 복구대는 사업소별로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 각 사업소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복구대를 편성하고 각 반별 직위와 임무를 숙지토록 한다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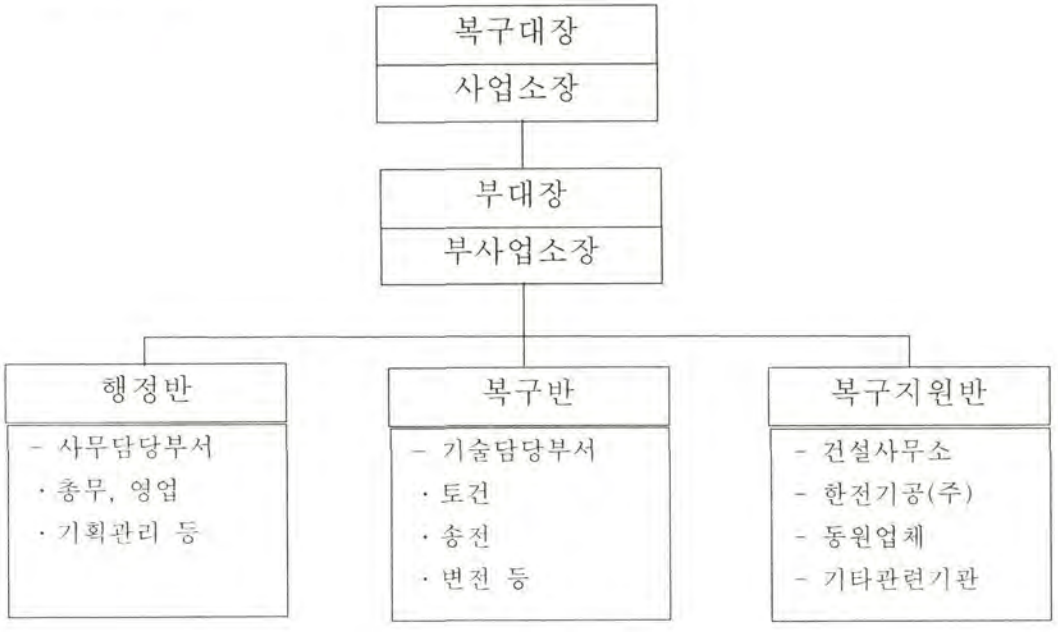

제 3 절 재정 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명		총투자계획 (2005 ~ 2009)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716,884		387,431
풍수해대책	전력설비 개·보수	739,440개소	1,716,884	100,957개소	387,431

2.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05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지지물	75	9,580	16	2,609	
노후전력선	330	20,945	27	1,655	
노후가공지선	41	230	9	45	
철탑기초보강	4,270	143,598	720	22,202	
안전이격확보	612	139,842	81	16,446	
취약설비 GIS화	65	216,078	23	77,654	
용량부족 CB대체	443	11,426	161	1,655	
노후 CB대체	479	50,706	102	11,077	
노후 LS대체	1,421	27,383	343	6,684	
변전소 옥내화	44	631,249	6	122,970	
주상변압기 교체	696,319	394,790	77,000	74,360	
배전해월철탑보강	78	6,541	40	3,306	
배전설비보강	19,506	43,115	19,506	43,115	
점검,진단	5,095	13,898	950	2,350	
교육	5,551	1,081	1,099	205	
홍보	5,111	6,422	874	1,098	
계	739,440	1,716,884	100,957	387,431	

< 설해 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설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은 물론 자율적 방재체제의 전환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기록적인 폭설로 초래된 산업기반시설 및 교통 정체 등 재난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침

○ 인명중시의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 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항구복구 대책의 확립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복구체계 확립

○ 현장행정지도 강화로 자율방재체제 전환 유도

○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설해대책 포함 수립

- 기간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3.5개월간)
  - · 설해대책 기간 : 2004. 12. 1 - 2005. 3. 15
  - · 준비기간 : 2005. 11. 1 - 2005. 11. 30
- 산간·계곡에 눈사태 위험구역 지정 및 눈사태 방지시설 정비
- 피해시설에 대한 인명구조·시설복구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 동절기 기상여건을 수시파악, 대설경보·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관계기관·시설에 신속전파 및 대처

○ 전선로, 건축물, 공사장, 비축시설, 산업시설의 설해 안정성 확보

- 폭설다발지역은 설계설하중 적용 강화
- 과다 설하중에 의한 전선절단·합선, 건물·공장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물·지지물의 안전점검
- 설해예상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등 위험지역 지정관리

2. 복구대책

○ 폭설시의 주요 교통·통신 기능 강화

- 폭설시 교통두절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장비 및 인력 우선 투입

○ 설해정보의 전파 및 설해상황 신속보고 등 제설체제의 정비

-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자재(염화칼슘·모래 등)의 확보·비축
- 비상시 연락 및 제설·복구인력과 장비동원체계 확립

< 가뭄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가뭄에 대비 기상분석, 가뭄상습지 관리, 양수장비 확보, 수리시설 점검·정비 등 용수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산업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홍수, 태풍 뿐만아니라 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재난 유형이 다양화 및 대형화되어가고 있음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침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 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원활한 산업활동 유지를 위한 차질없는 공업용수 공급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 가뭄지역의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가뭄전에 개발, 물부족지역에 가뭄시 양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 가뭄대비 긴급식수원 사전 확보

-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의 최대활용 및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타 수리시설을 일시 전용
-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가뭄·한해장비 구입 및 시설비 등의 지원 방안 강구

2. 대비·대응대책

○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검토

- 밭관정 전기요금(농사용 병)을 논 농사용 요금(농사용 갑) 적용 등

○ 가뭄대책 양수시설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가뭄극복 관정에 우선 전력공급

< 지진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진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의 지속 및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산업자원 시설물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와 함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성에 대비,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속적인 구조물의 보강,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진방재대책의 필요성 증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침

○ 내진설계 대상시설 및 장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지진방재의 교육, 도상 및 실제 훈련, 대국민 홍보 강화

○ 신속한 복구로 국민생활 안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 법정안전점검 시행 철저 및 내진성능 확보

-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검사와 안전진단 시행 철저
- 법정검사시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여부 확인 및 계도
- 구조물·시설물 등의 내진성 확보 위한 내진성능 평가 및 진단
- 정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필요시 특별 안전점검

○ 지진대비 교육·훈련 및 지진 방재지식 전파

- 지진발생 유형·규모·발생시간에 따라 필요한 모의훈련 실시
- 지진에 대한 경보·대피 및 복구·구조 등 행동요령 교육

○ 굴착공사 현장 지진대비 안전확보

- 지진으로 붕괴가 쉬운 지하철 등 대형 굴착공사 현장의 공사 안정성 확보 및 지진 초기시 인력·차량 등 긴급 대피

2. 대비 · 대응대책

○ 지진발생 정보의 신속한 입수 · 전파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 기상청 등으로부터 지진발생 정보수집시 신속전파 및 대처
- 상황실과 전용통신망 구축 및 운용

○ 상시보고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상황반 운영 및 상황파악 · 응급조치를 위한 기동출동반 가동
- 의료 · 구호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해발생시 신속대응

○ 재해대책 근무체제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등 3단계로구분 운영(평시는 야간당직자 수행)

○ 신속한 비상소집 체제를 확립, 재해복구철저 및 복구대 편성 · 운영

○ 최단기간내 재해의 응급복구 완료로 국민생활 안정도모

- 피해상황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복구기본방향 신속결정 시행
- 피난물자 · 복구자재 · 장비 확보 및 유사시 긴급대피

3. 복구대책

가.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계획

1) 비상용 발전차를 이용한 전력공급

○ 수용시설 전력공급 우선순위 : 비상등 → 취사용시설 → 옥내등 → 편의시설

○ 지역별 비상발전차 확보 현황

구분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경북	경기	계
100~300kw	3	2	2	1	1	1	2	1	1	1	1	1	1	18

○ 이동용 변압기, 개폐장치 확보 현황

구 분	서울	남서울	수원	인천	제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창원	제주	계
변압기	5	2	1	1	4	1	1	1	2	3	2	2	25
개폐장치	3	2	1	2	2	3	2	2	1	1	1	1	21
계	8	4	2	3	6	4	3	3	3	4	3	3	46

○ 인접 사업간 발전차량 상호지원 방안

【 지원요청 절차 및 지원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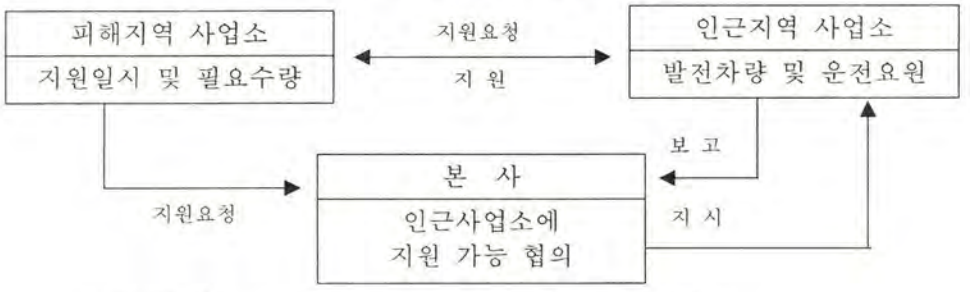

(집결지 : 피해사업소 비상대책반)

(운용책임자 : 피해사업소 비상대책반 복구반장)

○ 이재민 수용시설 내선설비 시설

- 발전차량에서 인입점까지 인입설비 가설
- 수용소 구내 내선설비 시설
- 내선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시행

2) 인근 전력설비에서 임시선로 건설

○ 임시선로 건설용 비상자재 확보

- 사업소별 비상자재 확보기준에 의한 자재확보
  · 지사단위별 전국 15개 권역으로 분산 확보
  · 피해발생시 인근 사업소에서 자재 긴급공수
- 본사 차원의 비상자재 긴급조달

○ 인력 및 장비동원

- 비상발령을 통한 직원 비상동원

· 인접사업소간 협의 상호지원 요청 및 본사보고

- 전기공사업체 긴급동원 : 관내 협력업체 비상동원 복구체제 유지

나.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 방안

○ 단기대책

- 지진발생시 설비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확립

· 지진발생시 설비 및 인명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취약부 점검·전원차단, 현장 비상전원 공급 등 응급조치

· 여진에 의한 시설물 붕괴대비 등 위험도에 따른 추가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수립

- 구급 의약품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

· 지방자치단체·경찰서·소방서·병원 등과 협조·연락체계 유지

- 방재용 자재의 주기적 상태점검 및 적정물량 확보

- 각 사업소별 지진발생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모의 훈련 실시

○ 장기대책

- 최근 지진다발 지역의 주요설비를 대상으로 지진 감시장치 설치및 운영절차수립 추진, 지진 규모별 설비 및 인명사고 예방대책 수립

- 내진형 정격 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부설로 지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사고 예방

- 자체 경보시스템 설치 또는 주변지역 원자력발전소와 경보체계 연계 등 다각적 방안 강구

< 전기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태풍·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등 인적재난으로부터 전기·유류·가스 등 에너지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교육·홍보의 강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의식 강화

2.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기능 마비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비상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 최근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근무의 확산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소비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지역 정국의 불안에 기인한 재난위험요소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및 석탄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고급에너지인 전력 및 도시가스의 비중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에너지소비 증가 및 각종 시설물의 증설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 요소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재난관리여건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지구 환경 변화로 발생된 이상기후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시설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와 예방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망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종사자와 조직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정보화된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국민생활 및 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침

○ 안정적인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

- 전기·유류·가스분야 등 에너지 수급안정 및 원활한 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시스템 정비

○ 현장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

-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긴급대응능력 향상
- 매월 「안전점검의 날」 및 불시 비상대응훈련 실시상황 등을 점검·평가

○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체제 구축 및 개선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기간 등 재난취약시기의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강화
- 재난 위험시설등에 대한 일제조사·정비 및 점검·보수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의 개발 및 전산화를 통한 관리기술의 선진화

○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제

○ 안전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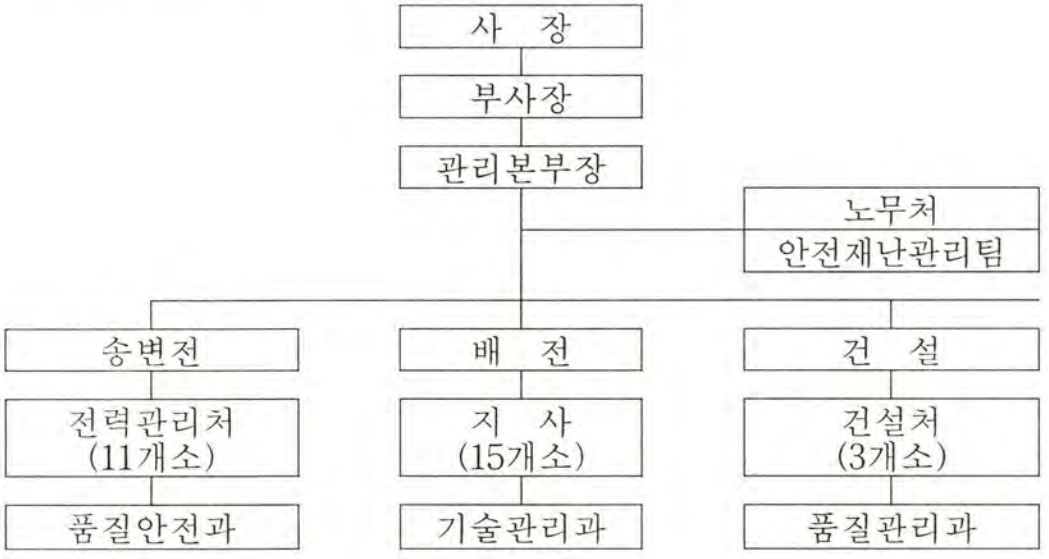

○ 안전관리 인력

구분 \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전기안전 관리자	전기안전 관리보조원	
배전	45	80	15	15	155
송변전 · 기타	34	35	16	72	157
계	79	115	31	87	312

○ 부서별 담당업무

- 본사 안전재난관리팀 : 안전관리업무 총괄 (8명)
- 본사 설비주관부서 : 설비유지 · 관리업무
- 사업소 안전담당 : 안전 및 품질, 공정업무 등 겸무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2005. 2현재)

구 분	지 정 현 황	지 정 대 상
전기설비 · 시설	537 대	345kV이상 중요변전소 주변압기
계	537 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절차

· 매년 11월말까지 중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 일제 조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신규 지정 필요성 검토

· 지정기준의 조정 · 정비 및 결과 보고

○ 점검 및 상태평가

- 점검주기

· A, B급 시설 → 반기1회

· C급 시설 → 분기1회

· D, E급시설 → 월1회

- 점검방법 :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별점검시 병행실시

- 상태평가 : 자체 제정한 재난위험시설 상태평가기준 활용

○ 장 · 단기 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주기 : 단기계획→1년단위, 장기계획→5년단위

- 수립절차 : 작성양식 시달→해당시설별 관리계획 작성 및 본사 제출→전사계획 수립 및 정부 보고

- 수립시기 : 2005. 3월 수립, 제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 보수 (연중시행)

- 특정관리시설별 장·단기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
- 송변전설비 : 설비별 계획정비, 경상정비, 위탁정비

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검사) 실시

○ 회사 자체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구 분 / 점 검	시행주기	시행계획	시행대상	비 고
계절별 설비안전점검	3회/년	3 회	송변전설비	설비관련 12개사업소
안전점검의 날 점검	1회/월	12 회	〃	〃
변압기 안전점검	1회/분기	537 대	345kV이상 중요변전소	자체점검
철도횡단 송전선로 합동점검	2회/년	361 개소	철도횡단 송전선로	철도청과 합동시행

라. 재난관련 안전문화운동 추진

○ 가공송전 재해예보 시스템 정착

- 재해예보시스템 주요내용
  - 재해재난 대응절차 수립
  - 재해예보시스템 운영 및 상황실 운영방안
  - 긴급복구 단계별 대응절차
- 추진 계획
  - 2005. 4 : 가공송전 재해재난대응 업무편람 제정
  - 2005.12 : 업무편람 Feed Back 및 개정검토

○ 중요시기 안전관리활동 강화

- V.I.P 해외순방기간, 설·추석연휴, 국가중요행사 등
- 특정시기 안전확보 절차에 따라 자율적 시행

2. 재난대비대책

가.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 전력설비(송변전, 배전)고장 복구동원계획

· 1단계 : 설비운전원 응급조치

· 2단계 : 보수인력 투입, 고장구간 분리 및 긴급조치 시행

· 3단계 : 협력업체 동원, 복구작업 시행

○ 재난대비 한전 인력자원보유 현황

구분 / 종류	단 위	규 격	보 유	합 계	비 고
인 력	명	송전전기원	308	3,233	고장 및 정전복구
		배전전기원	2,925		

○ 협력업체 지원인력 현황

구분	단위	분야(명)				협력업체
		배전	송전	변전	합계	
인력	명	9,163	439	498	10,100	933개

○ 일용전공협회(41개) 및 전기공사협회 등록 동원가능 인원 (32,712명) 확보 (협력업체 제외)

○ 한전 복구장비 자원보유 현황

구 분	단위	활선 작업차	저압 보수차	이동용 변압기	발전차	계
복 구 장 비	대	183	254	27	18	482

○ 협력업체 복구지원 장비 현황 (642업체)

구 분	단위	활선 작업차	오 가 크레인	포크레인	헬리콥터	계
복 구 장 비	대	707	514	128	2	1,351

○ 재해시 임대약정 발전기 지원 : 165업체 4,725대 확보

나. 자연재해 대비 대응시스템 구축

○ 배경 :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송변전, 배전설비 피해발생

○ 추진내용

- 풍하중 관련 · 기초법면 관리 · 송전운영업무 기준 개정
- 재해 · 재난 대응 및 긴급복구 시스템 개선
- 비상발전기 투입 표준화 절차 제정
- 사업소단위 임대발전기 업체현황 조사 및 D/B 구축
- 발전기 임대업체와 비상동원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04.4)

○ 추진계획

- 철탑부지 법면 유지관리 잠정기준 수립 시행
- 풍속계 설치에 의한 풍속 측정 및 취약개소 보강
- 배전철탑 관리기준 제정 운영
- 염해 대비 활선애자청소차 지원체계 구축
- 고립지역의 필수전력 공급에 대한 대책 수립

다. 재난대응 업무편람 제정 · 운영

○ 배전분야 : 재해예보 D-2~복구완료시까지의 행동절차서 및 Check List 작성 운영 (9단계)

○ 송전분야 : 재해예보 ~긴급복구, 후속조치까지 5단계 행동절차 정립

○ 계절별 주요재해 집중 관리

4대 주요재해	폭설	산불	호우	태풍
주요 발생시기	12월~3월	2월~5월	6월~9월	7월~9월
병행감시 대상	한파	돌풍,황사,오손	폭염	집중호우

라. 변전소 소방설비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추진배경 :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변전소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및 설비피해 최소화

○ 추진내용

- 화재감시 및 소화기능 보강
  - · 복합수신반 표준화 및 화재발생장소 통보용 방송설비보강
  - · 변압기실에 공기흡입식 연기감지기 설치 보강
- 피난설비 추가 및 보강
  - · 주 통로 및 비상계단에 비상전원 설치
  - · 주 출입문 및 층별 바닥에 방향표시 시행
  - · 각 실별 휴대용 산소호흡기 설치

○ 추진계획

- 점검결과 즉각 개선조치 우선 시행
- 사업소별 연차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설비 노후도 등을 감안 설비교체 시행

마. 지하복합변전소 완벽 소화설비 시스템 지속 추진

○ 추진목적 : 도심지 지하복합변전소의 대형재난 예방

○ 추진내용

- 지하복합변전소 주변압기실에 초기진화는 물론 재발화시에도 소화가능한 Water Mist(물안개 소화설비) 추가 설치

○ 추진계획 (총 35개 지하복합변전소)

- '04년 : 3개 지하복합변전소 (선릉, 역삼, 대치) : 완료
- '05년 : 구의 등 20개 지하복합변전소

- '06년 : 풍납 등 12개 지하복합변전소

  · 가스변압기 설치 변전소 5개소는 제외

바. 재난대응훈련

○ 재난대비 훈련 시행

- 비상대응시나리오 11건확보 운영(태풍, 산불, 철탑도괴 등)
- 분야별 가상상황 설정 : 안전유형별 표준모델('05.1산자부)참고

○ 고장복구 모의훈련 시행

구 분	훈련횟수	훈련내용
송전,배전설비	분기1회이상	메시지 불시 부여후 복구훈련
변전설비	주 1회	〃

○ 안전점검의 날 시행 (매월4일)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사업소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 본사 경영층이 시범사업소 참관하여 관심제고(년2회)

사. 전산설비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 목적

- 천재지변 및 심각한 재난에 대비한 상시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고객자료 손실방지, 대국민 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

- 백업센터 시설 : 백업센터내 서버시설, 주변기기 시설
- 인사, 재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버 등 4식 시설
- 시기 / 소요예산 : '04.12월 / 20억원

아. 재난지휘통신 무선통신망 구축

○ 재난지역내 비상통신망 구축

- 통신망 두절지역에 전력설비복구용 이동형 위성통신장비 시설
- 본사~제천전력~동해전력소간 비상 위성통신망 시험운영
- 급전지령회선 시험양호로 전력연구원 확대적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소 확대 적용

3. 재난대응대책

가. 재난상황보고체계

○ 일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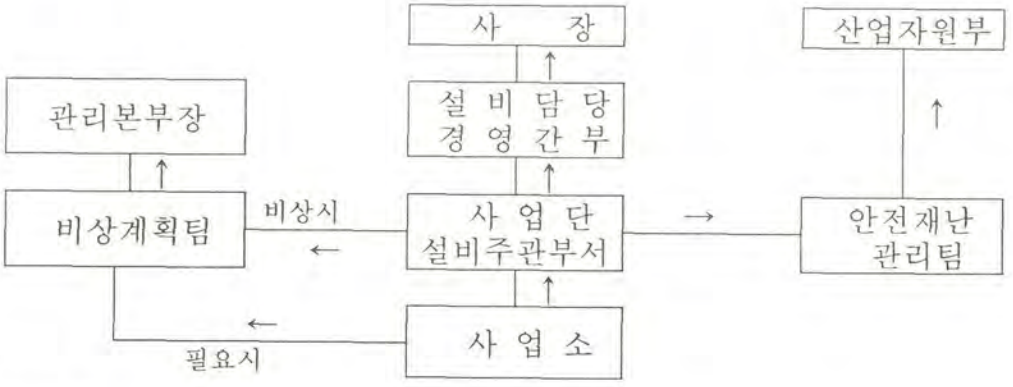

○ 일과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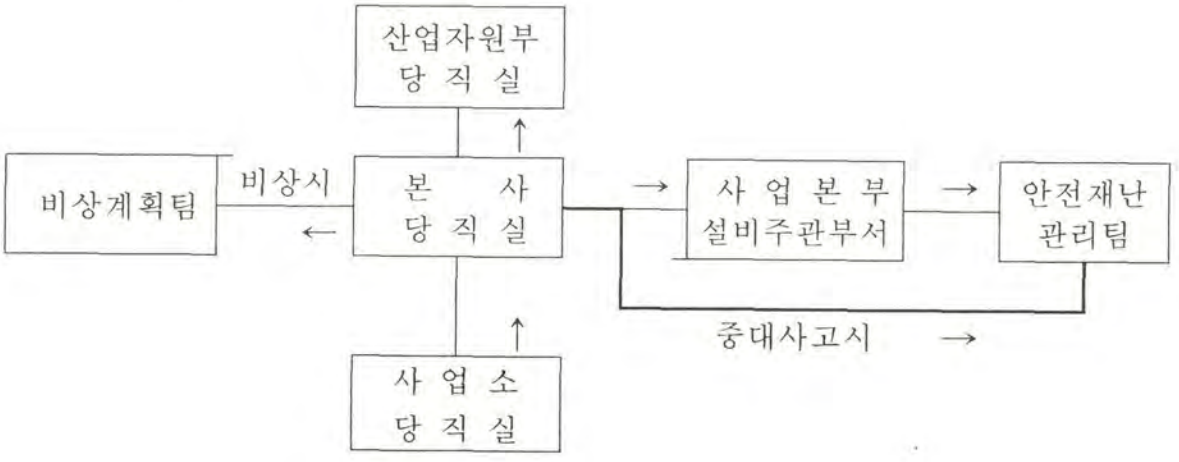

나. 비상시 근무체제 (3단계 근무체제 운영)

○ 사고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운영범위 결정

○ 발령절차 : 설비주관부서장이 비상담당부서장에게 요청

구분 / 종류	근무형태	장비대기	비 고
백색비상	평상 근무체제 유지 소속직원의 소재확인	사태의 진전에 따라 장비 가감	준비체제
청색비상	본 사 : 해당부서원 30% 근무 사업소 : 해당부서원 50%이상	본 사 : 업무용대기 차량의1/2 이상 사업소 : 전차량	경계체제
적색비상	본 사 : 해당부서원 30% 근무 사업소 : 해당부서원 전원	본 사 : 업무용대기 전차량 사업소 : 전차량	비상체제

다. 종합재난상황실 운영

○ 상황실 운영 시기

- 집중호우, 홍수, 태풍, 지진, 화재 및 기타사고 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경우

○ 상황실 구성

- 본사 :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및 필요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종합상황실 운영
- 사업소 : 사업소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 재난상황의 파악

- 재해상황관리시스템 운영 (재해상황 입력시 실시간 집계)
- 발전현황 및 송변전 계통운영정보 확보가능

○ 정부 상황실과 정보공유

- 국가 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 상기정보 연계제공

4. 재난복구대책

가. 재난원인의 조사 · 분석

○ 조사대상

-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발생시
- 정부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조사단 구성

- 안전재난관리팀 및 본사 설비주관부서, 관련부서 합동구성 (노무처, 송변전처, 배전처, 송변전건설처, 전력계통건설처 등)
- 직급별(부처장, 부장, 과장급) 전문가로 편성

○ 조사단 임무

-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정밀조사
-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대책 수립
- 동일 유형의 사고예방대책 수립으로 재발방지

나. 재난피해 보상대책 운영

○ 피해보상

- 피해금액에 따라 본사 또는 사업소단위 대책팀 구성
- 피해자측과 보상협의, 보상금 산정 및 정산

○ 보험가입

- 건물화재보험(3.9억), 산재보험(52.1억), 재해보장보험(1억)

다.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 재해지역 안전조치

- 재해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단계별 부하차단 계획

· 1 단계 : 재해지역이 변대단위일 경우 변압기 COS 차단

· 2 단계 : 구간별 재해발생시 구간 개폐기 차단

· 3 단계 : 전체선로 피해발생시 변전소 CB 차단

- 재해지역 해소에 따른 전력공급 절차

CB투입 → 구간개폐기 투입 → CoS 투입

- 재해지역 전기안전 홍보

· 지역 매스콤(TV, Radio, 유선방송 등)활용

· 마을앰프 방송, 차량 안내방송, TV 등의 자막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라. 전력설비 고장복구 대책

○ 정전지역 최소화를 위한 부하전환 및 긴급 가복구

- 고장확대를 방지를 위한 재해 예상지역 부하차단 또는 전환

○ 전기공사업체 긴급동원

- 관내 단가업체 비상동원 복구체계 유지

○ 긴급복구용 자재 및 장비확보

- 사업소별 비상자재 확보기준에 의한 자재확보

· 지사단위별 15개 권역 분산확보

· 피해 발생시 인접사업소에서 자재 긴급공수

○ 재해지역 단전에 따른 지역 매스컴 홍보

- 전력설비 피해현황 및복구내용과 송전 예정시간

- 중요고객 및 특수수용 정전안내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 재난종합상황실과 비상통신망 설치 운영

- 일과중 : 안전재난관리팀 (본사 본관 13층)
- 일과후 : 당직실 (본사 본관 지하1층)
- 비상시 : 종합상황실 (본사 본관 지하2층)

○ 행정자치부 국가기반체계 상황실 및 KBS 정보채널과 연계

○ 재해발송시 방송홍보시스템 구축

- 1단계 : 한전↔ KBS 간 방송보도 환경구축 완료

· 전용회선 구성, 화상전화시스템 구축, 재해현황서버 구축

- 2단계 : 사업소 영상자료 수집환경 구축('05. 3~ '06. 5)

· 재해빈번 예상지역부터 단계적 시행(제주, 영·호남, 강원 등)

바. 전력분야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 (TGIS) 구축 ('05.12월 완료예정)

※ TGIS : Transmissi○n Ge○graphic Inf○rmati○n System

- 전국에 시설된 방대한 송변전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 시설물의 수치 지도화로 송전설비의 제원, 이력, 계통 연결 정보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 신배전정보 시스템 (NDIS) 구축

※ NDIS : New Distributi○n Inf○rmati○n System(예산액: 1,837억원)

- 전국에 시설된 방대한 배전설비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지원을 받는 종합정보 Infra로 구축하여 배전계획, 설계, 시공, 설비관리 등 총체적인 배전업무에 정보를 공유하는 배전업무 종합시스템
- 전국185개사업소도면·전주·수용호수 '05.12월까지자료구축예정(2년간)

○ 지역별, 선로별 정전현황 및 중요고객등의 D/B화 관리시스템 구축

- 비상상황시 신속복구 지휘자료 제공

○ 재해비상관리시스템과 관련 설비관리 시스템의 연계추진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1. 제1차(2005～2009)계획기간중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 지지물	75	9,580	16	2,609	16	2,600	12	1,010	12	1,000	19	2,361
노후 전력선	330	20,945	27	1,655	28	1,855	76	3,330	76	3,305	123	10,800
노후 가공지선	41	230	9	45	8	40	7	35	8	40	9	70
철탑 기초보강	4,270	143,598	720	22,202	832	25,655	595	20,909	682	23,967	1,441	50,865
안전 이격 확보	612	139,842	81	16,446	81	16,446	115	27,632	115	27,640	220	51,678
취약설비 GIS화	65	216,078	23	77,654	11	34,629	4	15,400	13	42,561	14	45,834
용량부족 CB대체	443	11,426	161	1,655	28	1,855	76	3,330	88	2,280	90	2,306
노후 CB대체	479	50,706	102	11,077	103	10,993	79	8,036	95	10,035	100	10,565
노후 LS대체	1,421	27,383	343	6,684	261	5,436	244	4,230	283	5,450	290	5,583
변전소 옥내화	44	631,249	6	122,970	8	152,457	12	100,001	9	125,143	9	130,678
주상 변압기 확보 · 교체	696,319	394,790	77,000	74,360	100,100	76,591	130,130	78,889	169,169	81,256	219,920	83,694
배전해월 철탑보강	78	6,541	40	3,306	38	3,235	-	-	-	-	-	-
배전 설비보강	19,506	43,115	19,506	43,115	-	-	-	-	-	-	-	-
점검,진단	5,095	13,898	950	2,350	975	2,585	990	2,843	1,050	2,985	1,130	3,135
교육	5,551	1,081	1,099	205	1,099	205	1,099	205	1,127	233	1,127	233
홍보	5,111	6,422	874	1,098	961	1,208	1,057	1,328	1,057	1,328	1,162	1,460
계	739,440	1,716,884	100,957	387,431	104,549	335,790	134,496	267,178	173,784	327,223	225,654	399,262

2. 세부사업내용

가. 송전설비분야

○ 노후·취약 지지물, 전력선·가공지선 교체

- 건설 내구연한 경과 지지물, 전력선·가공지선
- 부족 지상고 및 해상고 등 미달개소

○ 태풍취약철탑 보강 및 안전이격 확보공사

- 설계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태풍강도 취약개소
- 안전 이격거리 미달개소

나. 변전분야

○ 취약설비 대체(MCSG → GIS화)

- 기능저하 및 부품 확보가 곤란한 23kV MCSG의 GIS로 대체

○ 용량부족 차단기 및 노후설비 대체

- 계통 단락용량 증가에 따른 차단용량 부족 차단기 대체
- 사용연수 초과로 노후된 불량 차단기 및 단로기 대체

○ 변전소 옥내화

- 154kV 옥외 철구형 변전소의 옥내 소형GIS화

다. 배전분야

○ 주상변압기 확보 및 교체

- 과부하 주상변압기의 적기교체로 소손 및 유분출 사고 예방
- 노후 변압기의 교체로 설비의 건전도 확보

○ 해월철탑 보강

- 도시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 강풍, 태풍 등에 의한 해월철탑 도괴를 예방하여 장기정전 예방

○ 자연재해 태풍대비 배전설비 보강

-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설비 및 취약개소 발생 예방
- 태풍대비 배전설비 운영기준에 따른 설비건전도 확보공사 시행

라. 점검 및 진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지정시설 안전점검

- 대상 : 본사 사옥, 전력문화회관
- 내용 : 정기점검(반기1회), 정밀점검(매3년1회), 정밀안전진단 (10년후 매5년1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정시설 안전점검

- 대상 : 345kV 이상 주변압기
- 내용 : 정기점검(반기1회)

○ 분야별 주요설비 안전점검

- 철도횡단 송배전선로 안전점검
- 태풍, 집중호우 취약설비 안전점검
- 전력구 안전진단 등

○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

- 기간내 준공설비 사용전 검사

마. 안전교육 및 홍보

○ 안전교육

- 국내 위탁교육 : 년 200 명
- 해외 위탁교육 : 년 20명
- 사내교육 : 년 880명

○ 안전홍보

- 중앙TV, CATV, 신문, 극장 등에 전기안전 공익광고

붙임 #1

사업소 수방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시 · 도	사업소명	가마니 PP포대 (장)	모 래 주머니 (개)	삽 (개)	곡괭이 (개)	예비 변압기 (대)	크레인 (대)	지게차 (대)	트 럭 (대)	바켓 트럭 (대)	양수기 (대)	발전기 (대)	승용 작업 차 (대)	설비 진단 차 (대)
서울 특별시	서울 지역본부	1300	300	72	6	-	-	-	26	35	23	13	97	3
	서울전력	620	752	115	44	-	-	-	6	-	35	-	21	-
	남서울전력	600	350	30	4	-	-	-	4	-	7	3	8	
부산 광역시	부산지사	520	325	70	33	-	-	1	23	31	7	4	76	3
	부산전력	200	350	40	12	-	-	-	6	-	15	1	13	-
인천 광역시	인천지사	1000	200	70	45	-	-	1	20	22	4	7	28	3
	인천전력		20	30	8				1		7	2		
경기도	경기지사	1000	300	160	17	-	-	1	31	38	16	8	92	2
	경기북부지사	-	50	95	19	-	-	-	17	23	5	3	26	1
	수원전력	550	700	150	10	-	-	-	4	-	16	-	17	-
강원도	강원지사	1000	65	55	27	-	0	0	12	18	8	5	25	1
	강릉지사	1000	50	55	27	62	-		18	28	7	8	27	1
충청 북도	충북지사	1000	130	65	30	25	-	-	19	25	10	15	56	1
	제천전력	2400	2500	72	28	10	-	-	7	-	-	-	-	-
대전 광역시	충남지사	1000	0	150	30	30	-	1	36	40	24	29	104	3
충청 남도	대전전력	274	1288	77	30	-	-	-	2	-	7	-	15	-
전라 북도	전북지사	1000	300	120	38	-	-	-	22	30	12	14	64	1
	전주전력	450	256	75	15	-	-	-	2	-	4	-	3	
광주 광역시	전남지사	300	150	120	60	500	-	-	66	52	24	17	135	3
전라 남도	광주전력	500	600	105	50	-	-	-	5	-	-	-	-	-
대구 광역시	경북지사	1000	500	50	20	-	-	-	16	23	10	8	29	1
	대구지사	350	144	93	24	-	-	1	35	17	16	28	96	3
경상 북도	대구전력	330	172	140	31	3	-		6		3		5	
울산 광역시	경남지사	540	830	100	63	95	-	1	36	18	20	1	78	2
경남	창원전력	550	690	89	46	-	-	-	4	-	8	-	16	-
제 주	제주지사	300	90	25	11	-	-	1	9	5	1	1	14	1

붙임 # 2

사업소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시 · 도별	사업소명	재해대책본부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지역본부	중구청 2260-1325	중부 2269-0112	중부 2234-0119	명동 771-6422
	남서울전력	영등포구청 2670-3314	영등포 2676-0112	영등포 2675-0119	여의도동 786-6200
	서울전력	중구청 2260-1325	중부 2279-0112	종로 734-0109	명동 771-6422
부산광역시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888-4593,4599 부산진구청 605-4641~5	부산시 817-0112 부산진 807-2629	부산시 760-3150 부산진 633-8119	부전2동 605-4902
	부산전력	서구청 254-5033	서부 245-0112	중부 469-1983	충무동 240-4811
인천광역시	인천지사	인천시청 432-0119	중부 883-0011	중부 763-5161	신흥동 760-7920
	인천전력	인천시청 440-3745	서부 511-0119	서부 526-0134	가좌4동 577-7009
대구광역시	대구지사	북구청 350-7267	북부 357-7112	북부 353-5119	침산3동 354-3776
	대구전력	수성구청 666-2891	수성경찰서 752-0112	동부 756-1119	수성4가동 752-4125
광주광역시	전남지사	광주시청 062-613-8212	북부 267-7000	북부 269-1119	오치1동 265-8521~2
	광주전력	광산구청 940-8265	광산경찰서 941-0143	광산소방서 951-0119	어룡동 941-3532
대전광역시	충남지사	충청남도 220-3642 대전광역시 600-2993 동구청 250-1497	동부 627-6650	동부 628-2203	용전동 623-3318
	대전전력	동구청 250-1265	동부 627-6650	동부 628-2203	용전동 623-3318
울산광역시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229-2000	남부 273-8302	남부 272-8119	신정5동 229-9605
	신울산전력소	울산광역시 229-4045	울산경찰청 257-8611	울산소방본부 273-9119	청량면 229-7661

시 · 도별	사업소명	재해대책본부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경기도	경기지사	수원시청 228-2119	남부 216-0005	남부 236-1119	인계동 228-7612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청 828-2200 경기도 제2청 850-2982~5	의정부 828-4691	의정부 878-1119	의정부 1동 828-4110
	수원전력	수원시청 228-2114	동문 271-0112	이의동 254-0119	이의동 228-8709
강원도	강원지사	춘천시청 250-3497	춘천 242-3333	춘천 254-1119	후평1동 254-1904
	강릉지사	강릉시청 640-4949	강릉 653-3373	강릉 645-0119	포남2동 640-4614
	강릉전력소	강릉시청 640-4114	강릉 653-0112	강릉 645-0119	홍제동 640-4608
충청북도	충북지사	충청북도 220-4542 청주시청 220-6119	청주 253-7217	청주 255-9119	우암동 253-3008
	제천전력	제천시청 645-7101	제천 643-0112	제천 646-0119	청전동 645-8109
충청남도	충남지사	충청남도 220-3642 대전광역시 600-2993	동부 627-6650	동부 628-2203	용전동 623-3318
	대전전력	동구청 250-1265	동부 627-6650	동부 602-0425	용전동 623-3318
전라북도	전북지사	전북도청 280-3641 전주시청 285-5151	전주북부 211-0182	전주 250-4200	인후2동 246-7174
	전주전력	전주시청 285-5151	전주북부 284-0182	전주 275-0119	팔복동 211-4366
전라남도	전남지사	전남도청 062-607-4982	전남지방 232-1939	전남소방본부 360-0900	오치1동 265-8521~2
	광주전력	서구청 062-360-7494	서부경찰서 062-368-0113	서부소방서 062-372-8119	농성동 062-360-7604
경상북도	경북지사	경상북도 053-950-3119 안동 054-851-6332	북부 053-357-7112 안동 054-856-1113	북부 053-350-4000 안동 054-857-9119	침산3동 053-354-3776 서구동 054-852-3583
	대구전력	수성구청 666-2891	수성경찰서 754-1113	수성 793-9511	수성4가동 754-4341
경상남도	경남지사	경상남도 211-4533	창원 264-0112	창원 211-9282	용지동 262-0310
	창원전력	경상남도 211-2114	창원 280-2114	창원 211-9233	용지동 262-0310
제주도	제주지사	제주시청 064-750-7519	제주 752-7112	제주 756-0119	연동 746-26220

제 4 절 참고사항

1. 재해종류별 단계별 조치사항(정부)

가. 태풍래습에 따른 단계별 조치

1) 1단계 : 정보단계 (태풍이 감시구역내 진입시 : 20N , 140E)

〈행정기관 조치사항〉

○ 비상근무(준비체제) 실시

○ 기상정보 전파

○ 당해 해상의 각종 선박 및 조업중인 어선의 안전대피 및 귀항지시

○ 태풍동향 파악 및 진로 추적

○ 유관기관 통신망 점검 정비

○ 수산증·양식 시설 철거 등 안전대책 강구 준비

〈 국민행동요령 〉

○ 감시구역내 원양어선의 안전 대피 및 귀항

○ 야영객, 등산객, 피서객등은 라디오 및 TV를 통하여 태풍동향에의 주시 대피 및 귀가준비

○ 자기집 앞 하수구, 논두렁, 정비·점검

○ 지붕결박 및 입간판 정비

2) 2단계 : 통보단계 (태풍이 경계구역내에 진입시 : 25N, 135E)

〈 행정기관 조치사항〉

○ 필수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경계체제)실시

○ 일선 지휘관(시장,군수,구청장) 정위치 근무

○ 태풍 진행상항에 따른 시간대별 영향권 설정 검토

○ 재해대책 강화 조치

- 댐 예비방류 검토 및 방류실시(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 각종 선박 긴급대피, 어선결박 및 양육
- 연안여객선 통제검토
- 수산증·양식 시설 보강조치 등 안전대책 실시
- 야영객, 피서객, 등산객 등 행락객 대피 권고
- 해수욕장 출입통제 및 국·공립공원, 산·계곡 입산금지 검토
- 국, 공립공원 등 주요 행락지의 다중집합장소에 기상안내판 설치]
- 수방단,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민방위대원 등의 비상대기
- 인명구조체제 가동준비
- 지붕결박, 비산입간판 정비 등 사전조치결과 점검 및 보강
- 기상청과 협조로 수시 태풍진로 추적 및 기상상황 파악

○ 대 국민 홍보강화

-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 방송요청

〈 국민행동요령 〉

○ 경계구역내 조업어선의 안전 대피 및 귀항

○ 각종 선박 및 어선 긴급대피,어선결박 및 양육

○ 지붕결박 및 비산 입간판 정비 실시

○ 행락객은 라이오 및 TV청취, 태풍동향 예의 주시 즉시 귀가

3) 3단계 : 주의보 단계 (태풍이 비상구역내에 진입시 : 28N, 132E)

〈 행정기관 조치사항 〉

○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비상체제)실시

○ 일선 지휘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위치 근무

○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시간대별 영향권 설정 단계별 필요조치 실시

○ 재해대책 강화조치

- 댐 및 저수지의 예비방류 실시
-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예찰 강화
- 인명구조 활동전기
- 해안 저지대주민 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수해상습지, 산사태 위험지구 내 물적 재산 안전지대로 대피
- 수방단,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민방위대원의 소집 및 현지출동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 전개
- 연안여객선 통제 실시
- 야영객 피서객, 등산객등 행락객 대피 및 귀가조치
- 해수욕장 출입통제 및 국·공립공원, 산·계곡 입산금지

○ 대 국민 홍보강화

- 태풍동향 및 이에 따른 행동요령 생방송
- 상황 진전에 따라 TV 3사, 라디오의 24시간 생방송 체제돌입

〈 국민행동요령 〉

○ 등산객 및 피서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및 귀가

○ 태풍 통보기간중 불필요한 외출 자제

○ 라디오 및 TV를 청취,. 태풍상황 예의 주시

4) 4단계 : 경보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비상체제)실시

○ 전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 재해대책 강화조치

- 댐 및 저수지의 예비방류 강화조치
-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예찰 강화
- 수해상습지, 산사태 위험지구내 인명 우선 대피
- 수방단,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민방위대원의 소집 및 현지 출동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 전개
- 홍수예경보 발령에 대한 강화조치(하류취약주민 긴급대피등)
- 기 입산한 등산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및 안내방송 실시

○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 조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 전개
- 이재민 구호 및 방역 실시와 사망 및 부상자 의료 조치
- 피해지구 응급복구 실시(주민 생계관련 공공시설 우선)
- 재해지역 교통두절 구간에 대한 고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

○ 대 국민 홍보강화

- 태풍동향 및 이에 따른 행동요령 생방송
- TV 3사, 라디오의 24시간 생방송 실시

〈국민행동요령〉

○ 기 입산한 등산객 잔류 피서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 태풍 통보기간중 불필요한 외출 자제

○ 라디오 및 TV를 청취, 태풍상황 예의 주시

나. 호우 발생에 따른 단계별 조치

1) 1단계 : 정보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비상근무(기관자체근무) 실시

○ 기상정보 전파

○ 강우관측 실시 및 분석등 강우상황 관리 강화

○ 배수문, 배수장, 양수기등 사전점검

○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순찰실시

〈국민행동요령〉

○ 야영객, 등산객, 피서객등은 라디오 및 TV를 통하여 호우동향에의 주시 대피 및 귀가준비

○ 자기집앞 하수구,논두렁, 정비 · 점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점검

2) 2단계 : 주의보 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비상근무(소속기관 합동근무) 실시

○ 상습 침수지역 주민대피 준비

○ 강우상황에 따른 경계강화

○ 재해대책 강화 조치

- 댐 예비방류 검토 및 방류실시(건설부, 수자원공사)
- 상습 침수지역 물적 재산 안전대피 및 주민대피 준비
- 농작물 침수방지 대책 강구
- 수방단,인명구조대,수방기동대,민방위대원등의 비상대기
- 국, 공립공원, 산, 계곡 입산금지 및 하천변 야영금지 및 대피조치
- 재해위험지구 예찰강화 및 담당책임제 확행
- 기상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기상안내 실시

○ 대 국민 홍보강화

-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 방송요청

〈국민행동요령〉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물적 재산 안전대피 및 주민대피 준비

○ 노후 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 철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 예경보 경청

○ 등산객 및 행락객은 조속 하산 및 안전지대 대피

3) 3단계 : 경보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경계체제)실시

○ 재해위험지구 예찰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 강우상황에 따른 취약지별 일선 기관장(시,군,구의 장) 현장지휘

○ 재해대책 강화조치

-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담당책임자 상주배치
- 해안 저지대 및 수해상습지역 주민 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수방단,인명구조대,수방기동대,민방위대원의 소집 및 현지 출동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 전개
-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행락지 담당책임자 상주배치
- 야영객 피서객, 등산객등 행락객 대피 및 귀가조치
- 주요 행락지에 기상 안내판 게시 및 기상안내 실시

○ 대 국민 홍보강화

-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 방송 실시
- 상황 진전에 따라 TV 3사, 라디오의 24시간 생방송 체제돌입

〈국민행동요령〉

○ 등산객 및 피서객등 행락객 안전지대 대피 및 구조요청

○ 해안 저지대, 수해상습지, 산사태 위험지구내 주민대피

○ 소규모 및 노후 교량은 안전 확인후 이용

○ 라디오 및 TV를 청취, 호우상황 예의 주시

다. 폭풍 발생에 따른 단계별 조치

1) 1단계 : 정보단계

〈행정기관 조치상황〉

○ 비상근무(기관자체근무) 실시

○ 기상정보 전파

○ 조업중 어선(15ton 미만) 출항어선 파악 및 안전지대 대피

○ 해안가 가옥 지붕결박 준비

○ 수산증 · 양식 시설 철거등 안전대책 강구 준비

〈국민행동요령〉

○ 해안가 피서객 등은 라디오 및 TV를 통하여 폭풍동향 예의 주시, 대피 및 귀가 준비

○ 수산증 · 양식 시설물 보호조치

○ 지붕결박 및 입간판 정비

2) 2단계 : 주의보 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비상근무(소속기관 합동근무) 실시

○ 기상특보 전파

○ 수방단 및 민방위대 연락망 점검 정비

○ 조업중 어선(15ton 미만)의 안전대피 및 귀항조치 다만 15-30ton미만 어선은 현지 여건을 고려 대피 지시

○ 행락지(해안가 중심) 출입금지 및 행락객 대피 실시

○ 수산증·양식 시설 보강조치 등 안전대책 실시

○ 각종 전달체계에 의한 대국민 홍보(해상중심)

○ 대 국민 홍보강화

-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 방송요청

〈국민행동요령〉

○ 어망부설 중지 및 철거

○ 이전 가능한 증 ·양식 시설물의 안전지대 이전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 지붕결박 및 낙하 위험물의 제거 결속

○ 라디오 및 TV 청취, 폭풍동향 예의 주시

3) 3단계 : 경보단계

〈행정기관 조치사항〉

○ 비상근무(경계체제)실시

○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전 어선 및 선박의 입·출항 금지, 연안여객선 통제실시

○ 해안가등은 해일에 대비 저지대 주민 대피실시

○ 각종 피해보고 및 조치사항 보고

○ 해안가 행락지 출입금지 및 담당책임자 현지 상주배치

○ 수방자재, 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재해 발생 시 보유장비 및 인원의 신속한 동원

○ 대 국민 홍보강화

-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 방송 실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선박 출입금지, 양육대피 및 결박

○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철저

○ 라디오, TV등 방송매체를 이용 가능상황 예의 주시

『新 재해대책』의 대피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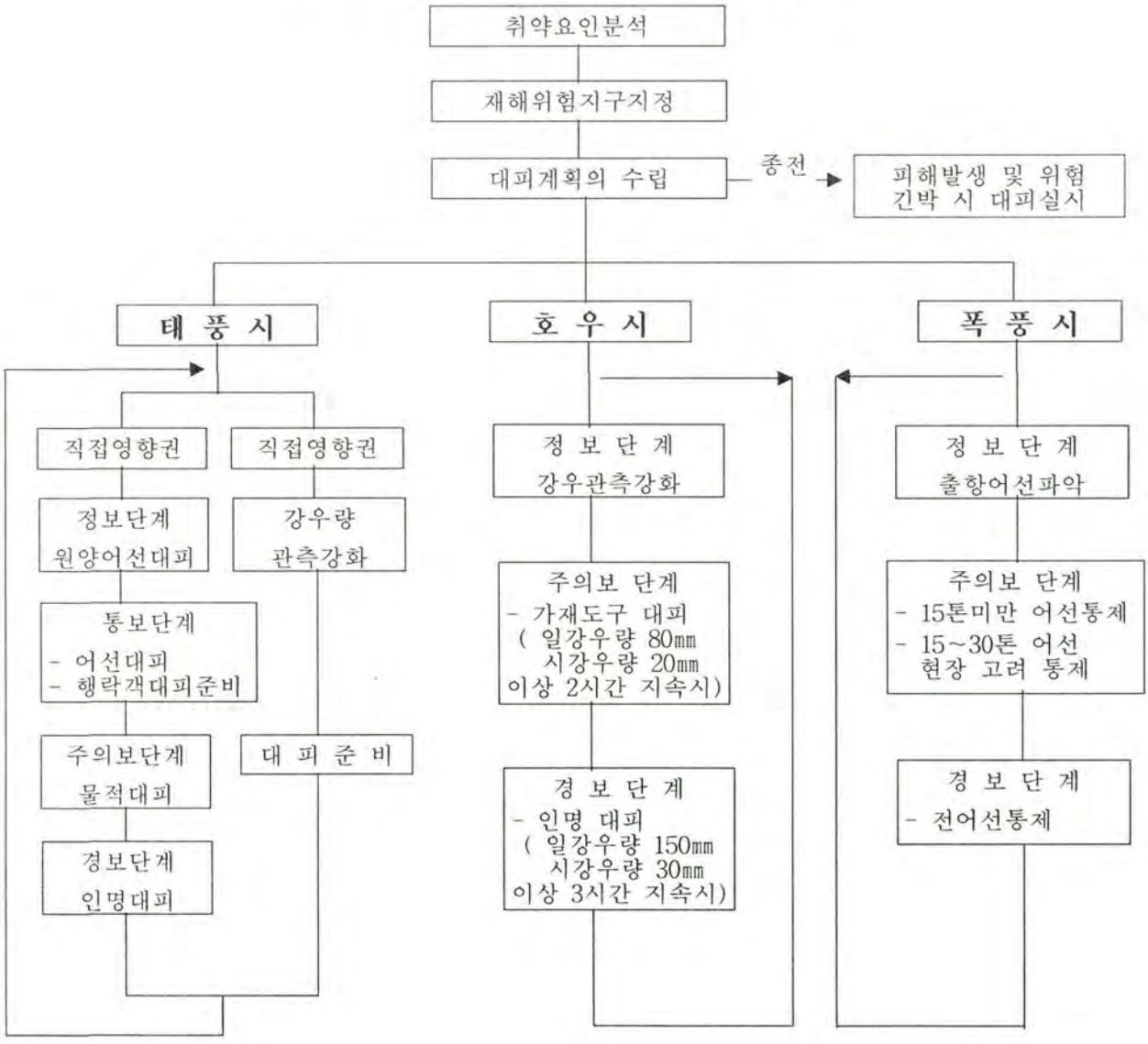

2. 방재물자비축 및 장비지정

가. 자재의 비축관리

○ 수방자재 및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의 비축량은 사업소별로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하여 책정하되 지역실정 및 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

○ 보관자재는 매년 5월말까지 내구연한을 감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폐기처분 등 조치를 하고 비축 계획량을 확보

- 내구연한 : 가마니등 2년
  모래주머니 3년
  PP포대, 묶음줄 5년

○ 기타 사업소 실정에 따라 필요한 수방자재를 확보한다

- 비상시 구호용 변압기, 개폐기 및 부속자재 등

○ 창고의 부족으로 옥외에 보관 시는 풍우에 부식되지 않도록 받침대 및 보호막(커버) 시설을 철저히 한다

나. 장비지정 및 동원

사업소 장비를 비롯한 재해 시 동원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동원업체 보유 장비를 사전에 지정,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고 인접 사업소 및 시·도간에 응원체제를 활성화하여 장비활용을 광역화한다

○ 최근 10년간중 최대피해를 감안 소요량을 선정하여 지정

○ 장비 이동상황 정기적인 파악

- 비우기 (10~5월) : 매분기 파악
- 우 기 (6~9월) : 매월 파악

3. 재해종별 기상예보

가.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폭풍	육 상	최대풍속14㎧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최대풍속21㎧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해 상	최대풍속이 14㎧이상이 3시간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최대풍속이 21㎧이상이 3시간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24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될때	24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될때
폭풍우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20㎜ 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30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10㎝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일반지역	24시간 신적설이 10㎝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50㎝이상 예상될 때
	을릉도 지역		
폭 풍 설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5㎝ 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10㎝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가 50%이하이고,일 최소습도가 30%이하이며, 일 최대순간풍속이 7㎧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가 40%이하이고, 일 최소습도가 20%이하이며, 일 최대순간풍속이 10㎧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것이 예상될 때
해일	폭 풍 해 일	폭풍,저기압등의 영향으로 해안지대에 침수가 예상될 때	폭풍,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지대에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고 조 해 일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지대의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지 진 해 일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단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파 랑		폭풍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이상 예상될 때	폭풍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이상 예상될 때
한 파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 보다 다음날의 아침 최저기온이 10℃이상 하 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 보다 다음날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호우 또는 해일 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호우 또는 해일 현상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지진강도

규모(M)	구조물 등에 영향	인체영향	진 도 (MMI)
2.0 미만	- 구조물 영향 없음 -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 진동	- 극소수의 사람 감지	I - II
3.0	- 건물 일부 흔들림 - 트럭이 지나가는 정도의 진동	- 실내에서 현저하게 감지 특히, 건물의 상층에 있는 사람 민감 - 대부분의 사람은 지진임을 인식 못함	III
4.0	- 불안정한 물체 전도 - 창문, 문, 벽에 금이 가거나 깨짐	- 대부분의 사람이 감지, 밤에 잠을 깸	IV - V
5.0	- 굴뚝 등이 전도 - 보통의 건물 약간의 피해	- 모든 사람이 감지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옴	VI-VII
6.0	- 창문, 굴뚝, 기념비, 기둥, 벽돌이 파손 -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짐 우물물의 변화	- 모든 사람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옴 - 운전자가 방해를 받음	VII-VIII
7.0	- 건축물은 기초에서 벗어나거나, 무너짐 - 지면에 큰 균열, 지하파이프 파손	- 이성상실 대공황	IX - X
8.0 이상	- 지상의 구조물이 거의 남아 있지않음 - 다리, 철도 파손 및 지하 파이프 파괴 - 지면에 파형에 나타남		XI-XII

※ 1. 규 모(MMI) : 지진의 에너지량에 대응하는 수치, 지진계에 기록된 파동의 진폭주기, 거리로 부터 계산된 절대적 개념의 지진크기 (리히터 스케일 이라고도 함)

2. 진 도(I) : 인체의 느낌과 물체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을 계급별로 분류 (세계학계 공통사용 Modified Mercalli 진도 12등급 사용)

다. 태풍강도

단 계	최 대 풍 속	비고
약	17m/s(34knots) 이상 ~ 25m/s(48knots) 미만	
중	25m/s(48knots) 이상 ~ 33m/s(64knots) 미만	
강	33m/s(64knots) 이상 ~ 44m/s(85knots) 미만	
매우강	44m/s(85knots) 이상	

※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중심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분류

제 11 장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재난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의 체계화

○ 국가 주요행사의 안전 진행을 위한 지원대책 합리화

○ 대형재난 발생시 수습·복구능력의 신속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국제적인 고유가시대에 따른 국내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 세대수 및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력수용호수 및 전력사용량 증가현황》 〔단위 : 천호, 백만kWh〕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99년	'98년
수용호수	전등	13,280	12,979	12,427	11,994	11,728	11,588
	동력	3,495	3,511	3,192	2,982	2,651	2,514
전력사용량		293,599	278,451	257,731	239,535	214,215	193,470

○ 더욱이 산업설비의 대형화와 도시의 인구 집중현상은 단 한건의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예방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전기안전관리 강화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음.

○ 또한, 전기화재 및 감전·전기사고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범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재난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국가 주요행사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연간 취약시기별 안전활동계획 수립 지속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의식수준 향상 유도

○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재정 운용계획 수립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시의 시설개선 사업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및 수습대책 강구

나. 추진전략

우리공사는 크고 작은 각종 재난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기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검사 · 점검 등을 엄정하게 실시하는 한편, 대 국민 홍보활동 및 재난에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수습 · 복구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자함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제

○ 조직 및 인원

- 조 직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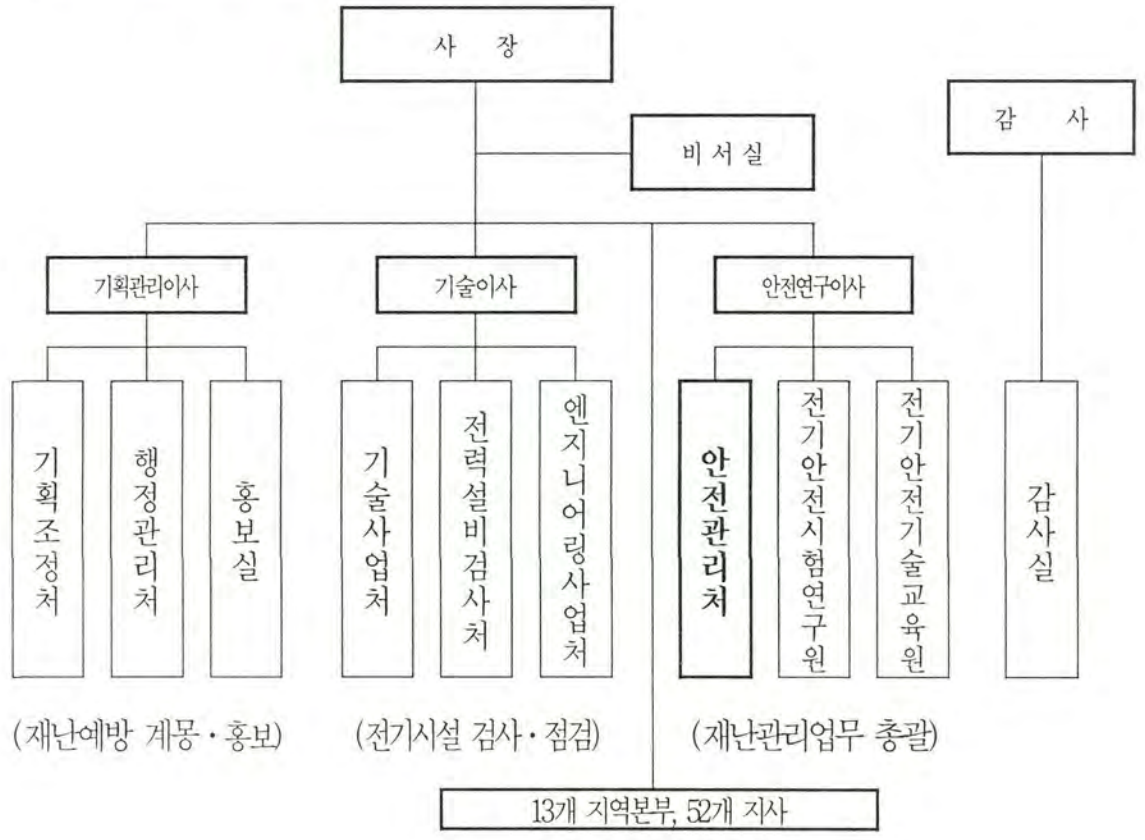

※ 전기안전연구원 : 전기재해 원인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전기안전기술교육원 : 대국민 전기안전교육

- 인 원 (2004년 정원)

계	간부	기술직	행정직
2,876	375	2,254	247

○ 관장업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업무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업무

· 중앙 및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여

·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지정·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나. 국가 주요행사 대비 관련시설 점검 철저

○ 목　　표

-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요인 사전 도출

- 관련시설의 안정적 전력공급

- 긴급사고시 신속한 복구 · 지원

○ 추진방법

- 국가 주요행사의 안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범공사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본사와 지역본부(지사)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활동 수행

다. 재난 취약(소외계층) 주거시설 개선활동 전개

○ 대상호수 : 5,000호(2005년 목표)

○ 활동내용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영세민 주거시설 등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 실시

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 지정 관리를 위한 대상시설 조사 계획

- 대상시설 : 안전관리대행 수용가중 다중이용시설
- 지　　역 : 전국 13개 지역본부(52개지사) 관할지역
- 조사시기 : 년 2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 지정기준
  - · 안전관리대행 수용가로서 전기설비용량 300㎾이상인 시설
  - · 백화점, 시장·상가, 병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 지정현황(2004. 6. 현재)

계	백 화 점	시장·상가	호　텔	병　원	기　타
216	1	55	64	65	31

○ 안전점검

- 전기사업법에 의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설공사 등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 실시결과는 다음표의 전기설비 위험등급기준 5가지 단계별로 상태를 평가

《표》 전기설비 위험등급기준

등급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예 시
A	○ 각 시설별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 최상의 상태인 시설	○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
B	○ 설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단한 보수·정비가 요망되는 시설 ○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 시설상태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 기술기준에는 일부 부적합하지만 안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 - 전선로의 전선용량 및규격 부적정 - 저압회로 일부 절연·접지저항 - 저압 개폐기·차단기류 일부 손상 - 고압설비의 경미한 부적합 등
C	○ 기술기준에 일부 부적합 사항을 방치하면 D급 시설으로 진전될 수 있는시설 ⇒ 조속한 보강 요망시설 ○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태가 일부 불량한 시설 ⇒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설의 특성상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 ⇒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 기술기준에 다수 부적합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주요 고압설비의 부적합 (차단기·보호 장치류, 절연·접지, 절연유, 케이블 등) - 저압 주간선·주개폐기 (차단기) 부적합 - 기타 감전, 화재사고의 우려가 많은 상태 등
D	○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긴급한 개·보수 및 시설 대체가 요망되는 시설	○ C급 시설중 주요설비의 불량 상태가 전진되어 시급히 개·보수 및 교체가요구되는 시설
E	○ D급 대상시설중 방치하면 중·대형사고 또는 안전에 큰 위험발생시 가능성이 있는설 ⇒ 사용중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 D급 시설중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

○ 정기·수시점검과 정비·보수계획

- 정기점검 : · 재난위험시설 : 월 3회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 : 월 1회이상

- 수시점검 : 해빙기(3월), 우기(6~8월), 동절기(11월) 등 재난발생 우려시

- 부적합 시설은 조속히 개수되도록 수용가(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미개수 수용가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 보고하여 개수 명령 유도

-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점검과 병행하여 봉사활동으로 개·보수 조치

○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게임·문화컨텐츠설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전기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허가·신고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시행중(2002.10월부터)

마. 재난예방을 위한 법정점검(검사) 실시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점검 및 검사

- 신·증설중인 전기설비는 공사완료와 동시 사용전검사 실시

- 운영중인 전기설비는 1~3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실시

- 검사(점검)결과 부적합설비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개·보수 추진

- 계획(2004년 기준)

  ·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 8,610,117호

  ·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정기검사 : 86,311건

  · 사업용전기설비 사용전·정기검사 : 746건

○ 재난 취약시기 사고예방 활동

- 재난 취약시기별 설정 추진, - 해빙기 전기안전 강조의 달(3월)·지반 침하 등에 의한 전기설비 사고예방

· 특별관리시설 중점점검 및 부적합 전기설비 개수활동 전개

- 장마철 전기안전 강조기간(6~8월)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감전사고 취약 가로등 · 신호등 전기설비 점검

· 전기안전 가두캠페인 및 수해취약지역 특별봉사활동 실시

- 전기화재 예방 강조의 달(11월)

· 난방용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 화재취약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점검

※ 시기별 전기안전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전 국민 계도활동 전개

- 명절연휴, 연말연시,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활동 강화

· 본사 및 해당사업소 비상근무 실시

· 시장, 유흥업소, 숙박업소등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실시

·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복구지원 실시

- 취약설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 국가 주요시설, 사고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지원

· 대상시설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시설로서 중복 점검을 배제한 합동점검 형태로 시행

바. 재난관련 기금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시책

○ 재난관련 기금 운영 : 우리공사에서 조성 · 운영하는 재난관련 기금 없음.

○ 지하시설물 안전확보 대책

- 대　　상 : 지하철, 지하상가, 공동구, 다중이용시설

- 장기대책 : 국가정책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파악, 부적합사항 장 · 단기 시설개선대책 수립, 설계, 설치, 검사 ·

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강화, 공사관련 취약시설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 시설주(거주자)·종사자 대상 전기안전교육

- 단기대책

· 대상시설물 및 점검결과 파악 등 통계관리 철저

·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봉사활동 실시(연중)

· 법정점검·검사범위 확대 및 점검주기 단축토록 관련법 개정

· 재난관리에 관한 전기분야 행정 및 기술지도 권한 부여

· 부적합사항 개·보수 촉구 및 영세시설 무료개수 적극 지원

· 정전 등 비상시 대비 축전지, 예비발전기 등 비상전원 확보

· 위험물질 폭발 등에 대비 전기설비 방폭화, 보호기능 강화

- 문 제 점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필요

○ 전기화재, 대규모 정전, 감전사고 저감대책

- 대 상

· 전기화재 : 재래시장, 비닐하우스촌,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 정전사고 :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지하철 등

· 감전사고 : 가로등·신호등, 침수우려시설, 학교 등

- 대 책

· 취약시설 사전 파악, 정기 안전점검 지속 실시

· 부적합사항 시정 및 미개수시 관할관청 협조하에 단전 등 제재 강화

· 시설주, 전기안전종사자에 재난관리, 비상시 대응기법 교육

· 지역주민 이용자에 대한 전기안전 계도·홍보 강화

- 화재, 정전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비상조치 실시
  · 사고원인조사, 상황보고, 사고재발방지 안전대책 수립 전파
  · 현장 긴급출동, 비상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 대중매체 이용 · 대국민 안전 홍보(2004년 기준)
- TV · 라디오 및 캠페인 등 : 1,250회
- 인쇄매체 : 신문, 잡지 52회, 유인물(전기안전지) 25만매
- 옥외공공시설물 : 전광판 6개소, 야립광고판 7개소
- 인터넷 포털 · 전문사이트 배너광고(6개월)
- 전기안전 사이버홍보관 설치 · 운영
  · 전기사고 위험 가상 체험관

2. 대비대책

가.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

○ 전기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목　　적 : 전기분야에서 발생한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내용을 신속히 파악·보고하고 대책을 강구
- 대　　상 : 본사 및 13개 지역본부(52개 지사)
- 방　　법 : 평일 주간(본사 1명, 사업소 1명), 평일 야간 및 공휴일(본사 2명, 사업소 1명) 편성운영

○ 비상시 상황근무 체제 강화
- 시　　기 : 재난 발생시
- 방　　법
  · 본사 상황근무 인력을 2명에서 3 ~ 4명으로 증원
  · 사업소에서는 재난발생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동원 인력증원 및 장비 출동대기

- 비상시 현장상황 연락체계 구축 운영

· 전국 소방본부와 Hot-line연결

- 핸드폰 44대, 휴대용무전기 150대 현장활동자 지급 운영

- 개인휴대폰 연락망 사전 파악, 필요시 연락수단으로 활용

나.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 동원가능 인력

- 재난발생 규모와 기본업무 수행을 감안하여 현장업무 정원의 1/5내지 1/3의 인력을 동원

지 역	해당 사업소	현장업무 종사자 정원	동원가능 인력 #1	동원가능 인력 #2
계	**13개 지역본부 52개 지사**	**2,145**	**425**	**712**
서 울	서울지역본부 및 4개 지사	354	70	118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3개 지사	164	32	54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8개 지사	249	49	83
인 천	인천지역본부	90	18	3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5개 지사	160	32	53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및 6개 지사	177	35	59
경 기	경기지역본부 및 8개 지사	315	63	105
경기북부	경기북부지역본부 및 2개 지사	112	22	37
강 원	강원지역본부 및 4개 지사	101	20	33
충 북	충북지역본부 및 3개 지사	105	21	35
전 북	전북지역본부 및 4개 지사	110	22	36
경 남	경남지역본부 및 5개 지사	162	32	54
제 주	제주지역본부	46	9	15

※ 동원가능인력 #1 : 재난복구에 단기간이 소요되는 규모의 사고로서 현장업무 정원의 1/5

※ 동원가능인력 #2 : 재난복구에 장기간(10일이상)이 소요되는 사고로서 현장업무 정원의 1/3

○ 동원가능 장비(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 보유)

- 긴급출동차량 : 23대, 발전차량 : 100대, 계전기시험기외 298종 16,802대

다. 전기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 개 요

-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성계획에 부합하는 중간전산기 및 근거리 통신망(LAN) 및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완료 및 전지사 (지점) 광역통신망(WAN)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전기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

○ 내 용

- 근거리 통신망(LAN) 설치 완료 및 광역통신망(WAN) 구축

· 전산업무 환경개선 및 전자결재, 문서전자유통,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

- 인터넷을 통한 전기안전 정보의 제공

· 전기설비 운영과 관계되는 안전정보의 제공

· 대화방인 「열린마당」을 통한 질문접수 및 답변 제공

- 사이버 홍보관 설치 운영 실시중(2002. 1)

3. 대응대책

가.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재난발생시 단계별 표준절차서 운영

- 재난발생시 행동지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단계별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제1단계	24시간 상황파악, 관련정보 수집
제2단계	단계별 비상발령, 상황전파
제3단계	상황근무 직급상향 및 증원, 재해대책기구 구성, 현장지휘본부 설치
제4단계	현장복구활동
제5단계	비상해제, 복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지원
제6단계	복구완료시 지원종료 보고

- 전기안전 종합상황실을 재난비상근무체제로 전환

· 상황실장 직급상향조정 및 상황근무인력 증원

- 상황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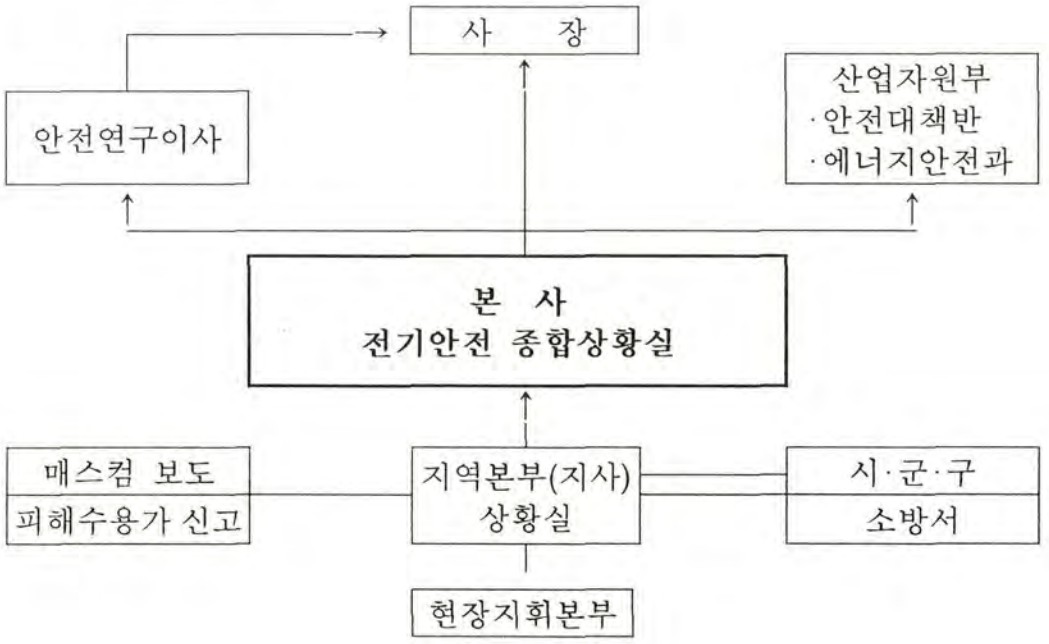

○ 긴급출동반 편성 운영

- 대　　상 : 전국 지역본부(13개소), 지사(52개소)
- 인　　원 : 지역본부(지사)별 기술인력 3명
- 장　　비
  - 지사 : 경광등 부착 긴급출동차량 1대와 전기설비 진단장비
  - 지점 : 작업차량 1대와 전기설비 진단장비
- 임　　무 : 재난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시행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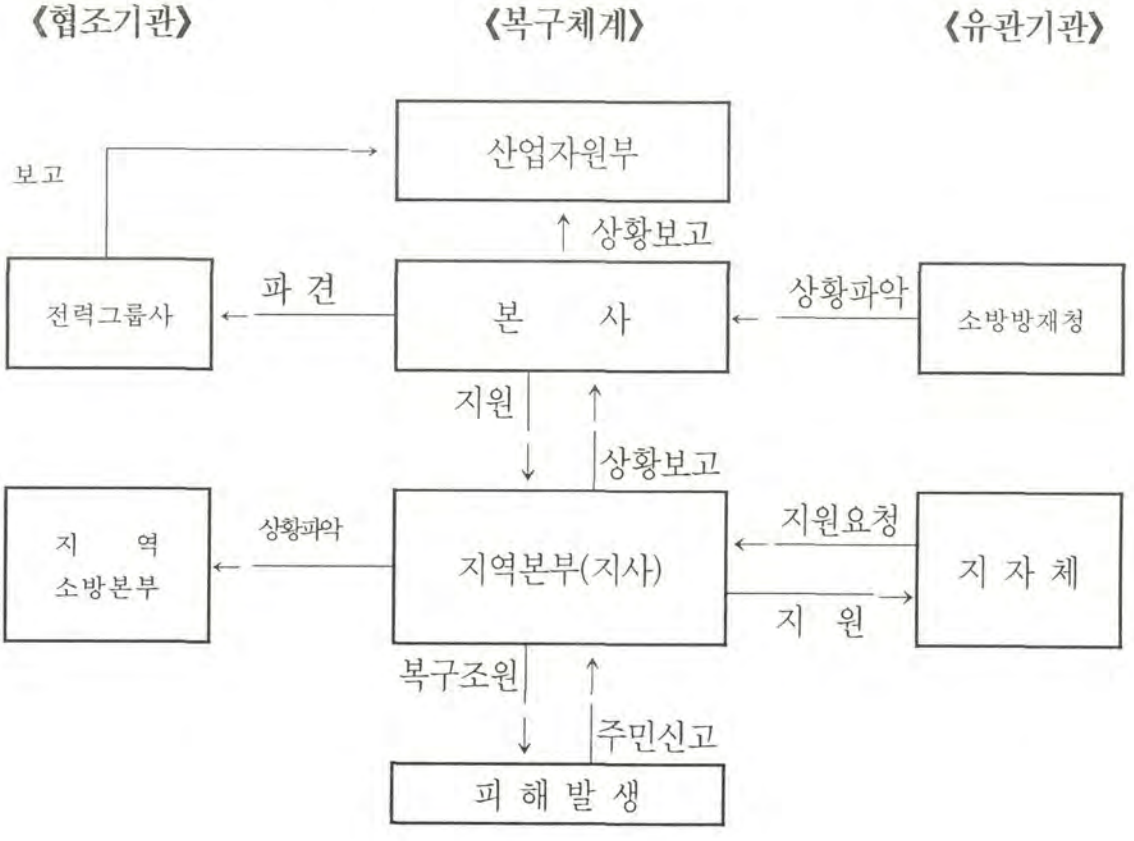

다.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구조본부의 조직, 임무, 연락처

- 조　　직 : 본사 안전관리처(안전지원팀)에서 업무 총괄

· 본부장 : 안전연구이사, · 지역본부장 : 지역본부(지사)장

- 임　　무

· 재난발생시 초동단계 긴급출동

·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

· 신속한 구조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 긴급연락처 : 1588-7500(가장 근접한 사업소로 연결)

○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 재난신고 접수처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

· TV, 라디오 등 매스컴 보도에 의한 인지

- 긴급구조대책

· 구조현장에 필요한 비상전원 확보

· 구조대책본부 등 주변 시설 안전점검 실시

-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피해가 심한 공공장소 설치

· 신속한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

- 구조활동 상황의 보도 안내

· 복구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실시간 실시

· 공사 홈페이지에 복구지원 실태 게재

라.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 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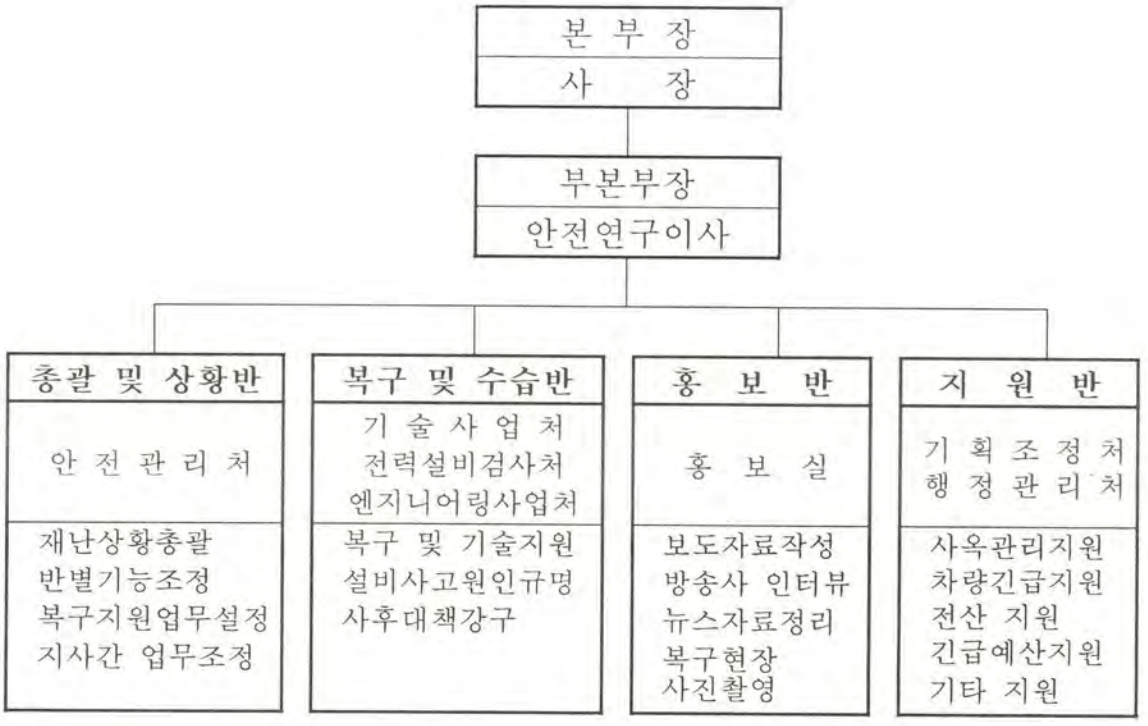

- 지역본부(지사)

구 성	직 책		임 무
	지역본부	지 사	
본 부 장	본 부 장	지 사 장	재해복구총괄
상황관리반	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부장	상황보고
복구 및 사고조사반	점검·기술팀장	점검·기술부장	복구지원 및 원인규명
현장지휘부	점검·기술팀장	점검·기술부장	현장통제 및 보고

4. 재난의 복구대책 추진

가. 재난피해 발생 대책 수립

○ 재난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조사

- 전국 소방본부와 Hot-line연결 및 소방서별 전담직원 지정
- 주요 재난사고 발생시 본사에서 직접 원인조사 실시
- 대형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참여

·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52개 지사에서 조사요원 운용

· 조사에 필요한 실체현미경 등 확보

- 현장에서 수거 사업소에서 조사후 원인이 불분명한 것은 전기안전연구원에서 정밀조사
- 조사결과는 산업자원부 등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조치
-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나.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단계

- 직원 비상소집 및 초동출동반 현장 투입
-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상황 안정단계

- 재난현장에 복구지원대책본부 편성·운용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 이재민수용시설 및 복구대책본부 전기안전점검
-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 계몽·홍보
  ·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 우리공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의 임무를 부여 받았으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본업무 수행인력을 활용하고, 공사의 일반예산을 투입하여 재난관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분야 재난관리활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이므로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 기타사항

- 재난복구 지원 및 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정부예산 지원필요

· 분야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39,869	7,205	55,670	1,180	61,237	1,298	67,360	1,428	74,096	1,571	81,506	1,728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재 원 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339,869	7,205	7,205	-	-

제 12 장 한국가스공사충청지사

제 1 절 기본방침

1. 목 적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관련 제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사고예방(방재)과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복구 및 사고수습을 신속히 처리코자함.

2. 재난의 대상 및 범위

○ 대 상 : 지사내의 천연가스 시설 및 건축물, 매설배관 등
(지사, 관리소 및 충전소 등 23개소, 매설배관 294.3KM)

○ 범 위

- 홍수, 호우, 태풍, 폭설, 폭풍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 건축물의 노후 및 관리소홀에 의한 균열, 파손, 붕괴
- 시설의 정비불량, 외력 등에 의한 파손 및 가스의 대량누출, 화재, 폭발
- 기타 관할지역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재난, 재해

3. 추진방침

○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및 계획수립 실시

○ 본사, 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체제 구축

○ 재난대책의 최우선을 인명보호에 두고 추진하며 피해의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방재의식 고취와 피해에 대한 자력복구 의식함양

제 2 절 재난 예방대책

1. 재난관리체계 확립

가. 조직 및 인력

(2005. 1월 현재)

구 분		관리부	안전품질부	공급부	보수부	계
인원	1급	1	-	-	-	1
	2급	1	1	1	1	4
	3급	2	3	6	3	14
	4-7급	6	12	55	11	84
	별정직	6	6	8	1	21
	계	18	22	70	17	124

※ KGM 인원 : 97명

○ 조직 기구표(4부 1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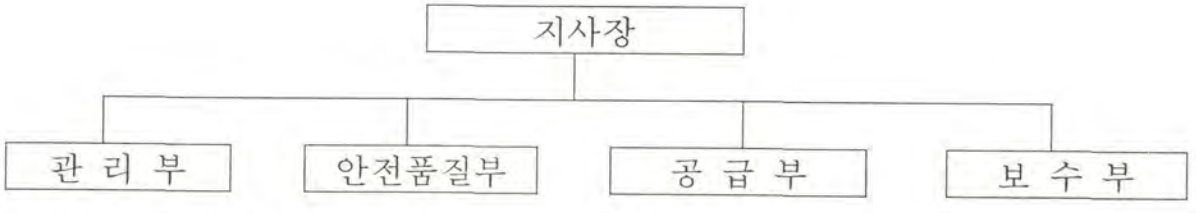

○ 분장업무

- 관 리 부 : 인사, 노무, 자재, 예산, 영업관리 등
- 안전품질부 : 안전, 품질, 교육훈련, 관로순찰, 배관망 유지보수, 재난관리 등
- 공 급 부 : 통제소 및 공급관리소 운영, 천연가스 공급 및 계통 운영 관리 등

- 보 수 부 : 사옥 및 공급관리소 기계, 계전설비의 정비 · 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나. 법정 안전관리자 현황

○ 산업 안전보건법

구 분	성 명	자격종류 및 동급	대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함 기 헌	당 연 직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안전관리자	장 도 열	산업안전산업기사	상시근로자 50인이상~500인미만
보건관리자(위탁)	을지병원	-	" (300인 미만 위탁가능)

○ 도시가스 사업법

구 분	성 명	자격종류 및 동급	대 상
안전관리부 총괄자	함 기 헌	당연직	공급관리소및 주배관
안전관리 책임자	송 정 기	가스기사	"
안전 관리원	이한성 · 김승용 박상규 · 송치문 서윤덕 이호후 · 권혁원 김태훈 · 정영선 김 훈	가스기능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
안전점검원	주배관 안전점검원 현황 참조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김 명 연	양성교육 이수	사옥

○ 전기 사업법

구 분	성 명	자격종류 및 동급	대 상
전기안전관리자	황용균	전기기사	사옥
전기안전관리자대행	전기안전공사 충청지사	-	공급관리소, 매 1년마다 재계약

○ 소방법

구 분	성 명	자격종류 및 동급	대 상
방화관리자	김 윤 정	양성자 교육 이수	사옥
위험물안전관리자	서 용 화	위험물취급기능사	사옥

○ 주배관 안전점검원(KGM) 현황

구간	지 역	거리(KM)	선임자
Ⅰ	경기,충청도계 ~ 천안 신당 개방교도소 입구	14.1	박찬걸
	천안 신당 개방교도소 입구 ~ 천안G/S	10.6	방광종
	천안G/S ~ 수신V/S	14.8	홍성우
	수신V/S ~ 조치원G/S	16.3	박종용
	조치원G/S ~ 아산시 배방면 구룡리	13.4	안현수
	소 계	**69.1**	**5명**
Ⅱ	조치원G/S ~ 청주G/S	19.4	서정민
	조치원G/S ~ 남면B/V	10.6	김광연
	남면B/V ~ 유성V/S	18.0	표민용
	유성V/S ~ 중촌G/S	11.6	이춘복
	유성V/S ~ 방동G/S	14.0	도현식
	소 계	**73.6**	**5명**
Ⅲ	방동G/S ~ 연산V/S	13.700	최인남
	연산V/S ~ 논산G/S	13.2	주선종
	논산G/S ~ 전북도계	18.0	이은정
	연산V/S ~ 진산V/S	18.4	이동구
	소 계	**67.9**	**4명**
Ⅳ	진산V/S ~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금성파크 앞	15.0	이주형
	금산군 금성파크 앞 ~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채석장 입구	16.3	심재평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채석장 입구 ~ 양강V/S	14.6	이재우
	양강V/S ~ 영동V/S	14.6	이재우
	영동V/S ~ 경북도계	22.8	현동철
	소 계	**83.7**	**5명**

2.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관리강화

가.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현황

대상시설	주 소	관리책임자		지정일자	등급	지정사유
		정	부			
남면B/V	충남 연기군 방죽리 151-3	지사장 (함기헌)	공급부장 (김홍영)	'04. 3. 3	A	지하시설로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관리 필요
중촌G/S	대전시 중구 중촌동 203-13	"	공급부장 (김홍영)	'04. 3. 3	A	정압 및 가스공급시설

나.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단기 및 장기관리계획

○ 기본방침

- 안전점검활동의 강화
- 안전위해요인의 사전제거
- 공급설비 및 시설물의 신뢰성 확보
-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

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실시주체	점검내용	비 고
정 기 점 검	분기1회이상	관리책임자(정·부),안전관리자	시설물 점검표에 준함	관리카드
수 시 점 검	필요시	관리책임자(정·부),안전관리자	"	"
정밀안전진단	"	본사 및 외부 전문기관	다양한 시험 및 측정	"

※ 점검결과 지적사항 즉시 시정 및 보완조치 실시

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목적 :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추가지정 및 해지

○ 대상 : 지사사옥, 공급관리소 및 충전소 23개소, 매설배관 294.3KM

○ 조사시기 : 2005년 12월중

○ 조 사 팀

- 총괄 : 지사장(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책임자)
- 조사 : 공급부장 등 6명

3.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수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구 분	점검주기	점 검 종 류
일 일	일 1회	일상점검
주 간	주 1회	주간점검
월 간	월 1회	안전환경점검의 날, 간부급 안전순시, 법정안전관리자 안전점검
년 간	분기 1회	매설배관 가스누설점검, 도보점검(년 4회)
	반기 1회	공급설비 자율검사, 하상고 측정, 매설배관 차량FID 점검
	취약시기별	설, 중추절, 연말·연시, 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기 타	수시	본사특별점검, 대외기관(상급기관 및 단체) 특별점검 등

※ 주요설비별 안전점검 및 예방정비 :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간 등 주기적실시

나. 정기검사 수검

검사대상	검사예정	검사기관	연락처(☎)	비고
중촌관리소 등 15개관리소 충청지역 매설배관 294KM 계룡 승압설비 1개소	2005. 05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485-0019	
사옥(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 예정량 : 13.051㎥/월	2005. 00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485-0019	
대전 LCNG 충전소 계룡 M/S 읍내/판암/탑립/석판/유성 D/S	2005. 1~12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042) 485-0019 043) 268-0019	

4. 재난대비태세 유지 및 안전활동

가. 재난대비태세 유지

○ 지사 재난관리지침의 지속적인 보완(년중 계속)

○ 불시 전화응소 훈련

- 대　　상 : 전직원 또는 과장급이상 전간부(본사주관 : 부장급 이상 전간부)
- 훈련주기 : 분기 1회　　- 통신수단 : 유·무선 전화기
- 방　　법 : 야간, 휴일 및 취약시기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시에 응소 여부 확인

○ 가상사고 적응훈련

- 대　　상 : 전직원　- 훈련장소 : 본관사옥, 관리소. 매설관로
- 훈련주기 : 분기 1회
- 훈련방법 : 기간 중 불시 또는 사전교육 및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 훈련상황 : 분기별 발생가능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메세지 설정

- 훈련중점

· 통제소 및 공급관리소 근무자 초동조치 능력 제고

·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 긴급출동 및 긴급소요자재 확보, 복구능력 제고 등

○ 화재대비 소방교육 및 훈련

- 대 상 : 전직원(직장자위소방대원)

- 훈련장소 : 본관사옥 및 부속시설, 중촌관리소

- 훈련주기 : 분기 1회(필요시 가상사고 적응훈련과 병행실시)

- 방 법 : 시나리오 및 불시에 본관사옥 및 중촌관리소에 가스누출, 화재, 폭발 등의 가상상황을 부여하여 자위소방대, 재해대책 각반별 화재진압 및 상황조치 훈련실시

- 주요내용

· 상황전파 및 보고

· 자위소방대 활동 (화재진압, 대피유도,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중요문서 반출)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119 화재출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 현장응급복구

※ 소방기관 등 유관기관합동 훈련실시 : 년 1회

나. 사업소 자체 안전교육

구 분	대 상	교육주기	교 육 내 용
교대근무자 정기안전교육	교대근무자	월 1회	공급설비 안전수칙, 사고사례전파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월 1회	안전사고예방,안전수칙,사고사례전파등
법정선임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신규 1회	관련법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교육
외부작업자 안전교육	외부작업자	수 시	작업관련 준수사항, 안전수칙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과장급이상	월 1회	안전관리감독 및 안전관리수칙
방재의 날 안전교육	전직원	년 1회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책 관련사항

다. 재난예방을 위한 대내·외 행사 및 홍보활동

○ 「EHSQ 점검의 날」 행사 실시

- 주　　기 : 매월 4일
- 내　　용 : 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가스설비 안전점검 시행

○ 가스안전 거리캠페인 실시(가스안전공사, 지역도시가스사 합동실시)

- 주　　기 : 반기 1회
- 주요내용 : 가스안전 홍보책자 배포, 홍보용 피켓제작 거리 행진

○ 유관기관 홍보활동

- 주　　기 : 수시
- 대　　상 : 재해관련 유관기관(유성구청 등 70여 기관) 굴착공사업 무협의 및 무단 타공사 예방 홍보

○ 환경감시 및 지역환경 보존 활동전개

- 주　　기 : 분기 1회
- 내　　용 : 대전시 유등천 및 인근지역 환경정화 운동 및 캠페인 실시

제 3 절 재난 대비대책

1. 재난관리체제 구분 및 체제별 조치사항

재난관리 체 제	발령 권자	재 난 상 황	근 무 요 령
백색비상	지사장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태풍주의보, 강풍·풍랑경보, 대설경보, 호우경보, 한파경보 발령시 - 도시가스사로의 가스공급 중단시 - 2급 사고[별첨 1 재난상황별 운영 표준요령 (4), (5), (7)]	·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으나 청색비상 체제 전환대비 준비 · 기상 관계자료 수집 및 게시(통제소 근무자) · 비상대기조(KGM) 편성 · 재난관리 조직 및 방재체제 정비 · 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강화 - 한국가스기술공업(주) : 동일 · 당직자 근무시 상황 감시체제 운영
청색비상	부사장 본부장 지사장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태풍경보 발령시(최대풍속 21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6m/s 이상 발령시) - 1급 사고[별첨 1 재난상황별 운영 표준요령 (2), (3), (4), (5)] - 지사 관할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 경보로 배관노출시	· 본사 지시 및 지사 자체 판단에 의한 비상 발령시 지사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운영을 위한 비품 및 통신 회선 지원(관리부) · 재난통제단 심의후 재난통제단 운영 - 재난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근무요청 및 가동 -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 요청 - 유관기관 및 사업소 통신시설 정비 - 적색비상체제로 전환대비 준비 * 한국가스기술공업(주) : 동일
적색비상	부사장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LNG, NG의 누출로 화재, 폭발 발생시 - 지진발생으로 인한 가스의 대량 누설 및 공사의 시설물 대량 파손시	· 재난대책본부 본격 운영(상황반, 행정반, 홍보반, 수습 및 복구반 등) - 재난대책본부 직원 24시간 비상 근무 실시(교대) * 한국가스기술공업(주) : 동일 - 재난상황 점검, 복구계획 수립 - 재난상황 또는 응급조치상황 등 피해 및 대외홍보자료 작성

<별첨1>

재난 상황별 운영 표준요령

구분		사 고 상 황
백색 비상	2급 사고	(4) 소량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로 구간차단 및 소방서 출동으로 진화가 가능한 상황 (5) 공급관리소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상 1km 이내의 산림, 주택가, 공장, 인화물질 취급소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6) 가스설비 또는 시설과 인접된 구조물, 타 공사 현장의 붕괴로 방치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색 비상	1급 사고	(2) 공급관리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대량의 가스누출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고 (3) 공급관리소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산림, 주택가, 공장, 인화물질 취급소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4) 가스누출로 인해 공급중단 등 설비의 가동중단이 필요한 상황 (5) 대량(200 L 이상)의 위험, 유해물질, 환경오염물질의 누출 및 배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각체제의 개시와 해제

- 각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공급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
- 비상통제단 가동 전에는 각 소관업무별로 각 부서에서 조치하고 안전품질부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취합하여 지사장 및 본사 주관부서에 보고

2. 재난통제단의 구성 · 운영

가. 구 성

○ 임 무

- 상황파악 및 보고, 사고현장 수습과 응급조치
- 사상자 및 이재민 구호, 보안유지, 복구작업지휘
- 언론대책, 관련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강구,
- 재난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의 효율적 운영

나. 조직도

재난통제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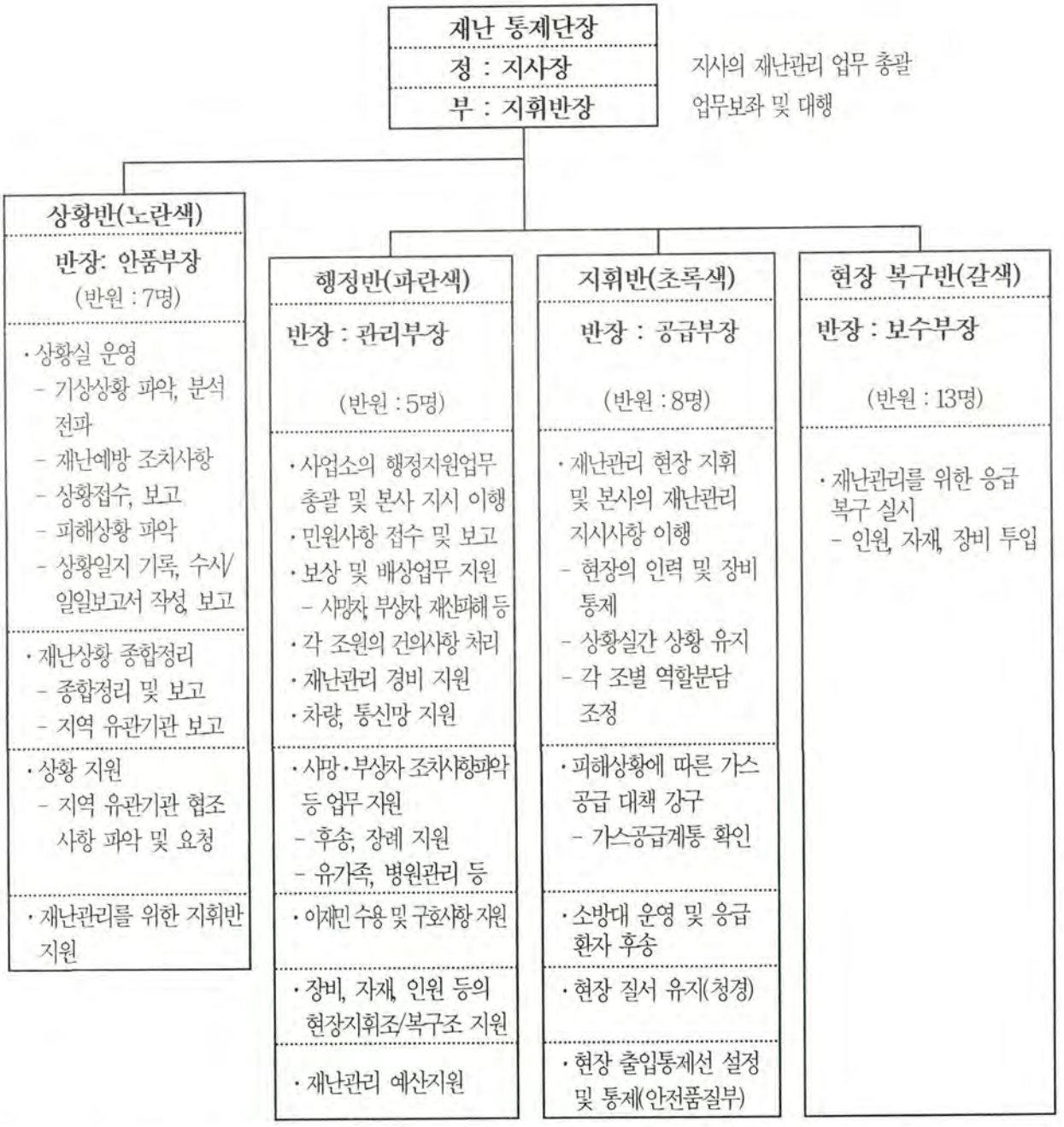

※ 주 1. 각 반에서 ( )안은 조끼의 색상을 나타낸 것이며 조끼뒷면에는 반명을 기재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파업시 재난통제단의 상황반은 관리부장이 주관이되며, 재난통제단은 상기의 조직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통제단 가동 및 해제시기

○ 가동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해체 : 재난의 완전극복 시나 복구 등 사후수습이 완전 마무리 되었을 때

○ 가동 및 해제권자 : 공급본부장, 지사장

라. 재난상황별 상황실 운영요령

○ 재난관리 체제별 근무형태

재난관리 체제	근 무 형 태	비 고
백색비상	· 통제소 교대근무	· 현행유지
	· 비상대기조(KGM) 편성 운영	· 자연재해 대비
	· 당직실 비상근무	· 당직자 근무시 상황 감시체제 운영 · 복수근무(당직책임자 부장급 상향)
청색비상	· 상황실 운영(5인 이내)	· 본사 및 지사 청색비상시
	· 각 반별 정원의 1/3으로 24시간 교대근무	· 본사 재난대책본부 요구시 · 지사 청색비상시
적색비상	· 각 반별 정원의 1/3으로 24시간 교대근무	· 인원 증원 요구시 추가 투입

※ 주 1. 청색비상시 지사 실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청색비상시 기타 직원은 동원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위치(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기하고 교대 휴무조 직원은 자택 대기

○ 근무시간

- 평일 : 18:00부터 익일 09:00 (주관 EHS 담당부서 : 안전품질부)
- 토요일 및 휴일 : 09:00~21:00(주관), 21:00~09:00(야간)

○ 근무조의 임무

- 재난관련 현황파악 유지 및 보고
- 기상특보 및 재난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 지사내의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협조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 재난 발생시 관계부서 직원의 추가소집 등 필요한 조치
-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상황근무시 인수인계사항

- 상황근무일지 등 재난관련서류 정리 인계
- 근무중 발생한 제반사항 인계 근무의 연속성 유지

마. 기록의 유지 및 관리

○ 편철보관 : 각 반별 기록정리 후 주관부서(안전품질부)에서 보관

○ 보존년한 : 재해복구 후 3년간

3. 재난·재해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기 관 명	지원분야	세부내용	협조창구
소 방 기 관	긴급구조, 구난	○ 긴급구조기관 및 단체 상황전파, 공조체제 유지 ○ 재해현장 지휘본부(소) 구성·운영 ○ 119구조대 투입, 인명구조 활동 ○ 현장출입통제선설치(제1통제선) ○ 화재진압 ○ 소방항공대 투입 인명구조 ○ 자원봉사자 접수 및 현장배치	상황실 (상황처리반) 현장 (안전조치반)
경 찰 서	구조구난, 경비	○ 현장출입통제선(제2통제선) 설치 및 통제, 경비 ○ 재해현장 주변 교통정리 ○ 인명구조지원 ○ 대테러진압, 경계	상황처리반 안전조치반
지역군부대	구조구난, 경비 복구지원	○ 군항공대대 지원 : 인명구조 후송지원 ○ 대테러진압, 경계 ○ 화생방 오염제거 및 제독 ○ 중장비지원 복구	상황처리반 안전조치반
보 건 소 의 료 기 관	의료지원	○ 현장의료소 운영, 환자분류, 응급처치, 후송 ○ 구급차 지원 및 임시영안소 설치 운영	지원반 지원반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 이동급식차량 지원, 이재민 구호및자원봉사	"
한 국 전 력 전기안전공사	전력시설복구	○ 전원차단 및 공급 ○ 재난현장 조명, 전력 긴급복구	상황실(복구반) 현장(복구반)
가스안전공사 해양도시가스	가스시설복구	○ 가스시설복구 지원	"
한 국 통 신	통신시설복구	○ 재해현장 통신망 구축 ○ 이동전화설치, 통신회선복구 및 예비통신망운영	"
언 론 기 관	언론업무	○ 재해현장상황 보도 및 홍보 ○ 위험정보 및 사상자 소재등 현장정보제공	상황실(지원반) 현장(지원반)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지원	○ 인명구조 필요장비지원 및 복구활동	상황실(복구반) 현장(복구반)

제 4 절 재난 수습대책

1. 재난보고 및 초동조치 태세 확립

○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FAX보고 후 추후 서면보고

가. 보고의 종류

보고종류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	비 고
최초보고	재난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 보고	① 기상상황 ② 재난발생 일시, 장소 ③ 재난발생 원인, 피해내용 및 응급조치 등	양식 1호
정기보고	1일 2회 - 1회 : 08:00까지 - 2회 : 17:00까지	① 기상상황 ② 재난발생 일시, 장소 ③ 재난발생 원인 ④ 피해내용(재산 및 인명피해 포함) ⑤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내용 ⑥ 예상 피해복구 비용 및 소요일수 ⑦ 장비, 기자재 및 인원 동원사항 등	양식 3호
수시보고	중간보고 등		양식 3호
최종보고	피해원인 종료된 후 7일 이내	① 기상상황 ② 재난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③ 피해내용(재산 및 인명피해 포함) ④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내용 ⑤ 정확한 피해 손실비용 산출 ⑥ 완전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산출 ⑦ 장비, 기자재 및 인원 동원사항 ⑧ 재발방지 대책, 언론보도현황 등	양식 4호

나. 보고체계

○ 보고요령

- 재난발생시 발견자는 통제소 및 당직실로 재난상황을 보고하고 통제과장 및 당직책임자는 재난상황을 지체없이 지사장과본사관련부서에 사고속보사항을 보고
- 지사장은 재난상황을 본사 지휘계통에 유선보고 후 추후 서면보고

○ 보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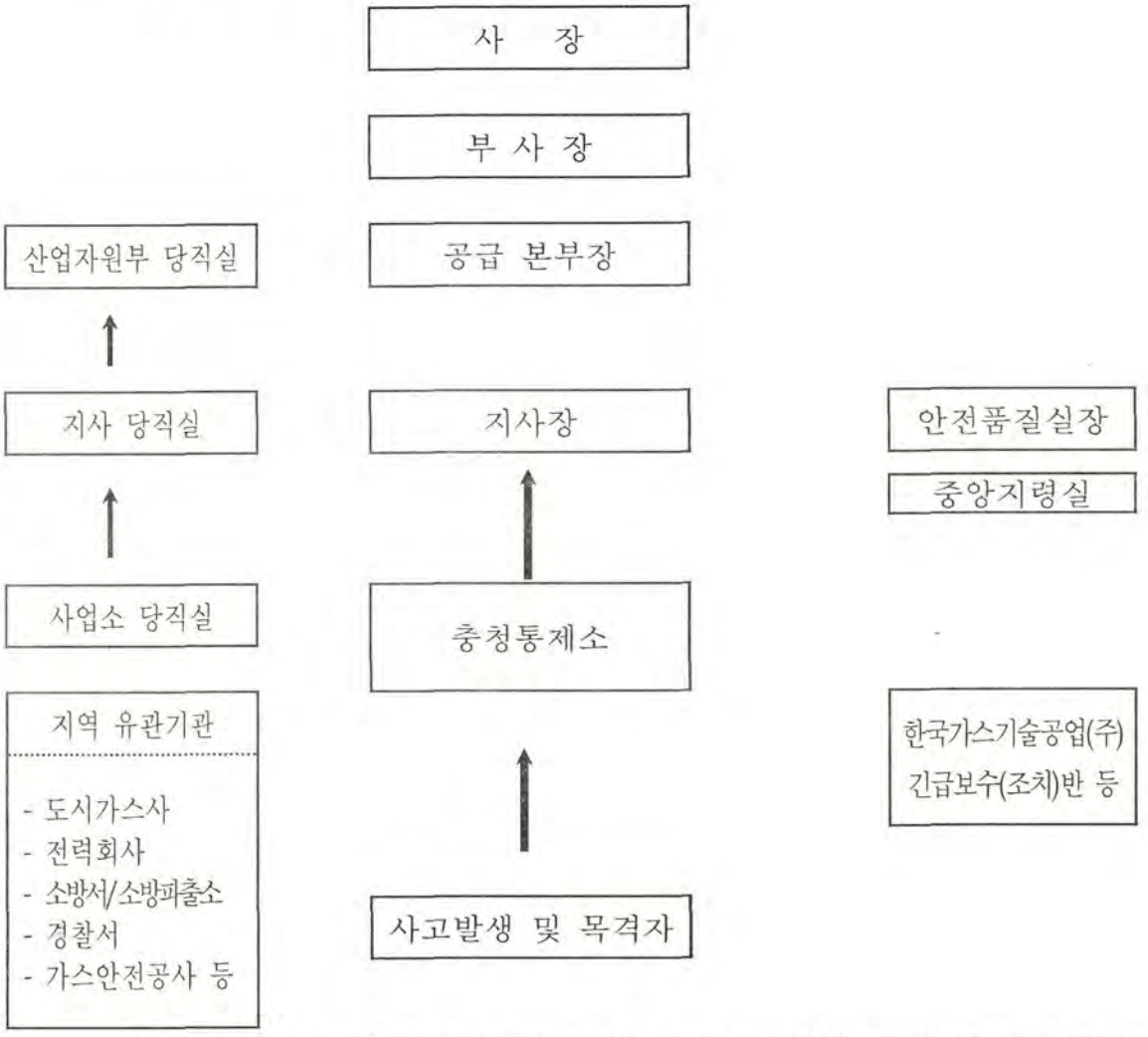

주 1. : 사고발생 및 목격시 보고(**평일·휴일 및 주·야 공통**)

2. ⋯→ : 위급 상황시

3. ⟶ : 상황보고 및 전파

4. 보고 체계중 보고받는자가 부재시에는 상위자에게 보고한다.

다. 사고현장조사

○ 조사 시기

비상 및 재해사고 응급조치 후 현장상황이 안정된 후본사차 원의 사고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현장 확인 조사실시

※ 지사장 및 비상대책본부장 지시시 별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타기관 및 개인이 우리지사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사고
- 우리지사가 타기관(회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
- 대외 가스사고 및 대형사고 발생시
- 본사 비상대책본부의 지시 및 지사장 지시에 의한 조사대상

○ 조사반 구성

- 조사총괄 : 지사장 - 주관부서장 : 안전품질부장
- 조사반원 : 지사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 조사보조

· 공급관리소 담당 : 안전품질과장 등 안전품질과 직원 6명

· 매설배관(관로) 담당 : 관로과장 등 관로과 직원 6명

○ 조사반의 임무

- 사고현장 조사, 원인분석, 응급조치상황
- 설비가동상황 - 유사사고 방지 관련사항 대책강구
- 현장목격자 의견 청취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2. 긴급 구조 · 구난 활동

가. 긴급 구조 · 구난 유간기관과의 직통전화(TRS)설치 운영 (충청통제소)

○ 대상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등 11개기관

○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주 1회 통신망 확인 점검)

나. 이재민 구호대책

○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지 및 급식문제 해결위한 관련기관 협조

- 임시수용시설 : 각 지자체 지정 임시수용시설 이용
- 생 필 품 : 위문품 및 재해대책본부(본사, 지사자체) 긴급구매 조달
- 식 사 제 공 : 적십자사 등 급식제공, 봉사단체 이용

다. 지역재해발생시 구조·구난 활동지원

○ 지원범위

- 재해지역내 가스누설감지 및 차단
-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가스시설 복구관련 전문인력 및 장비 지원

○ 지원인력 및 장비 현황

- 인력

구 분	전 문 인 력	공 인 자 격	활 동 분 야
기술자문	가스안전관리자 26명	가스분야 자격증소유 가스기사 및 기능사	가스사고의 조사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복구지원	가스시설 긴급복구반 K○GAS: 7명 KGM: 26명	기계, 전기, 전자분야 자격증소유 (공사내 시설 전담보수요원)	가스시설의 복구지원 지원장비의 운영협조

- 구조 · 구급장비현황

구분	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동원책임자
동원장비	발전기				
	- 휴대용발전기	7.5PS/3600rpm	1	공작실	가기공 소장
	- 이동용발전기	75kW/h	1	조치원	보 수 부 장
	양수기	50㎥/hr, 20㎥/hr	2	공작실	기기공 소장
	배관절단기	5~50mm	1	〃	〃
	HYDRO JACK	10ton	1	〃	〃
	HYDRO WRENCH	1600kgf.M	1	〃	〃
	용접기	5kW, 220V	1	〃	〃
		400SMT(TIG/ARC)	1	〃	〃
	AIR COMPRESSOR	12HP, 10kg/㎠	1	〃	〃
	콘트리트 브레커	TP4000 KH65	1	〃	〃
	산소 · 아세틸렌 절단기	산소 150kg/㎠	1	〃	
	공기호흡기	SCA-410	2	소방대	안전품질부장
	가스검지기	GP-85N/NP-85/XP-702F	2	사옥	〃
	배관탐지기	Verifier	1	사옥	〃
	차량용 F.I.D	DP-Ⅲ	1	안전품질부	〃
	진동측정기	KET-201/Blastemate3	1	소방대	〃
	산소농도측정기	Finch-O_2/Finch-Mono Ⅱ	1	안전품질부	〃
	수레형FID	GL-92TF	1	사옥	〃
	휴대형FID	AutoFim	1	〃	〃
	Scopemeter	Fluke-123	2	〃	〃
	전기방식측정기	EPR-3511	2	〃	〃
	토양비저항측정기	M 400	2	〃	〃
	두께측정기	UNO-CHEC	1	〃	〃
	다이얼 깊이게이지	62G046	1	〃	〃
	포켓용 가스검지기	XA-328ID	2	안전품질부	〃
차량	순찰차량	무쏘 등	2	사옥	안전품질부장 등
	보수차량	포터, 카고크레인	2	〃	보수부장등
	업무차량	아반테	1	〃	관리부장등

3 재난대비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가. 현장 긴급복구반 편성

○ 가스공사 충청지사

재난 통제단장
정 : 지사장
부 : 지휘반장

상황반(노란색)	
반장 안품부장	
1조	관로관리과장 등 5명 K.G.M 기술안전팀장
2조	공무과장 등 5명 K.G.M 기술안전팀 1명
3조	관로개선과장 등 5명 K.G.M 기술안전팀 1명

행정반(파란색)	
반장 : 관리부장	
1조	경리과장(상) 등 4명 KGM 관리팀장(상)
2조	서무과장(상) 등 4명 KGM 관리팀 1명(상)
3조	경리 및 서무담당 (상) 등 4명 KGM 관리팀 1명(상)

지휘반(초록색)	
반장 공급부장	
1조	안전품질과장 공급과장 등 8명
2조	안전품질담당 등 8명
3조	공급장 등 8명

현장 복구반(갈색)	
반장 : 보수부장	
1조	기계과장 등 3명 K.G.M 기계과장등 10명
2조	계전과장 등 2명 K.G.M 관로정비부장등 8명
3조	토건과장 등 2명 K.G.M 기전부장등 8명

※ 상기 비상대기 순번은 각조에 따라 차기 상황발령시 순환근무한다.

※ 반장 결원시 각반별 차하위자가 업무를 대행하며 반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행정반에서의 (상)은 상황실로 출동한다.

※ LCNG 충전소일 경우는 공급장 임무를 안전관리책임자가 대행한다.

※ 이동식 자동차충전소(D/S) 사고시 현장복구반은 KGM 대신 NK 텍에서 임무 수행.

※ 노사분규 등 파업시 상황반장은 관리부장이 주관이 되어 운영한다.

나. 복구차량 탑재 기본장비 및 자재

○ 기계분야

탑재장비	탑재자재	비고
○ 벤트호스	○용접소모자재	
○ 몽키 및 콤비 스패너 세트	○세척 및 침투액	
○ 파이프 및 박스 렌치 세트	○ SEAL TAPE	
○ "L"렌치세트	○ 가스켓류	
○ 해머	○ 넝마 및 킴텍스	
○ 가스켓 절단기	○ 누설검지액	
○ 드라이버류	○ 기타 필요자재	
○ 방폭렌턴,작업등		
○ P○WER REEL		
○ 용접기		
○그라인더		
○ 기타 필요장비		

○ 계전분야

탑재장비	탑재자재	비고
○ 테스터 및 HOOK METER ○ 접지저항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 ○ 납땜기 및 납흡입기 ○ 터미널 압착기 ○ 일반수공구 (드라이버,니퍼,전기인두등) ○ 가스검지기	○ 가스누설경보기 카드 및 센서 ○ 휴즈류 ○ 케이블류 및 볼트류 ○ 조명기기 및 안전기류 ○ 압착터미널 ○ 자기수축튜브 ○ 테이프류 ○ 스프레이류,클리너류	전기
○ CALIBRATIOR ○ 마노메타 ○ 표준압력게이지 ○ DECADE BOX ○ 핸드펌프 ○ 터미널압착기 ○ 테스터 ○ 납땜기 및 납흡입기 ○ 일반수공구 (드라이버,니퍼,전기인두등) ○ 가스검지기	○ TUBING 및 CONNECTOR류 ○ 케이블류 및 볼트류 ○ 납 및 휴즈류	계전
○ 프로토콜 어날라이져 ○ 테스터 ○ 프로그램 SET UP용 노트북 ○ 일반수공구 (드라이버,니퍼,전기인두등) ○ 납땜기 및 납흡입기	○ RTU 카드(1식) ○ 모뎀 ○ 전화기 ○ 각종 케이블류 ○ 납 및 휴즈류	통신
○ 테스터 ○ 납땜기 및 납흡입기 ○ 일반수공구 (드라이버,니퍼,전기인두등) ○ 가스검지기 ○ 프로그램 SET UP용 노트북	○ 휴즈류 ○ 케이블류 ○ TUBING 및 CONNECTOR류 ○계량 카드(1식)	계량

다. 동원(지원)대상 협력업체 현황

구 분	상 호	주 소	연 락 처
시공업체	자민기술공영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4-18 영보빌딩 5층	02)3444-3773
	천일공영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031)226-8150
	동화건설	충남 천안시 원성동 557-36	041)567-8000
	석원산업	충남 천안시 두정동 51	041)554-1541
	재형개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6	041)632-4243
용접사	오춘모 (OC-S029)	전북 전주시 효성동 극동A 1048-1010	011-659-9264
	김재천 (OB-L033)	인천시 서구 신곡동 극동A 106-2001	011-246-0738
	전태선 (OC-L0036)	충남 천안시 신방동 향촌 현대A 301-2004	017-421-5738
	이재진 (OC-L0037)	전남 여수시 선원동 시영A 102-505	016-605-2331
비파괴 검사	삼영검사ENG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0-5	042)823-9752
	대한검사기술	충남 천안시 성정동 23-2 삼신금속내	041)555-1125
	삼영검사ENG	충남 당진군 신평면 도성리 456	041)363-9511
	아거스	충남 서산시 갈산동 192 세창A 103-603 노웅희 소장	016-420-3127
	서울검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산88 강산건설내	041)933-6448
CNG	(주)CES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28 한준B/D	02)798-4466
	NK 텍	경기도 오산시 원동 541-3	031)377-3311

라. 긴급복구용 자재 불출계획

○ 근무시간내 긴급자재불출

평일 근무시간내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재청구 부서는 자재 관리담당부서에 자재불출 청구를 구두요청하여 선 자재 수령후 불출 청구서는 차후 제출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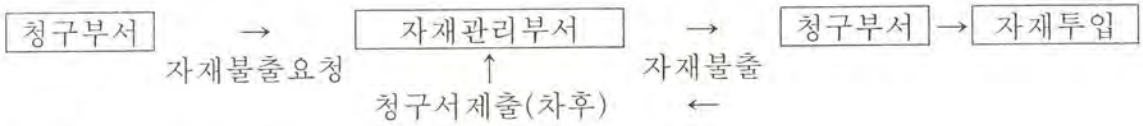

○ 일과후, 휴일 긴급자재불출

일과후, 휴일에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긴급자재를 불출해야할 경우 자재청구 부서는 당직책임자에서 긴급자재불출을 요청한다. 당직책임자는 긴급자재 불출후 불출사유,일시, 자재명, 수량등과 수령자 인적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익일 자재관리부서에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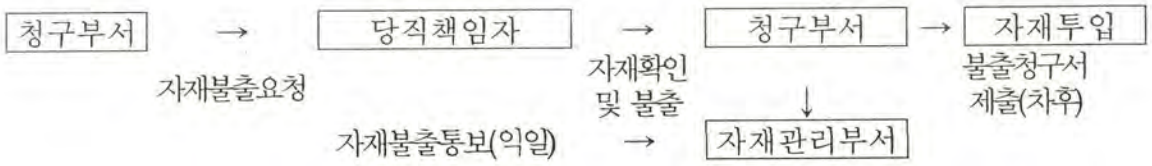

○ 긴급복구용 자재가 없는경우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의 재고가 없는 경우 자재청구부서 및 자재관리부서는 타지사에 긴급복구 소요자재의 현황을 파악, 우선 전용사용 협조하고 공사내에 긴급복구 소요자재의 재고가 없을시는 긴급 구매조치하고 차후 행정 및 회계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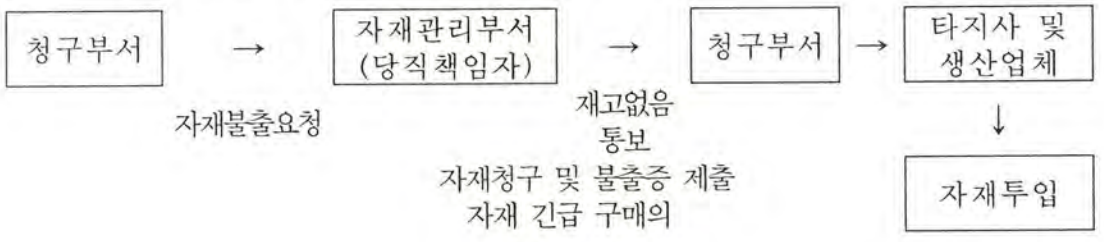

제 13 장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제 1 절 계획의 기본방향

1. 목적

○ 사고발생시 대형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가스시설을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 LP가스안전대책 추진 등 각종 안전관리활동 추진으로 인위적 재난을 예방하고

○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구축 등 효율적, 체계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방 침

○ 인위적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교육·홍보 추진

○ 대형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철저

○ 재난예방에서 수습·복구까지의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제 2 절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1. 재난 및 안전관리예방 대책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1) 인력 및 조직

○ 인력

(단위: 명)

구 분	계	본부장(지사장)	부장	직원
계	57	2	4	51
지역본부	31	1	2	28
충남북부지사	26	1	2	23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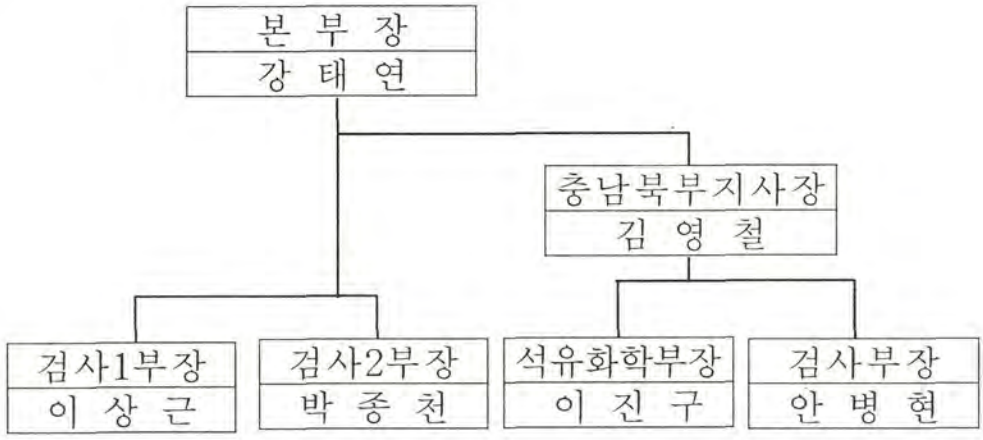

2) 주요업무

○ 법정 고유업무

- 가스안전전문교육·홍보,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 수집·제공사업
- 가스안전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 자율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위탁업무

- 가스시설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시공·감리, 정기검사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및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 검사 등

○ 기 타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취약시설·주요시기별 안전점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나. 분야별 재난예방계획 수립

1) 법정검사 및 안전진단

○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기의 안전성 향상

※ 심사대상 :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등 대규모 건설공사장

2) 안전관리 종합평가제 정착 · 발전

○ 단순시설검사체계를 시설기준 · 운영실태 · 사고대응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보험료 할인제도와 연계 추진

3) 취약시설 안전점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 개선 실시

○ 해빙기 · 우기 등 취약시기 점검 실시

○ 검사제외시설 무료점검 실시

○ 요청점검 실시

4) 가스사고 조사 · 분석으로 가스사고 예방 강화

○ 가스사고 신고접수 상황실 및 사고조사반을 24시간 구성 운영

-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및 피해조사
-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지휘함으로써 2차 사고예방

○ 사고조사기능의 전문화 · 과학화

- 사고조사 및 분석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수강 및 세미나 참가
- 사고발생 대응훈련 및 사고조사 업무지도

○ 사고통계 분석집 발간 등 가스사고 정보제공

- 가스사고연감 발간
- 인터넷 및 가스안전지를 통한 가스사고 정보제공

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지정 · 관리

1)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수시조사 및 지정

○ 조사시기 : 매분기별 정기 · 수시검사 및 특별점검시

○ 조사대상

시 설 구 분	대 상
고압가스 특정제조	- 완성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 시설내 주요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탑류, 반응기)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고압가스 제조·충전	- 완성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독성가스시설에 한함)
LPG용기충전	- 완성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저장능력 400톤 이상인 시설에 한함)
LPG자동차 충전	- 모든 허가업소
도시가스제조	- 공급가스가 LPG + Air인 시설

○ 조 사 방 법 :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신규조사시설을 파악하고, 최근 실시한 법정검사(정기, 자율검사) 및 특별점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결과를 조사결과로 갈음.

○ 지정고시 및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위험⇔ 중점관리대상)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업소 및 행정관청에 지정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지역본부(지사)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

2)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 재난위험시설 : 없음
- 중점관리대상시설 : 135개소(지역본부 : 74개소, 지사 : 61개소)

3)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점검

○ 점검종류 및 방법

- 정기점검 : 시설 및 등급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점검을 실시하며 법정검사(완성, 정기, 자율검사)와 병행실시

- 수시점검 :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과 병행실시 안전관리상 필요시에 실시하되 수시검사, 특별점검

점검구분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 등급 시설) 및 재난위험시설(D,E등급 시설)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 점검결과 조치

- 등급분류 : 점검결과에 따라 5단계(A~E)로 분류관리하고 재난위험 시설(D, E등급)은 장·단기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의 경우는 재난관리카드 작성·유지

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1) 중·고교생 가스시설 점검 학생봉사활동 추진

○ 청소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가스안전 저변확대

- 대 상 : 전국 중·고교생 - 시 기 : 년중

2)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가스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등 시기·계절별 상황에 맞는 가스안전관리 캠페인을 연중 실시

3) 다양한 행사개최를 통한 가스안전 연계홍보

○ 시민단체 행사 이벤트를 통해 지자체의 지도급 인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가스안전사용 실천의식 홍보

4) 현장종사자 가스안전 교육의 실시

○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과 현장종사자에 대한 기술력 제고 및 가스담당공무원, 초·중등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가스 안전문화 저변확대

2. 재난대비 대책

가.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시 상황근무체제 유지 : 직원 4인이 상황실 근무 및 비상대기

○ 비상시 상황근무체제 강화

구 분	내 용	근무인원
비상근무 제 1 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 2 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농후하거나, 전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 3 호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영향을 끼쳐 상황실 근무자로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 4 호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1/10이상

○ 유관기관 Hot-Line 설치운영

- 특별시·광역시, 소방서 및 도시가스사간 Hot-Line설치운영

○ 행자부 주관 소방·가스·전기·환경등 재난사고 일원화 추진

○ 기타 사항은 공사 상황실 근무규정에 의거 실시

나.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 동원 가능인력

- 재난발생의 규모에 따라 동원인력 편성

구 분	가용인원	비 고
계	57명	
사고조사반(1차출동반)	6명	본부/지사
2차 출동반	51명	본부/지사

- 기타 필요인원은 재난상황 따른 비상근무종류별 근무인원에 준함

○ 동원 가능장비

- 가스누출 검지기 등 총 136점
- 긴급출동차량 : 2대

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 긴급구조 합동훈련 추진

- 가스공급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상호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 및 사고대응체계 확립

· 시 기 : 요청시

· 장 소 : 유관기관 등에서 지정한 장소

· 내 용 : 유관기관에서 정한 가상시나리오에 의하여 실시

라.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인터넷을 통한 가스안전홍보 및 정보제공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스안전 정보제공
- 민원절차, 업무서식등 가스에너지 업계 요구자료 제공
- 사이버홍보관을 통한 가스안전홍보
- 질의회신, 가스정책, 제도, 기술정보 제공

○ CD-ROM을 이용한 정보제공 확대

- 정보회원서비스로 공사 보유정보를 가스에너지 업계에 제공

3. 재난수습대책

가. 재난상황 파악(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소규모 재난발생시 : 지역본부·지사의 사고조사반, 출동반 활용

○ 대규모 재난발생시 :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본사의 협조요청 인원의 조정·운영

○ 재난상황 파악·유지

구 분	상황실 근무인원	상황파악 및 보고	비 고
본 부	○ 근무인원은 비상시 상황근무체계와 동일	○ 유관기관 및 업계에 상황파악 전파 및 보고 ○ 일일 및 수시보고	
지 사	○ 근무인원은 비상시 상황근무체제와 동일	○ 유관기관 및 업계에 상황파악 전파 및 보고 ○ 일일 및 수시보고	

나.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현장지휘소는 피해지역 주변에 적절한 장소를 지원받아 설치
- 재난 복구지원 업무총괄 및 가스안전조치요령 홍보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필요한 인원·장비·물자 등 확보·배치

4. 재난복구대책

가. 재난발생 원인조사 및 복구(지원) 대책 수립

○ 『합동조사반』 구성

- 사고대책본부 구성

○ 『합동조사반』의 주요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2차 피해유발요인 점검 및 안전조치
- 가스관련업계와 연계하여 복구(지원)대책 수립·추진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대형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의 마련은 물론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운영

나. 복구지원반 편성·운영

○ 구성

- 가스관련업계와 합동으로 시설복구 및 용품수리반으로 복구지원반 편성·운영
  - · 시설복구반 : 우리공사, 가스공급자 인력으로 편성(2인1조)
  - · 용품수리반 : 우리공사, 가스기기제조자 A/S 인력으로 편성

○ 주요 활동내용

- 가스시설 점검 및 복구지원]
  - · 용품수리반 : 가스용품 A/S 및 부품교체 등
  - · 시설복구반 : 가스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가스안전사용요령 교육, 홍보물 배포 및 배관고정 등 가스시설 수리·보수
-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사용요령 홍보 등

제 14 장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대청댐관리단은 다목적댐으로서 홍수조절, 용수공급 및 댐수질 관리, 발전분야 등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을 수립,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 관련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방침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

○ 수시 및 정기점검의 철저한 시행과 적극적인 예방 대책 추진으로 시설 안전도 제고

○ 안전관리 유형별 처리절차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인력 및 장비의 사전확보에 의한 신속 지원체제 구축

3. 재난예방대책

1. 현 황

가. 재난관리업무의 범위

○ 홍수기 수문방류시 상·하류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 수위 운영

○ 대청댐 수질사고 발생시 대책

○ 대청호 가뭄 발생시 대책

○ 홍수기 대비 댐 수문설비의 조작 신뢰도 확보

1) 재난전담조직의 편성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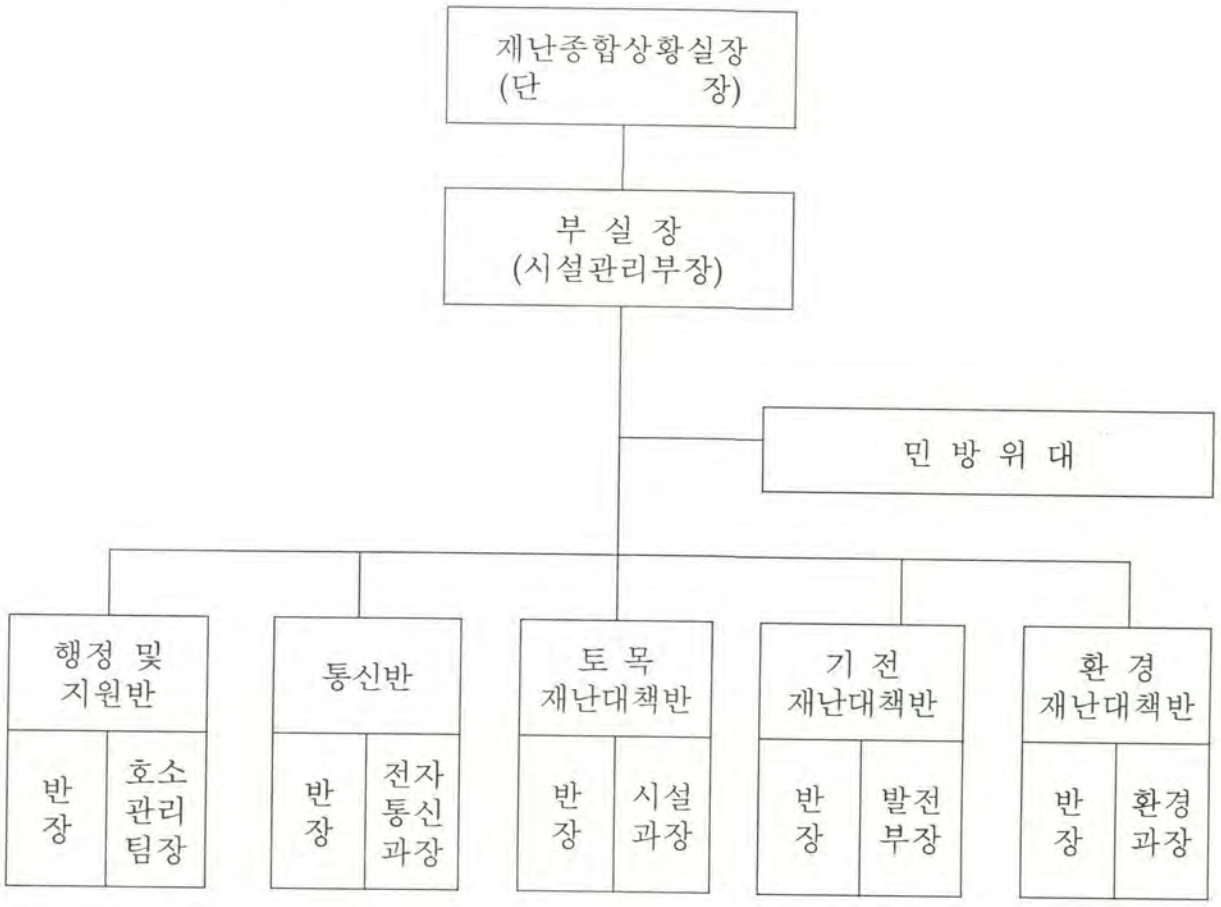

2. 재난예방 세부추진계획

가. 홍수기 수문방류시 상하류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 수위 운영

○ 수문 방류체제의 확립

- 수문방류 직원의 정예화
- 비상연락망 정비로 통한 대피 및 동원체계 수립
- 수문방류 관련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본사 보고체계 정비
- 각종 수문기록과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으로 수문방류의 피해 최소화

- 수문, 홍수예경보 시설 등의 점검정비 철저로 신뢰성 유지

○ 수문방류 준비

- 재해대책 근무조편성
- 준비단계 근무체제 운영
- 수문 및 기상정보 수집
- 예·경보 체계에 따른 수문방류 통보

○ 수문방류 실시

- 수문방류 실시
- 경계 및 비상 단계 근무체계 운영
- 상·하류 수문상황에 따라 방류량 조정
- 수문방류 종료

○ 수문방류에 따른 상·하류 상황 파악

- 유관기관에 수문방류 상황 통보
- 상·하류 피해 상황 파악
- 상·하류 피해 상황 본사 보고

나. 대청댐 수질 사고 발생시 방류량 조절 및 신속한 지원

○ 사고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사고유형 및 규모별 대응 조치 강구

○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재장비 및 자재확보

다. 홍수기 대비 댐 수문설비의 조작 신뢰도 확보

○ 수차 및 발전기, 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 수시점검

- 일상점검 : 매일 자체 운전요원에 의해 실시

- 주간, 월간, 분기, 반기점검 및 정비 : 수자원기술(주)와 위수탁협약에 의해 실시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점검 강화

- 안전점검 :

· 각 반기별로 정기점검 실시

· 해빙기, 홍수기,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 실시

※ 시설물점검 실시(정기 및 수시)

· 댐분야(토목) : 시설관리부(시설과)

· 발전분야 : 발전부

· 환경분야 : 호소관리팀(환경과)

· 통신분야 : 시설관리부(전자통신과)

· 경비근무책임지역 시설물 : 경비근무자 순찰시 병행점검

○ 홍수기대비 수문설비 조작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비상전원 확보

- 댐 여수로 수문 및 조정지댐 수문 권양설비 점검 및 조작시험

- 비상발전기 매주 시운전 및 포터블 비상발전기 확보 운영

제 3 절 사고발생시 수습대책

1. 수습체계도(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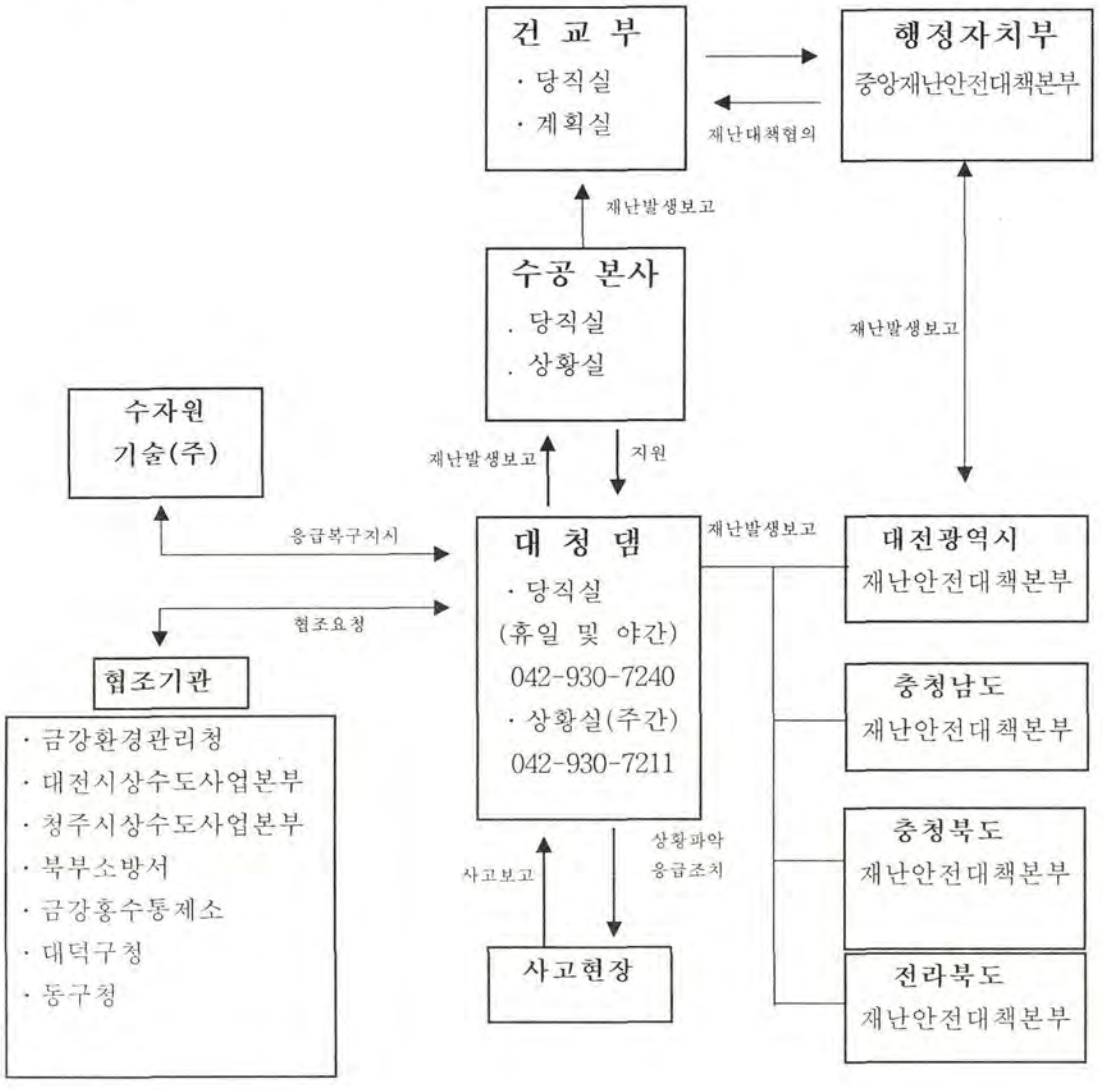

2. 긴급복구 조직도

가. 자체복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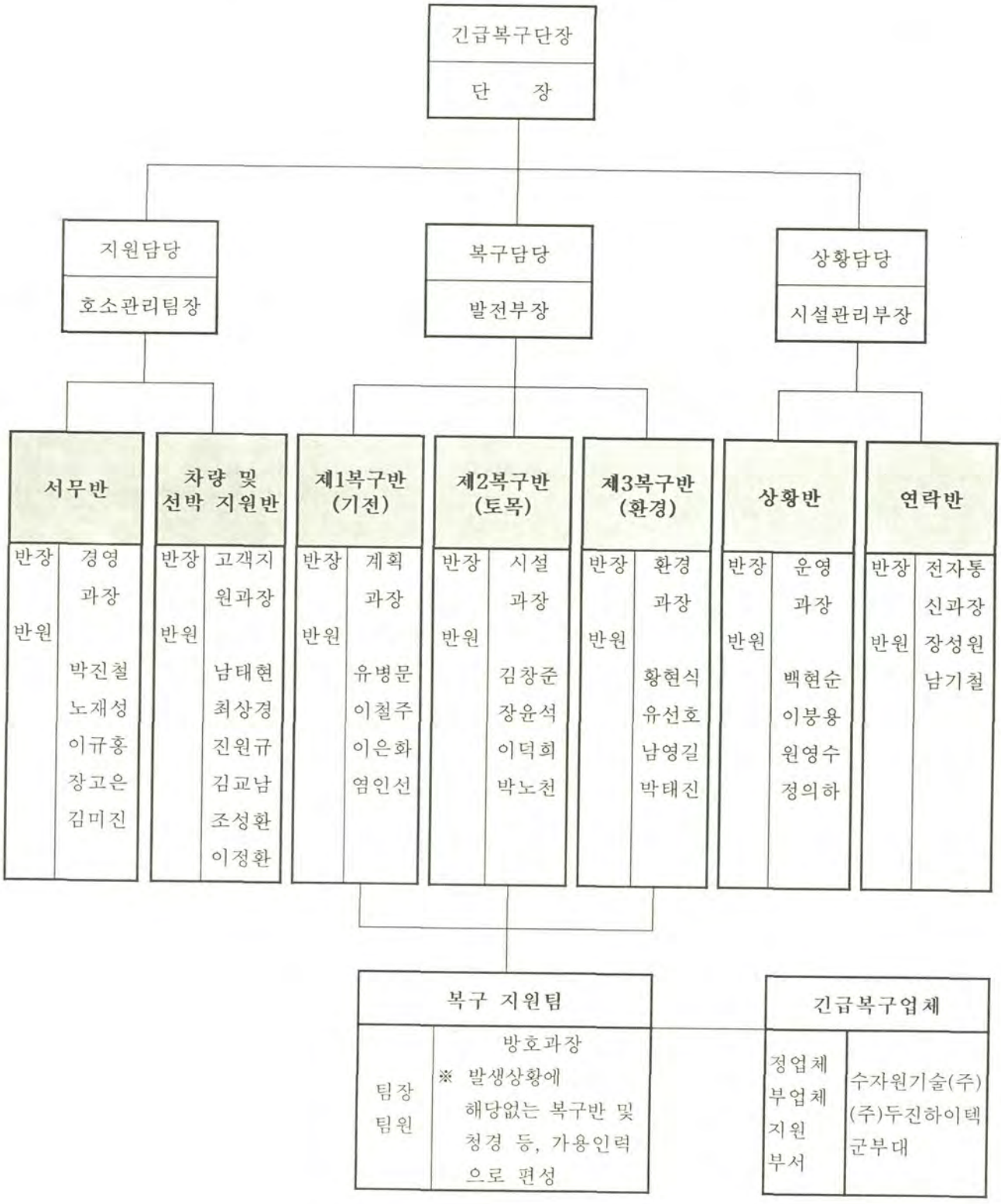

나. 동원업체 긴급복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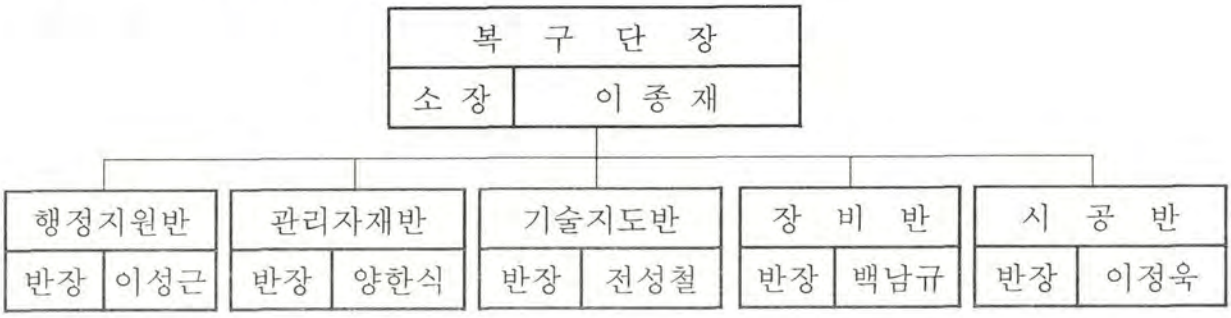

다. 자체 복구반 임무(각반별)

구 분(각반)	임 무
서 무 반	○ 문서수발 및 통제 ○ 예산조치 ○ 회계처리 ○ 복구물품 조달 및 인력동원
차량 및 선박 지원반	○ 차량 및 선박 운영관리 사항 ○ 인원 및 물자수송 ○ 기타 긴급수송 업무
복 구 반	○ 긴급복구 계획의 연계성 및 방법의 타당성 검토 ○ 동원업체의 긴급복구 능력검토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댐 및 발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긴급복구 시행 ○ 항구복구 계획 수립
상 황 반	○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 본사 상황보고 ○ 상황실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 ○ 예·경보 사항에 따른 조치 ○ 기타 각종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연 락 반	○ 관계기관 업무연락 ○ 통신체제 유지 ○ 기타 상황유지를 위한 업무
복구지원팀	○ 간단한 응급복구 조치 ○ 현장의 안전조치 ○ 현장조사 및 보고

라. 동원업체 긴급복구단 임무

직 책	주 요 업 무
복구단장	○복구단원 지휘통제 ○복구공사 시행, 감독
행정지원반	○복구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관계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포함) ○복구단장을 보좌
관리자재반	○복구소요자원 확보 및 지원(인력, 장비, 자재) ○소요자원 운반(비축 및 동원자원 포함) ○현장관리
기술지도반	○현장 시공지도, 감독(안전관리 포함) ○전반적인 공사 정산처리
장 비 반	○장비지원 및 운영 ○소요장비 인수 및 운반지원
시 공 반	○현장복구공사 실시(기술지도에 따라 계획공정 준수)

마. 장비 및 자재

○ 자체 복구반 장비

장 비 명	수 량	장 비 명	수 량
2.5톤 타이탄	1대	용 접 기	A.C 용접기
크 레 인 (천정 크레인 5톤)	1대 (현장설치)	각종공구	기계공구일체
체 인 블 럭	1톤 (5톤)	리 어 카	1대
발전기(80kw)	1대	경 운 기	1대
버 스	1대	선 박	4척
겔 로 퍼	1대	무전기	15대

○ 자체예비 자재

장 비 명	수 량	장 비 명	수 량
오일휀스	400m	유흡착제	250kg
마 대	500장	나이론끈	300m
로 프	300m		

○ 동원업체 긴급복구단 장비

장 비 명	규 격	보 유 대 수	비 고
트 럭	더블캡6인승(1톤)	1	
트 럭	2.5톤	1	
승 용 차		2	업무지원차량
전기용접기	40KVA 20KW	1	
전기용접기	10KVA 5KW	1	
체 인 블 럭	2톤 전동	1	
체 인 블 럭	10/5/3/1	4	
사 다 리	A형 4M	1	
접 지 용 구	38SQ	1	
산소용접기		1	

바. 긴급복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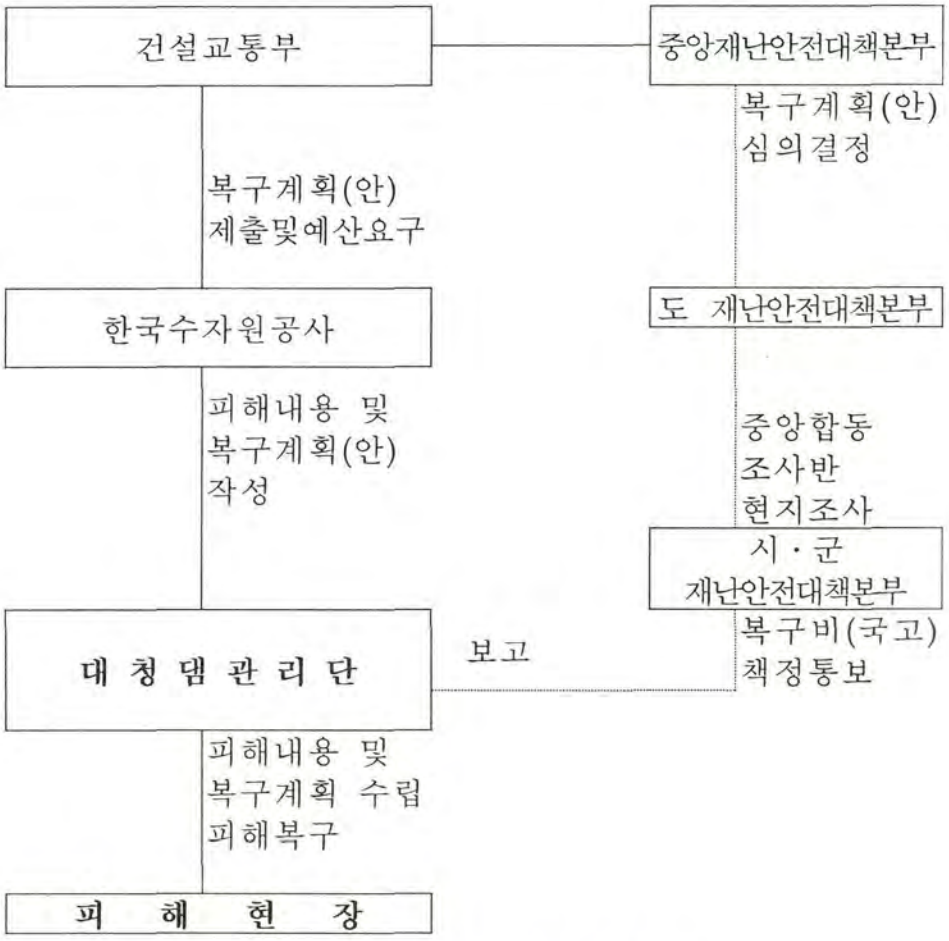

"정"업체 : 수자원기술(주) "부"업체 : (주)두진하이텍

사. 기타시설 긴급복구체제유지

분 야 별		업 체 명	연 락 처	비 고
통신분야	유선	코리아전자통신(대표:윤영원)	(042) 625-0100	
	무선	한국정보기술(대표:안광호)	(042) 621-7270	
CCTV/ 적외선감지기		한국정보기술(대표:안광호)	(042) 621-7270	

3. 수질사고시 긴급복구 체계

가. 단계별 조치사항

○ 초기단계

- 사고발견 즉시 자체 응급조치 가능여부를 판단 상황전파 및 직원 비상소집
-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면 즉시 사고 파급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유관기관에 연락

○ 복구작업

- 사고 인지 즉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수질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한다.
- 발견지점에서의 검출물질 종류, 농도 등을 조사하고,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도 변화 추세 및 오염물질 흐름을 추적한다.
- 조사 완료후 즉시 처리흐름도에 따라 보고한다.
- 용수공급에 관한 긴급상황이 발생시에는 즉시 긴급복구 협력업체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 조치를 시행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방제작업

- 물질의 종류 및 성상등에 따라 정확한 방제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제작업 소요시 간 및 작업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유해물질은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제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통제한다

  ※ 오염원 유입지점에 부표를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 방제작업시에는 보호장구(보안경, 장갑등)을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타기 쉬운물질 등 유해물질를 제거하여 폭발·화재 등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나. 수질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단계 및 유형		수질사고시	
		대청댐관리단	본사 (댐관리처장)
발 생	보 고	댐관리처장	사 장
	통 보	관련기관(하류 취 · 정수장) 금강환경관리청(환경부)	건교부 등
중 간	보 고	댐관리처장	사 장
	통 보	관련기관(하류 취 · 정수장)	건교부 등
최 종	보 고	댐관리처장	사 장
	통 보	관련기관(하류 취 · 정수장) 금강환경관리청(환경부)	건교부 등

다. 보고, 통보 방법 및 계통

○ 사고발생시는 전화로 우선보고후 서면으로 보고함

○ ← 은 전화보고, ⇐은 서면(FAX) 보고임

○ 환경부에는 수질사고에 한하여 통보함

(일 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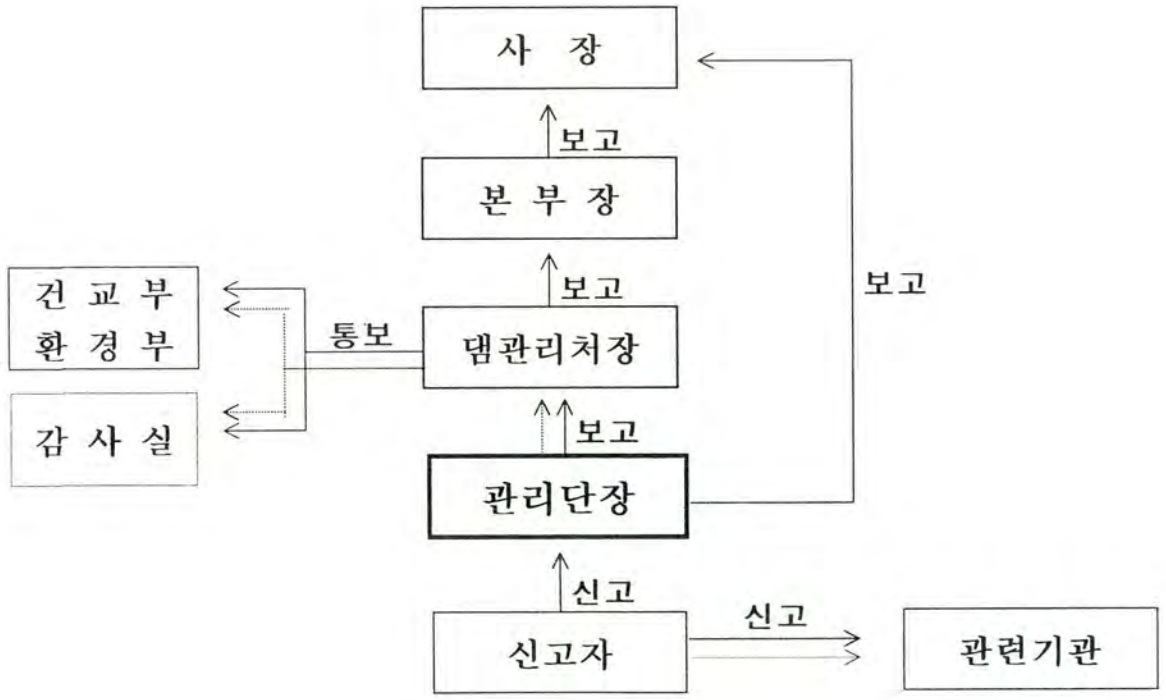

(일 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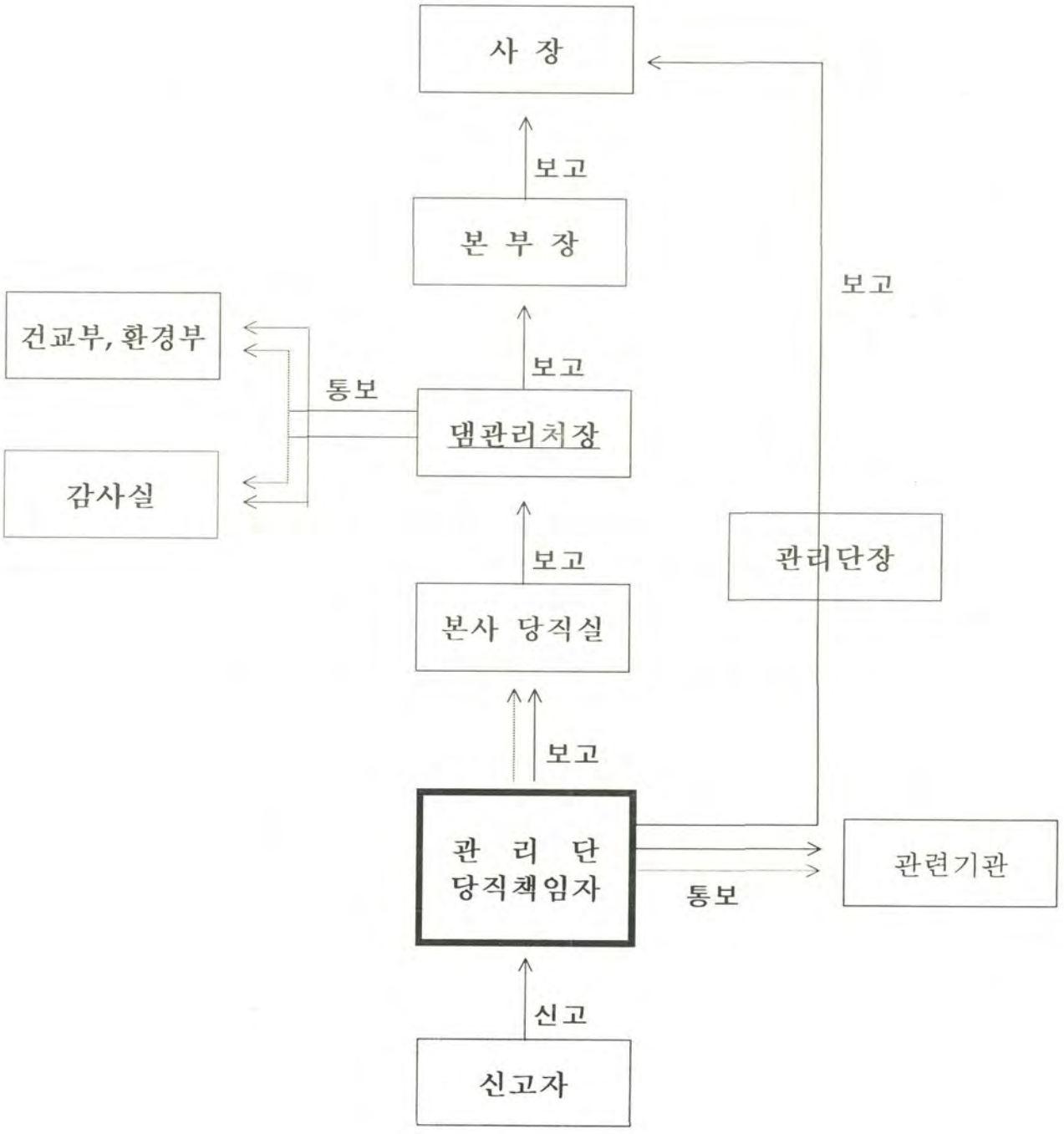
사 장
보고
본 부 장
보고
보고
건교부, 환경부
통보
댐관리처장
감사실
보고
관리단장
본사 당직실
보고
관 리 단
당직책임자
통보
관련기관
신고
신고자

4. 가뭄시 용수공급 대책

가.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

구 분	현 황	대 책
▶ I 단계 (저수위EL62.00m)	○저수위(L.W.L)이상은 댐하류 및 상류 용수공급은 가능하나 갈수지속시 공급량 제한	○수문현황 및 절수홍보 등 가뭄대비 저수지 운영 ○가뭄대비 비상근무실시(근무조 편성) ○취수탑 양수설비 설치계획 수립 ○댐하류 비상용수 공급관로 점검
▶ II 단계 (저수위EL60.00m)	○댐상류 - 대전/청주도수로의 취수구 바닥표고(EL57.0m) 이상으로 자연낙차에 의한 취수가능 ○댐하류 - 저수위(L.W.L)이하로 발전을 통한 댐하류 용수공급 불가	○댐상류 - 취수구 바닥표고까지 제한적 용수공급 ○댐하류 - 본댐 비상 용수공급 설비를 통하여 용수공급
▶ III 단계 (EL57.0m이하)	○댐상류 대전/청주도수로의 취수구 바닥표고(EL57.0m) 이하로 자연유하에 의한 취수 불가능	○댐상류 - 용수공급설비(전력, PUMP)를 통한 용수공급 - III단계 비상용수공급대책을 위한 대전, 청주도수로 DIKE축조 및 전력설비 보강 및 펌프 설치 ※ 도수로별 PUMP 설치 · 대전 : 120HP×8대(530천톤/일) · 청주 : 120HP×5대(320천톤/일) ○댐하류 - 본댐 비상 용수공급설비를 통하여 EL49.0m까지 용수공급(초당40톤)

나. 가뭄대책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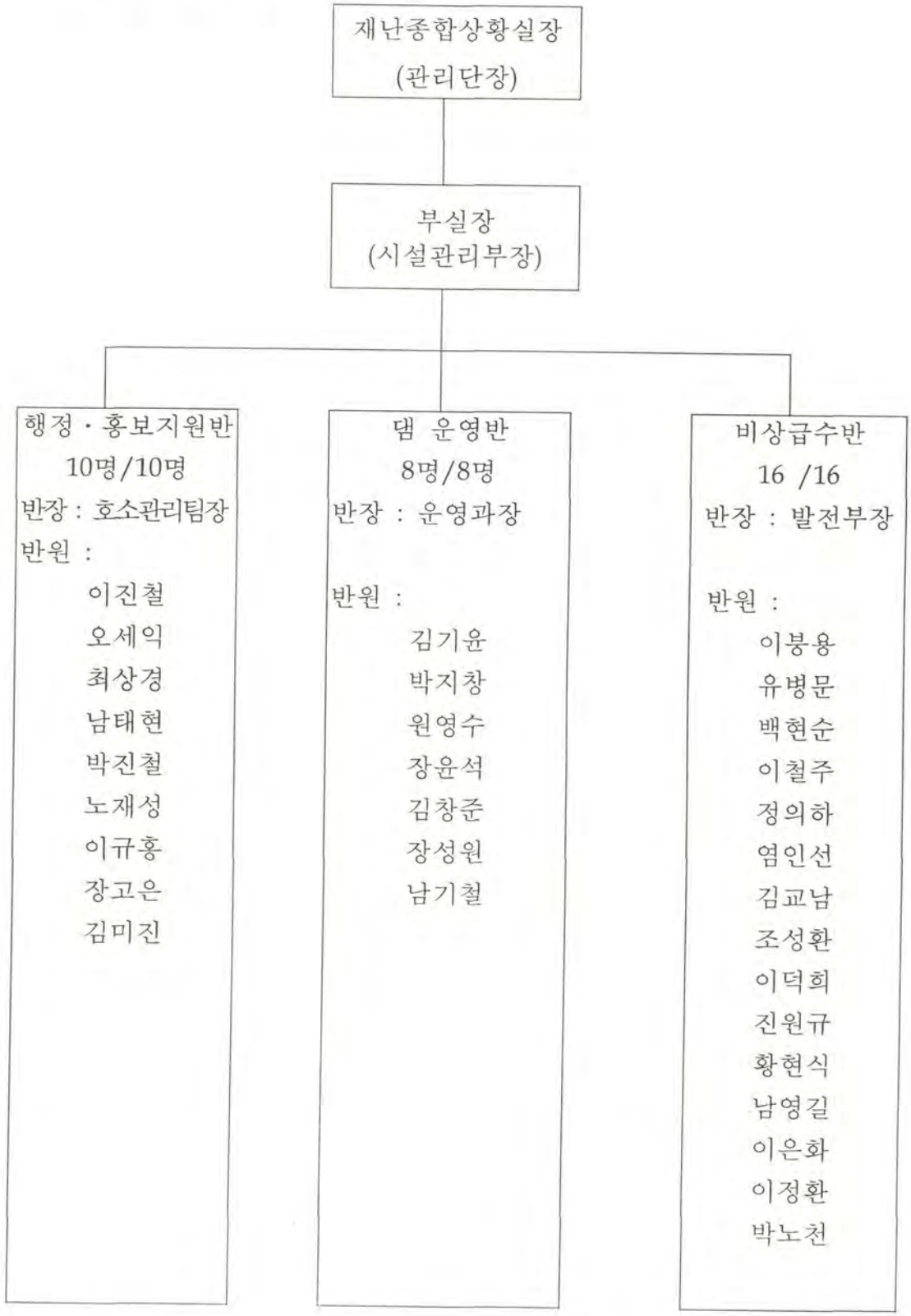
재난종합상황실장
(관리단장)
부실장
(시설관리부장)
행정·홍보지원반
10명/10명
반장 : 호소관리팀장
반원 :
이진철
오세익
최상경
남태현
박진철
노재성
이규홍
장고은
김미진
댐 운영반
8명/8명
반장 : 운영과장
반원 :
김기윤
박지창
원영수
장윤석
김창준
장성원
남기철
비상급수반
16 /16
반장 : 발전부장
반원 :
이붕용
유병문
백현순
이철주
정의하
염인선
김교남
조성환
이덕희
진원규
황현식
남영길
이은화
이정환
박노천

제 4 절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홍수기 수문방류시 하류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수문방류시 하류지역 지자체 통보

○ 침수예상시 주민대피 및 소산

2. 대청댐 수질사고 발생시 대책

○ 사고발생지점 인근지자체 장비, 약품 및 인원동원 요청

○ 지역주민 계도

3. 지원가능 장비현황

지 원 장 비				지 원 인 력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지원분야	성명	자격	전화
선박 (대청호)	39톤	1	대청호수내 순시·작업	선박운전	김교남	선박조정	930-7204
선박 (현암호)	모타보트	1	〃	〃	조성환	〃	〃
선박 (물빛호)	10톤	1	〃	차량운전	이정환	1종대형	930-7204
트럭	2.5톤	1	〃				
오일휀스	m	400	수질사고 수습				
유흡착제	kg	250	수질사고 수습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구 분	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비 고
■중 앙	- 행정자치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02) 3703-5420 - 건교부 당직실 : 02) 504-9000	

구 분	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비 고
■자 체 (수 공)	-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 042) 629 - 3416~7(주) - 본사 당직실 042) 629 - 2660~1(야) - 청주권관리단 043) 230 - 4240~1 - 부여사업소 041) 830 - 4240~1	
■대전지역	- 금강유역환경청 042) 865 - 0785(주) 042) 865 - 0700(야) - 금강홍수통제소 041) 853 - 107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 670 - 3313 - 농진공 충남도본부 042) 480 - 0302 - 대전광역시 042) 600 - 3710, 2783 -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042) 530 - 0145 042) 530 - 0222(야) - 대덕구청 042) 620 - 6265 042) 620 - 6222(야) - 동구청 042) 250 - 1482 042) 250 - 1222(야) - 서구청 042) 611 - 6282 - 유성구청 042) 611 - 2497(주,야) - 북부소방서 042) 862 - 3300 - 신탄진 중대 042) 931 - 1113 - 대전 KBS 보도국 042) 470 - 7430 - 대전 MBC 보도국 042) 330 - 3414 - 충남경찰청 상황실 042) 255 - 9414	
■충남지역	- 충남도청 안전관리과 042) 220 - 3724 042) 251 - 2222(야) 042) 251 - 2447 - 금산군청 041) 750 - 2341 - 공주시청 041) 840 - 2398 - 부여군청 041) 830 - 2411~7 - 논산군청 041) 730 - 1497 - 연기군청 041) 861 - 2592 - 청양군청 041) 940 - 1780, 1740, 1745 - 서천군청 041) 950 - 4497	

제 15 장 KT충남본부

제 1 절 충남본부 방재업무 체계

계획수립	사전점검 및 조치	상황실 운영	피해시설 복구
방재집행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 정통부 지침 · 정부승인 후 확정	**해빙기종합안전점검** · 시기 : 3~4월 · 주관 : KT본사 · 대상 : 전시설	· 재해대책기간 (5.15~10.15) · 피해발생우려 · 기상특보 발표시 · 본사 재해대책 상황실(Netis) 지시 * 관련부서 합동근무	· 긴급절체 -자동절체 -수동절체 · 월구수용 · 긴급복구장비 투입 · 가복구 · 본복구
방재세부집행계획 · 방재집행계획 · 정부승인 후 확정	**우기대비안전점검** · 시기 : 5~6월 · 주관 : 충남본부 · 대상 : 취약시설 위주		
지역방재세부집행계획 · 본사, 세부집행계획 · 본부, 지사/망운용국 · 지방자치단체통보	**동절기대비안전점검** · 시기 : 10~11월 · 주관 : 충남본부 · 대상 : 동절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 재해대책본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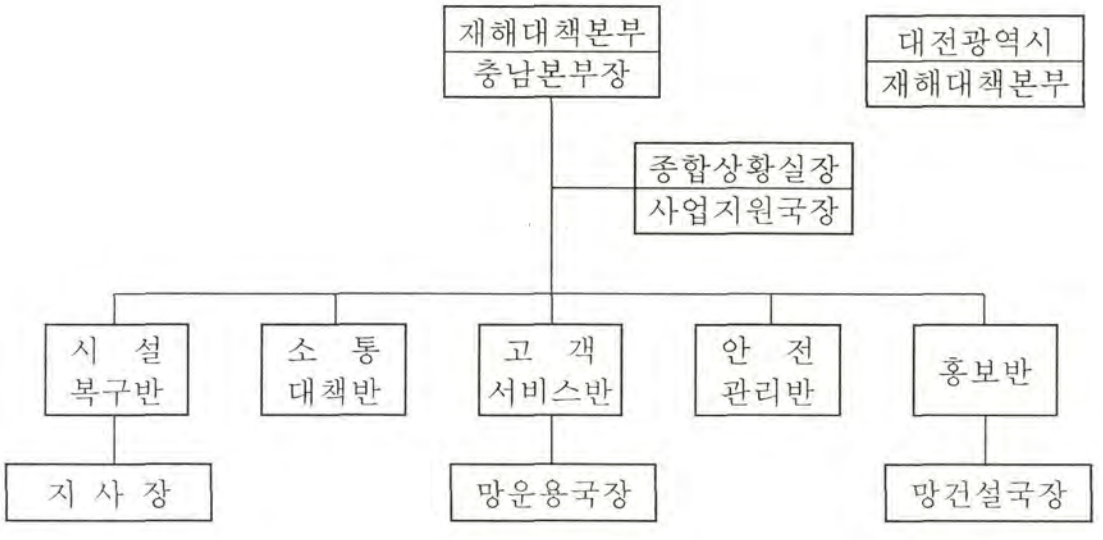

2. 대책본부 각 반별 임무

구 분	담당부서	담 당 임 무
대책본부장	충남본부장	- 재해재난의 수습업무 총괄
상황실장	사업지원국장	재해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용, 재해상황 종합관리
시설복구반	기간망지원부장/ 고객서비스지원부장	시설 피해복구 지휘, 복구물자,장비,인력동원 지원
소통대책반	기간망지원부장	호폭주 및 두절시 우회구성 등 소통대책
고객서비스반	사업조정부장/ 영업지원부장	민원대응, 요금감면, 보상 지침, 주요고객 지원 활동
후생복지반	업무지원부장	인명피해 예방조치, 작업인력 안전관리 대책
홍보반	홍보팀장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제공, 피해복구활동 사내홍보

3. 지역별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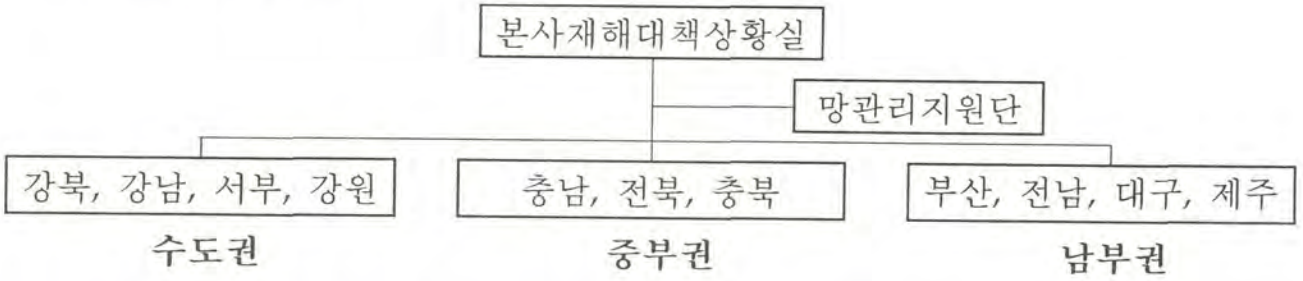

4. 비축 및 긴급복구장비 운용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3조 (비축)

○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 비축장비 : 구내교환기(400회선) 1식, P32-T 1식(30회선)
- 분야별 긴급복구 장비

. 교환분야 : TDX-100(30KL) 외 2종 3SYS

. 전력분야 : 이동용발전차(500KW) 외 6종

. 전송분야 : 광단국장치(155M) 외 20종

. 데이터분야 : NAS 4대

5. 긴급복구 물자 지원

가. 긴급복구물자

○ 보유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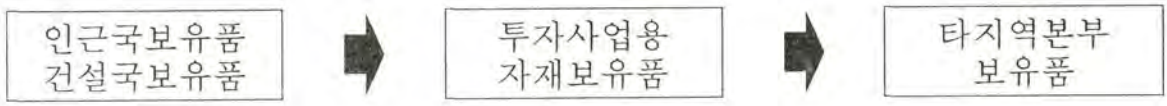

○ 긴급 물자구매(재무관리실)

- 평시 구매체계와 별도로 수요부서에서 직접 긴급구매요구
- 납품검사 : 면제 (현장인수시험으로 대체, 불량품 교체조건)
- 긴급상황 발생시는 공급업체와 협의, 물자 납품후 계약
- 재해복구용 물자는 대부분 현지구매 자재이나 집중구매가 필요할 경우 중앙조달로 일괄구매 추진

나. 긴급복구물자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제

○ 헬기보유기관 : 행정자치부(구조구난본부), 육군 항공대

○ 필요시 민간항공기 임차 활용(삼성항공 : 5백만원/시간당)

6. 통신소통 대책

가. 재해지역의 안부전화 호 폭주로 인한 시스템 다운을 예방하기 위한 호 제어

○ 1차 : 시외교환기에서 피해지역 시외교환기 호 제어

○ 2차 : 시내교환기에서 시외교환기측 출중계 호 제어

- 호 폭주 감시 및 소통제어 : 망 관리센터

나. 다원화된 전송로 여유시설 이용 긴급절체

○ 신속한 긴급복구를 위해 사전 전송로 긴급절체계획 수립

- 시내,외 국간전송로, 모자국간 전송로 등
- 방송 등 주요회선 절체계획

○ 긴급절체 관련시설 점검 및 현행관리 철저
- 예비전송로 정상운영 조치 및 자동절체 기능상태
- 절체코드 확보 및 점검(광 점퍼, DS-3, E1절체코드)

○ 생존성 향상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절체율 저조구간 향상대책 수립 투자계획 반영
- 루트별 운용시스템 분산 및 주, 예비시스템의 경로 분리 운용

제 2 절 긴급복구 WORKFLOW

1. 초동조치 및 상황실 개설단계

상황파악	○ 상황발생 인지(경보, 순찰, 신고, CCTV 등), 인근 화재시 확산여부 감시 ○ 재해발생 유형 파악(화재, 침수, 건물붕괴 등) ○ 확산여부 파악, 통신시설의 피해발생 범위 등 파악

↓

초동조치	○ 경보발령(화재신고), 근무자 대피 및 비상동원, 비상대기 근무자 동원 ○ 소화작업, 양수작업(소방서 출동시 통신시설에 직접살수 방지 요청) ○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후 통신전원 차단, 유니트 등 안전장소로 이송

↓

상황전파/ 비상소집	○ 인근기관 및 복구 지원기관에 상황전파 ○ 상황발생 보고(구두보고)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관련직원 비상소집

↓

상황실 개설	○ 긴급복구 상황실 개설 ○ 상황실 비상연락 전화번호 전국통일(8299 : 빨리복구) ○ SNG 긴급구성 연락번호도 8299로 지정 운영

↓

긴급복구반 편성	○ 자체 긴급복구반 편성 ○ 본부 긴급복구반 편성, 관련업체 긴급동원 ○ 타지역본부 긴급지원반 동원지원(본사 재해대책본부)

2. 긴급절체 및 긴급복구 준비단계

소통상황 보고	○ 소통상태 분석, 피해회선 파악(금융전산망, 타사업자, 국가기관 등) ○ 이원화망 절체 및 라우팅 변경 등 우회소통(망절체, 코드절체 등) ○ 망감시 및 제어활동(호폭주 발생시 제어 등)
↓	
긴급절체 /소통	○ 소통상태 분석, 피해회선 파악(금융전산망, 타사업자, 국가기관 등) ○ 이원화망 절체 및 라우팅 변경 등 우회소통(망절체, 코드절체 등) ○ 망감시 및 제어활동(호폭주 발생시 제어 등)
↓	
복구지휘 통신	○ 상황실 비상연락 전화, 휴대폰, 파워텔등 상황연락 전화망 확보 ○ 전체시설 통신두절시 SNG장비 긴급출동, 비상연락망 확보 ○ 지역적 고립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시는 아마추어 무선햄 활용
↓	
복구우선 순위	○ 1순위 : 금융전산망,국가안보통신,치안,재해대책용, 고립지역 해소통신 ○ 2순위 : 재해구호기관,공중용통신,항행,기상,언론기관,국가기관, 외국공관 ○ 3순위 : 방위산업체, 의료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	
복구장비 /물자	○ 장비/물자 : 자국보유분, 본부내 인근국, 건설국 보유분, 투자사업분 ○ 인력지원 : 피해지역본부, 지원권역(전국 3개권역), 타권역 지원 ○ 긴급구매 : 수요부서 직접 긴급구매, 선납품 후계약, 물품납품검사 면제

3. 현장수습 및 긴급복구 단계

복구상면 확보	○ 피해건물의 현 통신시설 설치장소 재사용, 복구물자 야적장 확보 ○ 피해건물의 타장소 활용(피해시설의 철거 이동 경로감안 선정) ○ 이동용 컨테이너 임시설치, 주변건물 임대, 인접국소 활용
↓	
피해현장 수습	○ 건물내 가스, 연기 등 송풍/환기, 건물 양수, 침수시설 세척 및 건조 ○ 피해시설 손상규모, 성능 정밀점검(일부, 전체손상 여부), 전력 안전점검 ○ 건물/구축물 안전진단 및 피해 통신장비, 케이블류 철거
↓	
긴급복구 (일부)	○ 교환시설 피해 : 3000회선 이하(SRSS), 3000회선 이상(가반형교환기 투입) ○ 전송/데이터시설 피해 : 피해상황에 따라 이동용 긴급복구장비 이송 복구 ○ 선로시설 피해 : 케이블 임시포설, 주요 가입자는 고무선을 이용 긴급가설
↓	
긴급복구 (전체)	○ 전력시설피해 : 이동형발전차 투입(충망건500KW급), 이동용 복구장비 동원 ○ 시험시설피해 : 컨테이너/MDF 설치(20,000회선당 12m X 3.5m), 케이블 포설 ○ 복합적인피해 : 소관 이동용 긴급복구장비 동원
↓	
복구협조 체계	○ 재해.재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양수,출입협조 등), 구조.구난활동 지원 ○ 타사업자와 협조 우회회선 구성, 타사업자 통신망 소통지원 ○ 대규모 재해 발생시 대전/충남재해대책본부에 인원 파견

4. 민원처리 및 고객지원 단계

통신 지원	○ 일부 케이블 시설 피해시 : 피해지역에 무료전화 설치 ○ 교환기 정상, 시험실/통신구 등 피해시 :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희망가입자) ○ 국사내 전체 통신시설 피해로 통신두절시 : SNG출동 무료전화 설치
↓	
민원 처리	○ 피해복구 예상시간 검토, 주요기관/대형 고객에 복구 가능시간 사전 안내 ○ 피해고객,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배치 ○ 처리순서 : 국가기관, 타사업자, 주요고객, 일반고객 순
↓	
가입자 홍보	○ 주요 전용가입자는 개별 홍보(영업지원부 협조) ○ 일반가입자, 지역주민 홍보(전화,가두방송,인쇄물배포,현수막 등 여건감안) ○ 사회적 문제 대두시 언론, 보도매체 홍보(보도자료는 홍보실 경유 제공)
↓	
고객 복구 지원	○ 고객의 피해유형 분석 및 지원방법 결정(침수가옥 전화기,단말기, 모뎀 등) ○ 침수가옥 양수작업 지원, 아파트 구내 단자함 건조지원, 단말기 임시지원) ○ 전화기/단말기 제작사와 합동으로 무상수리 지원
↓	
사후종합 보고	○ 피해 세부내역, 시간대별 복구사항, 민원처리, 홍보내역 등 추진 현황 ○ 피해발생의 구조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및 대책 ○ 본복구계획, 복구 소요예산, 복구 추진일정 등 종합보고

제 3 절 재해예방 및 재해상황실 운영요령

1. 재해재난 예방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방재계획 수립 : (Y-1)년 10월

○ 과거년도 재해재난 피해상황 및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

- 피해시기, 재해원인, 피해위치(지역), 피해시설, 피해액 등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사업 추진실적 분석

○ 재해재난 예방대책 수립

- 재해재난 기본계획을 기초로 차체실정에 맞도록 실행계획 수립
- Life Line 으로서 안정적인 통신시설 운용대책 강구
-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 및 취약요인의 근원적 해소대책
- 통신고립지역 해소대책, 긴급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개량복구체계
- 재해재난 취약요인 우선순위 검토(중점관리대상, 재해위험시설 등)
- 재해유형별 관리대책 등 차기년도 방재계획 수립

2) 해빙기 종합안전점검(본사주관) : 2~4월

○ 점검대상 : 건축물, 구축물, 통신구/관로, 통신시설 등 전시설

○ 점검방법 : 1단계(현업 자체점검), 2단계(본부 확인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건물주변 지반침하, 축대/담장/진입로 등 균열, 기울어짐 발생여부 및 위험한 곳은 표지판 설치
- 건물, 통신구 등 구조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 안전관리실태
- 통신구내 배수펌프, 환풍기, 감시시설, 전기시설 등의 정상동작 여부
- 통신운용실 층실간 케이블관통부 밀폐관리 실태
- 소화 및 방화시설의 정상동작 여부
-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행실태
- 사고시 긴급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통신두절시 우회절체 및 긴급복구계획 수립
- 통신시설 현황관리 현행화 : 재해상황관리시스템(Netis)에 게시
- 재해상황관리시스템 URL : http://netis.kt.co.kr

3) 우기철 대비 점검(본부 주관) : 5~6월

○ 점검대상 : 장마,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개소 중점점검

○ 중점점검사항

-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수
- 배면수 제거용 배수로의 기능유지 상태 점검
- 강우량의 정도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을 파악, 작성하고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지정관리(소속직원 주지교육)
- 낙뢰피해 다발지역에 대한 통신접지상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 지하시설물(통신구 등) 침수예방대책 강구

. 환기구, 지하시설물 출입구 등을 통한 우수 유입방지대책 강구

- 대형공사장에 배수시설, 양수기 등 수방물자 비축, 취약요인 점검
- 수해상습지역, 고립지역, 하천범람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등

- 통신구내 배수펌프, 환풍기, 감시시설, 전기시설 등의 정상동작 여부
-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의 사전정비 등

4)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본부 주관) : 10~11월

○ 점검대상 : 설해, 동파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개소, 준비상태 점검

○ 중점점검사항

- 각종 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실태
- 안테나, 반사판 등 지지철의 점검 및 보강
- 결빙에 의한 담장, 벽 등의 균열 및 붕괴 예방
- 가스, 난로, 전열기 관리실태 및 소화기 점검 등 화재예방대책
- 상습 설해지역 파악 및 긴급복구계획 수립
- 고립지역 대비 장시간 정전대책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실태
- 교통두절을 대비한 우회도로 지정
-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 동절기 유류 및 식량비축 여부 등

2. 재해재난 취약시설 관리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
- 국제 및 시외통신 전송로시설이 수용된 통신구로서 피해발생시 지역적인 통신고립이 우려되는 주요통신구 및 지하철병행통신구
- 대형공사장(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 이상)
- 기타 시설장이 특별히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물은 안전점검결과 D,E급의 통신구 및 건축물(유휴시설 제외)

○ 지정절차

-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 재난위험시설물 고시(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 지정내역 관보 게재 또는 게시판에 14일이상 공지
  · 지정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취약시설 지정후 안전관리

- 관리카드 작성 및 월별 안전관리추진실적, 변동사항 관리
- 재난위험시설물 : 관리책임자(일 1회), 시설장(월 1회)
- 중점관리대상시설 : 관리책임자(월 1회, 시설장(분기 1회)

2) 대형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등급 설정기준

- A급 : 도로,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인근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공사장(통신구 등)
- B급 :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장(관로,인수공,건물 개수공사 등)

- C급 : 운용중인 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공사장(교환, 전송장비의 시설 신증설 공사 등)
- 사외 : 타부처 시행 공사로 통신시설에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

○ 공사장 현장 점검관리 및 확인(운용국 및 시행기관)

- 순회자 및 입회자의 일일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관리
- 감독직은 주기적인 현장확인 및 지적사항 조치 등 결과 기록
- 본부, 본사 관련부서는 관리등급에 따라 확인

○ 공사장 수방대책 수립

- 장기 계속공사는 공사착공전 수방대책 수립 반영
- 년1회 외부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위탁안전진단 시행
- 토목공사 기초 흙파기전 외부전문 안전진단기관 진단
- 흙막이 가시설공사시 전문직(토목직)이 공사참여

○ 공사장 등급별 관리기관

- 공사시행기관 : 해당공사장,
- 현업기관 : A,B,C급 및 사외공사장
- 본부 : A,B급 및 사외공사장
- 본사(당해사업부서) : A급

○ 우기전 중점점검 및 관리사항

- 우기전 일제정밀조사 및 현황파악관리
- 입회 및 순회점검 강화 : 책임직의 공사장 순회점검 주기단축 : 월1회 - 주1회
- 옥외공사장은 호우시 공사중단 및 침수보호조치
- 공사관련시설의 고장예방 및 긴급소통대책 강구

3) 층.실간 케이블관통부 관리

○ 관통부 밀폐관리

- 기관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주기점 점검시행
- 각종 공사,작업 등으로 관통부가 훼손된 경우 당해공사 시행부서 책임하에 밀폐복구, 인수시 확인

○ 층간 관통부 밀폐관리 기준

- 층간 관통부는 해당 관통부의 바닥면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
- 통합운용실 등 다수의 통신시설이 있는 경우 선임부서가 관리

○ 동일층 통신운용실간 관통부 밀폐관리 기준

- 실간 관통부 관리 : 교환->전송->데이터->선로운용실->기타
- 운용기관이 다를 경우: 건물관리기관->시내->국제->위성 순

○ 층.실간 통신전원케이블 관통부는 통신전원 운용관리부서에서 관리

4) 가입자건물 지하에 설치된 취약통신시설 관리

○ 아파트,빌딩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된 통신시설 현황파악

○ 취약시설 관리개선방안 추진

- 케이블 관구 밀폐
- 취약건물별 통신시설 관리담당자 지정
- 침수피해 예상시 사전 전원차단 및 유니트 등 이동대책 강구
- 건물내 배수펌프 가동(건물주와 긴밀히 협의)
- 침수우려시 지사내 보유 양수기 지원대책 강구
- 건물 지하에 침수센서 가동 및 관리실과 연락망 확보
- 취약 통신실 지상층 이전 및 향후 설치시 취약성 사전검토 등

3.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상황실 개설

○ 폭풍,호우 및 대설경보, 홍수주의보, 태풍통보 발표시

○ 재해재난으로 시설피해 발생시

○ 대형고장 발생으로 48시간 이상 복구지연 예상시

○ 돌발적인 사고로 사회적 물의 예상시

○ 기타 상위기관으로 부터 상황실 개설 지시 등

2) 단계별 상황실 근무체계

단계별	상황별	근무방법	근무편성
준비 체제	-폭풍, 호우 및 태풍정보 발표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근무자지정 교대 근무	대전망운용국 지역망관리과
경계 체제	-폭풍, 호우 및 태풍 경보 발표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돌발적 사고로 사회적물의 예상시	-근무인원 증원 -관련 실, 부장 유기적 연락체계 확립	사업지원국
비상 체제	-지역적 막심한 피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돌발적 사고로 사회적물의 발생시	-전사적 합동근무 편성 - 필요시 현지출동	관련 해당기관부서

○ 각 지사/망운용국은 본부 상황실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평 시 : 대전망운용국 지역망관리과 운영(연중 24시간)

3) 태풍 및 호우시 재해대책 상황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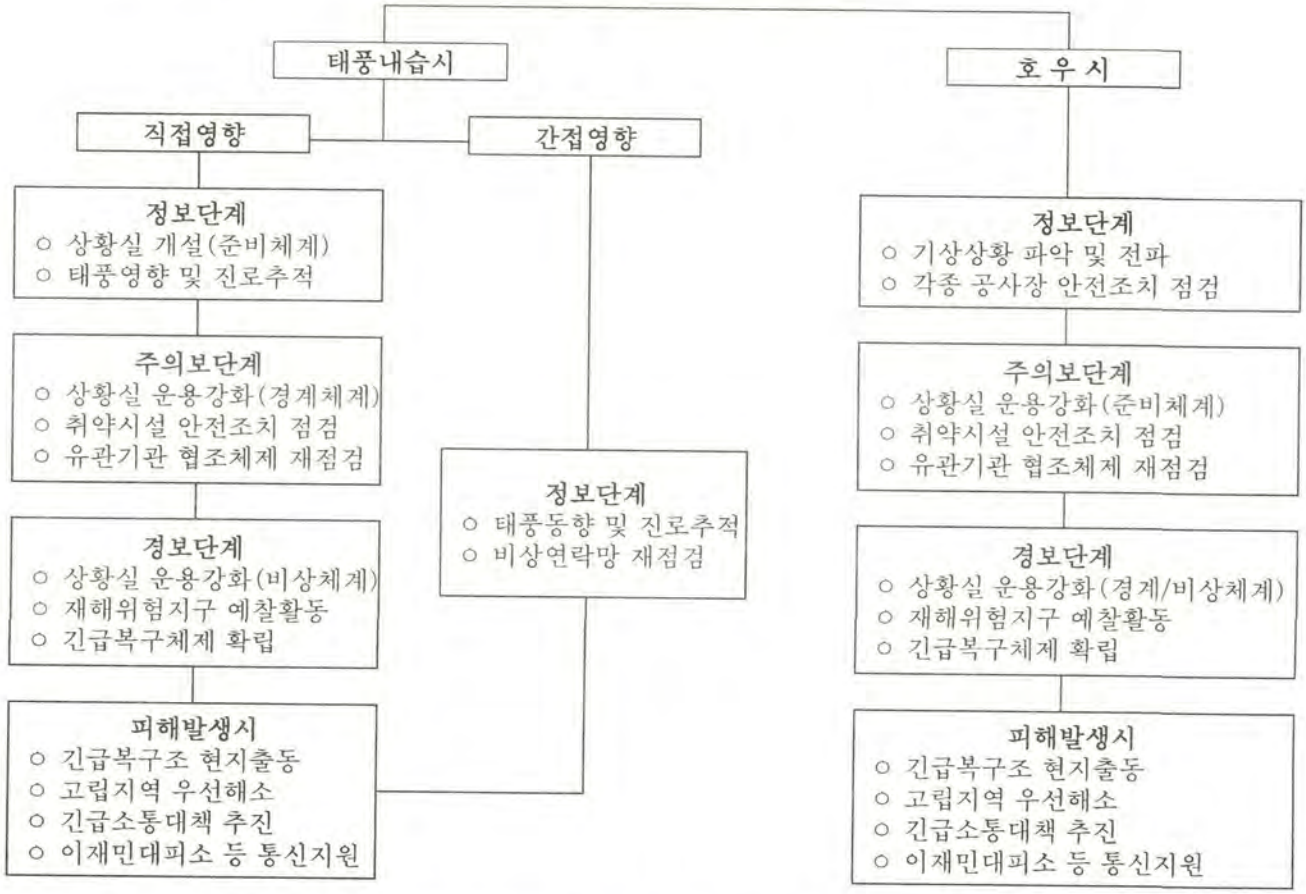

※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피해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본사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

4. 상황파악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상황의 인지

○ 당직자의 가시가청경보,CCTV,순찰에 의한 예지, 출력 메시지, 외부신고, 매스컴 등에 의해 인지

2) 상황발생 유형파악

○ 화재발생인 경우 : 화재의 발생원이 어디인지 파악

- 통신운용실 내부의 화재 발생, 국사내 화재발생에 의한 간접피해, 인접건물에 의한 2차 화재

○ 침수인 경우 : 지하실에 통신시설(중계소 등)의 시설 여부 등

○ 붕괴인 경우 : 일부 및 전체

○ 시스템 불량

3) 상황의 전개방향

○ 상황이 확산되는지, 어떤 층에서 시작되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통신시설에 피해를 미칠 것인지 등 상황의 전개 방향을 확인

○ 근무자가 복수인 경우는 분담하여, 상황을 파악

4) 통신시설 피해유형, 범위 확인

○ 전체 통신시설의 피해여부

○ 분야별 전시설, 분야별 복합적인 시설피해

○ 분야별 일부시설의 피해

5. 초 동 조 치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화재발생인 경우

○ 화재발생 경보와 더불어 긴급대피 방송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상황발생 전파

○ 비상대기 근무자를 동원 자체 소화작업을 신속하게 시행

- 소화기로 진압이 불가능한 통신시설의 화재인 경우는 하론설비를 이용한 소화를 시행

○ 소방관서 화재 진압시 통신실의 특성을 설명하고 각종 통신시설에 직접적인 살수 방지를 요청

○ 살수가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을 득한후 통신용 직류전원을 차단

2) 건물침수인 경우

○ 안내방송을 통하여 건물내 근무 직원을 비상 동원

○ 모래 주머니, 양수기를 이용 침수를 막기 위한 작업을 시행

○ 필요한 경우 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양수작업을 시행

○ 침수차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후 통신용 전원을 차단, 유니트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송

3) 건물붕괴인 경우

○ 경보발령과 긴급대피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후 통신용 전원을 차단, 유니트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송

4) 대형고장인 경우

○ 대형고장 처리절차에 준하여 긴급복구작업에 임한다.

6. 상황전파 및 비상소집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상황전파(보고 및 통보)

○ 통신실 및 집중운용실 근무자가 상황 인지시

- 상황을 즉시 당직장에게 보고 및 인근 관련기관(국소)에 상황을 전파한다.

○ 당직근무자가 상황 인지시

- 상황을 즉시 해당 통신실, 관련기관(국소)에 상황을 전파한다.
- 당직장은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

2) 상황발생보고 : 대형고장 보고체계와 동일

○ 보고방법 : 최초 피해상황은 구두 및 전언보고

○ 보고내용 : 고장시설, 고장내역(범위), 소통영향, 초동조치, 긴급조치사항 등

3) 경영진 보고 : 상황근무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상황을 보고

4) 비상소집

○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관련직원 비상소집

○ 상황실 구성시까지 초기 행동요령 및 상황 일원화 통제

7. 긴급복구(재해)상황실 개설 및 운영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상황실 개설

○ 피해발생 즉시 긴급복구 상황실을 개설, 가복구 완료시까지 운영 (필요시 본복구까지 상황실 연장)

○ 상황발생 규모에 따라 상위기관(최종:본사 재해대책상황실)도 개설 운영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상황실을 현장에 전진배치 운용

2) 상황실 연락번호 구성 : 8299번으로 전국 통일

상황실 구분	연락전화번호	운용기준
본사 재해대책상황실	02-750-3651~3(삼백육십오일)	24시간
충남본부 상황실	042-478 + 8299(빨리복구)	
현장상황실	국번호 + 8299(빨리복구)	상황발생시
SNG출동의 경우	02-3244-8299 고정번호 부여	출동시

3) 상황보고체계 운영

○ 피해현장에 상황실 개설 운영시에는 현장에서 본사로 보고한다.

○ 기타사항은 기존 대형고장보고체계와 동일하다.

4) 복구지휘체계

○ 시설 일부피해시 시설운용부서장 책임하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 시설의 대형피해시는 단위기관장 책임하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다. 상황근무 체제

단계별	기상(피해)상황	근무방법
평시(관심) 체제	- 상설운용(망관리센터 24시간 감시)	- 망관리센터: 근무자 지정운용
준비(주의)체제	- 기상정보 (예비특보,주의보) 발표시 - 통신시설 피해발생 예상시 - 48시간 이내 태풍내습 예측시 ※ 재해대책기간(5.15~10.15) 상시	- 재난대책 상황실 운용 . 근무자 지정운용
경계체제	- 기상특보(호우,태풍경보) 발표시 - 대형고장으로 복구지연 예상시 - 12시간이내 태풍중심 통과 예상시	-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근무인원 증원 . 관련 실·본부간 유기적 연락체제 확립
비상(심각)체제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 발생시 - 지역적 막심한 피해 발생시 - 기타 돌발적 사고로 사회적 물의발생시	-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관련 실·본부간 합동근무 편성 운용 . 필요시 현장출동

8. 긴급복구반 편성

가. 업무처리 흐름

자체긴급 복구반 ➡ 본부(단) 긴급복구반 ➡ 관련업체 긴급동원 ➡ 타지역본부 긴급지원반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자체 긴급복구대책반 편성 및 임무표(현업 여건에 맞게 변동가능)

○ 긴급복구 대책반장 : 긴급복구 총괄

○ 상황반 : 고장상황파악 및 보고, 긴급복구내역 파악관리, 대,내외 기관 협조 총괄

○ 소통대책반 : 소통상태 분석, 주요가입자 수용변경

○ 시설복구반 : 긴급복구 물자확보, 긴급복구작업

○ 지원반 : 대외기관 협조요청, 대민홍보 등

2) 운영방안

○ 사전 SOP에 의하여 명확한 개인별 임무 부여(정/부 지정 등)

○ 피해발생 즉시 분야별/개인별 적정규모의 대책반 편성

○ 긴급복구 지휘 통신망 확보를 우선

○ 소통대책반은 백업 가입자(시설포함)DB 및 선번장 등 활용복구 (평시 피해지점외 장소에 각종 DB를 이중 관리해야 한다)

O 지원반은 특히 단전,살수 등의 대책을 대외기관과 협조.

○ 상황반은 복구사항을 수시 파악 및 보고의 일원화 체계 유지

○ 상황반은 복구사항을 수시 파악 및 보고의 일원화 체계 유지

3) 본부 긴급복구반 편성

○ 긴급복구 대책반장 : 긴급복구 지휘총괄

○ 상황반 : 고장상황파악 및 보고, 긴급복구내역 파악관리, 대,내외 기관 협조 총괄

○ 소통대책반 : 소통상태 분석, 우회소통조치 및 지휘

○ 시설복구지원반 : 긴급복구 물자지원, 긴급복구인력 지원 등

4) 관련업체 긴급동원 : 업체별 비상연락망

○ 자체 복구인력 부족시 관련공사업체 긴급동원

○ 사전 긴급연락망 확보 및 단가체결

○ 우선 공사 추진후 사후 정산

5) 타지역본부 긴급지원반

○ 본부내 복구인력 부족시 본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 타본부 인력지원 요청

○ 본사 재해대책본부에서 해당분야별로 타 지역본부 인력 동원조치

○ 긴급복구 물자 및 장비 지원체계와 동일

○ 타본부 긴급복구 지원인력은 현장 복구 지휘체계에 의해 통제

9. 상황보고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보고내용 : 단계별로 파악 및 보고사항 보강

○ 고장시설 및 회선수

○ 고장내역(범위) 및 원인

○ 소통영향

○ 초동조치, 긴급조치사항(- 긴급절체 및 통신소통 조치, - 긴급복구 출동인원 및 복구장비/물자)

○ 복구 또는 복구 예정시간(이장시간),

○ 긴급복구 조치 사항

○ 향후 조치계획

2)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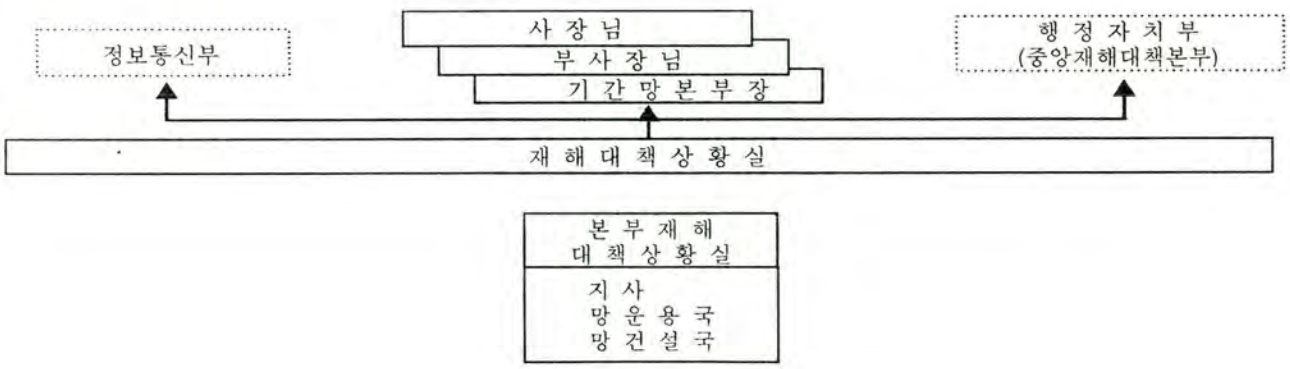

다. 보고의 종류 및 내역

보고종류		내 역	보고시기	방법
o 상황실 개설 및 종료보고		o 개설보고 : 개설일시,사유, 근무자현황 o 종료보고 : 종료일시,사유	o 개설즉시 o 종료결정즉시	o Netis 재해 상황 관리시스템
o 재해대책 상황보고		o 기상개황, 강수량, 가입자고장 발생건수 o 재해예방대책 추진실적 o 근무자 현황	o 상황실운용시 - 익일02:00 o 근무교대시	"
피해 및 복구보고	사전보고	o 침수,붕괴 등 피해우려 상황	o 상황인지즉시	
	발생보고	o 대형고장에 준하여 보고 - 시설명,일시, 피해내역, 회선수,원인 - 긴급조치사항, 지원장비 및 동원현황 등	o 피해발생즉시	"
	복구,조치 진행사항	o 긴급복구 조치사항(시간대별) o 긴급복구인원,물자,장비등 지원 필요 사항	o 익일3회 11, 17, 23시	"
	일일종합 보고	o 시설,회선 피해 및 복구 현황 o 긴급통신지원 사항 o 긴급복구인원,장비 동원현황 o 홍보활동사항, 기타 주요조치사항	o 익일 06:00	"
사후보고		o 피해 및 복구현황 o 피해시설별 원인분석 o 피해액 및 복구소요 예산 o 문제점 및 개선대책 o 피해사례 및 복구활동 사진 등	o 가복구 완료 후 7일이내	o 문서보고

10. 긴급절체 및 소통대책

가. 업무처리 흐름

소통상태 분석 ➡ 피해회선 파악 ➡ 절체우회 소통조치 ➡ 망관리 및 제어활동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통신망 소통상태 분석 → 지역망관리과

○ 시스템 일부, 전체기능의 정지여부를 우선 파악

○ 일반전화, 전용회선 등의 소통영향을 분석한다.

○ 소통상황 인지 즉시 상황전파 : 관련 지원부서, 타사업체 망관리센터

○ 감시분석시스템 : Netsolver, RNMS, MOST, EOCMS,DELMONS, KOSMOS 등

2) 통신망 피해회선을 파악 →공중회선과 전용회선

○ 관할구역내 서비스 가능지역과 불가지역을 구분

○ 전용회선의 경우 금융전산망, 국가주요회선, 타사업자회선을 구분

○ 타사업자의 정상 운용회선 파악(교환(EOCMS), 전송(TEMS), 선로(TIMS/TOMS), 전용(DELMONS)

3) 이원화망 절체 및 라우팅 변경 등 우회소통

○ 전송망의 이원화망 절체 및 B-DCS절체

○ 교환망의 코드제어 및 라우팅 절체

○ 데이터망의 자동라우팅 절체

○ 주변지역(국소)에 광코어 이용 긴급 우회로 구성

- 이원화 인접지역 전송로 절체 구성, 주변 및 관련국소 전송로 절체 구성

4) 망관리 및 제어활동

○ 호폭주 발생으로 인한 소통에 심각한 영향 우려시, 폭주호 제어조치

○ 교환망 및 인터넷망 라우팅 절체 확인 및 제어후 소통상태 주기적으로 확인

11. 복구 지휘통신 확보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PSTN 통신소통이 가능시 상황실 전화로 복구지휘

○ 복구현장에 복구지휘용 전화기 필요시, 긴급가설

2) PSTN 통신소통 두절, 이동통신 가능시

○ PCS 사용 가능시는 이를 복구지휘통신용으로 활용

○ TRS 사용 가능시 TRS를 복구지휘통신용으로 활용

○ 인터넷 사용가능시는 인터넷폰, 인터넷 메일 활용(유선 및 무선넷)

3) 전체적인 통신두절시 SNG/이동기지국을 활용, 지휘통신 구성

○ KT 자체 복구지휘통신 우선 확보

○ KT 복구지휘통신, 행정기관 복구지휘통신, 주민 통신지원용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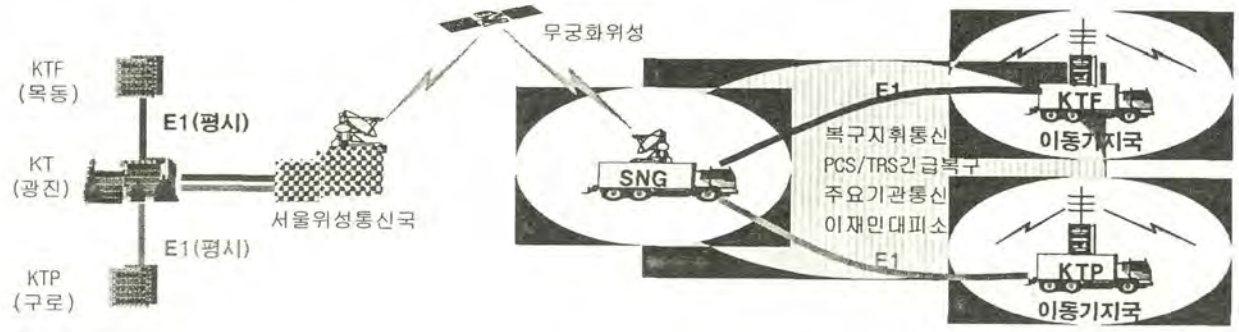

4) 지역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아마츄어 무선(HAM)이용

○ KT보유시설 활용, 일반직원 보유시설 활용

12. 긴급복구 우선순위

가. 업무처리 흐름

금융 전산망 ➡ 전용회선 ➡ 일반전화 ➡ ADSL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의하여 통신망 긴급복구

○ 다수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전산망 긴급 복구

○ 공중통신회선 복구는 긴급복구우선순위에 따라 복구

2) 긴급복구 우선순위

순위	내 용	비 고
1순위	○ 국가안보(국가지도, 경호, 정보)통신 ○ 군사 및 치안통신 ○ 민방위 전달경보통신, 전파관리통신 ○ 금융업체 및 증권업계 전산망 ○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고객의 통신	
2순위	○ 재해구호기관 통신(의료기관통신 포함) ○ 공중용 전기통신, 항행안전, 기상, 소방, 군, 수송 및 언론기관 통신 ○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신 ○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 통신	
3순위	○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 ○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	
4순위	○ 제1순위 내지 제3순위 이외의 통신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에는 충무계획에 의한 긴급복구 우선순위 준용

13. 긴급복구 장비/물자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장비 및 물자활용 : 긴급복구장비 보유내역(붙임)

○ 1차 지역본부내 인근국 →건설국 보유분 → 투자사업분 우선 활용

- 긴급복구용장비, 비축장비, 교육/모델용 장비

○ 2차 타지역 보유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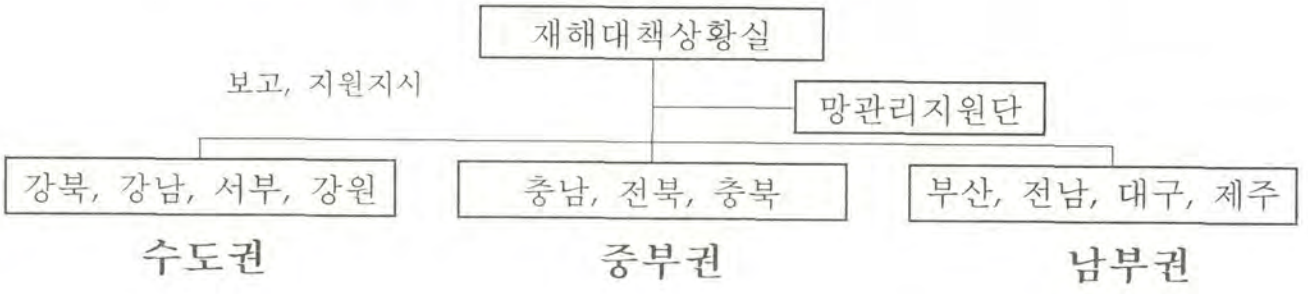

2) 장비,인력지원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 장비, 인력 지원

○ 피해발생본부는 동일권내 타본부로 지원요청

○ 동일권내 지원이 불가시는 본사로 지원요청

○ 망관리지원단은 전국 지원

3) 긴급물자 구매

○ 평시 표준구매 일정과 상관없이 수요부서에서 직접 긴급구매

○ 물품납품검사 면제(현장 인수시험으로 대체 및 불량품 교체조건)

○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선 물자 납품, 후 계약추진

○ 중앙 집중구매가 필요시 조달본부에서 중앙조달로 일괄구매 추진

4) 장비수송

○ 육로 수송이 불가시 헬기를 이용한 수송검토

○ 필요시 행정자치부, 군에 지원요청

14. 긴급복구 상면확보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피해건물 현위치 재사용 가능시

○ 건물,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긴급 시행

○ 피해 통신시설 철거 및 도색기간 등을 감안, 복구 일정계획 수립

○ 본복구 상면배치 계획을 감안, 가복구 시설을 배치

2) 피해 건물의 타장소 사용 가능시

○ 피해시설의 철거 이동경로를 감안하여 장소 선정

○ 분야별 특성과 용량 감안

○ 복구후 시설 원상시의 방법을 감안하여 상면 활용계획 수립

3) 이동용 컨테이너 임시 설치시

○ 통신시설 복구에 필요한 소요면적을 감안, 컨테이너 규모 결정

○ 컨테이너 설치 장소는 진입도로 여건, 케이블인입, 전원공급 여건, 작업여건을 감안 선정

○ 컨테이너에는 온습도 관리를 위한 냉난방시설 보강대책 강구

4) 주변건물 임대 또는 인접국소 활용시

○ 장기간 또는 영구임대 사용 타당성 등도 병행하여 검토

○ 거리 및 현시설 용량과 긴급복구 시설 가능 용량 감안 수립

15. 피해현장 수습

가. 업무처리 흐름



1) 수습인력 투입

○ 투입인력자원 : 피해기관 인력 → 인접기관 해당분야 인력 투입방안 협의 및 대책수립

○ 망관리지원단 기술지원 인력 투입(원격 및 현장)

○ 분야별 통신시설 및 장치에 대한 공급사(제작사) 요원 긴급지원

○ 상기분야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 입체적 수립

2) 피해 현장 수습의 우선 순위 : 인명 -> 통신시설 -> 구축물

3) 피해 수습시 우선 고려사항

○ 인명피해(실종 포함)의 구급

○ 통신시설 피해현장 수습

- 통신회선의 피해현장에서의 주요장치의 보호, 피해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 검토

○ 구축물의 현장수습

- 피해규모 및 범위 파악, 사/내외 복구 계획 수립

○ 사내 정보(DB) 보호조치 및 활용

- 충무계획 및 과금데이터, 가입자 정보DB 및 MDF 선번장 등 기타 정보

○ 피해원인 규명

- 형사상의 문제소지로 현장보관 확보의 필요성 제기
- 초동수사시 철저 대응 필요

다. 사례별 수습요령

1) 화재로 인한 피해 수습시 고려사항

○ 한전 상용전원 차단

○ 통신실내 살수 방지 요청

- 기계실내 직접 살수 방지 및 국사 외부에서 창문을 통한 소방차 살수 방지

- 살수가 불기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후 통신전원 차단(DC 미차단 상태 살수시 화재확대)

○ 화재규모와 진행상황을 감안 장치(유니트) 탈거 및 보호방안 강구

○ 작업자는 맹독성 가스와 연기 등에 주의와 가스 등에 의한 2차 화재 발생에 대비

○ 화재의 발생 원인 규명시

-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비 현장보관 확보의 필요성 및 초동수사시 철저 대응

2) 침수피해 우려시 검토사항

○ 침수 수위(층)별 행동요령 사전 검토

- 지하층, 1층, 2층,...

○ 국사전원 차단시점 검토

- 국사 형편에 따른 수위별 전원 차단 시점을 사전에 검토(한전상전, 통신용전원)

- 전원차단시 사용 할 이동용 발전기 확보

○ 배수방안 강구 : 이동용 양수기 동원방법(동원가능한 수량), 소방차 동원

○ 장치 보호대책 검토 : 장치(유니트) 탈거, 일부 침수에 대한 방수 대책

3) 붕괴로 인한 피해

○ 규모별 행동요령 사전 수립

- 일부 균열, 일부 붕괴, 전도 및 완전 붕괴 등

○ 2차 피해에 대비

- 붕괴후 여진 대비 복구 및 붕괴후 화재 등에 따른 2차 피해 대비

○ 상위기관(인접기관)의 지원대책 방법

○ 관련 행정기관에 지원 대책사항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실시

16. 긴급복구(단위시설 피해시)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복구단계 : 고립지역 우선해소 -> 긴급복구(가복구) -> 항구적 복구

2) 긴급복구방안 검토 : 피해유형, 피해규모에 따라 복구방안 검토(일부시설 피해, 복합적 시설피해)

고장유형별		조치요령
교환시설	일부고장	○ 동일 시스템내에 타 모듈로 주요회선 절체
	전시스템고장	○ 타 시스템으로 절체 및 인접국으로 주요회선 월구 수용 ○ 무료전화 및 공중전화 ○ 긴급복구용 시스템 설치 및 회선 절체
가입자선로	일부구간고장	○ 착신전환에 의한 긴급 호소통 회선구성 ○ 교환시스템 보호작업
	전구간고장	○ 상동 ○ 이동용위성(SNG) 설치(무료전화 및 공중전화) ○ 케이블 환체 등 복구
전송시설	일부고장	○ 전송로 긴급 절체 실시 ○ 이동용 광단국 및 재해용 무선장비 설치로 긴급 소통회선 구성
	전구간고장	○ 전송로 긴급 절체 실시 ○ 이동용 광단국 및 재해용 무선장비 설치로 긴급회선 구성 ○ 복구용장비 투입 복구
전원	일부고장	○ 타시스템으로 전원공급 방안
	전시설고장	○ 이동용 발전차, 직류전원장치 투입 ○ 복구용 장비 투입 복구

○ 기존 전송망을 연계하여 긴급복구

- 기존 D-M/W 전송로와 연결 복구, 기존 광전송로와 연결 복구방안을 검토한다.
- 복구방안별 소요장비(이동용교환기, 광단국, 전원시설)를 파악한다.
- 필요시 망관리지원단, 타지역본부 보유분 지원 요청

○ 이동용 장비를 투입한 긴급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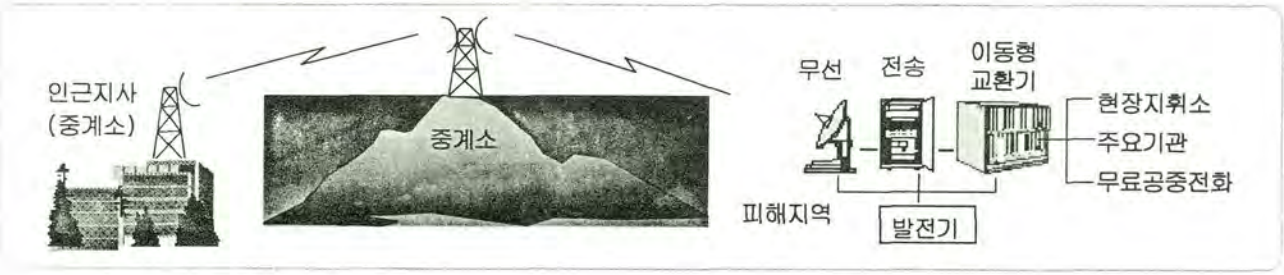

- 복구장비 설치장소 선정시 고려사항

. 피해(침수,붕괴,화재 등) 상황 진행에 따른 안전성

. 기존 통신망과의 연계 복구의 용이성

. 긴급복구장비 투입(수송)이 가능한 도로루트와 운송방법 검토

. 기상악화시 장비의 안정운용이 가능한가 여부

- 긴급복구망 구성방법

. KT 인근지사(중계소)와 피해현장간 전송망 구성(D-M/W, 이동용 광단국 이용)

. 이동용 교환기, 전원시설 공급 및 주요가입자 선로구성

2) 교환기 피해시 이동용 교환기 활용

○ 투입 긴급복구 장비 검토

- 3000천회선 이하 긴급복구시 : SRSS 투입

- 3000천회선 이상 긴급복구시 : 가반형 이동교환기 투입

○ SRSS 설치시 검토사항

- 피해국의 최인접 TDX-1B 수용국 결정
- 모델교환기의 SRSS분리 작업(OMC)
- 모자구간 전송로 방식 결정
- 기존 전송로 활용 가능여부(기존 전송로 이용불가시 이동용 M/W 장비 활용 준비)
- 전원공급 방법 결정 : 상용전원 활용여부(상용전원 활용 불가시 이동용 발전기 활용 준비)

○ 가반형교환기 설치시 검토사항

- 가반형 교환기에 대한 탄뎀시스팀 및 국간중계 구성방안 결정 (국간중계의 피해정도 및 기존 망구성을 고려하여 FULL 탄뎀방식 혹은 개별 국간중계방식 채택)
- 탄뎀 전송로 방식 결정(이동용 M/W투입 검토)
- 전원공급 방법결정(상용전원 활용가능여부 검토)

○ 설치및 복구작업

- 국간전송로 구성 및 전원공급, 케이블 접속이 용이한 장소에 이동용 교환기 설치
- 최근 BACK-UP TAPE 확보(국간 중계정보, 프리픽스 데이터, 주요 가입자데이터 등)
- 복구 우선 순위에 의거 주요가입자 명단 확인
- 국간 전송로 구성, 가입자 회선구성, 호출시험 및 개통

○ 피해인접국(지역 OMC 지원) 복구지원

- 데이터 작업시행(SRSS의 모국용 데이터, 주요가입자 데이터 입력 등)

- 국간 전송로 구성 및 호출시험

- 주변국/ TOLL 국 작업사항 통보

3) 선로운용실 피해시

○ 피해유형에 따른 복구방안 검토

- 화재로 전시설 소손시 : MDF를 설치할 상면확보(컨테이너 또는 국내 타장소)

- 수해피해시 양수작업 및 MDF 건조후 재사용 여부 결정

(재사용 불가시 단자함, 탄기반 교체)

- 일부시설 피해시 : 피해시설 점검후 대,개체

○ MDF시설을 콘테이너에 설치하는 경우

- 콘테이너는 임대 설치(콘테이너 임대업체 연락처등 사전관리, 필요시 114안내 이용 문의

- 콘테이너 설치기준 : 20,000회선을 기준으로 3.5m X 12m 규모의 컨테이너

- 콘테이너 설치장소는 동도 휘다CA과 각 실간 국내CA 인입이 유리한 장소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콘테이너에서 휘다CA,국내CA 인입루트 사전확보를 위한 작업실시

○ 케이블 포설 복구

- MDF~교환기, 전송장비간 국내CA 포설 및 단자접속

- 선로시설운용실을 경유한 광케이블의 복구는 각실 단말 FDF,OFD 부터 통신구내 절체점까지 케이블 포설 복구(광분배함, 저장함,광케이블,광점퍼코드,어뎁터 등)

○ 복구인력에 대한 작업조별 임무부여 및 배치

- MDF설치팀,휘다케이블 포설,국내케이블팀,광케이블팀,회선대조/접속/시험/수리팀으로 지정 배치

- 케이블 접속과 동시에 가입자 호출시험 및 고장수리 병행 실시

○ MDF 시설별 수용내역 현행자료 관리

- 시험실 시설현황 대사 일치(TIMS,ANSWERS,TOMS,DELMONS)

* TIMS,DELMONS사용 불가시 인접국에 회선내역 파악요청

* TIMS 조회방법 : http://kttims.kt.co.kr -> userID,PWD -> 네트워크 -> 가입자망설비현황

* DELMONS조회방법: http://delmons.kt.co.kr -> userID,PWD -> 운용보전관리 -> 회선운용내역

○ 건설국 및 인접국에 물자/장비/인력 등 지원요청

- 자재부분: 본배선반 종류별, 피뢰탄기, 단자판, 휘다CA, 국내CA, 점퍼선, 광CA, 간이선로시험기 등

18. 관련기관 비상연락 등 협조체계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재해,재난 등 관련기관 파악

○ 긴급구조, 초동조치를 위한 행정기관(경찰서,소방서,병원 등)

○ 사업자간 통신소통 대책 및 복구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자 파악

- 타사업자(SKT,유니텔,데이콤,온세 등 타 통신사업자)

2) 비사연락망 구축

○ 주간, 야간 비상연락전화 확인 및 주기적인 현행관리

○ 필요시 업무 담당자 파악관리

3) 협조체계 구축

○ 재해복구, 긴급구조 및 구난훈련 참여, 통신지원으로 협조체제구축

○ 재해관련기관과 긴급통신 지원체계 사전 협의

○ 대규모 재해 발생시 중앙,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인원파견

○ 타사업자와 상호복구 지원 및 소통대책 사전 협의

- 이동기지국 설치 등 장비, 인력지원방안
- 상호 우회소통방안, 단말기 지원 등

4) 상황전파 및 지원

○ 상황전파 및 연락체계 사전 협의

○ 피해발생시 주기적인 정보 교류

5)유관기관 비상연락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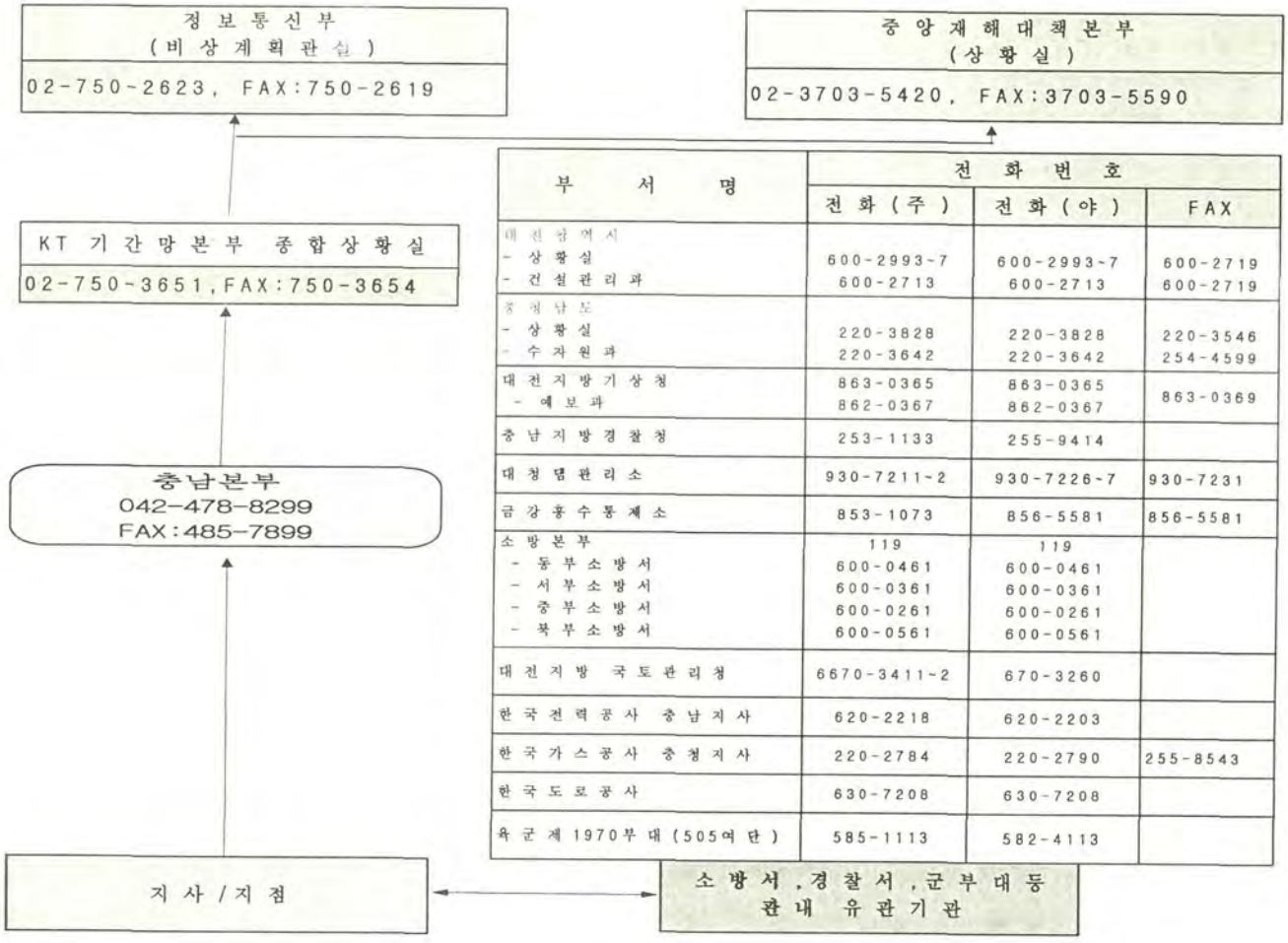

부 서 명	전화번호		
	전화(주)	전화(야)	FAX
대전광역시 - 상황실 - 건설관리과	600-2993~7 600-2713	600-2993~7 600-2713	600-2719 600-2719
충청남도 - 상황실 - 수자원과	220-3828 220-3642	220-3828 220-3642	220-3546 254-4599
대전지방기상청 - 예보과	863-0365 862-0367	863-0365 862-0367	863-0369
충남지방경찰청	253-1133	255-9414	
대청댐관리소	930-7211~2	930-7226~7	930-7231
금강홍수통제소	853-1073	856-5581	856-5581
소방본부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중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119 600-0461 600-0361 600-0261 600-0561	119 600-0461 600-0361 600-0261 600-056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6670-3411~2	670-3260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620-2218	620-2203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220-2784	220-2790	255-8543
한국도로공사	630-7208	630-7208	
육군제1970부대(505여단)	585-1113	582-4113	

6) 통신사업자간 비상연락망도

KT 충남본부
재해대책상황실
042-478-8299

기관	연락처
SKT	042-220-1842 042-602-7205
KT파워텔	02-2166-0130
SK신세기	042-480-4445
KTF	042-221-4505 042-223-1618
LG텔레콤	019-404-1200 019-404-1201

19. 통신지원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일부지역의 케이블 시설 피해시

○ 피해지역에 무료전화 설치(피해주민 밀집지역에 설치)

○ 휴대폰 가능시 희망가입자에 대하여 착신전환서비스 제공

○ 해당지역의 주요국가기관(우선복구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임시복구 추진

2) 교환기는 정상, 시험실, 통신구 피해시

○ 휴대폰 가능시 희망가입자에 대하여 착신전환서비스 제공

○ 피해지역에 SNG 긴급출동 요청(본사 재해대책상황실로 요청), 긴급통신회선 제공

3) 기지국회선 정상, 유선통신망 피해시

○ KTF, 마케팅부서와 협조하여 보유중인 휴대폰 단말기 지원

○ 희망가입자에 대하여 착신전환서비스 제공

4) 국사내 전체 통신시설 피해로 통신두절시

○ 피해지역에 SNG 긴급출동 요청(본사 재해대책상황실로 요청), 긴급 통신회선 제공

○ 무료전화 설치 지역

- 재해복구기관, 이재민 대피소, 부상자 수송병원, 기타 인구 밀집지역 등

20. 민원접수처리 방안 강구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민원이 예상되는 주요고객 파악

○ 행정기관(국가안보, 군사치안, 민방위 및 기타 행정기관)

○ 타사업자(SKT,유니텔,데이컴,온세 등 타 통신사업자)

○ 주요고객(삼성SDS 등 100대고객 및 지역 주요 고객)

○ 일반고객(인터넷 및 일반공중)

2) 긴급복구 가능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지정

○ 피해유형 및 분야별 피해시설의 종류(교환,전송,전력,데이터 등)

○ 투입되는 긴급복구 장비의 분야를 고려, 최단시간내 복구 가능한 가입자회선 등을 검토

○ 총체적인 복구 우선순위, 복구완료 예상시간을 산정한다.

○ 민원 가입자별 복구 우선순위 지정(긴급복구 우선순위표 기준)

- 기관별로 자체 지정한 복구 우선순위와 피해 유형에 따른 유동적 우선순위 지정

3) 민원접수요원 증원

○ 상황발생에 따라 민원접수요원을 긴급 증원 배치(인근국, 본부내 관련업무 전문요원 등)

○ 민원 접수요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상황설명이 가능토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제공

4) 민원 가입자 홍보

○ 정형화된 홍보문으로 민원 가입자에 홍보한다.

○ 대형 민원 우려 가입자에게는 사전 홍보한다.

21. 가입자홍보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가입자홍보 : 가입자와 일반주민을 구분

○ 전용가입자 : 주요고객 => 개별 사전홍보

○ 일반가입자 : 일반전화 및 인터넷가입자 => 일괄 홍보

○ 거주주민 => 가두방송,플래카드 등 일괄 홍보

○ 인접주민 및 일반국민 => TV 등 언론매체 이용 홍보

2) 사전 · 사후 홍보

○ 사전 홍보

- 피해상황 발생에 대한 사과문 형식, 피해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 및 통신이용 방법 제시

○ 사후 홍보

- 긴급복구장비 투입 등 복구사항, 주민들이 인지한 가시적 복구사업, 향후대책 제시로 신뢰회복

3) 상황에 따른 홍보방안

○ 방문 홍보 : 주요기관, 대형 고객에 대하여는 방문 충분할 설명

○ 전화 홍보 : 통신시설 활용 가능시, 접수민원에 대하여 전화 홍보

○ 가두 방송 : 통신시설 활용 불가시 상황발생 초기 및 진행과정 중 필요시

○ 인쇄물배포 : 긴급 필요시 불특정 배포, 사후에는 주요고객 위주로 배포

○ 현수막게시 : 주요 지역에 필요시 게시

4) 언로보도 매체 홍보

○ TV, RADIO, 인터넷방송, 신문 등을 이용한 범사회적 홍보 필요시

○ 언론보도의 특성상 최초 보도자료의 중요성 대두(보도자료는 홍보실을 경유 제공)

22. 고객 피해복구 지원

가. 업무처리 흐름



1) 고객피해 유형 파악

○ 수해로 인한 고객 가옥 침수로 전화기, 구내 단자함 등 침수

○ 대형 화재로 인한 전화기, 통신 단말기 소손

○ 건물 붕괴로 인한 전화기, 통신 단말기 파괴 등

2) 지원방법 검토

○ 수해시

- 침수가옥 양수작업 지원(양수기 및 양수작업 지원)

- 아파트 단자함 건조 및 단말기류 수리 지원
- 가입자 댁내점검 및 무료 특별정비 등

○ 화재, 붕괴시
- 굴삭기 등 복구장비 지원
- 단말기 이전 설치 지원
- 단말기 수리 지원 등

3) 관련기관 협조

○ 가전제품 제작사와 합동 무상수리 추진 협의

○ 필요시 단말기 제작사와 교체 행사 추진

○ 부품교체 정비 및 저가 판매 행사 등

4) 지원활동

○ 통신시설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고객 피해복구 지원활동 추진

○ 이동용 차량 이용 무료 정비센터 운용

○ 지역별 가입자 댁내 무료정비 시행

23. 사후 종합보고

가. 업무처리 흐름



나. 절차 및 행동요령

1) 피해(고장)발생 내역

○ 피해발생 원인 및 경위

2) 주요 조치사항

○ 긴급복구 조치내역

○ 시설보강사항, 홍보내역

3) 문제점분석

○ 피해발생의 구조적 문제점(건물구조, 화재 예방 및 방수시설 등의 시설문제)

○ 피해수습시 절차상 문제점

○ 긴급복구의 운용상 문제점(시설운용, 소통대책, 긴급복구 등)

4) 개선대책 : 각 분야별 작성

5) 주요 민원 처리내역

○ 가입자명, 민원내용, 처리내용

○ 피해변상 등의 조치내역

6) 언론보도 사항

○ TV, RADIO 등 방송매체 : 주요 내용 요약

○ 신문 : 주요 내용 요약(스크랩 내용 첨부)

24. 통신재난 예방사업추진 계획

2005년도 통신재난 예방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단위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01	1,911	1,051	2,093	1,113	2,450
1. 취약선로(가공, 지하) 루트변경	Km	43	893	38	975	42	1,043
2. 주요통신선로 이원화	Km	93	428	109	544	123	654
3. 교량첨가 케이블 이원화	개소	4	120	3	171	6	192
4. 하수암거시설 이전	개소	10	60	6	50	8	64
5. 통신접지보강	개소	942	356	895	353	934	497
6. 저지대국사 이전 및 보강	국	-	-	-	-	-	-
7. 이동용 광단국장치	대	-	-	-	-	-	-
8. 이동용 발전기	대	-	-	-	-	-	-
9. 무인국사 최소화	국소	-	-	-	-	-	-
10. 도서무선 재해취약시설 보강	대	9	54	-	-	-	-
11. 노후국사 점검 및 개수	국소	-	-	-	-	-	-
12. 비내진국사 보강	국	-	-	-	-	-	-
13. 이동용 교환기 확보	대	-	-	-	-	-	-

제 16 장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제 1 절 계획의 의의

○ 고속도로 사고 및 재난위험 발생에 대비한 재난위험시설의 "계획 - 점검 - 조치 -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설물 내구성증진 및 안전성확보

1. 추진방향

2004년도 구축된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 구조물 재난대응체계(시나리오) 및 재난관리시스템(Highway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의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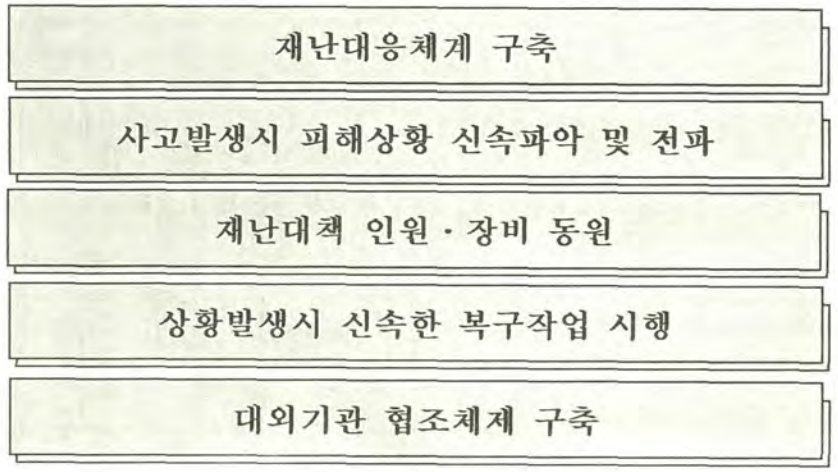

고속도로의 기능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 2 절 재난안전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 재난관리업무의 범위

재난의 정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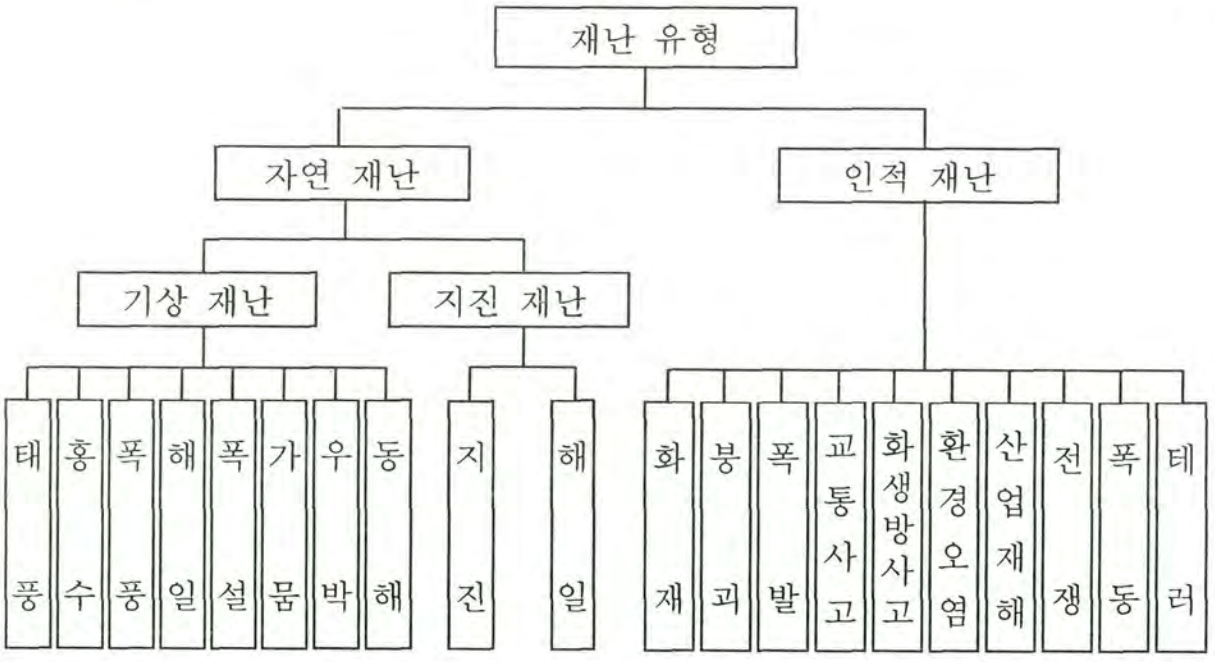

- 평상시 재난관련 대외업무처리와 재난발생시 상황실 운영은 재해 및 재난관리총괄부서에서 시행하고,
- 건설, 도로시설, 교통 등 분야별 재난예방 및 대비 대책수립과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보고 등의 재난대응은 소관업무 주관에서 수행

○ 재난전담조직의 편성 및 임무

-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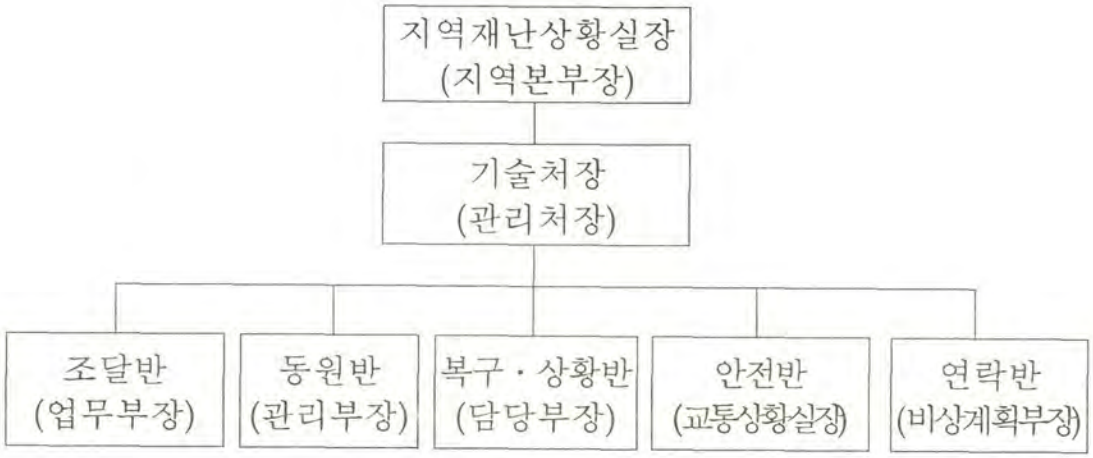

☞ 비상계획부가 없을 경우 복구·상황반에서 연락반 업무 시행

- 임 무

반 별	책임자	임 무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 재해대책(긴급구조) 업무 총괄지휘
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 (관리처장)	· 상황실 운영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피해, 복구상황파악 및 보고
조달반	업무부장	· 자재조달 및 자금조치에 관한 사항
동원반	관리부장	· 인원 및 장비 동원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사상자 구호 및 구호물품 분배 주관
복구·상황반	도로부장	· 재해관련 사고대책 관장
	공사부장	· 소관건설공사 재해사고 대책 관장
	시설부장	· 건축, 시설공사 재해사고대책 관장
	영업부장	· 통행료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에 대한 재해사고 대책 관장
안전반	교통상황실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연락반	비상계획담당부장	· 안전반 지원(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견인 등)

○ 세부추진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교량, 터널	- 정기점검 : 반기 1회 - 정밀점검 : 2년 1회 - 긴급 · 특별점검 : 명절, 휴가철, 우기, 해빙기 등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 완공후 10년경과 1종시설물 (1회/5년) ·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게소, 주유소 (기타 부대시설)	- 정기점검 : 지사(반기1회) 본부(반기 1회) - 수시점검 : 필요시	
건설공사 현장	- 정기점검 : 반기별 시공실태 및 안전점검 - 현장 '안전점검의 날' 시행(매월 4일)	
교통안전관련	- 사고 취약지점 조사 및 관리	

· 관래대상 구조물 현황('04. 11월 기준)

( ) : 1 · 2종 법정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터 널	암거	옹벽	절토면	비 고
계	2,337(366)	951(291)	50	1,311	5	20	
천 안	223(18)	91(18)	-	132	-	-	
대 전	295(52)	134(35)	10	144	1	6	
논 산	275(18)	105(17)	-	169	1	-	
진 천	342(28)	80(26)	2	260	-	-	
영 동	179(35)	84(19)	16	79	-	-	
무 주	389(113)	167(89)	14	198	1	9	
당 진	307(43)	146(40)	2	158	1	-	
보 령	320(52)	137(40)	6	171	1	5	
서해대교관리소	7(7)	7(7)	-	-	-	-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현황

▣ 경부선 부산기점 224.56km 노근육교(서울 · 부산)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정(상태등급 C급)

▣ 영동~김천 사업소 개축교량으로 2005년 8월 교통전환예정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저장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계획사항

1차 : 지역본부 및 지사 자체조사(정기 · 정밀점검) 및 보고

2차 : 본사 조사 및 상태평가

▣ 조사내용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 해제대상

○ 재난예방사업

- 방재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매월 4일)

· 추진내용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 안전의식 고취

- 방재의 날 행사 시행(5월 25일)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 추진내용 :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 · 홍보

○ 자원동원계획(보유장비 현황 등)

- 인원 동원

· 연속작업에 대비한 적정인원 조 편성

· 일용작업원 고용방안 마련

· 비상연락 및 신속동원체제 구축

· 작업투입 전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업무 숙지

- 장비 동원

· 임차장비 확보

· 상시 동원체제 구축

· 연속작업에 대비한 수시점검 및 정비

장비명 / 기관명		총계	덤프트럭	카고트럭	종합장비	도로청소차	트럭트랙터	휠도쟈	휠로우더	휠굴삭기	트랙굴삭기	제설기			염화물살포기			브로워				압설파쇄기	염수플랜트
												소계	덤프용	종합장비용	소계	4㎥	8-11㎥	소계	고속	소형	상차식	2.7m	
			10.5~15톤	8~11톤	Unimog	10㎥	54톤	19톤	1.7㎥	0.6㎥	0.2~0.8㎥												
총 계		142	23	8	4	8	1	-	7	1	-	36	29	7	45	-	45	-	-	-	-	-	8
충청	대전	19	3	1		1	1		1		1	3	3		7		7						1
	천안	21	4	1	1	1			1			5	4	1	7		7						1
	논산	14	3	1		1			1			3	3		4		4						1
	진천	17	3	1	1	1			1			5	4	1	4		4						1
	영동	19	3	1	1	1			1			6	4	2	5		5						1
	무주	18	2	1	1	1				1		5	3	2	6		6						1
	당진	17	2	1		1			1			4	4		7		7						1
	보령	15	2	1		1			1			4	4		5		5						1
	서해대교	2	1									1		1									16

[장비 동원 현황]

- 상호지원체제

· 1차 : 지역본부내 지사간 협조

· 2차 : 타지역본부간 협조

· 3차 : 민·관·군 협조

기 관 명	동 원 가 능 내 역						전화번호	소 재 지
	인원	장비 (차량)	식량 대용	생수	담요	기타		
【천안지사】								
신성종합중기	15	15					(041) 567-3500	천안시
62사단	100	5	건빵등				867-9113	연기군
1공중강습여단	100	5	건빵등				867-6113	〃
부자건설중기	10	10					(043) 269-0482	청주시
공군제3629부대	100	17	건빵등		100		210-3115	〃
【대전지사】								
32사단	100		빵류	20BOX	100		(042) 829-6119	충남 연기군
충남소방안전본부							220-3711	대전 둔산동
대전시 소방본부	30				400		600-5140	〃
대한적십자사	80	급식차	200인분	1000	200		254-7101	대전 선화동
비하동 크레인		휠로우더 외					(043) 235-7378	
반석크레인		크레인외					(011) 459-8253	
【논산지사】								
유성구청	20						(042) 865-2265	대전 유성구
대덕구청	20						620-6114	대전 대덕구
계룡시청	20						(041) 840-2114	충남 계룡시
논산시청	20						730-1419	충남 논산시
익산시청	20						(063) 840-3114	전북 익산시
논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5						(041) 735-3689	충남 논산시
육군제3585부대	50						741-5652	〃
논산 제2훈련소	50						741-9024	〃

기 관 명	동 원 가 능 내 역						전화번호	소 재 지
	인원	장비 (차량)	식량 대용	생수	담요	기타		
【진천지사】								
37사단	500						(043) 836-4496	충북 증 평
67사단	100						867-6205	〃
충북소방본부							276-2119	충북 청 주
대한적십자사	50		100인분	1,000	100		253-2651	〃
충북지방경찰청	400						252-7113	〃
청주서부소방서	20						236-1196	〃
증평소방서	10						838-5119	충북 증 평
진천군		2			50	30	533-1100	충북 진 천
【영동지사】								
영동-김천 2공구시행사	50	5	200	2,000			(043) 742-8912	충북 영동군
37사단 11연대 2대대	100	3			50		743-8113	〃
【무주지사】								
35사단 103연대 4대대	100	10	건빵등		100		(063) 322-1113	전북 무주군
안성종합중기	10	10					323-1357	〃
【당진지사】								
당진 포장중기	10	5					(041) 352-1238	당진 당진읍
해미 공군부대	50	(5)	건빵등		100		689-3525	서산 해미면

[유관기관별 지원가능 품목현황]

나. 재난수습대책

○ 수습체계도(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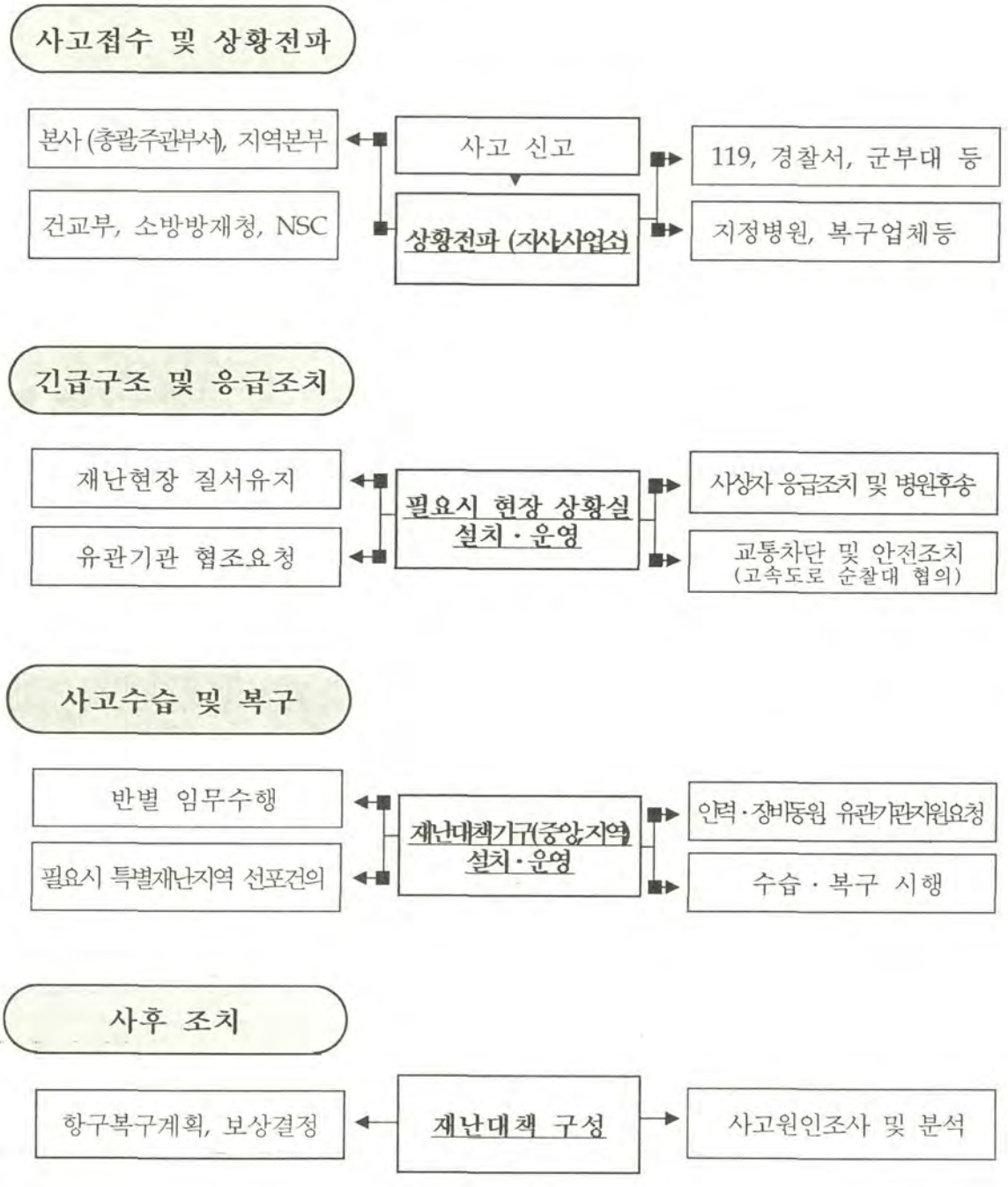

○ 비상연락 체계도(유관기관 · 단체)

- 유관기관 협의

· 협의시기: 매년 4, 10월 풍수해 및 월동대책 수립시

· 유관기관 협의 및 비상연락체제

유관기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2) 3707-9953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32) 427-0182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42) 600-3723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62) 606-3841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53) 429-384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52) 229-382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51) 888-417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31) 249-3653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33) 249-364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43) 220-4542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42) 220-364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63) 280-3642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62) 607-498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53) 950-3643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55) 211-4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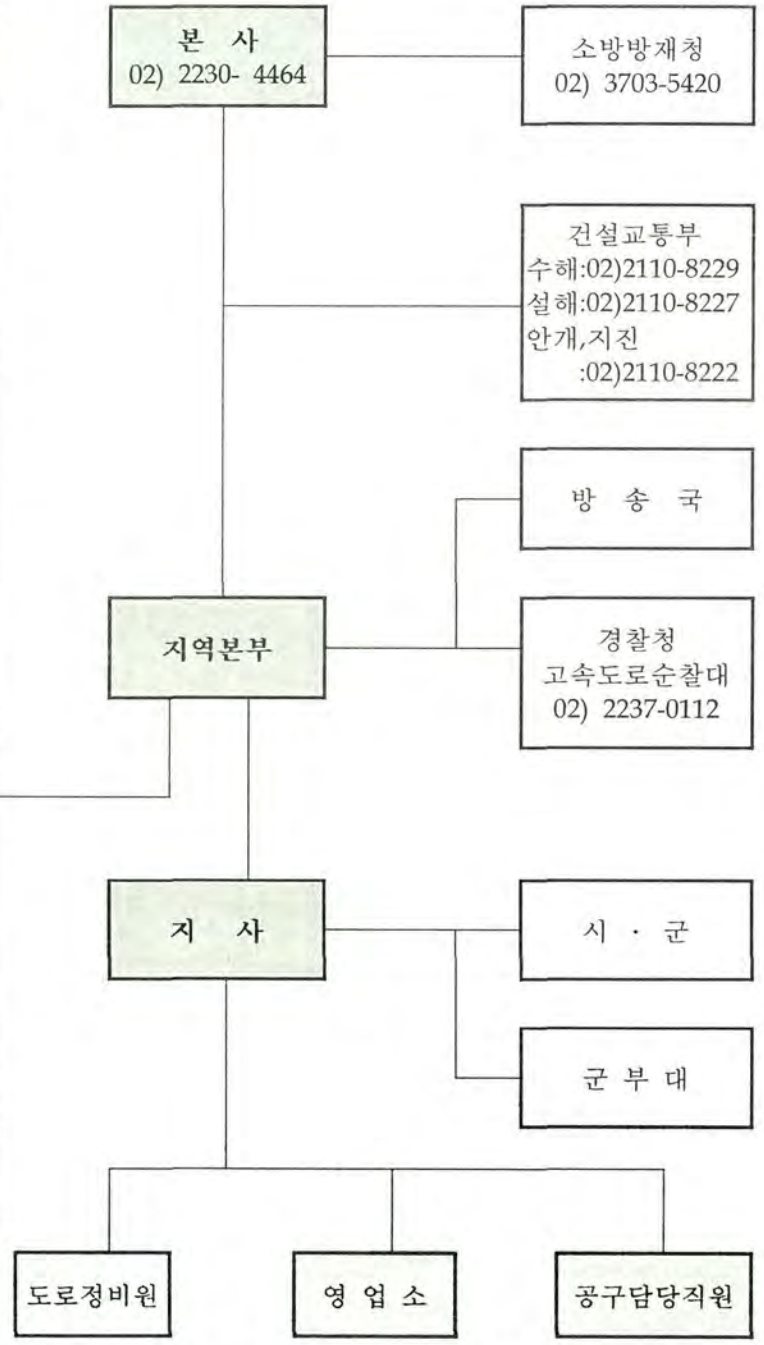

· 협의내용

▣ 방재계획에 관한 상호협의

▣ 인원 및 장비의 상호지원

▣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관한 홍보 및 전파

▣ 기타 상호협조사항

- 유관기관 현황

· 시·도,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및 관내 지자체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천안	청주시청	043-269-8269	
	천안시청	041-550-2434	
	안성시청	031-678-2429	
	청원군청	043-251-3481	
대전	대전광역시청	042-600-2713	
	청원군청	043-251-3481	
	청주시청	043-269-8269	
	중구청	042-606-6812	
	대덕구청	042-620-6497	
	동구청	042-250-1497	
논산	계룡시청	042-840-2114	
	익산시청	063-840-3114	
	논산시청	041-730-1114	
진천	안성시청	031-678-2164	
	음성군청	043-871-3482	
	청주시청	043-220-6400	
영동	영동군청	043-740-3513	
	옥천군청	043-730-3489	
무주	동구청	042-250-1265	
	무주군청	063-320-2445	
	금산군청	041-752-4599	
당진	평택시청	032-610-8487	
	당진군청	041-350-3643	
	서산시청	041-660-3484	
	홍성군청	041-630-1481	
보령	보령시청	041-930-3453	
	서천군청	041-950-4114	
	홍성군청	041-630-1114	

· 인근 도로관리청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대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214	
논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114	
무주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063-625-2901	

· 경찰서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천안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033-740-3832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033-333-1113	
	천안경찰서	041-621-4979	
대전	대전동부경찰서	042627-6629	
	대전중부경찰서	042-257-9443	
논산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061-392-3488	
	논산경찰서	041-736-0112	
진천	진천경찰서	043-532-0112	
영동	영동경찰서	043-744-0112	
	옥천경찰서	043-732-0112	
무주	무주경찰서	063-322-0112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055-963-3407	
	금산경찰서	041-751-0112	
	장수경찰서	063-351-0112	
당진	당진경찰서	041-352-0112	
	평택경찰서	031-618-7111	
보령	보령경찰서	041-931-0112	
	군산경찰서	063-443-0112	

· 군부대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천안	공군3629부대	033-336-0119	
대전	충남경찰항공대	042-582-8054	
논산	육군3585부대	041-741-5652	
	육군훈련소	041-740-7750	
진천	육군 37사단	043-836-4496	
영동	육군제2201부대 2대대	043-743-8113	
무주	7733부대 4대대	063-322-1113	
당진	해미공군부대	033-740-3832	
	육군 제1789부대	033-333-1113	
	119소방항공대	033-335-7119	
보령	제8361부대	041-936-0173	

· 소방서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천안	천안소방서	033-335-7119	
	청주소방서	043-213-8119	
	안성소방서	033-665-3119	
대전	대전동부소방서	042-602-0482	
논산	논산소방서	041-736-8119	
진천	안성소방서 죽산파출소	031-676-6119	
	음성소방서 대소파출소	043-881-7119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043-532-2119	
	증평소방서 중앙파출소	043-836-4119	
	청주 서부소방서	043-236-1196	
영동	영동소방서	043-745-1119	
	영동소방서 옥천소방파출소	043-731-0119	
무주	무진장소방서	063-353-5119	
	무주소방파출소	063-322-2121	
	금산소방서	041-751-0119	

· 병원 등 기타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천안	단국대병원	041-550-6840	
	천안지부	042-576-2266	
	신광일중기	041-561-2580	
	한국전력 천안지사	041-560-2114	
	한국가스안전공사	041-561-0019	
	한국통신 천안지부	041-567-0060	
대전	청주하나병원	043-233-3300	
	대전중앙병원	042-670-5114	
	대전,충남지사	042-254-7101	
	유신특수	042-932-7005	
	대원크레인	042-624-3505	
	한국전력 충남지사	042-620-2114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무소	042-621-9242	
	한국통신 용전전화국	042-630-1166	
논산	건양대학(대전)	042-600-9114	
	백제병원(논산)	041-733-2191	
	대전.충남지사	042-254-7101	
	백제중기	041-742-1110	
	황산중기	041-736-9980	
	한국전력전북지사	063-240-5114	
	한국전력충남지사	042-620-2236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논산시 수도사업소	041-730-1564	
	KT충남본부	042-485-7221	
	KT전북본부	063-259-0156	
	국제크레인 추레라	041-735-7774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진천	진천서울정형외과	043-533-0727	
	충북지사	043-253-2651	
	음성 제일크레인	043-883-4040	
	진천 상산크레인	043-532-9900	
	청주 청주특수	043-233-1001	
	음성 광혜원지게차	043-535-6173	
	진천 영광지게차	043-534-1035	
	청주 충청지게차	043-235-2711	
	한국전력 진천지점	043-539-2241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지사	043-211-3851	
	진천군청 건설과	043-539-3119	
	한국통신 진천지부	043-532-2300	
영동	옥천성모병원	043-733-7000	
	우리병원	043-745-0130	
	영동서정형외과	043-731-8090	
	충북지사	043-253-2651	
	금강레카	043-732-4646	
	금성공업사	043-732-4444	
	영동중기	043-743-4900	
	한국전력 영동지점	043-742-2231	
	한국가스안전공사	043-268-0019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043-740-3761	
	한국통신 영동전화국	043-740-1166	
무주	제35사단 103연대 4대대	063-322-1113	
	금산을지대학병원	041-752-8883	
	무주정형외과	063-322-6077-9	
	장수의료원	063-351-8010	
	대전충남지사	042-254-7101	
	전북지사	063-280-5800	
	산내카센타	042-274-8662	
	25시카센타	063-322-5532	
	제원카센타	041-752-1240	
	금산공업사	041-754-9966	
	대한카센타	041-754-9908	

지사	유관기관	연 락 처	비 고
무주	한국전력 충남지사	042-620-2114	
	한국전력 함양지점	055-960-2268	
	한국전력 장수지점	063-350-3200	
	한국전력 무주지점	063-320-3269	
	한국전력 금산지점	041-750-3243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1-7611	
	대전동부 상수도사업소 무주상수도사업소	042-672-0117 063-320-2522	
	한국통신동대전지점	042-282-1200	
	한국통신금산지점	041-752-0200	
	한국통신무주지점	063-322-0060	
	한국통신장수지점	063-351-0200	
당진	홍성의료원	041-630-6114	
	대한적십자사(당진지구)	041-356-9504	
	당진포장중기	041-352-1238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	041-350-2114	
	한국가스안전공사	041-561-0019	
	서산시 수도사업소	041-660-2521	
	한국통신 당진지부	041-352-1200	
보령	보령시 아산병원	041-930-5110	
	서해병원(서천군)	041-951-8282	
	군산의료원	063-441-1114	
	대전 · 충남지사	042-254-7101	
	보령 크레인	041-936-7697	
	장항 크레인	041-956-3392	
	한국전력 보령지점	041-930-7242	
	전기안전공사 보령지사	041-936-9891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041-561-1654	
	서천상수도사업소	041-953-1913	
	보령시 수도사업소	041-932-3026	
	KT 보령지점	041-931-1166	
	KT 서천지점	041-951-1167	

○ 응급조치계획(초동조치요령 등)

▣ 최초 발견자가 응급조치 및 사고 신고(연락)를 한다.

◈ 사고 발견자가 응급조치 구명 4단계에 의거 응급조치를 한다.

◈ 신속히 119구급대 및 관할기관에 연락한다.

◈ 구급 및 구난 조치전까지 사상자를 대피시킨다.

응급처치자의 준수사항

◎ 응급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 환자를 위한 입장에서 응급처치 수행
◎ 응급처치로만 그치고 전문 의료원에게 맡긴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① ***지 혈***
천이나 옷으로 지혈을 시킨다.

② ***기도유지***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하여 구강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환자의 턱을 올려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③ ***상처의 보호***
거즈나 붕대, 소독된 재료 등으로 소독한다.

④ ***쇼크의 방지 및 치료***
환자를 바로 눕히고 기도 확보 및 체온을 유지하며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조치를 한다. 음료수나 물은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사고현장으로 긴급출동팀이 급파된다.

◈ 119 구급대, 경찰서, 군인 등 긴급구조대 및 소방인력이 급파된다.

◈ 현장주변 통제 및 교통로를 확보한다.

◈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출동팀이 급파된다.

긴급출동팀 임무

◎ 사상자를 최소화 하도록 단계별로 행동한다.

① 모든 상황을 정확히 숙지

② 사고현장을 파악하여 추가요청 여부판단

③ 중증도 분류시행

- 현장에 위험이 없는 경우 :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적색분류)부터
- 현장이 위험한 경우 : 경상자부터 우선 안전지대로 대피

④ 긴급출동팀의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추가 출동팀이 도착할때까지 활동중지

◎ 긴급출동팀과 추가 출동팀 합동하여 체계적으로 행동한다.

① 업무수행의 우선순위 결정

② 사상자들을 안전지대로 이송

③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 일차적인 재난·재해 완전제압

④ 주변 위험요소 탐지 및 제거

⑤ 사상자들을 재차 탐색

- 훈련된 수색견
- 음성확인 장비동원
- 산업용 내시경
- 무인 촬영기 등을 활용하여 탐색한다.

⑥ 구출된 부상자로부터 재난·재해 현장 정보입수

⑦ 환자를 응급의료소로 이송

▣ **사고 유형별로 긴급조치 시행하여 최단시간내에 교통소통을 목표로 한다.**

◈ 사고 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긴급복구 및 구조 등 상황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한다.

◈ 계획된 우회도로 이용 및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 필요시 인근 행정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 사고현장의 위치도 및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한다.

비탈면 붕괴사고

◎ 인명피해 발생시 사상자를 응급 처치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 전후구간을 신속히 교통을 차단하고 우회도로 안내 및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 초기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을 긴급 투입한다.

◎ 필요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조속히 피해구간을 수습한다.

◎ 강우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2차 피해를 우려 긴급조치를 취한다.

◎ 긴급조치 후 항구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폭설로 인한 이용자 고립사고

◎ 지속적인 폭설로 인해 이용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정시간 이상 교통차단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전후구간 교통을 차단한다.

◎ 고립자 우회소통을 위한 중분대 오픈, 인근IC 우회 등 필요조치를 시행한다.

◎ 장시간 후에 소통이 예상될 때 구호물품 전달 등 고립자를 위한 구호활동을 시행한다.

◎ 원활한 제설장비 투입을 위해 갓길 정차를 통제하고 정차차량을 구난 한다.

◎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동원가능한 인원과 장비 투입으로 최단시간 내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시행한다.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 사상자를 응급 처치한 후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시킨다.
◎ 필요시 우회도로 안내 및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 구급차, 복구차량 출입이 용이하도록 구간통제 및 차량 우회를 유도한다.
◎ 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파한다.
◎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고지역의 경찰 통제선을 확보하고, 응급구조 활동이 전개되는 시점까지 후송통로를 조정한다.
◎ 가스,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제거한다.
◎ 유류(휘발유, 벙커C유) 등의 누출여부를 탐지하고 제거작업을 한다.

지진 사고

◎ 사상자를 응급 처치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 교량붕괴등 도로유실시 신속히 교통을 차단하고 우회도로 안내 및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 붕괴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원을 대피시킨다
◎ 초동대응 인력을 위한 긴급차량을 지원한다.
◎ 현장 대응 종사자에게 붕괴물의 위험요소를 전달한다.
◎ 추가붕괴, 가스폭발, 전기안전, 인화성 물질의 발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즉시 제거한다.
◎ 잔여자 파악 및 예상 매몰지역을 집중 수색한다.

[인력 및 장비동원]
◎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신속히 인력을 투입한다.
◎ 가용가능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추가 장비를 지원한다.
[우회도로]
◎ 계획된 우회도로 안내 및 현장에 안내간판 설치, 우회도로로 교통을 유도하고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우회도로 개설시 긴급복구 장비를 동원한다

○ 수습 및 복구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반별 임무)

· 풍수해

▣ 단계별 근무기준

단계	기 상 상 황	근무체제	근 무 요 령
1	○호우주의보 발령시	○본부 수해대책반 3명 ○지사 수해대책반 3명 ○사업소 수해대책반 1명	【일일상황】 ○ 강우 및 교통상황 보고 : 05:30,07:30,10:30,13:30,16:30,21:30 【특별상황】 ○ 피해내용 포함 강우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2	○태풍주의보 발령시	○본부 수해대책반 4명 ○지사 수해대책반 3명 작업반1/3근무 ○사업소 수해대책반 2명	【일일상황】 ○ 강우 및 교통상황 보고 : 05:30,07:30,10:30,13:30,16:30,21:30 【특별상황】 ○ 피해내용 포함 강우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필요시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3-1	○호우경보 발령시 ○태풍경보 발령시	○본부 수해대책반 8명 ○지사(사업소) 수해대책반 7명 작업반1/2근무 (필요시전원근무) ○사업소 수해대책반 6명	【일일상황】 ○ 강우 및 교통상황 보고 : 05:30,07:30,10:30,13:30,16:30,21:30 【특별상황】 ○ 피해내용 포함 강우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 필요시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 필요시 재해대책기구 편성
3-2	【지역본부】 재난 피해발생으로 일방향 4시간, 양방향 2시간 이상 전면차단예상시 또는 10명~20명미만 사망자 발생시	○본부 재난대책기구 편성 - 5개반 운영	【일일상황】 ○ 강우 및 교통상황 보고 : 05:30,07:30,10:30,13:30,16:30,21:30 【특별상황】 ○ 피해내용 포함 강우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유관기관 지원요청 ☞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 신속한 구호 구난활동 전개
	【지사 및 사업소】 재난 피해발생으로 일방향 4시간, 양방향 2시간 미만 전면차단예상시 또는 10명미만 사망자 발생시	○지사 및 사업소 재난대책기구 편성 - 3개반 운영	

▣ 기구표(1, 2, 3-1단계)



구 분	주요작업 내용	비 고
수해대책반장	· 고속도로 도로, 교통, 홍보 영업상황 총 관리 · 재난대책기구 운영여부 판단	
상황반	· 피해발생, 진행결과 등 상황의 종합정리 및 보고 · 풍수해 복구에 대한 대·내외 보고 · 강우량 측정 및 상황일지 작성 등	
안전반	·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조치보고 (교통제한 및 우회도로 등) · 특별수송대책의 수립, 시행 · 기타 교통에 관련한 사항	
홍보반	· 대외 보도, 홍보 등 관련사항 · 대주민 홍보활동 ·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지원반	· 고속도로 통행료 사항 · 구호활동 주관 · 영업소 및 휴게소 상황 정리 · 기타 영업에 관한 사항	

▣ 기구표(3-2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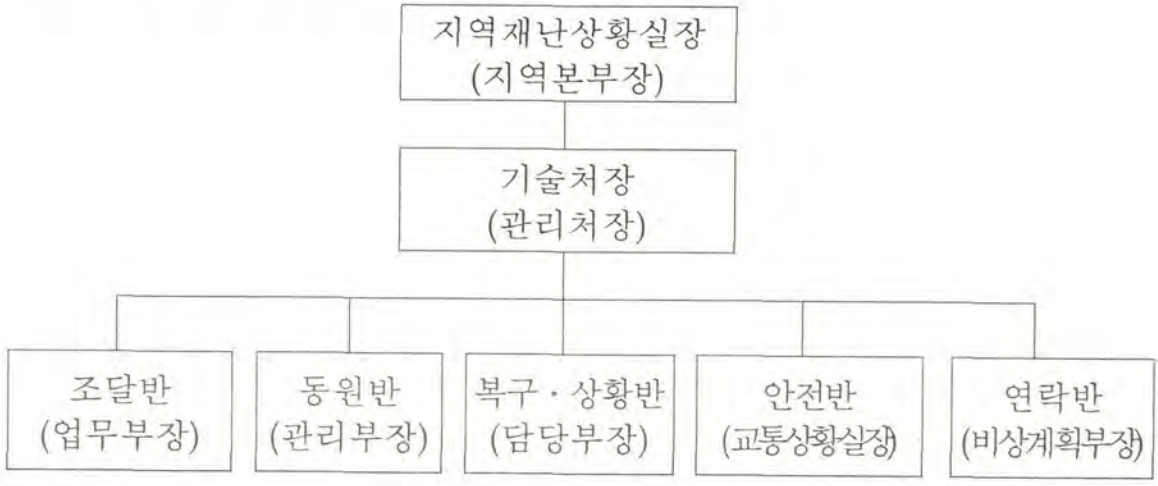

☞ 비상계획부가 없을 경우 복구·상황반에서 연락반 업무 시행

반 별	책임자	임 무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 재난대책(긴급구조) 업무 총괄지휘
지역재난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 (관리처장)	· 상황실 운영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피해, 복구상황파악 및 보고
조달반	업무부장	· 자재조달 및 자금조치에 관한 사항
동원반	관리부장	· 인원 및 장비 동원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사상자 구호 및 구호물품 분배 주관
복구·상황반	도로부장	· 재난관련 사고대책 관장
	공사부장	· 소관건설공사 재난사고 대책 관장
	시설부장	· 건축, 시설공사 재난사고대책 관장
	영업부장	· 통행료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에 대한 재해사고 대책 관장
안전반	교통상황실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연락반	비상계획담당부장	· 안전반 지원(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견인 등)

· 설 해

▣ 단계별 근무기준

단계	기 상 상 황	근무체제	근 무 요 령
1	○중부지역본부 관내 적설량 3cm 내외 예상시 ○기타지역본부 10cm 미만 예상시	○본부 제설대책반 3명 ○지사 제설대책반 3명	【일일상황】 ○ 제설 및 교통상황 보고 - 06:00기준 6:30까지 【특별상황】 ○ 교통통제내용 포함 제설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2	○중부지역본부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기타지역본부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본부 제설대책반 5명 ○지사 제설대책반 5명 작업반1/2근무	【일일상황】 ○ 제설 및 교통상황 보고 - 보고시간 : 06:30, 15:00, 19:00 【특별상황】 ○ 교통통제내용 포함 제설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필요시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3-1	○중부지역본부 관내 대설경보 발령시 ○기타지역본부 관내 대설경보 발령시	○본부 제설대책반 8명 ○지사 제설대책반 7명 작업반전원근무 (2일연속강우시교대근무)	【일일상황】 ○ 제설 및 교통상황 보고 - 보고시간 : 06:30, 15:00, 19:00 【특별상황】 ○ 교통통제내용 포함 제설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 필요시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3-2	【지역본부】 재난 피해발생으로 일방향 4시간, 양방향 2시간 이상 전면차단예상시 또는 10명~20명미만 사망자 발생시	○본부 재난대책기구 편성 - 5개반 운영	【일일상황】 ○ 제설 및 교통상황 보고 - 보고시간 : 06:30, 15:00, 19:00 【특별상황】 ○ 교통통제내용 포함 제설 및 교통상황 즉시보고 후 매2시간 보고 ☞ 방송국 등 언론 매체 홍보 ☞ 유관기관 지원요청 ☞ 지역(지사)간 장비 및 인원지원 ☞ 신속한 구호 구난활동 전개
	【지사】 재난 피해발생으로 일방향 4시간, 양방향 2시간 미만 전면차단예상시 또는 10명미만 사망자 발생시	○지사 재난대책기구 편성 - 3개반 운영	

▣ 기구표(1, 2, 3-1단계)



구 분	주요작업 내용	비 고
제설대책반장	· 고속도로 도로, 교통, 홍보 영업상황 총 관리 · 재난대책기구 운영여부 판단	
상황반	· 피해발생, 진행결과 등 상황의 종합정리 및 보고 · 설해 복구에 대한 대·내외 보고 · 강설량 측정 및 상황일지 작성 등	
안전반	·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조치보고 (교통제한 및 우회도로 등) · 특별수송대책의 수립, 시행 · 기타 교통에 관련한 사항	
홍보반	· 대외 보도, 홍보 등 관련사항 · 대주민 홍보활동 ·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지원반	· 고속도로 통행료 사항 · 구호활동 주관 · 영업소 및 휴게소 상황 정리 · 기타 영업에 관한 사항	

▣ 기구표(3-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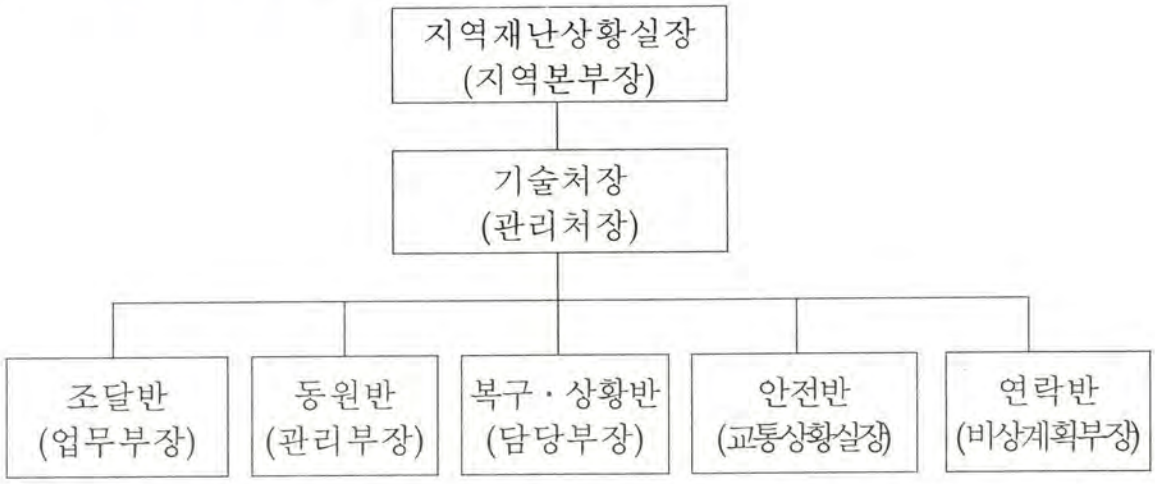

☞ 비상계획부가 없을 경우 복구·상황반에서 연락반 업무 시행

반 별	책임자	임 무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 재해대책(긴급구조) 업무 총괄지휘
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 (관리처장)	· 상황실 운영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피해, 복구상황파악 및 보고
조달반	업무부장	· 자재조달 및 자금조치에 관한 사항
동원반	관리부장	· 인원 및 장비 동원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사상자 구호 및 구호물품 분배 주관
복구·상황반	도로부장	· 재해관련 사고대책 관장
	공사부장	· 소관건설공사 재해사고 대책 관장
	시설부장	· 건축, 시설공사 재해사고대책 관장
	영업부장	· 통행료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에 대한 재해사고 대책 관장
안전반	교통상황실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연락반	비상계획담당부장	· 안전반 지원(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견인 등)

- 단계별 조치 등

가. 재난대책 단계별 피해범위에 따라 재난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각 해당부서는 근무요원을 사전에 지정·운영한다.

◈ 반별 임무와 역할은 매뉴얼에 의거 시행한다.

재난대책기구 설치·운영

◎ 체계도 : 재난관리 체계 참조

◎ 설치시기 : 2단계 이상의 사고발생시

◎ 운 영 : 사고단계별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 3단계사고 : 중앙 및 지역재난 대책기구 설치운영
- 2단계사고 : 지역재난 대책기구 설치운영

※필요시 1단계 피해범위내에서도 지사, 사업소는 설치운영 가능

재난대책기구의 역할

□ 재난상황실장

◎ 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재난상황실 가동 및 해체 결정

◎ 사상자 수습대책 수립

□ 본부지휘단장, 복구대장

◎ 관할 지역본부장, 지사장, 건설사업소장이 사고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

◎ 본사 부서에 행정 및 재정상 조치나 기타 필요한 사항 업무협조 요청

◎ 사고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사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

나. 사고수습 추진상황을 취합하고 작성한다.

◈ 사고발생 개요
◈ 응급조치 및 수습조치 내용
◈ 일자별 사고수습 대책 추진상황
◈ 사후 수습 상황 등

다.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한다.

◈ 직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인력을 동원한다.
◈ 응급복구 및 수습장비를 동원한다.
◈ 자원봉사자와 특수단체에 지원요청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

자원동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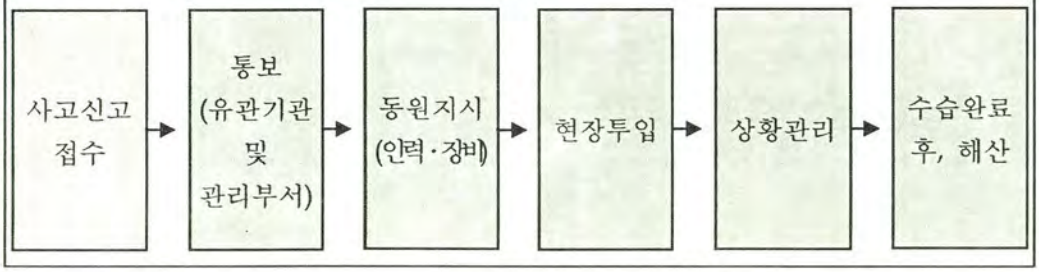

소관별 조치사항

[사고관련 부서]

◎ 사고유형별, 규모별, 인력 · 장비 · 시설 · 물자소요량 판단
◎ 응급조치와 함께 관리부서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
◎ 자체 부족자원에 대한 유관기관(단체 등) 협조지원 체제 구축

[자원관리 부서]

◎ 인적 · 물적자원을 유사시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파악 관리
◎ 사고발생시 활용가능 자원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
◎ 수습 주관부서에서 협조 요청시 즉시 지원

필요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대상

◎ 대규모 재해·재난사고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해·재난
- 중앙재난상황실장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재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 당해 시·도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 정부차원의 행정, 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난을 수습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업소의 재정적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피해보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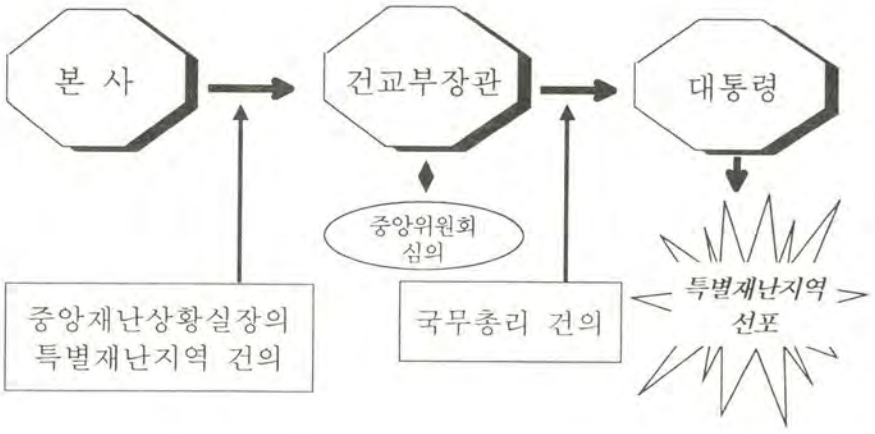

다. 투자계획(재난예방 및 수습관련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		5,851,000	5,751,000	16,192,000	14,011,000	16,000,000	17,000,000	18,000,000	
일상보수 및 제설작업	절토면,옹벽,교량, 터널 보수 및 제설	2,828,000	2,501,000	4,207,000	3,583,000	4,000,000	4,500,000	5,000,000	
구조물(교량,터널 및 암거) 보강 및 개축	구조물 개축·보강	3,023,000	3,250,000	11,985,000	10,428,000	12,000,000	12,500,000	13,000,000	

제 17 장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이 계획은 2005년도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가 시행할 각종 구호사업의 기준을 정하여 구호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이 계획은 국제 적십자 재난구호원칙과 규정, 대한적십자사 구호운영규정과 2005년도 사업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운동으로 추진 중인 인도주의의 힘(power of humanity)을 활용하여 취약한 계층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 2010」의 4대 핵심사업 가운데 재난응답과 재난대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법률적 근거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재해 구호법에구호기관으로 지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3.11. 공포·시행)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으로 규정되어 재난 시 인도주의 적십자 구호활동을 실시한다.

3. 기본방침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은 재난구호, 일반구호, 특수구호, 국제구호로 분류한다.(구호운영규정 제3조).

○ 재난구호는 타 구호에 우선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한다.(구호운영 규정 제2조)

○ 적십자사는 종합구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을 당한 모든 사람을 구호하며 최우선은 인명보호에 둔다(인도적 구호)

○ 적십자사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비축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한다.(긴급구호 우선). 적십자의 구호는 정부구호사업의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며, 정부의 구호업무 협조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구호업무의 위탁)

○ 이재민에 대한 적십자의 구호는 무상이어야 하며(무상구호), 국적, 종교, 인종, 계급 및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구호 한다(공평한 구호).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일반구호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긴급 재난구호 잉여자원은 일반구호에 전용 할 수 있다.

○ 재난시의 구호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상시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구호훈련에 참여하고, 적십자의 각종 기능과 봉사조직 그리고 유관기관이 포함된 재난 구호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에 준비하여야 한다.

4. 구호활동

가. 구호활동 범위(대한적십자사 구호운영규정 제4조)

종합구호	구호물자 지급	(참여)	
	이재민 고통경감	←	적십자의 각종 기능과 봉사원
	재기의욕 고취	← (협조)	정부구호 관련기관과의 협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구호활동 협조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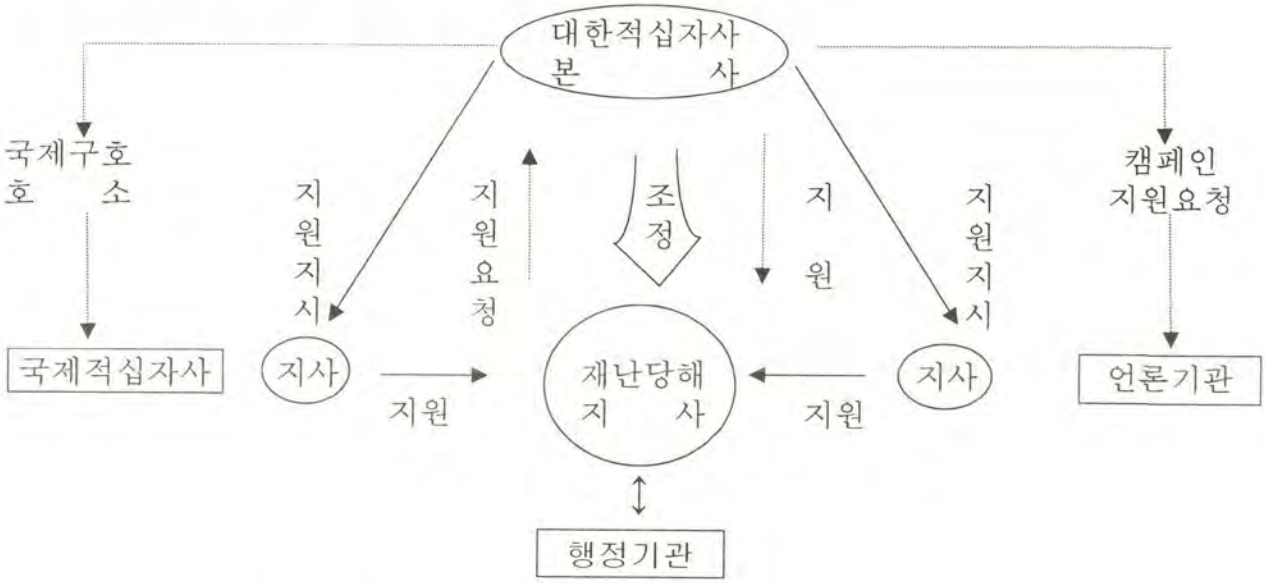

다. 재난구호 활동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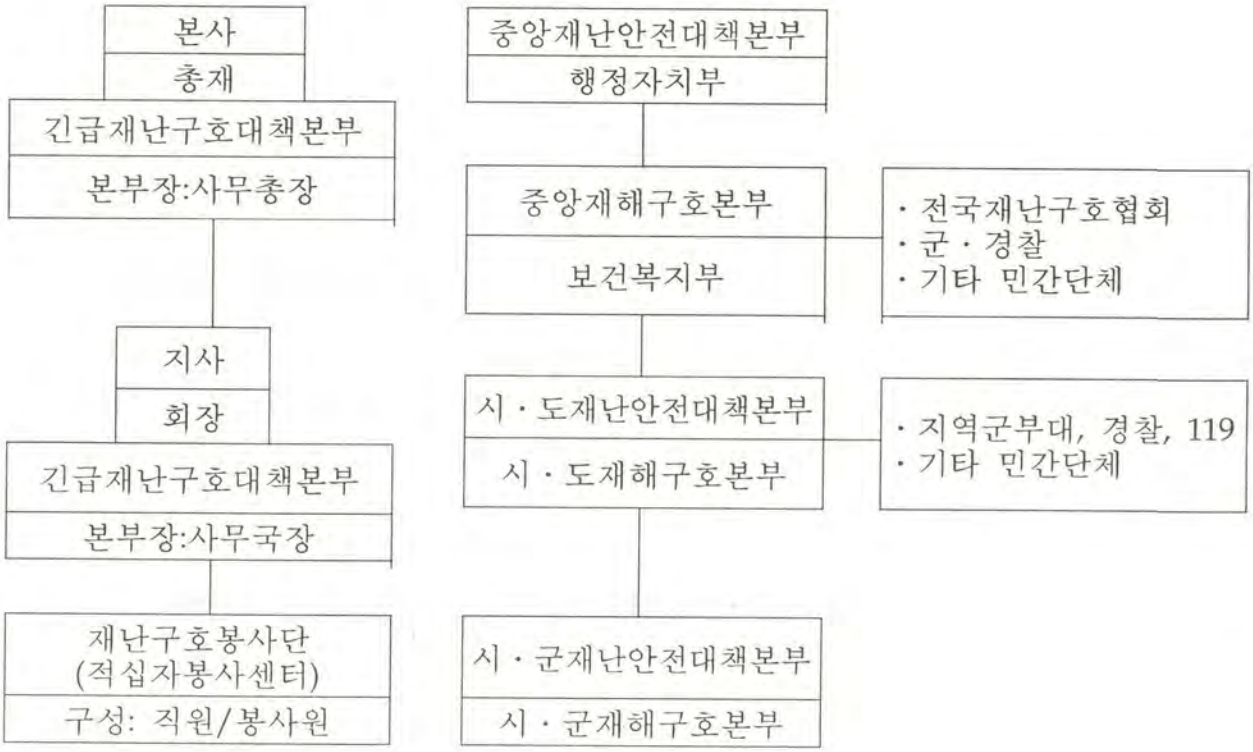

※ 설치 및 운영근거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 구호운영규정 제 13조

· 재난구호봉사단 : 구호운영규정 제 14조

라.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 착안점

- 최근 5년간의 재난발생 현황, 구호실적 등을 분석·검토하여 재난대책 수립(부족한 자원 보충 및 복구활동계획 포함)
- 재난구호 비축물자 관리계획 및 가용예산의 판단
- 구호요원(재난구호봉사단 포함) 동원 및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긴급대처능력 및 구호역량 제고를 위한 구호훈련 실시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방안
- 구호소설치에 따른 구호품 전달, 구호급식, 응급의료, 심리적안정 등 운영계획

5. 「전략2010」에 따른 구호계획 수립

가. 재난구호

1) 재난대비(Disaster Preparedness)

중 점 사 항	주 요 착 안 점
구호물자 확보 및 분산비축	○ 적정량의 물자를 연도 초에 확보(단,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자는 소요계획에 따라 확보) ○ 재난위험지역 및 다발지역 - 충남지역 15개시·군 (재난구호물자 분산 비축현황 참조 P. 25) ○ 물자관리 - 품목별 제작 연도별 보관, 선입선출 지급, 일정량을 세대단위 지급 분으로 포장 보관 ○ 창고관리 - 통풍시설, 방수, 방습, 방서, 방화, 도난 방지, 소독 및 청결 유지
구호물자 접수 및 분배 구호물자 보급 및 수송 구호장비 확보 및 정비	○ 구호물품 접수·배분대장 상시 비치 및 봉사원 교육 실시 (재난구호훈련 및 재난구호봉사단 교육) ○ 재난발생 즉시 수송할 수 있는 체제유지 ○ 긴급 시 즉시 출동 - 장비확보, 점검 및 정비 ○ 구호장비(급식차량, 무선장비, 발전기 등) 관리 철저
구호요원 지휘통제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종합보고	○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 아마추어무선봉사회 비상통신망 확보 ○ 상황보고 양식에 의한 재난구호상황의 보고 (본사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점 사 항	주 요 착 안 점
재난구호 종합훈련	○ 재난구호 대비태세 점검 및 구호능력 제고 ○ 권역별 협조기관의 봉사조직 및 장비동원 ○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방화, 방역, 헬기동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사전 협조체제 유지 ○ 실제상황을 가상한 재난구호 종합훈련 참여 (유관기관 합동 구조훈련 포함 연1회 이상) ▶ 수도권 재난구호종합훈련 - 시기 : 2005년 5월중 - 주관 : 경남지사 - 참여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지사 자체 봉사원 재난구호교육 실시 - 기타 각종 연수 및 교육시 수시교육 실시
재난구호봉사원(단)교육훈련 및 비상통신 훈련(아마추어무선봉사회)	▶ 재난구호봉사원교육 가. 재난구호 일반과정 ○ 교육목적 - 집단구호의 개념 정립 - 구호활동의 체계화 및 효율화 - 봉사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 주 관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 일 시 : 2005년도 4월 ○ 장 소 : 청양샬레호텔 ○ 대 상 : 봉사원 60명 ○ 교과목 : 재난개론, 집단구호, 재난과 건강, 모의상황실습 나. 재난구호 상급과정 ○ 교육목적 일반봉사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집단구호 관리자 육성 ○ 주 최 : 대한적십자사 본사 ○ 일 시 : 미정 ○ 장 소 : 미정 ○ 대 상 : 일반과정을 이수한 재난구호요원 ▶ 재난구호봉사단 훈련 ○ 주 최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각 지구협의회 ○ 일 시 : 2005년 6월중 ○ 장 소 : 미 정(충청남도 관내) ○ 대 상 : 대전·충남지사 각 지구협의회 봉사원

중 점 사 항	주 요 착 안 점
재난구호봉사원(단)교육훈련 및 비상통신 훈련(아마추어무선봉사회)	○ 주요내용 : 재난구호절차에 따른 이재민구호 수행 능력 점검 ▶ 아마추어무선봉사협의회 비상통신훈련(공개운용) ○ 목 적 - 재난대비 비상통신망 확보를 통환 효율적인 재난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 주 최 : 대전·충남지사 아마추어무선봉사협의회 ○ 일 시 : 연2회 (2005. 5월 및 10월) ○ 장 소 : 서천군 관내(5월중), 10월 행사는 미정 ○ 대 상 : 대전·충남지사 아마추어무선봉사원 100명 ○ 주요내용 : 적십자 구호사업관련 법령 장비 운용법 (리피터, 급식차량) 재난구호봉사원의 자세

2) 재난응답(Disaster Response)

<table>
<tr><th>중요사항</th><th>내 용</th></tr>
<tr><td>이재민구호
대 상 자</td><td>○ 풍수해, 화재, 한해, 설해, 가뭄, 폭발, 붕괴와 지진 등에 의한 이재민과 사망자 유족</td></tr>
<tr><td>재난응급대책</td><td>○ 재난발생시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소집 및 인접지역 봉사단 대기발령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호활동 전개)
○ 선발대 재난현장 급파 (아마추어무선봉사회과 직원으로 구성)
- 관계기관(재난·재난대책본부, 119구조대 등)과 협조
○ 이재민 수용 및 물자지급 준비, 구호급식 준비, 기타 응급대책 강구(관계기관 협조)</td></tr>
<tr><td>구호물자지급</td><td>○ 원칙적으로 적십자 구호요원이 긴급구호단계에서 재난세대 단위로 이재민에게 직접지급(다만 이중지원 방지 등 이재민 구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구호품 지급 기준
1. 응급구호세트 : 대규모 재난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서 지급하는 구호품
▷ 응급구호품 세트
<table>
<tr><th>품 명</th><th>단위</th><th>수량</th><th>비 고</th></tr>
<tr><td>담 요
반바지·티셔츠
일용품</td><td>매
벌
세트</td><td>2
2
1</td><td>폴라폴리스
하절기이외 운동복</td></tr>
<tr><td>합 계</td><td></td><td></td><td>75,000원 상당</td></tr>
</table>
※ 누비이불 기존보유량 선 지급 후 담요(폴라폴리스)지급
※ 일용품세트 구성내역
수건2장, 치약1개, 세면·세탁비누 각 1개, 고무장갑 1켤레, 수세미2개, 화장지 2롤, 속내의(남·여)각 1벌
2. 재난구호품세트 :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으로 감량분(2인이하), 전량분(3인이하) 물품으로 구분하여 지급(3인 이상 기준 220,000원 상당 물품)</td></tr>
</table>

<table>
<tr><th>중요사항</th><th>내 용</th></tr>
<tr><td>구호물자지급</td><td>▷ 재난구호품세트
<table>
<tr><th rowspan="2">품 명</th><th rowspan="2">단 위</th><th colspan="2">지급수량</th><th rowspan="2">비 고</th></tr>
<tr><th>2인이하</th><th>3인이상</th></tr>
<tr><td>담 요</td><td>매</td><td>2</td><td>3</td><td rowspan="8">하절기:반바지,티셔츠
코펠식
부탄가스3개 포함

일반미상품 기준</td></tr>
<tr><td>구호의류</td><td>벌</td><td>2</td><td>3</td></tr>
<tr><td>취사용품</td><td>조</td><td>1</td><td>1</td></tr>
<tr><td>가스렌지</td><td>개</td><td>1</td><td>1</td></tr>
<tr><td>일 용 품</td><td>세트</td><td>1</td><td>1</td></tr>
<tr><td>백미(10kg)</td><td>포</td><td>1</td><td>1</td></tr>
<tr><td>재난부식</td><td>세트</td><td>1</td><td>1</td></tr>
<tr><td>포 장 대</td><td>개</td><td>1</td><td>1</td></tr>
<tr><td>합계</td><td></td><td colspan="2"></td><td>220,000원 상당</td></tr>
</table>
※ 재난부식세트 구성내역 : 참치 · 마늘 · 깻잎통조림 각 2개, 고추장 · 된장 각 1개
※ 누비이불 기존 보유량 선 지급 후 담요 지급
※ 기타 가족 수 이재민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별물품 추가로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추가지원을 할 수 있음
3. 외부 기탁 구호품 접수 및 배분 : 피해지역 주민지원</td></tr>
<tr><td>집 단 구 호</td><td>○ 재난 이재민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요청과 협조를 얻어 구호소 설치
○ 구호기관의 이재민수용구호에 가능한 한 협조(행정기관의 종합 구호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 구호품 지급
- 지사재량으로 최단시간 내에 이재민 세대에 응급구호품세트와 기타 필요한 물자를 우선지급
-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이외의 구호대상에 대해서는 재난구호품세트 기준에 준하여 지급
○ 집단수용 이재민 등록 및 관리 : 관계기관 협조
○ 구호급식 실시
- 재난초기 적십자역량 범위 내에서 최초 3일간의 구호급식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관계법령에 의한 급식소요비용의 지변요청 가능)
- 가능한 수용시설의 급식소를 활용하고 급식시설이 없는 곳은 지사 급식차량 이용(1회 급식인원 300명)
○ 집단수용소에 적십자봉사센터 설치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td></tr>
</table>

중요사항	내 용
장 의 부 조	○ 주택의 화재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형어선 해상재난, 비인가시설의 화재 포함)의 가족에게 세대당 조위금 300,000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당 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와 비인가 시설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받는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교통사고, 산업재난, 유기장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음
복 구 지 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지정 기부해온 자원으로 긴급구호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 여분이 있을 경우 당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음 ○ 복구지원 봉사활동은 각 협의회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재난교육 및 지사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율참여 유도)

나. 일반구호

구 분	내 용
대 상	○ 일반구호 : ▷ 갑작스런 가정파탄,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기초생활수급 확정시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물품이 필요한 세대 ▷ 저소득층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 (단, 사회봉사사업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 ○ 집중구호 : 설 및 중추절에 실시하는 구호활동으로 사회적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
물자확보	○ 당해년도 책정예산으로 확보 - 저소득층 일반구호 : 100세대(세대당 70,000원 기준) - 저소득층 집중구호(연말연시 및 중추절 집중구호) 1,900세대 (세대당 30,000원 기준) ○ 재난구호물자 중 여분의 물자 및 외원물품
구호대상 선 정	○ 구호대상은 관할 봉사회의 자체선정 또는 행정기관의 추천에 의하며, 지급확인서는 수혜자 본인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지역에서 5세대 이상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와 집중구호의 경우에는 봉사회장 또는 지역 지도자(통·반·이장)등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물자지급	○ 일반구호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호물품의 선정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별도의 일반구호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집중구호 구호 시기는 연2회(설 및 중추절 기간)로하며, 물품선정 등 세부계획은 별도 내부결재에 의한다. ○ 구호품의 지급은 봉사원이 참여하는 직접구호를 원칙으로 하되, 봉사회 미 결성 지역에 대하여는 인접 봉사회 또는 행정기관에 위탁 지급할 수 있다.
구호물자 및 예산의 전용	○ 당초 예산이나 일반구호 물자를 상반기 중에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하절기(9.30기준) 재난구호실시 후 재난구호실시 후 재난구호 예산잔액 또는 물자재고량의 50%이내에서 일반구호용으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단, 위 기준을 초과해 재난구호물자나 재난구호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승인을 얻어 시행함 ○ 본·지사의 외원물자와 기증 받은 물자 중 침구류, 의류, 식품류, 산모용품 등은 일반구호용으로도 시여 할 수 있음

세부내역	저소득층 구호	○ 갑작스런 가정파탄, 실직,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로서 기초생활수급 확정시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물품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생필품 지원 ○ 저소득층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단, 사회봉사사업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 결연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봉사조직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어린이, 장애자, 노인 돌보기 등 가능한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실시 ○ 적십자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 주도적으로 구호하며, 복지시설 피수용자보다 우선하여 구호함 ○ 저소득층 집중구호(설날 및 추석)는 상황에 따라 구호물품을 선정하고 지급기준은 지사예산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기타 봉사회 및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구호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내부결재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 일반구호 시행방법의 전환** : 사회봉사사업의 결연사업과 연계 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내부결재에 의해 시행방법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함
	행려자 구호	○ 귀향여비가 부족한 행려자에게 거주지 또는 연고지까지의 여비 실비를 지급(1인당 20,000원을 기준으로 함) ○ 귀향여비의 지급은 1회에 한하며, 행려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1인당 3,000원 이내의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시설 피수용자	○ 저소득층 구호에 준하되, 피수용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복지시설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다.
	급식소 운영	○ 대 상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 (결식아동, 독거노인 포함) ○ 급식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정리비는 징수 할 수 있음 ○ 결식아동의 증가로 무료급식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한 후 도시락 및 점심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소 현황 - 독거노인 무료 급식 : 공주봉사관(041-854-1210) - 실직자 무료 급식 : 천안봉사관(041-576-2266)

다. 특수구호

구 분	내 용
대 상	○ 외국으로부터 송환되거나 입국한 난민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구호를 요하는 자 ○ 운구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사망자 ○ 탈북자 중 긴급구호 대상자 및 저 소득자 ○ 특별대상 : 평상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구호대상과 정부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자
경 비	○ 장기적 구호를 요하는 경우 특수구호 중 정부위탁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전도금을 교부 받거나 우선 적십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소요경비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청구하여 정산함 ○ 적십자 고유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시행
업 무 한 계	○ 인도적 입장에서 특별히 구호해야 할 대상자에게 특수구호를 실시하되, 발생빈도가 낮음을 고려하여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때 마다 별도의 내부품의에 의해 실시한다.

※ 특수구호는 사업운영계획상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상기대상자의 구호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부품의에 의거 가용예산을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국제구호

구 분	내 용
대 상	○ 외국의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
방 법	○ 구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 ○ 해당국 재난이재민에게 의연금품을 보내거나 전보 또는 서한으로 위문의 뜻을 전함(국제적십자구호원칙 참조) ○ 외국 난민구호 :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외국 난민의 구호태세 준비(수용중의 구호는 특수구호 참조) ○ 국내에 체류하는 기타 외국인 또는 이에 준 하는 자에게 특별한 경우에 적절한 구호 실시
협조체계	○ 국제협력 체제 유지(국제적십자사연맹, 자매적십자사 등)

※ 국제구호는 본사차원에서 시행하며, 각 지사는 본사의 지침 등에 의거 실시 함

6. 구호사업비축적립금

구 분	내 용
적립금 확보	○ 대규모 재난구호 또는 구호사업 개량을 목적으로 매년 결산시 당해연도의 직접구호비(사업운영비) 및 재난의연금 잔액 등을 본 적립금으로 비축하여야함. ○ 본 적립금의 재원이 영세할 경우는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에서 적절한 금액을 추가하여 적립함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총재는 우선 사용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7. 재난구호 세부추진 계획

가.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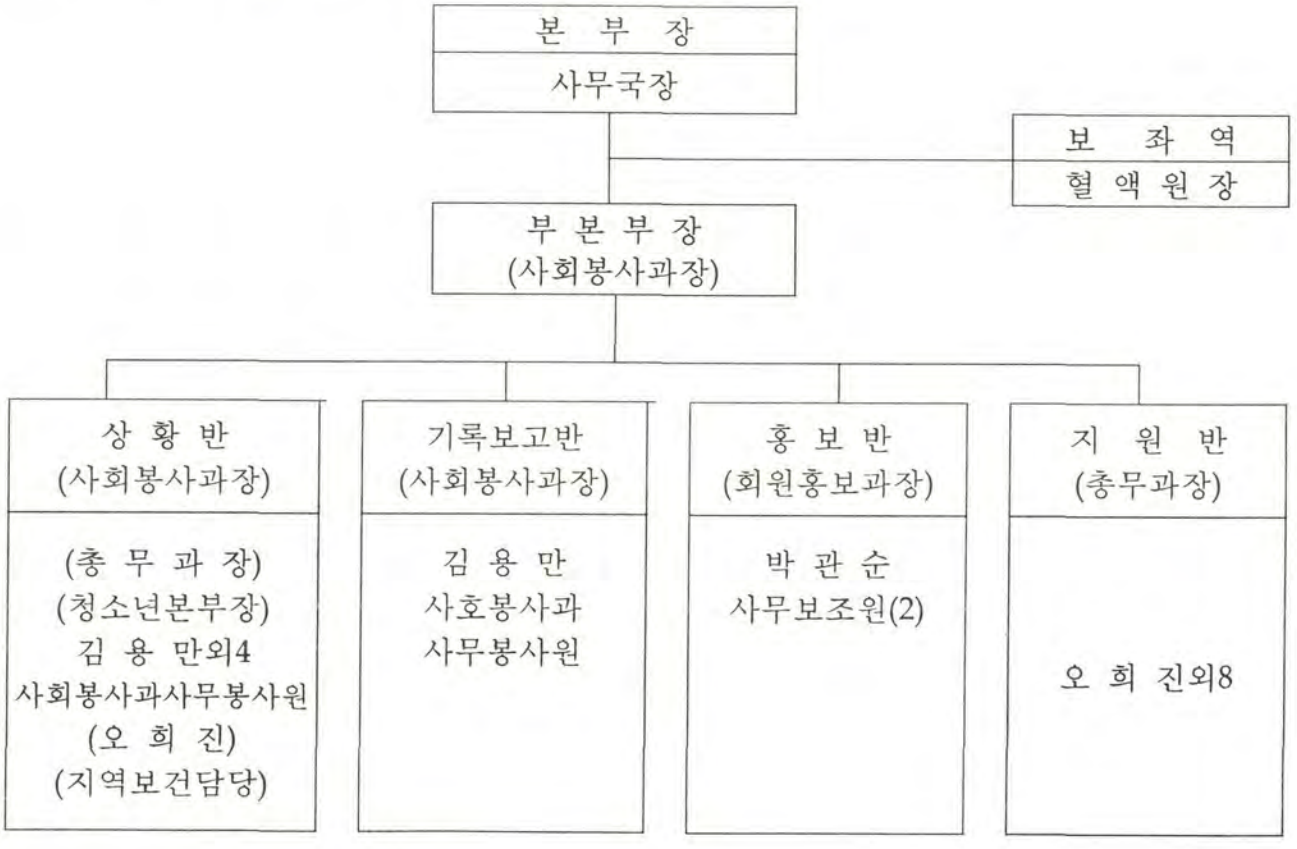

1) 상황실(재난구호 대책본부) 근무 운영 요령

상황실 운영은 재난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재난과 대규모재난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침

○ 긴급구호재난대책본부 및 재난구호봉사단은 직원 및 봉사원으로 조직한다.

○ 상황실에는 재난규모에 따라 각 반별로 적정인원이 근무한다.

○ 상황실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언제든지 해당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며 상황의 인수 인계를 위해 근무교대 30분전부터 합동근무를 한다.

○ 재난구호대책본부의 제반 상황(자료포함)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대외 홍보자료로 사용한다.

○ 혈액원장은 의료지원(혈액수급 및 의료진 파견)을 실시한다.

○ 정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실에 게시한다.

○ 근무직원 및 봉사원은 구호요원 복(조끼 또는 방한복)을 착용한다.

나) 소규모 재난

○ 관내에 10세대 이하의 이재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각 지역에 분산 비축한 재난구호물품으로 이재민 구호가 가능하고 재난의 추가 확산 우려가 없을 경우

○ 타 지역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사상황실 및 시·도 재난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가 운영될 경우

○ 인접 시·도에 피해가 있으며, 집중호우로 호우경보가 발령중일 경우

- 상황실 운영 세부 지침(상황별 개인별 주요업무)
- 주 간 : 사회봉사과 직원으로 상황실 운영
- 야 간 : 기 편성된 숙직 근무자 1명과 상황반장 1명으로(총 2명)하여 별도의 근무명령에 의거 운영

다) 대규모 재난

○ 1개 시·군에 300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또는 2개 시·군이상에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급식소(차량) 운영 및 수용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 상황실 운영 세부지침
- 재난구호대책본부 상황반 편성인원으로 24시간 교대 운영
- 재난구호대책본부의 구호반 편성인원은 재난구호봉사단으로 편입되어 현장구호활동 전개

라) 구호활동 보고(본사)

발생보고	시 기	○ 발생 즉시
	내 용	○ 재난발생일시·장소, 재난종류·피해상황, 이재민세대, 인원수, 조치사항 및 구호활동계획, 장비·인원동원 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
일일보고	시 기	○ 정기보고 : 매일08:30, 15:00(유선), 20:00(문서)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발생 시
	내 용	○ 재난구호활동 내용(구호물품지급, 구호급식내용, 장비·활동인원, 활동내용 홍보사항 등) ○ 재난상황 전개 및 주요조치, 지원사항 등 재난정보
최종보고	시 기	○ 재난구호활동 종료 후 7일이내
	내 용	○ 재난구호활동 최종확정(타 기관 지원, 구호성금품 접수 및 사용, 주요 내용 포함)

나. 재난구호 봉사단

재난구호봉사단의 각반은 직원과 봉사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동시다발적 재난으로 직원과 혼합편성이 어려울 경우 기 구성된 각 협의회 재난구호봉사단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편 성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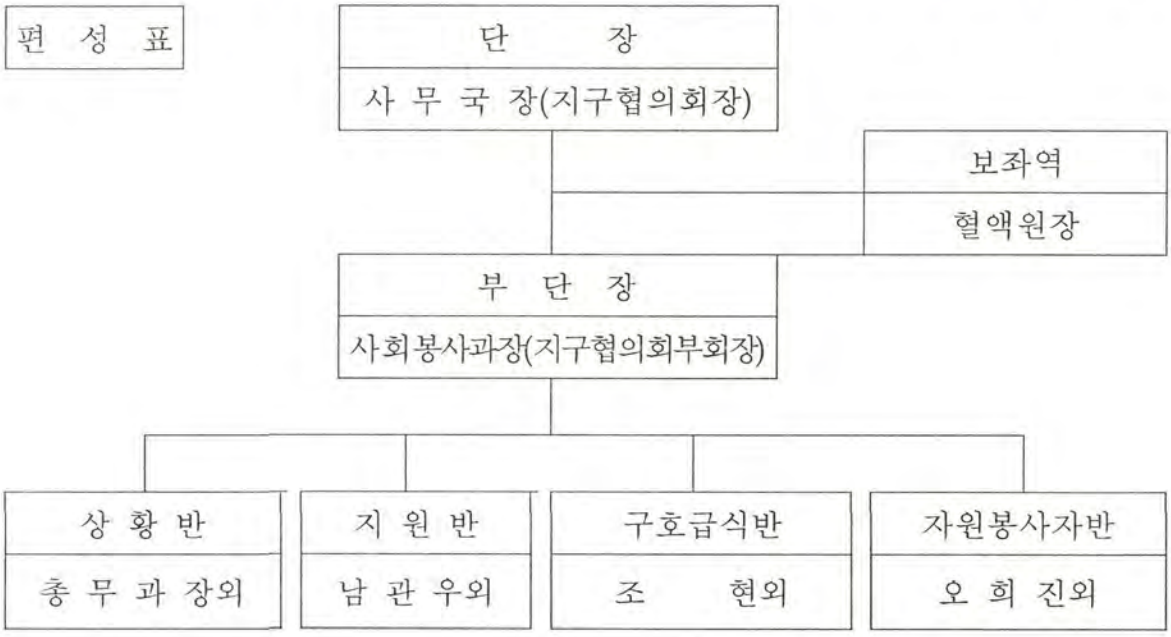

1) 재난구호 봉사단 반별 임무

구 분	반 별 임 무	준 비 사 항	비 고
자 원 봉 사 반	- 이재민등록 접수 - 자원봉사자 접수 - 자원봉사자 배치(조사반장과 협의) - 이재민 안내 및 상담 - 취약계층 파악(어린이, 노약자) -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 수용소 방역 및 위생관리 (보건소 협조)	이재민등록카드 자원봉사자등록카드 봉사활동확인서 구급약품	
상 황 반	- 아마무선봉사회 선발대 최초 설치 (현장지휘소와 협조) - 피해상황 조사(행정기관협조) - 구호요원소요 판단 - 필요물품 파악 - 통신망 유지 확보 - 상황유지 및 일지 기록 - 상황판단 및 각반 업무조정 (상황반장) - 현지 미확보 물품 구매 및 조달 - 현지 구호성금 접수	상황일지 아마무선 장비 전산장비 성금접수 및 배분대장 각종 상황보고양식 (재난구호상황보고서, 구호상황총괄표)	각 반 실적집계 및 지사보고
지 원 반	- 수용시설 설치(자체 수용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 구호품 임시 보관소 확보 - 구호물품 수송 - 인명구조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분 대장	
구 호 급 식 반	- 급식차량 운영법 숙지 - 식단표 작성 - 조리반,배식반,정리반으로 업무 분담	급식차량(행정기관과 급식시설 협조) 식단표 주 · 부식 및 연료 확보 급식일지	

2)재난구호봉사단 개인별 업무분장

구 분	직·성명	업무 내용	비 고
상 황 반	총무과장 (상황반장)	- 현장 상황판단 및 각반 업무 조정 - 현장 피해상황 조사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 - 구호요원 소요 판단	아마무선국 설치
	최 명 달	- 현지 확보가능 구호물품 구매 및 조달 - 관련서류 작성 - 기탁 성금 접수 - 상황반장 업무보조 및 야간 상황실 운영	재난구호지원 대상자 노트북 휴대용무전기 아마무선 통신망도
	박 관 순	- 재난현장 사진 촬영 - 보도기관 홍보업무 전담 - 야간 상황반 업무 협조	카메라
지 원 반	박 상 규 (지원반장)	- 구호반 업무조정 및 통제 - 기탁 물품 접수 및 배분 - 수용시설 설치 (자체수용시설 필요시) - 구호품 보관소 확보 - 구호물품접수배분내역 보고 (상황반장)	물품접수 및 배분대장 물품수령증 상황에 따라 봉사센터 운영 (봉사관 활용)
	남 관 우 이 금 섭	- 구호물품 불출관리 및 수송 - 구호반장 업무보조	
구 호 급 식 반	조 현 (급식반장)	- 식단표 작성 - 급식반 봉사원 통제(조편성) - 주·부식 및 연료 확보 - 급식 필요시설 협조 (상황반장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 급식결과보고(상황반장)	급식차량 급식일지 주·부식 사용내역 정리 구호천막
자 원 봉사자반	오 희 진 (자원봉사반장)	- 수용반원 통제 및 업무 조정 - 자원봉사자 접수 및 교육 배치 - 이재민 안내 및 상담	자원봉사 등록대장 봉사활동확인서
	지역보건담당	- 이재민 등록 및 접수 - 수용소 방역 및 위생관리 (보건소 협조) - 보건강사회 및 응급처치강사관리 - 수용이재민 건강관리	이재민 등록대장 구급상자 (비상약품)

다. 재난대응 흐름도

지사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재난구호를 시행하며, 재난발생시 자원의 투입정도의 결정은 재난규모의 판단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즉 지사(지역)비축 재난 구호물품의 전달로 재난구호가 종료되는 소규모 재난과 모든 자원의투입이 필요한 대규모재난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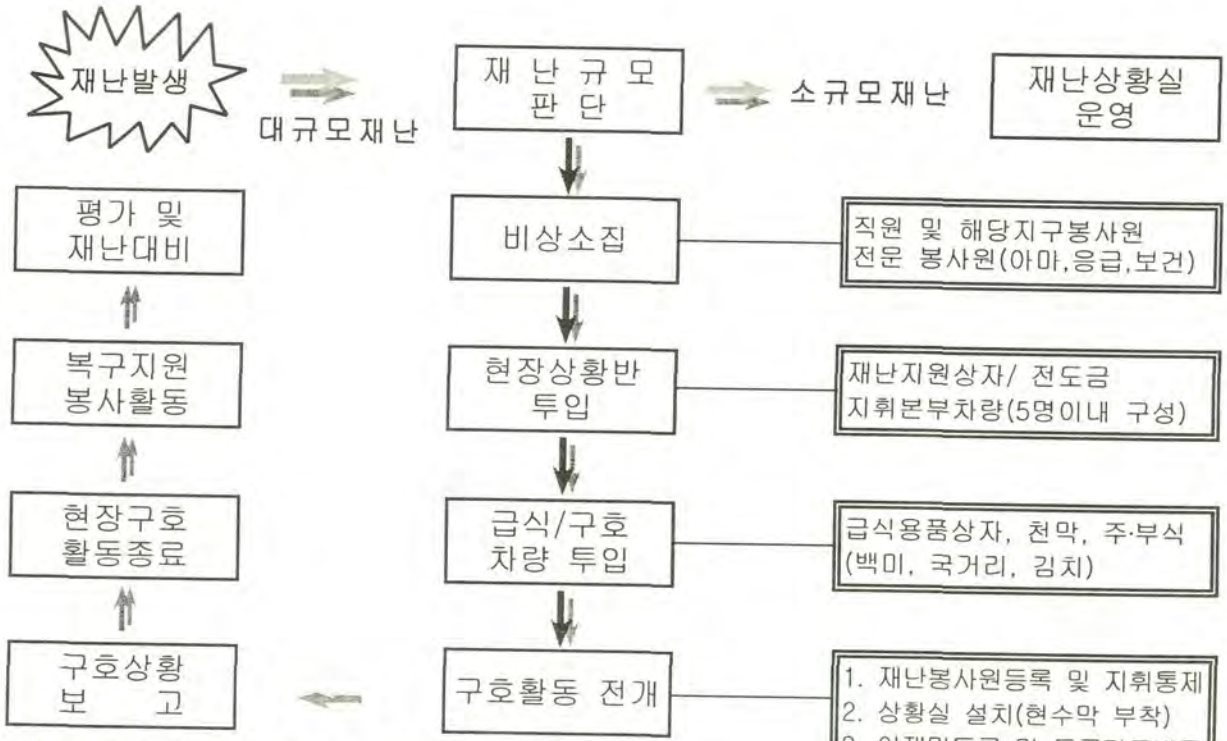

● 소규모재난의 경우 상황근무자 조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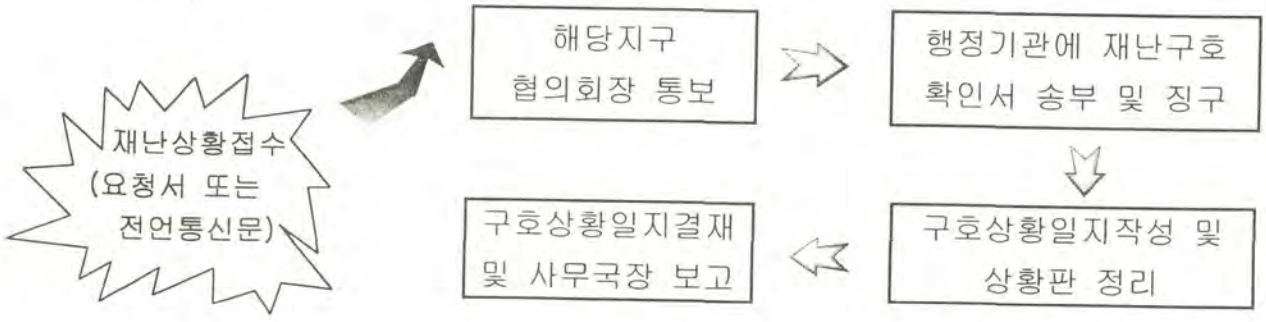

라. 재난구호봉사단 체크리스트

구분	재난대비 단계	재난대응 단계	정리단계
공통 사항	□ 응급처치(심폐소생)교육 □ 재난구호 교육 훈련 □ 자원동원 현황표 정비 □ 가 집결지 지정	□ 봉사원동원 및 현장 투입 □ 재난상황 지사보고 □ 일일평가회의	□ 협조자 목록작성 (감사서한 발송용)
상황반	□ 재난구호 지원상자 정비 □ 반원 비상연락망 정비 □ 아마무선장비 점검 □ 재난위험시설 목록 작성 (시설 및 하천) □ 이동지휘본부차량 적재 장비 및 물품 □ 비상통신훈련	□ 위험지구 예찰 □ 선발대 임무 수행 □ 재난구호지원상자 □ 통신차량(장비) -천막1동, 테이블3 의자6, 발전기1 □ 관계공무원협조 (급식차량 위치, 시설용, 이재민파악) □ 이재민등록 지원 □ 현수막 부착 □ 재난구호봉사원 등록 □ 구호활동 일일보고	□ 행정기관, 주민대표, 시설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구호소 폐쇄결정 □ 구호소 폐쇄 안내 □ 관련인사 감사표 현 □ 구호실적 집계 및 보고(지사)
지원반	□ 기증품 가 집결지 지정 □ 반원 비상연락망 정비 □ 협력단체 확인	□ 응급(재난)구호품 수송(기증품 처리) □ 구호품 접수, 배분	□ 구호물품 지급내역 정리, 잔여물품 처리
구 호 급식반	□ 급식용품 상자 정리 □ 반원 비상연락망 정비 □ 주 · 부식 확보(500명분) □ 협력단체 확인 □ 취사장비 및 물품 확인 (급식차량/자체 장비)	□ 급식용품 상자 □ 주 · 부식 확인 □ 급식시설 사용협조 (상황반, 지원반 동행) □ 이재민 급식 □ 급식일지 작성(보고)	□ 임차장비(비품)반납 □ 급식소요비용 내역 정리(구입물품내역, 영수증
자 원 봉사반	□ 반원 비상연락망 정비 □ 이재민 구호소 현황 □ 협력단체 확인	□ 이재민 등록 □ 자원봉사자 접수(배치) □ 탁아소 운영 □ 보건(응급처치, 간호) □ 이재민 상담	□ 사용시설(집기비품) 이상유무 확인 후 반납

마. 구호장비보유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구호차량	봉고더블캡	소형화물	1대
	급식차	3.5ton	1대
	지휘본부차량	8인승	1대
수용천막	목재지주형천막	5평형	3동
	행사용천막	7평형	4동
	목재지주형천막	15평형	4동
침상	알미늄야전침대	1인용	84개
등화장비	발전기	4KW	2대
	투광기	3KW	1조
취사도구	가스회전식국솥	150인용	1대
	가스자동밥솥	50인용	2대
	석유버너	20ℓ	3대
	급수통	60ℓ	7개
	스텐식판	1인용	250개
무전기	고정용(아마추어국)	HF, VHF	3대
	〃 (업무용)	VHF	1대
	이동용(육상이동국)	휴대용	8대
	이동용 중계기	U/V용	1대

8.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

가.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

지사 및 지구협의회명		재난구호봉사단		
		단 장	부 단 장	상황반장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사무국장 임재준 042-254-7101	사회봉사과장 곽병철 042-254-7101-4	총무과장 254-7101-4
대전광역시 (042)	중 구	유 진 숙 525-7978/0505-479-7989	정 인 원 534-0719/011-3818-3810	우 상 훈 486-6330/016-259-6330
	동 구	김 정 희 672-6908/017-423-6908	나필성 672-1810/019-472-1810	우 상 훈 486-6330/016-259-6330
	서 구	이 금 자 545-4949/019-309-4949	윤 완 순 486-0064/019-409-0664	우 상 훈 486-6330/016-259-6330
	대덕구	오 송 남 632-4626/017-425-4626	이 순 선 633-9580/016-451-9580	우 상 훈 486-6330/016-259-6330
	유성구	조 숙 희 822-6666/018-424-3442	김 정 숙 011-9819-3588	우 상 훈 486-6330/016-259-6330
충청남도 (041)	천 안	박 종 천 584-4247/019-365-5247	박 영 학 577-3199	장 윤 곤 562-1391/011-423-1391
	공 주	이 은 석 852-4732/016-429-4732	강 상 욱 016-407-3325	김 영 정011-437-6905 공주봉사관 854-1210
	보 령	곽 영 예 936-4853/017-407-4351	김 효 순 936-2862/019-440-2862	장 정 자 935-5392/018-229-5392
	아 산	장 금 안 544-7795/011-9830-7795	김 옥 순 523-0778/017-421-0778	김 정 희 545-5449/017-412-5449
	서 산	이 금 주 662-1472/016-462-8800		유 장 곤 019-431-1048
	논 산	김 영 섭 742-0162/011-429-2211	이 종 호 742-0624	조 원 영 741-4744 논산봉사관 733-9582
	부 여	유 춘 자 835-2455/016-465-2455		권 영 옥 832-1601/011-9826-1601
	서 천	노 현 숙 956-1618/018-751-7744		신 한 섭 011-423-9059 고 명 화 953-3322
	홍 성	장 선 숙 641-3541/017-425-3541	박 순 렴 632-9547	정 진 영 634-4449 /011-432-1175 봉사관 631-3525
	청 양	김 덕 숙 942-0063/016-269-0063	강 신 수 942-2729/011-9810-6445	이 명 자 942-7269/017-7036-7269
	예 산	이 준 자 332-9123/017-606-0123	이 순 희 335-2406	임 갑 주 337-5657/019-405-7706
	연 기	윤 종 진 865-1112/011-434-1113	장 복 순 867-7156/011-9800-2455	임 재 락 018-417-5825 이 원 숙 011-458-3357
	당 진	한 화 자 352-2100/011-372-0386	박 정 자 353-7436/011-457-7435	안 길 훈 352-4964/019-456-4964 양기림 011-9646-9308
	태 안	이 순 안 672-2213/016-778-1639	이 영 자 674-6566/019-667-9464	정 동 조 011-454-2837 박 윤 월011-9820-7872
	금 산	문 진 순 752-2650/011-9706-2650	강 정 우 754-5283/018-415-5283	정 명 강 754-3595/017-233-3595

나. 재난구호물자 분산비축현황(연중)

구분 / 지구명	비축장소	비축량	연락처(지역번호041)
천안	천안봉사관	10세대분	천안봉사실장 박말순 576-2266/017-401-1588
공주	공주봉사관(시청별관)	〃	봉사실장 임왕순 854-1210(봉사관)/ 852-2982
보령	대천1동사무소	〃	협의회장 곽영예 936-4853/017-407-4351
아산	지구협의회사무실	〃	협의회장 장금안011-9830-7795 총무 김정희017-412-5449
서산	지구협의회장댁	〃	협의회장 이금주 016-462-8800/662-1472 서산아마무선봉사회장 유장곤 019-431-1048
논산	논산봉사관	〃	협의회장 김영섭 742-1700/018-419-3157 논산봉사관사실장(집741-1195) 733-9582(봉사관)/
연기	아마무선봉사회	〃	협의회장 윤종진 865-1112/011-434-1113 아마무선봉사회장 임재락 018-417-5825
부여	지구협의회장댁	〃	협의회장 유춘자 835-2455/016-465-2455 총무 권영옥 011-9826-1601
서천	장항봉사관	〃	협의회장 노현숙 018-751-7744/ 956-1618
홍성	홍성적십자봉사관	〃	협의회장 장선숙 641-3541/017-425-3541 홍성봉사관 봉사실장 박운선 631-3525/011-9412-5449
예산	가정복지회관	〃	협의회장 이준자 332-9123/017-606-9123 가정복지회관 330-2669
태안	지구협의회장댁	〃	협의회장 이순안 016-778-1639
당진	당진봉사관 (당진도서관)	〃	당진봉사관 356-9504 협의회장 한화자 011-372-0386
청양	청양군청	〃	협의회장 김덕숙 942-0063 / 016-269-0063
금산	인삼종합전시관	〃	협의회장 문진순 011-9706-2650
계		150세대분	

다. 아마추어무선봉사회(무선국 운영)

재난시 긴급구호 및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적십자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한다.

봉사회명	회 장	연락처	회원수	단 체 국 호출부호	비 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대전아마무선봉사회)	우 상 훈	016-259-6330	22	HLOJRC	
서산아마무선봉사회	유 장 곤	011-431-1048	25	6KOMM	
연기아마무선봉사회	임 재 락	018-417-5825	35	DSOMZ	
부여아마무선봉사회	이 홍 철		17	HLOQGO	
당진아마무선봉사회	안 길 훈	019-456-4964	15	6MOLB	
서천아마무선봉사회	신 한 섭	011-423-9059	17	6KOLW	
천안아마무선봉사회	장 윤 곤	011-423-1391	8	6KOLI	
홍성아마무선봉사회	정 진 영	011-432-1175	68	HLOEZI	
보령아마무선봉사회	정 창 수	016-9494-3366	10		
태안아마무선봉사회	백 성 우	041-675-3286	33		
계			250		

라. 시·군·구별 재난/사고대책본부

행정기관명	구 분	전화번호	관련부서	비 고
충청남도	재난대책본부	220-3642	치수방재과	방재담당
	사고대책본부	220-3119,3828	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
천 안	재난대책본부	550-2484/ fax550-2489	건설행정과	재난관리
	사고대책본부	568-1058	건설행정과	안전지도
공 주	재난대책본부	850-4497	건설과	방재담당
	사고대책본부	850-4281(주),4268(야)	건설과	재난관리
보 령	재난대책본부	930-3497	건설과	방재
	사고대책본부	930-3473(주),933-4599(야)	건설과	재난관리
아 산	재난대책본부	540-2497(주), 2494(야)	건설과	재난,재난
	사고대책본부	540-2497(주), 2494(야)	건설과	재난재난
서 산	재난대책본부	660-2497(주), 2494(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660-2497,660-2419(야)	민방위재난과리과	재난상황실
논 산	재난대책본부	730-1497(주),1222(야)	건설과	치수
	사고대책본부	730-1363,730-1419(야)	건설과	재난관리
연 기	재난대책본부	862-2592	건설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861-2265,861-2494(야)	건설과	재난방재
부 여	재난대책본부	830-2411-7	건설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830-2265-830-2494(야)	건설과	재난방재
홍 성	재난대책본부	630-2263	건설도시과	방재
	사고대책본부	630-1497,630-1419(야)	건설도시과	방재
예 산	재난대책본부	330-2497	건설과	방재
	사고대책본부	330-2267,330-2222(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
태 안	재난대책본부	670-2497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670-2222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당 진	재난대책본부	350-3681-5	건설과	방 재
	사고대책본부	350-3269,355-6334	새마을민방위과	재난관리
서 천	재난대책본부	950-4152(주),950-4489(야)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950-4497,950-4419(야)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청 양	재난대책본부	940-2497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사고대책본부	940-2497,940-2419	건설도시과	재난방재
금 산	재난대책본부	750-2721	건설도시과	치수재난
	사고대책본부	750-2483,750-2222	건설도시과	치수재난

※ 기타 재난구호관련 유관기관

한국통신충남본부 통신망관리부 : 485-7311-3 / 한국전력 : 620-2218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253-1133

<별지1호식>

재난구호상황보고(제 보)

일 시 : 20 년 월 일 시 기관명 : 지사 (인)

1. 재 해 상 황

재난종류 :			발생일시 : 200					재난장소 :		
구분	인명피해(명)				가옥피해(건)				이재민현황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전소(파)	반소(파)	침수	피해세대	이재민수
누계										
일계										

2. 구 호 상 황

구 분	구호세대	지 급 물 품									지급물품 환산액(1)
		백 미 (10kg/포)	라면 (상자)	당 요 (매)	구호의 류(벌)	반바지 티(벌)	취사용품 (조)	가스렌 지(개)	일용품 (셑)	부식셑 (셑)	
금 일											
누 계											

급식소운영(2)	조위금지급(3)	구호요원 동원(4)	총집행액(1+2+3+4)
개 소 수: 개소 운영일수: 일 급식인원: 명	( )명	합 계: ( )명 직 원: ( )명 봉사원: ( )명 기 타: ( )명	합계 : 천원 (천원)

집행액		집행액		동원비		
소 계: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천원)	예 산 : 천원 (천원)	
예 산: 천원 (천원)		예 산: 천원 (천원)		예 산: 천원 (천원)	비예산 : 천원 (천원)	
비예산: 천원 (천원)		비예산: 천원 (천원)		비예산: 천원 (천원)		

※급식소운영 세부내용(급식시설, 장소, 인원) 별첨 보고, ( )안은 누계 인원(급액)

3. 구호물자 재고현황

백미 (10kg/포)	라면 (상자)	담 요 (매)	누비이불 (매)	구호의류 (벌)	반 바 지 티 (벌)	취 사 용 품 (조)	가 스 렌 즈 (개)	일용품 (셑)	부식셑 (셑)		응급구호 품셑 (셑)

※ 주요물품 종목별 재고량 기록

(참고로 응급구호품세트 보유수량을 마지막 칸에 기입)

4. 외부기부금품 명세

<별지 2호 서식>

재 해 구 호 요 청 서

재난종류	화재, 풍·수해, 설해, 기타( )	발생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발생장소		발생원인	

피해상황	인명 피해	사망 명	부상 명	실종 명	계 : 명
	가옥 피해 (가재도구 소실을 중심으로 산정)	전파(소) 동 세대 명	반파(소) 동 세대 명	침수 동 세대 명	계 : 동 세대 명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관계	
이재민구호조치 및 욕구사항								

이 재 민 명 단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주 소(전화번호)	비 고

위와 같이 재난 이재민이 발생하였기에 구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기관 : (직인)

(신청인 : 전화번호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 귀하

- 8세대 이상은 별지 구호대상자 명부에 기록하십시오. (행정기관에서는 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한 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로 구호요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18 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 1 절 국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확산

- 산림파괴, 벌목 등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와 기상이변 요인의 누적
- 지구온난화에 따른 허리케인, 폭설, 홍수 및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에 의한 지구촌 피해규모 확대

○ 자연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교토 의정서 추진, 국제대책회의(IPCC) 등을 통한 국제협력 증대

○ 고도산업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화재 등 재난요인 증가

- 국제적 경쟁 속에 산업화, 도시집중화로 시설물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되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테러 또는 전염병 등에 의한 국가간 분쟁 및 피해 대형화

- 지역·경제·종교 등으로 인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테러·전쟁 증가
- 조류독감, SARS 등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개연성이 증가되면서 국제적 공동연구·대처 필요성 증대

제 2 절 관할해역의 여건변화와 전망

1. 지형과 기후

○ 대산항은 한반도의 중남서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당진군과 예산군, 남쪽으로는 홍성군, 서쪽으로는 태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해와 접하고 있다.

○ 또한, 본 지역은 서해안에 연하여 비교적 낮고 평평한 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 중앙부에 가로림만이 남북 방향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

○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굴곡이 심하며, 해안선에 멀지 않은 곳에 크고 작은 도서들이 산재해 있다.

○ 현대오일뱅크, 현대석유화학, 삼성아토피나 3사의 유류화물 전용부두를 중심으로 18선석 29911천톤 화물 처리능력(04년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2단계 개발계획에 의해 316천평의 항만부지 조성과 총 5,91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한 9개선석의 항만시설이 추가 건설 될 예정이다.

○ 또한 대산지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국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함께 대산 및 대중지방공단을 포함한 서해 중부권의 해상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주 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 기후적 특성으로는 바람은 겨울철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로 한랭건조한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고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교체기로 풍향이 일정치 않으나 남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성 저기압으로 인하여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탁월하다.

○ 연평균 풍속은 2.2m/sec 이고, 강수량은 1,269mm로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 1,159mm보다 조금 큰 값을 나태내고 있으며, 강설일수는 11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약29일 정도이다.

○ 선박운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중의 하나인 안개는 대호방조제 근해에서 자주 발생하며 연간 안개발생일수는 약 39.1일로서 주로 4월~10월의 7개월간에 걸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1~2회 정도의 태풍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난발생 요인 및 특성

○ 관할 수역은 인천과 평택항으로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의 중간항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해난사고 및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등에 대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음

○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10m로 매우 심하고 조류가 강하게 흐르며(강조류 평균 4.5kt 최대 7k) 간석지의 발달로 어장, 양식장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가로림만과 해수욕장 및 발전소 취수구 등 환경민감지역이 도처에 분포되어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막대한 오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임

○ 동절기 강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의 파도를 차단시켜 주는 유효한 방파제가 없으며 따라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에도 악천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임.

○ 저질은 수로내에는 대부분 모래와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묘지와 제트는 소량의 모래와 진흙으로 혼합되어져 있음

○ 대산항 전체화물의 99.6%가 석유화학 관련제품으로써 물동량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화물량과 이송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 3 절 재난의 정의

1.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풍랑·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3.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신개념

재난 = 기존의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제2조) +
기존의 인적재난개념(재난관리법제2조) +
국가기반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제 4 절 재난관리 책무

1.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재난의 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제 5 절 계획의 의의

1.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내지 제25조

2. 성 격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계획

3. 계획의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변화 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부터 방재계획을 1996년부터는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 계획수립·운영이 이원화되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범국가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3.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 전담기구(소방방재청)를 신설하고 재난관련 법령의 통합·정비 등 국가재난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2004. 6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제 6 절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

1. 계획수립 절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지침작성 · 시달		계획수립 · 제출		심의 · 확정시달
국무총리 → 관계 중앙부처(청)	⇨	관계 중앙부처(청) → 국무총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중앙부처(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

계획수립 · 제출		심의 · 확정시달		집행계획 · 시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청) → 국무총리	⇨ 행자부 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중앙부처(청)	⇨	중앙부처(청) → 시 · 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1년)

집행계획 · 시달		계획수립		승인 · 통보
중 앙 부 처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 앙 부 처	⇨ 시도협의	중 앙 부 처 → 재난관리책임기관 → 행정자치부

2. 계획수립 분야

해양수산 관련분야	일 반 분 야
① 풍수해대책 ② 설해대책 ③ 해일대책 ④ 해상재난대책 ⑤ 지진재난대책	⑨ 도로재난대책 ⑩ 방사능방재대책 ⑪ 전기 · 유류 · 가스재난대책 ⑫ 폭발 · 대형화재대책 ⑬ 건축물 · 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 ⑭ 독극물 · 환경오염사고대책 ⑮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⑯ 산업재난대책
일 반 분 야	
⑥ 가뭄대책 ⑦ 항공재난대책 ⑧ 철도재난대책	

제 7 절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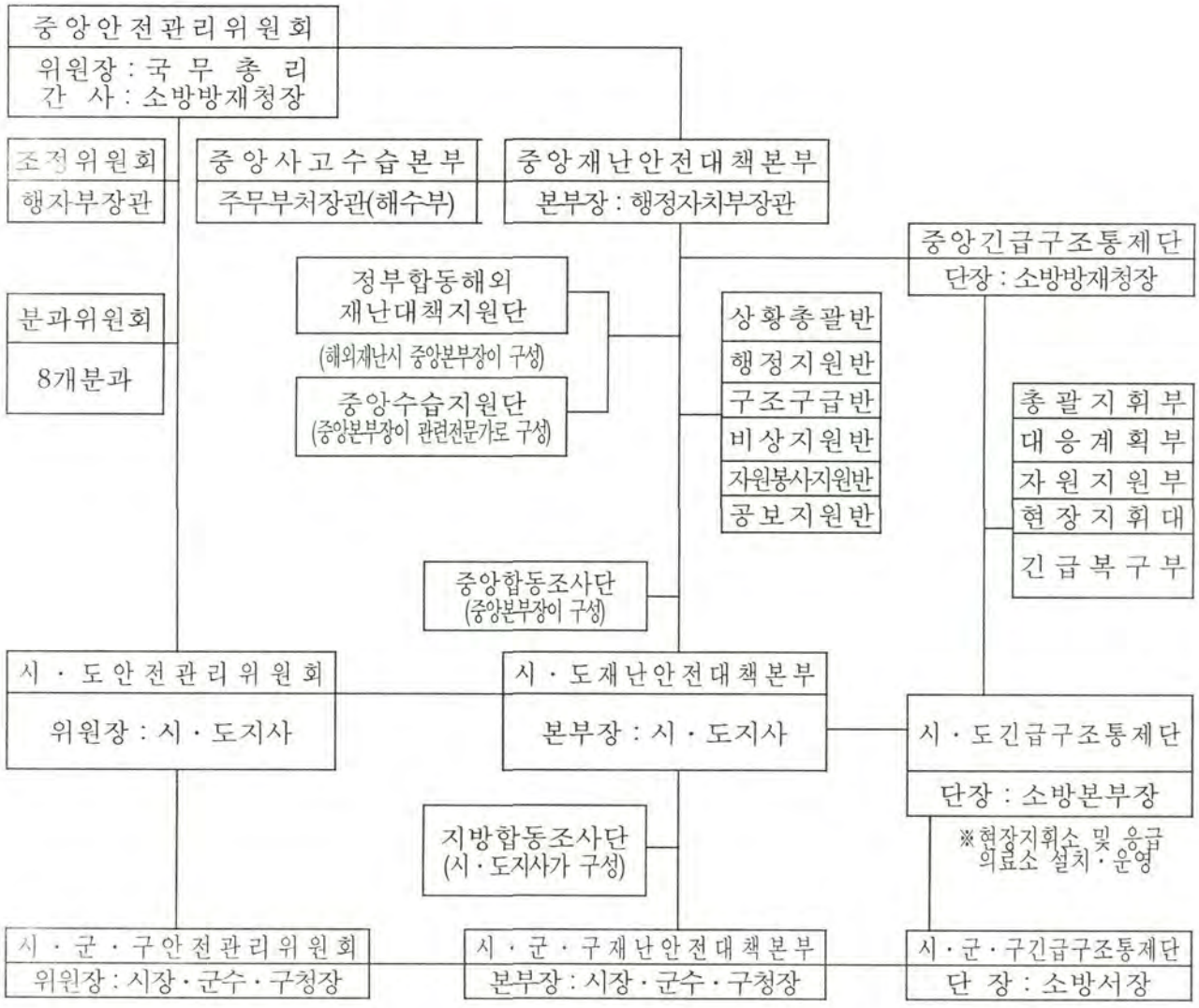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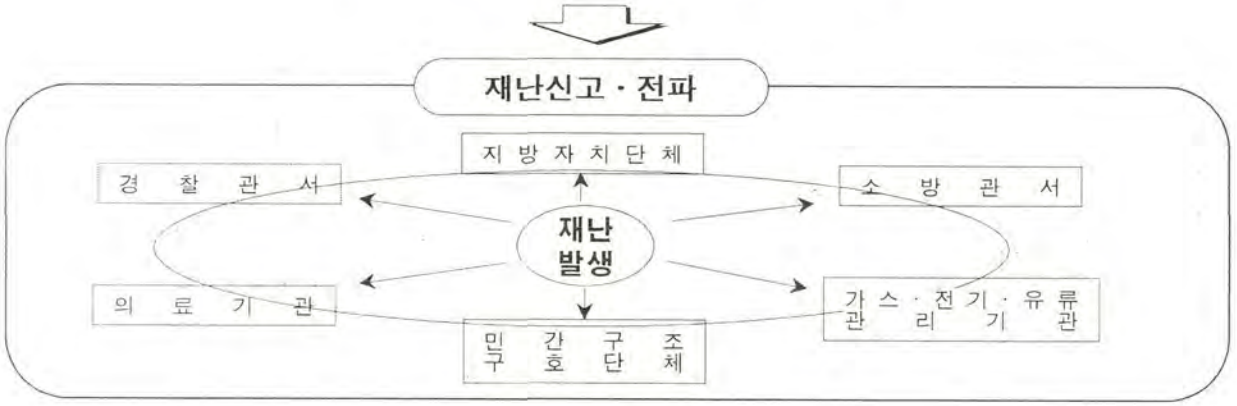

제 8 절 안전관리위원회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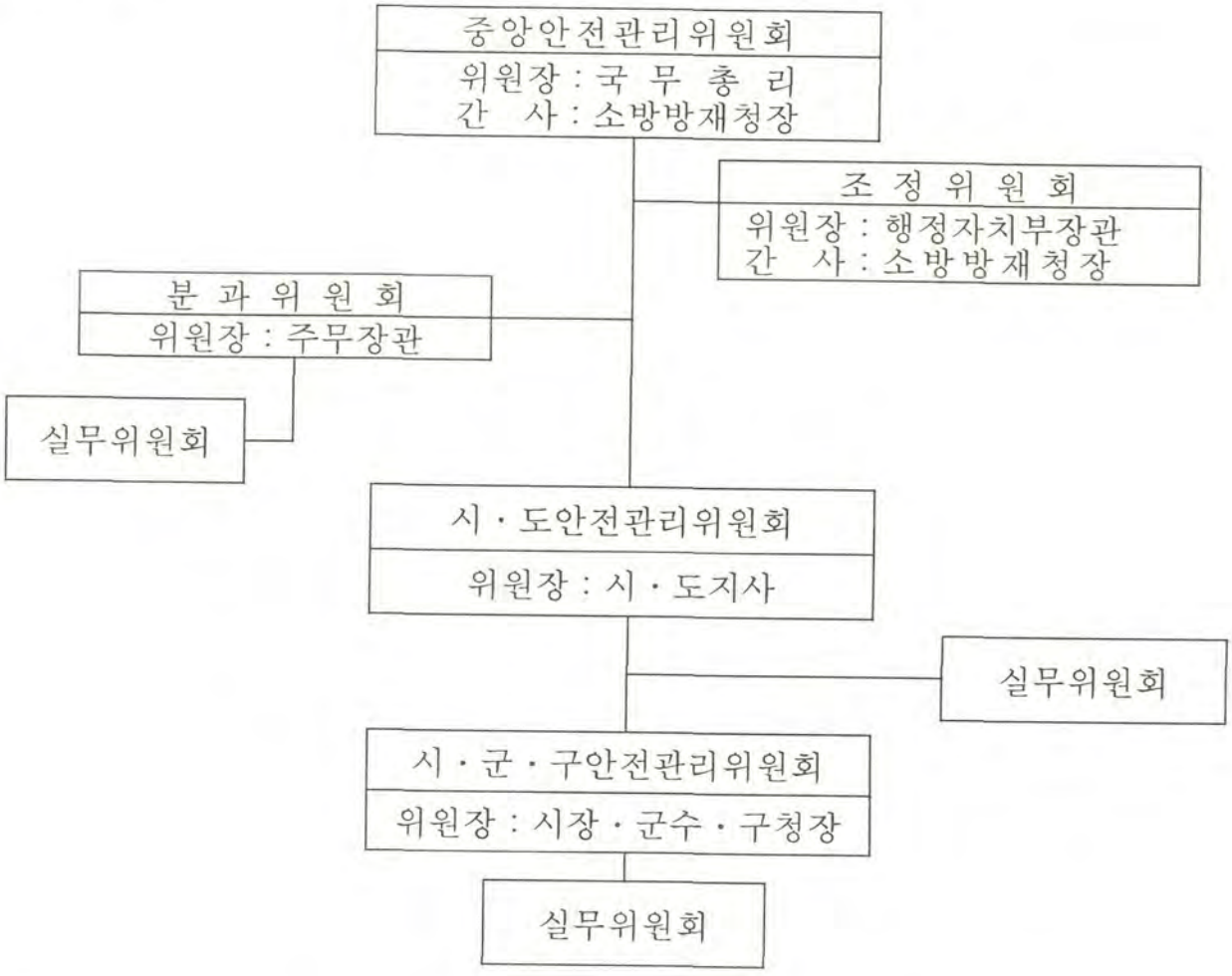

[분과위원회]

○ 풍수해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 화재 · 폭발사고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 전기 · 유류 · 가스사고대책위원회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	환 경 부 장 관
○ 방사능방재대책위원회	:	과학기술부장관
○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간　　사 : 소방방재청장

○ 위　　원

-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통일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농림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노동부장관 · 여성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국가정보원장 ·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방송위원회위원장 · 소방방재청장 · 기상청장

- 그 밖에 중앙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기　　능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 · 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 조정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3. 중앙안전관리 조정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장 : 행정자치부장관

○ 간　　사 : 소방방재청장

○ 위　　원

-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1급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나. 기　　능

○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협의·조정

4. 중앙안전관리 분과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장 : 해당 부처장관

- 풍수해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	환 경 부 장 관
- 방사능방재대책위원회	:	과학기술부장관
-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 간　　사 : 위원장이 지정

○ 위　　원

- 위원장이 해당 사고대책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

※ 실무위원회 : 분과위원회에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나. 기　　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 그 밖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장 : 지방자치단체장

○ 간　　사 : 위원장이 지정

○ 위　　원

- 시·도 지방경찰청장, 지역사단장, 시·도교육감, 재난업무담당 국장,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

나. 기　　능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 9 절 재난안전대책본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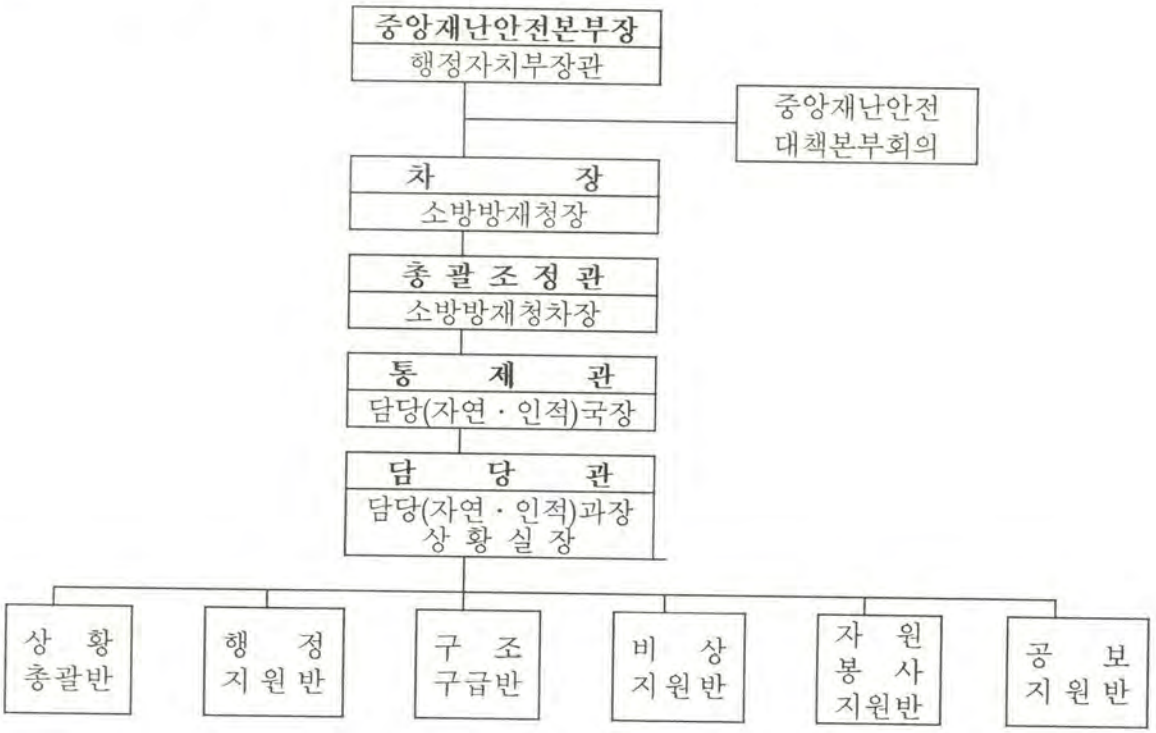

나. 기 능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다. 근무체제

○ 근무운영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라.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 실무반 편성

-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구조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반으로 편성하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과 타부처에서 파견된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임　　무

- 상황총괄반 : 소방방재청, 기상청 공무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팀

i)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i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iii) 재난진행상황 파악 · 전달 · 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iv) 기타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상황관리지원팀

i)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ii)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관리

iii) 특별지시사항 처리

iv) 기타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소방방재청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인사 방문 의전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기타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소방방재청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구조 · 구급 총괄

· 기타 구조 · 구급에 필요한 사항

- 비상지원반 :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소속직원으로 구성

·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 · 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도 · 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 · 장비확보 지도 · 확인 및 군 병력 · 장비지원 협조요청

·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 자원봉사지원반 :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및 참여희망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 ·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 공보지원반 : 소방방재청, 국정홍보처 소속 공무원 및 방송위

원회소속 직원으로 구성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에 필요한 사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가. 구 성

○ 본 부 장 : 행정자치부장관

○ 차 장 : 소방방재청장

○ 위 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조달청·경찰청·소방방재청·기상청·문화재청·산림청·철도청·해양경찰청 3급이상 공무원

※ 국방부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방재청의 경우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나. 기 능

○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3.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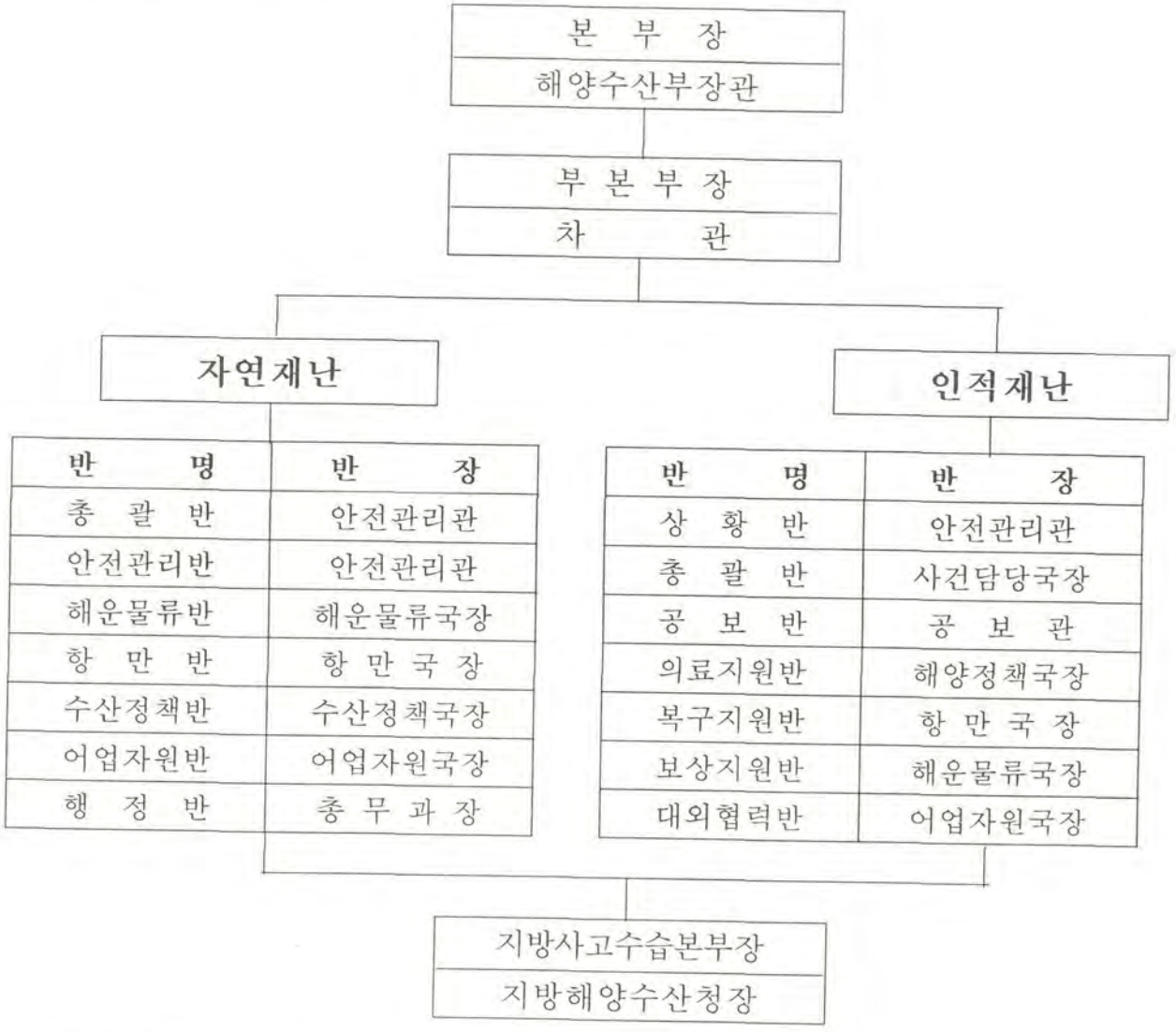

반 명	반 장
총 괄 반	안전관리관
안전관리반	안전관리관
해운물류반	해운물류국장
항 만 반	항 만 국 장
수산정책반	수산정책국장
어업자원반	어업자원국장
행 정 반	총 무 과 장

반 명	반 장
상 황 반	안전관리관
총 괄 반	사건담당국장
공 보 반	공 보 관
의료지원반	해양정책국장
복구지원반	항 만 국 장
보상지원반	해운물류국장
대외협력반	어업자원국장

나. 기 능

○ 태풍·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난 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집행

○ 해양안전 및 사고 수습에 관한 재난 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관리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중앙대책본부와의 협조

○ 재난현장 복구 지원

다. 근무체제

○ 근무운영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라.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근무체제 편성

- 상황총괄반, 안전관리반, 해운물류반, 항만반, 수산정책반, 어업자원반, 행정반 등 7개반으로 편성하고

- 단계별 근무인원

구 분	인 원	대책본부 근무요원		
		총 괄 반	분야별 실무반	행 정 반
준비단계	1명	4~5급 1명	-	-
비상단계	13명	4~5급 1명 6급이하 1명이상	4~5급 각1명 6급이하 각1명	6급이하 1명

○ 임　　무

반 별		담 당 임 무
총 괄 반		○ 자연재해대책본부 운영 총괄 ○ 태풍정보 접수·전파 및 각종상황 처리 ○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분야별실무반	안전관리반	○ 선박(항내어선 포함) 및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방재업무 ○ 소관분야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해운물류반	○ 연안여객선 및 재박선박에 대한 방재업무 ○ 소관분야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항 만 반	○ 항만시설 및 항만공사장에 대한 방재업무 ○ 소관분야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수산정책반	○ 어항시설 및 어항공사장에 대한 방재업무 ○ 소관분야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어업자원반	○ 수산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방재업무 ○ 연근해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대피 지도업무 ○ 소관분야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행 정 반		○ 자연재해대책본부 행정지원 업무

4. 대산청사고수습본부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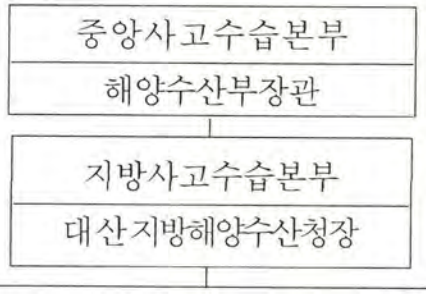

반 명	반 장
총 괄 반	항만공사과장
선원선박반	선원선박과장
항 무 반	항 무 과 장
해양환경반	해양환경과장
수산관리반	수산관리과장
시 설 반	공사 계장
항로표지반	항로표지과장
행정지원반	총 무 과 장

반 명	반 장
상 황 반	선원선박과장
총 괄 반	사건담당과장
현 장 반	항무과장
방 재 반	해양환경과장
복구지원반	항만공사과장
유족대책반	항로표지과장
행정지원반	총무과장

※ '수산관리과장'은 보령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함

※ 항로표지과 신설 예정

나. 기 능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태풍·해일 등 자연재난 업무 총괄

○ 해양안전 및 사고 수습에 관한 재난관리업무 총괄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관리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발생 및 피해상황 등 보고

○ 재난현장복구 및 예방대책 강구

다. 근무체제(자연재난)

○ 설치장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 근무운영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라.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실무반 편성

- 총괄반, 선원선박반, 항무반, 해양환경반, 수산관리반, 시설반, 항로표지반, 행정지원반 등 8개반으로 편성

- 단계별 근무인원(자연재난에 한함)

구 분	인원	대책본부 근무요원		
		총 괄 반	분야별 실무반	행 정 반
준비단계	1명	6급이하 1명	-	-
비상단계	16	반장 1명 6급이하 1명 이상	각 반장 1명 6급이하 1명 이상	반장 1명 6급이하 1명 이상

○ 임　　무

반 별		담 당 임 무
총 괄 반		○ 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 비상근무 인력동원 및 상황전파 ○ 재해업무에 대한 통제 및 실무반에에 대한 지휘 감독 ○ 본부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분야별실무반	선원선박반	○ 내항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및 방재업무 ○ 여객터미널(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방재업무 ○ 선박 및 선원의 사고수습 업무지도 및 사고수습 관계 기관간 업무협조 ○ 기타 소관분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항무반	○ 선박(여객선 및 내항어선 제외) 입, 출항 통제 및 항내 재박선박에 대한 방재업무 ○ 항만시설장비(항만법 제25조에 의한 시설장비)에 대한 방재업무 ○ 항만관재통신 시설에 대한 방재업무 ○ 기타 소관분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해양환경반	○ 항내선박 침몰 및 좌초사고 등에 따른 항로지장 유무 파악 ○ 기타 소관분야(해양오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수산관리반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피해에 대한 방재업무 ○ 연근해 조업어선에 대한 방재업무 ○ 기타 소관분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시설반	○ 항만(어항)시설 및 항만(어항공사장)에 대한 방재업무 ○ 기타 소관분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항로표지반	○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방재업무 ○ 기타 소관분야 재난발생시 대책수립 및 사후조치
행정지원반		○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상황실 설치, 통신시설, 사무집기, 차량 등의 지원 ○ 대책 실무반원 후생 및 급식 ○ 문서의 접수 및 발송

5.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가. 구　　성

○ 단　　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

○ 단　　원 : 관계 중앙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임직원·전문가로 구성

나. 기　　능

○ 해외재난 긴급구조 및 사상자 신원확인, 부상자 치료, 시신안치

○ 해외재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 및 정부대책 홍보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6. 중앙수습지원단

가. 구　　성

○ 단　　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

○ 단　　원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나. 기　　능

○ 재난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 자문·권고 또는 조언

○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원인 및 진행전망 등의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7. 중앙합동조사단

가. 구　　성

○ 단　　장 : 소방방재청장이 지명

○ 단　　원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나. 기　　능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 분석

○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안)의 작성

○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 조치계획의 수립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조 직



나. 기 능

○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다.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편 성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구조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반으로 편성하되,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 임　　무

- 상황총괄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및 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 소속원으로 구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인사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 비상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자원봉사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소속 공무원 및 참여희망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공보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소속 공무원 및 지역방송위원회소속직원으로 구성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9. 지역합동조사단

가. 구 성

○ 단 장 : 시·도지사가 지명

○ 단 원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나. 기 능

○ 피해상황 조사 및 총괄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중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조사결과를 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

제 10 절 긴급구조통제단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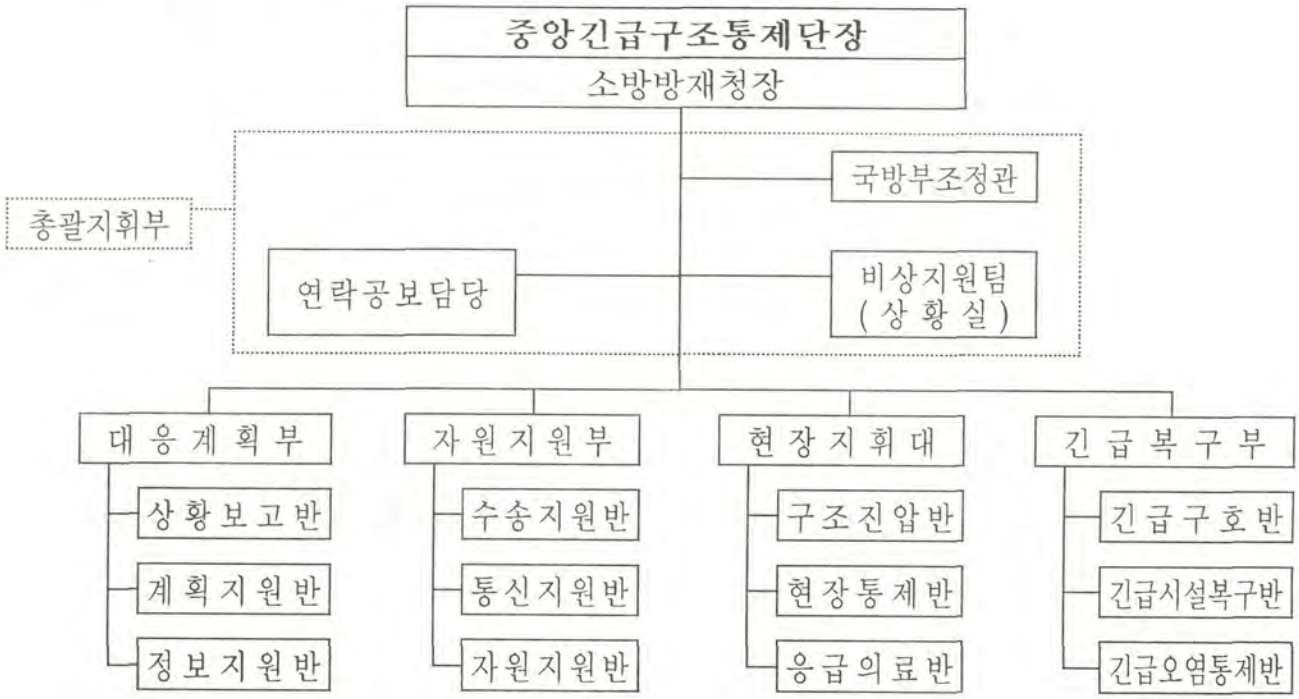

※ 이재민 구호관련 재해구호본부 조직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별도로 구성

나.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 조정 · 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국방부조정관	· 중앙 통제단장과 공동으로 국방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 · 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시 대규모 탐색구조 활동 지원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국회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 (상황실)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 · 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 · 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 · 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정보지원반	· 시 · 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과의 통신 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 · 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 · 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현장통제반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 · 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복구반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 · 도 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급오염통제반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 · 도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위원회

가. 구　　성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조　　직

○ 위 원 장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위원중에서 지명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위원장 포함 15인이상 20 이내

-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 자

○ 간　　사 : 소방방재청 긴급구조업무 담당과장

다. 기　　능

○ 국가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 계획의 수립

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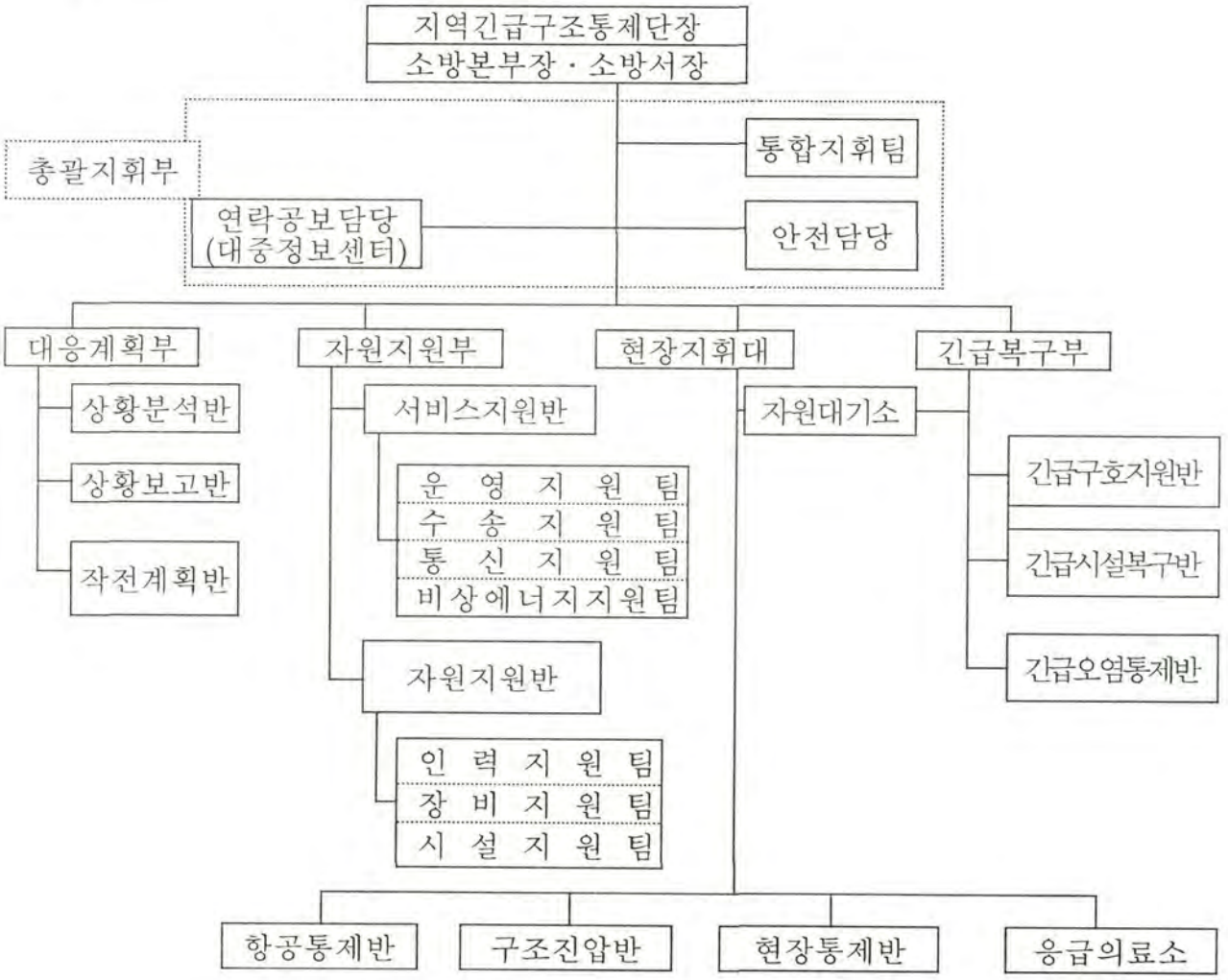

※ 시 · 군 · 구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 · 운영

나. 기　　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 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 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 조정 · 통제 · 시 ·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 합 지 휘 팀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전 담 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 황 분 석 반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 황 보 고 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 전 계 획 반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 비 스 지 원 반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 원 지 원 반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 조 진 압 반	· 각 시 · 군 · 구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그 밖에 각 시 · 군 · 구 구조진압반 지휘 · 조정 · 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현 장 통 제 반	· 시 · 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응 급 의 료 반	· 시 ·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 공 통 제 반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 급 구 호 반	· 시 ·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 급 시 설 복 구 반	· 시 ·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 · 군 · 구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긴 급 오 염 통 제 반	· 시 · 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 · 군 · 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 조정 · 통제

4. 현장응급의료소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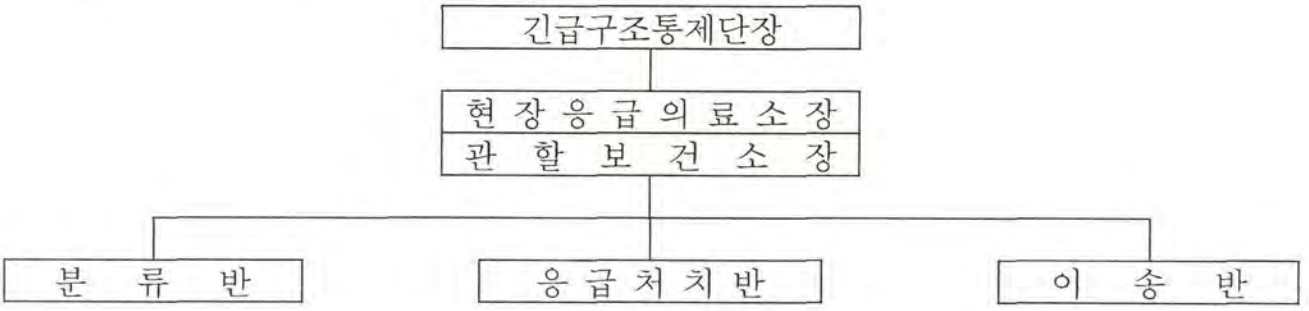

나.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다.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5. 119국제구조대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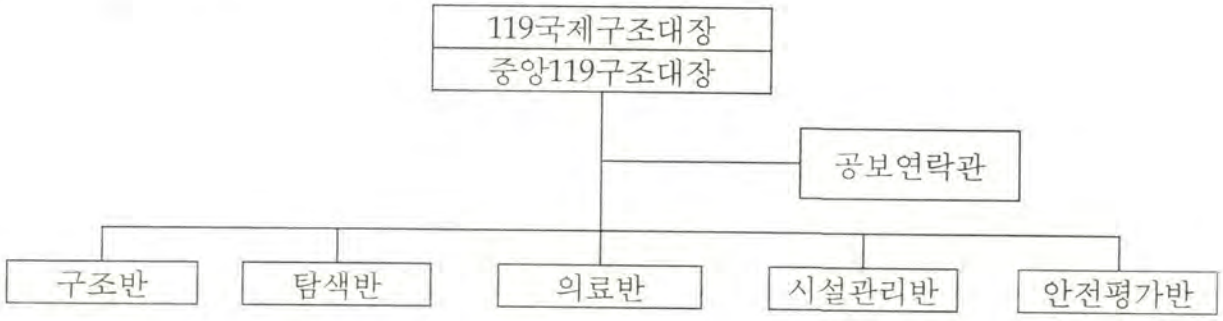

나. 기　　능

○ 해외재난발생시 대한민국 국민 긴급구조활동

○ 재난발생 당사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시 긴급구조 지원

다. 실무반 임무

- 공보연락관 : 대외연락, 상황유지 및 홍보
- 구　조　반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전개
- 탐　색　반 : 요구조자 검색 및 인명탐색활동
- 의　료　반 :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활동
- 시설관리반 : 긴급구조활동 물자보급 및 장비관리
- 안전평가반 : 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해물질 검측

제 11 절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 등]

【해양수산분야】
○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공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분야】
○ 재외공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식물검역소
○ 지방체신청
○ 국립검역소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노동청
○ 지방항공청
○ 지방국토관리청
○ 홍수통제소
○ 지방산림관리청
○ 철도청지역사무소
○ 시 · 도의 교육청
○ 지하철공사
○ 도시철도공사
○ 농업기반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자원재생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방송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산업안전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부산교통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대한적십자사
○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 · 관리자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 시설 관리기관
○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제 12 절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해양재난에 한함)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 국방부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경찰청
○ 기상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대한적십자사
○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 재해구호협회
○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보건소
○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농업기반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 대한석탄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항만공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원

< 풍수해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지구환경 악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향후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

- 해양수산시설은 대부분 바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태·풍랑 등 기상악화시 피해발생 상존

- 최근 10년간 연평균 1,106억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름철인 6~8월에 집중

○ 따라서, 풍수해의 자연적 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인적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및 각종 항만 등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방재분야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등 종합적 방재대책 수립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 국민이 편안한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 항만·어항 및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경감 대책 수립
-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 강화, 방재인력의 전문화
- 기초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근원적 예방대책수립
- 방재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실시간 현장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합리적 사전대책수립
-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경보전파, 대피·구호·구조 대책의 체계화 및 사회질서유지
- 신속·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의 수집·전달에 필요한 통신수단 강화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초기대응 이행과 시설별 응급복구체계 확립

○ 항구복구 대책의 확립

-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과 재난교훈의 전승
- 반복된 재난방지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목표로 해양방재 기반조성
- 복구비 지원의 합리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율적인 방재집행 강화
- 사유재산에 대한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위험요율 산정 기반 마련 및 시행

나. 추진전략

○ 항구적인 재난 예방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망 구축 및 실시간 정보공유 대책 확립

○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개량 복구체계 확립·시행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공 통

○ 각종 방재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및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우선적 고려

○ 풍수해 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등 예방대책의 수립

○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 풍수해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 풍수해대비 교육·훈련 및 풍수해 관리예방 홍보

○ 방재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

○ 풍수해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의 수립과 시설물의 응급복구체계 확립

나. 항만·어항시설

1)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방재시설물의 점검·정비

- 2005년도 점검계획

점검일정	점검지역	점검대상	담당부서
3월	관할지역	○ 봄철 재난예방대책 추진 ○ 주요 시설물 방재 실태 ○ 공사장 재난 대비 실태 등	항만공사과
7월	관할지역	○ 여름철 재난예방대책 추진 ○ 주요 시설물 방재 실태 ○ 공사장 재난 대비 실태 등	항만공사과
12월	관할지역	○ 겨울철 재난예방대책 추진 ○ 주요 시설물 방재 실태 ○ 공사장 재난 대비 실태 등	항만공사과

○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특별관리

-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으로 관리 책임자 복수지정 등 특별관리

구 분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착수
항 만	대산항개발(1단계) 사업 축조공사	95,952백만원	외곽시설 2,526m 접안시설 460m 등	'02.10.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공사착수 시 공사현장별로 수방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해빙기, 우기 및 태풍기 대비 일제점검 등 실시
-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완공 또는 완성단면으로 시공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시행
-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하고, 태풍주의보 발효시 사전 확보된 보강자재로 임시보강 조치한 후 인원·장비를 안전지대로 대피

○ 기존 항만시설물 안전조치]

- 외곽 및 계류시설 등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상 취약 및 손상된 시설물은 유지보수계획 수립 시행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운영시설은 태풍기 이전에 시설물상태를 점검하여 취약부분 보수·보강 등 조치하고, 배수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야적장은 즉시 보수조치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 - "현재 해당시설 없음"

- 소관 항만시설물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재난위험시설이 지정 고시될 경우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

2) 항만운영시설 안전대책 강구 - 항무반 내용

3) 화물보호 대책 강구 - 항무반 내용

4)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재사업 추진 - 해양환경반 내용 추가

○ 항만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 방파제 축조, 유지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 '05방파제 축조 및 보강 : 411m, 12,500백만원

○ 어항시설의 확충

- 재해발생시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국가어항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 조기 완공
- '05국가어항건설 : 7개항, 17,169백만원

5) 해안저지대 침수 예방대책

○ 사리기간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 운영

- 일년 중 예보조위가 최대로 나타나는 음력 7월 15일 이전 10일간

○ 사전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및 붕괴우려 항만(어항)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 강화
- 소규모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항구대책

-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흔적조사 실시
- 위험방조제 및 방파제 개보수를 위한 계획 수립

다. 수산시설

1) 어선 피해경감대책

- 노후어선 대체 추진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철저
-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입출항통제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민·관·군·업체간 구난체계유지
- 구난·구조장비의 현대화 추진
- 어선피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2) 수산증·양식시설, 어망·어구 피해경감대책

- 기상악화 예상시 채취가능한 양식물은 사전채취로 유실 방지
- 닻, 부자, 수하연 결속상태의 정기점검 보수 및 보강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과 피해방지대책 수립

- 각종재해로 어업피해가 빈발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어장개발 억제
-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
-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 수립
-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2. 대비대책

가. 응급 대응체제 정비

○ 해양수산부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한 단계별 필요한 사항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 체제·연락망 및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등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 방재중추기능의 확보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나. 방재훈련 실시

○ 정보의 수집·전달, 구원요청 등 기동력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단위의 실천적인 방재훈련 정기적 실시

○ 군부대·민간봉사자단체·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훈련 실시

○ 방재자재 및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작성

다.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 기상·해상·수위 등의 상황관측 정보수집·전파체제 및 시설정비
- 야간 및 휴일 등 행정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 위성 및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난관련정보의 수집체제 정비

○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의 구축으로 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 추진

○ 통신수단의 확보

-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경로화, 통신 케이블·CATV 케이블의 지중화 촉진, 무선을 이용한 자료보관대책
-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대책
- 이동통신의 통신폭주 대책 강구, 비상시 운용계획 조정 및 피해상황의 화상전송 무선시스템 구축

라. 방재물자 확보·비축

○ 비축물자 현황

구 분	규 격	단위	비축계획량	현 보유량	비 고
함 선	30*14*2.15	척	2	2	대산항

마. 구조·구급 대책 수립

○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구조용 장비 및 자재확보

○ 유관기관간의 상호 관련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정비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자연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설치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고, 운영 등은「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함

- 중점대응기간 : 5. 15 ~ 10. 15

-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인원 증원

· 준비단계 : 상시대비 및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시

· 비상단계 :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우려가 높을시

○ 단계별 주요임무

- 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

반 별	조치할 사항
공통사항	○평상근무 위치에서 방재업무 개시 ○비상근무요원 및 관련 업·단체관계자 비상연락망 점검 ○반별 소관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점검
총괄반	○태풍동향 파악 및 기상정보 수집, 전파 ○비상근무조편성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유지
선원선박반	○여객동향 및 여객선운항 동정 파악 ○잔류여객 수송대책 강구

반 별	조치할 사항
선원선박반	○여객선 피항 및 안전운항 대책 강구 ○선원안전대책 및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방지 대책 강구
항무반	○재박선박 현황 파악 ○재박선박 및 운항선박에 대한 기상상황 전파 ○정박선박에 대한 당직보강 및 경계강화 지시 ○항만관재통신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대책 강구 ○도선사 유선대기 및 비상근무 준비지시 ○선박대피시 예선운영 계획 검토
해양환경반	○개항질서 단속 및 순찰주기 강화 ○해양오염발생 대비 비축물자 현황파악 및 보강조치 ○위험물 하역부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관리반	○수산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 보호대책 강구 시행 ○어구·어망보호 등 안전조치 강구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대피 지도 협조 ○수산시설 재난방지를 위한 독려반 활동지도 ○기상상황 전파
시설반	○항만(어항)시설 순찰강화 및 공사장수방단 조직 현황파악 ○진행중인 항만(어항)공사장 공정파악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유지 ○방재자재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항로표지반	○유·무인표지 정상 작동유무 점검정비 실시 ○노후시설 및 피해우려시설 점검정비 ○진행중인 항로표지 시설공사 공정파악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 유지 ○방재자재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행정지원반	○자연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통신시설, 사무집기, 차량 등 사전준비 검토 ○재해발생시 대비 전직원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 준비단계(사전대비체제)

반 별	조치할 사항
공통사항	○본부지시 등 필요시 합동 비상근무 실시 ○각반 비상근무 비상연락태세 유지 ○재해예방조치 현황 파악 및 기록유지 ○관련 업·단체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 독력
총괄반	○자연재해대책본부 구성 등 운영 및 상황 본부 보고 ○태풍동향 분석, 진로감시 및 상황전파
선원선박반	○여객선 피항 및 안전운항대책 수립 시행 ○여객수송현황 파악 및 잔류여객수송 대책 시행 ○해운조합, 선주협회, 선사, 대리점등과의 긴밀협조 유지 및 선박안전관리 강화 조치 ○여객터미널에 대한 순찰강화 및 피해방지
항무반	○재박선박에 대한 항해요원 재선 지시 ○항만관재통신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대책 강구 ○항만별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및 피항대책 강구 ○재해발생 우려 항만의 재박선박대피 시행 ○전 도선사 비상근무 및 전 예선 출항대기 조치 ○재박선박현황 지속적 파악
해양환경반	○해양오염발생 유무확인 및 침몰선박 발생 파악 ○위험물 하역부두 시설물 안전관리상태 점검
수산관리반	○수산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 피해방지 대책 강구 ○어구·어망보호 등 피해방지 대책 강구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대피 지도 협조 ○수산시설 재난방지를 위한 독려반 활동 지도 ○재해대비 어선인 행동요령 방송
시설반	○항만(어항)시설 및 공사현장 순찰 강화 ○방재자재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강구 ○방파제, 안벽, 돌핀등 항만시설 피해방지 활동 강화 ○공사현장 책임자 현지 상주 지시
항로표지반	○유·무인표지 시설 및 표지선 점검정비 및 순찰강화 ○항로표지 공사현장 수방단 비상대기 및 순찰강화
행정지원반	○재해대책본부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 설치 ○재해대책본부 근무요원 급식지원

- 비상단계

반 별	조치할 사항
공통사항	○각반 비상근무조 전원 비상근무 실시 ○재해예방 현황파악·기록유지 ○피해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시행 ○소속기고나 피해복구 지원대책 강구
총괄반	○재해발생사황 종합 및 보고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파악·유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시사항 처리
선원선박반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재해상황조사 및 북구대책 수립시행 ○재해발생선박 및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대책 수립 ○해운조합, 선사 등과의 협조체제로 피해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응급조치
항무반	○재박선박 대피 현황 및 피항차 입항선박 현황 파악 ○소속기관별 재박선박 및 관내 피항선방 피해상황 조사 ○항만관재통신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긴급복구 ○위험해역에 대한 지속적 선박운항 통제실시
해양환경반	○해양오염 및 위험물 하역부두 피해현황 파악·보고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응급조치
수산관리반	○수산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 피해현황 파악·보고 ○어구·어망보호 등 피해현황 파악·보고 ○지역별 담당직원 활동지휘 및 현황파악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지도 ○수산관련 피해확산 방지대책강구 시행
시설반	○항만공사장 수방단 활동지휘 및 현황파악 ○항만시설의 피해조사 및 피해확산 방지대책 지속적 강구 시행 ○피해발생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 시행
항로표지반	○ 유·무인표지 및 공사현장 피해발생 현황 파악·보고 ○ 피해발생 항로표지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 시행
행정지원반	○재해대책본부 통신장비 운영 유지 ○재해대책본부 사무집기 및 근무요원 급식지원 ○재해대책본부의 문서수발

- 재난 세부업무별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관리)
- 각 반 내용 추가

분 류		담 당		연락처		
분 야	재난업무	직 급	성 명	사무실	집	휴대폰
항만공사	항만공사 총괄	과 장	손형모	041)660-7691	02)6092-1161	011)9701-1161
	대천,비인,홍원, 삼길포항 담당	계 장	문용근	041)660-7692	02)2209-2703	011)9617-0947
	대산,태안, 모항, 당진, 안흥내항 담당	계 장	신형기	041)660-7698	031)691-5781	011)663-5781
	남당, 오천, 외연도, 안흥외항 담당	계 장	김용문	041)660-7696	02)382-5017	016)732-5018
	항만공사 재난담당자	직 원	안정섭	041)660-7695	041)681-7710	018)792-5641
	시설반 재난담당자	직 원	전종렬	041)660-7697	041)681-7172	011)416-7172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 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수산부 사고수습본부에 즉시 통보 및 보고

- 재난관리 부서간 연락 및 본부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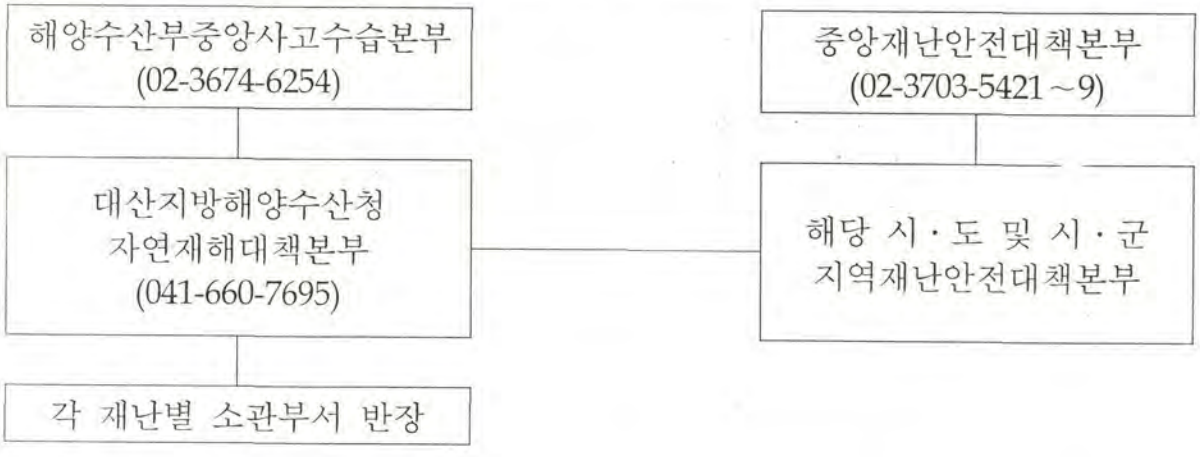

- 통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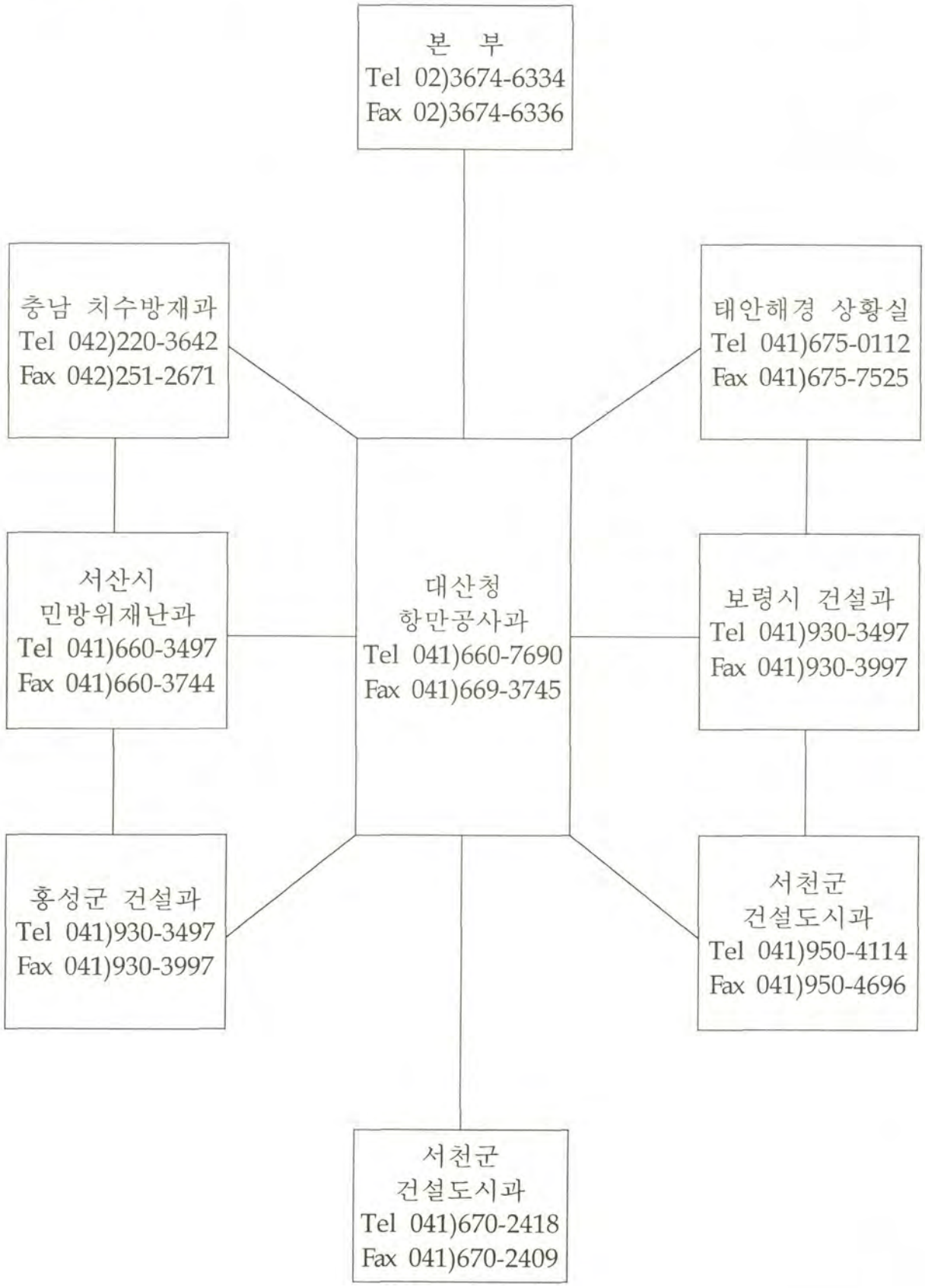
본 부
Tel 02)3674-6334
Fax 02)3674-6336
충남 치수방재과
Tel 042)220-3642
Fax 042)251-2671
태안해경 상황실
Tel 041)675-0112
Fax 041)675-7525
서산시
민방위재난과
Tel 041)660-3497
Fax 041)660-3744
대산청
항만공사과
Tel 041)660-7690
Fax 041)669-3745
보령시 건설과
Tel 041)930-3497
Fax 041)930-3997
홍성군 건설과
Tel 041)930-3497
Fax 041)930-3997
서천군
건설도시과
Tel 041)950-4114
Fax 041)950-4696
서천군
건설도시과
Tel 041)670-2418
Fax 041)670-2409

- 비상연락망

해 양 수 산 부

· 당 직 실
02)3674-6112~3
· 종합상황실
02)3674-6350~3,(f) 02)3674-6354-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660-7621

· 항만교통정보실 660-7660
· 보령수산기술관리소 931-6408

관 계 기 관

· 충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
042)220-3828, (f) 042)251-2696
253-4226
· 태안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674-5050 672-1695(f)
· 명지파출소 663-7112
· 대산소방서 663-8119(119)
· 서산시청 660-2497
· 서산기상대 663-0365
· 군부대(서산1대대) 669-5113
· 국정원 664-0113

* 도선사협회
664-5684, (f)681-4968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대산지부
664-9101(tel) 664-9104
* 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
933-5863
* 한국선급 대전지부
042)869-9086

사설부두 재난·재해 관리자 Hot line

소속	직위	사무실	휴대폰
삼성아토피나	운영팀장	660-6470	011-431-2230
현대석유화학	운영부장	661-1670	016-419-7685
현대오일뱅크	운영팀장	660-5611	018-224-3653
한국동서발전	연료과장	351-1263	016-9555-8002
한국서부발전	자재부장	670-3140	018-356-4629
한국중부발전	자재부장	930-2140	011-453-1097

여 객 선

· 신한·선우해운
934-8772~4, (f) 934-3769
· 한국해운조합보령출장소
931-0449, (f) 930-5005

예 선 지 원

· 남성예선 669-1043,(f)669-5298
· 서해선박 664-7623,(f)669-5298
· 대동항업 660-5649,(f)664-8643
· 해양선박 681-7500,(f)681-7503
· 삼우해운 669-6555,(f)669-6444

* 보령항 : 한진 932-4959

홍해 032)772-3827

선 박 대 리 점

· 해양선박 681-7501~2,(f)681-7503
- 태안지점 674-0474~5,(f)674-0476
- 보령지점 932-5004~5,(f)932-5006
· 대동항업 664-8644~5,(f)664-8643
· 수정산업 681-6570~2,(f)681-6569
· 동진해운 669-6500, (f)669-6504

사 설 부 두

· 현대오일뱅크 660-5631 (f)660-5111
· 삼성종합화학 661-1680, (f)660-6479
· 현대석유화학 660-6478, (f)681-9183
· 태안화력 670-3144, (f)670-3214
· 보령화력 930-2145, (f)930-2196
· 당진화력 351-1154, (f)351-1314

C I Q 기 관

· 천안세관대산출장소
681-5121, (f)681-5127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681-6181, (f)681-6182
· 군산검역소 대산지소
681-6005, (f)681-6006

다.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대규모 재난으로 교통두절시 항공기를 이용한 피해상황 파악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라.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항만시설에 대한 침수피해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본부사고수습본부에 즉시 보고 및 긴급 응급조치 실시
- 침수에 따른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에 대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복구작업 실시

마.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수산관리과 : 92개소(태안군:71, 서산시:12, 당진군:8, 아산시:1)

시군별	어촌계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폰
태안 (57)	안 흥	김귀동	근흥면 정죽리 1144	675-5220	011-9804-2696
	가의도	김희연	근흥면 가의도리 380	675-1300	011-496-1565
	신진도	최선일	근흥면 신진도리 77	674-1768	011-451-1768
	마 금	최병정	근흥면 마금리 36-2	674-1230	011-457-2426
	용 신	김용균	근흥면 용신리 50	673-0117	011-9767-3446
	채석포	박만승	근흥면 도황리 8-31	673-2289	011-328-9787
	도 황	박태옥	근흥면 도황리 1526-19	673-1541	017-434-1541
	정산포	천남수	근흥면 정죽리 정산포 319	673-0717	011-431-4717
	안기리	이명길	근흥면 안기리 2구 239	673-0935	017-393-0935
	의항 2구	김석수	소원면 의항리 316	675-7576	016-465-9095
	의항 3구	이완섭	소원면 의항리 3구 151	675-9436	019-674-9436
	천리포	지재돈	소원면 의항리 산198	672-9688	011-226-9688
	만리포	국경호	소원면 모항3리 산16	672-9121	016-411-9171
	모항 2구	정돈영	소원면 모항리 617	672-9321	011-9033-9321
	모 항	송옥인	소원면 모항리 314	672-9121	016-411-9171
	파 도	김필문	소원면 파도리 396	672-8922	017-437-8922
	법 산	변정문	소원면 법산리 산5	674-5576	017-419-5570
	신 덕	최홍완	소원면 신덕리 160	672-6036	017-426-6036
	송 현	안동천	소원면 송현리 522	672-6329	011-411-6329
	소 근	김형갑	소원면 소근리 264-2	674-6704	011-9400-6704
	청 산	정상복	원북면 청산리 53	672-5065	011-441-5031
	방 갈	박상현	원북면 방갈리 426	674-7111	011-9802-7111
	어 도	김현수	태안읍 도내리 468	673-9403	011-9808-9403
	활 곡	이학재	이원면 당산리 29-20	672-8649	017-424-8649
	당 산	안계순	이원면 당산리 296	672-7924	011-9919-4297
	갈음이	설덕영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675-1314	011-9817-1314
	삼 동	김진묵	이원면 내 리 384	675-7906	017-434-4592
	사 창	이을래	이원면 사창리 산41-2	672-8203	017-208-3629
	당 암	최시우	태안군 남면 당암리 62	674-6719	011-9778-2001
	드르니	최종진	태안군 남면 신온2리 765	675-5387	010-6757-5387
	곰 섬	강천순	태안군 남면 신온리 923	674-8067	011-9809-8067
	진 산	정진우	태안군 남면 진산리 275	672-2507	011-235-2501
	몽산1리	장성기	태안군 남면 몽산1리 576	672-2616	016-9887-2616
	신온마검포	박훈교	태안군 남면 신온1리 470	675-5723	017-434-5723
	몽산포	이장준	태안군 남면 몽산2리	672-2002	017-416-7144
	원청리	김종양	태안군 남면 원청리	674-1814	017-432-1813

시군별	어촌계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태안 안면 35	누동1리	이 재 구	태안군 고남면 누동1리 226-1	673-6600	019-436-6568
	고 남	박 영 복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264-11	673-7072	011-9078-3728
	삼 봉	강 종 국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818		016-9225-5460
	라 향	양 진 목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856		011-739-6065
	외 도	황 원 영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68		011-431-5137
	황 도	조 동 오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64-32	673-5102	011-9814-5102
	신야2리	김 금 철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80-3		011-424-5804
	장 돌	이 원 식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382-19		016-446-6552
	대 야 도	김 용 생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455-2		011-283-6463
	누동3리	이 강 복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855	673-6701	019-473-7072
	율 포	유 영 성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69-89	673-6178	019-474-3742
	창기4리	여 현 구	태안군 안면읍 창기 4리	673-3795	
	호 포	전 명 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264-25	673-3334	011-425-4577
	정당2리	이 문 옥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385-2		016-685-3365
	창기7리	장 덕 윤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195-53	673-4985	
	구 매	편 승 천	태안군 고남면 고남5리		019-474-6608
	창기3리	최 상 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10-35		017-473-8119
	영 항	편 승 환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314-4		017-402-7333
	창기2리	정 대 수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20-20		010-6480-5578
	정당1리	박 영 복	태안군 안면읍 정당1리 445	673-3335	011-9078-3728
	방 포	송 인 형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1317-13		011-433-4301
	통 개	이 종 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0		010-5673-4909
	가경주	조 병 국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795-3		019-411-6557
	귀곡	박 용 근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241-6		017-425-6745
	탄개	김 형 규	태안군 고남리 185-1		011-9826-7868
	장곡4리	성 낙 근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333-14	673-6782	
	화성	임 풍 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6		011-9818-4520
	안장곰	조 태 성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31		016-725-4520
	백사장	김 규 택	태안군 안면읍 창기5리 1267-1		017-405-7766
	신야1리	박 현 규	태안군 안면읍 신야1리 120-20		017-434-6086
	누동2,4리	장 태 종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019-673-7534
	그물목	이 항 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6리 224		010-9838-3556
	만수동	편 용 봉	태안군 고남면 고남7리 383-6		010-9922-6659
	평풍	김 승 운	태안군 안면읍 정당3리		011-677-3522
	옷점	유 선 용	태안군 고남면 고남4리		016-9770-0025

시군별	어촌계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서산 (12)	팔 봉	황 기 연	팔봉면 호 리 27	662-5654	017-417-5654
	고 파 도	이 만 우	팔봉면 고파도리 201	662-2822	011-9805-2821
	가 로 림	한 광 천	지곡면 도성리 505-6	662-0749	017-214-0749
	창 리	배 진 호	부석면 창 리 293	669-7872	011-438-7872
	간 월 도	안 도 근	부석면 간월도 6번지	669-1781	011-427-4622
	화 곡	이 현 의	대산읍 화곡리 국사빌라	663-7501	017-255-7501
	중 왕	윤 양 모	지곡면 중왕리 290	662-9012	019-502-9012
	왕 산	윤 복 모	지곡면 중왕리 2구 363	663-8429	019-410-8429
	신 성	박 병 석	지곡면 도성리 349	662-9073	016-778-9073
	웅 도	윤 병 일	대산읍 웅도리 산78번지	663-8905	011-433-8905
	오 지	한 상 완	대산읍 오지리 486	663-8976	017-406-3344
	대 로	김 형 태	대산읍 대로리 282	663-8606	011-453-8605
당진 (8)	가 곡	최 순 기	송산면 가곡리 산29-7	353-4799	011-302-3132
	고 대	임 오 흥	송악면 고대리 194	356-2961	016-430-2961
	교 로	전 준 환	석문면 교로리 995	353-1128	011-428-1128
	난 지 도	방 석 호	석문면 난지도리 116	352-1321	016-9555-1321
	장 고 항	송 대 석	석문면 장고항리 583-2	352-4649	011-214-4646
	신 평	손 기 호			011-9811-9716
	한 진	서 승 성	송악면 한진리 93	356-2212	018-619-3500
	대 호 만	김 두 영	지곡면 화천리 301-9	664-4189	011-458-4189
아산 (1)	영 인	박 종 술	인주면 걸매리 123	553-5434	017-428-2048

▣내수면양식계 구성현황

◐ 수산관리과 : 3개소(당진군:2, 아산시:1)

시군별	양식계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폰
당진	대 호 호	유 근 실	고대면 당진포리 743	353-8933	016-9555-8933
	석 문 호	이 천 덕	송산면 가곡리 46-5	353-6255	017-231-4688
아산	곡 교 천	서 수 열	인주면 문방리 14		011-9823-2536

◐ 보령관리소 : 39개소(보령시 : 19, 서천군 : 14, 홍성군 : 6)

시군별	어촌계명	계장명	주 소	전화번호
보령시 (19)	군 헌	고영욱	신흑동 545-5	934-8208, 011-429-8207
	주 교	박종학	주교면 송학리 646-2	931-2111, 019-9288-7899
	사 호	최창순	천북면 사호리 668	641-8929, 017-415,9829
	낙 동	최창호	천북면 낙동리 701	641-9282
	학 성	최경환	천북면 학성리 544	641-8992, 011-687-9792
	소 영	김종구	오천면 소성리 700-59	932-4190, 019-430-4190
	육 소	김용희	대천동 337-7 무학A 104호	931-4224, 016-420-6642
	점 치	김용권	오천면 원산도리 249	936-6001,011-401-6405
	진 창	박상규	오천면 원산도리 1498	936-6427,011-409-8349
	선 진	김종식	오천면 원산도리 440	936-6296,011-431-6296
	고대도	김양근	오천면 고대도리 9	936-2137,016-497-2137
	장고도	박재순	오천면 장고도리 331	932-5034
	효자도	오계진	오천면 효자도리 334	935-2536, 011-9420-2536
	삽시도	편무영	오천면 삽시도리 162-4	932-1417, 011-458-4567
	녹 도	정일수	오천면 녹도리 260	936-3965, 017-405-3965
	외연도	편기범	오천면 외연도리 405	935-0342, 011-9808-0342
	무창포	김지호	웅천읍 관당리 428-2	936-3510, 011-338-3394
	광 암	한용택	웅천읍 황교리 394	936-7101
	증 산	이길용	주산면 증산리 480	935-1895
홍성군 (6)	궁 리	이성섭	서부면 궁리 711	632-8408, 011-433-8408
	상 황	엄광용	서부면 상황리 686	632-8716,011-402-8048
	어 사	김정호	서부면 어사리 731	631-8178,017-422-8178
	남 당	신건식	서부면 남당리 482-1	633-5248, 017-702-5248
	신 리	김관진	서부면 판교리 899	642-3914, 011-424-3914
서천군 (14)	월하성	최용수	서면 월호2리 550	953-9292,011-427-9292
	마 량	유시준	서면 마량리 241	952-3052
	도둔리	최진연	서면 도둔6리 498	952-2669,016-247-2669
	홍 원	이운우	서면 도둔9리 1006	952-3382,016-9510-3382
	내도둔	이상엽	서면 마량리 67	952-3037
	요 포	이상태	서면 도둔10리 799	952-2095,011-425-2095
	비 인	유수근	비인면 성내리 551-1	952-5328
	송 림	이의승	장항읍 신창1리 194-31	956-6549
	신 창	여길욱	장항읍 신창리 164-79	956-3269(자)5633(사)
	원 수	허용원	장항읍 원수2리 913	956-3120
	송 석	이상진	마서면 송석리 545	952-5603,018-374-5603
	월 포	김종호	마서면 월포리 409	952-6998
	백 사	이종인	마서면 남전리 56	952-7564
	죽 산	김장환	마서면 죽산리 231	952-5353

바. 시설물 응급복구

○ 각 반장 책임 하에 복구에 신속을 기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

○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는 해당 시·군 협조 자체 민방위대 및 보유장비를 투입, 긴급복구

○ 복구공사는 기 확보된 기자재와 인력,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

○ 필요한 경우 인근공사 시공업체의 장비 및 시·군 수방단의 지원을 받아 복구조치하고 추후 행정조치

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시 육상으로부터 해안가로 떠 내려온 각종 쓰레기

○ 해상양식시설물이 파괴되어 해안가로 떠 밀려온 각종쓰레기

4. 복구대책

가.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을 결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본부는 이를 지원)

나. 피해조사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각 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재난 원인분석 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해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분석관련 기술 검토와 자문 등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조사내용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조사결과

· 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예산수반 사항발생시 본부에 복구비 지원요청

다. 복구비 지원(본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미만의 시 또는 군 : 10억원 이상

마.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수요자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조사 선진화

- 선진기술을 접목한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추진
- 자자체와 협력하여 자율복구 방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강화

○ 수요자중심 복구체계 확립

- 피해조사 시 민원 청취제도 도입

바. 복구사업 추진의 투명성 · 효율성 강화

○ 개발계획과의 연계

- 기존 각종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복구계획 수립 시행으로 사업효율성 극대화
- 복구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 관리 감독 기능 강화
- 피해원인의 근원적 규명을 통한 항구복구대책을 시행하여 피해 재발 방지

제 3 절 재정·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및 사 업 명	총투자계획(2005~2009)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420		12,500
방파제(항만)	1,223m	36,800	411m	12,500
국가어항건설	7개항	97,944	7개항	17,169

2. 세부사업내용

가. 항만분야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산항 개발 및 비인항 방파제축조공사 등

○ 사업기간 : 2005~2009(5년간)

○ 소요재원 : 국고 36,800백만원

○ 사업내용 : 방파제 축조 및 보강 1,223m

나. 어항분야

1) 사업개요

○ 사업명 : 어항시설사업(방파제 등) 지속개발 유지

○ 사업기간 : 2005~2009

○ 소요재원 : 97,944백만원(국고)

다.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명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항만	36,800	12,500	11,900	5,400	6,000	1,000
국가어항	97,944	17,169	20,193	20,194	20,194	20,194

< 설해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설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은 물론 자율적 방재체제의 전환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04년 3월 100년만의 3월중 기록적 폭설로 초래된 고속도로 정체 등 재난관리에 제반 문제점 노출

○ 비상상황 발생시 계획적인 인력·장비·물자 동원체계 미비로 조기사태수습 능력의 근원적 한계

○ 따라서, 체계적인 인력·장비·물자 비상동원시스템 구축 및 고속도로 교통정체 등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마련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정책 추진

○ 해양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 추진

○ 현장행정지도 강화로 자율방재체제 전환 유도

○ 교통방송 등 방송매체 적극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나. 추진전략

○ 민간모니터위원 활용 신속한 상황관리로 한 단계 앞선 사전예방활동 전개

○ 제설인력, 자재, 장비 및 각종 비축물자 확보

○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사용, 관리실태 등 계도 강화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비대책

가. 설해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 설해예방을 위해 제설, 동해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

○ 눈사태방지를 위한 삼림조성이나 눈사태방지시설의 정비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설해발생 대비, 조사·연구

○ 설해예방 조직 정비, 물자와 자재 비축·관리 및 장비 확보

○ 해양수산시설 설해경감대책 강구

2) 항만·어항분야

가) 설해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의 확보

○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제설요원 동원계획

○ 폭설 등 눈의 하중에 의한 붕괴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안전성 확보

나) 항만운영시설

○ 민간방제단 및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체제 유지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폭설대비 유지기능 점검 및 보수

○항만운영시설별 피해예방대책 수립

- 하역시설 및 화물보호대책 강구

3) 수산분야

가) 수산증 · 양식시설 피해경감 대책

○ 원인별, 계절별, 지역별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강구

○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

○ 양식시설물의 폭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안전대책

○ 양식장 취 ·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가동계획

○ 출하 가능 양식어류 등의 사전 출하 판매계획

○ 양식어류질병 대비를 위한 어병검사 계획

○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 측정계획

나) 선박 피해경감 대책

○ 눈의 하중에 의한 소형어선 침몰 방지 등 안전대책

○ 선박 출입항 통제 계획 등

2. 대응대책

가. 설해발생 직전의 대책

1) 설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대규모 폭설 예상으로 해양수산시설 등 피해우려시 소관 방재 담당 직원 비상소집 및 관계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 기상특보상황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운영

- 사고수습본부 설치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고, 운영 등은「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함

- 중점대응기간 : 12. 1 ~ 3. 15

2) 연안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예 · 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 · 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지방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해상 항해 · 조업 선박에 대한 기상특보상황 실시간 전파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지역재난수습본부 설치

○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 재난현장 상황파악,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3.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 · 운영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 운영

○ 재난원인분석 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필요시 학계·민간

  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청장외 직원들로 반편성 운영
- 조사내용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조사결과

·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예산수반 사항발생시 본부에 복구비 지원요청

나. 복구비 지원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다.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미만의 시 또는 군 : 10억원 이상

라.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수요자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조사 선진화

- 선진기술을 접목한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자율복구 방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강화

○ 수요자중심 복구체계 확립

- 피해조사 시 민원 청취제도 도입
- 의연금품 기부체계 개선

마. 사유재산에 대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운영

○ 사유재산에 대한 적정·적시적 피해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험제도 도입

○ 기존 무상복구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 조정

< 해일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태풍이나 온대성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에 대비 대국민 예·경보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및 저지대 등 해안시설물의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이변현상이 일상화되고 도시화·산업화 자연재난요인이 가중

○ '03년에는 남해동부지역에 해일을 동반한 태풍(매미)이 내습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 따라서, 해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안제방과 수문의 정비 등의 구조적인 면과 경계, 피난체계의 강화라는 비구조적면이 일체가 된 종합적인 대책 강구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매립지 등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강구

○ 대피장소 지정 및 필요 시설·설비 정비

○ 해일대비 연안방재훈련·교육·홍보 강화

○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

나. 추진전략

○ 과거 해일피해 등을 분석, 대국민 홍보방안 강구

○ 해일 예측 능력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망 구축

○ 민·관·군이 일체화된 해일대비 종합훈련체계 구축

○ 해안과 해안부근의 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작성 보급·활용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해일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 해안제방과 수문 정비 등 구조적 대책 및 피난체계 강화 등 비구조적면의 일체화

○ 해일 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등 예방대책의 수립

○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 해일 예측·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홍보

○ 방재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

○ 해일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의 수립과 시설물의 응급복구체계 확립

2) 주요 해양수산시설 피해최소화

가)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해안 비상대처계획 마련

○ 재해영향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재해의 가능성과 영향의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

○ 매립지 등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진

-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
- 각급 행정기관의 재해영향성 검토 가능 행동요령 작성·활용

○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다중이용시설, 해안지역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나) 예·경보체계 강화

○ 해일 내습 이전에 관련 기상·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일고를 추정,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성

다) 지역관계자가 동참하는 방재대책

○ 주민, 해안이용자, 기업, 행정이 해일위험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일체적으로 대처

라) 동시발생 재난에 대응

○ 호우에 의한 내수범람과 산사태, 토사 재난 등 해일 발생시에 동시에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을 고려

마) 피해형태의 변화에 대응

○ 인구, 배후지 자산의 집적 등에 더하여, 지하시설로의 해일침수 등 근년의 피해형태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

바) 해일대책 강화

○ 월류한 해수가 장시간 저수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대책 동시 강구

○ 방재시설 정비 외 유지·관리방안 마련

○ 해안과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 항만, 어항은 이용시설의 경제성과 안정성 고려

○ 임해단지의 재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활용, 해일에 강한 토지계획 추진

○ 임해단지에서는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고 지하철 등의 지하공간에는 방조문 등의 침수대책 마련

○ 항만, 어항에 있는 선박과 어구 등의 유출에 의해 배후지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

사) 해안·항만·어항·수산시설물 피해경감대책

○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재사업 추진

- 매립지 호안 등의 설계시에는 파랑 및 고조에 의하여 매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매립지의 표고를 현지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 연안정비시설의 확충 - 해양환경반 내용 추가

○ 항만·어항시설 피해경감대책

- 항만(어항)시설의 확충

· 방파제 축조 등 시설 조기 확충

- 해일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등 예방대책 수립·시행

○ 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

- 어선피해 경감대책

· 노후어선 대체 추진

·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입출항통제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민 · 관 · 군 · 업체간 구난체계유지

· 구난 · 구조장비의 현대화 추진

· 어선피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 수산증 · 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기상악화 예상 시 채취가능한 양식물은 사전채취로 유실 방지

· 닻, 부자, 수하연 결속상태의 정기점검 보수 및 보강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과 피해방지대책 수립

·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아) 해일경보 발령시 예방대책

○ 조석이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통과가 겹칠때를 대비 점검 기간 설정 운영

- 대조기와 태풍 통과시기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이전 5일간

○ 사전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 정비

- 해안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주민 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우려 방조제 보강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피해발생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위험시설별 장비 및 인력 지정 관리

○ 항구대책사항

- 해일 피해흔적조사 실시 및 지역별 해일고 높이 정립
- 연안시설물 및 단지 조성시 해일 저감을 위한 방어구역 설정 등 장기대책 강구
-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흔적조사 실시
- 위험방조제 개보수 5개년계획 수립 추진
- 사설방조제에 대한 일제점검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 방조제 복구에 대한 설계, 기술지도 책자 발간

자) 해일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 재난의 발생 등 자연현상 그 자체의 이학적·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인간행동이나 정보전달 등 사회학적분야에 관한 연구도 병행

차)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처·기관별로 해일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은 해일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해일대비 연안지역 훈련

○ 지역 및 직장 등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해일발생을 가정한 연안지역 훈련 실시

- 경계순찰훈련, 정보전달 훈련, 피난훈련, 피해자 탐색구호훈련, 의료구호훈련 등 실시

○ 관계부처 주관으로 관련기관별 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응급복구 등 훈련실시
-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훈련 실시

2) 지역자율방재조직 구축 지원

○ 수방단을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원로, 통·리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

- 지역자율방재조직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봉사단체가 연계, 재난발생시 민간봉사자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활동환경 정비

3) 기업의 방재활동 촉진

○ 해일 발생시 종업원 안전, 고객의 안전, 경제활동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재난시 표준행동지침의 작성, 방재체제의 정비, 방재훈련 실시

○ 사업장종사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방재훈련 참가 유도

다.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신속·정확한 기상·해양예보를 위한 장비확충 및 기법개발

가) 기상·해양관측시스템의 입체화

○ 기상관측망 확충 보강(기상청)

- 악기상 탐지영역 향상을 위한 기상레이더 확충, 노후 기상레이더 교체, 기상위성 시스템 보강, 자동기상관측 장비 확충 및 교체, 고층 기상 관측망 확충

○ 해일 모니터링망 구축

- 서해 종합 해양기상 관측기지 구축, 해일 모니터링망 구축 등 해양 기상 관측망 확충

나) 기상정보통신 고도화

○ 기상정보통신시스템 및 실시간 해양정보수집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통신망 교체·보강 등 기상·해양 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

○ 무선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기상·해양 정보 실시간 교환 및 지원체제 향상

다) 해일피해 저감기술 개발

○ 해일, 태풍 등 한반도 악기상 조기감시 및 예측기술 집중 개발

○ 국가경제 및 산업진흥과 밀접한 중·장기예보 정확도 향상기술 개발

○ 수자원, 에너지, 해운 등 수요중심의 산업응용기술 개발

○ 기상재난 저감을 위한 남·북한 공동 기상기술 개발

라) 악기상 집중관측사업 및 연구

○ 태풍 및 악기상에 의해 발생되는 해일에 대한 입체·관측 생산체계 구축

○ 준 상시 해일 관측·분석시스템 구축

2) 해일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 사전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고도화(연안 → 외해)

- 태풍에 대한 직접관측시설 확충

3) 해일대책 연구 및 자료관리

○ 해일대책에 관한 연구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종합적인 방재정보의 자료집적, 각종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확충
- 재난유발 자연현상의 이학적·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인간행동·정보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한 연구도 수행

○ 자료의 보전

- 해일 발생시 각종 자료의 보전(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 등) 및 자료보관체제의 정비
- 시설물관리자는 원활한 복구를 위해 미리 중요한 소관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정비 및 피해방지

4) 연안방재 GIS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 국가, 시·도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 해일에 대한 연안방재 GIS 시스템 구축

- 범람해석 및 최대 침수심, 침수 최단 도달시간 추정

○ 연안방재 GIS 시스템의 보급 및 사회상황의 변화와 계산 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 내용 개선

2. 대비대책

가. 경계활동체제의 확립

○ 조위계, 파랑계 등 정비

○ 주민, 어선 등으로부터 통보 접수체제 정비

○ 경계순찰을 위한 사전준비 및 장소와 경로의 선정

○ 통신수단의 정비 및 경계순찰 행동요령 정비

나. 피난조치 활동체제의 정비

○ 즉시 피난 유도 및 권유 방식

○ 상황 전개에 따라 피난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방식

- 지역적 실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피난방침에 따라 결정

○ 피난 유도, 지시를 위한 통신 등 정보전달체제 정비

○ 안전한 피난소, 피난경로 사전정비

다. 응급대응체제 정비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 방재중추기능의 확보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라. 방재훈련 실시

○ 정보의 수집·전달, 구원요청 등 기동력 있는 광역단위의 실천적인 방재훈련 실시

○ 군부대·민간봉사자단체·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훈련 실시

○ 학생·교직원 대상 재난예방 교육·훈련 강화

마.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1) 재난정보 현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군·구별 모니터위원 지정 및 시범운영

○ 상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 기상·해상·수위 등의 상황관측 정보수집·전파체제 및 시설정비
- 야간 및 휴일 등 행정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 위성 및 컴퓨터통신, 지역방재무선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난관련정보의 수집체제 정비
-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대책
- 이동통신의 통신폭주 대책 강구, 비상시 운용계획 조정 및 피해상황의 화상전송 무선시스템 구축

바. 2차재난 방지대책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보존시설을 점검하고 재난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 연안지역 침수에 따른 전기 감전사고 방지대책

○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보유 및 배수대책

사. 구조·구급 대책 수립

○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구조용 장비 및 자재확보

○ 유관기관간의 상호 관련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정비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해일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기상특보상황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설치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고, 운영 등은「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함

- 중점대응기간

· 조석이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통과가 겹칠때

· 대조기와 태풍 통과시기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

-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인원 증원

· 준비단계 : 상시대비 및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시

· 비상단계 :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우려가 높을시

2) 해안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해안 지역주민의 대피

-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지역재난수습본부 설치

○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 재난현장 상황파악,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다.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대규모 재난으로 교통두절시 항공기를 이용한 피해상황 파악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라.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 침수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실시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토사재난 발생시 신속히 피해상황과 피해의 확대가능성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안정토사의 제거, 가설방호울타리의 설치 등 응급조치

마.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확보에 노력

○ 생필품의 물가폭등과 매점매석이 발생치 않도록 물가의 안정 및 공급대책 강구

4. 복구대책

가.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을 결정

○ 피해지방자치단체가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정부는 이를 지원)

나. 피해조사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각 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청 직원 중심의 반편성 운영

※항로표지과 신설예정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분석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다. 복구비 지원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특별시의 구 :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 15억원 이상
- 인구 30만미만의 시 또는 군 : 10억원 이상

마.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바.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수요자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조사 선진화

- 선진기술을 접목한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자율복구 방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강화

○ 수요자중심 복구체계 확립

- 피해조사시 민원 청취제도 도입
- 의연금품 기부체계 개선

사. 사유재산에 대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운영

○ 사유재산에 대한 적정·적시적 피해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험제도 도입

○ 기존 무상복구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 조정

< 해상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실현

○ 21세기 해양안전 선진국가 건설

○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확립

○ 범 국민적 수난구호체제를 구축하여 해상 수난구호역량 강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가. 국제 해상안전 동향

○ 최근 미국과 EU,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테러방지를 위하여 해사보안과 선박안전을 크게 강화

○ 항공기와 같이 IMO에서 제정한 각종 협약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기국이행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별 안전관리능력 평가 추진

○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폐선과 중급유 운송금지 기한설정 및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 기준미달선의 운항근절, 위험물운송 안전 및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해양안전과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일층 강화예상

○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에 재진출함으로서 해운·조선 선진국으로서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확대요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아국의 기여 기대

나. 국내 해상안전 동향

○ 최근 5개년 해상사고는 '99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감소세(연평균 11,1%)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충돌·침몰 등 대형사고의 감소폭은 저조

○ 해상교통량 증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및 자연적·인위적 항행 위해요소의 산재 등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만내에서의 대형사고 위험요인은 더욱 증가

○ 정보통신기술(IT산업)을 이용한 최신 해사통신시스템 실용화, 선박기술의 혁신 및 첨단 장비의 출현에 대비한 해양안전기술 개발 필요

○ 내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Code)도입·시행으로 내항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업무체제에 변화 예상

○ 주5일 근무제 도입,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해상레저 및 해상관광 인구가 증가하고,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해상교통 종사자의 안전업무능력 향상

○ 선박과 해상안전시설 안전성 확보

○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 정비

○ 해상재난의 구조능력 확충

나. 추진전략

○ 해기사 양성 및 선원자질 향상으로 선원의 복지증진

○ 선박 안전성 확보 및 노후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해상 안전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선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정착

○ 선박 조난통신체제 구축 및 체계적인 구조기반 조성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해상교통 안전분야

1) 공 통

○ 해상교통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 선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선원의 공급확대 및 교육실시

○ 선박과 해양안전시설 안전성 강화

- 국제기준 미달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강화로 국내연안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감소 및 해양환경 보호
- 낙도보조항로의 항로두절을 예방하고 벽지 도서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및 연차적으로 차도선형으로 대체 추진 개선방안 마련
- 전체해양사고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원활한 시설관리 도모 및 항만생산성 제고
- 어항시설 확충 및 기존 완공항의 정비를 통해 어촌지역사회 핵심기반 조성 및 어업인 이용편익 지원

- 선박 항행안전의 기반시설인 항로표지시설의 증설 및 개량으로 해상교통안전 도모, 항만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 항만수역은 조류, 암초, 수심제약 등 자연조건이 취약하고 교통량이 집중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역이므로 위험요소 개선 및 항로표지시설의 확충

○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 강화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국내 도입
-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ISM Code) 강화
- 국적선박에 해적·해상테러 등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체제 및 해양안전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시스템의 과학화로 항만 및 출·입항 항로상 선박해상충돌 예방 및 항만이용자에 대한 항만운영정보 적시제공으로 고품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 확충 및 보강
- 위험화물 적재검사 강화로 해상운송 안전확보 추진

○ 해상교통안전지도 및 홍보·계몽 강화

- 선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지식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해양사고 방지 홍보자료 제작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 추진
- 선박 운항자에 대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 기상청의 해상 기상정보 신속 전파(해상교통관제센타)

○ 해양사고방지 캠페인 전개

- 지역 방송 및 신문사와 해양사고 방지 홍보
- 홍보 전단 및 스티커 제작 배포
- 출·입항 선박에 대한 수시 안전 교육 실시

○ 해난 취약요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

- 출·입항 선박 지도점검 강화

· 기상 불량시 소형 선박 출항 통제

· 항해장비 및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 확행

· 선박 검사 미필 등 대상 선박 출항 통제 철저

- 해양 사고 다발 선박 및 노후 선박 특별관리

·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계몽

나. 유류오염사고 분야

○ 해안오염 방제체제

· 해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해안방제지휘본부를 구성하고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안부착유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안오염 방제진행 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및 관계기관간에 별도의 연락창구와 담당조직을 구성·운영하며 이에대한 비상연락망 및 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한다.

· 방제조합, 방제업체 등 관련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해안오염 신고체제를 확립한다.

2. 대비대책

가. 해상교통 안전분야

1) 공 통

○ 해상교통 제어기능 강화로 해양사고 사전 예방도모

-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에 의한 해역별 해상교통 제어로 해상교통 흐름 원활로 사고예방 도모
- 해운조합운항관리실과의 기상 및 여객선 정보 공유 등 협력체제 강화

○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로 구조 즉응 태세 유지

- 취약 및 해양사고 다발 해역 경비함정 적정배치(목포·완도해경서)

· 행락철 및 귀성객 등 성수기 여객선항로 등 취약해역 및 해양사고 다발 해역 집중 배치

- 항공기 및 특수 기동대 긴급 출동 태세 확립(목포해경서)
- 원해 해양사고시 군 대형구조장비 지원협조체제 유지(목방사)

· 대형 헬기 및 수색용 항공기, 악천후에 운용 가능한 대형함정

- 해양사고 대비 선박 구난업체간 협조 지원체제 유지(해경서)

· 선박 구난 업체별 현황 및 비상 연락망 유지

· 필요시 해·공군 구조대 지원협조 요청

나. 유류오염사고 분야

○ 국가방제 기본계획 및 지역방제 실행계획 수립(해양경찰청)

- 근 거 : 해양오염방지법 및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 국가방제기본계획에 의한 범국가적 방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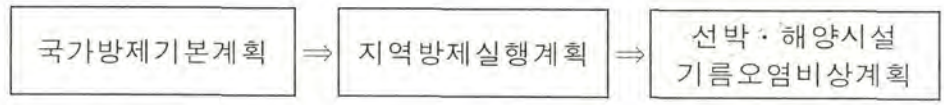

- 국가방제 기본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

· 근거 : OPRC협약 제6조

· 내용 : 대형 기름 오염사고 대비 · 대응에 필요한 절차 · 방법 및 관계 기관별 임무분담 · 협조사항을 규정

· 주관 기관 : 해양경찰청

- 지역방제 실행계획

· 근거 : 국가방제기본계획

· 내용 : 13개 해경서별 기름오염사고 대비 ·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관 기관 : 해양경찰청

- 선박 · 해양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

· 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및 제36조

· 내용 :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비상계획

· 대상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과 300㎘ 이상의 기름 저장시설

○ 방제대책본부 설치 현장방제조치 총괄 지휘 · 통제

- 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38조

- 구성 : 본부장(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5개 사고 대응반 및 현장 방제팀으로 편성

- 기능 :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계획의 수립 · 집행 및 방제 작업에 동원된 인력 · 장비의 지휘 · 통제업무 등을 관장

- 해양오염사고 규모별 지휘 · 통제체제 구분 운영

- 방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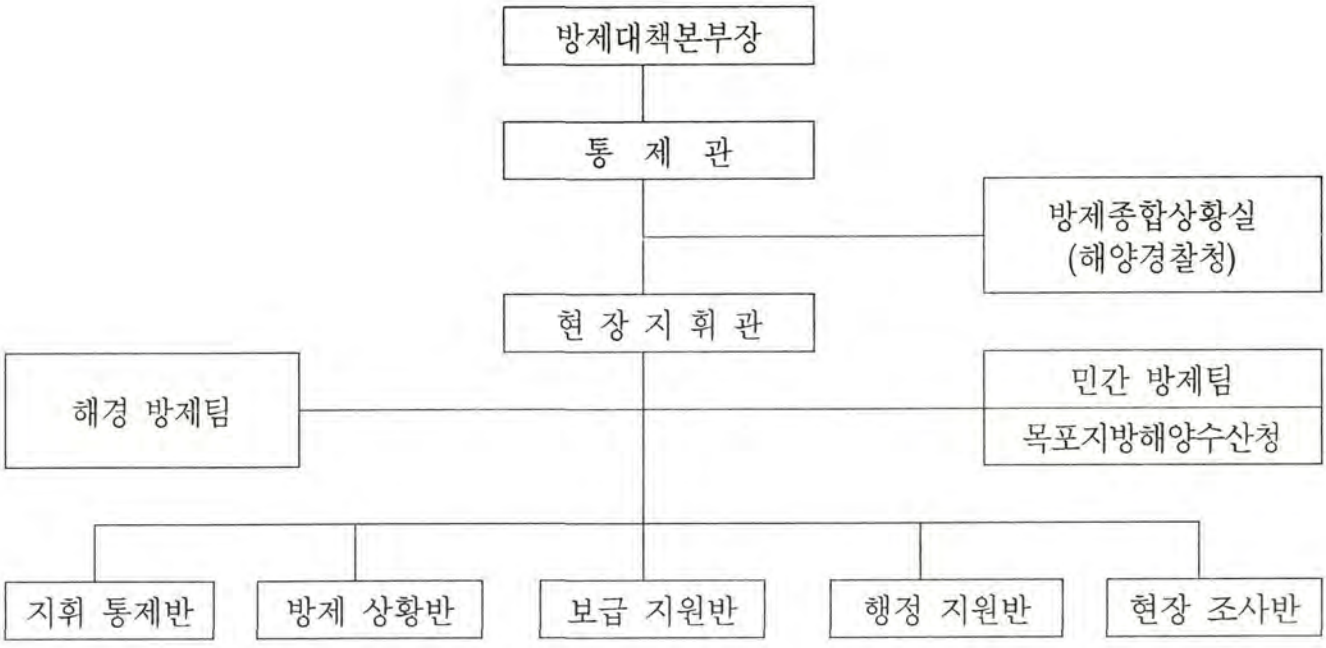

○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유류오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해양경찰서 방제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유류오염 방제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확산 최소화
-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통보 등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 방제기술 교육 및 훈련 강화로 대응능력 향상

- 국·내외 전문기관에 해양오염관리요원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해양오염관리요원 현장방제지휘자과정 교육 : 한국해양연구원

-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 방제훈련시 적극 참여

○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물자 확보

- 국가방제능력 2만톤 확충를 위한 방제정 등 방제장비 확보 추진

· 2007년까지 방제정 4척, 유회수기 8대, 오일펜스 8㎞ 추가 확보

- 방제관련 장비 및 소모품 등 물자 확보 비축

· 유처리제, 유흡착재, 폐유 임시저장탱크 등

○해양오염 방재기자재 보유 현황

· 방제 장비

구분 / 장비명	보유량							비고
	계	대산청	해경	유관기관	방제조합	유관단체	유관업체	(회수능력)
방제선(척)	5	-	1	-	4	-	-	480톤/시간
유회수선(척)	2	-	-	-	-	-	2	240톤/시간
펜스전장선(척)	1	-	-	-	-	-	1	-
유회수기(대)	15	-	8	-	5	-	2	471톤/시간
오일펜스(m)	21,802	800	1,862	2,810	3,050	460	12,820	-
유흡착재(kg)	21,477	750	6,356	4,642	1,560	180	7,449	-
유처리재(kg)	81,243	2,378	22,732	9,142	9,607	2,190	35,194	-
유겔화재(kg)	700	-	500	-	-	-	200	-
중질유부착재(kg)	500	-	500	-	-	-	-	-

· 방제 보조장비

구분 / 장비명	보유량						
	계	대산청	해 경	유관기관	방제조합	유관단체	유관업체
작업선(척)	9	1	-	2	2	-	5
예인선(척)	16	-	-	-	-	-	16
탱크로리차량(대)	1	-	-	-	-	-	1
고압세척기(대)	2	-	1	-	1	-	-
이송펌프(대)	3	-	-	-	-	-	3
유창청소시설(개소)	2	-	-	-	-	-	2
폐유수거선(척)	1	-	-	-	-	-	1
뜰채(개)	170	-	170	-	-	-	-
갈고리(개)	220	-	220	-	-	-	-
저장용기(개)	14	-	14	-	-	-	-

· 보고 및 통보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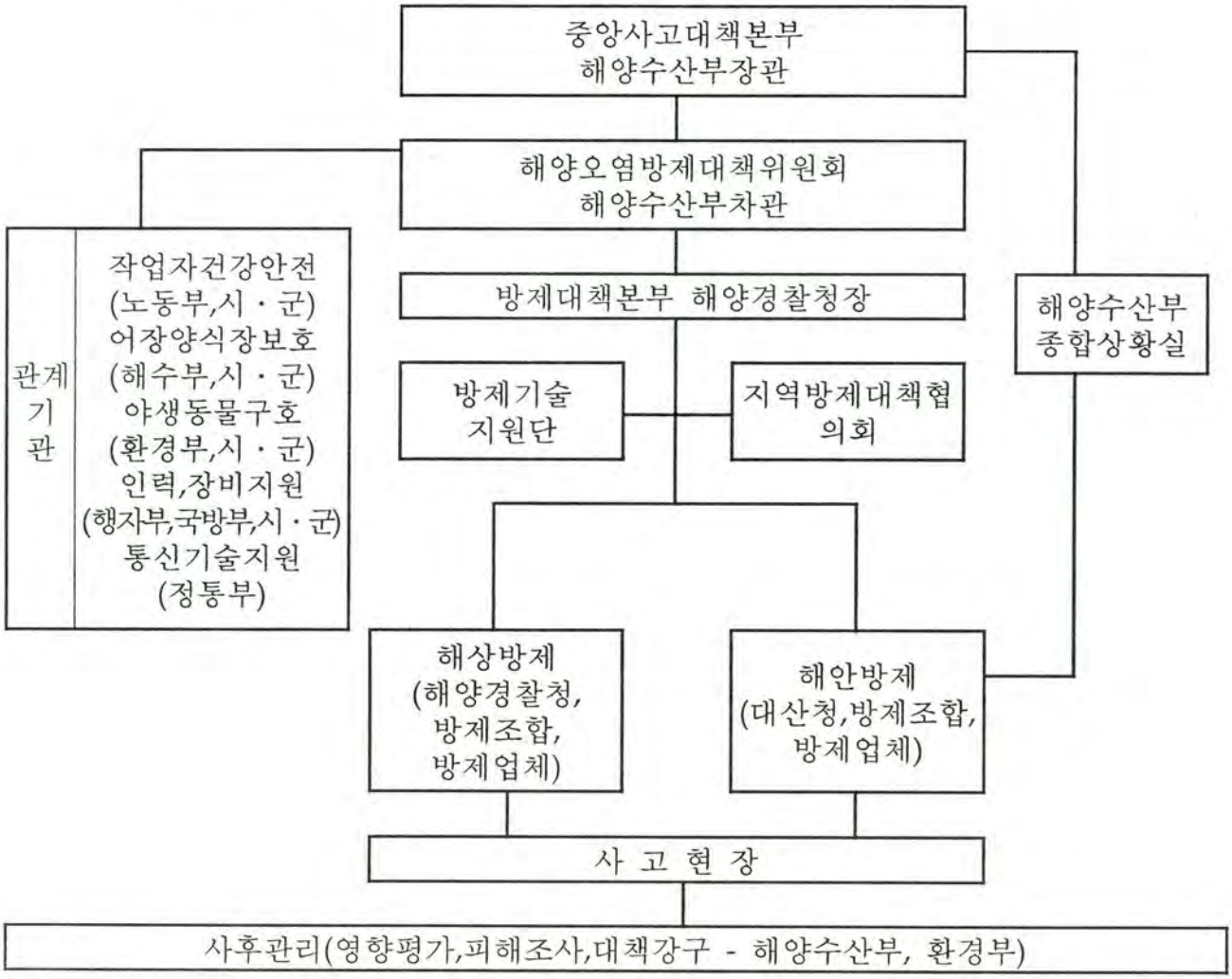

○ 해안오염신고체제

· 해안 및 항만시설의 부착기름과 관련한신속한 신고접수와 을 위하여 해안 오염신고 접수부서를 대산청 해양환경과로 지정·운영한다.

· 해안오염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 및 관할 해양경찰서에 통보한다.

· 신고는 구술, 전화 등을 이용할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안오염 발견일시 및 장소
- 해안오염 범위 및 유층의 두께 등
- 기름의 색깔 및 유동성

3. 대응대책

가. 해상교통 안전분야

○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 전개

○ 선박피해 여부확인 및 긴급보고체제에 의거 유관기관과 기급상황 보고

- 항내선박 피해발생시 : 항무과
- 항계외 선박 피해발생 : 선원선박과

○ 피해선박 구조 및 해양오염 방제 협조

○ 피해선박에 대한 세부조사 실시

○ 침몰, 좌초선박의 인양 또는 침선부표 설치등 안전대책 강구

○ 항로 지장유무 조사 대책수립 시행

○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수습 협조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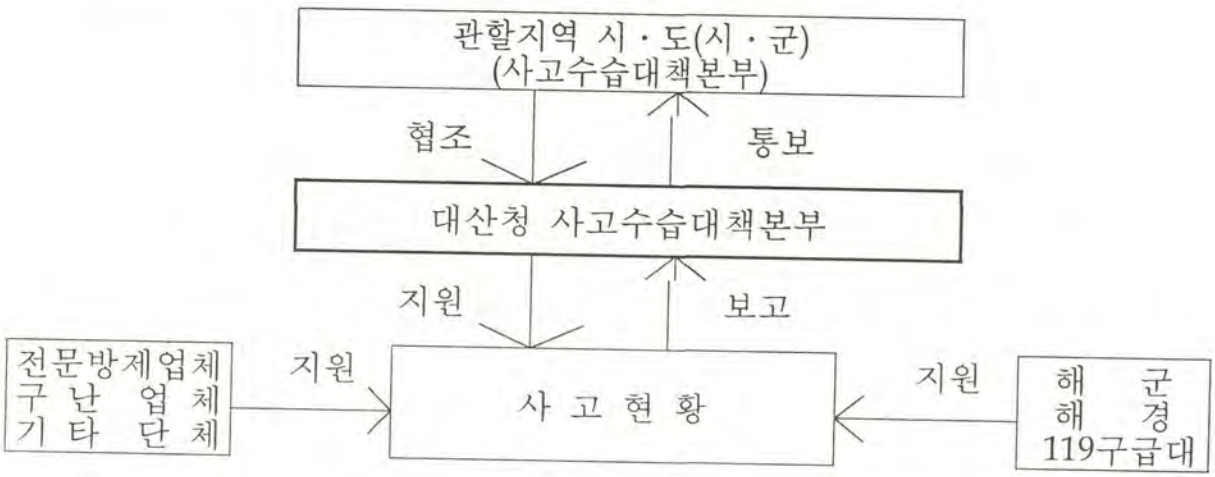

○ 대산청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운영

- 운영시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설치장소 : 우리청 항만교통정보센터

○ 수행업무

- 피해상황의 조사 및 피해복구대책 수립
-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및 피해보상 협의
- 구난, 구조 기관 및 관련회사 등에 지원협조 요청

○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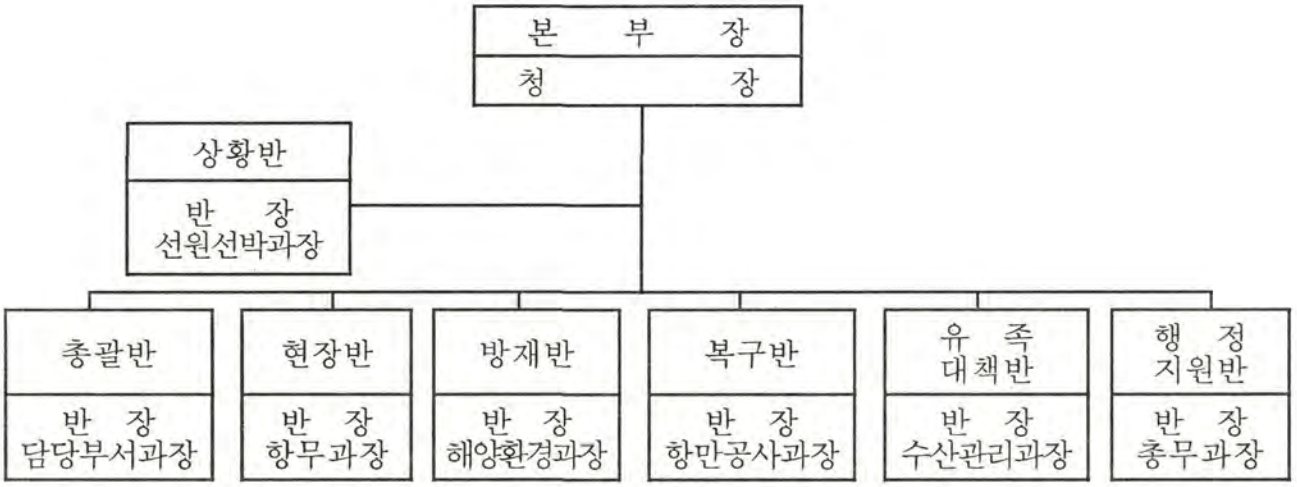

○ 반장 및 반원 임무

구 분	반장 및 반원	임　　무
총괄반	반장 : 사건담당부서과장 반원 : 소속직원전원	- 사고수습 총괄지휘 및 본부장 보좌 - 사고수습 추진상황종합보고 - 각 실무반 활동지원 -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상황반	반장: 선원선박과장 반원: 4명 - 선박담당 1 - 선박계 1 - 표지계 1 - 해무계 1	- 상황반 지휘 및 본부장 보좌 - 반장 보좌 및 반원 지휘 - 중앙대책본부와의 업무연락 - 〃 -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파악 및 요청
현장반	반장: 항무과장 반원: 7 - 운영계 1 - 운영계 1 - 항무계 1 - 통신2계 1 - 관제계 3	- 현장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 - 반장 보좌 및 반원 지휘 - 현장상황 파악 및 반장 보고(사고현장) -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 지원 - 〃 - 〃 ※ 선박재난의 경우 상황파악 및 반장 보고(관제실)

구 분	반장 및 반원	임 무
방재반	반장: 해양환경과장 반원: 3 - 환경계 1 - 환경계 1 - 환경계 1	- 방재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 - 방재장비 현황파악 등 지원계획 수립 - 선박,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등 방재장비 지원 - 방재진행상황 파악 및 반장보고(사고현장)
복구반	반장: 항만공사과장 반원: 6 - 공사1계담당 1 - 공사1계1 - 공사1계1 - 공사2계담당 1 - 공사2계1 - 공사3계담당 1	- 복구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 - 반장 보좌 및 반원 지휘 - 복구계획 수립 - 피해경감 및 2차 사고 예방조치 지원 - 복구진행상황 파악 및 반장보고(사고현장) - 현장복구 및 선체 등 장애물 인양지원(사고현장) - 현장복구 및 선체 등 장애물 인양지원(사고현장)
유 족 대책반	반장: 수산관리과 반원: 4 - 기획계 1 - 기술계 1 - 기술계 1 - 기획계 1	- 유족대책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 - 반장 보좌 및 반원 지휘 - 유가족 대책업무 -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사고현장) - 사상자 처리상황 파악 및 반장보고(사고현장)
행 정 지원반	반장 :총무과장 반원: 3 - 서무담당 1 - 서무계 1 - 서무계 1	- 행정지원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 - 반장 보좌 및 반원 지휘 - 대책본부 설치 및 반장보고 - 대책본부 행정지원 및 근무요원 복리후생 지원

※ 반원 인사이동 및 부재시 후임자(후임자가 없을 경우 반장이 지정한 자)가 업무 승계

※ 필요시 반장은 업무담당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선원선박과에 통보 바람

○ 선박소유자의 사고대책본부 운영

- 설치장소 : 선박소유자의 사무실

- 설치·운영시기

· 사망자 또는 5인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대량의 기름유출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사고

·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 발생 즉시 설치·운영

- 수행업무

· 피해상황의 조사 및 부상자의 후송, 입원

·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및 피해보상

· 구조구난기관 및 관련회사 등에 지원 협조요청

○ 재난사고 보고체제

- 긴급보고체계

· 1차 보고(최초상황) : 청장 및 본부 종합상황실(관련 실·국)

· 보 고 자 : 항무과 통신담당

· 보고시기 : 사고발생 인지 즉시

· 2차 보고(중간 · 종결보고) : 청장 및 본부 종합상황실(관련 실·국)

· 보 고 자 : 관련 주무과장

· 보고방법 :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FAX보고

- 보고계통 및 보고요령

· 보고대상 :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관할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 고 통 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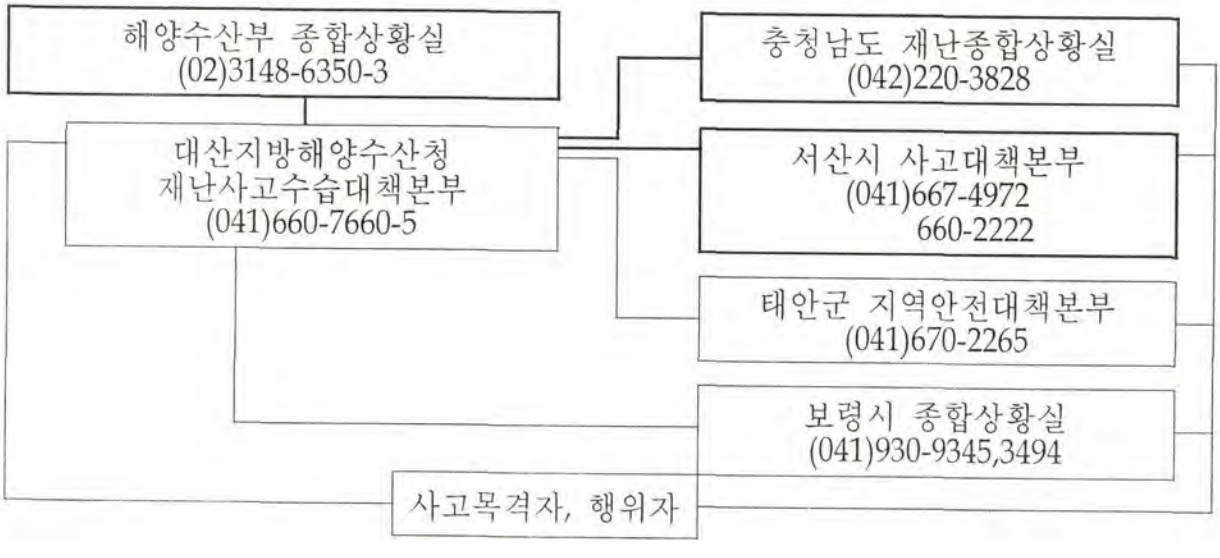

- 보고요령 : 각 반장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해당 각 실무반과도 긴밀한 보고 체제를 유지

- 상황전파 : 관할 지역 사고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에 긴급상황 전파하고 필요시 인명 구조 등 협조요청 및 관련 업·단체에 장비·인력 협조요청

※ 유관기관,업·단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조치(붙임)

○ 재난사고수습 근무체제

- 재난대비 근무체제

· 운영시기 :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운영방침

피해상황의 조사 및 피해의 최소화에 적극 대처,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협조지원 요청 신속통보, 우리청 관련업체 및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 업체 적극 활용

- 편 성

편 성		근 무 지
주간	본 부 장 : 1명 행정지원반장 : 1명 각 반 장 : 1명	평시 근무지 상 황 실 〃
야간	본 부 장 : 1명 각 반 장 : 1명 각 반 원 : 1명	상 황 실 〃 〃

※ 편성인원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근무요령

· 주·야간 구별없이 상황실에 대책본부 설치하고 본부장의 통제하에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로 함.

* 근무시간 : 09:00~익일 09:00(24시간)

08:30~09:00 인수인계자 합동근무

· 교대요령 : 각 반장의 책임하에 조치사항 일체를 다음 반장에게 인수인계

* 인수인계사항 : 피해상황 및 통계, 구조 활동사항 및 응급 복구 조치사항 등

○ 재난수습대책본부 해제

해제는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며, 해제시 각 실무반은 그간의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반에 제출하고 총괄반은 이를 취합하여 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한다.

나. 유류오염사고분야

○ 해안 방제지휘본부의 운영

· 해양에서 원유등 지속성기름 유출사고로 해안부착 및 연안유입 우려시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운영한다.

· 설치장소는 청사내 대회의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며 오염 인근 지역에 해안방제지휘소를 둘수 있다.

· 해안방제지휘본부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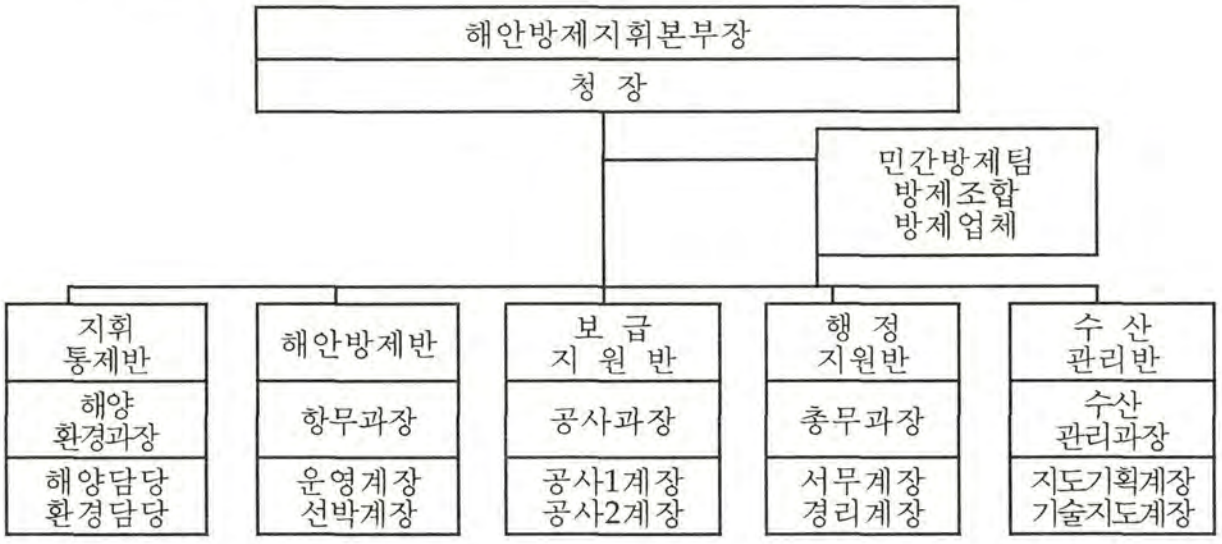

· 해안방제지휘본부의 운영

- 해안방제지휘본부장

해안오염 방제조치 총괄지휘 및 통제

해안방제방법 결정 및 해안방제 동원세력의 지휘·통제

해안방제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선 및 평가

- 해안현장지휘소장(지휘통제반장)의 임무

해안방제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해안방제작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역방제대책협의회 활용

해안방제지휘본부 운용

- 반별임무 : 각반별 소요인원은 작업진행 상황에 따라 동원한다.

○ 대응단계 세부사항

·초동단계

- 소형오염사고(지속성기름 30~100㎘) 연안에 유임된 기름이 해안에 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 평상시근무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임무수행

* 야간또는 공휴일에는 해양환경과 자체인력으로 교대근무

·대응단계

- 해안오염사고 발생(지속성기름 100㎘이상 1,000㎘미만)

* 주간 : 평상근무위치에서 각 실무반장 책임하 근무

* 야간 : 각 반별 필수요원 2명으로 편성운영

- 대형해안오염사고 발생(지속성기름 1,000㎘이상)

* 근무요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해야 하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 각반별 6급이상 1명, 7급이하 1명 이상 근무

* 방제조치요원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며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음근무자는 08:30까지 입석하여 업무를 인계받음

* 동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전화기, 복사기등 각종 집기는 각과로부터 보급 대책반원이 아닌 직원은 민원업무 및 각종 업무를 반원대신 수행 행정지원반은 방제본부 사무실 운영 및 방제조치 요원의 후생등을 지원

○ 유관기관간 긴급상황보고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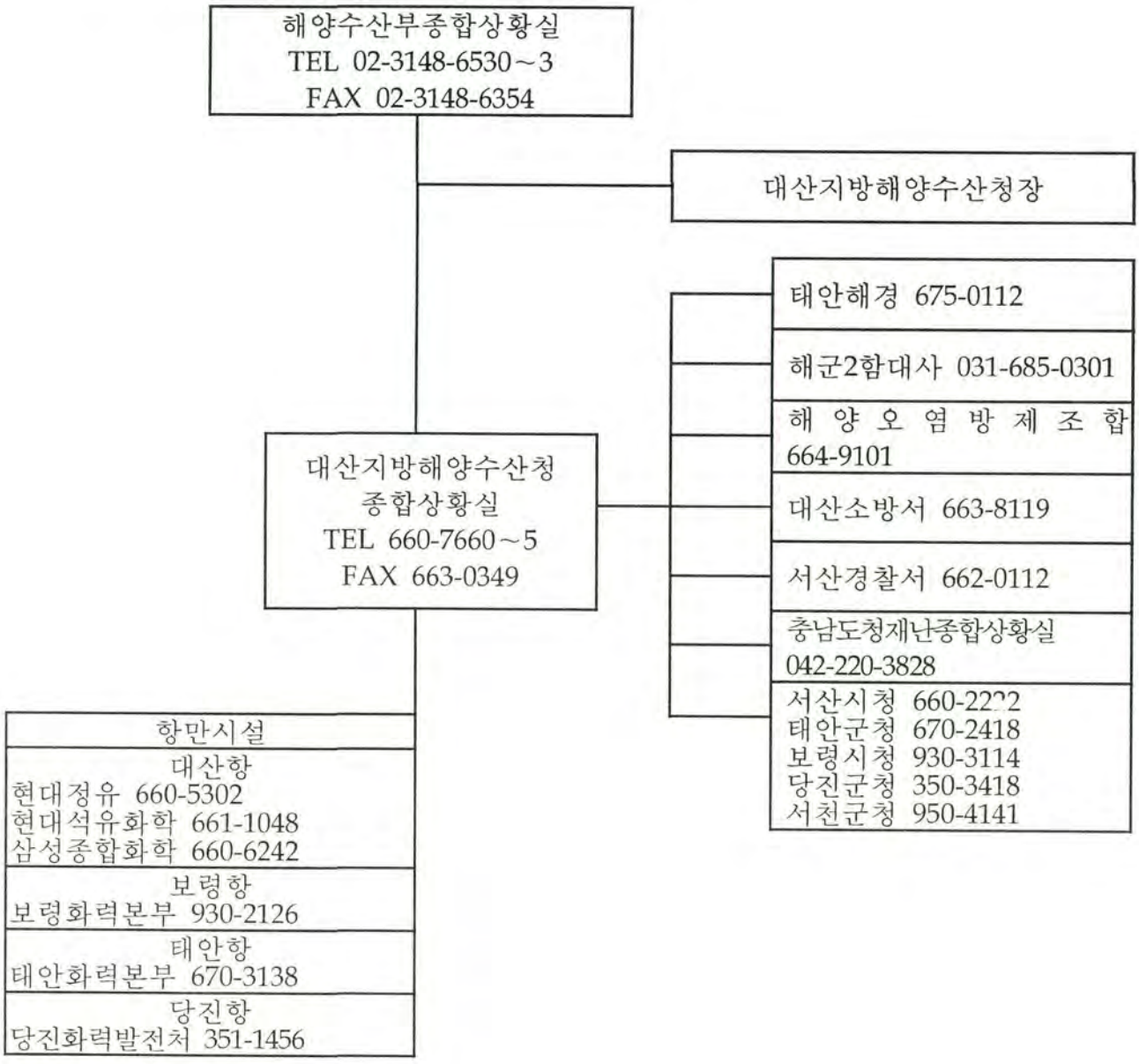

4. 복구대책

가. 해상교통 안전분야

○ 해상사고 조사 실시

- 해양사고 접수

· 조사관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해양사고발생통보를 받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접수되면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

- 심판청구 및 불요처분

·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사건이 경미하거나 사고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판불요처분 조치

○ 각 유관기관별 지원·협력체제 유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 대형사고시 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사후처리 협조

- 광역시. 도, 시·군·구

· 해양사고 사후 수습대책본부 운용 및 구조된 사람의 구호조치

· 실종자 신고 접수 등 처리에 관한 사무

- 소 방 서 : 하천·호수의 수난구호업무 총괄, 사고수습을 위한 인력·장비지원

- 지역 군부대(해·공군)

· 대형 해양 사고 발생시 인력. 장비 동원 구조지원

· 기상 불량시 원해 해난 대처 가능한 대형 구조장비 지원

- 검역소, 세관

·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검역 · 통관사무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구조대의 입역시 출 · 입국 사무

· 해양사고로부터 구조된 외국인의 보호조치

- 해양안전심판원

· 사고선박 해난 원인규명

· 관계기관 통보 해양사고 방지 자료 활용

나. 유류오염사고 분야

○ 해양오염방제관련 유관기과별 지원 · 협력체제 유지

- 국가방제기본계획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간 지원임무를 분담

· 행정자치부 : 경찰 · 소방관서 및 민방위대 등 방제인력 동원

· 국방부 : 군 장비 및 병력 지원

· 산림청 : 방제용 항공기 지원

· 정보통신부 : 통신기술 및 유 · 무선 통신설비 지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 어장 · 양식장의 보호 및 회복

· 환경부 및 지방 자치단체장 : 야생동물의 구호를 위한 조치

○ 유류오염의 손해배상

- 배상의 성격

·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관계로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 유류오염사고 관련 선주의 배상책임 및 국제기금 관련 국제협약 (92 CLC/FC) 가입 및 이를 수용한 국내법 제정 · 운용으로 피해배상 보장

i)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보상

- 배상근거

· 국내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i) 제정 및 시행 : '92. 12. 8 제정('93. 1. 1 시행)

ii)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유류수령인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등

· 국제협약 : 92CLC(민사책임협약)/92FC(국제기금협약)

< 지진 재난대책 >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진에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의 지속 및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와 함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위험성에 대비,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속적인 구조물의 보강,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진방재대책의 필요성 증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지진방재교육, 도상·실제훈련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지진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나. 추진전략

○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 및 적용실태 지도·감독

○ 각급 기관별, 기능별 지진대비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체계 구축

○ 각 기관별 단계별 행동요령 적용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규정

○ 지진방재 각종 시험연구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지진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 지진재난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건축물, 토목시설물,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방재관련시설 등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내진설계기준 보완·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추진

·갑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인·허가 및 공사 발주전 내진설계기준 적용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건축물의 낙하물대책 및 벽돌담 등의 안전성 확보

2) 부처별(해양수산부)

가) 지진관련 법령정비 등 내진보강 기준 마련

○ 기존 항만시설물 내진대책 연구

- 지진에 대비한 항만구조물 보강 및 신형안벽개발 연구 완료('98-'03)
  · 기존의 주요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 수행

○ 항만시설물 내진설계 표준서 및 내진성능 평가지침서 수립
- 새로 발주되는 항만건설공사 설계시 내진 설계기준 적용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배치

-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 등이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설하는 도시 등에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분산 배치
- 도시계획 등 각종 시설계획 수립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다) 방재성의 향상

-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내진·불연화, 녹지대의 계획적 확보로 지진에 강한 구조의 형성
- 여객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지진발생시 안전대책 및 응급체제 정비

라) 위험시설물의 점검 · 정비

○ 항만시설물의 점검 · 정비
- 부두 등 접안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지정시설(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이상
  · 기타시설 : 매분기 1회이상
  · 정밀안전진단 : 지정시설 5년 1회, 기타시설 필요시

○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산사태, 산지재난,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 위험물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이 예상되는 시설

· 위험물 저장소(정유업체) : LG정유, SK

-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 대천항연안여객터미널

항별	시설명	규모	연면적(㎡)	준공년도	구조형식	등급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지상3층	3,844	'02	철근콘크리트조	A

마) 화재예방시설물 등의 점검·정비 및 혼란방지

○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진압계획 수립 추진

○ 가스 누출시 자동 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도시가스 누출방지대책 수립

○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혼란방지대책 수립

바) 화재의 확대 방지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체제 정비

- 관할 시·도소방본부장 주관하에 인접 소방서와 응원체제 확립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강화

-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새로운 소화체제 정비(공중, 해수)

- 해수이용을 위한 대형 동력펌프가 부착된 소방차 확보

- 공중살포를 위한 화재진압장비 확보

사) 긴급수송의 대책 확보

○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지정

○ 긴급수송로로 지정된 수송시설, 수송거점 및 도로교통관련 시설의 내진성 확보와 도로관리체제 정비

아)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체제 정비

○ 물자의 성격에 따라서 집중 비축 또는 대피장소의 위치를 감안한 분산비축 등의 체제 정비

○ 식료품, 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및 통신기기 등의 물자 비축 또는 조달체제 정비

자)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지진대비 훈련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 관계부처 주관으로 기능별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군, 경찰, 학생, 소방, 주민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지역 및 직장 등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발생을 가정한 훈련 실시

- 2개시·군·구가 연합한 광역단위 훈련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관련기관별 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구조구난, 화재진압, 응급의료, 가스진압, 응급복구 등 훈련실시

-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훈련 실시

2) 사업장(공사장) 자율방재조직 구축 지원

○ 수방단을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장(공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

- 자율방재조직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봉사단체가 연계, 재난발생시 민간봉사자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활동환경 정비

2. 대비대책

가. 응급대응체제 정비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 방재 중추기능의 확보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나. 재난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1) 정보의 수집·체제의 정비

○ 방재기관과 정보 전달 경로의 다중화 및 연락체제 확립

○ 항공기, 경비정, 차량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 체제정비

○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의 재난관련정보 등의 수집 체제 정비

2) 정보의 분석정리

○ 정보분석을 위한 인재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종합적인 방재정보를 총괄한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 구축 추진

○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 추진

다. 대규모 해저지진대책

○ 지진해일피해 위험예상지역의 구조물, 시설 등 정비 및 대피장소, 대피로의 정비

○ 신속한 지진해일예보를 위해 통신체제 및 시설, 설비의 확충

○ 피해예상지역 주민 및 선박 등에 위험성 홍보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지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대규모 피해발생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고, 설치·운영은 「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함

2) 해안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정보연락체계

- 헬리콥터, TV 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중적 정보통신시스템 확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홍보

- TV를 통한 자막 및 24시간 생방송 실시
- 수집된 각종 피해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
- 재난발생 즉시 임시 재난 FM국 개국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 피해상황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피해상황 확인시스템 도입

○ 상호협력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재난 규모별 분야별로 지원협력 행동요령을 작성 활용
- 방재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 파견요청

- 지진재난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도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파견요청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지역재난수습본부 설치

○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 재난현장 상황파악,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다.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인력의 종사 및 시설·물자 등의 사용

- 인력 : 의사, 약사, 간호사, 토목·건축기술자, 기능공 등 특수분야 기술자 중에서 동원대상자 지정

- 물자 : 응급조치에 필요한 토지, 가옥, 물자 등의 수용·사용·보관 명령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지정

라. 소방·위험물대책

○ 지진소방대책 수립 추진

- 대규모 화재에 대비, 인근 소방서와 상호응원 협력체제 구축 운영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수립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관리자로 하여금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마. 경비 · 방범 및 교통대책

○ 경비계획

-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 경비본부 설치 운영
- 관할 경찰서장은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실태 파악, 대피유도, 구조 · 구난 등 실시

○ 방범계획

- 지진피해 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전개
- 미아 및 고아에 대한 전단수배 및 연고지 수배로 신속한 보호자 확인 · 인계

○ 교통규제계획

- 관할 경찰서에서는 1·2단계로 구분하여 교통규제지역 설정 운영
  · 1단계 : 지진발생과 동시에 통제선을 설치 규제
  · 2단계 : 피해상황에 따라 점차통제선 설치 확대

바.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 수송루트, 주요 우회루트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대형헬기 등 수송장비 지정

○ 긴급도로 개설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사.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처리

-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분뇨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지장물의 제거

- 장애물정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우선 처리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방역대책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처리

- 실종자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아. 2차 재난방지대책

○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대책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 이상고조, 파랑 등의 대책

-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보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 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 폭발 및 화재방지대책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자.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1)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공공시설

- 도로 · 교량

· 각 도로관리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등을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전 확보, 피해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 도로 · 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항만 · 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 피해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철도시설

· 지진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수송수단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

· 타 시설에 우선하여 복구실시

차. 교통수송 활동

○ 피해상황, 긴급 및 중요도를 고려한 교통규제, 응급복구, 수송활동 실시

- 인명의 안전, 피해확대방지 및 신속한 응급대책을 고려한 수송활동

- 긴급수송로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금지 등 교통규제

- 도로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장해물 제거, 응급복구 실시

○ 긴급수송 관계기관은 연료조달 및 공급체제 정비

카. 군부대 지원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군부대 장비의 지원요청

○ 군부대는 수색구조, 응급복구지원, 응급의료 · 구호 · 방역, 인원 및 물자의 긴급수송, 위험물의 제거 등 지원

타. 상담 및 민원기구의 설치 운영

○ 지진관련 정보 제공과 지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 피해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간이민원창구 설치

제 19 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관리사무소

제 1 절 개 요

1. 수립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5조

2. 목 적

○ 국립공원 탐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예방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각종 재난으로 부터 탐방객·공원시설·공원자원 보호

3. 중점추진 사항

○ 국립공원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공원관리

○ 각종 자연재난 예방과 공원자원 및 시설피해 최소화

○ 방재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안전관리의식 고취

제 2 절 분야별 추진 계획

1. 탐방 안전

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사고위험지역 중점관리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 정비

○ 신고여건 개선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나. 탐방객 통제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처

○ 자연휴식년제 구간 관리 강화

다. 안전시설 점검 및 확충

○ 통제시설 및 안내간판 설치

○ 안내·계도·방송망 설치 운영

○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확충

2. 자연재해 대책

가. 풍수해 대책

○ 산간 계곡·하천·해변의 야영지 등 탐방객 밀집지역 중점관리

나. 설해 대책

○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지역(우회도로 지정)관리

○ 제설장비 및 자재 점검·정비, 자재확보

3. 재난응급대책 및 복구

○ 소요장비 및 인력확보

○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 조치 및 탐방객 안전 계도활동 강화

○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계획 수립 · 시행

4. 방재교육 및 홍보

○ 방재교육 및 훈련(지자체 합동)

○ 국립공원이용시 탐방·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사항 홍보

○ 공원기상상황 등 홍보 안내시설 확충(on-line, off-line)

제 3 절 세부 집행 계획

1. 재난예방계획

가. 근무체제

1) 평상시 및 재난대책기간 근무체제

○ 국립공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조직 편성 : 붙임 1

○ 재난담당 또는 탐방객 안전관리 담당자가 연중 상황관리
(단,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상황관리)

2)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체제(3단계)

근무체제	기상상황	비 재해대책기간	재해대책기간
1단계 준비체제	-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표시 - 대설주의보 발표시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9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7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매표소 : 2 명
2단계 경계체제	-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표시 - 대설경보 발표시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9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7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매표소 : 2 명
3단계 비상체제	- 전 공원 대부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국지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9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근무인원 : 30 명 · 관리과 : 7 명 · 보전과 : 16 명 · 분 소 : 5 명 · 매표소 : 2 명

※ 비상근무체제 개시와 해제 결정 및 근무인원 조정은 소장이 조정

※ 기상특보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 붙임 2

3) 비상연락체제 구축

○ 재난안전관리대비 상황 신속 보고 체제 구축

- 외부기관으로부터 재난에 관한 정보를 통보(또는 협조요청) 받았거나 국립공원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 가동

○ 안전관리대책 비상연락망 유지 : 붙임 3

나. 재난위험 상존지역 지정관리

1) 공단자체지정 위험지구

○ 사고위험지역

- 공단 자체적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상습침수, 붕괴, 고립위험지역이나 익사, 낙석,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지정

- 자체지정 사고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별	인명피해 예상지역	거리(km)	주이용시기	위험요인	위험유형	책임담당자
계	5개소	12.4				
동학사	동학사계곡-은선폭포	1.6	7~8월 11~2월	안전사고 및고립	풍수해 설해	7급 박종철
	삼불봉~관음봉	1.8	11~2월	안전사고 및 고립	설해	7급 이재문
갑 사	용문폭포~남매탑	2.4	7~8월	안전사고 및 고립	풍수해	6급 박문순
	갑사~관음봉~은선폭포	3.9	11~2월	안전사고 및 고립	설해	5급 한길영
신원사	신원사~연천봉	2.7	11~2월	안전사고 및 고립	설해	5급 장금익

- 관리내용

· 기상특보 및 재난대책 기간중 기상특보에 의거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순찰 강화 및 시설물 점검, 정비 지속 추진

·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시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유도

○ 자연휴식년제 구간 : 자연공원법 제28조 적용

- 공원내 자연자원보존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위험지구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정, 출입통제

- 자연휴식년제 구간 지정현황

지구별	인명피해 예상지역	거리(㎞)	주이용시기	위험요인	위험유형	책임담당자
동학사	좌암교-도덕봉	2	12~2월	안전사고	설 해	6급 유한기
갑 사	하대-연천봉	2	12~2월	안전사고	설 해	6급 도남관
신원사	연애골-연천봉	2	7~8월	고 립	풍수해	5급 장금익

- 관리내용

· 평상시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50만원)

·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시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유도

다. 재난대비 인력동원 계획 및 장비, 물자확보 현황

○ 동원인원 계획 : 45명(직원 : 30명, 일용 : 15명)

○ 동원장비 확보 : 47대(제설기 1대, 더블캡 4대, 리어카 2대 기타42등)

○ 동원물자 확보 : 모래 4개소/60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기상특보시 등산로 통제계획

· 탐방로 통제구간 및 통제소 현황

통제소(매표소)	통제구간(시점~종점)	거리(㎞)	위 치	근무인원	구조장비					비상식량					비 고
					계	무전기(대)	메가폰(대)	로프자일(조)	기타	양곡(kg)	침구(매)	의류(점)	천막(조)	기타(점)	
계	8개구간	26.6		30	45	27	10	3	5	40	2	0	1	0	
동학사	동학사-남매탑	1.7	공주반포학봉	25	30	20	6	1	3	20	2	-	1	-	
	천정-남매탑	3.3	공주반포학봉												
	상신-큰배재	2.7	공주반포학봉												
	지석골-갓바위	1.5	공주반포학봉												
	병사골-큰배재	4.6													
갑 사	갑사-남매탑	3.0	공주계룡중장	4	8	4	2	1	1	10	-	-	-	-	
	갑사-관음봉고개-은선폭포- 동학사	7.1	공주계룡중장												
신원사	신원사-연천봉	2.7	공주계룡양화	1	7	3	2	1	1	10	-	-	-		

· 고립예상지역 대피장소 지정관리

지구명	지역명	해발(m)	대피장소				구호물품				구조인력 및 장비					비 고
			대피소명	연면적(㎡)	수용인원(명)	고립예상지역~대피소(㎞)	양곡(kg)	침구(매)	의류(점)	천막(조)	구조인력(명)	무전기(대)	메가폰(대)	로프자일(조)	기타(점)	
계			3개소		95		240	40	25	3	30	24	8			풍수해2,설해3
동학사	동학사계곡	800	은 선	82	20	1	40	15	10		25	20	6	1	3	풍수해, 설해
	남매탑	600	상원암	210	25	0.3	100	5	5							설 해
갑 사	금잔디	600	신흥암	159	50	1	100	20	10	3	5	4	2	1	1	풍수해,설해

마. 공원자원 및 시설관리

○ 관리대상

- 공원자원

· 산 봉 : 천황봉(845m), 쌀개봉(827m), 관음봉(816m), 삼불봉(775m), 연천봉(738m), 수정봉(675m), 장군봉(540m), 도덕봉(534m), 황적봉(664m)

· 기 암 : 자작바위, 학바위, 신선바위, 병풍바위, 개구리바위

· 계 곡 : 갑사계곡, 동학사계곡, 천정계곡, 방성대계곡, 동월계곡, 도덕계곡, 암용추계곡, 숫용추계곡, 오송대계곡

· 폭 포 : 은선폭포, 용문폭포, 암용추폭포, 숫용추폭포

- 공원시설

· 탐방객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공단이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아래시설물

계	건축물	간선도로상 교량	탐방로				주차장	야영장
			교량	사다리	난간	데크 및 계단		
118	28	2	18	13	45	11	2	1

※ 세부내역 : 붙임 4

○ 관리내용(점검내용 및 조치)

- 공원자원

· 지역별 책임담당자가 기상특보 및 수시로 재해예상지점을 순찰하여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 공원시설

· 시설편람 기타-4,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1회 및 재해예상시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상태 불량시설물(C, D, E급)은 보수, 정비 등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 즉시 조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탐방객통제 및 안내간판 설치 등 적극관리

바. 풍·수해 예방대책

1)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설정운영 : 6. 15 ~ 10. 15

2) 위험지구 상존지역 운영

○ 사고위험지구(자체지정)

- 사고위험지역 : 동학사계곡~은선폭포 등 2개소
- 자연휴식년제지역 : 좌암교~도덕봉 1개소

3) 조치사항

○ 재난안전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시 상황보고

○ 태풍, 호우 등에 대한 기상예보 접수 및 확인, 상황대처

○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원시설물 수시 점검 및 탐방객 안전 계도활동 강화

○ 강우시 탐방로 탐방객 출입통제 : 3지구/8구간/8개소/26.6㎞

○ 기 입산자 대피소 대피 및 하산유도

○ 계곡 주변 야영객 및 탐방객 대피 유도

○ 강우시 고립예상지역 및 대피소 지정관리

- 고립예상지역 : 2지구 2지역 등 2개소
- 대피소 : 1개소

○ 각종 시설물 사용제한

사. 설해 예방대책

1)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설정운영 : 12. 1 ~ 익년 3. 15

2) 위험 상존지역 운영

○ 사고위험지구(자체지정)

- 사고위험지역 : 동학사계곡~은선폭포 등 4개소
- 자연휴식년제지역 : 하대~연천봉 등 2개소

3) 조치사항

○ 재난안전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시 상황보고 철저

○ 폭설, 대설 등에 대한 기상예보 접수 확인, 상황대처

○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원시설물 수시 점검 및 탐방객 안전 계도활동 강화

○ 강설시 탐방로 탐방객 출입통제 : 3지구/8구간/8개소/26.6㎞

○ 기 입산자 대피소 대피 및 하산유도

○ 강설시 고립예상지역 및 대피소 지정관리

- 고립예상지역 : 3지구 4지역 등 4개소
- 대피소 : 1개소

○ 야간산행 통제관리 철저

2. 재난응급대책

가.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 및 응급조치

○ 재난발생시 해당 시·군 재난대책본부에 우선 통보하고 본부에 신속히 보고

○ 자체구조대 편성 및 대기

○ 재난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구조용 장비 및 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구난체제 가동

○ 조난사고 발생시 헬기 및 기타 신속한 운송체제 확립

- 헬기요청 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위 치	비 고
공군본부항공대	042-552-3133	충남 논산시 두마면	
공주소방서	041-855-1119	충남 공주시 교동	
산림청	042-481-4119	대전시 서구 둔산동	

- 헬기장 좌표

헬 기 장 명	위 치	좌 표		비 고
		경 도	위 도	
연 천 봉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6-20-50	127-11-38	
금 잔 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36-21-38	127-12-30	

○ 국립공원 다목적위치표지판 확인 신속한 구조활동 실시

○ 사무소, 분소에 구조장비, 비상식량 및 약품 상시비치

나.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발생시 소장 책임하에 응급복구반 및 가용 인력과 장비 및 자재 등을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복구

○ 응급복구는 항구복구시까지 피해확대 방지

○ 탐방객 및 지역주민 접근 통제

○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계구역 및 재해위험지구 설정 검토(관할 시·군과 협의)

3. 재난응급복구 계획

가. 피 해 조 사

1) 피해시설 및 지역의 현황과 피해내역 조사보고

○ 복구책임기관 구분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중앙재해대책본부, 2002)에 따라 분류

○ 복구대상 및 복구 방법

○ 예산산출(예산재원구분)

2) 재해대장 작성요령에 의거 소관시설에 대한 재해대장작성제출

3) 필요시 시·군·구 재난대책본부 및 본부와 합동 조사

나. 재난복구실시 및 관리

1) 피해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완전복구 계획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지구의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방지대책도 아울러 실시하고 사업장별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현황사진을 촬영

2) 복구사업 시행

○ 피해복구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계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재발 방지

○ 대규모 공사와 주요 구조물의 복구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를 확대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

○ 사업시행시 경관 및 생태계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

3) 반복피해지구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지구 지정 또는 관리카드 작성, 비치

4) 수시 점검을 통한 피해재발 방지대책 강구

4. 재난관리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 교 육

○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실무자 초청 교육 실시로 업무숙지 및 유관기관 재해대책 업무 협조체제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실무자 관련기관 위탁교육 참여

○ 재난대비훈련 참관

- 각 도 및 시·군 재난대비훈련시 참관,

2) 홍보·계도 및 통제 강화

○ 재난 발생시 탐방객 행동요령

○ 재난발생 상황 및 탐방로, 진입로 등 통제 현황

○ 재난위험지구 현황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야영

○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동참하기

3) 홍보 방법

○ 재난발생시 언론기관(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재난상황 홍보

○ 재난위험대상지구 안내간판 설치

○ 주요 산간 계곡 방송시설 수시 점검 및 추가 설치 제고, 차량 이용 방송안내 계도

계룡산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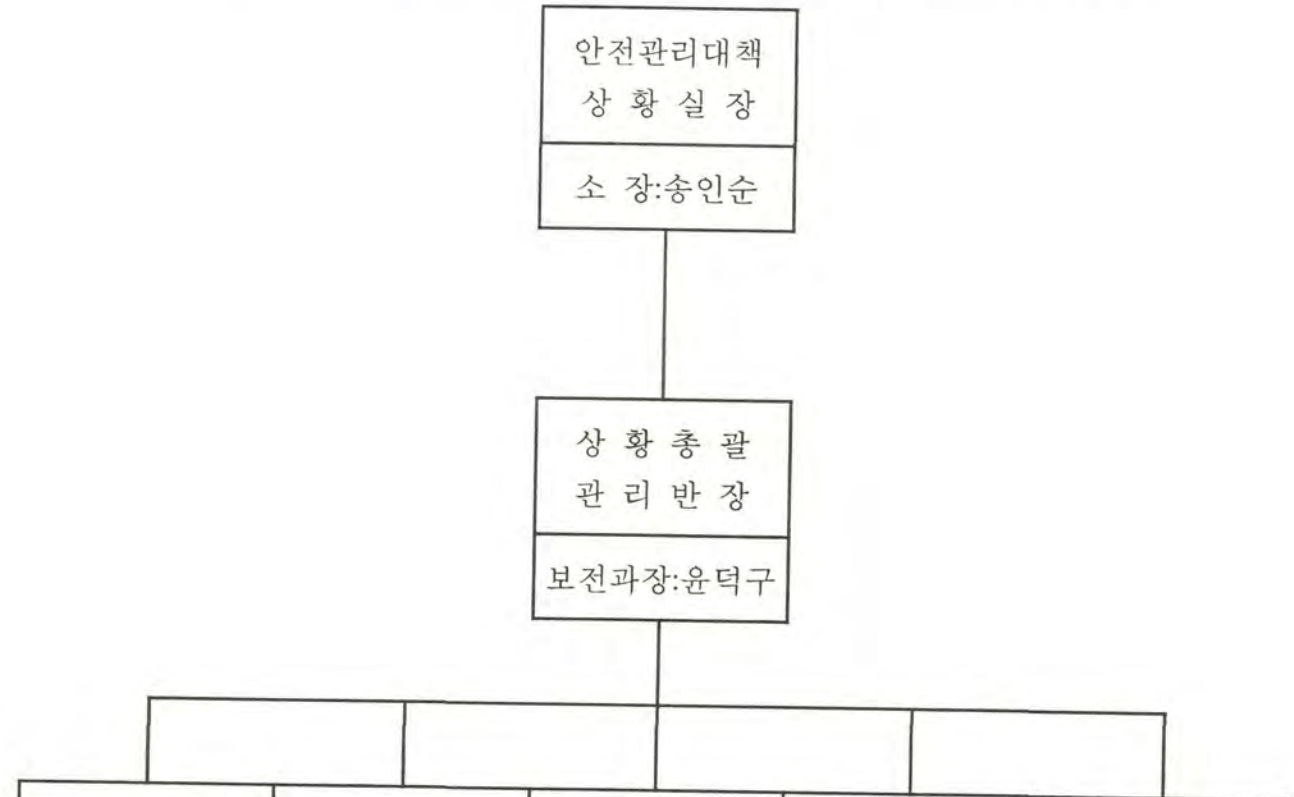

구조반		피해조사반		응급복구반		유관기관협조반		사고처리접수반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4급	이충열	5급	황규태	4급	김종우	3급	박철규	4급	조승익
5급	김영석	6급	김형환	4급	정호택	4급	조승익	6급	양수희
5급	이전웅	6급	도남관	5급	한길영	8급	박용해	6급	고명희
6급	유한기	7급	박희열	5급	홍진표			7급	한혜성
6급	박문순			5급	장금익				
6급	오창근			6급	조두행				
7급	박종철			7급	이재문				
				7급	김양겸				

기상 특보 단계별 안전대책

구 분	기 상(피해) 상 황	안 전 대 책
1단계 준비체제	○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표시 ○ 폭풍, 해일, 대설,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 : 적정인원 지정 (비상연락망 확인 등)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통신망 확인 -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 매표소, 통제소, 대피소 탐방객 통제 강화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및 탐방객 대피유도, 야영금지 - 사고 위험지구 담당자 책임 순찰 - 각종 공원시설물 점검 - 위험지역 제설작업 실시
	○ 태풍·폭풍 - 최대풍속 14m/s이상 3시간 이상 지속시 - 최대순간풍속이 20m/s이상	
	○ 호우 - 24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때	
	○ 대설 - 신적설이 10㎝ 이상 ※ 북한산, 계룡산의 경우 5㎝	
2단계 경계체제	○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표시 ○ 해일, 대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전직원) - 안전관리대책 강화조치 ·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순찰 강화 · 담당자 상주배치 - 등산객 안전지대 대피 및 귀가조치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및 야영금지 - 교통두절지역 제설작업(유관기관협조) -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폭풍·태풍 - 최대풍속 21m/s 및 최대순간풍속이 26m/s이상 3시간 지속시	
	○ 호우 - 24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때	
	○ 대설 - 신적설이 30㎝ 이상 ※ 북한산, **계룡산의 경우 20㎝**	
3단계 비상체제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전직원)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강화 - 피해지역 구조활동 실시 - 피해상황 접수 및 보고 - 피해시설 및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공원시설(공단관리시설) 현황

○ 건축물

시설명		위 치	면적(㎡)	시설명		위 치	면적(㎡)
계		29동					
관리소	관리사무소	공주 반포 학봉	527	관리소	갑사분소	공주 계룡 중장	128
	신원사분소	공주 계룡 양화	83		동학사야영장	공주 반포 학봉	85
	탐방안내소	공주 반포 학봉	270	대피소	은 선	공주 반포 학봉	82
매표소	동학사	공주 반포 학봉	32	매표소	갑사주차장	공주 계룡 중장	9
	천 정	공주 반포 학봉	12		상 신	공주 반포 하신	9
	갑 사	공주 계룡 중장	18		신원사	공주 계룡 양화	13
	동 월	공주 반포 학봉	74		동학사검표소	공주 반포 학봉	10
	지석골	공주 반포 학봉	3		병사골	공주 반포 학봉	12
공중변소	동학사제2주차장	공주 반포 학봉	75	공중변소	동학사제3주차장	공주 반포 학봉	89
	동학사조각공원	공주 반포 학봉	47		동학사헌장비	공주 반포 학봉	30
	동학사앞	공주 반포 학봉	91		갑사주차장	공주 계룡 중장	73
	동학사야영장	공주 반포 학봉	23		신원사앞	공주 계룡 양화	23
	갑사야영장	공주 계룡 중장	30				
	갑사앞	공주 계룡 중장	47				
	신원사금용암	공주 계룡 양화	20				

○ 간선도로상 교량

위 치(명칭)	연장(m)	폭(m)	구조(재료)	시행청
동학사차량통제소앞(무풍교)	23.2	12	콘크리트 스라브	충청남도
갑사주차장입구(청운교)	20	15	콘크리트 스라브	공 단

○ 탐방로상 교량

위 치(명 칭)		연 장(m)	폭 (m)	구조(재료)	비 고
계		18개소			
동학사지구	차량통제소뒤	9	6.4	콘크리트교	
	관리사무소앞	13.4	5	콘크리트교	
	물레방아휴게소아래	7	8	콘크리트교	
	물레방아휴게소위	16	6	콘크리트교	
	구계룡휴게소아래	7.5	3	목 교	
	세심정앞	4.5	6	콘크리트교	
	동학사앞	6	3.5	콘크리트교	
	동학사위	10	4	콘크리트교	
	구야영장위	11	2	목 교	
	세심정위	7.5	2.6	목 교	
갑사지구	갑사분소앞	8	4.7	콘크리트교	
	대적전앞	10	4	콘크리트교	
	철당간지주앞	11	2	목 교	
	용문폭포위	12	2	목 교	
	신흥암앞	8.4	1.5	목 교	
신원사지구	신원사앞	8.5	5	콘크리트교	
	고왕암아래	15	4	콘크리트교	
	수도암입구	10	1.2	목 교	

○ 탐방로상 사다리

위치(명칭)	연 장(m)	폭 (m)	구조(재료)	비 고
계	13개소			
자연성능	24	1	철사다리	
자연성능	10	1	철사다리	
자연성능	17	1	철사다리	
자연성능	40	1	철사다리	
자연성능	9	1	철사다리	
삼불봉입구	12	1	철사다리	
삼불봉밑	34	1	철사다리	
삼불봉뒤	36	1	철사다리	
삼불봉뒤	9	1	철사다리	
자연성능	16	1	철사다리	
자연성능	10	1	철사다리	
자연성능	12	1.2	철사다리	
자연성능	13	1	철사다리	

○ 탐방로상 데크 및 계단(목재,철재) : 11개소

위치(명칭)	연 장(m)	폭 (m)	구조(재료)	비 고
계	11개소			
큰배제	75	1.5	목재+철재	
자연성능	31	1.5	철 재	
자연성능	28	1.5	철 재	
자연성능	9	1.5	목재+철재	
자연성능	9	1.5	목재+철재	
자연성능	7	1.5	목재+철재	
자연성능	7	1.5	목재+철재	
자연성능	12	1.5	목재+철재	
도덕봉하단	24	1.5	철 재	
장군봉아래	12	1.5	목재+철재	
연천봉하단	73	1.5	목재+철재	

○ 탐방로상 난간 : 45개소

○ 주차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갑사주차장	공주 계룡 중장	15,280	
동학사주차장	공주 계룡 학봉	9,860	

○ 야영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동학사야영장	공주 계룡 학봉	3,771	

제 20 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제 1 절 재난관리 공통사항

1. 재난관리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

가. 계획수립 절차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

계획수립 · 제출	⇨ 행자부 협의	심의 · 확정시달	⇨	집행계획 · 시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청)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중앙부처(청)		중앙부처(청)→시 · 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난관리세부집행계획(1년)

지침작성 · 시달	⇨ 관할시,도 지사협의	계획수립	⇨	확정보고(시달)
건교부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재난관리 책임기관 계획종합		공단본부 → 건교부(지역본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재난관리세부집행계획(1년)

지침작성 · 시달	⇨ 관할시,도 지사협의	계획수립	⇨	확정보고 · 시행
본사 → 충청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재난관리 (품질안전부) 계획수립		지역본부→ 본사

나. 계획수립 분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분야)

○ 풍수해대책

○ 설해대책

○ 지진대책

○ 인적재난대책

2. 재난대책본부 편성 및 근무체제

가. 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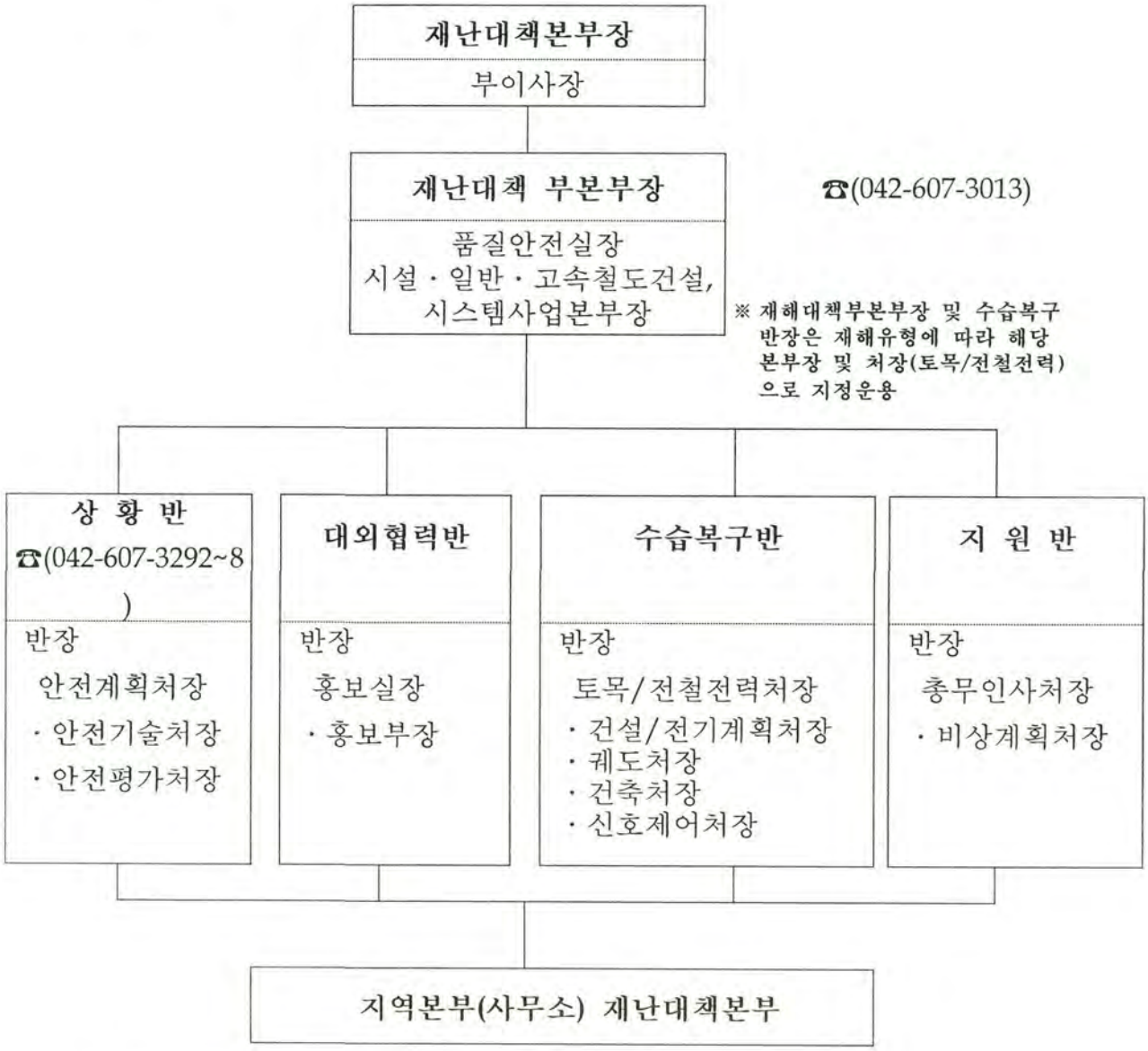

※ 철도공사 상황실 : 042)481-3901~5

재난대책본부 역할

- ▶ 재난수습,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및 상황종합관리
- ▶ 재난수습복구활동의 지휘통제, 상황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
  · 건교부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및 관할지역 구조 · 구난기관

나. 충청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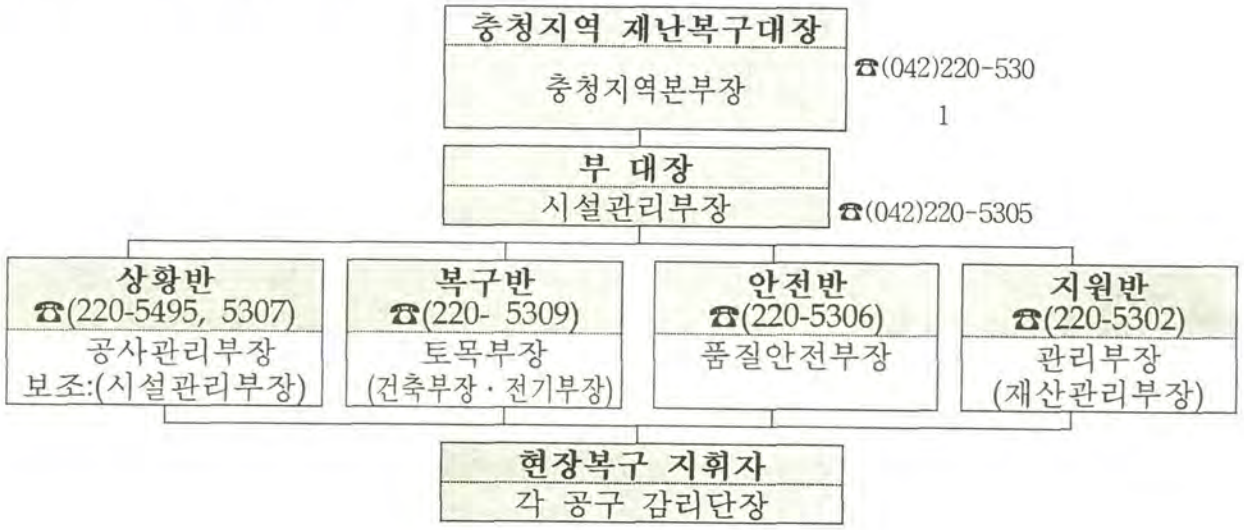

다. 근무체제

○ 근무운영 : 3단계 (준비, 경계, 비상단계)로 편성 · 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 경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비상단계 :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재난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충청지역본부 재난복구대 편성표

'05.3. 현재

*전보시 후임직원승계

재난(사고)복구대장
충청지역본부장

부대장:시설관리부장

상황반	
반장:공사관리부장	
보조:공사관리, 시설관리부, 품안부 직원	
갑반	을반
천동호	안효권
정남철	김동준
이인희	서정모
유형곤	최정은
정철상	염대억
이봉호	안재호
박병주	안희철
김영환	원홍선
안성진	

※복구반	
반장:토목부장	
보조:토목부 직원 전기,건축부직원	
갑반	을반
곽명수	오영환
신현상	장을호
김정석	전광호
박상만	서윤식
박상구	이광재
송대호	
전기부 29명	건축부 10명

지원반	
반장:관리부장	
보조:관리,용지부, 재산관리부 직원	
갑반	을반
최 인	김영태
조득호	김종극
송순화	이태호
조재구	한진수
김지억	노우종
이천형	박양배
권광진	권수길
이만록	배우건
전상민	이종석
정현숙	강인순
이영실	신주경
현옥순	이병기
노우종	

안전반	
반장:품질안전부장	
보조:품질안전부, 토목궤도부 직원	
갑반	을반
전호성	허옥신
배준형	강택모
정재균	박범욱
박만호	염대억
권인석	유현동
최정은	김수정
이상진	박만호
신석근	진경만

※ 수습복구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부서 지정·운용 (건축부, 전기부)

현장복구대장(감리단장)

보 조: 감리공구장, 현장소장

지원업무수행자: 감독관(감리)

상황조	장비동원조	인원동원조	지원조
시공사 공무담당책임자	시공사 장비담당책임자	시공사 공사담당책임자	시공사 자재담당책임자

○ 재난복구대 근무조 운영

- 운영시기 : 1, 2, 3급 재난 발생시
-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복구대 상황반장은 재난복구대장에게 보고 후 재난복구대 반원소집 통보
- 근무장소 : 충청본부 회의실(재난상황에 따라 재난복구대장이 지정)
- 각 반별 전·후반 2교대 근무조 운영
  · 전반 09:00 ~ 21:00
  · 후반 21:00 ~ 익일 09:00
- 충청지역본부 재난복구대 기능
  · 재난상황의 수습 및 복구작업 총괄 지휘
  · 인명 및 재산피해 관련 조사 및 사후처리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긴급 복구용 장비, 자재 및 인력 지원

○ 재난복구대 책임자별 임무

반 별	직 명	임 무
재난복구대장	충청지역본부장	복구작업총괄 지휘감독
재난복구부대장	시설관리부장	단장보좌(단장유고시 업무대행)
상황반장	공사관리부장	재난상황파악 및 피해집계보고 등
복구반장	토목부장 (건축부장,전기부장)	재난복구작업 현장지휘
지원반장	관리부장 (용지부장)	재난복구관련 지원업무
안전반장	품질안전부장	재난현장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현장작업대장	감리단장	공사현장 재난복구작업 총괄지휘

4) 복구 업무 흐름도(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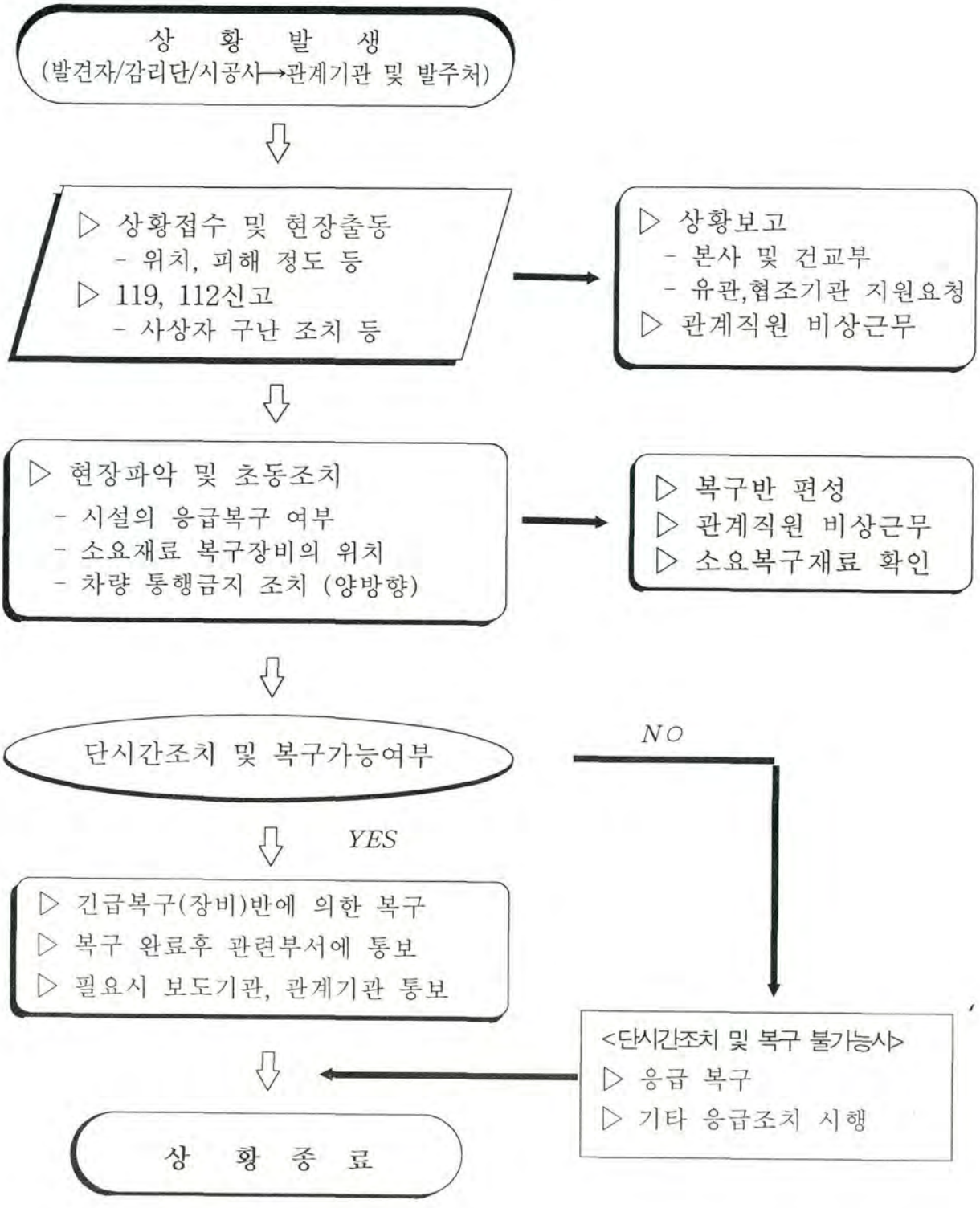

※. 건교부(철도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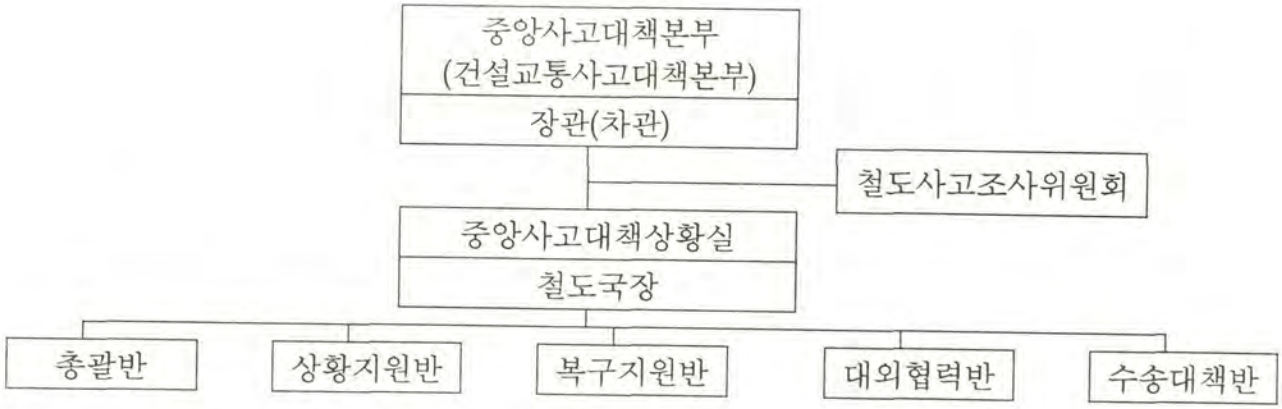

※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조사업무 수행('05.상반기 설치예정)

- 실무반 편성은 철도국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구성

· 총 괄 반 : 사고수습 및 조사 총괄·조정, 보상협의, 대외홍보

· 상황지원반 : 총괄반 업무지원 및 기타지시사항 처리

· 복구지원반 : 응급구조·구난 및 사고복구 지원

· 수송대책반 : 특별수송대책의 수립·시행·점검

· 대외협력반 : 대외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3. 재난관리(보고) 체계

가.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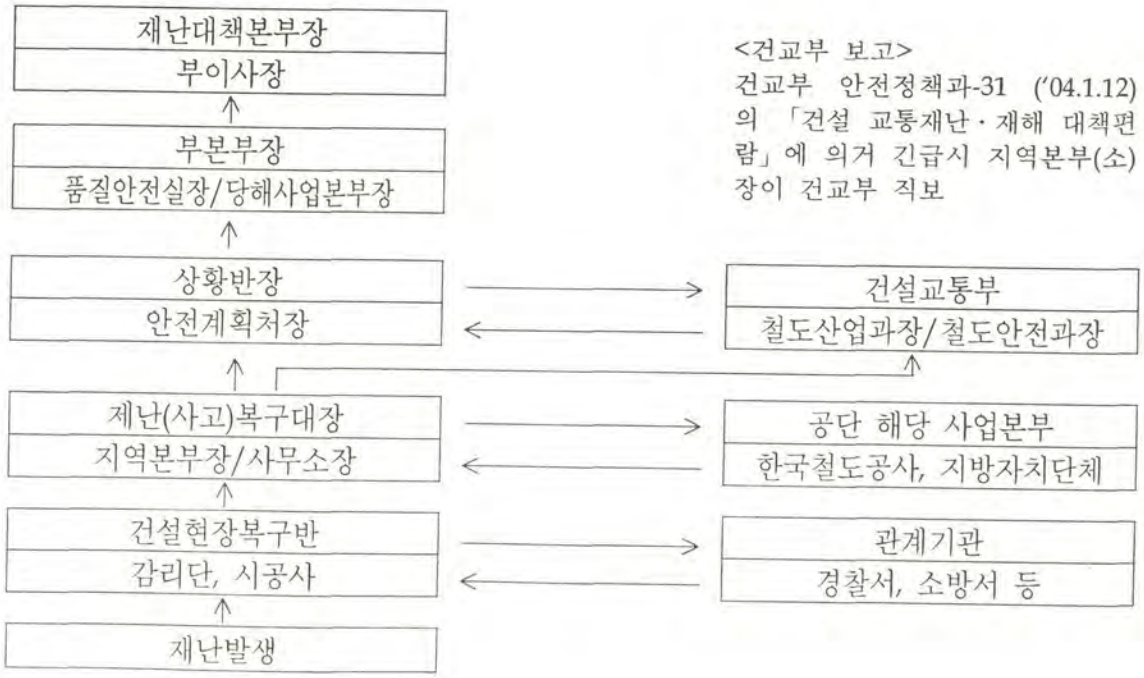

나. 충청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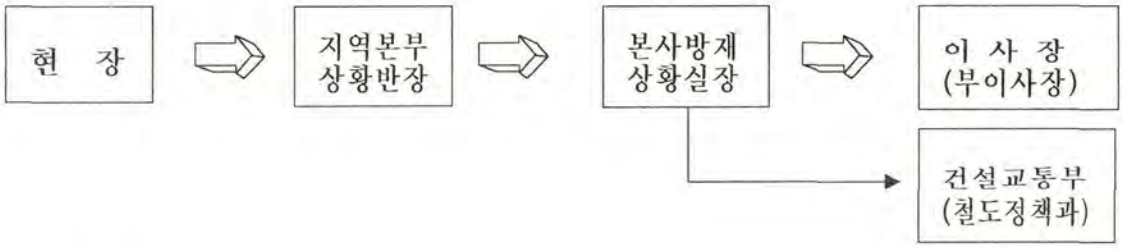

4. 재난관리업무 분장

구 분	담당부서	분장업무 세부내용	관련근거
법적사항 및 관리총괄	품질안전실 각 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 재난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 법 제23조제3항 · 시행령제28조
		- 재난상황 대응체계 검토 · 보고	- 법 제20조제3항 · 시행령제24조
		- 재난 및 방재시설물의 점검 · 확인 · 보완요구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 시행령제32조
		- 방재시설관련 안전관리업무 계획 수립 및 조정	- 법 제24조제2항 · 시행령제25조제2항
		- 재난예방조치,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 지원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 법 제26조
		- 재난 응급조치관련 계획수립	- 법 제47조
		-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총괄	- 법 제69조 · 시행령제76조
설계 및 기준설정	기 술 실	- 방재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제 · 개정업무 총괄	- 법 제26조제6항 - 법 제27조제1항 · 시행령제32조
재난관리	일반철도건설본부 고속철도건설본부 시스템사업본부	- 준공전 시설물 관련 방재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법 제26조제2항
		- 방재시설 시공관리	- 법 제26조제1항 · 시행령제32조
		- 재난응급조치 관련 시행	- 법 제26조제6항
시설물 재난관리	시 설 본 부	- 준공후 시설물 관련 방재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법 제26조제2항
		- 방재관련 시설물의 유지 · 보수	· 시행령제32조
		- 재난응급조치 관련 시행	- 법 제47조
정보통신 체계구축	기획조정실 (정보관리처)	- 재난관리업무전산화 지원협조	
지원/홍보	관리본부/홍보실	- 재난관련 업무지원/홍보	

주) "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2 절 단계별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1) 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지정·운영

○ 주 관 : 충청지역본부장

○ 안전점검의 날 : 매월 4일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 방재의 날 : 매년 5월 25일

-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

2) 안전관리헌장 제정·게시

○ 제 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정·고시

○ 게 시 : 충청지역본부 2개소 및 각 감리단, 시공사 게시완료 ('04. 11월)

-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공사현장 상황판, 교육장에 상시 게시

2. 대비대책

1) 재난대책상황실 설치·운영

가) 기 능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대응체계 유지
-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등

나) 대책상황실은 충청본부 회의실에 설치하며, 3단계(준비, 경계,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준비단계>

○ 근무체제 : 기상특보가 없을 시

- 근무시간 : 당일 09:00~18:00 (18:00이후 당직근무자), 익일 07:00~ 09:00
- 근무장소 : 해당 근무부서 사무실(토·일요일: 당직실)

○ 근무요령

- 기상정보(강우량포함) 파악 및 전파
  · 상황반 근무자는 익일 07:00 이전까지 당직근무자로부터 근무 상황을 인계받아 재해상황보고 일지에 기록 후 08:00까지 상황반장에게 보고
- 비상연락 확인 및 점검
- 기상특보 발령시 근무자 비상소집
  · 당직근무자는 재해대책 상황반 근무 인수후 야간 기상특보가 발효시에는 당일 근무자를 비상소집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함

<경계단계>

○ 기상조건 : 기상주의보 발효 시

○ 근무체제 :

- 근무시간 : 1주야 24시간 근무 (09:00~익09:00)

  ※ 근무시간중 기상특보 해제시는 평상체제로 운영
- 근무장소 : **충청지역본부 재해대책 상황실**(회의실에 설치)

○ 근무요령

- 기상정보(강우량포함) 파악 및 전파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 기상조건 변동시 근무자 비상소집
- 재해발생우려 또는 발생시 재난대책본부 소집

<비상단계>

○ 기상조건 : 기상경보 발효 시

○ 근무체제 :

- 근무시간 : 경계단계와 동일하게 운영
- 근무장소 : **충청지역본부 재해대책 상황실**(회의실에 설치)

○ 근무요령

- 기상정보(강우량포함) 파악 및 전파 : 경계단계와 동일
- 피해유무 파악 및 보고
- 재해발생우려 또는 발생시 자연재난대책상황반 소집

· 본사 및 관계기관 보고조치 후 재해대책 복구체제로 운영

다) 재난대책상황실 효율적인 운영

○ 재난대응매뉴얼(비상연락망, 응급구조기관 연락처, 반별 임무 및 개인별 임무, 지도, 상황근무일지, 상황사고보고양식 등) 등을 재난대책상황실에 비치한다

○ 상황근무자는 유관기관(철도공사, 지자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사, 감리단 등)으로 부터 능동적인 정보 수집

○ 우기와 동절기 재해대책반 구성 및 운영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

2) 재난대비 교육

○ 주　　관 : 충청지역본부 품질안전부장

○ 대　　상 : 충청지역본부직원, 감리단 및 시공사의 관련업무 직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재난예방 대책, 재난대비 비상근무 및 보고체계, 재난발생시 대처요령, 재난수습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교육시** 병행하여 실시(필요시는 별도 시행)

제 3 절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대책

1) 기본방향

가) 재해대책의 각 단계별 기본방침

○ 주도면밀한 재해예방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전조치

○ 재해발생시 신속대응체계 확립

2) 추진전략

○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 체계 확립

○ 신속한 복구 의사결정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시행

3) 단계별 재난관리대책

가)예방대책

① 공통사항

○ 홍수기전 각종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정비

- 공사장등 방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 낙석·산사태 위험도로의 산사태 방지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토사재해대책

○ 방재정보의 보급 및 방재훈련의 실시(감리단·시공사)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지정(감리단·시공사)

② 재해우려지역 점검·정비 및 관리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매년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점점검시 병행시행
- 점검대상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물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해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 재해예방 작업 시행(3월~4월)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강우기 이전에 시행·완료토록 추진(감리단·시공사)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응급대책 강구 등 특별관리

③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 대상시설물의 관리

- 시설·전기분야 현업시설관리자는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지정하여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발령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감시원을 배치하여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열차의 서행, 정지 등 조치

○ 관리방법

- 재해우려개소는 재해 유형별 분류 단계별(평시, 기상특보 발령시, 재해발생시)로 재해예방·응급복구대책 수립

④ 기상특보별 상황관리요령(감리단·시공사)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 조치사항

· 관내 공사현장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점검·정비

· 댐·저수지의 예비방류 검토 및 수문 점검

· 수방자재·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강우량 파악 분석 등 강우상황 관리

· 재해위험지역 순회점검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대기조치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호우경보

▷ 24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 조치사항

· 관내 공사현장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 피해지역에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현지배치 수배

· 시간별 강우량 보고

· 홍수 예·경보에 따른 재해사전예방대책 실시

·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역의 공사 현장직원 및 주민대피

나. 설해대책

1) 기본방향

가) 목 적

○ 효율적인 설해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폭설, 결빙 등 재난으로부터 관내 공사현장 등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

나)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 빈발

○ '04년 3월 충청지방의 기록적 폭설로 초래된 교통정체 등 재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

○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방재기술 연구 필요

○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장비·물자 비상동원시스템 구축 및 철도 등 국가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체계 확립 필요

다)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예방적 설해 예방대책 추진
- 종합적 설해 대비대책 구축
- 신속한 설해 대응대책 강화

○ 추진전략

-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단계별 설해대책 및 시설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대책 수립
- 장애를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재대책 추진
-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추진

2) 단계별 재난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① 설해예방대책 공통사항

○ 시설별, 지역별, 제설, 제빙 등에 관한 대책 수립·추진

○ 설해예방을 위한 조직정비, 인원·장비확보, 자재비축

○ 도로별, 지역별 교통대책 및 교통시설별 설해경감대책 강구

○ 유관기관 협조·응원체계 강화 및 구호체계 확립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및 홍보체계 구축

② 제설체제의 정비

○ 비상근무 및 정보전달(보고)체계 확립

○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 사전확보 및 현장 비축

○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제설요원 동원·배치계획

○ 설해 위험·취약지역(요소) 사전 점검·대비

○ 설해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실시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운행선 인접공사장 설해방지 대책

나) 대비대책

①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구축

-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구축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취약구간」에 장비를 상시 또는 강설 예보시(강설확률 60%) 강설 전 현장배치

○ 제설대책 상황실 설치

- 설치 및 운영

· 제2장2. 재난관리공통사항 단계별재난관리 대비대책 참조

- 운영시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다음 운영요건 해당시, 기타 제설 대책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자연재난대책기간(겨울철) :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철도분야 : 대설경보 발령시 또는 철도 궤간내 적설량 14㎝~21㎝인 경우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 운영장소 : 충청지역본부 회의실

② 재난 대비 훈련 및 홍보대책 강화

○ 재난 대비 모의훈련실시

- 설해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전달, 지원요청, 구조·구급 등 실천적 모의훈련실시

- 연 1회이상 실시 및 훈련평가

○ 재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③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제설재료 등 사전확보(감리단·시공사)

○ 제설장비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제설재료 등 사전 확보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재료와 모래 등 사전 확보

- 자재적치장(적사장, 저장창고, 슈트장, 적사함 등) 확충 비축

- 굽은 길, 응달진 길, 교량구간 및 터널 입·출구 등 취약 구간에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표지 등 위험표지 설치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간판 사전준비

④ 긴급 구조·수습대책

○ 수습 및 복구

- 제설대책 상황실 설치(충청지역본부 상황실)
- 상황 파악 및 조치
  · 현장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휀스, 전광등 등 차량 유도시설 설치
  · 차량통제 안내간판 설치
  · 차단시설 설치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인명 구조
  · 우선적으로 긴급 구조활동 전개, 인명구조
  ·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 요청(소방본부, 소방서, 재난구조부대,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 구급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구조·이송을 위한 헬기 구조요청
  · 중앙긴급구조본부(3703-4119), 관할 소방관서(119)

2. 인적재난

가. 철도시설 인적재난대책

1) 기본방향

가) 개 요

○ 철도시설 인적재난 대응 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철도시설 인적재난 예방 및 사후 수습 등 세부집행계획

나)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여 건 변 화

▶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안전책임 분리로 책임분쟁 증가

○ 철도시설 및 운영분리의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안전책임이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로 분리

○ 철도사고 발생시 양 기관간 안전책임에 대한 분쟁 우려

▶ 철도산업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안전위협 증가

○ 고속운행, 대량수송체제의 철도특성상 사고발생시 대형참사로 발전

○ 간선철도 투자확대 등 철도산업 확대로 재난발생 우려 증가

▶ 철도·지하철 안전에 대한 불감증 및 제도적 장치 부재

○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안전문화 수준 저하

○ 예방적·제도적 장치 부재로 철도사고 발생시 사후대책에 치중

전 망

◇ 다종다양한 철도재난원인에 대해 위험예측과 대응 곤란

◇ 철도재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사후적 대응 어려움

다) 재난관리대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무사고·무결점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산업재해 저감 추진

'05년도 추진목표

◇ 철도산업재해 발생률을 10% 감축 ('04 실적치 기준)

▷ **2005년도 달성 : 산업재해율 0.49**

○ 추진전략

예방대책	철도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철도시설, 안전점검 시행 등 예방정책 강화
대비대책	비상대응계획 수립, 사고유형별 대응매뉴얼 마련 후 모의훈련 실시 등 철도재난대책 확립
대응대책	비상 재난체계 구축,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능력 향상
복구대책	철도사고 조사기구 운영, 피해배상대책 수립,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 철도복구대책 수립

- 2005년도 중점추진 안전관리 활동

·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및 안전관리목표제 도입

· 안전관리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내실화

·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심사를 통한 안전관리

· 위험개소 안전활동 강화

· 운행선 인접공사 및 횡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 사고조사 및 처리체계 정비

2)단계별 재난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수립

- 철도안전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마련 (건교부)

· 철도안전법 제정('04.10.22)에 따른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철도안전법 시행에 만전('05.4까지)

○ 철도시설 안전설비 확충

- 철도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철길 무단횡단, 불법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운행 전구간에 안전울타리 및 CCTV 보안장비 설치

※ 고속철도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설치

· 철도·지하철 역사내 승강장 승객의 추락방지 및 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펜스, 안전발판 등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

· 재해예방을 위하여 선로시설, 터널·교량 등 구조물, 하수시설·산사태 방지시설 등 지속적 개량

-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시설 확충

· 철도사고의 주요원인인 건널목에 대하여 고속철도 운행구간내 건널목을 우선 입체화

· 건널목사고 예방과 열차안전운행 확보, 도로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매년 건널목 입체화 추진

○ 철도안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점검내용 : 관할지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

○ 시공중인 구조물에 대한 안점점검 (건기법 제26조의 2)

- 점검시기 : 수시, 매 공정별

- 점 검 자 : 감리단 및 시공사(수시), 충청지역본부 품질안전부 (매월)

- 점검방법 : 공단자체 및 외부기관 합동 점검으로 중복점검 지양

○ 종합안전 심사 및 평가

- 시행시기 : 년 2회(6월, 11월)

- 시 행 자 : 본사 품질안전실

- 심사 및 평가내용 : 지역본부 재난업무책임부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나) 대비대책

○ 건설현장 안전교육

>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식적 교육을 탈피한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사고사례 전파 등 사고예방 차원의 교육에 중점

- 시 기 : 본사 품질안전실(년1회 이상), 충청지역본부(분기별 1회 이상)
- 대 상 : 충청지역본부 직원, 감리단 및 시공사의 안전업무 관련직원
- 교육내용
  -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대책
  - · 해빙기, 우기, 동절기의 안전관리
  - · 건설현장의 장비 및 공사차량 안전관리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계약자로 하여금 매월 안전의 날을 정하여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

○ 휴무중 안전조치(설, 추석 등 연휴시)

- 휴무대비 관내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휴무시작 7일전까지 수립 시행

  ※ 안전관리 계획 내용 및 조치할 사항(감리단·시공사 포함)
  - · 일·숙직 근무계획, 취약·위험개소 관리대책
  - ·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망
  - ·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스위치, 콘센트등 화기류 일제점검
  - · 구조물 및 시설물 등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 · 외부인 현장출입 방지를 위한 현장 쇄정조치 등
-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연락망 유지

- 특히 풍·수·설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외부인 무단출입 방지대책 강구

○ 비상복구 인력 및 장비 확보(감리단·시공사)

- 긴급 물자·자재의 비축 및 운용
- 비상복구 상황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제 4 절 행정 조치사항

1. 지역본부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관리업무를 본사 계획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실적 본사 제출

○ 재난관리담당부서장은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 계획에 반영

○ 관련사업부서장은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 (안전시설물 보강 등)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책본부 및 상황실운영 업무에 적극 협조

<첨부. 1>

재난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접수일시 : . . :

시행일시: 발 신 : (인)

제 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조치사항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첨부. 2>

사 고 급 보

사 고 종 별			보고받은시각 : 년 월 일 시 분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분(날씨 :)				
발 생 장 소	선 역 역간(기점 k m지점)				
	구배 : 곡선 : 터널 : 교량 :				
열 차	제 열차(동력차 호, 현차 량, 환산 량)				
피 해					
발 생 원 인					
발생내용					
사 고 관 계 자	소 속	직명/직급	성 명	연 령	비 고
발 신 자			발신일시 : 월 일 시 분		
수 신 자			수신일시 : 월 일 시 분		

(규격: 210×297mm/A4)

<table>
<tr><td rowspan="10">피

해</td><td rowspan="4">인

명</td><td></td><td>사망</td><td>중상</td><td>경상</td><td>계</td><td colspan="5" rowspan="4">피해자 신원</td></tr>
<tr><td>작 업 원</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r>
<tr><td>공 중</td><td></td><td></td><td></td><td></td></tr>
<tr><td>기 타</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차
량
피
해</td><td>동 력 차</td><td>대 파</td><td>중 파</td><td>소 파</td><td></td><td>품명</td><td>규격</td><td>개수</td><td>기타</td></tr>
<tr><td>화 차</td><td></td><td></td><td></td><td rowspan="5">선 로</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r>
<tr><td>공사용장비</td><td></td><td></td><td></td></tr>
<tr><td>공사용장비</td><td></td><td></td><td></td></tr>
<tr><td>기 타</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0">조치(사고복구관계 등)</td></tr>
<tr><td colspan="10">사고원인
가.
나.
다.</td></tr>
<tr><td colspan="10">책임소재</td></tr>
<tr><td colspan="10">문제점</td></tr>
<tr><td colspan="10">기타</td></tr>
<tr><td colspan="10">보고자 직명 성명 (인)</td></tr>
</table>

(규격 : 210×297mm/A4)

<첨부 3>

충청지역본부 관내 의료기관

지 역	의료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전, 충청 지역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220-7500
	을지대학병원	대전시 중구 목동 24-14	042)259-1277
	대전 중앙병원	대전시 대덕구 법1동 285-3	042)670-5114
	조치원 성모병원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면 5	041)867-2100
	청주 성모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5	043)219-8000
	옥천 성모병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8-4	041)730-7119
	천안 순천향병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041)570-2146
	서천 성모병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어리 191-1	041)953-5000
경북, 전북 지역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100
	대구 파티마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4동 302-1	053)940-7114
	구미 차병원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6526
	구미 순천향대학병원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72-8	054)456-1444
	김천 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동 462-1	054)420-9389
	군산 제일병원	전북 군산시 문화동 890-7	063)460-3114
	군산 의료원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2	063)472-5495

관내 헬기 이송병원 지정현황

항공대	헬기 착륙장소	착륙 가능 병원	전화번호
충청북도	-진천 도로공사 -오곡천 모래사장 -미호천 고수부지	-청주 성모병원(청주시 율량동) -충북대학병원(청주시 개신동)	043-219-8000 043-269-6114
충청남도 042-220-7114	-천안T/G,대전T/G -직산 비상활주로	-충남대학병원(대전 대사동) -유성선병원(대전 지족동)	042-220-3119 042-823-3333
경상북도 053-984-9121	-인터체인지 (김천,남구미,금호,북대구,건천,경주,다부,군위,의성,일직,고령) -휴게소 (추풍령,칠곡,경산,안동,현풍) -비상활주로 (김천,월례)	-구미 순천향병원 (구미시 공단2동) -대구 경대병원 (대구시 삼덕동) -경주병원(경주시 용강동) -영남대 영천병원 (영천시 오수동) -영남대학병원(대구시 대명동)	054-461-1149 053-422-1141 054-748-9320 054-821-1101 054-338-9000 053-623-8001

<첨부 4>

언 론 기 관

언론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주 간	야 간	
KBS-TV	02)781-4444	02)781-4198	한국방송공사
MBC-TV	02)789-2513	02)782-4144	문화방송
SBS-TV	02)369-2161	02)785-2934	서울방송
YTN	02)398-8331	02)398-8349	
K-TV	02)3450-2114	02)3450-2189	
TBC	02)311-5114	02)311-5366	교통방송
불교방송	02)705-5114	02)705-5501	
연합뉴스	02)398-3114	02)398-0820	
경향신문	02)3701-1114	02)3701-2408	
조선일보	02)724-5114	02)724-5109	
한국일보	02)724-2114	02)724-2244	
한겨레신문	02)7110-114	02)7110-210	
동아일보	02)2020-0114	02)2020-0428	
중앙일보	02)751-5114	02)751-9809	
국민일보	02)781-9114	02)781-9115	
문화일보	02)3701-5114	02)722-8328	
세계일보	02)2000-1234	02)2000-1534	
대한매일신문	02)2000-9000	02)721-5263	
매일경제신문	02)2000-2114	02)268-7018	
한국경제신문	02)360-4114	02)312-6610	
서울경제신문	02)724-2678	02)736-7990	
내외경제신문	02)724-0114	02)727-0664	

<첨부 5>

재 난 유 관 기 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간	FAX	야간(당직실)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수송정책과	02)504-9020	02)504-9199	02)503-7400
" 광역교통정책단장	직통	02)507-1600		02)503-7400
" 수송물류심의관	수송정책과	02)504-9062	02)504-9199	02)503-7400
	철도절책과	02)504-9029	02)504-4491	02)503-7400
" 육상교통국장	도시철도과	02)504-9149	02)504-7325	02)503-7400
" 기술안전국장	안전정책과	02)504-9161	02)504-9163	02)503-7400
" 철도국장	철도안전과	02)504-9194	02)503-7305	02)503-7400
	철도산업과	02)504-0165	02)504-0148	02)503-7400
" 도로국장	도로정책과	02)504-9071	02)504-0340	02)503-7400
	도로건설과	02)504-9073	02)504-3259	02)503-7400
	도로관리과	02)504-9075	02)504-0341	02)503-7400
	도로환경과	02)5047320	02)504-7333	02)503-7400
" 수자원국장	수자원개발과	02)504-9045	02)504-2678	02)503-7400
	하천관리과	02)504-9043	02)504-9112	02)503-7400
" 항공정책심의관	항공정책과	02)504-9182	02)504-2679	02)503-7400
	공항계획과	02)504-9183	02)504-7329	02)503-7400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건설기획과	02)504-9194	02)504-7305	02)503-7400
한국철도공사	수송안전단	042)481-3167	042)481-3730	042)481-3200
항공안전본부	운항과	02)2662-2169	02)6342-7249	02)2669-6391
	공항시설과	02)2662-5518	02)6342-7309	02)2669-6391
한국수자원공사	품질안전팀	042)629-3359	042)629-3399	042)629-2660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부	02)2230-4912	02)2230-4097	02)2230-4411
인천국제공항공사	품질안전팀	032)741-5315	032)741-2640	032)741-1900
한국공항공사	안전관리부	02)660-2822	02)660-2366	02)660-2214

<첨부 6>

대 외 기 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관	FAX	야간(당직실)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심의관	02)732-7157	02)720-2057	02)723-7777
	수질개선기획단	02)732-7156	02)734-9347	02)723-7777
국가정보원		02)503-7726	02)2187-0321	
감사원	3국1과	02)2011-2311	02)2011-2315	02)2011-2301
재정경제부	국고과	02)503-9280	02)503-9282	02)503-9150
행정자치부장	방재계획담당관	02)3703-5210	02)3703-5566	02)3703-5420
	민방위재난관리국	02)3703-5150	02)3703-5564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02)3148-6331	02)3148-6331	02)3148-6114
국방부	군수기획과	02)748-5718	02)748-5799	02)748-0300
농림부	농촌용수과	02)2110-4492	02)503-7208	02)2110-4000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0	02)507-2456	02)2110-6570
기상청	예보국	02)836-3156	02)836-3157	02)841-0011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	02)313-0692	02)393-0339	02)363-0112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032)887-4004	032)881-9594	032)884-5506
대전광역시청	도시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	042)600-2711	042)600-2719	042)600-2222
충청남도청	소방본부 재난관리과	042)220-3722	042)220-3546	042)220-3119

제 21 장 건설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적

○ 금강수계(삽교천, 갑천포함)내의 장마, 홍수, 태풍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댐방류에 의한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홍수예보·전파와 기민한 상황대처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철은 한랭건조하며, 특히 여름철에 연중강수량의 2/3가 집중되며, 집중호우 중에 시간당 강우가 100mm가 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종종 발생하여 예측 및 대응이 곤란한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지형적으로는 산지 및 평야의 발달과 분포, 하천흐름의 양상이 뚜렷하며,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하천이 유로연장이 짧고 하상경사가 급하여 재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는 불안정한 지역이 많음

○ 도시내의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복잡화 등의 실정과 더불어 도시집중화 및 인구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 요인 증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홍수예보 체제의 정비

○ 신속·정확한 홍수예보 실시 및 홍보

○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체제 구축

○ 홍수예경보 지점확대 및 관측시설 개선

○ 댐관리 및 방류량 조절을 위한 체제 구축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정비점검 실시

○ 효율적인 홍수예보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 홍수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수문관측자료의 보존 및 분석

○ 예보시설손괴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강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 대책

가. 재난관리 기구구성 및 업무내역

1) 기 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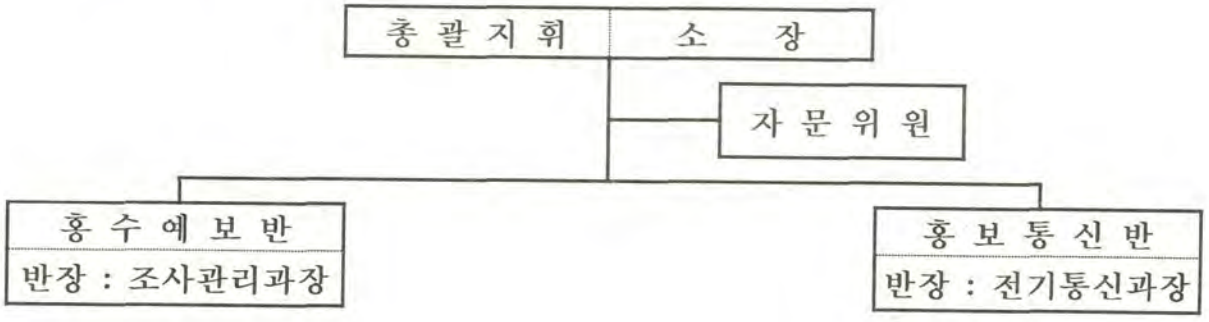

2) 담당업무 분장내역

구분	홍 수 예 보 반	홍 보 통 신 반
업무 분장 내역	· 자체인력규모 및 동원계획 검토 · 댐수문 상황 파악 및 댐 방류량 조정 검토 · 홍수예보 및 기상 일일상황 기록 · 유출계산 및 홍수예측 · 전산기운영으로 각종 자료분석 및 전산처리 · 각종 상황판 정리 · 하천 화상감시 시스템 운용	· T/M장비의 점검 · 전용회선 점검 · 전원시설, CVCF의 운영관리 · 각종 전기통신 시설의 긴급보수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비상연락망도 작성 및 비치 · 기타행정지원 업무

※ 필요시 기술자문단 구성 운영

홍수발생 이전에 자문의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홍수발생 기간동안 자문단을 운영

나. 재난관리체제

1) 재해상황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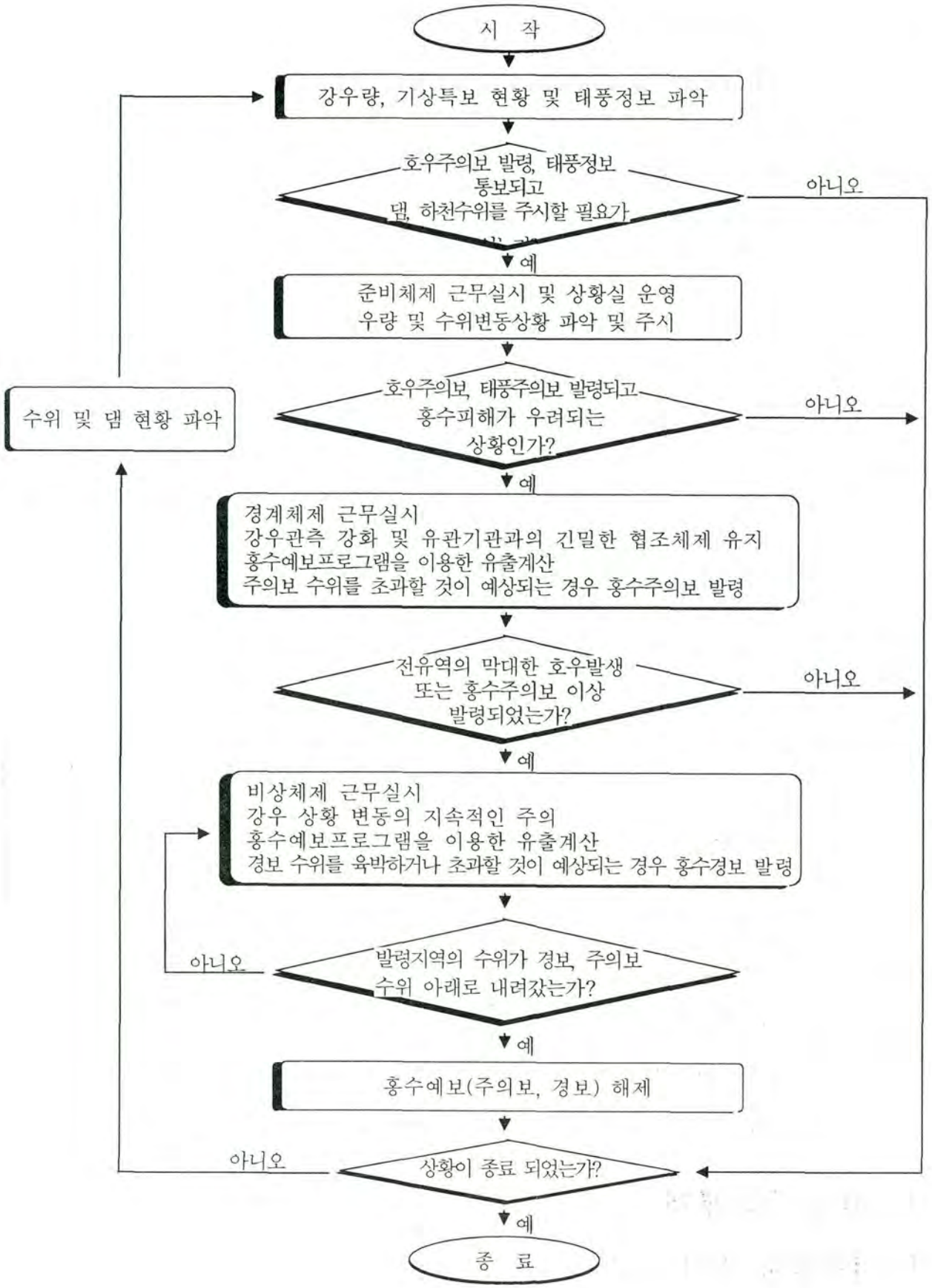
시 작
강우량, 기상특보 현황 및 태풍정보 파악
호우주의보 발령, 태풍정보 통보되고 댐, 하천수위를 주시할 필요가
아니오
예
준비체제 근무실시 및 상황실 운영
우량 및 수위변동상황 파악 및 주시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발령되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가?
아니오
예
수위 및 댐 현황 파악
경계체제 근무실시
강우관측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홍수예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출계산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주의보 발령
전유역의 막대한 호우발생 또는 홍수주의보 이상 발령되었는가?
아니오
예
비상체제 근무실시
강우 상황 변동의 지속적인 주의
홍수예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출계산
경보 수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아니오
발령지역의 수위가 경보, 주의보 수위 아래로 내려갔는가?
예
홍수예보(주의보, 경보) 해제
아니오
상황이 종료 되었는가?
예
종 료

2) 홍수예보 근무체제

구분	근무시기	근무내용	근무인원
준비체제	· 호우주의보 발령 및 태풍정보 통보 · 하천수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이상 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판단	· 상황실 운영 · 홍수예보업무 준비	전직원의 1/4
경계체제	· 호우주의보 및 태풍주의보 발령 ·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건설교통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이상 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판단	· 강우관측 강화 · 유출계산 · 홍수예보(주의보,경보)	전직원의 1/2
비상체제	· 전유역이 막심한 호우발생 · 홍수주의보 이상 홍수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건설교통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이상 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판단	· 지속적인 강우관측 · 유출계산 · 홍수예보(주의보,경보)	전직원

3) 비상근무조 편성

총괄지휘		소장			
반장		A반		B반	
		조사관리과장		전기통신과장	
준비체제	조장	1조	2조	3조	4조
		토목주사	전송주사	행정주사	전산주사
	조원	전산주사보 토목서기 기능직3	토목서기 전기서기 기능직2	전송주사보 토목주사보 기능직2	전기주사보 통신원 기능직2
경계체제	홍수분석	토목주사,전산주사보,토목서기2		전산주사, 토목주사보	
	상황정리	기능직2		행정주사, 기능직1	
	홍보 및 문서수발	기능직 3		기능직 3	
	전기통신	전송주사, 전기서기, 기능직		전송주사보, 전기주사보, 기능직	
비상체제	재난상황대처	전직원			

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기상정보 수집, 수문관측, 댐, 저수지, 하구둑 수문조작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관계 시·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홍수예보 전달이 피해우려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

○ 금강 유역 및 삽교천 유역의 수문관측자료는 유관기관에 제공 기타재해 예보업무를 신속히 수행될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함.

○ 유관기관 연락처

번호	기 관 명	연 락 처	
		일 반	F A X
1	건교부본부 (하천관리과)	02) 504-9043 88-332	02) 504-9112 88-346
2	중앙 재난안전본부	02) 3703-5420~9	02) 3703-5590~4
3	농림부시설관리과	02) 500-1995	02) 502-6733
4	농업기반공사 재난안전대책상황실	031) 420-3156	031) 422-7144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42) 220-3642	042) 254-4599
6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43) 220-4541~6	043) 220-4519
7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63) 280-3642	063) 280-3649
8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42) 600-2993~6	042) 600-2719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 670-3311~3	042) 670-3303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 850-9321~9	063) 850-9458
11	한국수자원공사	042) 629-3416~7	042) 629-3419
12	농어촌진흥공사 금강사업단	063) 450-9933	063) 450-9929
13	대전지방기상청	042) 863-0365	042) 863-0369
14	YTN	042) 226-8351	042) 226-8357
15	대전K.B.S	042) 470-7400	042) 470-7199
16	청주K.B.S(보도국)	043) 260-7432	043) 260-7199
17	대전M.B.C(보도국)	042) 330-3414	042) 330-3703
18	청주M.B.C(보도국)	043) 253-3316	043) 253-3320
19	대전T.J.B(보도국)	042) 282-1278	042) 285-8822
20	전주M.B.C(보도국)	063) 220-8103	063) 226-1365
21	전주K.B.S(보도국)	063) 270-7400	063) 270-7199
22	공주K.B.S	041) 850-7411	041) 850-7199
23	군산K.B.S(보도국)	063) 469-7411	063) 469-7399
24	교통방송	042) 600-1235	042) 600-1219
25	연합뉴스	042) 253-5030	042) 254-5030
26	공주소방서(공주,연기지역발령시)	041) 855-1119	041) 856-0119
27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041) 330-3541	041) 330-3549
28	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	041) 351-9131	041) 351-9149

다. 홍수예보

1) 홍수예보 발령과정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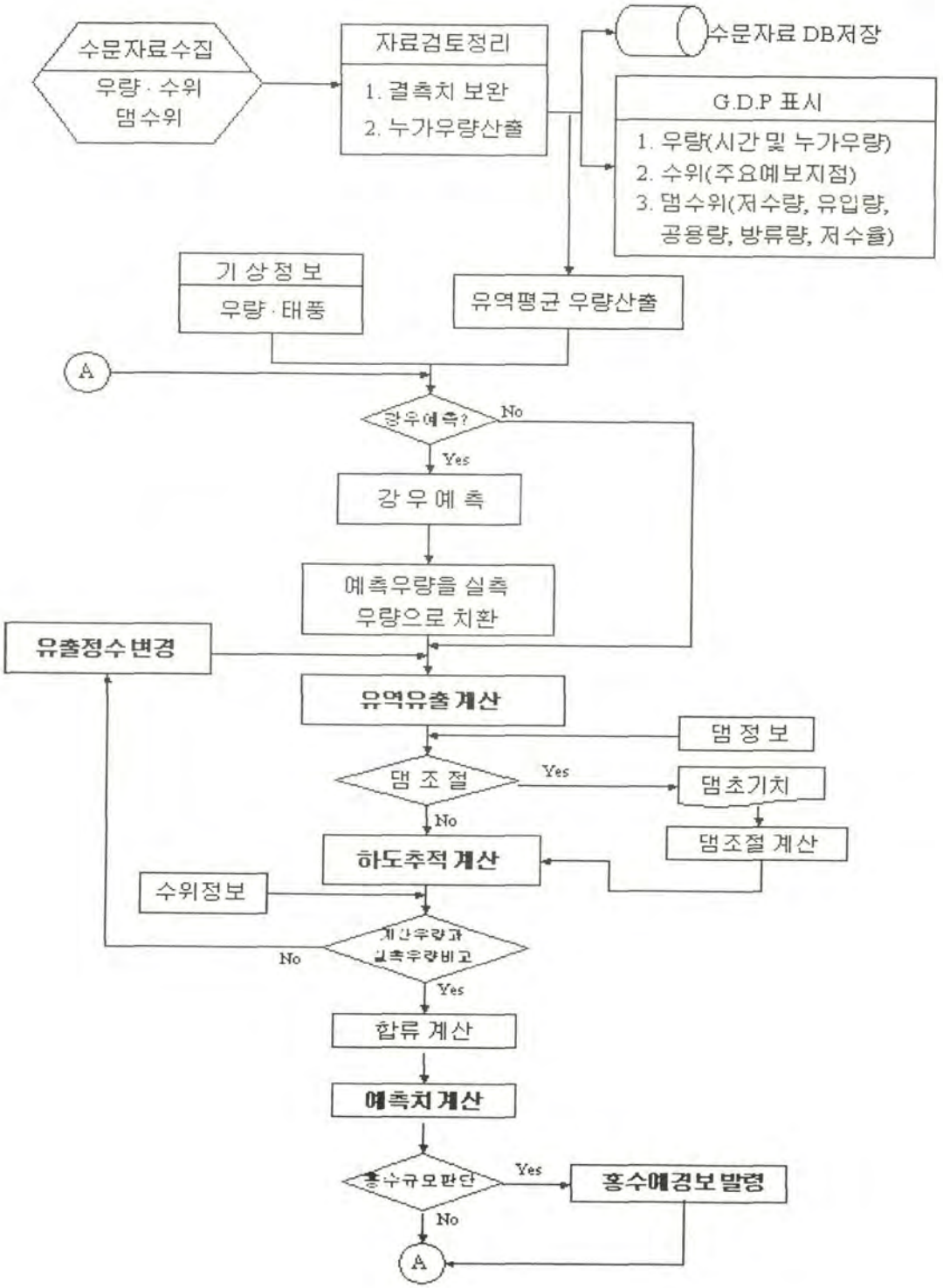

2) 홍수예보기준 및 발령

구 분	기 준
주의보 수 위	· 예보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예보지점의 5년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 상기기준 적용이 곤란할 시 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경 보 수 위	· 예보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예보지점에 5년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 상기기준 적용이 곤란할 시 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홍 수 예보의 준 비	· 태풍의 접근에 따라 유역내 상당한 강우가 예상될 때 · 유역평균 누가강우량이 50mm를 초과할 때, 또는 시우량 20mm이상일 때 · 기준지점의 수위가 경계 수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댐에서 수문방류 승인 요청이 있거나, 예비 방류가 필요하다고 예상될 때
홍 수 주의보 발 령	·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 수 경 보 발 령	· 예보기준지점의 예상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돌파하고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전 환 발령및 해 제	· 홍수예보(주의보, 경보) 발령 상태에서 각 기준이하로 수위가 내려갈 경우

3) 홍수예보 발령전달 개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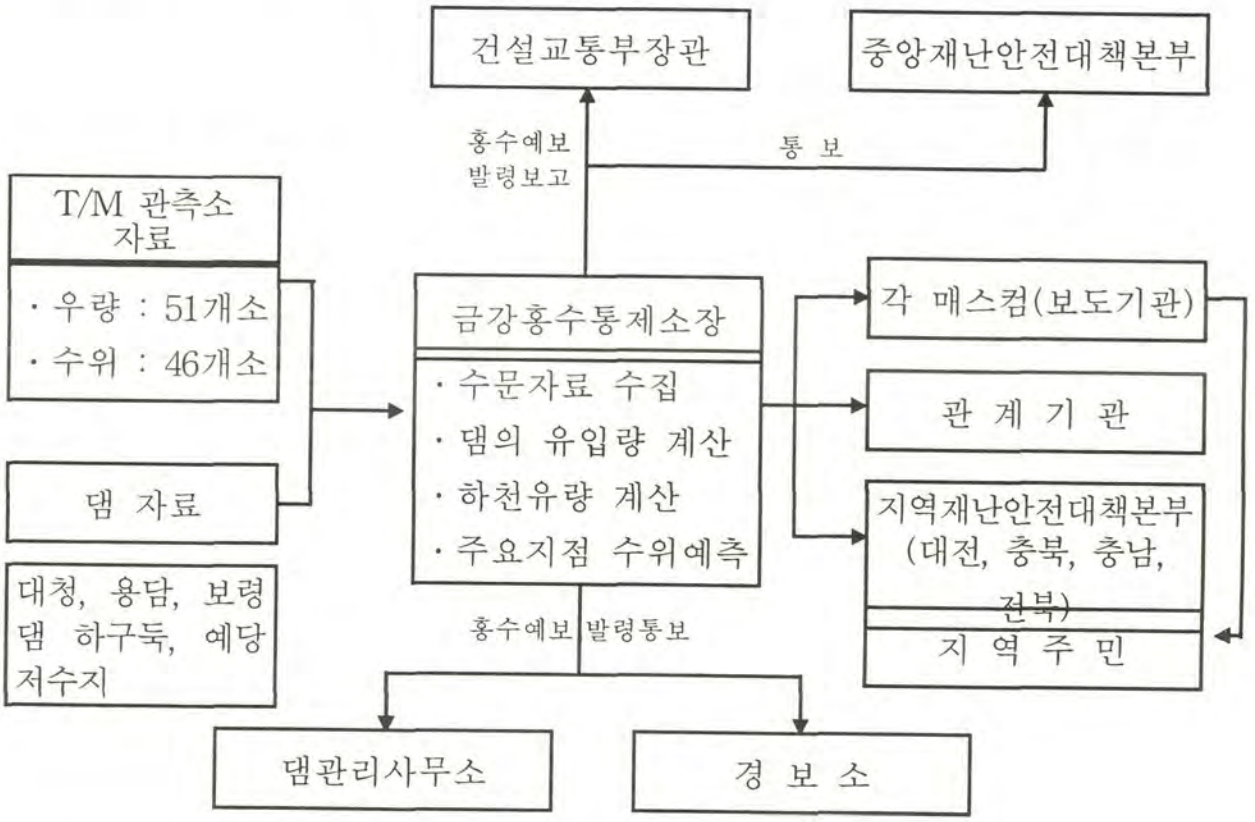

4) 주요 관측지점의 홍수위기준

수계명	지 점 명	주의보수위(m)		경보수위(m)		비 고 (영점표고 : EL.m)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금 강	강 경	7.0	6.07	8.0	7.07	(-)0.930
	규 암	7.5	8.26	9.0	9.76	0.760
	공 주	10.0	15.662	12.0	17.662	5.662
	석 화	7.0	26.783	8.0	27.783	19.783
갑 천	유 성	3.5	43.003	4.0	43.503	39.503
	회 덕	4.0	35.191	4.5	35.691	31.191
삽교천	원 평	4.5	10.151	5.0	10.651	5.651

라. 댐 수위 및 방류량 관리

1) 홍수기간중 제한수위를 유지토록 유도

2) 댐에 관한 유입량, 공용량, 방류량, 수위등을 항시 파악하여 긴급사태에 대비

○ 각 댐의 제원

구 분		단위	대 청 댐	용 담 댐	보 령 댐
댐	형 식		콘크리트 중력 및 사력식 복합댐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	중심코아형 석 괴 댐
	정상표고	EL.m	83.0	268.5	79.0
	댐높이	m	72.0	70.0	50.0
	길 이	m	495.0	498.0	291.0
저수지	계획홍수위	EL.m	80.0	265.5	75.5
	상시만수위	EL.m	76.5	263.5	74.0
	제한수위	EL.m	-	261.5	-
	저수위	EL.m	60.0	228.5	50.0
	총 저수용량	백만m^3	1,490.0	815.0	116.9
	홍수조절용량	백만m^3	250.0	137.0	10.0
	설계방류량	m^3/s	6,000	6,600	2,173

3) 기상 상황의 악화 및 홍수대비 댐수위 조절이 필요할시 방류 조절

○ 댐 방류 개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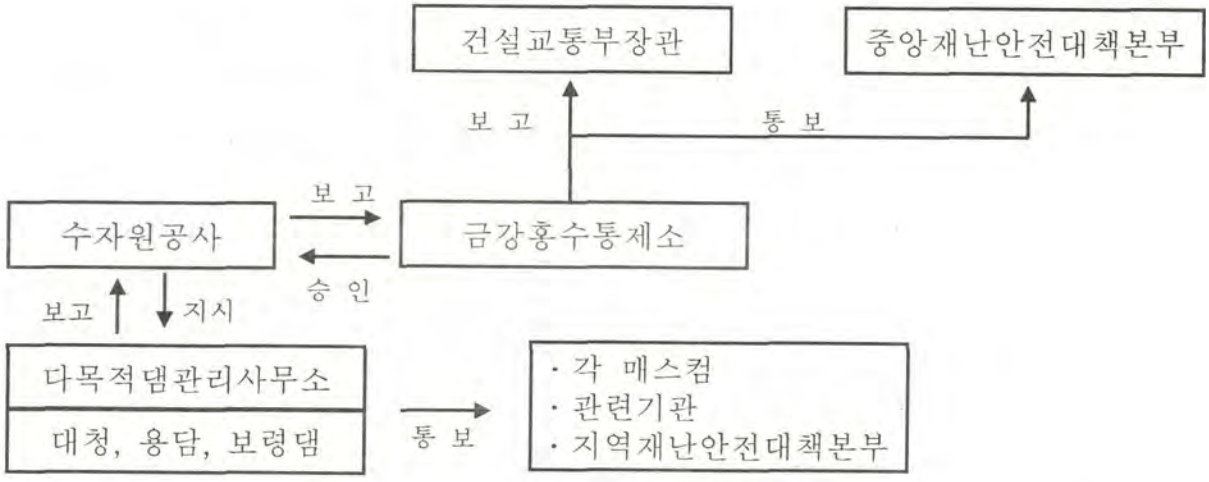

4) 댐 방류 승인 검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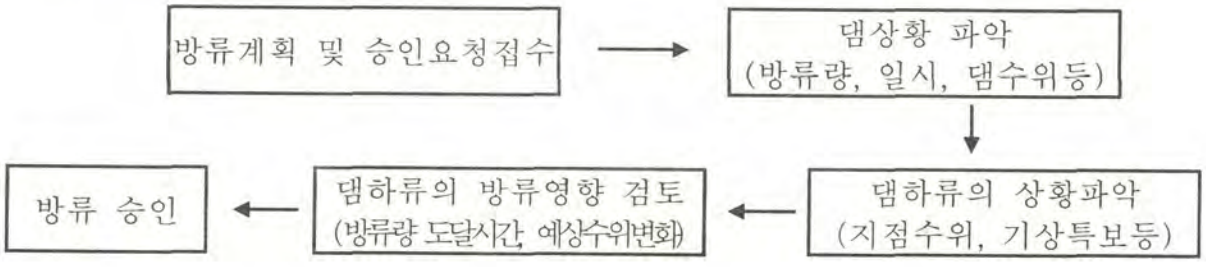

○ 대청댐 방류에 따른 주요지점 및 하구언 도달시간

(단위 : hr, 구간/누가)

지점 / 방류량	공 주	규 암	강 경	하 구
1,000CMS	11.3	7.1 / 18.4	5.1 / 23.5	12.5 / 36.0
2,000CMS	10.2	6.4 / 16.6	4.6 / 21.2	11.2 / 32.4
3,000CMS	9.2	5.8 / 15.0	3.9 / 18.9	9.5 / 28.4
4,000CMS	8.3	5.2 / 13.5	3.2 / 16.7	7.9 / 24.6
5,000CMS	7.3	4.6 / 11.9	2.6 / 14.8	6.4 / 20.9
6,000CMS	6.2	3.9 / 10.1	1.9 / 12.0	4.6 / 16.7
구간거리	53.3	33.6	18.3	44.8
누가거리	53.3	86.9	105.2	150.0

2. 대비 대책

가. 홍수예보시설의 유지관리 철저

1) 점검활동 철저

○ 수문관측시설 점검 : 정기점검(년 4회) 및 임시점검(필요시) 실시

○ 전산기 및 각종 통신장비 점검 : 일일점검 및 정비실시

- 수문관측소 현황

구 분		금강홍수통제소	대청·용담·보령댐
우량 관측소	일반 자기 관측소	21	
	T/M 관측소	46	27
	소 계	67	27
지하 수위관측소	일반 자기 관측소	5	
	소 계	5	
수위 관측소	일반 자기 관측소	8	
	T/M 관측소	51	15
	소 계	59	15
총 계		131	42

2) 수문관측시설 정비 및 보수활동

○ 정기 및 임시점검시 불량개소에 대한 신속한 보수실시

- 목자판교체, 관측계기이상 수리, 관내부 이토제거, 기타 관측 저해요소 제거 등.

○ 수위관측에 지장이 없도록 수위탑 주변의 퇴적토 철저

○ 통신장비 및 전산기의 가동상태의 일일점검 결과 이상있을시 신속한 정비 실시

나. 홍수예보 실무교육 및 훈련 실시

1) 홍수예보 요원 교육(1회/년)

○ 교육주관 : 한강홍수통제소

○ 교육대상 : 홍수예보요원

○ 교육일시 : 4월중 실시

○ 교육내용 : 홍수예보 실무 및 업무분담, 홍수예보 시설 및 장비운영, 전산기 운영, 수문관측 요령, 무전시설 및 장비운영, 전기시설 및 장비운영

2) 국사관리인 교육

○ 정기교육(1회/년)

- 교육대상 : 관측원
- 교육일시 : 4월중 실시
- 교육내용 : 각종계기 작동요령, 시설관리요령, 홍수시 수문관측요령, 수문관측의 중요성

○ 수시교육

- 교육일시 : 수문관측소 정기 및 임시점검시
- 교육내용 : 정기교육내용과 동일하며 반복교육을 통한 관측원의 관측능력 제고

3) 홍수예보 모의훈련 실시

○ 훈련방법 : 과거 홍수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상훈련

○ 훈련일시 : 5월중 실시

○ 검토사항 : 홍수대비태세 강화, 유역홍수 특성분석 각종 장비의 운영방법 숙달, 홍수예보 발령 요령 숙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다. 홍수예보 지점확대 및 T/M화 사업추진

○ 연차적인 수문관측소 증설 및 자기관측소의 T/M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홍수예보 기틀마련

- 2005년도 수문관측소 신설 및 T/M화 계획

구분	개소수	관 측 소 명
신설	8	· 수위관측소 : 합덕, 영동, 기산, 진천 · 우량관측소 : 장기, 은진, 화덕, 금왕
T/M화	12	· 수위관측소 : 부강, 무주, 용담, 산계교, 제원 · 우량관측소 : 원통사, 안성장, 웅북, 동정, 송죽, 묘금, 적상
합계	20	· 수위관측소 : 8개소, 우량관측소 : 12개소

라. 홍수예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수문자료의 보존

○ 지속적으로 지점별 유량조사를 실시하여 수위-유량곡선식을 수정보완 및 상수조정.

○ 홍수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한 예측프로그램 개발 및 관측소 증설에 따른 홍수예경보 프로그램 개발.

○ 금강수계(갑천, 삽교천 포함)의 T/M수문 관측자료를 D/B화함으로써 홍수예보 연구자료 및 지역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 금강홍수예보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자원 관계 업무 및 제반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

3. 대응 및 복구대책

1) 관측시설 및 중계소의 기술적 장애 및 시설손괴에 따른 대책

가) 상황발생시 조치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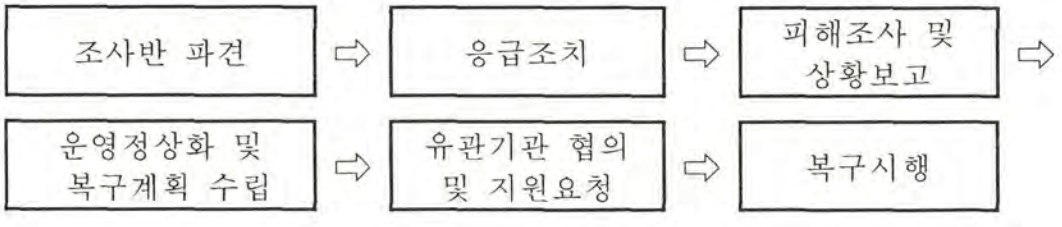

나) 단계별 세부절차

○ 조사반 파견 :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조사반 파견(토목, 통신직)

○ 응 급 조 치 : 자체 조치 가능시 복구(예비품 사용 및 기계조작), 시설 파손으로 인한 관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주요물품 이동

○ 피해조사 및 상황보고 : 관측장비 파손정도 및 작동상태등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조사후 보고

○ 운영정상화 및 복구계획 수립 : 조사내용을 토대로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정상화 및 복구계획수립

○ 본부 및 유관기관에 업무정상화 및 복구를 위한 필요사항 협의 및 지원요청

○ 자료수집 결측에 따른 결측치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자료 보완

- 수위관측 : 선형외삽법, 비선형외삽법
- 우량관측 : R.D.S, 역거리법

제 3 절 재정 · 투자계획

1.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및 사 업 명		총 투자계획 (2005~2009)		200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10,560		2,440
풍수해 대책	소 계		10,560		2,440
	유량측정	5식	4,000	1식	683
	관측소 신설 및 T/M화	37개소	3,300	20개소	1,211
	중계소 신설	2개소	460	1개소	100
	홍수프로그램 개발	3개소	700	2개소	300
	관측소 시설개선	119개소	2,100	20개소	146

2. 세부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량측정 조사
- 수문관측소 신설 및 T/M화
- 홍수프로그램 개발
- 관측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05.01.01~2005.12.31

○ 소요재원 : 2,440,000,000

○ 사업내용

- 유량측정 조사 : 금강, 삽교천, 갑천
- 수문관측소 : 신설 8개소, T/M화 12개소
- 홍수프로그램 개발 : 금강하구언, 삽교천
- 관측시설개선 : 20개소

나. 추진계획

○ 공사·사업 설계 및 발주 : 1/4분기

○ 진행 : 2/4·3/4분기

○ 준공 : 4/4분기

제 22 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제 1 절 계획의 의의

1. 목 표

방재체제 정립으로 탐방객 인명피해 예방과 공원시설 피해 최소화

2. 기본방침

○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체제 구축

○ 방재정보체계 구축과 업무의 과학적 추진

○ 재해관리의 종합적 체계 개선

3. 임 무

○ 공원구역내 탐방객에 대한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 공원구역내 공원자원 및 시설의 재해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대책 수립·시행

4. 재해예방계획

가. 근무체제

1) 평상시 및 재해대책기간 근무체제

○ 평시 및 재해대책기간 주간에는 방재담당자가 상황관리

○ 재해대책기간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관리

○ 재해대책 조직 운영

2)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체제(3단계)

근무체제	기상상황	비 재해대책기간	재해대책기간
1단계 준비체제	-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표시 - 대설주의보 발표시	-근무인원 : 5 명 · 관리과 : 1 명 · 보전과 : 1 명 · 분 소 : 2 명 · 연포팀 : 1 명	-근무인원 : 7 명 · 관리과 : 2 명 · 보전과 : 2 명 · 분 소 : 2 명 · 연포팀 : 1 명
2단계 경계체제	-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표시 - 대설경보 발표시	-근무인원 : 7 명 · 관리과 : 2 명 · 보전과 : 2 명 · 분 소 : 2 명 · 연포팀 : 1 명	-근무인원 :12 명 · 관리과 : 3 명 · 보전과 : 3 명 · 분 소 : 4 명 · 연포팀 : 2 명
3단계 비상체제	- 전 공원 대부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국지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근무인원 :20 명 · 관리과 : 7 명 · 보전과 : 6 명 · 분 소 : 5 명 · 연포팀 : 2 명	-근무인원 :20 명 · 관리과 : 7 명 · 보전과 : 6 명 · 분 소 : 5 명 · 연포팀 : 2 명

※ 기상특보 단계별 안전대책 : 붙임 2. 기상특보단계별 안전대책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비상연락체제 유지(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나. 국립공원 탐방객, 자원 및 시설의 관리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제2항 제1~3호

1) 탐방객 안전관리

○ 재해위험 상존지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또는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시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 기상특보시 기상단계별 탐방객 통제계획 수립

- 직원 비상연락체제 유지(붙임 4. 직원비상연락망)

- 기상특보시 탐방로 통제계획

· 탐방로 통제구간 및 통제소 현황 : 붙임 6. 사고위험지구

· 고립예상지역 지정 관리: 해당사항 없음

· 비상물자현황 : 붙임 7. 방재물자 현황

○ 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 해당사항 없음

2) 공원자원 및 시설관리

○ 관리대상

- 공원자원

· 해당사항 없음

- 공원시설

· 탐방객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공단이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붙임 5. 공원시설현황

○ 관리내용(점검내용 및 조치)

- 공원자원 : 지역별 책임담당자가 기상특보 시 및 재해예상지점을 순찰하여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 공원시설

· 시설편람 기타-4.『공원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1회 및 재해예상시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상태 불량시설물(C, D, E급)은 보수, 정비 등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 즉시 조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탐방객통제 및 안내간판설치 등 적극관리

다. 재해위험대상지구 지정관리

1) 경계구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

○ 설정대상

- 산간·계곡 : 계곡물이 불어 행락객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하천변 유원지 : 갑작스런 수위 상승으로 피서객 피해 우려지역
- 바닷가 유원지 : 태풍·호우·해일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재해위험지구 : 상습침수, 붕괴위험, 고립위험, 노후시설 지구 등

○ 설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관리내용

- 기상특보시 해당 지자체에 소속 감시공무원을 배치 및 인명 대피유도와 대피장소 마련 요청

· 대피장소: 해당사항 없음

- 퇴거, 금지, 제한 명령에 불응자에 대하여 소속 감시공무원이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조치 요청

○ 국립공원구역내 경계구역 지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 지정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과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1~3등급으로 구분관리

· 1등급 : 피해방생 빈도 4회이상

· 2등급 : 피해발생 빈도 2~3회

· 3등급 : 피해발생 빈도 1회

※ 피해발생 빈도는 '90년 이후 발생 기준임

- 붕괴위험지구의 경우,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피해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상향 조정하여 지정 가능
- 재해위험지구의 등급,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로 주민과 재산 등에 대한 계획적 대피계획 수립관리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내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를 지속 추진, 각 지구별로 공무원, 관련기관, 주민, 복수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및 점검 실시 요청
- 주민 및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유도 등 홍보활동 강화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사고위험지구(공단 자체지정) : 환경부장관 지시 또는 자연공원법 36조의 2

○ 사고위험지역

- 공단 자체적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상습침수, 붕괴, 고립위험 지역이나 익사, 낙석,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지정
- 자체지정 사고위험지구 지정현황: 붙임 6. 사고위험지구
- 관리내용

· 기상특보 및 재해대책 기간중 기상특보에 의거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순찰 강화 및 시설물 점검, 정비 지속 추진

·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시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유도

○ 자연휴식년제 구간 :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적용

- 공원내 자연자원보존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위험지구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정, 출입통제
- 자연휴식년제 구간 지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 관리내용(자연휴식년제 적용 시)
  · 평상시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10만원)
  ·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시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유도

라. 재해예방 인력동원 계획 및 장비, 물자확보 현황

인 원(명)					장 비(대)						자 재		위험 표지판설치 (개소)
계	직원	영선	상용	공익	계	더블캡	경운기	삽	가래	기타	모래 (개소/㎥)	염화칼슘 (포)	
38	20	2	1	15	51	3	4	20	5	17	2	·	20
						학암포 만리포 몽산포	학암포2 몽산포2	본소 학암포 몽산포		방재 장비	학암포 몽산포		

마. 풍 · 수해 예방대책

1)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설정운영 : 6. 15 ~ 10. 15

2) 공원별 지정 재해위험 상존지역 운영

○ 경계구역 : 해당사항 없음

○ 재해위험지구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위험지구 :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외 5개소

3) 조치사항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시 상황보고

○ 태풍, 호우 등에 대한 기상예보 접수 및 확인, 상황대처

○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원시설물 수시 점검 및 탐방객 안전계도활동 강화

○ 해수욕장 주변 야영객 및 탐방객 대피 유도

○ 각종 시설물 사용제한

바. 설해 예방대책

1)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설정운영 : 12. 1 ~ 익년 3. 15

2) 공원별 지정 재해위험 상존지역 운영

○ 경계구역·재해위험지구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위험지구 :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외 5개소

3) 조치사항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 시 상황보고

○ 교통통제대상 도로 유지관리(관계기관과 협의)

○ 강설시 고립예상지역 및 대피소 지정관리: 해당사항 없음

사. 해일피해 예방대책(해안, 해상공원만 작성)

1) 공원별 지정 재해위험 상존지역 운영

○ 경계구역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위험지구 :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외 5개소

2) 조치사항

○ 백중사리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 운영(매년 음력 7. 15일 이전 10일간)

○ 백중사리 및 해일기상 예보 시 해안, 해상공원 해수욕장 출입통제

○ 탐방객 안전, 계도 활동 강화 및 안전지역 대피 유도

○ 지정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수욕장내 공원시설물 수시점검 등 사전조치 강화

○ 해변 연안 출입 및 보행통제

○ 유관기관 지원 협조체제 유지 및 기상상황 수시 확인 전파

○ 재해대비 동원장비, 물자확인 및 비상출동대기

○ 해일 피해 예방 수습 요령 교육 및 시달

아.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 교육 : 공원사무소 자체계획수립 시행

○ 유관기관 방재실무자 초청 교육 실시로 업무숙지 및 유관기관 재해대책 업무 협조체제 강화

○ 방재실무자 관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 방재훈련 참관

- 각 도 및 시·군 방재훈련 시 참관, 방재기술 습득

(2) 홍보·계도 및 통제 강화 : 전 공원관리사무소별 자체계획수립 시행

○ 재해 발생시 탐방객 행동요령

○ 재해발생 상황 및 진입로, 해변출입 등 통제 현황

○ 재해위험지구 현황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야영

○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동참하기

3) 홍보 방법

○ 재해발생시 언론기관(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재해상황 홍보

○ 재해위험대상지구(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안내 간판 설치

○ 주요 산간 계곡 방송시설 수시 점검 및 추가 설치 제고, 차량 이용 방송안내 계도

5. 재해응급대책

가.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 및 응급조치

○ 재해발생시 해당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우선 통보하고 본부에 신속히 보고

○ 자체구조대 편성 및 대기

○ 재해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구조용 장비 및 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구난체제 가동

○ 조난사고 발생시 헬기 및 기타 신속한 운송체제 확립

- 헬기요청 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위 치	비 고
서산소방서	119	소방안전본부	내륙관리
	042-220-3119	충남도청 종합상황실	
태안해양경찰서	041-674-9595	태안해경 구난계	해수면관리
	032-888-0112	인천해양경찰서	

- 헬기장 위치 : 사고발생지점 착륙가능위치

○ 사무소, 분소에 구조장비, 비상식량 및 약품 상시비치

나.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재해발생시 공원사무소장 책임하에 응급복구반 및 가용 인력과 장비 및 자재 등을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복구

○ 응급복구는 항구복구 시까지 피해확대 방지

○ 탐방객 및 지역주민 접근 통제

○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계구역 및 재해위험지구 설정 검토(관할 시·군과 협의)

6. 재해 복구계획

가. 피 해 조 사

1) 피해시설 및 지역의 현황과 피해내역 조사보고

○ 복구책임기관 구분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분류

·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율 참조

○ 복구대상 및 복구 방법

○ 예산산출(예산재원구분)

2) 재해대장 작성요령에 의거 소관시설에 대한 재해대장작성 제출

3) 필요시 시·군 재해대책본부 및 본부와 합동 조사

나. 재해복구 실시 및 관리

1) 피해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완전복구 계획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지구의 피해 원인을 정밀분석, 방지대책도 아울러 실시하고 사업장별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현황사진을 촬영

2) 복구사업 시행

○ 피해복구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계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재발 방지

○ 대규모 공사와 주요 구조물의 복구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를 확대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

○ 사업시행시 경관 및 생태계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

3) 반복피해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또는 관리카드 작성, 비치

4) 수시 점검을 통한 피해재발 방지대책 강구

※ 예산재원 기준

- 국고지원이 가능한 피해액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7억원

· 공공시설 : 1개소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체복구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원(복구액이 800만원) 미만

· 기타시설 :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

붙임 1.

태안해안국립공원 재해대책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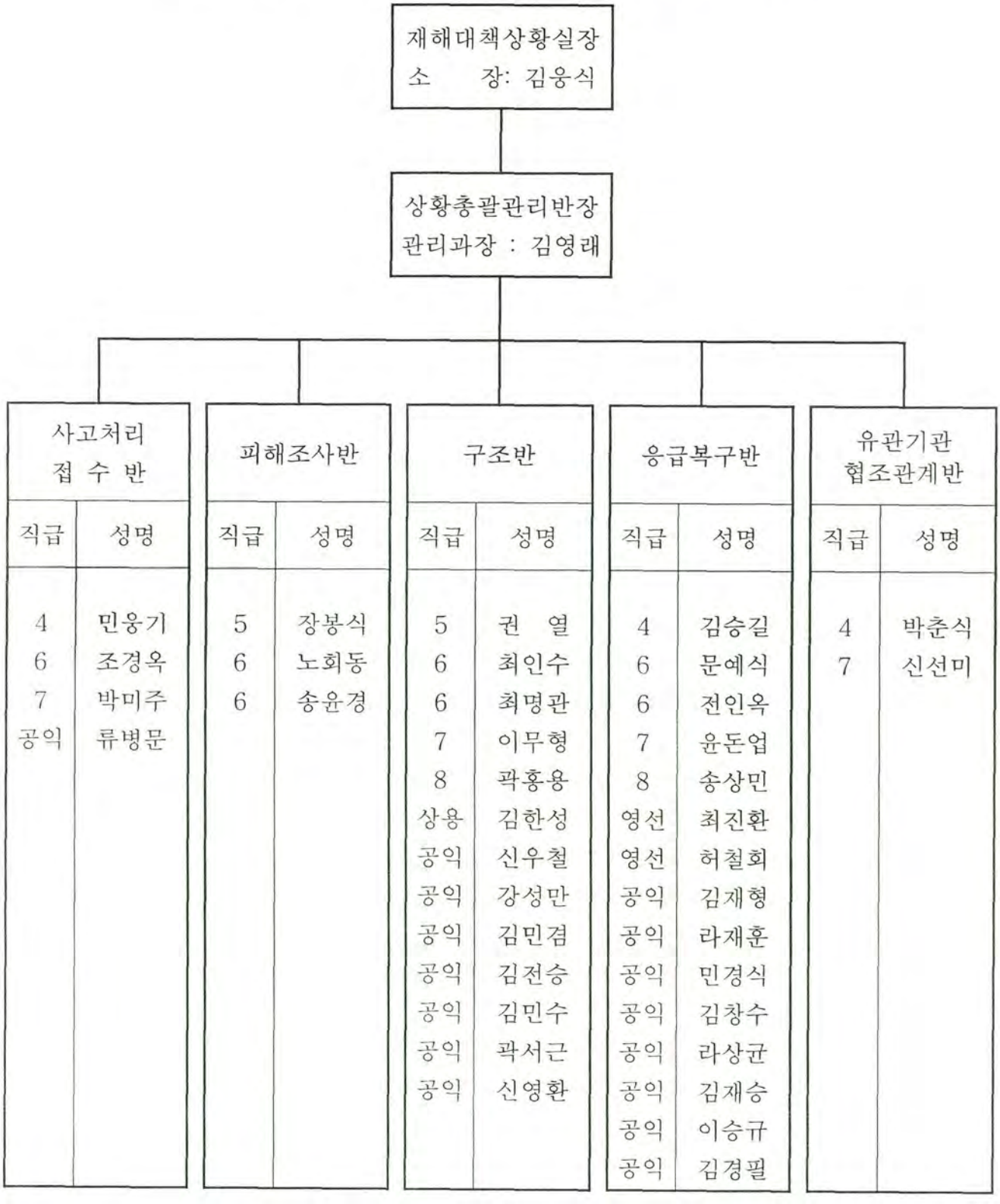

사고처리 접수반	
직급	성명
4	민웅기
6	조경옥
7	박미주
공익	류병문

피해조사반	
직급	성명
5	장봉식
6	노회동
6	송윤경

구조반	
직급	성명
5	권 열
6	최인수
6	최명관
7	이무형
8	곽홍용
상용	김한성
공익	신우철
공익	강성만
공익	김민겸
공익	김전승
공익	김민수
공익	곽서근
공익	신영환

응급복구반	
직급	성명
4	김승길
6	문예식
6	전인옥
7	윤돈업
8	송상민
영선	최진환
영선	허철회
공익	김재형
공익	라재훈
공익	민경식
공익	김창수
공익	라상균
공익	김재승
공익	이승규
공익	김경필

유관기관 협조관계반	
직급	성명
4	박춘식
7	신선미

붙임 2.

기상 특보 단계별 안전대책

구 분	기 상(피해) 상 황	안 전 대 책
1단계 준비체제	○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표시 ○ 폭풍, 해일, 대설,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 : 적정인원 지정 본소:4인, 분소/연포팀:각 1인 - 비상연락망 확인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통신망 확인 -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 매표소, 통제소, 대피소 탐방객 통제 강화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및 탐방객 대피유도, 야영금지 - 사고 위험지구 담당자 책임 순찰 - 각종 공원시설물 점검 - 위험지역 제설작업 실시
	○ 태풍·폭풍 - 최대풍속 14m/s이상 3시간 이상 지속시 - 최대순간풍속이 20m/s이상	
	○ 호우 - 24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때	
	○ 대설 - 신적설이 10㎝ 이상 ※ 북한산, 계룡산의 경우 5㎝	
2단계 경계체제	○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표시 ○ 해일, 대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 전직원 22:00근무, 야간 12인근무 본소:6인, 분소/연포팀:각 2인 - 안전관리대책 강화조치 ·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순찰 강화 · 담당자 상주배치 - 등산객 안전지대 대피 및 귀가조치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및 야영금지 - 교통두절지역 제설작업(유관기관협조) -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폭풍·태풍 - 최대풍속 21m/s 및 최대순간풍속이 26m/s이상 3시간 지속시	
	○ 호우 - 24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때	
	○ 대설 - 신적설이 30㎝ 이상 ※ 북한산, 계룡산의 경우 20㎝	
3단계 비상체제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비상근무실시: 전직원 비상대기 - 산·계곡 해수욕장 등 출입금지 강화 - 피해지역 구조활동 실시 - 피해상황 접수 및 보고 - 피해시설 및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붙임 3.

유 관 기 관 비 상 연 락 망

환경부 수도정책과	
전화	02-507-2452
팩스	02-597-2456

국립공원관리공단 재해대책상황실	
전화	02-3272-8504
팩스	02-3272-8972

중앙재해대책본부	
전화	02-3703-5420
팩스	02-3703-5590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충청남도	042-220-3642
서산시	041-660-2497
태안군	041-670-2419

태안해안국립공원 재해대책상황실	
전화	041-672-9737
팩스	041-672-4108

기 상 청	
서산기상대	041-663-0365

경 찰 서	
해양경찰서	041-674-2113
서산경찰서	041-662-0112
서부지구대	041-674-0112
소원치안센터	041-672-6112
근흥치안센터	041-673-0112
남면치안센터	041-672-0112
안면치안센터	041-673-4112
원북치안센터	041-672-5112
고남치안센터	041-673-7112

분 소 · 팀	
학암포분소	
전화	041-674-3224
팩스	041-674-4108
안면도 분소	
전화	041-674-2608
팩스	041-674-2608
연 포 팀	
전화	041-674-9738
팩스	-

소 방 서	
태안파출소	041-674-2119
안면파출소	041-673-4119

기타 유관기관	
금강환경청	042-865-2915
태안한전	041-674-1268
원북면	041-672-5002
소원면	041-672-6027
근흥면	041-673-0006
안면읍	041-673-3081
남 면	041-672-2005
고남면	041-673-7006

군 부 대	
1789부대	041-674-6121

붙임 4.

직 원 비 상 연 락 망


소장 김웅식
672-3895
011-431-9737
관리과
(672-9737)
3급 김 영 래
(031)386-8823
011-9832-8823
4급 민 웅 기
(02)932-0318
010-3121-1737
5급 권 열
(054)631-5479
011-9580-5479
6급 조 경 옥
665-3212
016-778-3213
6급 송 윤 경
(02)835-0638
016-275-5252
7급 박 미 주
(032)876-1360
011-747-7217
보전과
(672-7267)
4급 박 춘 식
(042)284-3986
011-9801-3986
5급 장 봉 식
(054)873-7094
017-603-7094
6급 최 인 수
952-2747
011-9809-2747
6급 노 희 동
(02)663-7379
016-850-7379
6급 전 인 옥
672-5876
011-425-3766
7급 신 선 미
(031)236-3998
011-420-2554
공 익 요 원
류 병 문
(010-3377-4186)
안면도분소
(674-2608)
4급 김 승 길
02-6437-2456
016-9350-0822
7급 이 무 형
675-1640
010-3063-1640
8급 송 상 민
(02)884-0087
019-9255-0054
영선 최 진 환
017-409-3422
공 익 요 원
김 재 형
011-9958-2611
라 재 훈
011-9826-1163
김 창 수
016-348-3250
라 상 균
011-9414-9998
학암포분소
(674-3224)
6급 문 예 식
674-7401
011-421-7401
7급 윤 돈 업
(02)6212-9239
010-2717-4573
영선 허 철 회
017-417-4200
공 익 요 원
신 영 한
019-299-6122
김 재 승
019-672-9259
이 승 규
011-9819-4899
김 경 필
019-435-7540
연포관리팀
(674-9738)
6급 최 명 관
532-1445
016-9415-7965
8급 관 홍 용
011-359-5369
상용 김한성
011-420-7529
공 익 요 원
강 성 만
016-9566-2504
김 민 겸
016-739-2161
김 전 승
016-9373-7889
신 우 철
674-4427
김 민 수
010-6424-9563
곽 서 근
011-9403-4286

붙임 5.

공 원 시 설 현 황

○ 건축물

시설명	관리번호	위 치	면적(㎡)
계		16	2,261.81
학암포매표소	2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산37	50.00
태안해안관리사무소	4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16-1	360.80
몽산포매점	5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113-116	81.00
몽산포매표소	12	몽산포해수욕장입구	99.72
공중변소	1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11	59.50
공중변소	2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산37	59.50
공중변소	3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1323-172	59.50
공중변소	11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46-7	59.50
공중변소	12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산14-1	59.50
공중변소	13	태안군근흥면 도황리 798-1	59.50
공중변소	14	태안군 남면 신장리113-74	85.32
공중변소	15	태안군 남면 신장리113-1	59.50
공중변소	16	태안군 남면 원청리512-2	75.00
공중변소	17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8-5	59.50
공중변소	19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산71	106.94
공중변소	20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43-1	47.03
공중변소	21	태안군 남면 몽산리 산213-5	106.94
공중변소	22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3-22	56.16
공중변소	23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1287-17	37.54
공중변소	24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3	106.94
공중변소	25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1303-20	106.94
공중변소	26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0-1	106.94
공중변소	30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86	71.20
공중변소	31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113-116	148.00
공중변소	32	태안군 남면 신장리 410-1	60.00
공중변소	33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79.34

○ 간선도로상 추락방지시설

- 해당사항 없음

○ 주차장

시설명	위 치	면 적(㎡)	시공년도	예산
계	5	78,856		
학암포주차장	원북면 방갈리 산37	26,496	1993	국비
몽산포주차장	남면 신장리357	27,715	1994	국비
백사장주차장	안면읍 창기리	24,645	2000	국비

○ 야영장

시설명	위 치	면적(㎡)	시공년도	예산
계	2	34,110		
몽산포야영장	남면 신장리	34,110	2000	국비

붙임 6.

재해위험대상지구 관리카드

위험지구구분 : □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NO. 1

지 구 명	학암포 해변	통제 시설	성수기 부표설치
위 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안내 간판	수상안전 5
유 형	풍수해에 의한 익사사고	통제 방법	성수기 통제 필요시 안전 관리요원 배치, 모터보트 운영
위험요인	여름성수기, 태풍시 익사사고 위험 상존		
과거피해 상 황	'2003년 8월 일가족이 해수욕을 즐기다 일행중 1명 익사사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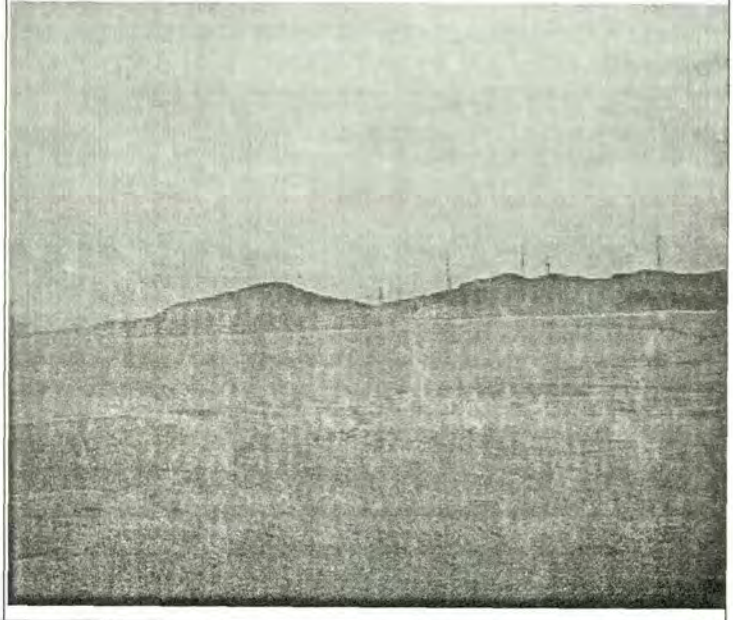

안전관리 담당자	정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6급 문 예 식
	부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7급 윤 돈 업

위험지구구분 : □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NO. 2

지 구 명	연포 해변	통제 시설	성수기 부표설치
위 치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안내 간판	수상안전 3개소
유 형	풍수해에 의한 익사사고	통제 방법	성수기 통제 필요시 안전 관리요원, 모터보트 운영
위험요인	여름성수기, 태풍시 익사사고 위험 상존		
과거피해 상 황	'99년 8월 단체 탐방객이 해수욕을 즐기다 일행중 1명 익사사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안전관리 담당자	정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6급 최 명 관
	부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8급 곽 홍 용

위험지구구분 : □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NO. 3

지 구 명	백사장 해변	통제 시설	성수기 부표설치
위 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안내 간판	수상안전 5개소
유 형	풍수해에 의한 익사사고	통제 방법	성수기 통제 필요시 안전 관리요원 모터보트 운영
위험요인	여름성수기, 태풍시 익사사고 위험 상존		
과거피해 상 황	'2004년 8월 단체 탐방객이 해수욕을 즐기다 일행중 1명 익사사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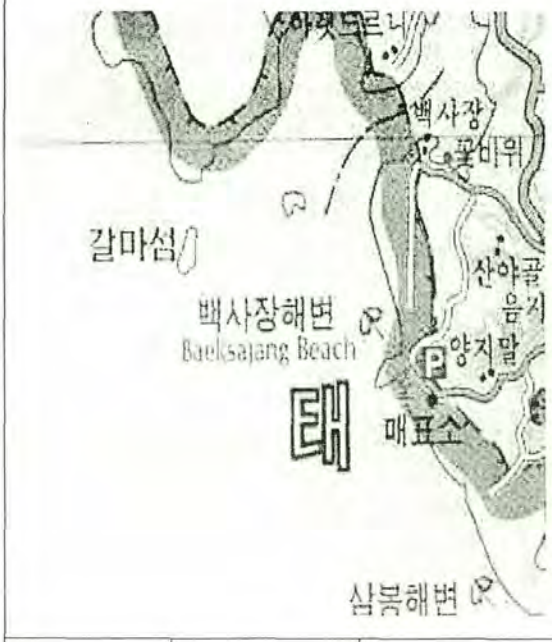	

안전관리 담당자	정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4급 김 승 길
	부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7급 이 무 형

위험지구구분 : □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NO. 4

지 구 명	삼봉 해변	통제 시설	성수기 부표설치
위 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안내 간판	수상안전 5개소
유 형	풍수해에 의한 익사사고	통제 방법	성수기 통제 필요시 안전 관리요원 모터보트 운영
위험요인	여름성수기, 태풍시 익사사고 위험 상존		
과거피해 상 황	2004년 8월 해수욕을 즐기다 2명 익사사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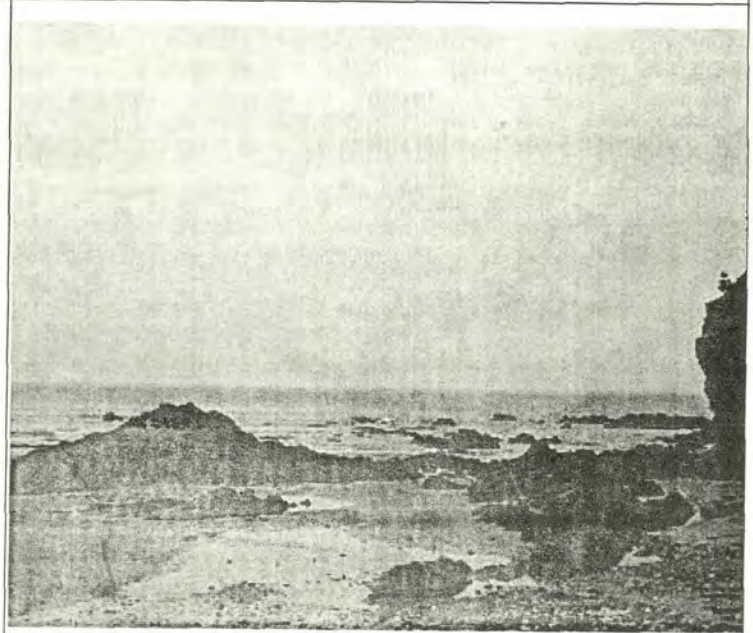

안전관리 담당자		
	정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4급 김 승 길
	부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기능직 7급 이 무 형

위험지구구분 : □경계구역, □재해위험지구, ■사고위험지구

NO. 5

지 구 명	방포 해변	통제 시설	성수기 부표설치
위 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내 간판	수상안전 2개소
유 형	풍수해에 의한 익사사고	통제 방법	성수기 통제 필요시 안전 관리요원 모터보트 운영
위험요인	여름성수기, 태풍시 익사사고 위험 상존		
과거피해 상 황	최근 피해 상황 없음		

위 치 도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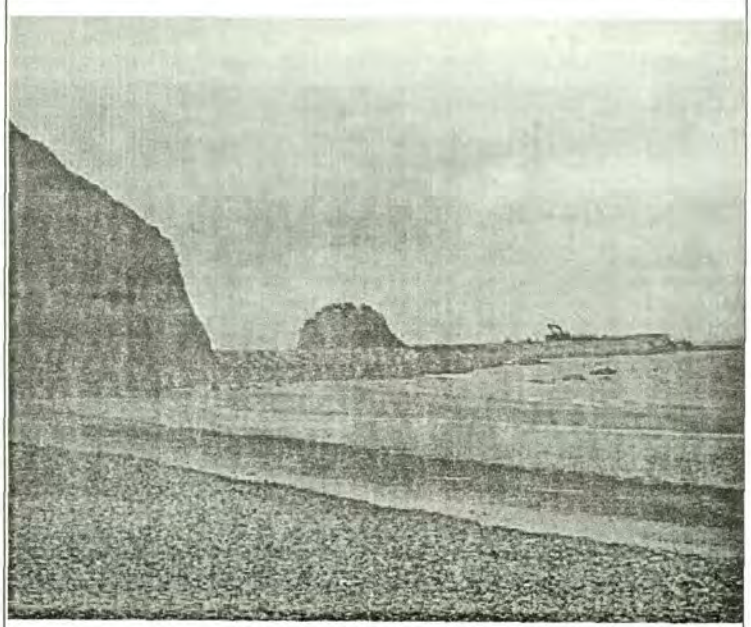

안전관리 담당자		
	정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4급 김 승 길
	부	소속 : 태안해안관리사무소 일반직 8급 송 상 민

붙임 7.

방 재 물 자 현 황

기준일: 2004. 10.

구 분	물품	규격	단위	현수량	비고	저창위치	비 고
수방장비	삽		EA	5/5/5/5	본/학/만/몽	영선창고	
	동력톱	2HP/16in	EA	1		영선창고	
수방자재	P.P마대(끈有)	55×86	EA	5,000		방재창고	
	P.P끈	0.02×100(m)	r○ll	29		방재창고	
	P.E필름	0.08×180×91	r○ll	30		방재창고	
	보온덮게	1.8×20	r○ll	28		지하실	
	말목	8×180	EA	60		방재창고	
	흡착포	43×48cm	b○x	4		방재창고	
구조장비	무전기	(영업용)	EA	3/2/2/2	본/학/만/몽	방재창고	
		TFR-70(생활용)	EA	6		방재창고	
	선박		EA	5		차고/지하실	
	선외기		EA	4		영선창고	
	제트스키		EA	1		방재창고	
	수경		EA	2		방재창고	
	스노클		EA	2		방재창고	
	오리발		EA	2		방재창고	
	수트		EA	2		방재창고	
	후드		EA	2		방재창고	
	구명조끼		벌	10/20	구형/신형	방재창고	
	구명환		EA	11		방재창고	
	써치라이트	TL-3000(배낭식)	EA	2		방재창고	
		KXM-35D1(14.4V)	EA	1		방재창고	
	메가폰	PA-355S	EA	2		방재창고	
	들것	일반용	EA	3		방재창고	
	안전벨트		EA	1		방재창고	
	자일	Φ11(50M)	EA	1		방재창고	
	작업등	60W	EA	10		방재창고	
	멀티탭	50m	EA	2		방재창고	
구급물자	구급약품		SET	5		회의실창고	
	천막	15~20인용	EA	3		방재창고	
	압박붕대	3인치	EA	16		방재창고	
	배낭		EA	2/2		방재창고/소모품실	
	우의	코트식	벌	10		소모품실	

제 23 장 대전지방기상청

제 1 절 풍수해대책

1. 예방대책

가. 풍수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신속·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장비확충 및 기법개발

가) 기상관측시스템의 입체화

○ 지상, 고층, 해양, 레이더, 위성 수신망 확충 및 보강

나) 악기상 현상의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

○ 고분해능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시험

○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 향상

○ 디지털예보 기반 구축

○ 악기상 집중관측사업 및 연구

다) 기상정보통신 고도화

○ 차세대 기상정보통신망 구축

라) 기상재난 저감기술 개발

○ 집중호우, 태풍 등 한반도 악기상 조기감시 및 예측기술 집중 개발

○ 국가경제 및 산업진흥과 밀접한 중·장기예보 정확도 향상기술 개발

○ 엘니뇨/라니냐·지구온난화 감시 및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기술 개발

○ 기상현상과 관련된 생활기상 및 응용기상 연구

2. 대비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기상상황 전달

○ 멀티미디어 중심의 원스톱 기상정보 제공

○ 상황별 표준화/규격화된 기상정보 제공

○ 태풍강도예보, 태풍위치추적속보/상륙속보, 상황기상정보제공 정례화

○ 홈페이지를 통한 방재기상정보 지원 강화

제 2 절 설해대책

1.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능동적 자치/자율 방재체계 유도

○ 상시 비상근무체제 유지

나. 추진전략

○ 동계 적설관측 네트워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 적설 관측망 구축
- 대설특보 발표시 특별관측 실시(기상관서)
- 지역 실정에 맞는 겨울철 안전대책 수립

2. 대비대책

가. 유관기관과의 동계 적설 관측망 구축

○ 1개 시·군에 1개 이상의 적설관측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유관기관의 적설관측 자료 수집

- 방법 :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설특보 발표 시 매시간 수집
- 보고 : 수집된 자료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시스템 개선시까지는 자료를 취합하여 직상급 관서에 FAX 보고)
- 경보 시 : 매시간 제공

○ 적설 사전감시를 위한 적설 감시 네트워크 구축

- 충청지역 경찰청 지구대 및 한국도로공사 지소를 대상으로 적설예상지역 기상상황 수집

나. 특별관측 실시

○ 전 기상관서는 관할구역 내에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시간 관측을 실시

○ 대설특보가 발표된 지역은 30분 간격 특별관측 실시

다. 악기상시 능동적 방재비상체제 구축

1) 관할 구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악기상 예상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기관장에게 기상상황을 설명

2) 지역 실정에 맞는 겨울철 특별 안전대책 강구

○ 강설시 등반객 안전을 위한 기상지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원 등

○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을 위한 기상지원

- 농림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3. 대응대책

가. 원스톱 방재기상정보 생산 및 지원 강화

1) 방재기상속보 제공

○ 제공시기 : 대설특보 발표시 ~ 해제시

- 주의보 : 1시간 ~ 3시간 간격 제공 - 경보시 : 매시간 제공

○ 제공방법 : 홈페이지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팝업창 이용

- 필요시 방송국과 재해대책기관에 FAX 통보

○ 제공내용 : 특보발표현황, 기상실황, 대설동향 및 표준행동요령 등

2) 상황기상제공 정례화

○ 기상정보 발표 정례화

- 대설특보 발표 유무에 관계없이 대설에 대한 동태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발표

- 기상정보 발표시간

· 예비특보 발표시 : 6~9시간 간격

· 대설주의보 발표시 : 3~6시간 간격

· 대설경보 발표시 : 1~3시간 간격

※ 기상정보는 방재기상 속보로 가름할 수 있음

※ 출·퇴근 시간대(06~09시, 18~20시)에 강설 예상될 경우 기상정보 발표 강화

○ 매시간 적설현황 제공

- 대국민 서비스 및 유관기관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시간 관측된 적설량 제공

- 제공방법 : 홈페이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FAX 통보(필요시)

- 제공자료 : 기상관서 적설현황 및 유관기관 관측자료

제 3 절 지진재난대책

1. 예방대책

○ **지진 관측망 증설 및 지진감시체계 강화**

○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 범국민적 지진대비 홍보(비 예산)

- 범국민적 "지진대비 민방공 훈련" 유관부처 협의 및 훈련 실시





안전문화운동
SAFETY FIRST MOVEMENT

www.chungnam.net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 287) 충남도청